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3집

2007~2008

〔 발 간 사 〕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한 지 어느덧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국가의 국민 인권보호 수준은 곧 그 나라의 품격을 가리키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경이로운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단지 경제력에서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2009년 11월말 기준 총 4만1천여 건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의 진정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법령의 개선 권고와 의견표명, 유엔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활동,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권 이슈를 보다 많이 계발하여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2004년까지 위원회가 내린 결정사례를 담은 제1집이 국가와 사회에서의 인권보장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을 확인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엮었다면, 2005~2006년의 결정을 담은 제2집은 그러한 토대 위에 국민의 인권 신장을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사례모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7~2008년의 결정 사례를 모은 이번 제3집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정책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영역, 국민들의 정치·사회생활 영역, 형사사법제도 개선 관련 영역,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및 차별시정 관련 영역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법령의 개선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인권침해분야에서는 국가 공권력을 구성하는 핵심기관인 검찰, 경찰 관련 진정 사건은 물론, 구금시설, 군대, 외국인, 정신보건 시설 관련 진정사건의 결정례를 소개해드림으로써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권리구제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국가공권력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 등을 정리 하였습니다.
- 차별시정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다양한 차별 사유 - 성별, 임신출산, 성희롱, 장애, 나이, 출신국가와 피부색, 종교 및 사상, 학력, 병력,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 를 망라하여 결정례를 실었습니다. 이들 결정례를 통해 고용, 재화와 용역의 이용, 교육과 훈련기관 이용 등 일상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층 높아진 차별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결정례집이 국가기관 종사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및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일반국민에게도 유익한 자료로 쓰이길 바랍니다.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환**

[일 러 두 기]

- 이 결정레집에는 2007년 1월 초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인용 결정된 436건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05건을 선정하여 실었습니다.
- 사건 및 결정 내용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결정사항과 결정요지를 각 결정문의 윗부분에 실었습니다.
- 결정문은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를 하였고, 일부 맞춤법을 벗어난 표현 등은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지면 관계상 ‘관계법령’ 중 생략하여도 맥락상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은 생략 하였습니다.

대 목 차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2. 적법절차 위반
3. 시설 및 처우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 침해
6. 집회 및 시위 관련
7. 기타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71

1. 생명권 침해
2. 서신 및 집필
3. 시설 및 처우
4. 의료
5. 징벌
6. 폭행 및 폭언
7. 기타

제3장 군 관련 / 637

제4장 외국인 관련 / 709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 847

제6장 기타기관 / 919

1. 인격권 침해 및 가혹행위
2. 정보인권
3. 제도개선
4. 기타

목 차

【 제1장 】

검찰, 경찰 관련

1. 수사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

1 2007.4.30.자 06진인643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 3

이미 체포된 진정인을 호송 중인 차량 안에서 바닥에 쓰러트려 약 5분 동안 경찰 버스로 인계할 때까지 상체에 올라타 짓누르고 무릎으로 목을 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적법절차 위반

1 2007.2.21자 06진인2717 결정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경)] / 8

○○경찰서장에게, 불심검문시 피검문자에게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은 ○○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할 것을 권고

2 2007.4.30자 07진인157 결정 [인격권 침해] / 12

[1] 검찰직원이 피고소인의 불리한 처지와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을 고지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밝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여성피의자를 만나 성적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등을 느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2007.3.19.자 06진인761 결정 [변호인 접견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 24

진정인을 위한 변호인이 되고자 하려는 의사를 접견신청서를 통하여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과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한 행위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4 2007.6.18자 06직인9, 04진인3432, 05진인1236, 05진인1262, 05진인1339, 05진인1380, 05진인2009, 05진인2042, 06진인318 병합 결정 [벌금형 집행 등을 통한 인권침해] / 33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에게 형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지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벌금미납에 따른 노력장유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미납 대체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시설 및 처우

1 2007.2.21자 06진인2076 결정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 55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2 2008.7.24자 08진인2669결정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경)] / 59

피해자가 영창에서 복귀하기 전날 “외출 및 인터넷 복무규율 위반 시 제재 방법”을 새로이 결정하고 피해자가 영창집행을 마친 당일 공적제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새로운 제재방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공적제재를 결정한 조치는 상급청의 기본 운영지침을 벗어난 행위로서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전경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과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1 2007.7.20자 07진인187결정 [진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검)] / 66

진정인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유치장에 입감시킨 후 검찰로 송치하면서, 피의자가 아픈 환자라면 담당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검찰에 송치시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 형사피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 사례

2 2008.1.28자 07진인2439결정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 73

불심검문하면서 불심검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3 2007.6.5자 07진인683 결정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 82

경찰의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동의없이 밤샘조사 및 DNA의 검사용으로 타액을 채취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사례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

1 2007.1.15자 06진인2221 결정 [결정 피의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검)] / 90

○○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이 관계인에게 피의사실을 설명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므로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 2007.5.7자 07진인999 결정 [인격권 침해] / 94

피진정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범죄로 인한 고통을 배려하여야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무집행자임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설명을 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사례

3 2007.2.21자 04진인851 결정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 102

- [1]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이메일 주소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 수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적극)
-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직·간접적인 연고 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 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적극)

4 2008.7.3자 08진인1739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 119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6. 집회 및 시위 관련

1 2008. 10. 27자 결정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 134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부분을 직권조사하면서 경찰의 광인진압부분,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 강요부분, 식별표시 미부착부분 등에 대해 검토한 사례

7. 기타

1 2008.7.3자 07진인3390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 279

검찰총장에게 권총형 전기충격기(이하 테이저건)를 포함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포용 장비의 사용, 관리, 교육, 운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2008.9.25자 08진인619결정 [부당한 형집행장 발부에 의한 인권침해] / 286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발부 시 피고인에 대한 소환절차를 선행하는 등 형집행장 발부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2008. 9. 8자 08직인04-08진인1891(병합), 08직인05, 08직인06-08 진인0912(병합), 08직인07-08진인0313(병합), 08직인08-07진인4333 (병합), 08직인09, 08직인10결정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 291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 사건조사를 근거로 2007년 초 경찰청장에 대하여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여 경찰청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파악되었으나, 언론 등에서는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특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시로 보도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구체적인 구타·가혹행위가 확인되는 등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권고한 사례

4 2007.2.21자 05직인84, 06직인01, 05진인1620, 05진인2584, 05 진인3539 병합결정 [의경구타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 314

전경·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사건, 알몸진급신고식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2005. 10. 직권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별도로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등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방지대책이 무의미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전·의경의 인권상황 및 복무환경 개선을 당면과제로 한 범 정부차원의 협조를 관련 기관에 폭넓게 권고한 사례

【 제2장 】

구금시설 관련

1. 생명권 침해

1 2007.12.14자 06진인1162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 373

구금·수용시설 내에서 가스총 등 보안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8.7.15자 08진인913 결정 [사망수용자 대응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구)] / 380

구치소내 발생한 피해자의 자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생명권이 침해 당했음을 인정하고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3 2008.12.8자 08진인3437 결정 [총수염(일명 맹장염) 환자 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85

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야간 당직교감인 피진정인은 야간에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휴일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07. 3. 12자 06진인1449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 391

교정공무원인 피지정인이 수용자의 폭행으로부터 진정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진정인을 위협 상황에 방치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5 2008.11.24자 08진인1762 결정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교)] / 396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가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교도소장에게 지도감독 강화와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6 2008.3.24자 07진인2363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교)] / 406

○○교도소장에게 이물질을 취식한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 이○○에 대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2007.1.22자 06진인94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교)] / 413

피진정인 ○○구치소는 진정인이 안과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외부 병원 진료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로 이송가기까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교도소는 진정인의 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진정인을 진료하지 않는 등 수용자의 진료보장에 소홀하였으므로 이를 주의조치 하도록 권고한 사례

2. 서신 및 집필

1 2007.9.27자 07진인1446 결정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423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외부서신 발송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 2007.9.27자 07진인1745 결정 [수용자간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429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2008.11.24자 08직인14결정 [08직인14 소거실 수용환경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 437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가 청결·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며 수침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과,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입실거부 즉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는 대신 거실을 다시 배정할 때까지 임시 대체거실에 수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사·징벌실 과밀 수용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3. 시설 및 처우

1 2006.11.13자 O5진인2125, O5진인2188 병합 결정 [토요일 및 공휴일 접견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447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007.3.12자 O6진인2832 결정 [알몸검신에 의한 인권침해] / 455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금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 ○○교도소장에게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검사를 실시한 교감 조○○, 교위 정○○, 교위 박○○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

3 2007.11.16자 O7진인3392 결정 [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 462

피진정인은 수용자에게 춘추복이나 내의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날씨, 수용여건, 환자, 노약자 등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08.3.24 자 O7진인4211 결정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 466

법무부와 국방부가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교

도소에 수용중이던 진정인을 일반교도소로 이송하고 이송 후 분류심사시 군교도소에서의 행형등급과 수용생활 태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일반교도소 누진계급 4급에 편입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변경·제도의 차이·입법 불비의 책임을 수용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군교도소 수용자 출신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진정인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5 2008.12.29자 08직인16결정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및 휴무일 보장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 474

구금시설 취사장에 취업한 수용자가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휴일도 없이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정을 계기로 서울구치소 등 47개 구금시설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및 휴무일 작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한 사례

6 2008.12.8자 08직인12 결정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 490

전국 8개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 접수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밀도 등 수용환경과 편의시설 확보현황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의료

1 2007.1.22.자 06진인1140 결정 [구치소내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 505

피진정인은 우울증으로 자살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2 2007.9.17.자 07진인2092 결정 [외부병원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 510

진정인이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의 이품을 호소하고 있고, 전문의의 치료소견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3 2008.11.24자 08진인1762결정[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 515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를 비롯하여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간기능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5. 징벌

1 2007.11.26자 06진인2118-06진인3152-06진인3301-07진인254-07진인811-07진인1276-07진인1277-07진인1300(병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폭행, 가혹행위 및 과도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 52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방해한 행위와 수용자에게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교도소장 및 대구 지방교정청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 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폭행한 피진정인들을 검찰총장에게 각 고발하고, 부산교도소 직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계구사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7.11.19.자 07진인1584 결정 [부당한 징벌에 의한 인권 침해(경)] / 556

진정인에 대하여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출석통지를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진술준비를 할 수 없게 하여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사례

6. 폭행 및 폭언

1 2007.3.19자 07진인1316 결정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 559

기록이 남지 않는 구금시설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욕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 배경사건이 되는 사실들의 기록을 근거로하여 욕설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욕설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 2007.12.14자 07진인2859 결정 [인격권 침해(교)] / 565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하는 행위는 환자수용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례

3 2008.8.12자 08진인1442 결정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 신변노출에 의한 인격권침해] / 572

수용자 호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안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하고 호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08.2.29자 07진인2763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교)] / 578

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목을 밀치는 등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이 잘못을 반성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례

5 2007.7.9자 07진인771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기타기관)] / 582

피진정인이 여수화재 참사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이는 외국보호인인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격리 조치한 행위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6 2007.6.11자 07진인537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 593

교도관인 피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권고한 사례

7. 기 타

1 2007.3.19자 06진인945 결정 [면전진정 거부 등에 의한 인권침해] / 598

피진정인이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 유치장에서의 수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서면진정을 권유하고

진정인의 면진진정 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진정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모든 국가공권력의 작용에 준수되어야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2007.3.12.자 06진인2832 결정 [알몸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교)] / 604

가림막이 없는 조사실에서 수용자의 알몸을 검사한 사실에 대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금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자체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7.12.24자 06진인1162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611

법무부장관에게, 가스총 등 보안장비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07.12.14자 07진인1594 결정 [강제면도에 의한 인권침해 등] / 618

면도의 의무가 없는 진정인에게 면도를 지시 내지 강요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8.8.12자 08진인729결정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 627

○○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포승사용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포승으로 수용자를 묶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묶고 포승의 유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제3장 】

군 관련

1 2007.5.28자 06진인2994 결정 [검직불허 등에 따른 인권침해] / 637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휴직명령을 유지하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 [2] 공무원인 진정인이 장기 휴직으로 인하여 본봉의 반액만 지급받게 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영리목적의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한 것은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의 차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2007.12.18자 07진인2631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646

검찰총장에게, 피해자 亡 홍○○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진정인 김○○외 2명을 각 수사의뢰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에서 발행되는 퇴원환자정보기록지에 대하여 소속부대 지휘관 및 군의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들의 검찰수사결과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을 반영하여 공상여부를 재심의 하게 할 것을 각 권고한 사례

3 2008.5.8자 07진인190 결정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 의한 인권침해] / 654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의 생도규정 등의 규정에 대하여,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과 급주·급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급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급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4 2007. 1. 15자 06진인2072 결정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 663

피해자가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 등에 의해 사망한 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기계화보병사단 ○○여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7. 7. 9자 07진인1637 결정 [사망에 의한 인권침해] / 677

피해자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로 군 수사관에 의해 경찰관서로 연

행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경찰에게 신병이 인도되던 중 사망한 형사피의자인바 신병 인도 과정에서 경찰관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6 2007. 9. 7자 07진인1198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 700

피해자가 5명의 군의관을 거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병실에서 쓰러지게 까지 한 사건에 대하여 군의관 책임 부분은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국민들이 국방의료 수준에 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이며,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후송이 지연된 것은 군인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사례

【 제4장 】

외국인 관련

1 2007.9.11자 06진인2702 결정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71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인 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인 발생한 경우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법무부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8.1.28자 07진인121결정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 718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외국인의 이송절차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같은 법률을 법무부장관에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8.1.28자 08진인244결정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 725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초기검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4 2008.1.28자 07진인2439결정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 732

피해자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불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집행공무원이 외국인을 임의동행 할 때는 임의동행 거부권도 고지해주어야 한다는 권고 사례

5 2008.1.28.자 07진인4510 과도한 강제퇴거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 740

OO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6 2008. 3. 28자 06진인1181 경찰의 미등록외국인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 749

경찰의 미등록외국인 강제연행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2008. 4. 28자 08진인28결정 [외국인들의 강제퇴거에 의한 인권침해] / 758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 종료 시까지 또는 위원회가 출국을 승인한 경우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한 사례

8 2008. 6. 25자 07진인3089 [탈북자 지위 불인정 등에 의한 인권침해] / 767

보호외국인의 국적이 판정되기 전까지 보호일시해제 관련 서류에 국적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사례

9 2008. 7.28자 07진인5087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 774

OO외국인보호소 직원에 의한 보호 외국인 폭행에 대하여 관련자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해당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권고한 사례

10 2008. 10. 27자 08진인3152결정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미 준수 및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 780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외국인을 단속, 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법집행에 해당하므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관련자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례

11 2008. 10. 27자 07진인4701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 788

방글라데시 출신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단속이 있었던바 국가정보원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관계자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사례

12 2007.4. 9. 07직인2 결정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고 직권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 803

13 2007.12.17자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823

외국인보호시설 및 외국인 교정시설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 및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례

【 제5장 】

정신보건시설 관련

1 2007.4.9.자 06진인2441 및 06진인2537 병합 결정 [부당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 849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입원 시키고, 진정인에게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2007.9.17.자 06진인1848, 06진인3354 병합 결정 [시설 및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854

[1] 행려환자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지연시키고, 지도·점검 시 입원환자 수를 속이기 위해 약 40~50인의 환자를 별관으로 빼돌린 피진정인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폐쇄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상급기관에서 경고조치하고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피진정인에게는 입원절차 위반, 통지의무 위반, 계속 입원심사청구 위반,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작업

치료, 인력기준 위반 등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7.10.8.자 06진인2621 결정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874

- [1] 97명의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키고,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11명의 행려환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 및 가족들을 기망하여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 [2] 김○○의 11명의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 [3]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입·퇴원 관련사실을 허위기재한 사실과 의료비 부당 청구 및 부당 징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경고조치를 취하고 감독 관청에서는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 서면통지의무 위반, 환자 권리 미고지, 계속 입원심사청구 누락, 과도한 CCTV 설치, 부당한 전화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 환자에 의한 감시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08. 7. 4.자 07진인1582결정 [서신검열 등에 의한 인권침해] / 903

피진정인이 청소·배식 등 병원 업무에 환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정기적인 평가를 결여하고 있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완 조치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5 2008. 7. 4.자 07진인4113결정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 91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진정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2주간 전화·면회를 금지하였으며 입원 환자들의 전화 통화 요일 및 시간을 제한하여 진정인 신체의 자유 및 입원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및 진료기록부에 기재 등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

【 제6장 】

기타기관

1. 인격권 침해 및 가혹행위

1 2007.7.20.자 07진인533 결정 [인격권 침해] / 921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시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 2007.12.14. 자 07진인2659-07진인2660-07진인2793 병합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 929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3 2008. 2.13. 자 06진인1254 결정 [고교투수 혹사에 의한 인권침해] / 940

피진정인(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행위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4 2008. 2.28. 자 07진인4343 결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지도·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 946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 관찰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진정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 할 보호관찰관의 업무로는 불필요한 것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보호관찰명령 집행 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2008. 2.28. 자 06진인1951 결정 [과도한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 / 949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 「생활지도규정」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6 2008. 4. 3. 자 07진인4572 결정 [인격권 침해] / 953

진정인이 학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들어야 할 명백한 과실이나 구체적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행정실 방문 금지 및 욕설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7 2008. 5. 29 자 07진인3026 결정 [인격권 침해 등] / 956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행정지도 시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8 2008. 7. 3자 07진인5047 결정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및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 959

피진정인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노조관련활동을 하려고 하는 진정인을 특별히 지명하여 진정인의 보수 내지 진정인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의 합계액을 밝히고 그러한 인건비의 부담이 높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권 및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9 2008. 8. 7자 07진인4220결정 [인격권 침해] / 964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민원은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당신, 보험 사기꾼 아니냐?”라고 말한 것은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감독 기관장인 ○○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10 2008. 8. 7자 08진인1945결정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 967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에게 사용한 ‘암적 존재’라는 말은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그 대상자에게 매우 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야기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1 2008. 9. 25자 07진인4677결정[부당한 학교폭력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 970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할 긴급한 사정이나 최후의 수단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이므로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2 2008. 10. 9자 08진인2795결정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 985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피진정인의 발언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2. 정보인권

1 2007.4.2자 06진인1740 결정 [행정처분 기록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 990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의사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

2 2008. 5. 8. 자 07진인2270 결정 [개인정보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 995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부장관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도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2008. 5. 29 자 07진인3520결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 100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에게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2008. 5. 29자 08진인170 결정 [진정서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 1006

민원담당 공무원이 피신고회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유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해 민원서류 사본이 유출된 것은 민원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5 2008. 5. 29자 07진인3236-3239-08진인831 결정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 / 1010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6 2008. 7. 17자 07진인3637결정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인권침해] / 1016

학교관련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누출함으로써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교육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에 대하여 기관주의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

7 2008. 7. 17자 07진인4983결정 [정보 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 102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과 ○○대학교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8 2008. 7. 17자 08진인910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1031

민원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정기관 간 민원인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문건 취급시 부주의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은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 및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2008. 11.13자 08진인3398결정 [전화상담센터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 1037

국세청장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10 2008. 11. 13자 08진인0143결정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 104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

3. 제도개선

1 2007.8.13자 07진인1229 결정 [방과후보육교사 채용계약관련 인권침해] / 1054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교육청의 채용 계약 방침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2 2008. 7. 17자 08진인1649결정 [확약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 1064

북한 방문증 신청서 승인 시 법률적 근거없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방문승인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것은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방문증 신청서 승인 시 신청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확약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4. 기타

1 2007.9.7자 07진인898 결정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 1070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타시도 진출시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피진정인인 ○○초등학교 교장이 야구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 2008. 4. 3자 07진인2330 결정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 107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이를 위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고등학교장)의 감독기관인 ○○도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및 ○○도교육감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3 2008. 7. 3자 07진인823 결정 [주민등록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 1083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에게 진정한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4 2008. 7. 17자 08진인762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091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5 2008. 8. 28자 08진인2179결정 [정부의 사퇴 증용에 의한 인권침해] / 1096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해 법률적 근거없이 수차례 사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강박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 절차 없이 사퇴를 요구한 ○○정책관 ○○○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6 2008. 9. 10자 07진인1134결정 [공무원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 등에 따른 인권침해] / 1103

피진정인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

[제 1 장]

검찰, 경찰 관련

1. 수사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

1 2007.4.30.자 06진인643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이미 체포된 진정인을 호송 중인 차량 안에서 바닥에 쓰러뜨려 약 5분 동안 경찰버스로 인계할 때까지 상체에 올라타 짓누르고 무릎으로 목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체포과정에서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기위해 불가피하게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지만, 이미 체포·제압된 형사피의자들의 체포 및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 것이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

【진 정 인】 ○ ○ ○

- 【피진정인】 1. ○ ○ ○ 외 3명
- 2. 위 같은 소속 성명불상 검거 및 호송경찰관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3. 15. 18:00경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굴착작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연행되면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경부 염좌 및 전경부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가. 피진정인들이 체포하여 형사기동대차량(봉고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온 몸을 비틀었고,
- 나. 형사기동대차량 안에서 차량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뒤로 젖혀 꺾고 가슴 위에 올라 앉아 엉덩이로 짓누르며 주먹으로 온몸을 구타하면서 경찰버스까지 이동하였으며,
- 다. 이후, 피진정인 ○○○이 경찰버스로 옮겨 태우면서 손으로 목을 2차례 이상 졸랐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2006. 3. 15. 평택미군기지 확정 확정지 굴작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던 형사피의자이고,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을 체포 및 호송하였던 ○○경찰서 형사와 소속 경찰관들이다.

3.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2006. 3. 15. 불법집회 및 시위 주동혐의로 진정인을 체포해 형사기동대차량을 이용 경찰버스로 호송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이 발로 경찰관을 차는 등 저항이 극심하여 팔과 다리 등을 붙잡아 승차시켰고, 이후 진정인이 위 형사기동대차량 안에서는 소리를 지를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진정인의 목을 꺾고 올라타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 2) 체포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버스로 진정인을 호송하여 인계한 것으로 진정인의 목을 조르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다.
- 3) 당시 평택지역에 여러 차례 검거 및 호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업무수행 중 체포된 피의자들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학교, 집회시위 참가자)

진정인과 같이 집회시위를 하다가 먼저 체포되어 형사기동대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곧이어 성명불상 2~3명이 진정인을 차량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체포의 이유 및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진정인을 약 5분 동안 차 바닥에 엎어 놓고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정신이 없었던 터라 가해자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4. 관련규정

가.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여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참고인 ○○○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서가 제출한 수사 및 경비기록, ○○○경찰서가 제출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등 수용기록, 진정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고인 ○○○는 2006. 3. 15.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형사기동대차량에 태워 호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체포 이유 등을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따져 묻자 차량바닥에 쓰러트리고 상체부위에 올라타 깔아뭉개고 무릎으로 목을 꺾어 누르는 등 약 5분간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의료원 ○○병원 의사 ○○○은 2006. 3. 23.자로 진정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 “경부염좌, 전경부찰과상” 등으로 약 2주간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적시한 바 있다.

다. ○○○경찰서가 제출한 진정인의 수용기록에는 진정인이 2006. 3. 15. 23:30 및 3. 16. 17:00경 2회에 걸쳐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원 ○○병원에 외부진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3. 15.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게재된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 및 성명불상 경찰관 2~3명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형사기동대 차량에 강제로 승차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마. ○○경찰서가 제출한 “3. 15트랙터 차단 및 농로굴착 관련 경비계획”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평택경찰관서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자 검거 및 호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 ○○○은 사건 당시 호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기동대차량의 조수석에 선답하고, 피진정인 ○○○는 동 차량의 운전을 하고, 피진정인 ○○○은 뒷좌석에서 검거된 진정인 및 참고인 ○○○를 호송하고, 피진정인 ○○○은 성명불상 경찰관들과 공동으로 진정인을 체포해 위 차량에 승차시킨 사실을 각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은 물론 피진정인들 대부분 체포 및 호송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어 뒷좌석에 호송했던 동료 피진정경찰관이 누구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판단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첫째, 참고인 000가 진정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둘째, 진정인이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유치장 수용 직후, 고통을 호소하여 치료한 진료기록 및 진단 기록이 진정인의 피해내용과 상당부분 일치되고 있는 점, 셋째,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을 체포 및 호송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호송 시 형사기동대차량의 뒷좌석에서 호송했던 동료경찰관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진정인과 참고인 ○○○의 진술로 보아 상당 정도 위 차량안의 상황이 혼란스러웠을 것인데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진정인들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 및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공동으로 체포에 저항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호송차량에 승차시키고, 이후 체포된 진정인을 호송 중인 차량의 바닥에 쓰러트려 약 5분 동안 경찰버스로 인계할 때까지 상체에 올라타 짓누르고 무릎으로 목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중, 체포과정에서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기위해 불가피하게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지만 이미 체포된 진정인을 호송 중인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압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피진정인 1, 2, 3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을 좁은 형사기동대차량 안에서 폭행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제지하지 않은 행위 또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이미 체포·제압된 형사피의자들의 체포 및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2. 적법절차 위반

I 2007.2.21자 06진인2717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경)]

○○경찰서장에게, 불심검문시 피검문자에게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은 ○○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불심검문시 검문자가 피검문자에게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이○○ (○○경찰서 ○○지구대)

【주 문】 ○○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6. 11. 8. 10:30경 PC방에서 이름, 소속도 밝히지 않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당해, “지금 신분증이 없고 불심검문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냥 하는 거”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라”고 하여 “본인 집이 이 근처니 집에 같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가라”고 했으나, 집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결국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2006. 11. 08. 도보순찰 중 10:30경 '관내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 강절도예방 및 불법 PC방 탈선 청소년 예방지도점검' 차 ○○동 ○○시장 근처 ○○ PC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 2) 종업원에게 순찰차 나왔으며, 잠시 내부 좀 살펴보겠다고 하고 내부를 살펴 던 중 5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는데 그 중 청소년으로 보이는 1명이 있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자, 맞은 편 구석에서 게임을 하던 진정인이 왠지 피하는 것같아 의심스러워, 경례 후 "예방 순찰차 잠시 들렀는데 검문에 협조해달라, 잠시 신분증 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더니 "왜 아침부터 나만 검문하냐, 나 신분증 없다, 이 동네에 사는데 무슨 검문이나, 그냥 가라" 고 하였다.
- 3) 재차 "가지고 계시면 잠시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 협조해 달라" 고 하자 "나 안가지고 있어, 정말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집에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따라오면 보여주겠다" 고 하여 "여기서 간단히 확인만 하게 해 달라,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불편을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게임도 그만두고 집에 가자고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상관없다"고 하면서 약 200미터 떨어진 단독주택 2층으로 가더니 갑자기 문을 닫고 잠그려고 해 문을 잡고 "신분만 확인하고 돌아갈테니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 4) 이에 진정인이 안쪽 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더니 "당신 내 신분증 확인해 봐서 이상 없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경찰관이 소신껏 근무하는데... 집까지 따라오라고 하고 이상 없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 경찰관들 사기가 떨어져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고 하자 그 때서야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휴대폰 조회기로 확인해 본 바 본인이 확실히 맞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 5)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검문하는데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앞으로 혹시 검문을 당하게 된다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하자 "됐어, 됐으니 어서 꺼져라" 고 하여 경례 후 지구대로 귀소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이 2006. 11. 8. 10:30경 '관내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 강·절도예방 및 불법 PC방 탈선 청소년 예방지도점검' 차 ○○동 소재 ○○ PC방을 순찰한 바, 진정인이 수상해 보여 피진정인이 자신의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진정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진정인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짜증내고 그냥 가보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계속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진정인이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집에 데려간 후 주민등록증은 보여주지 않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 피진정인이 문을 잡고 요청하자 마지못해 집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상이 없으면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으며, 피진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은 정복근무중이었으며, 서울로 전출되어 이전 신분증은 회수되었고, 새 신분증은 발급전이였다.

4. 판단

가. 「헌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시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고 규정하여, 경찰관이 먼저 신분과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의무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1997. 11. 27. 서울지법 민사11단독 판결, 1998. 9. 25. 서울지법 민사9단독 판결).

다. 진정사건의 경우, 2006. 11. 8. ○○동 소재 ○○ PC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면서, 검문에 불만스러워하는 진정인에게 시종일관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신분과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검문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적법한 불심검문 개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은 「헌법」 제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2 2007.4.30자 07진인157 결정 [인격권 침해]

【1】 검찰직원이 피고소인의 불리한 처지와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을 고지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여성피의자를 만나 성적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등을 느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 【1】** 고소인에 대한 옹서나 취하는 진정인이 원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진정인 편도 없고 고소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주위에도 이롭지 않고 해악이나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을 고지하면서 합의를 종용한 것은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2】** 피진정인1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여성피의자에게 만나자고 전화한 점, 진정인을 껴안고 둔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행동을 한 점, 진정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안아보자’는 말을 한 점, 이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등을 느낀 점 등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3】** 피진정인2, 피진정인3은 자신의 직무관리·감독·지휘 책임하에 있는 피진정인1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김○○ 외 2 (○○검찰청 ○○지청)

- 【주 문】** 1. ○○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2·3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6. 1. 18. 01:52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로 고소한 ○○시청의 △△△계장을 용서해 줄 것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진정인을 어떻게든 뚫뚫 위으려는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서 진정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든 말든 일단 기소해서 공판시 담당검사의 강력한 대응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나. 같은 날 오전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벽쪽으로 밀어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둔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다. 2006. 3월경 피진정인2·3과 면담하여 피진정인1의 행위에 대해 호소했으나, 피진정인1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주장과 같음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가) ○○시청 △△△계장이 진정인을 ○○로 고소한 사건을 2005. 12.말경 배당받았다.

나)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소인에게도 다소 문제가 있지만 진정인 역시 보통 여성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며 도대체 진정인이 운영하는 ○○○○협회(이하 “○○협” 이라 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던 차에 2006. 1월 초순경 저녁 늦게 고향 후배와 같이 과음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위 협회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다) 차를 한 잔 마신 후 진정인에게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나 고소인이 악의로 진정인을 대한 것이 아닌데 웬만하면 용서하여 주는 것이 어떨겠느냐”고 하였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라) 취기가 오는 가운데 집에 전화하여 오늘은 아는 사무실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으며, 사무실 한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진정인은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안다.

마) 진정인에게 사건을 포기하라고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죽과 양말을 사다주어 감사의 마음과 순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을 느껴 포용했으며 안아보지는 말은 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한 바는 없다.

바) 2006. 3월경 피진정인2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 받고 사실대로 알려 주었으며,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2) 피진정인2

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1과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봐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그 내용은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만나 대화한 내용이었고, 그 녹취 내용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당시 진정인은 위 상황으로 인해 피진정인1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러한 상황도 있으므로 △△△계장 사건을 보다 엄중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 위 사정에 대해 피진정인3에게 보고한 바, 피진정인1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므로, 이에 따라 피진정인1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진정인을 만난 사실은 맞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적 행동은 없었다는 진술이었다.

마) 진정인은 이후에도 수 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화를 했으나 피진정인1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바 없으며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므로 처벌의사 표시 없이는 조사개시를 할 수 없다.

3) 피진정인3

가) 진정인과 면담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달도 채 안되는 시점이었다.

나) 면담에서 진정인은 2005년도에 ○○○○죄로 구속기소되어 ○○ 판결을 받은 일에 대한 전후 사정과 억울하다는 내용, 자신이 지나온 인생역정, 특히 군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였다.

다) 진정인의 얘기를 일단 다 들어보기로 하고 진지하게 끝까지 말을 들어주었고, 진정인의 사건에 대해서 피진정인2에게 진정인의 주장과 호소를 잘 들어보고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진정인도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갔다.

라) 당시 진정인으로부터 사건기록의 등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기억하나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

마) 그 후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인2가 “진정인이 찾아와 피진정인1이 자신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려 했다고 한다” 고 보고하므로, ○○○ 부장검사와 피진정인2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피진정인2가 피진정인1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사무실에 연락하여 찾아가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추행 같은 것은 한 일이 없다고 하고, 진정인도 더 이상 사실확인 요구를 하지 않고 정식 고소를 하지 않아 피진정인1에 대한 입건이나 정식징계절차를 취할 상황은 아니었다.

사)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진정인이 피진정인1을 상대로 우리 청이나 상급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바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 1) 진정인은 2005년 ○○○○혐의로 진정인을 고소한 ○○시청 공무원 △△△에 대해 ○○시청에 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이 진정인을 ○○혐의로 ○○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다.
- 2) 진정인은 △△△을 ○○○ 혐의와 ○○○○○○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 3) 피진정인1은 △△△이 진정인을 ○○죄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다.
- 4) ○○사건을 조사하던 피진정인1은 2006. 1. 18. 01:00경 술에 취해 진정인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집 위치 등을 문의하였고, 진정인과 ○○시 ○○동 소재 ○○협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5) 피진정인1은 택시로, 진정인은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협 사무실에서 만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게 사건의 담당자로서 사건의 조사와 사건 처리결과를 좌우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진정인에게 고소인 △△△을 용서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한 고발들을 취하하며, 앞으로 고소 등을 내지 말 것 등을 반복하여 말하였다.
- 6) 진정인은 피진정인1의 고소인에 대한 용서나 고발 건에 대한 취하, 향후 맞고소 등을 제기하지 말 것 등에 대해서는 계속 이익을 제기하였다.
- 7) 대화 후 피진정인1은 ○○협 사무실에서 자게 되었으며 진정인에게 아침에 깨워달라고 하고, 진정인은 귀가하였다.
- 8) 아침에 진정인은 피진정인1에게 줄 잣죽과 동치미, 양말을 가지고 갔으며,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1의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내용의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였다.
- 9) 진정인은 성추행 등 발생 이틀 후인 2006. 1. 20. 최○○ 변호사에게, 2006. 1. 21. 이○○ 변호사에게, 진정요지 가·나항을 상담하였고, 이후에도 남○○ 변호사에게 계속 상담하였다.
- 10) 진정인은 2006. 3. 17. 피진정인2·3을 면담하였고, 피진정인3에게 “검찰직

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피진정인2에게도 “못당할 일을 당했다,”고 하고, “피진정인1로부터 새벽에 만나자는 전화가 왔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 11) 진정인은 2006. 3. 21. ○○사건기록의 복사와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피진정인2에게 피진정인1과의 2006. 1. 18.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 2부를 제출하여 읽어보게 하였고, 2006. 3. 28. 민원실에서 피진정인3에게 성추행 관련 부분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 12) 피진정인2,3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은 말하지 못했으며 “성추행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 “못당할 일을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13) 피진정인2는 불상의 날에 피진정인3에게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인의 항의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였고, 피진정인3은 사건 경위와 진정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두로 조사지시하였다.
- 14) 피진정인2는 불상의 날에 피진정인1에게 “진정인을 찾아가 만난 적이 있는 지”를 물어보았고, 피진정인1은 “만난 적 있다, 사건에 대해 얘기했다, 그 사무실에서 자고 왔다, 술이 많이 취해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였다.
- 15)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3에게 14)의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고 “진정인이 지금 당장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으며, 피진정인2,3은 강제추행이라면 친고죄이므로 진정인이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진정인이 그 후에도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지칭을 왕래하였으나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므로 피진정인1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
- 16) 진정인은 피진정인2,3에게 피진정인1의 언행에 대한 녹음화일 제출을 요청받거나 성추행의 주장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은 바 없다.

나. 판단

- 1) 진정요지 가.항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가)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제6호는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하고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피진정인1이 사건담당자의 지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진정인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나 이는 양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다) 녹음화일(녹취록 있음)에 의하면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게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포기할 건 빨리 포기를 해야지. 아닌 건 빨리 포기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러면 안되거든. 근데 △△△이를 죽이라고 하지 마. 피는 항상 피를 부르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걸로 해서 끝내. 오케바리? 이번 사건은 그냥 기소 안할 거야,” “(○○○ 고발 건에 대해) 그건 취하해. 그건 취하해. 경찰단계에서는 하지 말고 검찰에 어차피 올라왔을 때 취하해, ○○○는 좀 하지 말고 △△△이를 죽이고 싶어,” “다시는 이거 고소장 내지마. 그만 해. 덮어놔. 이제 그만 해. 그냥 이걸로 끝내” 라고 하며, 용서, 포기, 취하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말들과 함께 “(진정인이 ○○로 고소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고 검사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죄로 해가지고 재판에 기소하려고 했으나 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기소가 안되고 당연히 무혐의가 될 것이다,” “△△△ 계장 잘 좀 봐달라고 빗발치듯 전화가 왔다,” “주변에서 진정인 편에 선 사람이 없다, 검사도 그렇고,” “다른 놈이 이 사건을 맡았다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다. 어떻게 하든 뜯뜯만다” 고 말하여, 진정인의 불리한 처지와 검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악 상황을 고지하여 합의를 종용하려고 하는 듯한 대화가 녹음화일에 나타나고 있다.
- 마) 진정인은 이러한 피진정인1의 의견에 대해 계속 하여 “억울하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여 피진정인1의 고소인에 대한 용서 등의 권유가 진정인의 권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 바)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에 대한 용서나 취하는 진정인에게

이익이 없고 진정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진정인 편도 없고 고소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주위에도 이롭지 않고 해악이나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을 고지하는 점 등에서, 피진정인1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다.

2) 진정내용 나.항

가) 성별에 관계없이 피의자라는 처지에서는 자신의 사건 처리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건담당자라는 지위에 있는 자의 요청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1이 술에 취해 밤늦은 시간에 여성피의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 의도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다.

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 (1)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껴안고 둔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1은 순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일어 진정인을 포옹한 것은 인정하나 둔부와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 (2) 우선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갑자기 포옹하고, “안아보자”라는 말을 수회한 사실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녹음화일에서 인정된다. 동성이 아닌 이성인 진정인을 안거나 안아보자는 말을 하는 것은 피진정인1과 진정인이 사건수사관과 피의자의 신분으로 포옹을 할 정도의 친근한 개인적·사회적 관계에 있지 않은 점, 이성간 포옹이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적 인사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 사회통념인 점, 진정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피진정인1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이 피했다’고 하는 점, 진정인의 ‘여자로 산 게 아니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말)에서 피진정인1의 언행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 (3) 다음으로 진정인의 진술과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 존재 여부에 대해 보면,
 -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취침한 사무실내 안쪽 공간(이하 ‘내실’이라 한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방에서 나온 피진정인1과 ○○협의 회원 수 등에 대해 대화하면서 “피진정인1이 사방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사진이 끝나는 곳에서 뒤를 돌아 마치 맞은 편 사진을 볼 것같이 다가오다 갑자기 허리를 끌어안아 그 반동으로 벽으로 밀렸다” 라고 포옹이 발생한 시점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나) 이어서, “피진정인1이 입을 맞추려고 하여 얼굴을 돌려 입이 귀에 닿았다, 피진정인1이 한팔은 어깨 위로 한 팔은 뒤희리 바지를 더듬으므로 몸을 벽에 붙여 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렀다, 피진정인1의 허리를 잡고 천천히 밀자 어깨에 있던 손이 가슴으로 와 옷위에서 더듬다 옷 속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진정인1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빠져 다른 손이 올라왔다, 이에 두 손을 양쪽으로 나눠 잡고 천천히 내렸다, 그 상태에서 여자로서 살지 않는다고 했다, 피진정인1이 그럼에도 ‘안아보자’며 잡혀 있는 두 손을 올리므로 그 두손을 피진정인1의 가슴쪽으로 밀고 흔들면서 ‘이렇게 손은 잡아드릴게’ 라고 말했다” 고 둔부와 가슴을 만진 성추행 행동을 녹음화일의 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이러한 진정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자의 진술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라) 또한, 진정인이 진술하는 성추행 행동은 서로 무리없이 이어지는 점, 그 행동들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녹음화일에 나타난 시간이 부합하는 점, 녹음화일에서 옷마찰음 등 진정인과 피진정인1의 몸이 밀착되어 있음이 드러나는 상황인 점, 사건현장이 밀폐되고 성인남자 1-2걸음정도면 사람의 움직임 잡을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에서도 진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마) 아울러 녹음화일에 나타난 진정인이 “여자로 산 게 아니고, 엄마로서 여태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1이 “나 다른 생각에서 저기 한 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고 진정인이 “저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 라고 하는 대화에 나타난 “여자로서,” “위로해 주시려고” 라는 표현에서 성적인 행동에 대한 암시가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 (바) 나아가, 진정인이 발생 이틀 후부터 일관되게 위 성추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들에게 상담하고, 피진정인2,3에게 호소한 점도 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 (사) 반면에, 피진정인1은 “순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생겨 진정인을 포옹했다, 제대로 안지 못해서 계속 안아보자고 하며 다가갔다, 진정인이 요리조리 피했다, 뱅뱅 돌았다” 라고 설명할 뿐으로 녹음화일에서 들리는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아, 피진정인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아) 이상과 같이 진정인의 성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녹음화일에 나타난 정황과 대화내용, 사건발생현장구조, 사건 발생 후 진정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1의 진술처럼 단순 포옹상황이 아닌 진정인의 진술과 같은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비록 위 성희롱, 성추행 당시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1의 성적 언동에 대해 분명하게 반박, 항의하지 않았으나, 이는 성희롱 상황에 처한 여성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저항함으로써 초래될 현재 및 미래의 위험과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라) 게다가 진정인의 경우에 양 호주머니에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저항으로 인해 녹음기를 들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판단된다.
- 마) 이상에서, 피진정인1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여성피의자에게 만나자고 전화한 점, 진정인을 껴안고 둔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행동을 한 점, 진정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안아보자’ 는 말을 한 점, 이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등을 느낀 점 등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진정내용 다.항

-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2,3에게 피진정인1의 행동을 호소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처분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을 진정하고 있다.

나) 우선 피진정인2에 대해 보면,

- (1) 피진정인2가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1의 언행에 대해 듣고 피진정인3에게 보고한 것은 인정된다.
- (2) 그러나, 피진정인2는 2007. 3. 17.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1의 행동에 대해 듣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1이 새벽에 집엘 온다고 했다”고 말하는데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며 진정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 (3) 또한, 2007. 3. 21. “△△△ 계장을 용서하라” 든가 “안아보자”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았고 피진정인3의 조사지시를 받아 피진정인1을 조사하면서도, 녹취록이나 녹음화일에 대한 조사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 내용 조사 등이 없는 점 등에서 적절하거나 충실하게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나아가, 성추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지위에서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여성피의자에게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걸고, 안아보자고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의 근무자세에 대한 문제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5) 위와 같은 피진정인2의 행동은 자신의 직무관리·감독·지휘 책임하에 있는 피진정인1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진정인3에 대해 보면,

- (1) 피진정인3의 경우 진정내용에 대해 피진정인2의 보고를 받고 피진정인2에게 조사를 지시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 (2) 녹음화일에 의하면 진정인이 피진정인3에게 2006. 3. 17. “검찰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호소하고, 같은 해 3. 28.에도 녹취록을 가지고 “성추행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진정인3은 “그런 일은 충분히 예방하고 해야 될 그럴 직위에 있고...” 라고 하고, “그것

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등의 답변을 하고 있다. 즉, 진정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검찰직원의 성추행에 대해 듣고 녹취록을 본 사실이 있다.

- (3) 피진정인3은 녹음화일에 위와 같은 본인의 직접적 답변이 존재함에도 진정인의 검찰직원에 의한 성추행 호소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진정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회피하려고 한 경향이 보이는 점, 피진정인2와 마찬가지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이 범죄사실에 속하는지 등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진정인2로부터 조사결과보고에 의해 인식한 사실, 즉 밤늦은 시간에 여성피의자에게 만나자고 전화걸고 안아보자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직원의 근무자세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처분없이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
- (4) 위와 같은 피진정인3의 행동은 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3 2007.3.19.자 06진인791 결정 [변호인 접견제한에 의한 인권 침해]

진정인을 위한 변호인이 되고자 하려는 의사를 접견신청서를 통하여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정인과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한 행위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 ○○○이 진정인을 위한 변호인이 되고자 하려는 의사를 접견신청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면, 비록 변호인 선임계약을 진정인과 체결하기 전이라도 위 「헌법」 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접견교통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제1항, 제34조, 「행형법」 제14조 제4항, 제41조, 제43조, 제68조, 「행형법시행령」 제46조,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외 3명

[피진정인] ○ ○ ○ 외 2명

- [주 문]** 1. ○○지방경찰청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하 ‘진정인등’이라함)은 2006. 4. 7. 집회시위를 하다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고 ○○경찰서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는바, 당시 피진정인들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 가. 피진정인 ○○○은 2006. 4. 7. 19:00경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사무실에서 진정인등을 조사하면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견이 안된다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였다.
- 나. 피진정인 ○○○과 ○○○은 진정인이 2006. 4. 8. 08:15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출감하면서 도주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으로 계구착용을 거부하자 “도주와 증거인멸은 우리가 판단한다”면서 계구착용을 강요하였다.
- 다. 피진정인 ○○○과 ○○○은 진정인이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정인의 유치물품 중 담배와 라이터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등은 2006. 4. 7.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군 도두리에서 개최한 미군기지 확장반대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피의자들이고, 피진정인 ○○○은 이들을 인계받아 조사한 ○○○경찰서 ○○수사팀장이며, 피진정인 ○○○과 ○○○은 ○○경찰서 수사과의 유치인보호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이다.

3.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

- 1) 진정인등은 2006. 4. 7. 19:00경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이 인권단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여 동인으로부터 변호인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사담당자에게 알려준 후, 변호인의 접견이 있기까지 조사를 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 2)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성명불상의 변호사가 위 조 사실을 방문, 진정인등에 대하여 접견을 신청하여 맨 처음 진정인을 접견하고, 이어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접견하려고 하자 피진정인 ○○○이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접견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면서 접견을 거부하였다.
- 3) 이에 위 변호사가 피진정인 ○○○에게 “왜 접견을 거부하느냐”며 항의하였고, 진정인등도 항의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막무가내로 접견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 ○○○

- 1) 2006. 4. 7. 진정인등을 인계받아 같은 날 20:00경부터 동인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2:00경 성명불상의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조사실로 들어와 신분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큰소리로 3~5분간 “수사중지, 수사중지”라고 외쳐, 수사를 중지하고는 위 변호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접견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2) 위 변호사의 접견 중 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동 변호사가 접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 상황실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 당직검사에게 문의한 바,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에 위 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서 큰소리로 계속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가 접견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그냥 나가버렸다.
- 3) 이후 바로 진정인이 위 변호사에게 전화하였고, 이를 본인이 바꾸어 받아 위 변호사에게 접견을 다시 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이미 경찰서 밖으로 나갔으니 당일 접견하지 못하고 다른 변호사가 다음날 접견할 것이라는 말 하였다.

라. 피진정인 ○○○, ○○○

- 1) 본인들은 2006. 4. 8. 08:00경부터 유치인보호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8:15경 진정인을 조사 출감시키면서 계구사용을 고지하고 계구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자신은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계구착용을 거부하여, “계구사용 여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알리면서 설득하고 있는데, 때마침 수사담당자와 전경 2명이 유치장으로 와서 진정인을 직접 호송한다고 하여 계구를 사용하지 않고 08:50경 조사 출감시켰다.

- 2) 진정인이 위 같은 날 08:15경 조사출감하면서 최초 입감당시 본인이 영치한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길래, 유치장은 금연지역이고, 관련 규정 상 줄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마. 참고인 ○○○ 변호사

- 1) 본인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변호사로 2006. 4. 7. 오후 경 평택 지역에서 집회시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가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진정인등 5명의 피의자를 접견하고자 변호인접견신청서 및 변호사 신분증을 수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접견을 신청하였다.
- 2) 접견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피진정인 ○○○에게 진정인등을 모두 함께 접견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여, 일단 이들에 대한 조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진정인등에게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접견 후에 조사를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 3) 그런데 위 피진정인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만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상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를 접견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계속해서 변호인 선임서 양식에 따라 경유를 받아 정식으로 접수하라면서 접견을 방해하여 30여분 간 말씨름을 하다 우선 진정인을 접견하게 되었다.
- 4) 진정인에 대한 접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위 피진정인이 변호인 접견실로 찾아와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 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하길래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더니 자기가 잘 아는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검사에게 확인하여 봤더니 수사상 필요하면 접견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접견을 거부하였다.

- 5) 이에 위 피진정인에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사할 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경찰서에서 원하는 양식의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었으나 역시 묵살하였고, 결국 접견을 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4. 관련규정

가. 「헌법」 제12조제4항

나. 「형사소송법」 제30조제1항, 제34조

다. 「행형법」 제14조제4항, 제41조, 제43조, 제68조

라. 「행형법시행령」 제46조

마.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제1항, 제22조제2항제1호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경찰서가 제출한 피진정인 ○○○ 및 관련 수사 담당자의 진술서·수사기록, 참고인 중 접견신청 변호사인 ○○○의 진술서 및 당시 피해를 면회했던 강 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지방법원 ○○지원의 제출자료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등은 2006. 4. 7. 16:00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에서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법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진정인 ○○○은 이들을 인계받아 호송하여 같은 날

18:30경 ○○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인치하였다. 같은 날 19:00경부터 진정인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자신의 소속 단체에 연락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연락을 받은 변호사 ○○○이 21:3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위 피의사건 수사담당자인 경사 ○○○에게 접견신청서와 변호사 신분증을 제출하는 통상의 절차를 밟아 접견을 신청하였다.

위 변호사가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위 피진정인에게 접견의 편의상 진정인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접견을 요청하자 위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접견 전 수사중지를 주장하는 위 변호사와 변호사 선임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위 피진정인의 말다툼 끝에 우선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변호인실에서 약 20여분 간 접견을 실시한 뒤에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접견을 하려 하였으나, 이 사이 위 피진정인이 ○○○지방검찰청 당직검사 등에게 전화자문을 받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변호인의 접견신청만으로는 더 이상 접견이 불가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접견을 모두 불허하였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21:30경 접견을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진정인등은 위 피진정인에 의한 변호인 접견불허를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며 위 조사실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5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으며, 같은 날 23:10경 변호사 ○○○가 진정의 유치장 담당자에게 접견신청을 하여 진정인을 유치장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하였다. 그 다음날인 4. 8. 11:44경에는 변호사 ○○○이 진정인등을, 그리고 13:30경에는 변호사 ○○○가 위 같은 자들을 접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조제1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대법원 1991. 3. 28. 결정, 91모24/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이러한 권리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참고로, 변호사들의 법인단체인 「○○변호사협회」에 의하면, 변호인들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 접견절차로서 자신의 신분과 해당 접견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임의의 접견신청서에 의하여 변호인선임에 앞서 일선 수사기관에 접견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 ○○○이 진정인등을 위한 변호인이 되고자 하려는 의사를 접견신청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면, 비록 변호인 선임계약을 진정인 등과 체결하기 전이라도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접견교통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이 변호사 ○○○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접견신청을 받았고, 또한 진정인등이 변호인 접견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임의의 판단에 따라 위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0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진정인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6. 4. 8. 08:15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 출감할 때, 자신이 도주 및 자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진정인 ○○○과 ○○○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형법」 제14조제4항 및 「행형법시행령」 제46조에는 교도관이 호송중인 수용자에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제68조에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의 경우 미결수용실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은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과 ○○○이 진정인의 유치장 조사 출감시 계구사용을 시도한 행위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사 출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최초 입감 시 영치한 자신의 담배와 라이터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진정인 ○○○과 ○○○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형법」 제41조, 제43조 및 제68조에는 수용자의 휴대 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하고, 이러한 영지물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되돌려주도록 되어있고, 이를 미결수용실에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물건 즉, 성냥,ライター, 담배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에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유치기간 중 보관하도록 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의 후단 단서조항에는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가족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조사 출감시키면서 진정인의 담배 등 영지물품을 진정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책임을 물어 그 상급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경찰청에게 동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4 2007. 3. 19자 06직인9, 04진인3432, 05진인1236, 05진인1262, 05진인1339, 05진인1380, 05진인2009, 05진인2042, 06진인318 병합 결정 [벌금형 집행 등을 통한 인권침해]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에게 형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지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미납 대체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 [1] 체포·구인 시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제반 권리고지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족에게도 체포·구인 및 유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인으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 [2] 노역유치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벌금미납자 체포 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노역장유치를 감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노역수형자 처우 관련 법령정비 필요, 현행의 노역장유치 제도의 대안 마련 필요, 벌금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자유형의 선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92조

[진 정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진정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 [주 문]** 1. 진정요지 8.항은 각하한다.
- 2.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약식명령청구통지서, 약식명령서 정본, 납부고지서 및 납부독촉서 송부시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입력장치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 3.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벌금미납자 체포·구인시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제반 권리고지절차를 이행하고, 가족에게 체포·구인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동인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검찰총장에게

가. 벌금형 집행에 있어서 벌금형의 기본취지와 벌금미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벌금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집행 보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선행하도록 권고하고,

나.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전 건강검진 등 노역장 유치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5. 법무부장관에게

가.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벌금형의 연납·분납제도, 노역장유치집행 면제제도 등 대안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의 활용을 통한 벌금미납 대체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나. 노역장유치자의 일반 처우부분(전화사용, 접견 등)에 대해 현행 노역수형자관리지침을 보완하여 처우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6. 진정요지 4의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7. 28.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과정에 “벌금미납 수배자”라는 이유로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된 자로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명수배·체포되어 구금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04진인3432 사건).

나. 진정인은 2005. 3. 30. 23:00경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유치되었는데, 진정인은 검찰에서 벌금납부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체포하여 놓고 벌금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05진인1236 사건).

- 다. 진정인은 2005. 3. 22.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되었는데, 검찰에서 1번의 벌과금납부명령서만 보내고 지명수배하고 체포하였는데 이의 시정을 바란다(05진인1262 사건).
- 라. 1) 검찰에서 벌금, 과료 등 재산형을 집행하는 경우 먼저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여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미납자가 무자력이 밝혀진 경우 노역장유치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납부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지명수배를 하고 구인을 하는 것은 중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
- 2) ○○지방검찰청에서 경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집 때문에 또는 직장의 출입문에 경고문을 공개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다(05진인1339 사건).
- 마. 진정인은 2005. 4. 9. 벌금고지서를 송달 받았는데 납부기한은 같은 달 13. 까지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정인은 2005. 4. 2. 진정인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은 2005. 4. 14.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벌금납부 기한이 되기도 전에 미리 지명수배를 하는 것과 체포되어 검찰에서 벌금납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05진인1380 사건).
- 바. 진정인은 2005. 6. 25. 20:00경 집에서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다가 벌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경찰관들에 연행되었는바, 벌금에 대한 어떤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명수배 되어 별도의 대책 없이 연행되어 노역장유치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05진인2009 사건).
- 사. 진정인은 2005. 6. 30. 운전면허필기시험을 본 후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사전에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체포되는 것이 부당하며 관련 제도개선이 되기를 원한다(05진인2042 사건).
- 아. 피해자는 2006. 2. 3. 08:30경 길에 쓰러져 112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벌금미납자라는 이유로 서울○○지검에 인계되어 호송출장소

에 인치되었다가 호송되었는데 피진정인들의 관리 소홀로 체포시부터 아무런 응급의료조치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등 노역장유치과정에서 사망하였다(06진인318 사건).

2. 피진정인 주장

가. 대검찰청

- (1) 벌과금 납부관련 통지는 약식명령청구통지, 가납벌과금 납부고지 및 독촉, 벌과금 납부고지 및 독촉 등 총 5회에 걸쳐 벌금납부절차에 대하여 안내, 통지하고 있다.
- (2) 일부 미납자들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벌금납부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며, 다만 피고인이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에서 공시송달한 경우나 검찰에서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 송달시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거지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납부통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 (3) 재산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추징금,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포함하여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 노역장유치집행을 할 수 있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492조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4)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등의 규정을 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유치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집행을 위한 다른 제한조건은 없는 것이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력유무에 관계없이 노역장유치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형집행 행위로 인권침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49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금의 경우도 다른 재산형과 동일하게 무조건 민사집행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면 민사집행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인력 및 시간(벌금형 시효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3

년)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결국 벌금형은 집행하지 말라는 결론에 밖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5) 다만, 검찰에서는 벌금형 집행도 인권제한적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자에 대하여도 곧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납부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최후적, 보충적으로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6) 참고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2003년 14,772건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9,443건 77여억 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에는 14,416건 집행 착수하여 9,353건 60여억 원 집행, 2005.5.30.까지 3,460건 집행 착수하여 2,483건 16여억 원을 집행하였다.
- (7) ○○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업무경감과 벌과금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집행장 발부 고지서(경고문) 고지방법'에 대한 내부시행안을 마련하여 관한 사법경찰관에게 공문을 통해 전파하였다.
- (8) 위 고지서의 고지방법은 담당 경찰관이 형집행장에 첨부된 고지서(경고문) 여백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후 미납자 및 그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주머니 등에 남겨두게 되는데, 고지서 유의사항으로 위 고지서(경고문)를 타인이 함부로 알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고지서(경고문)를 본인이나 가족 외에는 타인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봉투에 넣어 남겨두거나 미납자의 방실이나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넣어 두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남겨 두도록 고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고, 불특정 일반 다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미납자의 자택이나 직장 출입문에 위 경고문을 붙이도록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나. 법무부

- (1) 노역유치자는 벌금납부 능력이 없어 수용된 사람이 대부분으로 노숙생활 등으로 위생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의식도 부족하여 시설 내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드물어 노역유치자 수용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2) 입소시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거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119구급차로 인계하여 입소하자마자 외부병원에 이송하는 등으로 교정시설에서 벌금액수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
- (3) 노역장 유치 중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사망할 경우 유족 등에 의한 사인에 대한 의문제기나 사체인수 거부, 국가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3. 관련법령

4. 인정사실

가. 04진인3432 사건(진정인 ○○○)

- 1) 진정인에 대한 2004. 4. 28.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문은 진정인의 직장주소인 「서울 서초구 ○○동 327-7 ○○빌딩 ○○1호」로 발송되었고 수령된 장소는 「서울 서초구 ○○동 287-4 ○○B/D」로 되어있다.
- 2) 대검찰청에서 벌과금조정서 기록상 정식 ‘주소보정서’가 없었고 진정인의 법원에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직장주소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주소변동이 빈번하여 주민조회상의 주소인 ‘경기 ○○시 ○○구 ○○동 577-1 ○○아파트 다동 ○○호’로 조정하였다.
- 3) ○○지방검찰청에서는 2004. 6. 22. 위 주소로 벌과금납부명령서를, 2004. 7. 12.과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였고, 2004. 7. 1. 형집행장을 발부하였으며, 2004. 7. 19. 지명수배를 하였다.
- 4) 검찰에서 납부명령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우편발송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 없음)하고 있어 수령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본 사건과 같이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원심청으로 반환되므로 촉탁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는 징수금 전산상의 주소 이외 주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5) 검찰에서 진정인에 대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나. 05진인1236 사건(진정인 ○○○)

- 1) 진정인은 2004. 11. 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지방법검찰청에 송치되어, 같은 해 11. 29.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되었으며, 서울○○지방법검찰청에서는 2005. 1. 17. 진정인의 주소지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다.
- 2) 서울○○지방법검찰청에서는 2005. 2. 12. 서울○○지법에서 약식명령이 선고·확정되어, 2005. 3. 3. 서울 ○○○구 ○○○동 237-7로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다.
- 3) 서울○○검찰청에서는 진정인에게 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는 발부하지 않았고 또한 형집행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 3. 24. 진정인을 지명수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 4) 진정인은 2005. 3.30. ○○○경찰서 소속 성명미상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동 경찰서유치장에 인치되었다가 다음 날 ○○○지검에 벌금을 납부하고 귀가하였다.
- 5) 검찰에서 진정인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다. 05진인1262 사건(진정인 ○○○)

- 1) 서울○○지방법검찰청에서는 진정인에게 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는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 3. 3. 진정인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으며, 형집행장은 같은 해 3. 14.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다.
- 2) 진정인은 2005. 3. 22. ○○○경찰서 소속 성명미상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같은 달 서울○○지검에서 ○○○구치소로 노역장유치 집행 되었으며, 같은 해 8. 23. 벌금을 완납하여 출소하였다.
- 3) 검찰에서 진정인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라. 05진인1380 사건(진정인 ○○○)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1) 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4. 11. 19. 항소심인 ○○지방법원에서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11. 27.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
- 2) 2005. 3. 30. ○○지방검찰청에서 벌금을 ○○지청에 촉탁하여, ○○지청에서는 벌금 납부 기간으로부터 약 3개월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2005. 4. 4. 벌과금납부명령고지서를 발부하였다.
- 3) 진정인은 벌금고지서를 2000. 4. 6.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같은 달 9일 송달 받았으며 납부기간 같은 달 13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 4) ○○지청에서는 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는 발부하지 않고 2005. 4. 12. 형집행장을 발부하였으며, 2005. 4. 6. 진정인에 대해 지명수배를 하였다.
- 5) 진정인은 2005. 4. 14. ○○경찰서 소속 성명미상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청으로 인치된 후, 검찰청 직원에 의해 ○○교도소에 노역장유치를 되었다가 벌금을 완납하고 석방되었다.
- 6) 검찰에서 진정인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마. 05진인2009 사건(진정인 ○○○)

- 1) 진정인은 2005. 2.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받고, 같은 해 3. 22. 진정인의 처 ○○○이 ○○지방법원에서 송달한 약식명령을 우편송달 받았다.
- 2) ○○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6. 4. 진정인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벌과금납부명령서를 각 1회 송부하였고 벌과금납부독촉서는 보내지 않았다.
- 3) ○○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6. 20. 진정인을 지명수배한 후, 같은 해 6. 21.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다.
- 4) 진정인은 2005. 6. 25. 순찰근무 중이던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등에게 지명수배사실이 확인되어 진정인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 5) 진정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에는 가족에게 통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6) ○○지방검찰청에서는 노역장유치집행 이후 가족에 대한 서면통지는 집행과 유치업무 담당직원이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토요일 저녁에 검거되어 일요일에 석방되었으므로 업무처리일인 월요일에는 서면통지의 필요성이 없어서 서면통지는 하지 않았다.
- 7) 검찰에서 진정인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바. 05진인2042 사건(진정인 ○○○)

- 1) 진정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2005. 3. 25.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2) ○○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5. 11.과 같은 달 19. 벌과금납부명령서를, 2005. 6. 15. 형집행장을 발부하였고, 같은 해 6. 17.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였으며 노역장유치를 위한 지명수배는 형집행장 발부와 동시에 하였다.
- 3) 진정인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했고, 벌과금납부명령서도 송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 6. 30.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도중 체포되어 같은 해 8. 12. ○○구치소에서 벌금완납 출소하였다.
- 4) 검찰에서 진정인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사. 06진인318 사건(진정인 ○○○)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 검사에게 사건 배당되어 수사 중에 있다.

아. 06직인9 사건

- 1) 다음 <표1>은 대검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벌금형 집행실태를 나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낸 것인데 최근 3년 실조정액 대비 노역장유치 집행으로 인한 벌금 완납 비율은 4.2%에 불과하다.

〈표 1〉 년도별 벌과금 집행현황

(단위 : 억원)

년도	조정	촉탁	실조정	처분계액					집행 정지	유치 집행중	순미제
				계	현금 납입	유치 집행	공제	불능 결정			
2003	50,051	12,643	37,408	16,379	12,845	972	762	1,800	1,135	2,982	16,912
2004	51,227	10,563	40,664	16,914	14,421	814	773	906	1,017	4,811	17,922
2005	510,074	237,753	272,321	16,152	13,634	640	842	1,036	1,012	4,824	250,333
2006.5	266,164	2,577	263,587	7,145	5,214	1,283	332	316	200	3,793	252,449

- ※ 1. 조정액은 전체조정액을 말하고, 조정액에서 촉탁 후 이종으로 조정된 액수 등을 제외한 것이 실조정 액수임
- 2. 2005년도에 조정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주)대우 관련사건 추징금 23조358억원이 선고, 확정되었기 때문임

2) 최근 3년간 형집행장 발부 및 집행현황은 표2와 같다.

〈표 2〉 형집행장 발부 및 집행현황

연도	발부	집행		미집행	비고
		수배전	수배후		
2003	165,262	해당없음	40,230	125,032	
2004	178,679	“	43,443	135,236	
2005	178,070	“	40,696	137,374	
2006. 5	75,023	“	19,771	55,252	

3) 최근 3년간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벌과금납부독촉서 발부현황은 표3과 같다.

〈표 3〉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벌과금납부독촉서 발부현황

연도	벌과금납부명령서 발부	벌과금납부독촉서 발부				
		계	1차	2차	3차	3차이상
2003	501,142	556,119	275,495	132,232	80,992	92,402
2004	504,857	558,914	294,976	142,891	96,750	66,797
2005	474,111	530,871	270,775	136,995	82,684	77,087
2006.5.	180,211	280,731	159,963	64,532	41,098	15,158

4) 최근 3년간 벌금미납자 수배 및 검거 현황은 표4와 같다.

〈표 4〉 벌금미납자 수배 및 검거 현황

연도	수배	검거	비고
2003	211,373	40,679	
2004	215,136	44,581	
2005	212,824	41,220	
2006.5.	88,293	19,235	

5) 최근 10년간의 유치집행현황은 표5와 같다.

〈표 5〉 최근 10년(1997~2006년)간 유치집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실조정		환형 유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7년	946,811	1,033,592	8,066 (0.9)	68,765 (6.7)
1998년	1,111,135	1,239,840	15,139 (1.4)	94,608 (7.6)
1999년	1,257,238	1,372,949	16,937 (1.3)	145,726 (10.6)
2000년	1,301,070	1,608,679	24,101 (1.9)	186,887 (11.6)
2001년	1,324,580	1,676,346	23,133 (1.7)	190,529 (11.4)
2002년	1,438,151	1,886,491	19,717 (1.4)	193,651 (10.3)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003년	1,364,660	2,287,619	21,104 (1.5)	395,330 (17.3)
2004년	1,482,291	2,466,016	28,193 (1.9)	562,395 (22.8)
2005년	1,440,365	2,600,604	32,643 (2.3)	546,324 (21.0)
2006년	1,282,713	2,558,541	34,019 (2.7)	545,291 (21.3)

6) 최근 5년간 구금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대비 노역장유치자 비율은 표6과 같다.

〈표 6〉 구금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연도	수용정원	1일평균 수용인원(A)	미결구금자	수형자	노역장유치자 (B)	노역수비율 (B/A)
2001	59,130	62,235	23,763	37,036	1,436	2.3
2002	58,440	61,084	22,911	37,111	1,062	1.7
2003	44,350	58,945	21,253	36,458	1,234	2.1
2004	46,150	57,184	20,638	34,609	1,937	3.4
2005	46,090	52,403	17,293	32,933	2,177	4.2
2006. 1~5	47,390	46,250	13,391	30,807	2,052	4.4

7) 최근 5년간 노역수형자의 출소사유별 현황은 표7과 같다.

〈표 7〉 노역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연도	계(A)	노역종료(B)	벌금완납(C)	사망(※)	노역집행정지	비고
2001	22,440	8,374(37.3%)	14,021(62.5%)	1	44	
2002	18,741	6,234(33.3%)	12,459(66.5%)	2	46	
2003	23,321	9,634(41.3%)	13,622(58.4%)	4	61	
2004	30,816	11,098(36.0%)	19,670(63.8%)	0	48	
2005	33,298	14,716(44.2%)	18,540(55.7%)	2	40	
2006. 1~5	-	6,481	6,430	2	-	

8) 최근 5년간 노역수형자 외부병원 이송진료 현황은 표8과 같다.

〈표 8〉 노역수형자 외부병원 이송진료 현황

(단위 : 명, 원)

년도	구분	이송진료 인원	이송진료 횟수	치료비용(입원비 포함)		벌금금액	비 고 (노역총입소인원)
				자 비	관 비		
2001		172	269	3,070,970	40,081,207	10,311,905,150	22,042
2002		168	232	4,891,792	43,441,317	75,417,407,011	35,223
2003		215	255	3,799,242	50,791,508	1,437,282,351	27,006
2004		278	363	6,609,108	61,041,960	3,460,425,446	38,667
2005		343	453	2,944,380	111,380,672	2,501,923,424	40,386
2006.5		150	221	1,677,230	21,981,942	3,955,280,821	16,462

9) 최근 5년간 노역수형자 외부병원 입원치료 현황은 표9와 같다.

〈표 9〉 노역수형자 외부병원 입원치료 현황

(단위 : 명, 원)

년도	구분	입원인원	입원기간	입원치료비		벌금금액	비 고
				자 비	관 비		
2001		39	89	1,630,172	22,078,940	199,767,000	
2002		32	134	1,897,830	30,772,270	68,530,097	
2003		35	114	1,602,730	31,527,640	56,570,495	
2004		38	114	2,099,440	44,054,932	86,600,000	
2005		46	287	6,566,790	71,914,235	107,299,206	
2006. 5.		21	70	697,850	15,380,992	68,030,000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10) 노역수형자 노역집행정지 건의 및 출소인원 현황은 표10과 같다.

〈표 10〉 노역수형자 노역집행정지 건의 및 출소인원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년도	인원	노역집행정지		노역집행정지 출소자 재소기간			출소자 벌금총액	출소자 치료비용	비고
		건의	출소	3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상			
2001	51	51	42	19	6	17	97,810,000	14,463,400	
2002	56	56	46	9	11	26	92,810,000	25,141,597	
2003	69	69	62	19	13	30	146,860,000	31,854,713	
2004	51	51	48	17	7	24	145,770,000	46,233,783	
2005	47	47	40	13	12	15	80,590,000	35,546,094	

- 11) 2006. 4. 19. 현재 전국적으로 2,192명의 노역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노역수형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8개 교정시설의 수형자 424명을 조사하고, 설문을 분석한바, 약식명령의 통지에 대한 설문에서 약식명령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가 43%가량이고, 약식명령 결정등본을 받은 경우가 31%로 나타났다.
- 12)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경우가 40%, 벌과금 납부독촉서는 36.5%, 납부독촉 전화의 경우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가 71.9%로 나타났다.
- 13) 벌과금 미납이 소재불명에 따른 연락두절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된 주소를 신고한 경우가 6.1%에 불과하고, 주소변경에 대한 통지가 13.6%에 불과하였다.
- 14) 체포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체포시 형집행장을 제시하였다는 응답이 22.9%이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경우가 40.8%이고, 체포시 권리를 고지해준 경우가 27.3%이고,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준 경우가 28%로 나타났다.
- 15) 경찰관에 의한 체포가 대부분이었고, 체포 장소는 노상이 가장 많았고, 체

포된 시간은 심야10시에서 새벽4시까지가 가장 많았고, 체포된 이후 구금된 장소로는 경찰서 유치장이 63.1%로 가장 많았다.

- 16)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병이 있거나, 심각하게 나쁜 경우가 40% 정도이고, 입소전 43.1%가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13.7%가 치료는 없었으나 의사와 건강상의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 조사대상자의 벌금액으로는 101~200만원이 25.1%로 가장 많고, 노역수의 2/3 가량인 67.8%가 300만원 미만의 소액벌과금 미납자로서 노역유치 기간은 1개월 이내가 28.4%, 3개월 이내가 80%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전체 조사대상 노역수형자의 평균 노역기간은 71.9일로 나타났다.
- 18) 향후 수용전망에 대하여는 형기종료까지 수용될 것으로 예상한 경우가 70.4%로 대부분 벌금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 19) 수용생활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출소후의 생활이 걱정이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고, 노역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노역에 종사하여야 하나 미취업비율이 88.7%에 이르렀으며,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의 내용은 출소이후의 정착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는 관계없는 종이가방 접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20) 미취업자가 대부분이나 취업희망은 아주 높아, 적성에 맞는 직종이면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35.4%, 아무 직종이나 무조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18%로 상당수의 노역수가 취업을 원하고 있었다.
- 21) 노역수형의 대체 방법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하여 노역수로 환형 유치되는 것보다 사회봉사를 택하겠다는 비율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 22) 현행 노역수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노역수에 대한 가석방 실시가 24.9%로 가장 높았고, 노역수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가 17.6%, 노역수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17.2%,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13.1%, 과밀수용 해소가 12.1%, 노역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23) 자유의견으로 노역수형자들 대부분이 벌과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벌과금 총액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일부납부등)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5. 판단

가. 각하 부분

- 1) 06진인318 사건(진정인 ○○○, 피해자 ○○○)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 2) 다만,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제도·관행적인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하 06직인9 직권조사 사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나.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 1) 진정인 ○○○, ○○○, ○○○, ○○○, ○○○, ○○○은 검찰에서 위 진정인들에게 벌금납부에 대한 통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수배, 형집행장 발부를 통해 체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진정인 장신중은 검찰에서 벌금형을 집행함에 있어 먼저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집행장 발부를 통해 노역장유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이에 대하여 실제로 검찰에서는 벌과금납부 통지서 등 벌금미납자에 대한 통지서를 일반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관계로 통지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위 진정인들의 주장대로 검찰에서 보내는 벌금납부에 관련된 통지서가 위 진정인들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들을 상대로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 발부 전에 강제집행의 방법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
- 3) 따라서 검찰에서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 통지 등을 제대로 이행하

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선행하지 않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위 진정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가 위 진정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벌과금 납부관련 통지는 약식명령청구통지, 가납벌과금 납부고지 및 독촉, 벌과금 납부고지 및 독촉 등 총 5회에 걸쳐 벌금납부 절차에 대하여 안내, 통지하고 있고, 재산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추징금,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포함하여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 노역장유치집행을 할 수 있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492조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등의 규정을 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유치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집행을 위한 다른 제한조건은 없는 것이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력유무에 관계없이 노역장유치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형집행 행위로 인권침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먼저 송달문제와 관련하여,

가) 법원의 약식명령서 정본 송달시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가 37% 정도이고, 설문조사에서도 30~40%의 노역장유치자들이 약식명령청구통지나 약식명령 결정등본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상당수의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벌금미납자들이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나) 특히 이러한 문제는 공시송달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되어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하면서 위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송달을 종전주거지에 함으로써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등본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법원이 송달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해지는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도524결정, 2044도372결정).

라) 검찰에서 벌과금납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에 의존하므로 실제로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따라서 송달을 받지 못한 채 형집행장에 의해 체포되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신체구금을 당할 정도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마련 미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477조와 제492조의 관계는 ‘일반규정 대 특별규정’의 관계가 아니며, 각각 재산형의 집행규정과 환형처분의 집행규정일 뿐이며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단지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즉 벌금형의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나) 따라서 벌금미납 시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체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12조에 보장된 위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의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비례성원칙에 따를 때,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가운데 강력한 제재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한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7) 진정인 ○○○, ○○○, ○○○ 등은 검찰에서 형집행장발부 전에 벌금미납 사실만으로 지명수배를 하였는데, 위 지명수배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가) 지명수배는 수배자를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구속영장의 발부, 긴급체포 대상자 등 수배자를 체포·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발령하는 것이고, 노역장유치집행의 경우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형소법 제429조) 구인이 가능하고(형소법 제473조, 제474조) 따라서 지명수배 발령이 가능하나, 벌금형 집행의 경우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며 수형자를 체포·구속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결국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과금징수절차상 재산조사 결과 무자력임이 밝혀져 노역장 유치집행을 할 경우에 비로소 형집행장에 기하여 지명수배를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벌금미납자에 대해 벌금수배자란 표현으로 지명수배를 발령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8) 이와 함께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체포·구인시 형집행장을 제시한 경우가 22.9%에 불과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경우 경우가 40.8%, 체포시 권리를 고지해준 경우가 27.3%,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준 경우가 28%에 불과하다는 응답을 보더라도 체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체포·구인시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제반 권리고지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족에게도 체포·구인 및 유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인으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노역장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1) 06진인9 사건의 조사결과 노역집행정지건수 중 입소 후 3일 이내가 29%, 3~7일이 18%로 입소 후 7일 이내에 노역집행정지로 나가는 경우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2005년 외부병원 입원자가 46명에 입원기간이 287일에 이르고, 사망자도 다수 발생(이는 06진인318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하는 등 노역을 감내하기 힘든 사람까지 노역장유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노역유치를 하여 생명 또는 건강을 해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벌금미납자 체포 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노역장유치를 감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노역수형자 처우 관련 법령정비 필요

환형유치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우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행형관계법령에 노역수형자 분류 및 처우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3) 노역장유치 제도의 대안 마련 필요

가) 재산형은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에 비하여 비교적 경한 제재이다. 특히 자유형의 폐해, 즉 구금에 따르는 낙인효과와 범죄감염을 회피할 수 있으며 사회와 단절됨이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을 사회복귀로 이해할 때 재산형이 가장 유효한 형벌방법이 되는 것이다.

나) 이러한 재산형의 뚜렷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부과가 납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로 귀결되어 다시 자유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 이에 노역장 유치의 대안으로 현행 법제상 인정되고 있는 벌금형 선고유예 제도(형법 제59조)의 활성화를 통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및 각국에서 운영 중에 있는 벌금분납제도의 도입,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의 신설, 노역장 유치집행면제제도의 도입 등이 제기되고 있다.

라) 따라서 벌금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자유형의 선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라. 기각 부분

05진인1339 사건(진정인 000) 중 00지방검찰청에서 경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집 대문에 또는 직장의 출입문에 경고문을 공개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벌금미납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진정인 00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8.항은 부적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4의 나.항은 진정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며, 그 외 진정요지에 관해서는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바 벌금형 집행과정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 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별지 1

진정인 목록

1. ○○○(04진인3432 사건)
2. ○○○(05진인1236 사건)
3. ○○○(05진인1262 사건)
4. ○○○(05진인1339 사건)
5. ○○○(05진인1380 사건)
6. ○○○(05진인2009 사건)
7. ○○○(05진인2042 사건)
8. ○○○(06진인318 사건)

별지 2

피조사기관 및 피진정인 목록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3. ○○지방검찰청 검사장
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5. ○○지방검찰청 ○○지청장
6. ○○지방검찰청 검사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3. 시설 및 처우

1 2007.2.21자 06진인2076 결정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정복경찰관의 경우, 이미 구두 상으로 자신의 소속과 성명, 그리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혔으므로, 신분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체복이 신분증입니다” 라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경사)외 1명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9. 14. 대구시 소재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이 다가와 난데없이 신분증을 보자고하여, 이에 진정인이 “검문을 하려면 당신들 신분부터 밝혀라”고 요구하자 피진정인들이 “체복이 곧 신분증이다”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2

- 1) 피진정인들은 2006. 9. 14. 09:00~11:00사이 ○○경찰서 ○○지구대 112순찰차 근무 중, 기소중지자 일체 검문검거기간(2006. 9. 11~10.31)을 맞아 대구시 ○구 ○○동 소재 ○○공원 내 벤치에서 의복이 남루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거동이 수상해 보이는 진정인을 검문하였다.
- 2) 당시 진정인에게 다가가 피진정인2가 “감사합니다, ○○지구대 경사 ○○○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이어 “기소중지자 일체 검거기간 중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잠시 검문검색을 하겠습니다”라고 검문이유를 고지하고, 진정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수배조회를 마치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검문하고자 할 때, 진정인이 “경찰관은 신분증 안보여 줘니까?”라고 하기에 피진정인들이 “제복(경찰복)이 신분증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및 ○○지구대 근무일지 등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가. 진정인은 2006. 9. 14. 09:00-11:00사이 대구시 소재 ○○공원 내 벤치에서 피진정인이 자신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검문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난데없이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검문 당시 구두 상으로 자신들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검문의 사유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그러나 불심검문이 끝날 무렵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 제12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에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심검문을 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경찰관의 불심검문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 제시를 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고,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다. 살피건대, 피진정인들은 정복경찰관의 경우, 이미 구두 상으로 자신의 소속과 성명, 그리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혔으므로, 신분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제복이 신분증입니다”라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경찰관의 신분증제시의무를,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지 아니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받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2 2008. 7. 24자 08진인2669결정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경)]

피해자가 영창에서 복귀하기 전날 “외출 및 인터넷 복무규율 위반 시 제재 방법”을 새로이 결정하고 피해자가 영창집행을 마친 당일 공적제재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새로운 제재방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공적제재를 결정한 조치는 상급청의 기본 운영지침을 벗어난 행위로서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전경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과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부당한 공적제재에 대하여, 피해자가 15일간의 영창처분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상에 전의경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피해자 행동에 대해 사전에 규정된 공적제재 유형이 아닌 별도 유형으로 2개월간의 면회제한, 인터넷 금지, 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자의적 조치로 판단됨
- [2] 타 부대 전출조치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임병들로 부터 2차례 구타를 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고소·보복 및 따돌림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한 제2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 경찰청 지침에도 이런 경우 타 부대로의 인사 발령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부대 전출조치가 바람직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1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37조 및 제38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1조, 제42조, 제93조, 제94조, 제194조

【진 정 인】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공동대표 ○○○,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지방경찰청장
- 2. ○○지방경찰청 제○○○전경대장

【주 문】 1. ○○지방경찰청 제○○○전경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이용금지 및 외출외박 금지를 중지 할 것

나.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2. ○○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를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피진정인 2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도중 전투경찰 역할에 대한 회의로 2008. 6. 12.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고 인터넷에 관련 글을 게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2008. 6. 17.부터 위 부대로부터 인터넷·전화사용 금지와 면회제한 및 생활실과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행동의 제약 등을 당해왔으며, 2008. 6. 24.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하여 15일간 영창에 구금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부대에 복귀한 이후인 2008. 7. 8. 과 2008. 7. 12. 선임병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구타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에 처하겠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08. 7. 9.부터 2개월간의 면회제한, 인터넷 이용금지 및 외출외박 금지의 공적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7. 12.부터 징계와 공적제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하다가 2008. 7. 16. 병원으로 후송된 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립된 상황에 처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공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타 부대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현재 형사고발사건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받고 있다. 많은 부대원들로부터 왕따 및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위 부대 측에서는 이를 방조하여 왔다. 부당한 징계 및 공적제재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복무가 힘든 실정이나, 육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 준다면 사명감 있게 근무할 계획이다.

다. 피진정인 2(제○○○전경대장 ○○○, ○○)

- 1) 그동안 피해자는 진료를 이유로 한 근무열외나 병가 등 불성실한 복무생활을 해왔고, 정치·사회적 문제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왔다. 영창집행은 초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시명령에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것은 피해자의 구타유발에 따른 것으로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영창 등을 집행하였다. 많은 대원들이 자술서를 통해 피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지적하였기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 2) 2개월간 면회제한·인터넷 이용금지 및 외출외박 금지는 인터넷상에 난상토론을 제기하고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공적제재에서 공정하게 결정한 것이며, 피해자가 불성실한 생활로 대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대부분의 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다.
- 3) 부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피해자의 타 부대 진출문제는 상급청에 건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진정인 2의 진술서 및 전화보고서, 관계 기관들의 전화보고서 및 보도자료, 피진정인 2가 제출한 징계서류 등 관련자료, 경찰청의 전의경 제도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1) 피해자는 민주노동당 대의원 및 ○○닷컴 ○○회 활동을 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 2007. 2. 5. 육군으로 입대하여, 같은 해 3. 20. 전경으로 복무전환되어 2007. 4. 12. 현 부대에 배치되었으며, 2009. 1. 15. 전역예정이다. 피해자는 촛불집회 등 시위진압에 동원되지는 않았다.
- 2) 피해자는 2008. 6. 12.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환복무 해제 등 3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조사 중에 있고, 같은 해 6. 21. 피해자가 소속 소대원을 ○○했다는 혐의에 관한 피진정인 2 명의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되어 경찰 수사 중에 있다.
- 3) 피해자는 2008. 1. 26., 27. 초소근무 중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와 같은 해 6. 18. 공판근무 지정명령을 거부하고 단식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24.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같은 달 26. ○○지방경찰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4) 피해자는 영창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2008. 7. 8. 21:50경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머리 등을 6~8회 구타 당하였고, 다른 선임병에게도 같은 달 8.과 12. 두 차례 정강이 등을 가격 당하였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영창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도 구타유발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4. 1박2일의 공적제재 프로그램이 처분되었다.

나. 공적제재 부분에 관하여

- 1) 「전투경찰대설치법」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경찰청의 전경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에 따라 피진정인 1 및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장은 각 부대에 '공적제재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시달하였다. 그 내용은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복무기강 문란, 근무태만 행위 등에 대하여 부대별로 '공적제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단발·우발적 복무 위반자는 공적제재 유형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단기간(1일내)에 실시하고, 상습 복무위반자는 공적제재 운영 프로그램(2박3일)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공적제재 유형으로는 참선·반성문 작성·제식훈련·구보·PT제조·사회봉사 및 환경정리를 하도록 하되 이는 공적제재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위 지침에 따라 2008. 4. 16. 피진정인 2는 내부 방침을 정하여 제재종류를 외출정지·식기사역·중대사역으로 하는 내부지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 7.에는 대원참여고충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출 및 인터넷 통한 복무규율을 위반 시 처리방법’을 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유치장에서 복귀한 당일인 같은 달 8. 공적제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2008. 6. 16. 인터넷 상에 길거리 토론을 제안하고 경찰 되고송을 게시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9.부터 9. 8.까지 2개월간 면회제한(가족 및 변호인 제외)·인터넷 이용 중지 및 외출외박 제한을 공적제재로 결정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전경 2명과 1명의 경찰관이 24시간 통제 보호활동을 하고 있어 외부접견 및 통신 등이 제한된 상태이다.

다. 타 부대 전출에 관하여

- 1) 경찰청 ‘2008년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중 구타·가혹행위 근절지침에 의하면, 구타·가혹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간주하여 가해자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자는 따돌림·보복위해 대상자가 되지 않게 특별보호 대상으로 선정·관리하도록 하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타 부대 전출 등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토록 하고 있다.
-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 7. 18. 피해자 소속 소대원 37명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대원들은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으며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소대 후임병 역시 “피해자는 대부분의 대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고 대부분 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 2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의 대원들과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80 ~ 90%의 전경대원 및 직원으로부터 왕따 등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공적제재의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급 경찰청에서 시달된 지침은 공적제재의 구체적 방법과 종류를 유형화시켜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부대 측에서도 스스로 공적제재 과정 및 방법을 유형화하여 부대 방침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영창에서 복귀하기 전날인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008. 7. 7. “외출 및 인터넷 복무규율 위반 시 제재 방법”을 새로이 결정하고 피해자가 영창집행을 마친 당일인 같은 달 8. 공적제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새로운 제재방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공적 제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상급청의 기본 운영지침을 벗어난 행위로서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설사 피해자의 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되어 제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2의 주장대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94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공적제재는 가능한 기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공적제재는 상급청의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부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정한 적법절차원리 및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 정한 표현의 자유 및 제10조에 정한 행복추구권(일반적행동자유권) 등의 피해자에게 보장된 인권을 계속하여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소속하고 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긴급구제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금지 및 외출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타 부대 전출의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부대 소속의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성적소수자로서 자기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대원들로부터 ○○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감정과 감내하기 힘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따돌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료대원들 역시 피해자를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대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과 인내를 수인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 자신의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를 위한 뿐만 아니라 동료대원들의 복무환경을 위해서도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전경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경찰청에서 시달한 2008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중 구타·가혹행위 근절지침에 따르면, 구타 피해자가 따돌림·보복위해 당사자가 되지 않게 특별관리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타 부대로의 전출 등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현재 부대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이며 아울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위 규칙과 위 지침을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차치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조사 및 소추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는 이상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위 지침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구제조치로서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를 조속히 다른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문경란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1 2007.7.20자 07진인187결정 [진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검)]

진정인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유치장에 입감시킨 후 검찰로 송치하면서, 피의자가 아픈 환자라면 담당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검찰에 송치시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 형사피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 사례

【결정 요지】

[1] 형사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이면 진료하는 담당의사의 동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퇴원시켜 유치장에 입감시켰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도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 및 제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형사과)

- 【주 문】 1. 진정인에게 보장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을 강제 퇴원시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6. 9. 14. 05:00경 진정인은 절도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마에 피가 흐르는 상태로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에게 “먼저

치료부터 하고 조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무시당한 채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11:00경 졸도하여 119구급대에 실려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 나. 외출, 외박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같은 달 15. 14:00경 병원 측 몰래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진정인을 법원에 데리고 갔으며, 같은 달 17. 22:00경 진정인을 강제 퇴원시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나 무리한 퇴원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고통을 호소하자 곧바로 성모병원 응급실에 재 입원시켰다.
- 다. 같은 달 18. 08:20경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강제 퇴원시켜 검찰로 송치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진정인은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하였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같은 달 19. 16:45경 의정부백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검진결과 뇌출혈, 뇌졸중의 진단을 받았다. 이는 피진정인이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강제 퇴원시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보장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2006. 9. 14. 06:00경 진정인을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접수하였을 때, 진정인은 우측 눈 위 부위가 부어오르고 피가 약간 난 상태였으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아 일단 휴지로 지혈을 시키고 조사를 빨리 끝내고 병원에 가자고 하였다.
- 2)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보호실에서 대기 중인 진정인이 같은 날 11:00경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를 불러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한 후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를 접수시켰고, 같은 달 15. 10:00경으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으나 진정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여 의정부지방방법원 영장계에 전화를 걸어 일정 연기를 요청하여 같은 날 14:00경으로 조정되었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3)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진정인은 “직접 판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불구속을 수사받기를 요청 하겠다”며 출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당시 ‘외출, 외박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팔과 손에 꽂힌 링거주사기를 뽑았으며, 피진정인은 링거병 및 받침대를 들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판사 정진호에게 심문을 받았고 같은 날 19:00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4) 이후 병원생활을 계속하다가 사건송치 전날인 같은 달 17.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몸이 괜찮으면 저녁에 유치장에 가서 잠만 자고 다음 날 담당검사를 찾아가 병원치료를 부탁하는 게 어떠냐?” 고 권유하자 진정인이 동의한 후 역시 스스로 팔과 손등에 꽂혀있는 주사기 등을 떼어내고 피진정인과 동행하여 같은 날 22:10경 유치장에 입감하였으나, 곧이어 진정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여 당직 팀에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으며, 사건송치를 위해 다음날인 18. 08:30경 진정인에게 동행여부를 문자 동의하여 호송근무자에게 인계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정부성모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 의정부백병원 주치의 답변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진정인은 2006. 9. 14. 06: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같은 날 11:00경 갑자기 쓰러져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 나. 같은 달 15. 담당주치의 박홍식은 “뇌 CT상 뇌좌상이 있어 앞으로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아야 할 상태로 병원 밖으로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고지 및 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진정인은 「치료사절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성모병원장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같은 날 19:00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다. 같은 달 17. 22:00경 피진정인이 의료진에게 상의도 없이 진정인을 퇴원시켜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나, 진정인이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여 당직상황실장의 지시로 진정인을 다시 의정부성모

병원에 재 입원 조치하였다.

- 라. 같은 달 18. 08: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건 송치하기 위하여 의료진에게 상의도 없이 진정인을 퇴원시키고, 같은 날 09:00경 의정부경찰서에서 호송 담당경찰관에게 인계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하였다.
- 라. 같은 달 19. 진정인은 계속된 머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의정부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안외골 골절, 안면부 좌상의 진단으로 같은 달 25.까지 입원하여 치료하였다.
- 마. 의정부성모병원입원 시 진정인의 의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월일	간호기록		경과 기록
	시간	내용	
9.15	08:30	법원에 가기 위해 퇴원 또는 외출 원함. 담당의사 연락했으나 안 된다고 함.	
	12:20	보호자(형님) 오셔서 담당의사에게 연락함	
	12:50	법원에 가서 직접 진술해야한다고 함. 외출 요구함. 담당의사 면담 원하여 연락함.	
	13:10	담당의사 응급실로 내려와 보호자에게 외출, 퇴원 안 된다고 소견서 발급함. 못가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여 원무팀에 연락함.	
	13:20	보호자 다시 와서 각서라도 쓰고 가겠다고 하여 담당의사에게 연락함. 혼자 결정 못한다고 기다리라고 함. 환자는 2시까지 법원에 가야한다고 말했으나 기다리라고 함.	
	13:50	경찰과 함께 환자 나감. 담당의사 빼빼침. 원무과 연락함.	
	17:00	환자 자리로 돌아옴. 경찰과 함께 자리에 있음.	
	21:00	환자 옆에 지키고 있던 경찰관 말하길 환자 현재 구속영장 발부되어 유치장으로 데려가려 한다며 라인 제거하라고 함. 담당의사 연락함.	
	21:05	담당의사 안된다고 함. 경찰관 가겠다고 하여 담당의사 경찰과 직접 통화 후 그냥 응급실에 있기로 함.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구분 월일	간호기록		경과기록
	시간	내 용	
9.17	21:30	환자 현재 자리에 없어 원무과 연락하니 21:30경 경찰서에서 데리고 갔다고 함.	- 경찰이 의료진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환자를 강제로 법적문제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됨(경찰에게 환자가 뇌좌상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한 상태임). - 환자 경찰과 함께 다시 병원에 돌아옴.
	22:00	담당의사에게 현재 상황설명하고 퇴원 처리함.	
9.18	00:40	환자 경찰서 간 직후부터 두통 계속되어 경찰과 같이 재차 입원함.	경찰이 다시 한번 의료진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환자를 강제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됨.
	01:00	담당의사에게 연락함.	
	04:00	경찰 지키고 있음.	
	08:20	담당의사 방문. 환자 없음. 방송함.	
	08:21	원무과에서 연락음. 검찰에서 영장 발부되어 소환해야 한다며 환자 스스로 링거제거하고 퇴실했다함.	
	08:25	담당의사 연락함. 퇴실처리하자고 함.	

4. 판 단

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진권) 침해여부

- 1)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구속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당한 피의자는 변호인·가족·친지 등과의 접견교통을 통해서 방어준비를 할 수 있으며 가족·친지 등과의 면담, 의류·식료품·의약품·서적 등 구금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 등에 의해서 구금상태 하에서나마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89조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접견·수진권을 보장하

고 있다.

- 2)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체포당시부터 이마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갑자기 쓰러져 의정부성모병원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 중, 담당의사가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아야 할 상태로 병원 밖으로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료소견에 진정인이 ‘치료사절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심문을 받은 것은 진정인의 의사(意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피진정인이 강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3)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후 같은 날 19:00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금 장소인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시켜야 하겠지만, 진정인이 계속 병원에서 가료 중이고 담당의사가 3주간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과 병원 밖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밝힌 이상 담당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정인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인치·구금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영장집행을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진정인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유치장에 입감시킨 후 검찰로 송치하기 위한 노력만이 엿보이고, 환자를 퇴원 시킬 때에는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의 동의를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퇴원시켜 유치장에 입감시켰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도 강제로 퇴원시켰다는 병원 측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 및 제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강제퇴원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제로 퇴원시킨 결과 뇌좌상이 뇌출혈, 뇌졸중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의정부성모병원 담당의사 박홍식에 의하면 “뇌좌상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뇌출혈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고, 뇌졸중이라고 진단을 내린 분의 소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고, 의정부 백병원 의사 김영옥에 의하면 “진정인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외상에 의한 진단으로서 입원 치료 시 뇌전산화 단층촬영의 추적검사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로 호전을 확인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퇴원하였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5. 결 론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2 2008.1.28자 07진인2439결정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 침해(경)]

불심검문하면서 불심검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결정 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력의 행사는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므로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됨에도 피진정인의 불심검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

【참조조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 ○ ○ ○ ○

【피진정인】 ○ ○ ○ 외 1

【주 문】 1. 피진정인 박상만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 가. 피진정인 박상만은 2007. 7. 3. 06:00경 창신동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심검문하고 임의동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나. 피진정인 장태주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서명과 지문 날인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박상만

2007. 7. 3. 06:00 경 범죄 예방 순찰 근무 중,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시간에 혼자 두리번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불심검문을 하게 되었다.

거수경례를 하고 소속, 계급, 성명, 범죄예방을 위한 검문실시임을 고지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대답해서 여권소지 여부를 물었더니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피해자에게 체류기간이 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에 들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임의동행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본인은 계급, 성명이 부착된 경찰복장을 착용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 신분증은 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형사범이 아니어서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해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장태주

피해자에게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문날인을 하게 한 사실은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53조, 제62조, 제78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 및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시 보호명령서와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러한 문서에 해당 외국인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문서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서명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으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서명거부라고 표기를 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 1) 2007. 7. 3. 06:0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344-12 앞 노상에서 피해자는 해 화경찰서 창신지구대 소속 박상만과 유승찬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였다. 당시 박상만은 검문업무, 유승찬은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박상만에 의해 불법체류를 이유로 같은 날 07:00 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 2) 피진정인 박상만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속, 계급 등을 고지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 3) 피진정인 박상만은 피해자에게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장태주가 2007. 7. 3.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은 서류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이다.
- 2)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두 곳,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의 각기 한 곳, 모두 세 곳에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지문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 1) 불심검문의 요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심검문을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불심검문의 대상을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의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에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한 외국인 불심검문은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의한 외국인 불심검문이 그 요건에 부합한 것이었는지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건에서 피진정인 박상만은 피해자를 정지시켜 검문을 하는 도중에야 외국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진정인 박상만이 자신을 불러서 다가갔더니 자신을 본 다른 경찰관이 '외국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피해자를 불심검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불심검문이 행해졌던 지역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피진정인은 그 지역이 시민에 대한 일상적인 불심검문이 요구되는 범죄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불심검문하고자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일반적 의심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신분증 제시의무 위반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위 1항에 의한 불심검문 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박상만은 피해자를 불심검문할 때 자신의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힌 후 범죄예방을 위한 검문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지만 자신이 정복을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경찰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서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할 경우에 경찰관의

신분증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신분증 제시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편인 한편, 피검문자에게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추후에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것이며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문 전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일반적인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노4873) 등을 기초로 '정복근무중인 경찰관과 전·의경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권고(2004. 6. 9. 02진인, 556, 565, 03진인5251, 6567 병합)한 바 있다.

3) 임의동행 거부권 불고지에 관하여

피진정인 박상만은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시 피해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형사범이 아니어서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뿐만 아니라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2006. 7. 6. 선고 2005도6810) 한 바 있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임의동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처벌 보다는 강제 출국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출국을 위해 보호조치 되어 사실상 구금과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경찰관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임의동행 할 때는 임의동행 거부권도 고지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4) 소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력의 행사는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므로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 됨에도 피진정인의 불심검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서명 및 지문 날인할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류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에는 피해자의 지문날인은 없고 서명만이 되어 있다. 또한 이 서명을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강요에 의해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은 피진정인 박상만이 피해자를 불심검문하면서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은 피진정인 장태주가 피해자에게 지문날인 및 서명을 강요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2.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

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혐의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 ①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2007.6.5자 07진인683 결정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 침해(경)]

경찰의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동의없이 밤샘조사 및 DNA의 검사용으로 타액을 채취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사례

【결정 요지】

- [1] 긴급체포 후에 밤샘조사가 불가피하였다하더라도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2] 2007. 1. 18. 피진정인들은 DNA검사를 목적으로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형사과, 경사) 외 1

- 【주 문】** 1. 서울도봉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가. 2007. 1. 18. 22:00경 피진정인들은 긴급체포된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23:00경부터 익일 09:00까지 10시간동안 밤샘조사를 하였다.
-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가발을 벗겨 얼굴모습을 촬영하고 바지를 벗도록 강요하여 팬티입은 하체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토록 했다.
- 다. 피진정인들은 DNA검사용으로 타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턱을 잡

고 입을 벌리게 하여 입 속에 면봉을 집어넣어 강제로 타액을 채취하였다.
라. 2007. 1. 19. 04:30경 피진정인2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갑을 채운 진정인
을 체포현장에 데리고 가서 집안 여기저기와 취침 시 착용하는 가운을 촬
영하고 포르노 비디오테이프 1개를 압수해갔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주장과 같음

나. 피진정인

1) 밤샘조사 관련

가) 2007. 1. 18. 21:45경 진정인은 강간대상을 집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역
생활정보지에 파출부 구인광고를 내었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새터
민 김영옥)의 신고로 방학1지구대 최병완 등 3인의 경찰관이 출동, 진정
인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여 23:15경 신병 인계받고 사건 인지하였으나
근무체계상 교대근무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중한 사건으로, 진
정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의자조사(피진정인1 조사), 피해자조
사(피진정인2 조사), 대질조사(피진정인2 조사) 및 현장조사(피진정인2 조
사)를 하는 과정에서 익일 09:00경까지 조사가 불가피하였으며 업무미숙
으로 심야조사 동의서는 받지 못했다.

2) 사진촬영 관련

가) 피해자가 가발을 벗은 진정인의 얼굴모습이 너무 무서워 반항하지 못했고
진정인이 노란색 꽃무늬 여자 삼각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함에 따
라 진정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촬영이 필요함을 설명
하자, 진정인 스스로 가발을 벗어 사진촬영에 응해주었고 피진정인2가
'별로 무섭지 않네요' 하자 진정인은 '그럼,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면서
서로 웃기까지 하였으며 자신은 노란팬티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진촬영에
동의하여 팬티가 보일 정도로만 바지를 내리고 사진촬영하였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3) 타액채취 관련

가) 진정인은 피의자신문 및 대질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기에 성교를 해 주었으며,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질내에 삽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므로 진정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타액을 채취하여 DNA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자 진정인은 'DNA검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흔쾌히 동의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유전자검사 동의서는 받지 못했다.

4) 긴급체포이후 영장없는 압수·수색 관련

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동행하고 집안구조, 주방에 놓여있는 칼, 방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성교시 틀었다는 포르노 비디오테이프 1개를 압수하여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내용 확인 후 사진촬영하고 진정인에게 돌려주려하자 진정인이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고 하여 책상서랍에 보관하다 진정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석방된 후 압수물건을 찾으러 와서 돌려준 것이며 긴급체포한인 경우는 영장 없이 증거물에 대한 압수·사진촬영·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규정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전자검사의 동의)①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가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5.(생략)

② 유전자검사기관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심야조사 금지)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

기서 '심야' 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망·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 1) 2007. 1. 18. 21:45 진정인은 피해자 김영옥(33세, 새터민)의 신고로 도봉경찰서 방학1지구대 경사 최병완 등 3인의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강간 피의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어 1. 18. 23:15 도봉경찰서 형사과 폭력팀에 근무하는 피진정인들에게 신병이 인계되었다.
- 2) 피진정인들은 1. 18. 23:15 ~ 1. 19. 09:00까지 피해자조사, 피의자조사, 대질 조사를 실시한 후 1. 19. 09:25경 진정인을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 3) 피진정인들이 1. 19. 11:00경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건의와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사 안승진은 1. 19. 18:00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 북부지원 판사 김예영은 1. 20. 14:00 영장 실질심사 후 같은 날 22:45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4) 이 후, 진정인은 성동구치소에 구속된 후 2007. 3. 16. 피해자와 합의하여 석방되었다.

나. 인정사실

1) 밤샘조사 관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21:45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10시간(23:15~익일 09:00)동안 조사하였으나 진정인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 관련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피해자가 진정인의 가발벗은 얼굴모습이 너무 무서워 반항하지 못했고 범행당시 진정인이 노란색 여자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촬영하였다는 것이고,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들이 강제로 사진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토록 했다는 것으로, 당사자 주장이 상반된다.

3) 타액 채취 관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하여 DNA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타액

채취 전, 진정인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4) 긴급체포이후 영장없는 압수·수색 관련

피진정인2는 2007. 1. 18. 21:45경 방학1지구대가 긴급체포한 진정인을 익일 04:30경 체포현장에 동행하여 영장없이 주거지를 수색하고, 증거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포르노 비디오테이프 1개를 압수하였다.

다.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가) 밤샘조사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휴식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헌법재판소 결정, 1995. 7. 21. 93헌가14),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1. 9. 27. 2000헌마159)

나) 밤샘조사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보통의 경우, 밤샘조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밤샘조사로 인한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피로로 인해 조사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조사자의 밤샘조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

다) 이러한 취지에서 밤샘조사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6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자정~아침6시)를 금지하며 동 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 밤샘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비록 인정사실 1에서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을 이유로 밤샘조사가 불가피하였다하더라도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입법취지 및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가) 인정사실 2)에서와 같이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나, 피해자 진술에 따른 증거확보 및 보장조사로서 수사목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진촬영시 당사자 대화내용을 참작할 때 강제 사진촬영으로 인한 수치심 유발 주장은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대상물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대상물 채취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2007. 1. 18. 피진정인들은 DNA검사를 목적으로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진정요지 라.항

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후 48시간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2가 방학1지구대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진정인을 동행하여 7시간 후에 체포현장(주거지)을 수색하고 증거물의 사진촬영 및 포르노 비디오테이프를 압수한 사실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가. 따라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서울도봉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이 관련규정의 미숙지 등 업무미숙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

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

1 2007.1.15자 06진인2221 결정 [결정 피의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 침해(검)]

○○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이 관계인에게 피의사실을 설명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므로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검거자 소재 탐문시 소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계인에게 피의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와 제9조

【진 정 인】 최 ○ ○

【피진정인】 송 ○ ○ 검찰주사보 (○○검찰청 ○○지청)

【주 문】 ○○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2년 일하였던 다방 업주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2005. 11.경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불구속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2006. 8. 30.경 피진정인이 남자친구의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다방에서 일하였으며 선불금 사기라는 얘기를 하여 남자친구 및 그 가족들까지 알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 1) 진정인은 2006. 8. ○. ○○법원 ○○지원에서 징역 ○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고기간 경과로 그 형이 확정되면서 ○○지청 2006미집○호로 등재된 자료, 판결문상 주거지가 불명이어서 검거하기 위해 각종 조회를 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 2) 진정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ID를 파악한 바, 남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하여 PC 방에서 접속한 사실을 알아내고 남자친구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위 주소지의 건물 소유주를 확인하여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이 사는 지 여부를 전화로 탐문하였다.
- 3) 전화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주인에게 다방에서 일할 당시 선불금에 대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집주인이 무슨 일이나고 물어 “별일은 아니고 그 아가씨가 ○○에서 일할 당시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아가씨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찾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있는지, 언제쯤 보았는지, 최근에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 1) 홍○○
 - 가) 진정인의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집을 세주었는데, 진정인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으며, 진정인은 본 적 없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있어 왕래한다는 말을 들었다.
 - 나) 불상의 날에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피진정인이 전화하여 “진정인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그 여자가 언제쯤 오고가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 다) 10여일이 지난 후에 피진정인이 다시 전화하여 “그 여자가 지금도 있는지” 물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일이나” 고 묻자 피진정인이 “그 아가씨가 다방에서 사기쳤다”고 하였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라) 이에 진정인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일하러가는 시간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정인은 없고 남자친구만 있어 남자친구에게 “○○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가씨가 다방에서 사기를 쳤네 어찌네 하는 말을 하더라” 라고 전하고, 이후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전화가 와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다.

2) 송○○

가) 집주인이 “담당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진정인을 찾는 2회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결된 사기사건 때문에 진정인을 찾는다”고 전해주었다.

나)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진정인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으며, 집주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날 진정인에게 그 형사라는 사람과 전화해보라고 권유하여 진정인이 형사에게 전화한 후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간 이후 소식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2년 다방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이 때 다방 주인에게 1,700만원의 빚을 저 사기로 고소당하고 2005. 11.경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6. 8. ○. ○○법원 ○○지원은 진정인의 소재불명에 의한 필석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월을 선고하고, 같은 달 8.○. 항소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어 진정인은 검거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입국 여부 등 각종 사항의 조회 후 진정인이 남자친구 명의로 PC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남자친구 송○○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위 건물의 소유주 홍○○의 전화번호를 확인 후, 홍○○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탐문하는 2회의 전화를 하였다.

라. 2회째의 전화에서 홍○○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해 알아보는 사유를 물었고 피진정인은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사기” 등의 답변을 하고, 홍○○은 이를 송○○에게 전하고 송○○은 진정인에게 알렸다.

4. 판단

가.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 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 및 9조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징역형을 받은 진정인을 검거할 목적으로 진정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주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소재 확인 자체는 수사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 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소재를 탐문하면서 소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계인에게 “진정인이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피의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수사활동인 진정인의 소재 탐문을 위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진정인 사건은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 그 위협에 대해 경고하여야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수사상 소재탐문의 경우에 수사상 또는 재판상 필요하다는 설명이면 충분하다. 소재탐문의 구체적 사유를 알고자 하는 관계자의 개인적인 관심에 응하여 피의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그 사실이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피의자의 현재 및 미래의 사회생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가능하므로, 소재 탐문을 위한 설명범위를 넘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탐문하면서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설명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와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 론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2 2007.5.7자 07진인999 결정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범죄로 인한 고통을 배려하여야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무집행자임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설명을 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범죄로 인한 고통을 배려하여야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무집행자임에도, 전통적인 남성적 입장에서 과거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관념, 성인식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가정에서 초래된 비극적 피해상황을 일반화·보편화되어 있는 사실처럼 부적절하게 설명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여 진정인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김○○외 1인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경 성폭력 피해를 당해 피진정인들에게 성폭력 관련 상담을 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06. 12. 6. 피진정인1이 상담과정에서 “ ‘모텔현장에 열쇠가 문밖에 꽂혀 있던데 피진 동네 같으면 만남이 열라 들어와서 강간하고 갔을 거다.’ ‘한 놈일지 몇 놈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애기 엄마가 고소해서 정액검사했는데 사장말고 다른 놈 정자 나오면 사장이 머라고 하겠느냐, 이 시팔년 만

놈이랑 붙어 먹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할 것이고, 만약 신랑이 실제 상황을 알아봐라 같은 남자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신랑이 술 만땅 먹고 들어와 이 씨팔년아, 판놈이랑 붙어먹지 않았느냐? 이런 말 안 할 것이며...’ ‘애기 봐주러 집에 온 친정엄마는 평생 죄인이다.’ ‘자기 같으면 이 씨팔년아 너랑 안살아 라고 할 것이다.’ ‘자기도 술많이 먹고 2차가면 잘 안서고 억지로 할려고 하면 상대방이 많이 아파한다.’ ‘안에다 사정을 했는지 느낌은 없었냐.’ ‘남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발기가 안돼서 못했을 수도 있고 만약 했다면 밤새도록 했을 꺼니 거기가 부었을 거다. 자기가 잠깐 나가 있을 테니 여경사보고 한번 보라.’ “ 고 하였다.

나. 검사병원이나 상담기관이나 연계병원이라도 알려 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상담원이 아니라며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다. 2007. 2. 12. 진정인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피진정인1이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꽃뱀이라고 했다” 등의 말을 듣고 피진정인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들었다.

“ ‘애기엄마도 남편하고 관계가 그렇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에서 아무 일 없었다고 그러면 애기엄마 같으면 믿어? 애기 엄마 같으면 안했다고 봐? 난 둘이 술이 취해서 할려다 남자가 발기가 안돼서 못했다고 봐, 애기 아빠는 그렇게 생각안할 거야.’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힘에서 남자가 위에 있잖아, 남자가 바람을 피면 집에 들어가고 여자가 바람을 피면 못 들어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 때 애기해줬잖아, 다른 남자하고 그런 상태까지 갔잖아, 나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바람을 피웠던 강간을 당했던지간에 집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부부니까 섹스를 할 꺼 아니야,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 무식해서 내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 이 씨팔년이 그 새끼랑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주먹이 날라간다고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고.’ ‘사장한테 내가 그랬어, 돈만 덜렁주지 말고 합의를 써서 문서로 남겨라. 그럼 나중에 고소당해도 징역안가는 그거니까...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부부가 싸고...’ ”

라. 2007. 3. 7. 강간사건 관련하여 법령, 판례, 진단서 등을 챙겨서 고소하는 경우에 진행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피진정인2를 만났는데, 피진정인2가

“아줌마면서 그런 일에 멀 그래요,” “아줌마도 잘못했구만 머,” “아줌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먼” 이라고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주장과 같음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 주장

1) 피진정인1

가) 2006. 12. 6. 06:40경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지구대를 방문한 진정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순찰차량 2대를 동원하고 진정인과 그 남편을 동행시키고 경찰 4명으로 하여금 사건현장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데려오게 하였고, 여성 관련 범죄여서 비번이었던 여경인 이○○ 경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출근하게 하였다.

나) 가해자와 함께 다시 지구대로 온 진정인에게 남편과 상의하여 처벌 유무에 대해 생각해보고 처벌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고 고소장 작성법을 알려주었으며 진정인이 남편과 함께 귀가하므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다) 아침을 먹고 오니 진정인이 혼자 와 있어 여경과 함께 1층 탈의실에서 상담했고, 진정인이 “손으로 음부에 추행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어 “처벌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데려다 처벌을 하겠고 지금 당장 처벌을 원치 않아도 나중에 처벌할 수 있으니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질액 검사 등을 받으라”고 했으며, “경찰병원에 가면 여경들이 있으니 처리하여 줄 것” 이라고 하였다.

라) 진정인이 “가해자에게 반항하면서 어깨 부분에 멍이 든 것 같다”고 하여 여경에게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탈의실을 나왔고 진정인과 여경이 나오면서 진정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 마) 상담중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진정내용 나.항의 상담소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 바) 이후 2007. 2. 12.경 진정인이 전화하여 “본인이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놓으라고 하면서 진정인을 꽃뱀이라고 하고 돈을 요구하고 했다”고 하므로 진정요지 다.항은 가해자에게 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2) 피진정인1 관련 목격자 진술(이○○ 경사)

- 가) 2006. 12. 6. 비번인 관계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07:00경 성폭력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조사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구대에 출근해 보니 피해자인 진정인과 남편이 처벌과 관련하여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며 귀가하여 피진정인1과 아침식사를 했는데, 진정인이 10:00경 다시 지구대에 찾아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고 남편이 알게 될 수도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의 목부위에 빨강게 상기된 부분이 있어 피진정인1이 사진 촬영을 하라고 하여 피진정인1이 나간 후 사진을 촬영한 바 있다.
- 나) 진정인이 “당시에 성기를 삽입했는지 손가락을 삽입했는지 잘 모른다”고 하여 “그러면 종합병원쪽에 해당하는 산부인과에 가서 정액 채취 의뢰를 해서 정액이 나오면 상대방 남자가 성기를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고 그 때 가서 고소여부를 판단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 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말은 피진정인1이 하는 것을 들은 바 없으며,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상담소나 병원에 대한 요청을 받거나 들은 적 없다.

3) 피진정인2

- 가) 2007. 3. 7. 19:00경 진정인이 경찰서에 찾아와 형사사건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다고 하여 민원상담에 응하는데, 민원내용은 2가지로, 하나는 강간사건에 대해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았는데 다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강간사건에 대해 지구대에 신고하러 갔는데 지구대 경찰관이 본인이 했다는 진정내용, 즉 “아줌마면서 그런 일에 뭘 그래요” 등의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로, 위 진정내용은 전혀 사

실이 아니다.

나) 합의 관련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후 고소가 가능한 경우 - 합의내용이 피해정도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 합의 후 새로운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등 - 에 대해 설명하고, 지구대 경찰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고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달라고 한 바 있다.

다) 당시 진정인은 가방 속에 인권단체 질의답변서, 각종 강간사건 판결문, 인터넷질의답변서 등 각종 서류를 내보이며 “많은 곳에 문의해보았으나 답변들이 나누어져 있어 판단할 수 없다” 며 결론을 내달라고 1시간 넘게 상담하였고, 본 사건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녹음화일, 녹취록과 피진정인들, 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진정인은 2007. 12. 5. 직장회식 후 술에 취해 사장에게 모텔에 끌려가 성폭력을 당하고, 2007. 12. 6. 06:40경 ○○지구대를 방문해 피진정인1에게 사건의 대강을 말하였다.
- 2) 피진정인1은 순찰차량2대와 경찰4명을 동원하여 현장조사를 보내고 여성 관련 범죄이므로 비번이던 여경 이○○ 경사에게 연락하여 출근하게 하였다.
- 3) 경찰들은 진정인과 그 남편을 동행시켜 사건현장을 촬영하고 모텔에서 자고 있던 가해자를 지구대로 데려왔다.
- 4) 진정인과 그 남편은 가해자의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귀가하고, 같은 날 10:00경 진정인이 혼자 지구대를 재방문하여 고소하는 것, 고소하는 경우에 남편이 알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하므로 피진정인1과 여경 이○○ 경사가 이에 응하였다.

- 5) 상담 후 진정인은 여전히 고소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귀가하고 진정인은 이후 전화로 수 회 상담하였다.
- 6) 불상의 날에 진정인은 가해자로부터 피진정인1이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정인을 꽃뱀이라고 하고 피진정인1이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고 2007. 2. 12. 피진정인1과 통화한 바 진정내용 3 다.항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 7) 2007. 3. 7. 진정인은 강간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과 자문받은 법령, 판례, 관련 단체 의견 등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진정인2를 만나 가해자 고소 등에 대해 상담하였다.
- 8) 진정인은 사이버 경찰청에 2007. 3. 9./3. 29./3. 30. 3회에 걸쳐 진정요지가.·나.·다.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 9)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조사 후 2007. 4. 9. “주변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고,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원인이 확실한 근거도 없는 사항을 주장하자 대상자가 민원인의 근거없는 주장을 변소하며 일부 흥분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피진정인1에 대해 불문조치를 하였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사건 상담 중 진정내용 가.항에 기재한 말들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1이 부인하고 함께 상담한 목격자도 부인하는 점에서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진정요지 나.항에 기재한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상담소 등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하고, 함께 상담한 목격자도 동일한 진술을 하는 점에서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항

가)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화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가해자로부터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꽃뱀이라고 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1이 가해자에게 그러한 말들을 한 적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진정요지 다.항에 기재한 말들을 한 것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위의 가)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므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남편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피해 - 안했다고 해도 남편은 믿지 않을 거다,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등- 가 있으므로, 가해자도 기혼자이므로 가해자의 아내, 진정인의 남편을 생각해서 빨리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여성피해자는 보호 보다는 사회적 비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 죄책감 등의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무집행자의 남성중심적인 부적절한 성관념·인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라) 그런데, 피진정인1은 공무집행자로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범죄로 인한 고통을 배려하여야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무집행자임에도, 진정요지 다.항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적 입장에서 과거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관념, 성인식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가정에서 초래된 비극적 피해상황을 일반화·보편화되어 있는 사실처럼 부적절하게 설명하고, 단정짓고, 그 의견을 표명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마) 즉,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하는 “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애기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할 거란 말이야, 애기 엄마는 애기 엄마

대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잖아.’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내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섹스를 하는 중에 그러면, 이 씹할 년이, 너 개같은 년, 그 새끼하고 이렇게 했지, 이게 나가면서 주먹이 날라가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사위한테 기를 못 펴는 거야.’ ” 등의 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부간의 신뢰 상실, 가정파탄, 가정폭력 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불안감,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죄책감,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 바) 피진정인1이 진정요지 다.항과 같은 말을 함에는 비록 피해자에 대한 악의나 비난의 고의는 없을 지라도, 그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설명으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집행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4)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진정요지 라.항에 기재한 말들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2가 부인하고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5. 결 론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3 2007.2.21자 04진인851 결정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이메일 주소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 수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적극)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직·간접적인 연고 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 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진정인과 피해자1을 수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진정인 등이 열어보게 한 행위는 비록 IP추적 자체에 대해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이고,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P추적을 위해 과도하게 위장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법원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남은 물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각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1, 그리고 그 명의를 사칭당한 주변인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관련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함은 물론,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판단

[2] 파진정인이 형사피의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핸드폰 역 발신추적조회를 실시하고, 동내 슈퍼 및 골목에서 잠복 및 감시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3~4m 간격으로 근접하여 있거나 쫓아오고, 귀가할 때는 거주지 현관입구까지 따라 붙는 등 긴장감을 조성하고, 형사피의자 딸의 핸드폰 사용내역 중, 같은 대학교 여자친구, 대학교수 등 다수에 대하여 피해자1의 소재를 묻는 한편, 동인의 거주지 일반전화사용내역에서 파악된 관계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특정 관계를 추적조사 하는 등 피해자1의 직·간접적인 연고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 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사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관계자에 대한 배려 등 유의사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범죄수사규칙」 제10조, 제29조 제2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주민등록법」 제18조의3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13조

[진 정 인] ○○○(○○○노동조합, 위원장)

【피 해 자】 ○○○(○○○노동조합 ○○지부, 부위원장) 외 8명

【피진정인】 ○○○(○○경찰서 수사과) 외 5명

- 【주 문】** 1. 진정요지 가. 1)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2) 및 나. 2)에 대하여는 ○○○장에게 사이버수사시 타인 및 기관의 명이나 직함을 사칭하는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수사담당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1)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5, 6, 7, 8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 3), 다. 라.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5. 진정요지 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관련 부분

- 1) 성명미상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04. 4. 2.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동인의 사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5.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노동조합(이하 '○○○'라고 함) 교육국장 ○○○의 명의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같은 달 8. 진정인의 처 ○○○ 명의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3차례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메일 접속위치 추적 및 전화감청을 하는 등 위법·과잉 수사를 하였으며,
- 3)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경 진정인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부당하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게 출금을 정지시켰다.

나. 피해자1 관련 부분

-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2 13:00경 위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1의 처 ○○○을 만나 피해자1의 소재를 탐문하고, 같은 달 3. 11:00경에는 피해자1의 딸인 ○○○이 거주하는 ○○소재 원룸에 찾아가 옆집 사람에게 ○○○의 동태를 조사하고, 같은 날 12:00경에는 피해자1의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에게 피해자1의 차량의 이동상황에 대해 묻는 등 가족들의 동태를 조사하고, 같은 달 8. 18:20경에는 학교에서 귀가 중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1의 소재수사를 시도하는 등 2004.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가택방문, 친척, 친구 등에 대한 전화조사, 미행, 감시 등의 방법으로 과잉수사하고,
-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4.에는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해 동인의 이메일 주소로 ○○○지부 노조원 ○○○의 명의를 사칭하여 '위원장님 힘내세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라고 발송하고, 같은 달 8.에는 ○○시청 민원실장 명의로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장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인터넷 ID 및 이메일 접속위치 추적, 전화감청 등의 방법으로 불법·과잉 수사를 하였다,

다. 피해자2 관련 부분

-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피해자2가 2004. 4. 2. 16:17경 김포공항 인근 피씨방에서 진정인의 ID 및 비밀번호로 모 사이트에 접속하자 10여분도 지나지 않아 출동하여 위 PC방을 포위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돌려주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해자2가 경찰관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1시간가량 목살하면서 감금하였고,
- 2) 위 경찰관들은 공항 탑승대까지 따라와 가방을 검색하고 지문조회를 요구하면서 비행기 탑승을 방해하여 예약된 사천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였고, 다시 금 위 PC방으로 연행 감금하는 등 무려 3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하였다.

라. 피해자3 관련 부분

-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4. 11:00경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피해자8을 면회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모여 있던 피해자3중 ○○○조환원 ○○○ 등 18명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체포하고,
-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위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3중 ○○○이 즉시 병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였으며,
- 3)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위 체포과정에서 피해자8의 면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3 중 변호사 ○○○, ○○○을 함께 체포하여 전경 버스에 태우는 등 불법 체포하였다.

마. 피해자4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1.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해자4의 자택으로 들어가 집안을 수색하고, 가족에게 위 피해자를 자수시키라고 강요하였다.

바. 피해자5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3. 13:30경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해자5의 집을 수색하였다.

사. 피해자6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6. 21:30경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6을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하고, 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아. 피해자7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초경 피해자7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직장동료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게 종용하고 전화를 감청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자. 피해자8 관련 부분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3. 20:20경 피해자8의 집으로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안을 수색하였다.

차. 피해자9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경 위 피해자9를 체포하기 위해 동인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간담 맡기로 투병 중인 위 피해자의 부친이 놀라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장에 상주하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한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1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진정인을 조기검거하기 위하여 2004. 4. 2. ○○지방경찰청 알림방(경찰관 전용, 암호필요)에 게재된 진정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 신상정보를 다운받아 같은 날 18:10경 진주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 전용계시판인 '○○알림방'에 올린다는 것이 업무상 실수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지사항'란에 올린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실수로 인한 것인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2) 피진정인2

당시 관할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진정인의 인터넷 ID 및 이메일 접속위치 추적하였고, 전화감청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3

당시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메일주소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1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2004. 4. 6. 경 ○○○@hotmail.com라는 명의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hanmail.net라는 명의로 '잘있니'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각각 피해자 명의의 이메일

일주소 ○○○@hanmail.net로 발송하여, 수신확인 기능을 이용한 수사기법으로 용의자의 위치를 확인한 바, 2004. 4. 8. 14:11경 용의자가 ○○대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지령을 ○○지방경찰청등에 통보한 사실은 있었으며, ‘○○○당등을 사칭하여 위장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4

2004. 4. 1.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정인을 체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진정인이 가입한 통신회사별 ID확인 및 접속 시 IP주소 확인업무는 수사절차상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사하고, 진정인의 출금계좌에 대하여는 판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카드사용내역조회 및 거래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위장메일 발송을 통한 위치추적 과 진정인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출금통제 조치를 한 사실은 없다.

5) 피진정인5

2004. 4. 2. 12:50경 위 피해자1의 집에 임하여 보니 출입문에 피해자1의 처 ○○○의 전화번호와 우체국 아저씨에게 우편물이 있으면 경비실에 맡겨 달라는 메모를 보고, 피해자1의 처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물이 있으니 경비실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2004. 4. 2. 13:00경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1의 처를 만나 ○○경찰서 직원임을 밝히고 동인에게 피해자1의 소재를 탐문하였고,

위 같은 날, 피해자1의 차량이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아파트 경비원 ○○○에게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연락을 해주라면서 같이 간 전담반 경장 ○○○의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아침 09:00경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이 없어 피해자1의 처에게 직접 전화하여 차가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탐문수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1의 처를 직접 미행하거나 전화감청을 한 사실은 없다.

6) 피진정인6

2004. 4. 3. 10:00경 같은 소속 ○○○, 보안계 근무하는 ○○○과 함께 피해자1의 딸 ○○○이 거주하는 ○○시 서구 소재 ○○원룸 ○○○호에 임하여 출입문 벨을 45회 눌렀으나 전혀 인기척이 없어 옆집 ○○○호에 벨을 눌러 누가 살고 있는 지를 문의 했으나, 전혀 모른다고 하여 피해자1의 딸과는 대화를 하거나 접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촉하지 못하였고,

위 같은 날 11:37분경 및 12:09경 2회에 걸쳐 피해자1의 딸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지수를 권유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4. 3. 오후부터 4. 8. 12:00까지 원룸 앞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면서 피해자1이 자신의 딸과 접촉하는지를 알기위하여 연고선 및 가족들에 관한 통상적인 수사를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1의 딸 등 가족을 직접 미행을 한 사실은 없다.

7) 피진정인7, 8

2004. 4. 8. 피해자1의 딸이 거주하는 원룸주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피해자1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잠복근무를 하며, 피해자1의 딸이 원룸에서 학교로 등하교 하는 것만 멀리 지켜보고 있었을 뿐 미행하였던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1의 인터넷IP가 ○○대학교에 뜬다는 통보를 받고 ○○대학교에 갔으나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1의 딸에게 같은 날 15:28경 및 15:31경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다.

8) 피진정인9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해자1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04. 4. 4~4. 9.경까지 공무수행용 ○○○.to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1이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hanafos.com, ○○○@hanmail.net 등 10여개의 메일을 상대로 4. 4. 06:00경과 10:00경 2회에 걸쳐 ○○○ ○○시지부 ○○○ 명의와 '○○○'이라는 명의로 '하나 된 ○○○의 그날을 위해, 위원장 힘내세요'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 달 8. 08:50경에는 ○○○@hanmail.net 에 ○○시청 민원실장 명의로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휴가기간이 끝나가니 속히 연락바람'이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위와 같은 ○○○.to를 이용한 사이버수사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기법이며, 이러한 기법은 ○○지방경찰청 형사실무교육 시 사이버수사 방법으로 교육받아 형사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9) 피진정인10

2004. 4. 2. 16:17경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PC방에서 피해자2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위원장 ○○○의 ID인 ○○○을 이용하여 세이클럽에 접속중이라는 112통보를 받고 같은 날 강서경찰서 소속 수사전담팀 동료형사 10여명과 함께 16:30경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2에게 진정인과의 관련성을 추궁하였으나 전혀 협조하지 않고, 같은 날 17:30발 사천행 비행기에 탑승해야한다면서 탑승대에 갔으나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여 탑승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2가 처음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면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고 장시간 지체되지도 않았을 사안인데 전혀 수사에 협조함이 없이 엉뚱한 내용만 들어 놓아 의문점 해결을 위해 임의수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PC방 감금이나 현장 강압수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2의 혐의와 신분확인 거부행위는 범죄의 명백성이 부족하여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이 강제수사를 자제하면서 임의수사차원에서 피해자2를 상대로 신분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피진정인11

2004. 4. 4. 11:15경 ○○○경찰서 앞 노상에서 미신고집회를 한 피진정인3중 ○○○ 등 18명은 자진해산 통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하다 집시법위반 현행범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 호송되었으며, 피진정인3중 변호사2명에 대한 연행 및 석방은 당시 이들의 변호사 신분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변호사 신분 확인 즉시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석방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차를 거부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3중 ○○○이 호송중인 버스 안에서 다리를 다쳤다며 병원 후송을 요구하여 서대문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바로 병원진료를 받게 하였다.

11) 피진정인12

2004. 4. 4. 10:05경부터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3이 피해자8의 검거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하여 3회에 걸쳐 해산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응하였고, 이에 같은 날 11:20경 집회 참가 중이던 피해자3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을 연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3중 변호사 ○○○은 외관상 변호사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회의 해산고지 시 신분을 밝히거나 현장을 피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불법시위대로 판단 검거하려하자 옷이나 몸을 잡기도 전에 “잡지 마 내 발로 내가 차에 타겠다”며 차량에 승차하였고,

피해자3중 변호사 ○○○은 시위대와 떨어져 있어 연행하지 않았으나 버스가 문을 닫고 이동하던 중 차량 문을 수차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자신도 일행이라면 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진입경찰을 밀치고 자신의 임의로 차량에 승차하였고, 이후 이동과정에서 위 변호사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하차시킨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1)항 : 피진정인1의 진정인 개인정보 인터넷 공개에 관하여

- 1) 피진정인1의 진술서 및 경찰청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04. 4. 2. 18:10경 진정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경찰서 내부망인 경찰관 전용 ‘알림방’에 게재하려다가 착오로, 일반인에게도 열람이 가능한 ○○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며, 같은 달 4. 7. 위 경찰서 정보과 ○○○가 평소 친분이 있던 ○○○지부장 ○○○으로부터 ○○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게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위 경찰서 경무과 공보담당 ○○○에게 연락, 같은 날 14:30경 ○○○이 확인 후, 삭제 조치한바,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경찰서 홈페이지 상에 약 5일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제29조제2항에 “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현상, 전단 기타의 방법 등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공개 수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진정인1이 고의성이 없고,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주민등록법」 제18조의3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까지 넓게 보장하고 있는 판례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가 수사목적 실현에 따른 업무상 단순착오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외부 민간인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약 5일 동안 공개·방치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1이 소속한 ○○경찰서의 관리책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 2) 및 나. 2) : 피진정인2, 3, 4, 8의 진정인 및 피해자1에 대한 인터넷 ID, 이메일 위치추적, 전화감청 및 위장메일 발송에 관하여

1) 피진정인2, 3, 4, 9의 진술서 및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2006. 3. 당시 진정인 및 피해자1을 포함한 ○○○ 소속 간부9명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청 산하 각 지방청별로 ○○○ 관련자 검거 수사전담반을 피진정인2, 3, 4, 9를 비롯한 총 138명의 경찰관으로 편성하고, 위 ○○○ 간부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신병확보를 위하여 ID 접속위치 및 이메일 추적 수사를 실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의거 각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승인요청’을 하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전화감청 등 통신제한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당시 ○○○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의 협이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의거 ‘감청’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자 및 그 주변인물에 대하여 전화감청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전화감청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 2) 그러나 위장메일의 사용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2, 4는 진정인에 대하여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해명이 없고, 피진정인3은 피해자1에 대하여 비록 위장메일을 발송하였어도 타인 및 타기관의 명의로 직함을 사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9만 피해자1에 대하여 타인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3회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자신의 제출한 진정서 및 인터넷 상 받은편지함 복사기록을 통하여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2004. 4. 5. 14:30경 000의 명의를 사칭한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위장메일과 2004. 4. 8. 21:15경 진정인의 처 000의 명의를 사칭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라는 제목의 위장메일 등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진정인1의 딸 000은 2004. 4. 8. 자신의 메일로 000당의 명의로 사칭한 ‘힘내세요, 좀 있으면 이길 겁니다’라는 제목의 위장메일을 열어보자마자 피진정인7의 핸드폰 전화가 수차례 온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인 관련정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9는 자신의 진술서 및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실시조사에서 2004. 4. 4. 공무수행용 000.to(메일수신추적 전문회사)를 통해 피해자1이 가입해 사용 중이던 000@hanafos.com, 000@hanmail.net 등 10여 개의 메일주소를 입수하고, 이를 상대로 4. 4. 06:00경과 10:00경 2회에 걸쳐 000지부 000 명의로 ‘000’이라는 명의를 사칭하여 ‘위원장님 힘내세요’, ‘하나 된 000을 위하여’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사실, 그리고 같은 달 8. 08:50경에는 피해자1의 메일주소인 000@hanmail.net으로 000시청 민원실장의 직함을 사칭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휴가기간이 끝나가니 속히 연락 바람”이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사실을 각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위장메일 발송기법은 000지방경찰청 형사실무교육 시 사이버수사 방법으로 교육받는 등 형사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을 밝히고 있고,

또한, 경찰청이 위원회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메일수신확인 추

적수사기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기 등 죄종을 불문하고 체포대상으로 특정된 지명수배자 등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사기법이며, 설사 피진정인8이 위장메일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과잉수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수사당시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 관련 검거 수사전담반 소속 경찰관 중, 위 피진정인2, 3, 4, 9를 비롯한 사이버수사를 담당하였던 피진정경찰관들이 광범위하게 진정인 등 피해자들의 소재수사를 위하여 타인 등의 명의 사칭한 위장메일을 다수 발송하였을 개연성이 농후 한 바, 위 진정인 및 피진정인1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2, 3, 4, 9등이 진정인과 피해자1을 수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진정인 등이 열어보게 한 행위는 비록 IP추적 자체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이고,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P추적을 위해 과도하게 위장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법원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남은 물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각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1, 그리고 그 명의를 사칭당한 주변인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관련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함은 물론,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가. 3) : 피진정인4의 진정인의 은행계좌 동결에 관하여

- 1) 피진정인4가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수사기록, ○○은행의 회신자료 및 참고인인 위 같은 은행직원의 전화통화조사보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4가 2004. 4. 7. 진정인 ○○○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카드사용내역 및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였을 뿐, ‘출금정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은행은 위 피진정인4의 수사협조 공문에 의거 관행적으로 해당 진정인의 예금계좌를 ‘범죄계좌’로 등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프로그램 상 자동적으로 입금만 가능하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예금인출 등 지급이 정지된 사실이 있고,

- 2)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2004. 4.경 2,700여만원의 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5일 자동이체 되는 2004. 4월분 ○○○당 당비 등이 '잔액부족'이라는 이유로 인출되지 않다가 같은 해 5. 31.에야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 3) 따라서, 진정인의 위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는 피진정인4의 '출금정지'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정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진정요지 나. 1) : 피진정인5, 6, 7, 8의 피해자1의 가족 등에 대한 미행·감시 등 과잉수사에 관하여

- 1) 진정인 및 피해자1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5, 6, 7, 8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기록,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5, 6, 7, 8등이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해 피해자1의 처와 딸, 그리고 주변인물에게 접근하여 피해자1의 소재수사를 시도하면서 2004. 4. 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자택을 방문하거나 잠복하여 감시하고, 이들의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하여 직접 전화하거나 친척 및 지인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위와 같은 인정사실 대부분은 통상적인 체포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진정인5, 6, 7, 8은 피해자1의 딸 ○○○에 대하여 2004.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동인이 거주하던 ○○○시 서구 ○○동 소재 ○○빌라 ○○○호에 대하여 장기간 잠복 및 탐문수사하고, 동인의 핸드폰 역 발신추적조회를 실시하면서, 위 기간 중, 피해자1의 딸이 외출 중, 동네 슈퍼 및 골목에서 피진정인들이 잠복 및 감시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3~4m 간격으로 근접하여 있거나 쫓아오고, 귀가할 때는 위 거주지 현관입구까지 따라 붙는 등 긴장감을 조성하고, 피해자1의 딸의 핸드폰 사용 내역 중, 같은 대학교 여자친구 ○○○, 대학교수 등 다수에 대하여 피해자1의 소재를 묻는 한편, 동인의 거주지 일반전화사용내역에서 파악된 김모씨

등 관계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특정관계를 추적조사 하는 등 피해자1의 직·간접적인 연고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 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한 사실이 일정부분 인정된다.

- 3)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진정인5, 6, 7, 8 등의 피해자1의 가족에 대한 감시·미행 활동은 대부분 체포영장에 근거한 통상적인 체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위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그 가족 및 지인 등에 대한 수사협조는 임의수사 및 적법절차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은 피진정인5, 6, 7, 8의 피해자1의 딸 및 동인의 주변인물에 대한 과도한 근접 및 확대 추적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사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관계자에 대한 배려 등 유의사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다. : 피진정인10의 피해자2에 대한 불법감금에 관하여

- 1)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2의 전화통화조사보고, 피진정인10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10은 2004. 4. 2. 16:17경 피해자2가 ○○○ 소재 ○○○ PC방에서 ○○○ 위원장인 진정인의 ○○클럽 ID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2의 위 ID사용경위 등을 확인하는 임의수사를 하였는바, 피해자2가 이를 불응하고 이미 예약해 놓은 같은 날 17:30발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하지 못하고, 피해자2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금 위 PC방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2가 도움을 요청한 ○○○ 소속 ○○○ 변호사의 주선으로 같은 날 19:45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10은 당시 출동경찰관들이 피해자2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포영장인 발부된 진정인의 ID사용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2가 이를 부인하면서 조사에 비협조하고, 예약된 비행기를 타야겠다고 김포공항 국내선 2층 탑승대로 이동하였으나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여 타지 못하였고, 다시금 진정인의 관련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방 동행을 요구하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자 피해자2가 재차 경찰관의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동행에 불응하였으나 지난한 설득을 통해 PC방으로 동행하여 피해자2가 진정인의 ID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2가 진정인에게 보내진 이메일을 열람하였을 뿐 ID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진정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나 범인도피죄 위반 등 현행범 체포요건이 충족치 못하여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당시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차원에서 피해자2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자제하면서 3시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조요구를 한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권한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 3) 피해자2는 당시 자신은 현행범도 아니고 긴급체포 사유도 없으며, 체포영장 또한 없는 상황에서 불심검문 및 임의수사에 협조하고자 1차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니 보내 달라”고 말한 후, PC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피진정인10이 이를 저지하여, 이를 뿌리치고 PC방을 나와 비행기를 탑승하고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 피진정인들이 따라와 다시 한번 검색대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임의대로 자신의 가방을 열어 서류 등을 검사하며 탑승을 방해하여 비행기를 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서 피진정인들이 다시금 PC방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재차 피진정인들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1시간가량 버틴 끝에 피진정인10 중 2명이 신분증을 보여주어 이를 수첩에 적고 ○○○법률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쩔 수 없이 위 PC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위 ○○○ 법률원 변호사 ○○○이 와서 피진정인10 중 현장에 있던 ○○경찰서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끝에 귀가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3시간 시간동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의 제한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 4)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피해자2가 임의수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달리 위 피해자2의 주장사실 외에 피진정인10이 임의수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해자2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라. : 피진정인11, 12의 피해자3 현행법체포에 관하여

- 1) 진정인은 피진정인11, 12가 2004. 4. 4. 11:00경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피해자8을 면회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3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불법체포하고, 또한 위 체포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 및 ○○○ 변호사를 함께 불법 체포하였으며, 부상을 당한 피해자3중 ○○○의 진료요구를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 피진정인11, 12가 제출한 진술서 및 위 사건관련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3은 2004. 4. 4. 10:05경 당시 ○○○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8의 체포에 항의하고자 피켓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옥외 집회시위를 하였던바, 이에 피진정인들이 3회에 걸쳐 해산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응하여 같은 날 11:20경 집시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3 중 ○○○ 등 18명은 체포직후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3중 ○○○은 호송버스가 ○○○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인근 적십자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3) 아울러, 피해자3중 변호사2인에 대한 체포경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11, 12는 체포직전에 시위대열과의 분리를 유도하였으나 ○○○ 변호사는 외관상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위대와 함께 남아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체포경찰에게 변호사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 변호사는 자신도 함께 가야한다며 스스로 호송버스에 승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달리 피진정인들이 변호사임을 알면서도 불법 체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사. 진정요지 마.~차. : 피해자4~9에 관하여

진정인이 2005. 6. 1.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의 대면조사과정에서 위 진정부분을 취하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 진정요지 가. 1), 2), 및 나. 1), 2) 부분은 제발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각 적용하여 권고하기로 하고,

나. 진정요지 가. 3), 다. 라. 부분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각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다. 진정요지 마.~차.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를 각 적용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4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람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결정요지】

[1] 학생 수업 중 경찰조사에 대하여

경찰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인권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은 경찰의 이러한 정보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잘 웅변하고 있음 따라서 수사권을 갖는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이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및 「경찰법」 제4조에 의한 경찰작용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와 책임을 넘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 법령 및 제도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정보활동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이외에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 원칙, 방법 등 정보활동 시 기준과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담은 법령, 훈령, 지침 등 어떠한 가이드라인 조차도 없음 경찰 정보관들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을 경찰정보관 개인의 판단에 맡겨둔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기준 및 한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재발방지를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권한남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간부 및 관련교사들의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낮은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많음

[2]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위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및 제83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및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조,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 「경찰법」 제3조 및 제4조

【진 정 인】 1. 노○○

2. 권○○

3. 양○○

【피 해 자】 심○○

【피진정인】 1. 김○○

2. 김○○

3. 함○○

4. 김○○

5. 최○○

6. 이○○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 정보 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 2, 4, 5에 대하여 계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나. 학원 분야 정보활동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경찰 정보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3. ○○○경찰서장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4. ○○○교육청 교육감에게, 학내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생지도 담당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8. 5. 6.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측 관계자의 협조 아래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 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 및 학습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다.

나. 2008. 5. 20. 피진정인 4와 5는 위 사건과 관련된 경찰 측 해명보고서를 ○○○경찰서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교,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누출시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 2008. 5. 6.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진정인 1이 학교로 찾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아와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어느 단체 소속인지, 도내 단체 회원수는 몇 명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 2)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보고서가 ○○○○경찰서 외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원인에 대한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 1) 피진정인 1(김○○ 경위, ○○○○경찰서 경무과, 전 정보과)

2008. 5. 6. ○○지방경찰청 정보과 학원담당인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만나고 교육청에도 확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소속 단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긴급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전화로 학교 방문 승인을 득한 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휴식시간에 학생부장 회피 아래 4~5분 정도 문답식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일상적 정보활동으로 상급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학생을 만나지 않고서는 상급청의 요청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학생을 만난 것이다.

- 2) 피진정인 2(김○○ 경위, ○○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찰서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회신고를 했다는 정보상황보고를 접하고 피진정인 3에게 이를 보고하자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여 2008. 5. 6. ○○○○경찰서 학원담당인 피진정인 1에게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를 만나고 도교육청에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같은 날 15:30경 피진정인 1로부터 정보과약 결과보고를 받아 피진정인 3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학교에 가서 교사를 만나 보라고 했던 것은 집회신고 내용을 알아 보라고 했던 것이지 학생을 만나 정보를 파악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 3) 피진정인 3(함○○ 경정, ○○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3계장)

피해자의 집회신고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고 신고자가 학생이어서 집회신고자가 속한 단체의 성격, 실제 집회유무, 참석자, 집회 방법, 교통관리 방법,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하여 확인·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후 정보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와 같은 지시는 집회신고 차원을 떠나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조정 및 지도를 위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집회신고를 방해할 목적의 활동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4(김○○ 경사, ○○○○경찰서 경무과)

홈페이지 관리자인 피진정인 5로부터 대외홍보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파일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진정인 5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기관 내부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상부지시는 없었으며, 피진정인 4와 5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5) 피진정인 5(최○○ 기능8급, ○○○○경찰서 경무과)

피진정인 4로부터 대외 홍보자료가 보관된 USB를 전달받아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제목만 보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였다.

6) 피진정인 6(이○○ 총경, ○○○○경찰서장)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 것은 상급청의 업무협조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실무차원의 일상적 정보활동으로 피해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학교 측의 승인을 구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면담을 실시한 것은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한다. 치안정보 수집 근거는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이며, 이외의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권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정보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가변성이 많아 일반적인 규정이 필요치 않아 정보활동 시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은 법령, 훈령, 지침 등 하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자료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올린 것은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7) 학교 관계인들의 진술(○○ ○○고등학교 교감 및 학생부장)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피진정인 1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집회신고를 하였다며 학생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휴식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주었다. 이후 피진정인 1이 학생부장 동석 하에 학생부실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4~5분 정도 면담조사를 하였다. 학과시간에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것은 그 조사시간이 수업시간인지 여부를 떠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학교 측의 잘못이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참고자료,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진술서) 및 전화보고서, 서면답변서, 참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교육청의 감사보고서 및 조사자료, 경찰 자체 진상조사보고서, 취재기자들의 진술 전화보고서, 언론기사자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등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위 진정요지 나항 기재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가칭 ○○○ 시민연대(인터넷 카페모임) ○○지역 대표로서,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고자 2008. 5. 3.과 5. 5. 두 차례 걸쳐 ○○○경찰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서 정보과 ○○○에게 2008. 5. 6.에 집회신고서를 대신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위 ○○○은 2008. 5. 6. 집회신고서를 대신 접수하고 집회관련 정보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정보과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에게 집회신고자에 대한 확인·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담임교사를 면담하고 도교육청에 확인하여 학생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08. 5. 6. 10:30경 피해자의 학교를 방문하고 교감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자 교감은 학생부장을 불러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학생부장은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학생명부를 보여주었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 부친의 성명, 직업,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파악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의 요청에 따라 학생부장은 피해자를 불러 줄 것을 담임교사에게 부탁하였고 담임교사는 당시 수업 중이던 학과 담당교사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교실에서 데리고 나왔고 학생부장은 피해자를 학생상담실로 데리고 갔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은 학생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은 '집회신고의 사실유무, 고3인데 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인과 단체 중 어떤 자격으로 집회를 신고한 것인지, 단체명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단체인지, 도내 회원 수가 얼마인지, 누구의 지시로 전복대표가 된 것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 ○○○도 교육청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수업 중인 학생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조사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관계자 1인을 경징계하고 3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처분을 요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찰법」 제3조는 치안정보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는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는 정보과를 두어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업무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치안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치안정보를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정보' 정도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규정은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하는 조직법규에 해당하므로 이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러한 법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소위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인권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은 경찰의 이러한 정보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잘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권을 갖는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에 관하여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6은 피진정인 1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회신고를 한 학생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행위를 동 법령에 기초한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일상적 정보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만약 그러하다면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부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위와 같은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집회 및 집회신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인 관계로 관할 경찰서를 두 차례 방문하여 경찰관 면담과 안내를 거쳐 적법하게 집회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회신고의 배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정보’인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사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인권보

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이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및 「경찰법」 제4조에 의한 경찰작용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1은 경찰관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취함이 적절하고,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정보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계고조치 및 주의조치를 취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2, 3이 소속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에서 학원분야에 대한 정보활동을 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판내 경찰 정보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인들의 개인적인 행위와 책임을 넘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행 법령 및 제도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정보활동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이외에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방법 등 정보활동 시 기준과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담은 법령, 훈령, 지침 등 어떠한 가이드라인 조차도 없다. 경찰 정보관들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을 경찰정보관 개인의 판단에 맡겨둔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기준 및 한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권한남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있는 학교의 간부 및 관련교사들의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낮은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많다. 그러므로 위 학교를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 교육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유사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4, 5가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상보고서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었다. 위와 같이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행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및 제83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해자의 인권침해정도가 클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 4, 5에 대하여 각 계고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4, 5가 소속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위 진정요지 1항 및 2항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서장으로서 지휘책임의 일환으로 서면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별지

관계 규정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보장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제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가.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 중등교육법

가.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가.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나.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자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접수시간을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라.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가.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경찰법

- 가.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 나.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 가.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나.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마.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바.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

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연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제13조 1. 아동의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다. 제13조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라.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마. 제15조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에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9.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나. 제19조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0.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가. 제41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 나. 제45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다. 제45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자를 당해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 가. 제195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의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그 환경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 나. 제196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 다. 제199조(보호자와의 연락) 소년피의자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제20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자를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집회 및 시위 관련

1 2008. 10. 27자 결정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부분을 직권조사하면서 경찰의 광잉진압부분,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 강요부분, 식별표시 미부착부분 등에 대해 검토한 사례

【결정 요지】

- [1]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공권력 행사 중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하지 않았고,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및 주변의 시민들이 다수 부상을 당하였는바, 이는 경찰력을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작전에 대한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 [2] 또한 진압경찰의 위험한 물건 투척행위, ‘살수차’ 사용, 소화기 사용, 통행차단조치 등 집회해산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 [3]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재적위원 11인 중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 위원 김태훈의 반대 의견도 있었음.

【참조조문】 「경찰법」 제4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0조4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을 하여 일부의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 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 나.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 다.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로 인해 비무장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협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 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 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관련하여 2008. 5. 초경부 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시위’라고 함) 과정에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 7. 21. 법무부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조사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에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인권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경찰의 촛불집회시위참여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권력행사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권력행사였는지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후 유사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

촛불집회시위는 2008. 5.초부터 2008. 8.말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는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일어난 촛불집회시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의 월별상황의 개요는 [붙임자료 1]에서 정리하였다.

[붙임자료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에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참가연인원, 출동경력 연인원, 연행자수와 연행자 처리현황, 부상자 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70일 동안 매일 촛불시위가 열렸고 연인원 553,72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959회, 882,010명이 참가하였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참가 연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전 과정에 수백만명이 참가한 정도로 추산하였다.

나. 출동경력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의 출동경력 연인원 수는 전국적으로 6,031중대 542,790명, 서울에서는 4,938중대 444,420명이 출동하였다.

다. 연행자 수와 연행 후 처리현황

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2008. 8. 25.까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총 1,503명을 수사하여(시위현장에서의 체포자 1,416명 포함), 그 중 28명을 구속하였고, 1,33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2008. 8. 25.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약 200여명으로 15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 하였다.

일자별 연행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특정일(2008. 5. 31. 저녁 - 2008. 6. 1. 아침, 2008. 6. 25. 저녁 - 2008. 6. 26. 아침, 2008. 6. 28. 저녁 - 2008. 6. 29. 아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된 약 3달여의 기간 동안 연행자가 균등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자 집회시위의 경우에 연행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연행자 수(경찰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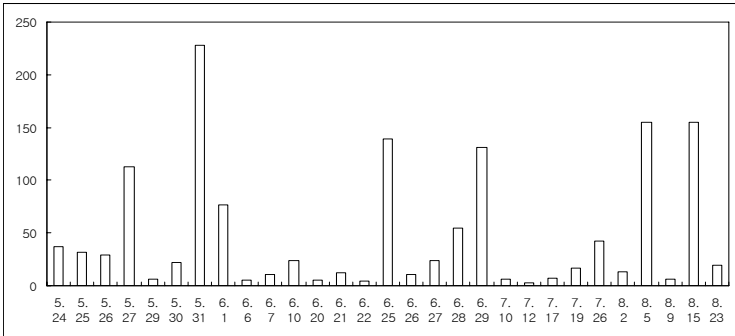
2008. 5. 2.~ 2008. 8. 25.까지 촛불집회 일자별 연행자 수 및 처리결과는 <표 1> 및 <그래프 1>과 같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표 1〉 시기별 연행자 수

연 번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누 계	1,388	9	1,275	56	48
1	2008. 5. 24	37		36		1
2	5. 25	32		32		
3	5. 26	29		23	4	2
4	5. 27	113		88	17	8
5	5. 29	6		6		
6	5. 30	22		22		
7	5. 31	228		202	21	5
8	6. 1	77		61	14	2
9	6. 6	5		5		
10	6. 7	11	2	8		1
11	6. 10	24		23		1
12	6. 20	5	1	4		
13	6. 21	12	2	10		
14	6. 22	4		4		
15	6. 25	139	3	132		4
16	6. 26	11		11		
17	6. 27	24		24		
18	6. 28	55	1	54		
19	6. 29	131		130		1
20	7. 10	6		6		
21	7. 12	3		3		
22	7. 17	7		7		
23	7. 19	17		16		1
24	7. 26	42		37		5
25	8. 2	13		11		2
26	8. 5	155		150		5
27	8. 9	6		6		
28	8. 15	155		148		7
29	8. 23	19		16		3

〈그래프 1〉 경찰 연행자 수의 일자별 분포



라. 부상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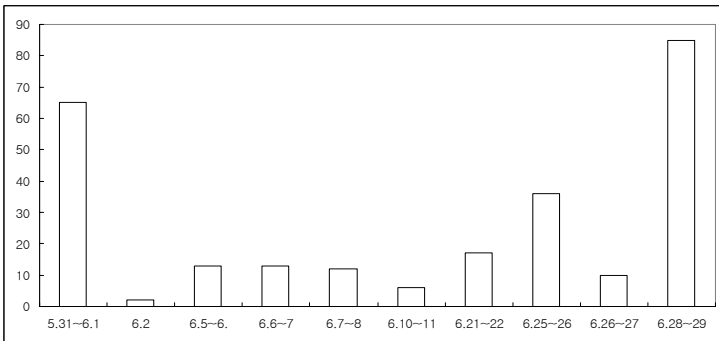
1) 시위대 측 부상자

가) 119구급차 명단으로 본 시위대 부상자 발생 추이는, <표 2> 및 <그래프 2> 와 같다.

〈표 2〉 119구급차로 후송된 시위대 부상자 수

일자	2008.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구호자수	65	2	13	13	12	6	17	36	10	85

〈그래프 2〉 119후송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119구급차 명단을 통해 부상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상자들 중 다수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부상자들만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상자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19명단으로 본 시기별 부상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부상자가 특정일자(2008. 5. 31.-6. 1., 6. 25.-6. 26., 6. 28.-6. 29.)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된 약 2달여 기간 동안 부상자가 균등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의 경우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언론보도와 광우병 대책회의 추정치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 6. 23. 기준으로 시위대 부상자 수가 1천여명(병원후송자 400여명, 중상자 40여명)이고,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9. 3. 현재 시위대 부상자 수를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찰 측 부상자

가) 서울지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8. 6.까지 발생한 경찰 부상자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경찰 측 부상자 수

총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89	95	394	55	7	48	434	88	346

나) 일자별 경찰 부상자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자별 경찰 부상자 발생수

월일	2008. 5.24	5.25	5.26	5.28	5.29	5.31	6.1.	6.6.	6.7.	6.20	6.21	6.22	6.25	6.26	6.28	7.5.	7.19	7.26	8.5.
부상자수	11	4	7	2	25	75	5	34	44	1	6	3	84	19	165	1	1	23	1

진압경찰 부상자 발생도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일자도 시위대 부상자 수가 많이 발생한 날짜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동시에 증감하는 것을 보여주며 위 특정일자의 집회시위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평가

위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에서 연행자 수, 시민 내지 시위대 측 부상자 수, 경찰의 부상자 수가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위 특정일에 양측이 서로 간에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3. 조사 대상과 범위

위 제2항의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경찰추산 연인원 55만여명 이상이라는 다수의 시민들이 3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부상을 당하거나 연행을 당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진압경찰관 역시 수백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장기간의 촛불집회시위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집회시위참여자, 진압경찰, 주변시민, 집회지역의 주변상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촛불집회시위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촛불집회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경우, ② 촛불집회시위참가자들과 진압경찰 간의 충돌로 인하여, 진압 중이던 경찰대원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경찰장비가 손괴되는 등 시위대의 물리적 행사가 있었던 경우, ③ 촛불집회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②의 경우와 같은 시위대의 물리적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하였거나, 시위대의 물리적 행사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응한 공권력 행사가 과도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검토한 조사배경과 목적 및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서 검토한 수많은 구성원들의 피해 가운데 오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가 보장하는 인권(여기에는 재산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이 제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인류의 역사 및 우리사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심각하였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시민에 의해 발생한 일반시민 및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등)의 기능과 중복이 되고 기존의 사법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에 의해 발생한 일반시민 및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예를 들면, 시위집중인 전의경 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권한을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헌법과 법제는 이러한 유형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그에 따른 권한의 배분으로 인하여 촛불집회시위 현장 인근의 상인들이 입은 재산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재산권이 보장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및 일반시민이 입은 인권침해문제는 폭력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등의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그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둘째, 위와 같은 촛불집회시위는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현행 집시법 규정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신에 따라 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하였던 관

제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적법, 타당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과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검토한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 중 ①의 경우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행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반하는 조사권의 발동이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③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의 사안이다. 이러한 ③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상황이 포함되는데, 우선, 경찰이 집회를 해산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②의 경우와 같은 촛불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물리적 행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인권침해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설령 일부 과격 시위대의 물리적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압함에 필요한 공권력행사의 최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진압경찰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이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③의 경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위 ③의 경우만을 조사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상으로 한정하여 조사 및 심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 'II. 판단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내법상의 기준과 국제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를 하면서 촛불집회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은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촛불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일부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상으로부터 진압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일환 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4. 직권조사결정과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21.부터 2008.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접수된 사건만으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7. 11.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조치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2008. 7. 11.부터 9. 중순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찰지휘관, 전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56명 이상의 대상자(대면조사 148명, 전화 및 서면조사 108명 등)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답서 154개, 진단서, 동영상, 사진 등 관련증거자료 수백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대원 중상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이들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한 대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피해자 일부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집회시위가 계속 진행되는 등의 당시 상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진압경찰 중상피해자 27명 등 총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해상황 정리 자료(피해자 이름, 일시, 장소, 상처부위, 치료기간, 피해경위를 간략히 요약)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II. 인권침해성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 이외에,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함에 있어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판단기준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국내법상의 법규정 및 집회 진압,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다. 이 가운데 훈령과 지침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도 현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국가들 간의 합의이므로 역시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가.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국내규범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가)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경찰봉·방패 (그 외 생략)
4. 기타장비 : 살수차 (그 외 생략)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훈령과 지침

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진압봉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 살수차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나) 「물포 운용 지침」

<08. 물포의 운용 방법>

2. 살수 방법 (덧붙임 ‘물포 운용 대형’ 참조)

다. 직사 살수

(1) 살수요령 : 물살세기 1,000 내지 3,000rpm을 사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으로 시위대에 도달되도록 하는 운용방법

※ 예시) 불법시위시 전면의 폭력시위대에는 직사, 후면의 시위대에는 고공살수(곡사)하여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며, 3,000rpm 이상 사용은 안전을 위하여 삼갈 것

(2) 사용요건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가) 곡사살수를 하여도 해산치 않는 경우
- (나)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 ※ 직포 운용시, 적정 안전수압을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위를 목표로 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 (다) 차벽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 ※ 봄대 또는 호스를 이용, 차벽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살수

나. 국제규범

이하의 국제적 기준들은 현재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제 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은 법률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로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발간 “인권과 법 집행: 경찰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1997, pp.84-86.).

- 1)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 법집행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2조).
 - 법집행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범주에서 요구되어지는 정도로만 유형력을 사용해야 한다(제3조).

<제3조 주석(commentary)>

- (a) 본 조항은 법집행관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예외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법집행관들이 유형력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는 범죄인의 체포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 (b)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집행관의 유형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비

례의 원칙에 대한 국내조항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정당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형력 사용을 승인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c)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무기의 사용(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을 자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범인이 무장하여 항거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방법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외의 무기사용은 금지된다. 무기가 발사된 모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고가 주무당국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의 채택)

<일반규정>

- 제1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관들에 의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무기와 유형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제를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만들에 있어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은 무기와 유형력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원칙 합법적인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법집행관은
 - (a)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인 목표달성에 비례하여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자제하고
 - (b) 위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c)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적 도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실히 하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d) 가능한 신속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대한 영향을 입은 사람의 친한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도록 한다.
- 제7원칙 정부는 유형력과 무기의 자의적인 사용과 남용을 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확실히 한다.
- 제8원칙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 등과 같은 예외적인 환경은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특별규정>

- 제9원칙 생명에 위협을 주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의 실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협을 내보이며 법집행관들에 대해 항거하는 사람을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의 경우, 그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이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치명적 무기의 사용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불법시위 경비>

- 제12원칙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규정하듯이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법집행기관, 법집행관들은 유형력과 무기의 사용은 제13원칙과 제14원칙에 따라서만 용인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제13원칙 법집행관들은, 불법이지만 비폭력의 시위를 해산함에 있어, 유형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유형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제14원칙 폭력시위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들은 무기사용보다 덜 위험한 방법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들은 제9원칙에서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24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상급자가 그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법집행공무원이 유형력과 무기를 불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상급자가 그러한 행위를 예방, 중지, 또는 보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상급자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국내 및 국제규범들은 모두 동일하게, 경찰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본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평화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 유형력과 무기의 사용이 최소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제13원칙 및 제14원칙), 법집행관이 불법하게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7원칙 및 제24원칙).

2.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개별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잉진압 부분과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강요 부분, 식별표식 미부착 부분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과잉진압 부분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시 (i) 과도한 공격행위, (ii) 과도한 장비사용, (iii)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iv) 공격적인 진압작전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결정문 구성 편의상 대표적인 일부 사례만 결정문 본문에서 예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사례(일부 사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기각 또는 각하하였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건 25건 및 2008. 7. 1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하여 검토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는 [붙임자료 2]에서 정리한다.

가. 과잉진압 부분

1) 과도한 공격행위

진압경찰의 과도한 공격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나) 지켜보는 사람 및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마)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바) 의료지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08직인11)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상황에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무장상태로 후퇴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달리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 사건(08진인2506)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 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방패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어깨부위 등을 찍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에 3센티 크기의 열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당시 경비업무를 맡았던 위 중대장들은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거나 시위대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시위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는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등 진압경찰의 공격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93), ○○○ 사건(08진인2487,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등이 있다.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여, 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 수백명은 2008. 6. 28. 자정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나온 후 시청쪽 방향으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을 계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의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서울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중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조자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4기동대(40중대, 302중대, 306중대, 41중대, 805중대,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의 20대 여성인 점, 다른 피해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등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503),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부딪혀 넘어졌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중대장, 302중대장, 306중대장, 41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정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및 중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활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40, 302, 306, 41, 805,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머리를 감싸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치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의 20대 여성인 점,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1966),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522), ○○○ 사건(08진인2527), ○○○ 사건(08진인2513), ○○○ 사건(08진인2521) 등이 있다.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14세인 자로서,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

경찰이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어머니 ○○○의 각 진술, 2008. 6. 9. 서울 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8. 05:00경 ○○○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머리 뒷부분 열상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고,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신장 150cm정도의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2532), ○○○·○○○ 사건(08진인2484, 08진인2482),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를 이탈한 진압경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시위대에 합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들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사)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 현장에서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촛불집회현장에서는 진압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일부 과격한 집회 참여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사실들의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 등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찰관들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과 무관한 상황에서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 및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또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설령 경찰이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과 정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과도한 장비사용

가) 방패와 경찰봉

진압경찰의 방패 및 경찰봉의 과잉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개별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병·의원 진단서, 현장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중 33명(○○○, ○○○ 등)이 진압경찰의 방패와 경찰봉에 의해 가격당하여 부상당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안면이나 머리부위를 가격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각 구체적인 사례별로 당시의 상황 및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진압경찰이 방패와 경찰봉으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얼굴 또는 머리부위’를 가격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위 피해자들은 당시 시위대열에서 빠져 있거나 후퇴하는 중인 경우 또는 비무장상태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저지하는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진압경찰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방패와 경찰봉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당방위 상황은, 적어도 위 개별사건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패와 경찰봉 가격행위는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21조,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4원칙과 제13원칙 및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제2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살수차

진압경찰의 살수차 과잉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6건(○○○, ○○○, ○○○, ○○○, ○○○, ○○○ 사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현장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차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인권침해여부에 대하여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하였음.)

검토하건대, 현재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에 ‘살수차’가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부령 이상의 규정 중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살수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 하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단지 위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과 지침(Ⅲ. 1. 가. 3)항 참조)은 있으나 이는 자체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규범력이 없으며, 그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살수차’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바, 그 구체적 사용기준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의

요건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없이 살수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방법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화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진압경찰이 이번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진압용으로 '소화기'를 빈번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화기를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9조가 있으며, 위 규정에는 소화기의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바, 소화기는 화재진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을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화기의 분말가스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원회가 감정의뢰한 소화기분말 성분은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NH_4H_2PO_4$)이고 이는 분말소화약제나 비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공약품으로서 많은 양의 분말을 흡입하였을 경우 오심 및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접촉시 발적 및 가려움, 눈에 접촉시 발적 및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현장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진압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나 집회참가자들의 시야가 흐려져 인체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소화기가 시위현장에서 진압장비로 널리 쓰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원래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봉, 방패, 살수차 및 소화기 등을 사용하였는바, 일부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여 집회참여자 등 시민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장비들을 사용하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던 당시 집회상황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자체가 애초에 ‘불법집회·시위’등을 포함하여 각종 장비의 사용기준 등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위 규정 제6조 및 제13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비무장상태이거나 후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위 장비들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넘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3)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경찰의 투척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개별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 투척물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 사건은 8건(○○○, ○○○, ○○○, ○○○, ○○○, ○○○, ○○○, ○○○ 사건 등)으로, ‘물건투척행위’는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주요한 피해발생요인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위대도 진압경찰에 대해 물건투척행위를 하였으므로 진압경찰에 대해서만 투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과격한 시위 참여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하여 투척물을 던진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투척물에 의한 부상 등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머리 부위의 부상인바, 촛불집회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압경찰이 방석도 착용 등 안전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집회참여자들에 비하여 투척물에 의한 경찰들의 치명적 부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집회참여자들의 투척행위가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이를 이유로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적법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법원 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척물을 던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원고를 포함한 시위대들이 하이닉스 청주공장 복문에서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던 전투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이 돌을 시위대에게 던

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할 것”, 청주지방 법원 2006가합3537(손해배상).

따라서,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일부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유형상 대원들이 우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도 하지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상태의 집회시위참여자들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지휘관에 의한 대원들의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공격적인 진압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58건 중 46건은 특정일자(의)의 촛불집회에 집중되었다(2008. 6. 28. 종로 6건 및 태평로 27건, 2008. 6. 1. 13건 등). 이러한 특징은 119구조대가 호송한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와, 경찰이 연행한 사람 수의 일자별 분포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양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목격자, 경찰 지휘관, 경찰측 부상자들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및 사진,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1. 2.항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참가자측 부상자 발생이 진압경찰대원들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한 바도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진압작전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판단을 하였다. 특히 대표적 사례인 2008. 6. 28. 태평로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당시 경찰진압작전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붙임자료 3]에서 정리하였다.

가)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 집회 및 작전상황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작전을 개시하여 약 3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한겨레신문과 KBS 추산). 이 충돌과정에서 진압경찰도 약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태평로 상황에 대하여 제기된 33건의 사건조사를 통하여 27건에 대해 그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진인2533), ○○○ 사건(08진인2487), ○○○ 사건(08진인2493), ○○○ 사건(08진인2522), ○○○ 사건(08진인2521), ○○○ 사건(08진인11), ○○○ 사건(08진인2515), ○○○ 사건(08진인2513), ○○○ 사건(08진인11),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진인2532),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358),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84, 08진인2482), ○○○ 사건(08진인2506), ○○○ 사건(08진인253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98), ○○○ 사건(08진인2517), ○○○ 사건(08진인2485), ○○○ 사건(08진인2495), ○○○ 사건(08직인11) 등).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격 시위대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작전이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격적인 진압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의 시위대에 의해 포위, 고립된 전의경 대원들이 폭행당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압경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진압경찰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중에 피해자들이 뒤로 돌아 후퇴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부상당한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경찰들의 투척물이나 살수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많은 부상자(경찰 포함)를 발생하게 한 시위대와 경찰의 최초의 충돌(이 충돌로 전의경 대원 다수가 부상당하였음)은, 당일 자정경에 경찰 약 100여명이 시위대 약 3,000여명 중심으로 돌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진압작전은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공격적인 진압작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압작전을 지휘하여 결과적으로 수많은 진압경찰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결과를 초래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및 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동본부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나) 2008. 6. 28. 자정경 종로입구 상황

경찰은 2008. 6. 28. 23:55경 차벽이 열린 후 종로입구쪽에서 해산작전을 개시한바, 진압경찰이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에서 당시 후퇴하고 있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집회참여자들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을 가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상황에 대한 11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6건(○○○ 사건 (08직인11), ○○○ 사건(여,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9), ○○○ 사건(08진인2529), ○○○ 사건(08진인2494), ○○○ 사건(08진인2508)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경찰관의 업무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사회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고 장비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전문(前文) 참조). 그러나,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장비 등의 사용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 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원칙이다.

위와 같은 대원칙에 따른 기대와는 반대로, 이번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일부 과잉진압행위(과도한 공격행위, 과도한 장비사용,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공격적인 진압작전 등)는 위 각 항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의 공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물론 위 I.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 기간 도중에 다수의 경찰관 및 전의경 대원이 부상을 입고 일부 시위대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경찰의 일부 과잉진압행위는, [붙임자료 2]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무장상태로 후퇴하거나 이미 신체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이 인정되는 집회참여자 또는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 및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하여 행해진 과도한 진압·공격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위 인권침해 사례들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기타의 물리적인 공격행위로부터 진압경찰관의 안전을 방어하거나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통제제한 부분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찰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2008. 5. 28. 새벽 종로에서 촛불문화제 종료 후 거리 시위하던 참가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청계광장주변 및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종로1가의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08진인2395, 08진인2290).
- 나) 2008. 5. 28.~2008. 5. 29.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문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시점에 청계천으로부터 사방에 이르는 도로와

인도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귀가하려는 시민과 장시간 실랑이를 벌임(08진인2395, 08진인2290).

- 다) 2008. 5. 29. 22:50경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시위대 해산 후에도 전경들이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보행권, 통행권을 침해함(08진인2395, 08진인2290).
- 라) 2008. 5. 31. 21:00경 교보문고 앞에서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거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 앞 인도를 봉쇄하여 ○○○ 등 일반 통행인들의 통행을 가로막음(08진인2395, 08진인2290).
- 마) 2008. 6. 10. 23:30~2008. 6. 11. 00:30 사이 정보통신부 뒷길 근처 골목길을 전경버스로 막아 놓아 ○○○, ○○○, ○○○ 등 인근주민들의 귀가를 방해하였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무시하거나 ‘여관에서 자라고 말함(08진인2395).

2)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들 및 목격자 ○○○, ○○○, ○○○, ○○○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자료 및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요지 가), 나), 다), 라), 마)에 나열된 일시·장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 또는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경찰이 시위대의 중요시설(청와대, 미국대사관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인근 도로 및 인도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필요한 조치였음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통행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하는 모든 시민을 시위대로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그 접근을 완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조처로 말미암아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며, 경찰은 향후 경비업무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제한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관련 개별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4]에서 정리한다. 이하에서는 개별사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행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의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비록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들은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식별표시 미부착 부분

1) 피해주장 요지

- 가)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에 집회시위 경비업무(시위 진압)를 할 때 그 착용 중이던 명찰을 검은색 테잎으로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 나) 불상의 부대 소속 진압경찰은 2008. 6. 29. 01:30경 태평로에서 전투모와 방패 등에 표시되어 있던 부대번호를 가리거나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는 등 아무런 식별표시가 없는 상태로 진압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2008. 6. 4. 23:30 'MBC 마감뉴스' 및 2008. 6. 29.자 오마이뉴스(사진포함)의 각 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2008. 6. 1. 및 2008. 6. 28. 촛불집회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진압경찰들은 명찰을 검은색 테입으로 가리거나 부대표시 없는 헬멧과 방패를 사용, 또는 명찰이 아예 없는 의복을 입은 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에 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일부 진압경찰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압경찰대원들은 명찰을 달거나 공개할 경우 시위대가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때문에 대원들의 인권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름이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이면 이름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인권적 측면에서 본 전반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긍정적인 측면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1) 충돌이 있었던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표1>과 <표2>는 부상자와 연행자 발생이 특정일(연행자의 경우 2008. 6. 1. 오전 및 6. 25., 부상자의 경우 2008. 6. 1. 오전 및 6. 28. 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촛불집회시위는 2008. 5. 2.부터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 진행되었음에도 그 중 60여일간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경찰이 방어적 개입을 하였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촛불집회시위의 특징 중 하나는 집회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적으로 해산되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다는 점인데, 경찰이 성급하게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대처한 점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위법한 집회시위를 방관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급한 진압이 시위대를 포함한 다수의 평화적 집회참여자 및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대한 공격적 개입을 자제하고 신중적으로 대처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 2) 2008. 6. 10. 촛불집회와 같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날 시위자검거보다는 해산 위주의 대응을 하고 이로 인해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한 점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2008. 6. 10.과 2008. 7. 5.은 오히려 연행자와 부상자가 소수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찰이 대규모 시위의 경우 공세적 대응보다는 방어적 대응을, 검거보다는 해산위주의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대응은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제13원칙)'과 합치하는 법집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2008. 5. 2. 촛불집회시위가 시작된 후 2008. 6. 28.까지 집회가 열리는 것을 원천봉쇄하지는 않았다. 2008. 6. 29. 시청앞 광장을 원천봉쇄한 이후 7월에 들어서는 빈번하게 시청앞 광장 등을 원천봉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지만, 2008. 6. 28.까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의 헌법적인 중요성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아니하고 신중적으로 대처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측면

이상의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장기간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기간 동안

대부분 방어위주의 경비업무를 행하였으나, 몇몇 특정일의 경우 경찰과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인권침해사례는 전의경대원들이 현장에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에서 기인하는 바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의 인권침해사례가 특정일에 집중되었고 그 특정일의 진압작전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위에서 검토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격작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업무에서 방어위주의 작전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및 진압장비의 부당 사용에 관한 견해 및 여론 등이 있을 때에는, 경찰간부 및 지휘부는 과연 그러한 견해 등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유형력과 진압장비를 불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 중지, 보고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충실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상과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찰간부에 대하여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7원칙 및 제24원칙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이 이번 촛불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묵인하고 처벌하지 아니한 것(impunity)임은 그 동안의 역사 및 수많은 식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Ⅲ. 결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강제적·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찰'은,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 존중의 이념하에 공권력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고 품위있게 행사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권력이 행사됨에 있어서 남용될 소지는 항상 존재한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다(‘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전문(前文) 참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촛불집회시위 조사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는 과도한 공권력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문 기재와 같은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행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권력이 부당하게 남용되어 행사되는 것과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일자 집회에 다수의 시민과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정일에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펼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진압경찰관 및 시위대, 주변의 시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경찰에서는 이를 “안전진압,” “인내진압”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다.
3.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안국동 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 진압경찰과 집회참여자들 및 주변의 시민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더구나 이러한 부상은 일부 시위자들로부터 동료가 폭행당한 것을 본 전의경 대원들의 우발적인 행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경찰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작전에 대한 지휘책임 및 불상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집회참가자가 진압경찰에 대하여 위협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이, 진압경찰이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및 인근시민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살수차'의 사용은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실제 이러한 살수차의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살수차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의 구체적 요건 즉,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의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소화기의 원래 용도는 화재진화를 위한 것으로서 화염 등을 향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용법인바,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소화기의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7.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통행차단조치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8. 경찰청장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9.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점은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및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재적

위원 11인 중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 위원 김태훈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의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위원 8인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IV. 반대의견

1.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결정 주문 중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과, 제2의 나항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부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5.초부터 6.말까지 진행된 촛불시위는 실정범위반의 집회·시위로서 이러한 시위행위에 대하여 범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뤄진 경찰의 진압행위는 전체로 보아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일부 전경들의 과도한 공격적 진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경고보다는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수의견 결정문 주문 2 나.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부분에 대하여

2008. 6. 1. 오전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다른 날에 비하여 많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작전 중 예기치 않은 시위대의 행위로 인한 진압계획 실패로 인하여 우발적 상호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우발적 상호 폭력행위가 많이 일어난 원인이 경찰의 진압작전계획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작전을 세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이 처음부터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문 주문 2 나.항에서 경찰청장에게 6. 1. 오전 안국동 로타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우발적 폭력사태까지 작전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보므로 결정문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원 김태훈의 반대의견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전부 반대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직권조사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사안은 직권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2008. 6. 경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전·의경들과 경찰 간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여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하여 2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¹⁾. 심지어 ○○○ 사건(여, 08직인 11)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제기 후 재판까지 마친 사실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원회로서는 마땅히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직권조사 대상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그러한 사건들은 이를 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을 내린 것은 우선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위원회법 제35조 제1항 참조). 위원회법을 외면한 이러한 위원회의 무리한 조

1) 2008. 10. 9.자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사권 발동은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과의 충돌을 초래하여 국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2008. 5. 21.부터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집회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36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그러자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08. 7. 11. 경찰의 촛불집회시위 대응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같은 해 7. 11.부터 9월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찰지휘관, 전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14명 이상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같은 해 9. 10. 제14차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2., 같은 달 30., 같은 해 10. 13., 같은 달 27. 등 4차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위원회는 같은 달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의기간 중 위원회는 여러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수많은 참고인 중 어느 한 사람도 불러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 적이 없다²⁾. 결국 다수의견은 너무나도 가볍게 조사관들의 조사내용을 모두 진실하다고 전제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관들의 제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실들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그 고유의 업무와 권한에 속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다수의견의 이 사건 판단은 잘못된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이 자유가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유도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재산권, 사생활 보호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2) 진정인측 피해자인 서경희를 불러 진술을 들은 바 있으나, 이는 사건 전반에 관한 참고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이 사건 폭행 당시 아무런 물리력이 가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진압 경찰관 1명이 갑자기 쓰러지려 하기에 자신이 그를 부축하여 보호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원리로서,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모든 인권의 동등한 중요성을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³⁾. 따라서 보호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여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83 참조).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도 이 이치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 사건들, 특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8. 6. 1. 및 같은 달 28. 사안들의 원인 및 배경이 된 이른바 촛불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채 야간에 장기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불법·폭력시위였고, 이 사건 피해들은 경찰의 위 불법시위의 해산·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이 사건 피해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보고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피해는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에 의한 것이지만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불법적인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여 과잉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법집행자로서의 경찰은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시위대에 그 이상의 물리력을 확보·행사하여야만 시위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경찰청 경비부장 000, 기동본부장 000, 4기동단장 000의 각 진술, 2008. 6. 2.자 및 같은 달 30.자 언론보도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촛불시위는 2008.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70회 연속 진행되었고, 시위가 야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자연 해산되지 않고 일부 시위대는 아침까지 도로 점거 상태를 지속하였음에도 경찰은 진압 작전을 펼치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처하여 그 중 60여일은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⁵⁾. 그런데 2008. 6. 1. 아침 시위대들은 도심 교통을 완전히

3)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page 2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13쪽 참조

4) 같은 날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각 기사 참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마비시키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여 안국동 로타리 부근 등 청와대 입구 1km까지 육박하였고, 이에 경찰은 부득이 전경 버스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고 소화분말기를 뿌리며 저지하였으나 시위대는 전경 버스를 타고 넘거나 버스에 밧줄을 걸어 넘어 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2008. 6. 28. 시위대들 수천명은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 1층의 소방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차벽 너머 경찰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살수 맞대응’을 하였다. 서울 세종로에서는 장도리와 쇠파이프로 전경버스의 방호철망을 뜯어내 유리창을 깨고 까나리액젓 등을 경찰에 뿌리며 창틀에 200m짜리 쇠줄과 밧줄을 걸고 끌어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폐차지경에까지 이른 11대를 포함하여 35대를 파손하였다. 시위대 앞줄에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면서 철근 절단기로 전경버스를 분해하기도 하였다. 또 시위대 100여명은 현장에 배치된 살수차 바퀴의 바람을 뺀 뒤 호스를 꺼내 물을 모두 빼고, 백미리에 검은 스프레이를 뿌려 사용치 못하게 했으며 살수차의 방수구를 막고 유리창을 부순 뒤 운전석에 오물을 투척하며 손괴하였다. 나아가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수백명의 시위대는 고립된 경찰 기동대 50중대와 306중대 소속 중 150명을 둘러싸고 10분 이상 쇠파이프와 각목, 장도리와 낫 등을 무차별 휘둘러 전·의경 70여명이 두개골 함몰 등의 중경상을 입었다. 마침 고립된 위 경찰대원들을 따라가던 후속 경찰부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위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여 시위대를 해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은 촛불시위대가 장기간 도심을 점거하며 불법 시위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압하지 아니하고 시종 인내하며 방어적인 대응을 해 왔으나, 2008. 6. 1.에는 시위대가 시위 목적을 벗어나 청와대까지 진입하려는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나아가 2008. 6. 28.에는 인명 살상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고립된 경찰을 공격하여 중경상을 입히는 등 과격한 폭력행사로 나오자 경찰은 부득이 강제해산을 통한 시위진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은 경찰이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5) 이 사건 보고서 167쪽 참조

○○○, ○○○, ○○○의 경우), 지켜보거나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의 경우),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 ○○○, ○○○, ○○○, ○○○, ○○○, ○○○, ○○○, ○○○의 경우),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 ○○○, ○○○, ○○○, ○○○, ○○○의 경우),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공격(○○○, ○○○, ○○○, ○○○, ○○○, ○○○, ○○○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공격(○○○의 경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행위에 의한 과잉진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례들의 발생경위나 불법폭력 시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 ○○○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는 시위대가 시위 목적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고립된 경찰을 둘러싸고 쇠파이프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므로 경찰이 이를 긴급히 제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없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쌍방의 물리력이 충돌하여 시위대에게 이 사건 피해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이거나, 급박한 진압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이를 공격적인 과잉진압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가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측에서 극구 그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측의 일방적인 진술 또는 신빙성이 없거나 단편적인 일부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경찰의 진압행위를 전체적으로 과도한 공격진압이라거나 과잉진압 내지 인권침해라고 단정한 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단견이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오판이라 할 것이다(인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의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이 사건 촛불시위 전 과정에서 경찰은 대체적으로 방어위주의 작전을 수행하여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는 점에 비추어 이유 모순의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⁶⁾. 나아가 다수의견은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타리 부근의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에 포위돼 집단구타를 당하는 전·의경을 구출하기 위한 위 각 진압작전에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은 돌발적인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위 충돌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어서 전개된 위 각 진압작전에 관련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경찰청장에게 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수의견은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투척행위의 금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투척행위의 엄단을 강력하게 지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척행위는 과격한 불법폭력 시위대의 투척에 맞서고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일부 전·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극히 우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므로 특별히 투척행위를 방지할 보완대책 마련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에 대해 부령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물포 운용지침(경찰청 지침) 등에 의하여 살수차의 물대포 사용규정이 안전시험을 거쳐 자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이를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바. 다수의견은 소화기 사용의 불법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1999년 세계에서도 드물게 무취루탄 원칙⁷⁾을 선언한 이래 최루탄 사용을 규제하다보니 극렬한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 않을 수

6) 이 사건 보고서 177쪽 참조

7)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독일만이 채택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극렬한 폭력시위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간에 직접 충돌을 방지할 완충지대의 형성을 위하여 최루탄 대신에 그 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단 조치로 인하여 거주민과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거주민과 통행시민이 불편을 겪었던 것은 주로 시위대의 불법적인 도로점거로 인한 것이었고, 수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현장상황을 외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은 반성문 제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인정하고 있다⁸⁾. 또 범죄의 예방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로서는 경미사범을 조사하여 훈계방면하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의 반성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피체포자에게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다수의견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다.

자. 다수의견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별표시 미부착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로 하여금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서 자체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촛불시위는 불법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 이 사건 보고서 176-177쪽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⁹⁾, 오히려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는가 하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진압경찰을 포위·공격하는 극렬한 불법폭력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있을 지도 모르는 진압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근무복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차. 끝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에 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과잉진압이 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전제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한’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이 사건 촛불시위를 진압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위원회는 인권개념을 폄훼하고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를 후퇴시켰으며 ‘떼법’ 만능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연케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2008. 10. 27.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위원 황덕남

위원 조국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9) 이 사건 보고서 186쪽

[붙임자료 1]

촛불집회시위 월별상황

지난 2008. 4.부터 2008. 8.까지 촛불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촛불시위 이전 2008년 4월(이하 '연도' 생략) 상황

- 4. 18. 소고기 협상 타결
- 4. 19. 한미정상회담
- 5. 1.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운동" 20만명 이상 서명

2. 5월 상황

- 5. 2. 제1차 촛불시위
- 5. 6.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출범식(이하 '대책회의'라고 함)
- 5. 14. 농림부 장관고시 연기 발표
- 5. 20. 정부 '쇠고기 추가협약' 결과 발표
- 5. 22. 대통령 쇠고기 관련 담화
- 5. 24. 최초의 거리행진, 최초 연행자(37명), 부상자 발생
- 5. 25. 검경 국정원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하여 "연행된 시위자들 엄정처리방침"공표
- 5. 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연행된 36명 전원 불구속 입건 공표
- 5. 27. 정부고시예정
- 5. 28.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행자 구속에 반대의견 청와대 및 정부에 전달
- 5. 31. 시위대 안국동 방면 경찰저지선 돌파. 효자로, 삼청동로, 안국4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규모 충돌. 다수의 부상자 발생

3. 6월 상황

- 6. 2. 농림부 쇠고기 고시 유보. 5. 31.밤과 6. 1. 새벽 사이에 연행된 225명 모두 석방
- 6. 5. 대책회의 6. 5. 19:00부터 시작해서 6. 8. 저녁까지 이어지는 "72시간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연속 국민행동” 시작

- 6. 6.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사실상 재협상불가 방침 천명. 시청앞광장 등 15만여명 시위(언론추산). 밤부터 시위양상 격렬해지기 시작. 경찰버스 유리 파손, 쇠파이프 등 장(약 10여개), 구호도 재협상요구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으로 변화.
- 6. 10. 약 40만여명이 태평로 일대에 모여 촛불시위(언론추산, 경찰추산은 8만여명).
- 6. 12. 정부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 추진 공표
- 6. 19. 이명박 대통령 추가협상관련 기자회견
- 6. 21. 추가협상 결과발표. 시청앞광장에서 5만여명 시위(언론추산). 시민 2만여명 세종로4거리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
- 6. 22. 새벽 시위참가자 연모씨 경찰버스 투입구에 불을 붙이려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혀 인계.
- 6. 24.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는 엄격히 대처”방침 천명
- 6. 25.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고시 관보게제외되.
- 6. 26. 장관 고시 발효. 한승수 총리 담화문에서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매우 유감,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선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방침 천명.
- 6. 28.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약 400여명(시위대 300여명, 경찰112명) 부상자 발생. 부상자는 경찰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와 광화문우체국 앞 대치선을 넘어 시위대를 몰아붙이며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6. 29. 경찰 시청앞광장을 원천봉쇄. 이동관 대변인 “심야불법폭력시위는 원천봉쇄하는 것이 정부방침”, 정부는 오후 법무부장관 등 명의로 담화 발표 “촛불시위가 과격폭력시위로 변해감에 따라 최루액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 6. 30. 저녁 7시 30분경 시청앞광장에서 사제단 비상시국미사 3만여명 집결(언론추산).

4. 7월 상황

- 7. 1. 20:00경 시청앞광장 시국미사를 마친 7천여명 시민들 침묵 속 평화행진 시작. 촛불시위 21:40경 종료
- 7. 4. 시청앞 광장에서 불교계 시민과 신도 2만여명 모인 가운데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 개최.
- 7. 5. “국민승리의 날”, 시청앞광장부터 동아일보사옥까지 시위대 들어 참. 20만 추산(언론추산). 승례문과 명동 종로일대에서 행진. 충돌은 없음.
- 7. 6. 경찰 시청앞광장 원봉. 원봉 전 광장에 집결한 시민 1천여명 19:00경 60번째 촛불시위.
- 7. 7.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평일 촛불시위를 더 이상 직접 주최하지 않는 대신 주말 등 특정일의 집중 유도하고 집중 촛불시위의 날로 정해 대규모 시위를 주최하기로 함. 시청광장 원봉 500여명 촛불시위 자진해산
- 7. 12 서울시청 원천봉쇄
- 7. 19. (토) 저녁 청계광장 4천여명 73번째 촛불시위.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종로일대와 을지로, 신문로, 서울역 등지에서 산발적인 거리시위. 20일 오전까지 대치. (※촛불시위와 관련 연행된 사람 1004명. 13명 구속, 893명 불구속 입건, 56명 즉심회부, 26명 훈방)
- 7. 22. 정부 인터넷 종합대책 발표, 한승수 총리 “포털사이트의 유해정보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사회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7. 26.(토) 15:30경 보신각 앞 시민 3백여명 거리행진 시작하여 종로 일대 행진. 19시경 청계광장에서 시민 3천여명이 참여한 80차 촛불문화제 시작. 19시 50분 3천여명 거리행진 시작하여 이미 거리행진하고 있던 2천여명과 종각 4거리에서 결합. 22:10경 진압경찰 거리로 진입하여 해산 시도
- 7. 30. 서울경찰청 시위 진압 업무를 전담하는 직업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 창설

5. 8월 상황

- 8. 1.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회견담회에서 “2일부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해 빠른 시간 안에 해산하고 검거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색소 분사기를 사용해 과격 폭력 행위자, 장시간 도로 점거자 등은 인도 등으로 도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힘.
- 8. 2. 17:30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앞에서 시국미사 마친 사제들 보신각으로 거리행진, 서울지역대학생 연합 18시 청계광장에서 자체행사, 19시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주관 촛불문화제 참가. 경찰은 서울시청, 청계광장, 보신각 주변 도로 원천봉쇄, 경찰관 기동대 배치
- 8. 5.
 - 19:20 90차 촛불문화제 (5천여명)
 - 20:30 보신각 앞에서 시민 1만여명 보신각 앞에서 경찰의 체포작전 시작. 20:40 살수차 사용하면서 강제진압 64명 시민 연행, 시민들 흩어져 게릴라성 시위. 총 167명 연행. 색소 살수 처음 사용
- 8. 7. 경찰 촛불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자의 구속 여부에 차등 점수를 지급해 특진 등 포상을 할 계획 발표
- 8. 8. 검·경은 지난 100일 동안 이어진 광우병 반대 도심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 1288명을 연행해 17명을 구속하고 1136명을 불구속 입건.
- 8. 9. 저녁 보신각에서는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해 ‘94번째 촛불시위’, 종로2가 탑골공원 쪽으로 이동하며 ‘15일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을 뿌리며 행진, 경찰 6명 연행
- 8. 10.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주최로 ‘100차 촛불시위 승리를 위한 촛불 콘서트’
- 8. 13.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노동부 등은 이날 8:15 촛불시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15일 시위 주최자, 도로 점거 등 야간 시위 참가자, 과격 폭력행위자 등을 엄단하겠다”발표
- 8. 15. 경찰 서울 도심 일대에 217개 중대, 2만여명의 병력으로 원천봉쇄, 시청앞과 청계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함.
 - 19:30 시민 8천여명(경찰 추산 5500여명)은 한국은행 앞 네거리로 자리를 옮겨 100번째 촛불시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 02:00 시민들 해산, 종로 차량통행 재개 , 이후 종로, 명동, 동대문 등지에 서 새벽까지 게릴라성 시위 이어짐. 사복체포조 처음 투입, 157명 연행.
- 8. 23.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으나 광우병 대책회의의 시위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누리꾼 250여명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시위 원천봉쇄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24일 오전 6시 해산. 19명 연행
- 8. 27. 종교 편향을 규탄 범불교도 대회가 20여만명(경찰 추산 6만명) 시위
- 8. 28. 한나라당 집회·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추진, 복면 등 신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시 처벌, 쇠파이프 등 휴대, 사용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의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금액 조정 등 불법시위 차단을 위한 집시법 개정 방침도 발표. 끝.

[붙임자료 2]

구체적 사례별 인권침해성 검토

이하에서는 촛불시위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피해사례에서 드러나는 진압경찰 행위가 본문 II장의 준칙을 기준으로 볼 때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진압경찰들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당시 상황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특히 정부는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가 일부 과격 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가해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제사건이 발생한 상황 전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문제되는 개별행위의 인권침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1. 2008. 5. 31. 밤부터 6. 1. 아침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전체적인 작전개요는 효자로 입구쪽부터 시위대를 밀기 시작하여 광화문과 동십자각 앞을 지나 안국동 로타리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었음)

- 15:45~18:30 : 서울광장 동측에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 1,000여명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약 7,000여명 참석
- 16:30 :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 개최후 서울광장까지 행진 예정
- 코스 : 대학로→종로5가→을지로5가→을지로입구→서울광장
- 18:20 : 대학로에서 서울광장으로 7,000여명 행진
- 18:50 : 서울광장에서 ‘촛불문화제’ 준비중
- 시위대 약 2만여명
- 시위대 7,000여명 행진, 선두가 18:40경 서울광장 도착
- 유모차부대 100여명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 촛불시위 합류
- 시위대 500여명은 광화문빌딩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
- 19:20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시작
-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될 때 청운동 주민센터 앞 신교로터리에서 소수(50~70여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었음 (19:25경 경찰 측에서 자진해산 요청).

- 20:00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진행 중
 - 60여개 대학 2,000여명의 학생들이 “쇠고기 재협상”, “주권 수호”, “미국 압력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삭발투쟁 및 동맹휴업 총투표 선포
 - 시위대 1,000여명 프레스센터 앞 차벽 앞에서 “경찰 철수”, “평화 시위 보장하라” 등 구호제창 하며 차벽에 스티커를 부착함.
 - 청운동 신고로터리(새마을금고 및 청운동주민센터 앞 교차로) 인도에서 시위대 67명이 촛불 및 플래카드 1개를 들고 구호제창
- 20:20 : 위 신고로터리 앞 시위자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실시
 - “우린 지금 청운동 동사무소 건너편 새마을 금고 앞에 있습니다. 5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협상 무효, 고시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장관 고시 철회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이명박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20분경 방패를 든 경찰이 인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전경차 3대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20:30 : 촛불문화제 진행 중, 신고로터리 시민 검거
 -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 진행하는 중 시위대 1,500여명은 삼성본관 앞을 거쳐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
 - 20:15부터 신고로터리의 시위대 67명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20:30경 30명 검거함.
- 21:00 : 촛불문화제 종료후 거리행진, 신고로터리 시위대 검거 후 호송
 - 20:40 서울광장의 촛불시위 행사를 종료하고 2개 대오로 분리되어 1개는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광교→종로1가 방면, 다른 1개는 중앙일보→의주로로터리→서대문로터리→독립문로터리→사직터널 방면 이동
 - 시위대 1,500여명은 전 차선을 점거하고 YTN빌딩→연세빌딩→회현로터리 방향으로 이동
 - 신고로터리 앞 67명 중 63명을 미신고 불법시위 개최를 사유로 검거(20:50)하여 강서·구로·양천·관악·은평서로 분산 연행함.
- 21:55 : 시위대 경찰과 대치
 -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막히자 조계사 길로 올라가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
 - 서대문 사거리에서 사직터널 방면은 터널 입구를 전경버스가 봉쇄
- 22:40 : 시위대가 사직터널을 뚫고 나갔고 동십자각 앞 차벽에는 3개의 사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다리를 세워 차벽을 넘어 감.

- 23:20 : 살수차 등장
 - 사직터널→효자동길, 안국동→동십자각, 청운동길 등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함.
 - 동십자각 앞쪽에 살수차 등장
- 23:25 : 시위대 경찰 1차 저지선 돌파
 - 시위대가 효자동길(적선로터리)의 경찰 1차 저지선을 돌파하여 전진함.
 - 삼청동길 앞쪽에서도 차벽 위로 10여명의 시민들이 올라가 구호를 외침(경찰이 소화기 분사)
- 23:50 : 경찰 효자동길에서 물대포 발사
 - 효자동길에서 약 11,000여명의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며 차벽을 밀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시작함.
 - 일부 시위대가 버스 위에 올라갔고, “독재 타도”, “평화 시위 보장하라”를 외치며 사다리를 동원해 차벽을 넘어서려고 시도함.
 - 동십자각 앞에서도 3,000여명의 시위대가 계속 경찰과 대치하고 있고 몸싸움도 발생함.
- 00:40 : 동십자각 앞 물대포 발사
 - 동십자각 앞의 시위대 중 200여명이 경복궁 동문 담장을 넘으려고 하자 경찰이 연행하려 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비폭력”을 외치며 전경들을 밀어붙이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함.
 - 시위대도 생수병을 던지며 저항.
- 01:15 : 동십자각 앞 시위대 14명 검거
- 01:30 : 경찰 경복궁 담 기왓장 투척
 - 효자동길 통의파출소 주변에선 탈진 및 부상당한 의경 약 15명이 순찰차와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복궁역 내자로터리 부근에서도 의경 1명 병원 후송됨.
- 01:45 : 동십자각 앞 일부 전경 대열이 뚫림.
 - 일부 전경 대열이 시위대에 의해 뚫리자 경찰이 바로 물대포를 발사함.
 - 시위대 일부 탈진하여 응급차로 후송
- 02:15 : 마지막 해산 경고
 - 경복궁역 내자로터리에서 방송차로 “여러분은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즉시 해산하기 바란다. 또한 노약자 및 카메라 기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주기 바란다”는 4차 경고방송함.

- 동십자각 앞에서도 4차 해산명령 실시

○ 02:20 : 검거자 호송

- 경북구역 내자로터리 검거자 24명 금천·수서·도봉서로 분산 호송

○ 02:30 : 동십자각 앞 일부 시위대 폭행 당한 후 연행

○ 02:50 : 소강 상태

- 물대포 발사가 그치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경찰 측의 물대포 발사를 인터넷 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시위 대열에 합류한 시민들이 발생함

○ 03:00 : 검거자 총 104명(남자 80명, 여자 24명)

○ 03:05 : 물대포 발사 재개, 가로등 소등

- 효자동 방면에서 가로등을 소등한 채 물대포 발사 재개함.

- 버스 위로 올라간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아 5~6명이 버스 아래로 떨어졌고, 버스 위 시위대를 연행함.

○ 03:10 : 시위대 경찰차량 2대 파손시킴.

○ 03:20 : 검거자 총 107명(남자 82명, 여자 25명)

○ 04:15 : 검거자 총 110명(남자 85명, 여자 25명)

○ 04:45 : 시위대를 정부중앙청사 밖으로까지 밀어냄.

- 이에 시위대 2,600여명은 광화문누각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400여명은 생산성본부 앞 인도 상에 대기

○ 05:20 : 시위대 검거

- 광화문누각 차도에 있는 2,000여명을 상대로 대비경력이 검거 중

○ 05:30 : 해산방송, 압박, 검거

- 광화문 누각 차도에 있는 2,000여명을 상대로 해산 경고방송을 하고 방송과 동시에 대비경력이 동십자각 앞 방면으로 압박(압박과 동시에 시위자 검거중)

○ 05:55 : 동십자각 앞 시위대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

○ 06:25 : 안국로터리 2,500여명에게 살수기 위해 방송차로 피난 경고

○ 06:45 : 검거자 총 183명(남자 151명, 여자 32명)

○ 06:55 : 예비군 집행부에서 시위대 해산 설득

- 예비군집행부가 핸드마이크로 안국로터리에 있는 시위대 2,500여명에게 해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산을 설득하였으나 일부 시위대는 해산치 않겠다며 실랑이를 벌임.

- 07:18 : 시위대 대표자와 경찰 간 협의
 - 시위대 중 고대총학생회장이 나와 종로서 정보과장과 협의를 하였는데 고대총학생회장이 '경찰에서 뒤로 물러주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더 이상 강경진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체 회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함.
- 07:22 : 경찰병력을 약 20보 후퇴시켜 한국일보 좌·우측 인도상에서 휴식
- 07:39 : 경찰의 재압박
 -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대비경력이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여 시위대를 압박하고 시위대는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 경복궁역 근처에서 시작하여 안국역 근처까지 경찰이 물대포 및 방패로 시위대를 몰아붙였고 07:30경 경찰이 최종 진압을 시작함. 전경들은 곤봉 또는 방패와 같은 도구를 휘두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후 연행함.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0:30경 효자로 입구에 설치된 경찰차벽의 왼쪽방면 골목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시위대 맨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 대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고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성북구 소재 동서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50보~56보)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가 촬영한 폭행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경찰측 정보상황보고서에는 경찰병력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한겨레신문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경찰에 대해 유형력 행사나 위협적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1. 00:30경 교보빌딩 부근 광화문역 4번출구 앞 인도에서 경찰관 5-6명이 지하철역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 진압경찰 5-6명 중 성명불상1은 위 상황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피해자를 작은 방패로 밀고, 성명불상2는 다짜고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성명불상3은 피해자의 카메라를 잡아채어 뺏어간 후, 피해자의 목을 조인 성명불상2가 피해자의 고개를 숙이게 하여 다른 진압경찰들이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았다.

나) 경찰측 답변(72중대(현 8기동대) ○○○ 경위)

(1)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이 거명한 특수기동대 72중대 소속 ○○○는 현재 우리 중대소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며, 금년 7. 24. 하반기 전출자 명단을 확인한 바, ○○○는 없다.

(2) 우리 72중대는 진정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대에 적선사거리, 내자사거리, 경복궁 정문 앞, 기무사 등지를 도보 및 구보로 수시 이동하고 대기를 반복하였으며 2008. 6. 1. 00:30경 광화문역 4번 출구 위치에서 근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위자들의 목을 조르고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등을 발로 밟는 등의 과격한 행동은 우리 중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5기동단 오세원 경장의 각 진술,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72라는 숫자와 '○○○'라고 쓰인 전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쓴 진압경찰 사진(촬영시간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008. 6. 2. 00:43:52),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깨진 카메라 렌즈를 찍은 사진 등], 5기동단(구 특수기동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공지사항 중 제목 “2006년 제1차 경장 정기승진자 명단” 대상 중 72중대 : 000)을 종합하면, 000라는 이름이 적힌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쓴 진압경찰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카메라를 빼어가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5기동단(특수기동대) 000 경위는 000가 특수기동대 72중대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72중대가 피해사실에 적시된 일시장소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000가 2008. 2.까지 72중대에 근무한 사실을 고려하면 000가 쓰던 헬멧을 다른 대원이 넘겨받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000”가 기재된 견출지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한 위 다른 대원이 2008. 6. 2. 자정경교보문고 앞 광화문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경비근무에 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000 경위의 부인은 피해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 성명불상 등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000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 경찰차벽 앞에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던 상황 중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에서 다른 예비군 복장의 시위대들과 스크럼을 짜고 충돌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기왓장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가 7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 41, 302, 306,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가 경찰병력을 향해 물병 및 돌을 투척하였을 뿐 경찰병력은 시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000의 진술, 다른 피해자 000의 진술, 000 사건의 목격자 000의 진술,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 명단, 부상 당시 현장 사진, 서울대학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기왓장을 던져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지휘관들은 경찰병력은 시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피해자 ○○○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진압경찰을 향해 서있던 피해자의 앞 이마가 상해를 입었던 점,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및 관련 자료를 감안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진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 경찰차벽 앞에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던 중 기왓장 조각을 시위대쪽으로 던져, 하늘 쪽을 주시하고 있던(당시 경찰버스에 올라간 사람들이 물대포를 맞아 추락하려고 하여 그 사람들을 받아 주려고 하였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 41, 302, 306,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가 경찰병력을 향해 물병 및 돌을 투척하였을 뿐 경찰병력은 시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다른 피해자 ○○○의 진술, ○○○ 사건의 목격자 ○○○의 진술,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 명단,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경복궁 담장 훼손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불상의 진압경찰이 투척물을 던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지휘관들은 경찰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폭력이나 투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수의 피해자가 모두 경찰차벽 뒤쪽에서 투척물이 던져졌고 시위대의 제일선에 위치한 상태에서 경찰 측을 향하고 있었을 때 안면 전면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 상해 당시 사진으로 보아 상해의 정도가 시위대쪽에서 던진 투척물이 차벽 또는 방패 등에 맞아 튕겨 나온 물체에 의해서 다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감안할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으로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던 상황이 아닌 대치 중인 상황에서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1. 01:30경 효자로 입구에 설치된 경찰차벽의 왼쪽방면 골목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살수차를 앞세우며 전경부대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턱과 입술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도 없다. 그러나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50보~56보)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위 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경찰측 정보상황보고서는 경찰병력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통의파출소 주변에 탈진 및 부상당한 의경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때 경찰과 시위대 상호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의 유형력 행사가 자위의 수단을 넘어서 과잉 진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진압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1. 02:30경 동십자각 앞에서 물대포와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시위대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고 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미’ 역할(부상자가 있음을 큰소리로 알리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침)을 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의 구호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 쥐고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뒤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약 40여회의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당시 시위대와 몸싸움 과정에서 차벽 뒤로 밀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하대 병원 의사가 작성한 코뼈골절 진단서 및 성형수술 기록, 사건 발생 당시 연행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사진 속에서 입고 있었던 피문은 옷, 동일 장소·동일 시간에 발생한 피해자 ○○○에 대한 군홧발 폭행 사건 등을 종합하면, 5기동단 75중대(구 73중대) 소속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동십자각 차벽 앞에서 경찰병력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다가 시위대에 밀려 차벽 뒤로 물러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검거되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현장을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찰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7)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1. 02:30경 경복궁 주차장 동십자각 근처에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했고, 2-3차례 물대포를 맞은 시민들이 10m 정도 밀려나면서 피해자도 밀려나고 있었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후 발로 밟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 밑으로 피했다가 차가 시동을 걸자 다시 구르며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머리 등을 다시 밟아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취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문답서, 재판기록, 경찰의 여대생폭행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언론보도, 국민일보 쿠키뉴스 미디어팀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서울기동대 불상의 전경은 2008. 6. 1. 02:30경 종로구 사간동 소재 동십자각각 로타리 부근에서 버스 차벽의 중간에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의 진압경찰의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1. 04:30경 살수차가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전경부대 뒤쪽을 따라오면서 물대포를 쏘고 있었는데 경북구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성명불상 중년 여성이 살수차 앞을 가로막았더니 전경들이 위 여성을 방패로 밀어내었다. 피해자는 인도에 있다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살수차 앞을 가로막았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 수십명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들어서 10미터정도 절질 끌고 가 바닥에 집어던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발로 가슴과 머리 등 온몸을 짓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도

있다. 그러나 시위대끼리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는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70보, 2008. 6. 1. 04:30)의 기재 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2008. 6. 1. 17:00 KBS 뉴스에 해당 자료 보도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중대, 306중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찰 측의 자료, 종로소방서 자료, KBS 보도 내용과 일치, 장소, 상황묘사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는 비무장으로 단순히 살수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이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유형력 행사의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9)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5:30경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시위대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도망을 치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방패로 가격하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구호하여 인도 쪽으로 옮겨놓은 피해자를 군홧발로 밟아 후두부 부위에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시위대와 직접 대치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77보, 2008. 6. 1. 05:30 상황)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5기동단 구 73중대~78중대의 지휘관 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위 피해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정보상황보고서, 119 피구조자 명단과 일시, 장소, 상황 묘사가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찰병력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0)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5:30경 정부중앙청사~경복궁역 6번 출구 사이 인도에서 시위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둘러싼 뒤 무릎과 군홧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머리 등을 가격하고, 경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 부위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중대, 306중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서울마포경찰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8. 5. 31.~6. 1.간 있었던 촛불시위 현장에서 헬멧을 쓴 의무경찰의 머리를 때렸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마포경찰서로 연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4기동단 40중대, 41중대, 302중대, 306중대, 805중대, 809전경대의 지휘관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상황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 및 목격자 등이 없어 진압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1. 06:00경 광화문공원 부근 사직로에서 시위대를 인국동 방면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광화문공원 인접 사직로 쪽 인도에 있던 중 눈 앞에 살수차가 보여 구경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2인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끌고 부근에 있던 전경대오 가운데에 집어넣은 다음, 불상의 진압경찰 수명이 군화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밟고 허리를 건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5기동단 51중대장 ○○○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에는 광화문 공원쪽에는 있지 않고 동십자로타리 및 안국역 쪽에 경력을 집중 관리하고 있었으며 우리 경찰경력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우리 중대와는 관련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5기동단 51중대장 ○○○ 등이 작성한 답변서의 기재내용,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의 기재내용,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조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압박하면서 한차례 지나간 뒤여서 피해자 주변에 다수의 시위대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2) ○○○ 사건(08진인1966)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805전경대 제2소대장인 ○○○ 경위는 2008. 6. 1. 06:35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상에서 시위대를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고 있었다. 피해자가 경북궁 광화문앞 인도에서 부상당한 시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던 119차량의 구조대원(여성)과 함께 부상당한 시민을 구조하여 119에 실려 보내고, 구조시 안경이 벗겨져 인근 시민에게 맡겨놓은 것을 되찾으려 경북궁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4기동대 805전경대 소속 진압경찰과 마주쳤다.

(2) 피해사실 관련

4기동대 805전경대 소속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밀어내다가, 갑자기 진압전경 대열 속으로 끌어들었고, 다른 경찰 수명이 군화발로 얼굴을 치는 등 약 3분간 집단 구타하여 전치 3주(우측수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견추부 염좌, 뇌진탕)에 이르는 부상을 입히고, 간부로 보이는 경찰이 '그러니까 아까 가라니까, 왜 안가셨어요' 하며 피해자를 꺼내준 상태에서 대기 중인 호송차에 태워 성동경찰서로 연행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위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를 진압한 사실은 인정하나, 시위대와 3미터 간격을 두고 대처하며 진행하였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위 ○○○의 답변서, 성동경찰서 유치장현인서(허리를 빼끗, 좌측겨드랑이 피멍), 성동경찰서 수사보고(○○○ 왼쪽팔 부위 사진촬영건), 서울 중구소계 반도정형외과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을 향하여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한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경찰의 공익목적 달성에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 측 답변서를 보면 진압경찰대오와 시위대가 일정거리를 두고 평화적으로 진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시민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력행사에 대하여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2008. 6. 1. 07:30경 종로경찰서 앞 도로 위에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하던 중 도망치는 피해자의 다리에 불상의 물체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중 1명은 군화발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걷어차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경찰은 당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위대들이 인도로 올라가도록 유도하였을 뿐 시위대와 일체 마찰이 없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경희의료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종로서 재야-1501, 1502 등 전직원, 91보, 2008. 6. 1. 07:42)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인근에서 근무한 제5기동단 구 73중대 및 74중대는 내자 로터리 방면에서 접근한 후속부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이동하자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및 정보상황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시위대 해산을 위한 진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고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진압행위의 방향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력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4)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1. 새벽경 울곡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오전 8시경 기습적으로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여 소화기를 근접 분사하였다. 시위대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짓밟았다.

나) 경찰측 답변(5기동단 51중대장 ○○○ 등)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피해내용 등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항상 부대원들에게 인권 및 안전진압에 유의하여 진압할 것을 평소 교양하였고 상기 내용과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5기동단 51중대장 ○○○, 52중대장 ○○○, 8기동대 ○○○이 각 작성한 답변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SBS 6. 1. 및 6. 2. 밤8시 뉴스 관련 보도화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주장요지 기재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의 해산작전이 적법상태의 회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공권력행사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로소통을 위한 해산작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오마이뉴스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당시 진압작전이 시위대들이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시위대를 해산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5) ○○○ 사건(08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1. 08:00경 보신각 인도 부근에서 청계광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보신각 주변 인도에 모여 있었는데,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지휘자가 보신각 부근을 막으라고 소리치자 길 건너 있었던 진압경찰들이 보신각 쪽으로 뛰어와 시위대를 진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방패로 추정되는 불상 물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온몸을 짓밟아 피해자 이마는 5cm정도 크기의 흠이 나고 갈비뼈 부근에 통증이 생겼다. 이어, 성명불상 전경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사지를 잡고 연행하려 하자 부근에 있던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연행에 항의하자 풀어주었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대 11, 12, 13 중대장 등)

2008. 6. 1. 07:55부터 국101 지휘를 받아 인국R 미 대사관저 앞 인도에서 대기 근무중이었으며 보신각 피해현장과 관련이 없고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민중의 소리 및 뉴시스에 보도된 당시 피해자의 사진, 중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조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보신각으로 뛰어가 시위대를 압박하던 상황으로 보신각 부근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가 진압경찰을 향하여 특별히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압경찰이 미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2008. 6. 1. 저녁부터 6. 2.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9:15~20:25 서울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 주관하에 약 1,500명이 깃발, 촛불 등을 이용 집회시위, 국회의원 강기갑 등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명박은 물러가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20:18 : 시위대 20,000명으로 증가, 시위대 중심대열 신문로 방면으로 이동.
- 20:40 : 1,500명 세종로 로터리를 지나 이순신 동상 앞 차벽에 도착하여 대치
- 21:25 : 시위대 15,000명으로 감소
- 22:55 : 시위대 8,300명으로 감소(세종로R 8,000명, 서울광장 내 300여명 대기중 23:15 세종로 로터리 도착)
- 23:10 : 시위대 7,200명으로 감소(세종로R 7,000여명, 서울광장내 200여명)
- 23:50 : 시위대 5,000여명으로 감소
- 03:05 : 시위대 3,200여명으로 감소(차로상 1,000여명, 인도상 2,000여명, 서울광장 내 200여명)
- 04:50 : 시위대 1,500여명으로 감소(서울광장 주변 산재), “대한문 앞 횡단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보도 건너기 퍼포먼스"시작

○ 05:50 : 시위대 500여명으로 감소(서울광장 주변 산재)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진인2527)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 01:00경 세종로사거리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경찰과 대치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요부염좌의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바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및 중랑구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 ○○○,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피해자 ○○○, ○○○의 각 진술 및 오마이뉴스 촬영 동영상 등을 보면 당시 시위대는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던 상황으로 경력이 진압과정 중 시위대를 향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가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좌측차도에서 경찰차를 끌어내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시민이 양측의 직접 대치를 막기 위해 진압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들어갔다. 양측은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사이에 들어가 시위대 측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갑자기 구호를 외치며 전진

했으며 시위대가 미처 후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진압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왼팔을 내미는 피해자를 잡아챈 뒤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1 내지 16중대 중대장)

가해사실이 없고 목격한 바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다른 피해자 ○○○, ○○○의 각 진술, 피해자 ○○○이 작성한 진술서,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폭행할 때의 상황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 전경대오가 앞으로 전진하자 시위대가 약 10여 미터 후퇴하여 잠시 다시 대치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를 휘두르면서 진격하던 중, 시위대 맨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방패로 1회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3중대장 ○○○ 등)

우리 부대는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차벽과 차벽사이 틈으로 진출하였지만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로 찍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휘명령을 받거나 내린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은 우리 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과 다른 피해자 ○○○의 각 진술, 피해자 ○○○이 작성한 진술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서초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의 각 기재내용, 2008. 6. 4. 오마이뉴스 관련기사와 기사에 첨부된 사진,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의 상황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이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신동상 앞 도로에서 시위대와 직접(차벽이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전진하던 중 후퇴하던 시위대 일부와 함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1기동단 13중대장 ○○○ 등)

우리 부대는 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차벽과 차벽사이 틈으로 진출하였지만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로 찍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휘명령을 받거나 내린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은 우리 중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다른 피해자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오마이뉴스가 위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2008. 6. 2. 01:00경 세종로4거리 이순

신동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의 상황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2008. 6. 6. 저녁부터 6. 7. 아침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72시간 연속 철야 시위가 시작되는 날이었음)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3:45 : 시위대 500여명 태평로 진행방향 4차로 이용 대한문방향으로 행진출발
- 14:10 : 시위대 3,000여명으로 증가, 행진 선두 종로 1가에서 안국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
- 14:45 :
 - 시위대 3,000여명 재동초교 부근 대기
 - 시위대 1,000여명은 종로1가 방향으로 진행 중
- 16:30 : 시위대 5,000여명 세종로 교차로 대기중
- 17:45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교차로 이순신동상 차벽 앞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2,000여명 마로니에공원 출발해서 광고 교차로 진입
- 18:53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 로터리 차벽앞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4,000여명 한국일보앞 차벽 흔들며 구호 외치고 있음
- 19:20 :
 -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 차벽앞에서 산재 대기 중
 - 시위대 2,000여명 차벽과 거리를 두고 연좌 대기 중
- 20:40 :
 - 시위대 5,000여명으로 증가, 시위대 1,200여명 합류
 - 시위대 100여명 현대해상 첫 번째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음
- 21:15 :
 - 시위대 6,000여명 이순신 동상 차벽앞 대치 중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시위대 48,000여명 시청에서 출발해서 종로 1가에서 대기 중
- 22:15 :
 - 시위대 6,000여명 세종로에서 세광빌딩(현대해상 뒷골목)방면 이동중
 - 시위대 중 250여명이 차벽에 빗줄을 걸어 당겨 버스가 약15미터 끌려 나간 상황, 경찰과 시위대 대치 중
 - 시위대 20,000여명 종로1가 통과하여 세종로 방면 이동 중
 - 시위대 5,000여명 청진동 골목길
 - 시위대 2,000여명 무교동 로터리
- 22:45 :
 - 시위대 24,000여명 세종로 로터리, 현대해상
 - 세광빌딩 차벽이 해제되어 경찰과 시위대 대치 중
 - 신문로 금강제화 1,000여명 대비경력과 대치 중
 - 안국동 로터리 8,000여명 차벽앞 대기 중
- 23:40 :
 - 세종로, 현대해상 앞 시위대 5,000여명중 1,000여명이 신문로 방면으로 이동 중
 - 새문안교회 안에서 시위대와 경찰 대치 중
 - 한국일보앞 2,000여명 구호제창 대기 중
- 24:25 :
 - 세종로 로터리 4,000여명 대기 중
 - 새문안교회 주변 2,000여명 대기 중
 - 한국일보 앞 700여명 차벽 차량 당기고 있음.
 - 독립문 고가 및 2,000여명 대기 중
- 24:45 :
 - 새문안 교회 주변 2,0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세종로 4,000여명 대기 중
 - 공평로터리에서 종로1가 방면으로 700여명 이동 중
 - 정동로터리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1500여명 이동 중
- 01:20 :
 - 세종로 로터리 300여명 대기 중 (민노총 4.5톤 방송차량 도착)
 - 신문로 로터리 주변 7,000여명 증가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4,000여명 증가 경력과 대치 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 새문안교회안 및 주변 3,000여명 경력과 대치 중(일부 시위대가 교회경력 저지선 뚫고 주차장에서 대비경력과 대치 중)

○ 02:40 :

- 금강제화앞 500여명 경찰버스에 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6,000여명 대치 중
- 새문안교회 내안 5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03:25:

- 금강제화 앞 2,000여명 2번째 버스에 줄을 걸어 당겨 세종로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 중
- 3번째 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1,000여명, 선두 200여명이 경찰버스에 줄을 걸어 당기고 있음.
- 새문안교회 내안 1,000여명 경력과 계속 대치 중

○ 04:40 :

- 세종로 로터리 500여명으로 감소
- 금강제화 앞 2,500여명 경력과 대치 중
- 새문안교회 500여명 경력과 대치중

○ 05:40 :

- 세종로 로터리 700여명 대기중
- 신문로 주변 800여명 삼삼오오 해산 중 (금강제화 주변 100여명, 새문안교회 주변 700여명)

○ 06:30 :

- 이순신 동상앞 차도위 300여명을 인도로 밀어올려 차도확보 시도 중

○ 07:00 :

- 시위대 300여명이 해산치 않아 서울시청광장 방향으로 이동시킴. 해산과정에서 경력과 몸싸움을 하던 2명 검거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새문안 교회 옆 골목입구에서 2008. 6. 6. 01:00-02:00경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시위대를 향하여 전진하던 중 시위대 일부가 넘어지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군화발로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4바늘 꿰매는 상해는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가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부상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 진술 외 목격자 진술 등이 없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생긴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4. 2008. 6. 7. 저녁부터 6. 8.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72시간 연속 철야 집회가 끝나는 날임.)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9:00 : 서울광장 1만8천여명, 서울광장 태평로 대한문까지 참여. 유모차 100대, 장애인휠체어 5대
 - 세종로로터리, 시위대 800명으로 증가, 코리아나 호텔 앞 행진 시작
- 19:30 : 서울광장 2만5천여명, 촛불집회 진행.
 - 민주당 의원 20여명 참석
 - 세종로 로터리, 시위대(800명) 코리아나 호텔 앞 행진타가 방향을 돌려 세종로 방향으로 이동
- 20:10 : 서울광장 : 3만5천여명, 촛불시위 진행.
 - 종로1가, 시위대 1,000명 행진, 유모차 10대
- 20:50 : 행진 서울광장→삼성본관→송례문→한국은행→명동입구
- 21:10 : 행진 4만1천여명으로 증가, 3만5천여명이 종로1가→세종로방향으로 행진
- 22:30 : 시위대 23,000여명으로 감소, 본대열 12,000여명으로 세종로 로터리에서 행사진행
 - 독립문, 시위대 5,000여명으로 독립문→사직터널 방향. 대비경력과 대치 중
 - 안국동, 시위대 행진대열 5,000명 안국로타리→한국일보 앞 대기 중(종로1→조계사→공평로타리→안국동좌회전→한국일보 앞)
 - 서울광장 : 1,200여명으로 감소.
- 23:15 : 본대열 8천여명. 세종로 행사 진행

- 5,000여명 신문로 차선 점거한 채 세종로 방향으로 이동
- 한국일보 앞, 시위대 1,000여명 차벽에서 대치 중
- 서울광장, 1,000여명
- 23:46 : 세종로 로타리 1만여명, 금강제화앞 차도 학생위주 1천여명
- 한국일보사 앞 차도상에 5백여명
- 24:00 : 8,500여명
- 본대열, 세종로 로타리 7,000여명
- 한국일보, 500여명으로 감소
- 서울광장, 1,000여명
- 00:30 : 5,700여명(세종로 차도 5,000여명, 금강제화 앞 학생 400여명, 한국일보 300여명)
- 한국일보,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 방송차량을 통하여 경력버스 훼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중단 및 해산 방송
- 00:30 : 5,700여명(세종로 차도 5,000명, 금강제화 앞 학생 400명, 한국일보 300명)
- 01:05: 5,500명
- 세종로, 시위대 5,000명 대치 중
- 한국일보사, 시위대 500명 대치 중
- 02:00 : 4,000명
- 세종로, 도로 상에 5백명, 차벽 주변 200여명이 격렬하게 대치
- 03:20 : 3,000명
- 세종로, 2천명은 차벽 앞 대기 중. 시위대 100여명 우의를 착용하고 물을 뿌리는 경찰에게 간헐적으로 항의
- 03:45 : 2,500명. 교보빌딩 앞,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앞으로 잡아당기고 있음
- 04:23 : 세종로 로타리 2,500명
- 교보빌딩 앞 버스 바퀴에 밧줄을 감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음
- 04:35 : 2500명, 교보빌딩 앞 경력버스 바퀴에 밧줄을 감아 버스 1대가 약 10m 끌려 나감
- 05:00~05:50 : 2,500명, 신문로 금호빌딩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던 경력 3개 중대 세종로 로타리 방향으로 밀고 내려오며 압박하자 시위대가 태평로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방면으로 밀려 나가고 있고, 방송차량으로 해산 및 검거하겠다는 경고방송, 금강제화 앞에서 대비경력과 시위대 500명 대치 중, 일부 시위대 100여명 이순신동상 앞 차벽에 밧줄을 걸고 있음

- 압박작전을 전개하자 대부분의 시위대가 태평로 방향으로 해산 중에 있음. 11명(남자) 검거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8. 1:30 경 세종로 사거리 차벽 앞에서 시위대가 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고 전경들은 버스 안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경찰이 소화기 분말을 뿌려 앞을 볼 수가 없어 경찰을 등지고 서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쇠덩어리를 던져 피해자의 앞머리에 5센티미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하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할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백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물체로 인해 피해자가 열상을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화기 분말 때문에 진압경찰을 등지고 서있었는데 앞머리에 열상을 입은 것을 볼 때 진압경찰이 아닌 시위대의 투척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의 피해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 사건(14세,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피해자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진상규명불가).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피해자의 모) 진술, 2008. 6. 9. 서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8. 05:00경 위 ○○○ 등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하여 뒷머리 열상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은 시위를 종료해가고 있는 즈음에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여 키 150cm인 비무장 14세 소년이 여성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불상의 진압경찰이 14세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2008. 6. 21. 저녁부터 6. 22.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21:20 : 시위대 8,000여명, 세종로 로타리 부근 대치 중
- 21:30 : 7,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위대가 자체 통로를 확보하여 모래주머니를 반입 버스 앞에 적재 중에 있고, 방송차량은 경고 방송 중
- 21:45 : 경력버스 1/2 높이까지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음. 모래 공급이 중단되었음
- 22:40 : 시위대 6000여명으로 감소, 현대해상 앞 경력버스 앞에 모래주머니를 적재중에 있고, 비가 오자 서린로터리-시청-신문로 방향등으로 1천명이 해산
- 23:35 : 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 40여명이 깃발을 흔들며 대비경력 버스위에서 대기 중이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서울광장에서 빗줄을 들고 출발한 시위대 20여명 도착하여 빗줄을 풀어 교보빌딩 앞 차벽으로 설치된 차량 바퀴에 빗줄을 걸고 있음.
- 23:48 : 4,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 30여명이 깃발을 흔들며 버스위에 있음
- 24:40 : 3,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차벽에 빗줄을 걸어 잡아 당기고 있음. 현대해상 앞 1번 3번 차벽을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있는 가운데 1번 차벽에 걸었던 빗줄이 끊어져 시위대 일부가 찰과상을 입어 구급차량 2대를 이용하여 후송되고 있음
- 01:35 : 3,5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차벽에 빗줄을 걸어 잡아 당기고 있음. 차벽 1대가 시위대에 끌려 나가고, 대책위 방송차량에서는 버스 안에 있던 의경들에게 안전을 확보하여 줄 것이니 어서 나오라며 방송 중
- 02:00 : 교보빌딩 앞에서 끌려나간 버스 안에 있던 5중대 대원 9명은 시위대가 안전하게 신병을 경찰에 인계함
- 03:10 : 시위대 3,000여명 산재 대기중인 가운데, 교보빌딩 앞 2번 차벽을 끌어 당기던 빗줄이 끊어지자 재차 빗줄을 걸어 당길 준비중
- 04:20 : 시위대 2,500여명으로 감소, 차분한 가운데 자유발언 등으로 행사 진행중, 일부 시위대 차도 위에서 취침 중
- 05:30 : 시위대 2,000여명으로 감소, 차분한 가운데 자유발언 등으로 행사 진행중, 청소차량 도착 쓰레기 수거 중
- 06:25 : 지하철 운행 개시됨에 따라 5백여명 해산하여 시위대 1천5백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세종로 로타리 차도상 및 교보빌딩 인도상에 대기중이고, 시위대 일부 차벽위에 올라가 물통 및 모래주머니 등을 간헐적으로 경찰측에 투척하며 항의중이고, 교보빌딩 앞 차벽에 빗줄 걸어 당기고 있음
- 07:20 : 강우로 인하여 시위대 1천여명 세종로 차도상에서 인근 건물 처마 등으로 이동하여 행사 진행중
- 07:50 : ○○○ 공동상황실장이 집행 마무리 위해 안내 후 시위대 1천여명 기차놀이를 하며 서울광장으로 이동 중, 일부 시위대 500여명 세종로 차벽 앞에 대기 중
- 08:30 : 일부 시위대 300여명으로 감소하여 세종로 차벽앞에 대기 중
- 09:00 : 일부 시위대 300여명 중 100여명은 서울광장 방면으로 해산하고 200여명은 비자, 광화문빌딩, 일민미술관등 인도 상으로 올라가 산재 대기

중, 시위대를 인도로 경찰이 이동조치 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남자 4명 경찰에 연행됨.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시위대와 경찰이 6. 22. 00:00-02:00경 세종로 4거리에서 경찰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으며, 시위대는 경찰차 바퀴에 밧줄을 걸고 경찰차를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가 차를 잡아당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위대오 앞에서 34번째(차벽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난사하여 불상의 피부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및 종로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 상황에서 경찰차를 끌어내기 위해 밧줄을 잡아당기던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향하여 분사한 행위는 경찰차 손괴행위를 저지하고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보인다. 소화용으로 제작된 소화기를 인체에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기 사용행위를 인권침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체에 대한 소화기 사용 금지에 대해 정책적 권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례의 상황에서 방어를 위하여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2. 08:40경 세종로 사거리 경찰차벽 앞에서 시위가 다 진압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성동경찰서 소속 진압경찰이 인도에 있는 시민의 사지를 붙잡고 연행하면서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차벽 앞으로 가 부당한 연행임을 항의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동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5~6명의 진압경찰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사지를 붙잡고 연행하면서 팔꿈치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 대해 뇌진탕, 두부좌상, 외상후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고은선, 참고인 ○○○의 진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부상사진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두부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시위진압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항의를 한 것은 특별히 경찰에 대한 공격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2008. 6. 25.저녁부터 6. 26.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14:30 :

- 대책회의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 마치고 대기 중
- 참석자 전원이 청와대 방면 진출 시도, 신교로터리 차벽 앞에서 경력과 대치 중

○ 15:30 : 시위대 100여명이 내자로터리에서 합류 전차로를 이용하여 내자로터리에서 신교로터리로 이동하려는 것을 경력이 차단하자 진행 2개 차선

점거 연좌 대기 중

- 15:45 :
 - 150여명으로 증원되어 내자로터리에서 구호제창, 연좌대기 중
 - 15:15경 경북구역 5번 출구 폐쇄
- 16:00 : 내자로터리 차로 상에서 구호제창 하며 대기하던 시위대 150여명에 대해서 경력이 인도로 밀어 올려(15:45-15:55) 120여명은 인도로 올라가고 나머지 30여명이 차로에 연좌 대기 중. 4명 검거
- 16:30 : 시위대 150여명 내자로터리 추사로 인도 상으로 계속적으로 밀어 올려 차로 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경력 대비 중인 가운데 인도 상으로 이동치 않은 시위대 총 15명 검거(남8, 여7)
- 17:30 : 시위대 130명 산재 대기중이고 17:00 현재 총 검거자 47명
- 19:15 :
 - 시위대 1,200명, 대기중
 - 태평로 대한문 앞 차로상에 1,000명 집결 촛불시위 시작 진행중
 - 적선로터리 인도상에 170명(유모차 3대포함)
 - 내자로터리에 30명 산재 대기중
- 19:30 :
 - 시위대 2,200명, 대한문 차도상에서 촛불시위 진행 중
(사회자가 “촛불시위 최대한 간결하게 마치고 청와대 진격투쟁한다” 는 광고)
 - 적선로터리 170명 인도에 대기 중
 - 내자로터리 30명에 대해 4차 해산명령(19:12)에 이어 검거 진행 중 16명 검거
- 20:35 :
 - 시위대 2,500명 세종로로터리 차벽과 5미터 간격두고 연좌대기중
 - 적선로터리에서 300명 구호제창 하며 대기 중
 - 내자로터리 50명 경북구역 1번 출구앞에서 구호제창 대기 중
 - 20:10부터 대한문 앞 방송차량에서는 “효자동 부근에서 회원 400여명이 고립되어 있다. 여기는 촛불시위가 끝났으니 늦게 도착한 회원들은 그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방송
- 20:40 :
 - 내자로터리 50명 경북구역 1번 출구앞에서 촛불 들고 구호제창중
 - 경찰에서 방송차량 이용하여 “해산치 않을 경우 검거할 것이다. 노약자, 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자 등은 즉시 해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하였음에도 해산치 않아
검거 중

○ 21:40 :

- 시위대 2,700명으로 증가. 일부 시위대 신문로상 금호아시아나 맞은편 재개발 지역에서 모래, 흙을 가져오기 위해 이동
- 일부 시위대의 신문로상 금호아시아나 및 구세군회관 주변 골목길을 이용 경복궁역 앞으로 가자는 선동발언에 따라 일부 시위대 골목길로 이동 중
- 21:10경, 광화문 2번 출구 폐쇄
- 내자로터리 50명, 경찰이 검거하겠다고 광고하며 미란다원칙고지 중

○ 21:50 :

- 세종로 로터리 시위대 3,000명중 2,000명이 금호아시아나 앞으로 이동 대기 중, 차벽 뒤쪽에서 100여명 대기 중, 1,000여명은 세종로 차벽 앞에 대기 중
- 적선로터리에 대기하고 있던 시위대 100여명이 구세군회관 차벽 뒤쪽으로 이동, 양쪽에서 경력을 협공하고 있는 상황
- 적선로터리 100명으로 감소 구호제창하며 대기 중, 21:24부터 경복궁역 무정차 통과 해제
- 내자로터리 50명 경복궁역 1번출구 앞에서 촛불들고 구호제창중
- 서울광장, 시위대 150명 산재 대기중

○ 22:20 L:

- 총 3,500명 중 세종로 주변 시위대 3250명, 세종로 차벽앞 (2,500)신문로 및 금호아시아나 구세군회관 골목길(500) 차벽뒤쪽(250)산재 대기 중
- 시위대 500여명이 금호아시아나 건너편 홍국생명 재개발지역 공사장에서 제작한 모래주머니 300개를 아시아나 골목길 차벽앞에 쌓아놓고 차벽넘기를 시도하다가 모래주머니가 부족하여 포기하고 세종로 로터리 현대해상 앞 3번 경력버스 바퀴 밟을 당기기 위해 이동

○ 22:40 : 총 3,45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200여명

- 세종로로터리 차벽 앞 2,500여명 신문로 및 금호아시아나 구세군 회관 골목길(500여명), 구세군회관 차벽뒤쪽(200여명)

○ 23:00 :

- 총 3,350명 중 세종로로터리에 3,150여명
- 금강제화 앞 또는 세종로 로터리 현대해상 앞 차벽(3,4번 버스)을 밟을로 당

기고 있음. 현대해상 3번 버스가 시위대 밧줄에 비스듬히 끌려 나간 상황

- 시위자 10여명, 구세군회관 앞 골목길 앞 차벽위에 올라가 깃발 흔들다가 차벽 밑으로 내려간바 있음.

○ 23:40 :

- 총 3,30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대기 중
- 구세군 차벽 뒤에 있던 시위대 150여명 적선로터리로 이동
- 23:12경 차벽 당기고 있던 시위대에게 살수경고
- 23:30 경 금강제화 골목 차벽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 차벽이 틈이 벌어 지고 있는 상황
- 현대해상 앞 예비군복장의 시위대 50여명 대기 중
- 적선로터리 20여명으로 증가, 구호제창 대기 중
- 내자로터리 180여명 경복궁역 앞에서 구호제창 등으로 대기 중
- 서울광장, 100여명으로 감소 산재 대기 중

○ 24:10

- 총 3,300여명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대기 중
- 23:20경 금호아시아나 골목길 앞에서 500여명이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불상 장소에서 시위자가 수도꼭지를 연결하여 호수로 경력에게 물을 뿌린 바 있음
- 24:05경 금강제화 앞 차벽을 시위대가 밧줄로 당겨 차벽이 꺼져나왔으며 세종로 로터리에서는 금강제화 앞 차벽이 뚫렸다고 광고하자 시위대 금강제화 앞으로 이동 중
- 24:10 금호아시아나 앞 차벽에 밧줄 걸어 당기고 있는 시위대 향해 물포 살포함. 일부 시위대 현대해상 뒷골목길 차벽에 밧줄 걸어 끌어당김.

○ 24:50

- 총 3,140여명 중 세종로 주변 3,000여명
- 24:40경 금강제화 앞 차벽을 시위대가 밧줄로 당겨 3번째 차량이 꺼져나왔으며 대비경력이 물대포를 사용하고 있음.

○ 01:45

- 총 2,620여명 중 세종로로터리 주변 2,500여명
- 01:10경 시민당구장 앞에서 시위대가 경력5~6명을 신문로 상으로 끌고 갔으나 예비군 복장의 시위대가 중대로 복귀시킴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01:30경 금강제화 골목 차벽을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겨 버스 4대가 도로상으로 끌려나옴
- 금호아시아나 앞 시위대 500여명에 대해 물대포 발사하면서 신문로까지 밀어내어 대비경력과 시위대가 신문로 상에서 대치 중
- 적선로터리, 20여명 연좌 대기하다가 해산(01:35)
- 내자로터리 70여명, 연좌대기 중
- 02:25 :
 - 총 2,620여명중 세종로 주변 2,500여명 대기 중
 - 02:25경 인도에 있던 시위대 300여명이 합류
- 04:20 :
 - 총 1,500여명이 파이낸스 빌딩과 프레스센터 부근(1,200) 서울광장(100), 광화문빌딩 앞 (100), 청계광장(100) 대기 중
 - 02:55경 경찰방송차량을 이용 청계광장, 광화문빌딩부근 및 태평로 상에 대기 중인 시위대를 상대로 “즉시 서울시청광장으로 이동할 것과 계속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 진행시 살수차를 이용 살수하겠다”고 경고방송 하였으며, 해산하지 않는 시위대 상대로 살수, 서울시청 방면으로 밀어냄
 - 내자로터리 30여명, 연좌 대기하다가 해산(03:10)
- 06:00 : 시위대 700여명이 태평로 점거하고 있어 해산작전 전개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여부

1) ○○○ 사건(08진인250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00:00~00:30경 새문안교회 옆 금강제화 근처에서 경찰이 촛불시위 시위대에 살수를 시작할 무렵 성명불상의 여성이 폴리스라인 쪽으로 달려가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 여성을 전경들 속으로 밀어 넣고 발로 차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여성을 도와주러 앞쪽으로 갔으나 보이지 않아 찾던 중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여성을 끌어내었다. 그것을 보고 전경들도 조금 물러나 끌어내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위 여성을 끌어내고 뒤로 빠지는 피해자에 대해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안면부를 가격하여 치조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입안쪽 봉합수술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1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하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대학병원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종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 명단, KBS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시위대와 대치 중으로 진압작전 등을 시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와 진압경찰은 2008. 6. 26. 01:30경 광화문4거리와 새문안 교회 사이에 있는 도로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었으며 신문로에는 시위대들이 흩어져 있었고 진압경찰 2명이 낙오하여 위 시위대 사이에 있었고 도로위에서 인도 쪽으로 걸어가 고 있었다. 피해자는 신문로 위에 있다가 인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 위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1명과 조우하게 되었는데 그 진압경찰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방어자세를 취하여 왼손을 진압경찰 쪽으로 내밀었으며 우연히 왼손 중지 끝부분이 진압경찰의 입안으로 들어갔다.

(2) 피해사실 관련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위의 상황에서 자신의 입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중지 끝부분을 깨물어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중지 끝부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국립의료원 의사 ○○○가 작성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 2008. 6. 27.자 한겨레신문 관련기사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의 왼손 증지를 물어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 성명불상의 중지손상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야간에 당황 흥분 경악으로 한 행위여서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해행위는 일련의 시위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압경찰 성명 불상은 가해행위를 할 당시 야간에 부대로부터 낙오하여 시위대 안에서 이동 중 이었고 피해자와 우연히 충돌하게 되어 당황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진압경찰 성명불상의 가해행위는 인권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2008. 6. 26. 밤부터 6. 27. 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양상

- 20:15~20:30 현재 시위대 3,000여명, 촛불시위 마치고 행진 시작, 양방향 전차로 접거한 채 선두 종로관내 진입
- 행진 중 조선일보 본관을 지나다가 대비경력이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수비 중인 것을 보고, “왜 조선일보를 막고 있느냐”며 종이 및 신문 등을 대비 경력에게 투척하며 항의 중
- 20:30 조선일보 본관 앞 인도 상(코리아나 호텔 정문 앞)에서 “조선일보 쓰레기” “조선일보 폐간하라” 구호 제창하며 계란 및 신문 등을 투척, 이를 제지하는 호텔 직원들과 언쟁 및 경미한 몸싸움을 하고 있음
- 시위대 300여명,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구호 제창하면서 경력과 몸싸움.
- 00:50 : 시위대 1,300여명, 조선일보 본관앞에서 프레스센터 태평로 상에 대기 중
- 01:05~01:35 시위대 800여명, 조선일보-프레스센터 태평로상 대기 중

- 300여명, 코리아나호텔 앞 비난성 구호제창 및 쓰레기 투기중, 2개 중대 대기 중.
- 시위대 일부 차도 군데군데 모여 주변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리고 있음.
- 02:30 시위대 750여명 태평로 서울광장 산재(민주당의원 6명, 선두에 위치)
 - 태평로 부근, 600여명 시위대 산재
 - 세종로 로터리 부근, 시위대 500명, 차도상에 있는 시위자들을 인도상으로 밀어올리는 작전시작(01:45경)하여, 청계광장 등 주변으로 해산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22:00경 새문안교회 옆 골목에서 시위대와 불상의 진압경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불상의 진압경찰이 시위대에게 수적으로 밀리자 방패로 시민들을 가격하기 시작하여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시위대에 밀려 골목 안으로 후퇴하여 피해자에게 회색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 ○, ○, ○, ○, ○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하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조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건을 투척하여 우측 앞머리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시위대 전방에 위치한 진압경찰을 향해 서 있던 피해자의 전두부에 열상을 입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이 불상의 물건을 투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시위대에게 수적으로 밀려 골목으로 후퇴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무장의 시위대에게 경찰의 진압장비가 아닌 불상의 물건을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6. 23:00경 세종로 사거리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대가 모래산성을 쌓았고 경찰이 산성을 쌓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한 후 일부 시민이 모래산성에 올라가자 살수를 시작했고 시위대는 차벽 앞에서 구호와 노래를 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차벽 앞에서 구호와 노래를 하는 피해자에게 돌멩이 혹은 쇠덩어리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에 열상을 가하여 7마늘을 봉합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하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할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피구호자 명단(피해자 이름이 ○○○으로 잘못 기재됨)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에게 불상의 물체를 던져 앞머리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치 중이었고, 경찰을 향해 서서 구호와 노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은 점으로 볼 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병력의 투척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투척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6. 자정 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중, 물대포 및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진압경찰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밀어부친 후 저지대에서 고지대 쪽 시위대에게 돌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앞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2008. 6. 27. MBC 9시 뉴스데스크 영상자료(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왼팔에 시민기자 파란 완장을 찬 이마에 피를 흘리며, 응급치료중인 피해자 영상자료), 강북삼성병원 통원확인서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돌 등을 투척하여 이마에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의 경우 기자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쪽(즉 피해자는 시위대 대오에 있었으므로 경찰쪽)을 향하고 있고 피해자가 투척물에 입은 상처부위가 앞이마이므로 진압경찰이 투척한 돌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투척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6. 자정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물대포 및 방패와 경찰봉으로 무장한 진압경찰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물대포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준 및 직사하여, 후방으로 2-3미터 날아가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일시적 기절 및 팔과 턱 부위 찰과상 등 피해를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동영상자료(네이버/ 제목 : 물대포 맞고 기절한 경찰편/ 노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색 상의를 입은 여성),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물대포를 직사하여 찰과상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담을 헐고 경찰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등 시위양상이 격렬하여 경찰로서는 일정한 방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살수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경찰의 살수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되므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경찰은 2008. 6. 27. 01:00경 신문로에서 시위대를 광화문 4거리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를 하면서 전진하였으며 시위대들은 살수를 피하기 위해 전경대오 쪽으로 등을 돌리고 후퇴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렇게 전진하던 중 살수를 중단하고 갑자기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국립의료원 의사 ○○○ 등이 작성한 진단서, 오마이뉴스 2008. 07. 02. 피해자 인터뷰 기사 및 사진, ○○종로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관련 동영상의 재생화면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이격거리없이 직접 부딪히던 상황이어서 혼잡스럽기는 하였지만 시위대가 비무장이었고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의 가격행위를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2008. 6. 28.밤부터 6. 29.새벽까지 발생한 피해사례

〈종로입구 상황〉

가. 시간별 진행양상

- 19:10 : 현재 촛불시위 (10,500여명), 서울광장/태평로 주변 10,000여명
 - 세종로R 주변 100여명 등
- 19:55 :
 - 안국R거리행진 (안국R→종로1R→서린R→무교로→서울광장)
 - 광화문 100여명 광화문 빌딩 앞 인도 상
 - 경찰이 광화문4거리를 통제하자, 10분 뒤 인도에 서 있던 시민 300여명 중 50여명이 광화문4거리로 진입 파란 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며 준법투쟁
- 20:25경 인도로 올라옴(오마이뉴스)
- 20:35 : 세종로R 광화문빌딩 주변 200여명, 청계광장 100여명, 산재 대기
- 21:15 : 세종로R 광화문빌딩·비각앞 청계광장 등 300여명 대기 중
- 22:15 : 시위대 6,000여명 서린R 대치상황
 - 프레스센터 앞 일부시위대가 호스를 가져와 소화전 연결 후 경력에 살수
 - 서린R 중앙차벽에 밧줄 1개를 걸어 앞으로 당기는 과정
 - 대열 선두 시위대가 채차 중앙 차벽에 밧줄 2개를 걸어 앞으로 당기고 있으며, 차벽 뒤에서는 대비경력들이 밧줄을 걸어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기고 있음
 - 교보R 주변(광화문빌딩·비각 앞·청계광장) 300여명중 50여명은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 제창 중
- 23:00 : 서린R~종로1가R간 쏠 차도 상에 5,000여명으로 감소, 중앙차벽 뒷 바퀴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있음
 - 살수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물 대포 살수
 - 안국R 시위대 200여명이 차벽 앞 대기 중 100여명이 종로1가 방향으로 이동
- 23:40 : 주력 대오 7,900여명 중 4,000여명 , 서린R~종로1가R간 쏠 차도 점거, 중앙 차벽에 밧줄(3개)을 걸어 당겨 차벽이 대오 방향으로 2미터 앞으로 끌려 나가 있으며, 차벽위에 시위대 1명이 올라가 대기 중인 가운데, 대비경력 살수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살수
- 24:05 : 주력 대오 7,900여명 중 3,000여명
 - 서린R~종로1가R 간 쏠 차도상에 3,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밧줄 3개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중 차벽을 끄는 중에 밧줄 1개가 끊어져 재차 연결 차벽을 끌어 당겨, 차벽이 약 1/2 가량 무너진 상황

- 23:52경 차벽위에 올라가 있던 시위대 1명은 다른 시위대의 만류로 차도로 내려와 대기 중
- 24:05경 극렬하게 저항하던 시위대 2명을 검거
- 24:30 : 주력 대오(서린R↔종로1R) 6,600여명 중 3,000여명
- 3,000여명, 서린R~종로1R(2,500), 서린R~모전교(300), 서린R~종로구청(200) 등 산재 대기 중인 가운데, 2,500여명은 경력과 50미터 거리를 두고 대기 중
- 서울청(7계)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파악한바,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은 격전지인 프레스센터↔파이낸스빌딩 간 경력과 마찰과정을 관망하며 삼삼오오 산재하여 간접응원을 하고 있으며, 청계광장, 모전교, 무교로 등에도 해산치 않고 산재, 서성거리고 있음
- 24:40 : 시위대(서린R↔종로1R) 3,000명, 대비경력이 서린동 SK본사 앞까지 밀어 올렸으며, 주 대오 2,500명은 대비경력과 50여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종로1가R 방면에서 대기하며 대기 중
- 대비경력이 종로1가R 방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4명이 경력 앞으로 이동 중에 있고, 여타 시위대 500여명은 모전교 방면과 종로구청 방면에 각각 산재 대기 중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자정경 교보문고와 광화문중앙우체국을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기 중인 상황이었다. 시위대는 차벽을 허물기 위하여 줄을 차벽 바위에 걸어 차벽을 당기던 중이었고, 진압경찰은 소화기와 물대포로 진압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30에서 23:50경 교보문고 쪽 차벽앞에서 소화기분사에 숨이 막혀 차량 바퀴 쪽에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불상의 죄

파이프(또는 냇)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에 열상(상처로 보아 냇에 의한 것으로 추측)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주장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광우병 대책위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가 차벽을 잡아당기는 밧줄을 절단하기 위해 쇠파이프에 냇을 용접한 물체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집회시위과정에서 시위대가 위 물체를 탈취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부상이 진압경찰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진압경찰이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경 광화문 쪽 시위 상황을 보기 위해 종로1가 쪽 인도위에 서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앞의 일시 장소에서 2-3미터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방패로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가격하며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썹 밑 부위에 6-8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열상과 뒷머리에 상처 크기가 3센티 정도인 열상을 입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피해당시의 사진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들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 ○○○을 폭행하여 뒷머리와 이마에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인도위에 서있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시위대가 2008. 6. 29. 00:00경 종로1가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경찰버스를 잡아 당겨 차벽에 틈이 생긴 뒤 진압경찰이 차벽 틈으로 나와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시민들과 진압경찰이 불상의 물체를 서로 던져서 진압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물건투척을 말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전투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위에 후퇴해 있던 피해자와 맞부딪히자마자 불상의 검은물체(방패로 추정됨)를 휘둘러 피해자의 앞 이마부위를 가격하여 상처크기가 5cm정도 되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11~16중대 중대장)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서울대학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활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당하던 상황이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이격거리없이 직접 부딪히던 상황이어서 혼잡스럽기는 하였지만 시위대가 비무장이었고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경찰의 가격행위를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08진인251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00경 광화문우체국 옆에서 당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시위대 일부가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겨 약 30도 각도 정도 버스를 끌고 나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1-2미터 앞쪽에 있던 피해자 얼굴부위를 방패 모서리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및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소방서장이 작성한 촛불시위 관련 피구호자 명단, 강남성모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피해주장요지 기재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 안면부위를 방패로 가격할 때 상황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비무장 시위대는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진인252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0경 광화문우체국 옆 차로에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시위대 일부가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겨 약 30도 각도 정도 버스를 끌고 나왔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방패를 들어 수평으로 세운 후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소속 1, 2, 3, 5, 10, 11중대장)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시위대에게 위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왕십리 동인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오마이뉴스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대오를 갖추고 있을 당시 이미 일부 시위대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 있었고 피해자는 시위대와 함께 앉아 있던 상황으로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 사건(08진인2494)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자정경 교보문고와 광화문중앙우체국을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23:50경 시위대에 의하여 차벽이 열리자 23:55경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시위대를 종각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적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찍어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가해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서울대 병원 진단서, ○○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진압당시 경찰들의 방패 사용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자료,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방패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비록 시위대가 경찰의 차벽을 1/2정도 열어 폴리스 라인을 무너

뜨리는 등 시위 양상이 과격하였다 하여도, 진압당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하여 폭력 등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앉아서 스크럼을 짜고 진압에 저항하였고 피해자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7) ○○○ 사건(08진인2509)

가) 피해주장 요지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경 세종로사거리(우체국과 교보빌딩 사이)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버스를 맞출로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방패를 세로로 들어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고 방패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짓밟고 방패, 봉, 손, 발 등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이상의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각하한다.

8) ○○○ 사건(08진인250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칼라TV기자로 2008. 6. 28. 22:00경부터 종각역에서의 시위상황을 인도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가 사용하던 카메라와 피해자의 얼굴에 충격하게 하여 카메라를 파손하고 얼굴부위에 2cm정도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서, 칼라 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종각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경이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던져 소화기가 카메라에 맞으며 안면부(눈위)에 열상을 입어 서울 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대에 의해 경찰버스가 흔들려 공간이 발생하자 전경들을 전진시켜 버스 밖으로 나와 대열을 유지한 후 시위대를 밀어내는 상황으로 소화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발사와 진압(방패에 의한 가격 포함)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인터넷생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를 향해 무게 약 2kg(분말을 사용하여 빈통) 크기 약 40cm의 소화기를 5~6m앞에서 안면부 정면으로 투척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태평로 상황>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 양상

- 19:10경 ~ 20:30경
 - 경찰측 추산 1만 5천(주최측 추산 10만) 여명이 촛불집회에 참가 하였고, 19:10경 민노당 ○○○의 사회로 시작하여 20:30경 ○○○, ○○○의 발언을 끝으로 시위대 일부는 경복궁 방향으로, 일부는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 하였고, 각각 코리아나호텔-프레스센터 차벽과, 교보빌딩-광화문우체국 차벽에 막혀, 각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음.
- 20:30경 ~ 21:00경
 - 시위대는 태평로의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며, 시위대가 차벽을 흔들고, 쇠파이프로 끌어내려 하고 있으며, 경찰은 소화기를 뿌리다가, 20:50경부터 살수차로 대응하고, 시민도 소화전을 연결하여 경찰 측에 물을 뿌리고 있었음.
- 21:00경 ~ 22:00경
 -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를 손괴중이며, 경찰들은 차돌과 쇠붙이를 던지며 대응하고 있음. 21:30경 잠시 살수가 멈춤(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때문). 돌과 쇠붙이에 의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21:55경 시민 1인이 경찰차량위에 올라감.
- 22:00경 ~ 23:00경
 - 남대문경찰서장은 21:44경 1차 해산 명령 후, 22:17경 2차 해산명령, 23:08경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있음. 시민들이 경찰차량을 끌어내려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경찰은 계속 살수와 소화기를 직사하고 있음.
- 23:00경 ~ 24:00경
 - 서울시 의회 쪽 차벽 뒤에서 경찰 쪽에서 날아온 쇠파이프 조각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있던 ○○○ 대책회의 사무처장이 안면부 열상으로 백병원 후송되었고, 이와 관련 ○○○ 의원 등이 경찰청 항의방문 가자며 23:55경 출발하였고, 교보문고 쪽은 23:50경 차벽이 반쯤 끌어내어져 차벽이 열렸고, 23:55경 경찰이 투입되어 00:00경 진압하고 있었음.

○ 00:00경 ~ 01:00경

- 00:14경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여전히 시위대가 차벽을 허물려 하고,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로 대응하고 있음.
- 00:17경 대책회의 측에서는 곧 경찰의 진압 움직임이 보인다면, 경찰차량을 끌어내는 것을 멈추고 진압 시 시민들이 갑자기 뛰게 되면 위험하니 천천히 움직이라고 방송하고 있음.
- 00:19경 일부 경찰(30여명)들이 시의회 쪽 차벽 쪽에서 뛰어나와 2-3열 중대로 덕수궁 대한문 쪽으로 약 1-2백미터 달려 나가고 뒤이어서 2-3명씩 계속하여 선두를 따라 대한문 쪽으로 달려 나가고 있음(진압시작).
(시의회쪽 골목) 코리아나호텔주차장을 이용하여 서울시의회쪽으로 이동한 경찰은 '눅자' 시위대에 막혀 대치 중
- 00:21 시민들이 소화전을 이용하여 후속 경찰들 막으려 하고, 선두로 달렸던 경찰 약 1백여명은 시위대에 포위되었고, 일부 시위대가 고립된 경찰을 쇠파이프, 몽둥이,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눅자'에 막힌 경찰은 방패와 군화발로 누워있는 시위대를 찍으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음.
- 00:23 후속경찰들이 속속 나와 정렬하며 대오를 갖추고 있고, 3-5미터 간격 두고 시위대가 소방호스로 떠를 만들어 대치하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경찰이 '눅자' 스크림 대열의 왼쪽방향을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뚫고, 태평로를 향하여 달려 나갔다가, 시위대의 돌투척 등 위세에 밀려 다시 골목으로 후퇴하고 있음.
- 00:25 경찰지휘관은 "경찰 수는 충분하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밀어!" "대오를 갖춰가지고 군중들을 밀어"라고 명령하자, 수백의 경찰이 곤봉과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며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고, 시위대는 시청광장방향과 인도 쪽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순식간에 시위대를 밀어낸 경찰은 고립된 경찰이 있는 곳까지 시위대를 밀어내고 있음.
(시의회쪽 골목) 후퇴했던 경찰이 다시 태평로 쪽으로 진출함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00:27 후속경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으며, 대한문 있는 곳까지 계속 밀고 가고 있고, 지휘관은 마이크로 격대장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경찰간부들은 흥분한 전의경을 진정시키느라 봉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음.
- 00:30 고립되어 폭행당한 부상자 전경들이 동료 경찰들에 의하여 후방으로 옮겨지고 있고, 시위대는 인도로 내몰렸음. 시청 쪽으로 밀려난 시위대는 종로 1가 쪽으로 이동하여 합류하고 있음.

나. 개별사건의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진인2533)

가) 피해주장요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8. 23:30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빠르게 소화기 분사 및 살수차의 살수를 이용한 진압을 하던 중 시위대 측을 향하여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가 제출한 소화기 투척 동영상(<http://blog.daum.net/kdy4010/10739876>), 소화기에 맞을 당시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28. 23:30경 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찰측에서 날라온 소화기에 오른발 등을 찍히는 타박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태평로상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측에서 일부 투척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찰이 소화기를 투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 ○○○ 사건(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08진인248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

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집회진압 시 피해자(피해자는 현역 전경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걱정되어 현장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음)의 가슴을 발로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뒤이어 오던 성명불상의 다른 경찰이 방패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2주 진단(머리뿔개의 얇은 손상, 뇌진탕 후 증후군)에 이르는 상처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등)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남편의 각 진술,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국일보 기사에 보도된 사진자료 등을 종합하면,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서 이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임에도 진압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저항하지 않고 도망하는 시민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방패로 가격하였는바, 이러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 ○○○ 사건(08진인249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압 중,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상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일시에 서울시의회 옆 인도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었음)의 얼굴을 방패로 찌고, 정강이를 곤봉으로 가격하여 실신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피해자는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깨어남).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등)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백병원 의무기록사본, 2008. 6. 29 KBS 뉴스 9 동영상 자료(제목: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 수백 명 부상/ 57초 경과후 노란색 우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영상)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경찰에 의하여(방패에 찍힌 상처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고 인도에 있던 상황임에도 진압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저항하지 않고 도망하는 시민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경찰봉으로 가격하는 등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 ○○○ 사건 (08진인252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물대포를 맞고 있던 중 조선일보 건물 옆 골목에서 경찰들이 밀려나오면서 경찰에 밀려서 넘어졌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싼 뒤 뒷머리 부위를 방패로 10여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팔과 머리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적십자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진압경찰에 대해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넘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압경찰 폭행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5) ○○○ 사건(08진인 252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앞 인도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시위대 쪽으로 밀고나오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자, 방패와 군홧발로 피해자의 얼굴, 손,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안면부골절(우측 눈 주위, 광대뼈, 턱뼈)과 오른손중지 개방형 골절, 늑골 2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보라매병원 진단서, 백병원 치료당시 광우병대책회의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은 피해사실요지 기재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특별히 진압경찰에게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가격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시의회쪽 차벽틈새를 통해 시청쪽방향으로 나와 약 100여명 정도 대오를 정비한 후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피해자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방패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여 왼손 검지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의 각 진술,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조자명단, ○○서 정보과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와 경찰봉으로 피해자 ○○○을 가격하여 왼손 검지 손가락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 ○○○을 가격한 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7) ○○○ 사건(08진인251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2008. 6. 29. 00:30경 서울시 의회건물 앞 차도에서 구호 제창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진압경찰이 경찰버스 사이로 몰려나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 20여명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와 경찰봉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부위를 7~8차례 가격하여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8) ○○○ 사건(08진인2513)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시위대가 2008. 6. 29. 00:30경 프레스센터 차벽 앞에 있었고 피해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자는 시청역 5번 출구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차도에서 촛불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진압경찰이 진압을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시위대가 뒤로 물러나오는 것을 보고 시청역 5번 출구 쪽으로 가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청역 2호선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여 발로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둘러싸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밟아 뇌진탕,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백병원 진료기록,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제○기동단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가 시위대를 밀어붙여 해산시키는 작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진압경찰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9)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시청쪽 방향으로 나와 약 100여명 정도 대오를 정비한 후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도만춘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도만춘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도만춘을 계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 ○○○을 폭행하고 있다가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기동대(○○, ○○, ○○, ○○, ○○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비무장 20대 여성이고, 다른 피해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방패와 경찰봉 등으로 가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0) ○○○ 사건 (08진인250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부근 차벽 앞에서 진압경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50대 남자를 둘러싼 채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전경들한테 둘러싸여 폭행당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를 끌어내려고 하던 피해자의 왼쪽 귀 위 머리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여 머리에 2.3센티미터 열상으로 3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진료기록, 한겨레신문 동영상의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 시민을 연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손을 뻗자 방패로 뒷머리를 가격하여 구토 및 안면경련 등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진술, 국립의료원 계산서 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부상을 당하여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상경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압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12) ○○○ 사건(여, 08진인253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2008. 6. 29. 00:30경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부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진압이 시작되어 시민들이 서울광장쪽으로 밀려가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서울광장 옆 차도에서 시민들과 전경사이를 가로 막고 폭력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뒤 등을 돌려 후퇴하고 있던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위 부위에 6센티미터의 열상으로 9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 부상 사진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유재향의 안면부위를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이마 부위에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작전을 시작한 진압경찰이 비무장으로 후퇴하고 있는 시위대의 관자놀이 부위를 경찰봉으로 찌은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3) ○○○ 사건(여, 08직인11)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3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에 프레스센터앞 인도 쪽으로 시위대를 진압, 시위대와 대치중, 성명불상 시민을 방패로 찢고 발로 밟는 상황에서 인도로 올라오는 시민을 도우려고 두 손을 앞으로 내민 피해자의 손을 방패로 때려 4주진단(좌제3,4수지 원위지골골절)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6. 29. 00:58경 세란병원으로 후송), 세란병원 의사 ○○○의 진단, 한강성심병원 의사 ○○○의 진단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경찰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다.

진압경찰이 경찰의 폭행을 피하려는 시민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민 피해자의 손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4) ○○○ 사건 (08진인2537)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상기 일시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방패로 가격하여 뇌진탕

증세(구토 등)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는 6. 29. 00:30경 서울시의회 앞 인도와 차도에서 갑자기 차벽틈으로 나온 경찰과 시의회쪽 골목에서 나온 경찰 수십명에게 포위되어 방패와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무릎으로 찍혀 팔에 타박상 및 뒤통수 및 어깨에 수십개의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5) △△△ 사건(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08진인248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 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에 1cm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진술, 인제대 백병원 의무기록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압경찰의 가해행위에 의한 부상임을 입증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진압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16)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3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일시에 진압 중, 서울시청역 입구 부근에서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여자친구 ○○○을 폭행하고, 이에 ○○○을 보호하고자 감싸던 피해자 ○○○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기절(뇌진탕 진단)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세란병원 의사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2008. 6. 29 01:00경 후송됨), 목격자 ○○○의 타박상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경찰봉으로 가격한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7) ○○○ 사건(08진인235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2008. 6. 29. 00:30경 프레스센터 앞 인도위에서 여자친

구와 촛불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중 강제진압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갈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피해자와 여자친구를 함께 쓰러뜨린 후 집단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는 보내주라고 사정하자 여자친구는 빼주었으나, 피해자를 프레스센터 화단에서부터 전경차로 연행하는 도중 계속 집단폭행과 폭언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목격자 ○○○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경찰 진압시 폭행당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의경 ○○○의 진술서, 유치장 근무일지, 잠실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서대문 소재 세란병원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가 분실한 게임기 습득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2008. 6. 28. 자정경 여자친구 ○○○와 함께 촛불시위에 참석하던 중 6. 29. 00:20경 진압경찰이 갑자기 해산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들은 인도 등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인도에서 ○○○와 함께 있던 피해자 ○○○은 ○기동대 ○중대가 성명불상의 중대장으로부터 ‘연행해’라는 말을 들은 이경 ○○○ 등을 포함한 수명의 의경들이 피해자 ○○○과 ○○○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와 피해자는 함께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불상의 진압경찰들에 의해 피해자와 ○○○는 차도로 끌려가면서 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여자는 놔주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여자는 놔주라’고 하여 ○○○는 풀려났으나, 피해자는 경찰버스로 끌려가며 폭행을 당하였고 이때 안경과 신발 한 짝 그리고 사업상 가지고 왔던 장비(소니사 게임기 등)를 분실하였음이 인정된다. 후퇴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체포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방어행위 또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18)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불상자와 부딪혀 넘어졌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소방서장이 작성한 119구급차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활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청 ○기동대(○○, ○○, ○○, ○○, ○○중대 중대장)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를 머리와 머리를 감싸 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비무장 20대 여성이고,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가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 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19)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에서 이탈한 진압경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기동단 ○○, ○○, ○○, ○○, ○○중대 중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경찰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의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의료지원단이 입은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 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0) ○○○ 사건(16세, 08진인2489)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23:30경 토요일 시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중 경찰이 조선일보 건물앞을 경찰버스와 살수차 등으로 가로막았으며 시위대가 밧줄로 전경버스를 끌어내려 하자, 경찰은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며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2008. 6. 28. 23:50경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앞 장소에서 돌맹이, 쇠조각, 빈 소화기 등을 시위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각하한다. 21) ○○○ (여, 08진인2484)/○○○ (08진인2482) 사건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를 연결하는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 중, 6. 29. 00:20경 차벽사이 및 서울시의회 골목을 통하여 진출 후 시위대를 인도 및 시청방향으로 밀어내며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9. 6. 29. 상기 일시에 서울시의회 쪽 인도에서 피해자 (○○○와 ○○○는 부부로서 당시 인도에 있었음) ○○○를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피해자 ○○○가 ‘잠깐만요’를 외치며 남편을 감싸는 사이, 성명불상 경찰이 방패로 ○○○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2.5cm에 이르는 열상 등 부상을 입혔다.

나) 경찰측 답변(제○기동단 ○중대장 경감 ○○○)

당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이 있고, 6. 29. 00:20경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중, 불법시위대에게 고립되어 약 3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장비를 피탈당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백병원 의무기록사본 (○○○,○○○) 등을 종합하면,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시위를 구경하는 수준이었고,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

고 인도에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리라 예측하지 못하여 진압 초반 적극적으로 도망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찰의 폭력행위에 놀라 도망하던 중 주로 뒷머리를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경찰의 가격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2) ○○○ 사건(08진인2506)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위에서 시위를 지켜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과 유모차들이 영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피해자를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패로 등, 옆구리, 어깨부위를 찌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가 3센티미터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고 온몸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진압경찰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3) ○○○ 사건(08진인253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9. 00:00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증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 ○○, ○○중대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진압작전을 하면서 후퇴하고 있는 비무장 시위대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하는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4) ○○○ 사건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서울시의회건물 옆 골목을 통해 태평로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던 중,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자 서울시의회 옆 골목길에서 경찰과 대치하였으며 피해자 ○○○

(한국 YMCA 사무총장)의 권유로 '오늘은 눅자' 회원들과 함께 평화적 방법으로 스크럼을 짜고 누워서 진압에 저항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대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시위대가 골목길에서 스크럼을 짜고 누워 있는 상황에서, 양쪽 끝을 통해 시의회 앞까지 진출하였고(당시 태평로 쪽에 일부 진압경찰이 피랍되어 있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차벽 앞을 통하여 태평로까지 진출한 다른 부대와 함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금강아산병원 의사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명단(2008. 6. 29. 00:50경 동아일보사 앞에서 용산 중대병원으로 후송),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4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5)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장)가 '눅자 행동단' 등 시민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자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금강아산병원 의사 ○○○의 진단서,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조자 명단(2008. 6. 29. 00:50경 동아일보사 앞에서 용산 중대병원으로 후송),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방패 및 경찰봉으로 피해자를 찍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머리를 심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온몸에 경련을 일으켜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6) ○○○ 사건(여, 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한국YMCA전국연맹 인권복지팀간사)를 가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피진정인 ○○○의 답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2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민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7) ○○○ 사건(08진인2498)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20경 서울시의회건물 옆 골목을 통해 태평로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던 중,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자 서울시의회 옆 골목길에서 경찰과 대치하였으며 피해자 ○○○(한국 YMCA 사무총장)의 권유로 '오늘은 눅자' 회원들과 함께 평화적 방법으로 스크림을 짜고 누워서 진압에 저항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겸 목격자 ○○○의 뒷줄에 누워있었는바, 위 ○○○이 경찰에 의하여 머리 쪽을 가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몸으로 감싸며 막으려고 하였음.)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눅자 행동단)를 가격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적십자병원 의사 ○○○의 진단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 ○○○의 진단서,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6주 진단에 이르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민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8) ○○○ 사건(08진인2517)

가) 피해주장 요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1) 기초사실 관련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농자 행동단)를 가 격하여 전치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적십자병원 의사 ○○○의 진단서, 상호목격자 ○○○의 진술서,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 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29) ○○○ 사건(08진인248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피해자(농자 행동단)를 가 격하여 안면 눈 부위 약 7cm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찰측 답변

○○○ 사건과 동일함.

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경찰관 ○○○의 답변, 서울대병원 의사 ○○○의 진단서, 목격자 ○○○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피구호자명단, 한겨레신문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진압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시위대가 경찰의 태평로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진압경찰이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방패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0) ○○○ 사건(08진인250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22:00경 태평로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하면서 경찰차를 빔줄로 잡아당기는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차와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었고, 시위대는 경찰차를 빔줄로 잡아당기는 한편 소화전을 이용하여 경찰쪽을 향해 살수를 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태평로 언론재단 앞 유리창이 깨진 경찰버스 안에서 1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살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눈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1) ○○○ 사건(08진인2502)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 사건과 동일함.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태평로에서 경찰버스 사이로 살수를 하여 시위대 앞에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오른쪽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32) ○○○ 사건(08진인2495)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제52차 촛불문화제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용하여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0:40경 서울시의회 쪽에서 두 번째 차벽 운전자석에서 피해자에게(피해자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소화기 분사하는 것을 막고자, 은박의 파이프 단열재로 경찰차량 창문을 막고 있었음) 진압봉으로 왼쪽 눈부위를 수직으로 가격하여 3주 진단(안면부 비골골절, 비부 열상)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 ○○○의 진술, ○○소방서 119구조대 일지(6. 28. 20:57경 서울시청역에서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 강북삼성병원 의사 ○○○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 경찰이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진압경찰 성명불상이 피해자의 소화기 분사 저지행위에 대하여 진압봉을 사용하여 손 등을 가격하여 제지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하여 내리찍은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3)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관 제52차 촛불문화제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간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용하여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 진압경찰은 2008. 6. 28. 23:00경 돌 등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우측 귀에 1.5cm의 열상을 가하는 피해를 입혔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의 진술, ○○소방서 119 구급활동 일지(6. 28. 23:14경 시청 후문에서 용산중대병원으로 후송),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진압경찰이 투척행위를 통해 시위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경찰의 정당방위나 자위의 수단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투척행위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9. 2008. 6. 29. 오후에 발생한 피해사례

가. 시간별 장소별 진행상황

- 16:00 광문문우체육국앞, 이순신장군동상앞 경력대비 및 차벽설치 준비
 - 경찰이 이날 오후 4시경부터 100여 개 중대 9천여 명의 병력과 전경버스를 투입, 서울광장과 세종로사거리 등 주요 '거점'을 원천봉쇄했고 이에 따라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과 명동, 광고 주변에서 300~400명 단위로 모여 산발적인 시위를 진행
 -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었음
 -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을 뿐 아니라 광장 주변에 있던 음향 및 무대 차량을 모두 견인하는 등 아예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16:47 서울광장 인근의 시위용 방송차량을 견인
 - 경찰은 촛불 문화제 무대로 사용하던 '대책회의' 방송차량 등을 견인 함. 경찰의 조치로 광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스피커 장비가 설치된 1.5t 트럭과 화물연대 소유의 11.5t 대형 트럭도 견인 되었고, 차량 견인 등에 거세게 항의하던 촛불시위 참가 시민 16명이 경찰에 연행
- 16:57 서울시청 앞 행정대집행(불법설치천막철거)
- 18:46 시위대 을지로로 행진 중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경찰에 포위된 채 서울광장에 모여있던 400여 명의 시위대는 오후 6시를 전후해 인도와 차도 일부를 이용, "재협상 실시하라" "폭력경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을지로~청계2가~종각역으로 이동
- 18:53 종로1가 경찰과 시위대 대치
- 19:22 시위대 청계북로 이용 종로2가로 이동. 경찰 일부 시위대 따라 계속 이동, 다른 일부경찰 서린로타리로 이동
- 19:46 경찰 일부 시위대따라 종로1가 보신각으로 재이동
- 6. 30. 01:01 보신각 주변 산재 시위대 500명 시위 중, 국회의원 등이 해산 하자 자진해산

나. 개별사건 인권침해 인정여부

1) ○○○ 사건(08직인11)

가) 피해주장 요지

(1)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16:30경 덕수궁 앞 도로(태평로)에서 시위대측의 방송 차량이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시위대들이 경찰의 이러한 저지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몰려가 양측은 실랑이를 하였다. 진압 경찰은 위 방송차량이 지나간 후 덕수궁 정문 앞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싸고 체포하였다.

(2)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 6-7명은 위의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의 "저 새끼 잡아"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인도 위를 통행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하던 시위대원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고 팔과 어깨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10여회 정도 가격하고 얼굴 왼쪽 눈부위를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헤민병원 의사 ○○○이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압경찰 성명불상들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 ○○○을 폭행하여 전

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진압경찰이 피해자를 현행범체포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현행범체포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진압경찰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몸 부위에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끝.

[붙임자료 3]

경찰의 6. 28. 태평로 진압작전

1. 상황개요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 위(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어 있는 차벽틈(폭 약1미터)으로 진압경찰 약 100여명을 투입(이하 '선두부대'라고 함)하여 시위대 3,000여명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가게 하였다. 시위대들은 처음에 후퇴하였다가 위 100여명을 따르는 후속부대가 없어 프레스센터 쪽으로 달려온 450여명을 포위한 뒤(450여명은 대한문 쪽으로 달려감) 쇠파이프 등으로 약 34분 정도 폭행을 가하였다(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6. 28. 태평로 및 종로 등에서 대원 165명이 부상당하였음). 그 후 경찰은 후속부대를 투입하여 시위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 등으로 가격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였다(한겨레신문기사와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시위대부상자수는 약 300여명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2008. 6. 28. 태평로 진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위 진압이 양측 모두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계기를 제공한 점과 진압작전의 형태가 평소의 진압작전과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인 결과 위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 경찰 측 주장

가. ○기동단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2008. 6. 28.은 차벽을 코리아나 호텔로 전진배치하여 그곳 차벽이 무너지면 청와대 경비가 어려워진다. 당시 차벽이 심하게 흔들려 대원들을 투입하여 밧줄을 끊기 위해 시급히 작전을 해야 했다. 당시 현장작전 지휘는 4기동단장이 했으며 상황실에 투입작전을 보고하여 경비1과장이 '○'(알았다'는 의미임)이라고 하여 투입했다.

2) 후속부대 투입지연 이유

선발부대원들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골목길 입구를 지나쳐 더 멀리 치고 들어갔고 후속부대는 진입로(차벽틈)가 좁고 시위대가 차벽틈을 향해 소방호스로

물을 발사했고 일부 시위대는 밧줄로 차벽틈 앞을 가로막아 투입이 지체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 부대 사이 거리가 멀어졌고 선두부대가 고립된 것이다.

3) (시의회 골목길과 차벽틈 양 투입로에서) 동시투입을 못한 이유

주차장 골목길로 투입하려던 부대는 ‘늑자’ 회원들의 방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시의회 옆 골목길 투입 부대를 지휘했던 부단장은 주차장길 차벽틈을 나가면서 단장에게 ‘나갑니다.’라고 무전교신을 했고 그 뒤에는 ‘늑자’ 상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차벽틈 부대 투입을 늦춰달라는 교신을 하지 못했다.

4)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방어선을 위한 작전이었고 다른 작전개념은 없었다.

나. 기동본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 기동단장이 당시 차벽이 열리려고 하니까 부대투입을 한 것 같다. ○ 기동단장이 현장지휘관이었고 아마도 단독 판단해서 작전을 한 것 같다.

2) 후속부대 투입지연 이유

○○중대와 ○중대가 고립된 것은 추가 투입하려던 중대가 시위대 밧줄에 의해 넘어지는 등 방해를 받고 시의회 쪽 투입부대가 ‘늑자’ 회원들에 의해 저지되어 정해진 시간에 투입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3) 동시투입 못한 이유

‘늑자’ 회원들이 막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전지휘부도 약간의 작전상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작전은 불가하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다. 경비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그쪽은 CCTV사각지대라서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상황실은 서린로 타리(종로입구쪽)에서 차벽이 뚫려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태평로쪽은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의해 투입되었을 것이다.

2) 작전에 상황실 개입여부

현장부대를 지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현장지휘관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

3)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어떠한 작전을 하였는지 알지도 못한다.

라. 전 경비○과장(현 ○○대학 ○○과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작전 상 현장상황에 대한 오관이 빚어낸 결과이다. 태평로 작전에 대해 기동본부장이나 경비1과장이 지시한 바가 없다.

2) ‘본때 보여주기식 작전’ 여부

대원들의 행위를 비난만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원들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또한 대원들이 공격받았을 때 방패를 드는 방법 말고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다.

마. ○기동단 ○○중대장(당시 ○○중대장)

1) 태평로 작전 전개 이유

당시 시위대가 많아 차벽 앞에서 대오를 정비할 여유가 없었다. 대오를 정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시위대가 몰려와 대처하게 되어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동단장이 기동본부장과 작전회의를 하고 난 뒤 그런 작전을 구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동단장이 투입지시를 하였다. ○기동단장은 작전 설명

할 때 해산작전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하고 덕수궁 앞까지 진격하라고 지시했다.

2) 후속부대 투입 지연 이유

○○중대가 나온 뒤에 ○○중대가 나왔는데 역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중대도 차벽 앞에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어서 결국 끊긴 것이라고 나중에 들었다.

3) 당시 많은 시위대가 부상한 이유

대원들이 자기 동료가 맞는 것을 보고 격앙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통제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바. 대원들 진술

1) ○○중대 수경 ○○○

자정경 진압명령을 받고 뛰어 나갔다. 시위대들이 예상외로 쉽게 물러나기에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는 시위자를 잡으러 가다 고립되었다.

2) ○○중대 수경 ○○○

시위대가 버스를 끌어내고 파손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대가 투입되었다. 차벽틈으로 나갈 때는 무전병이 '나가'라고 하여 진격했다. 차벽틈을 나가자마자 우리 대원들의 연결을 시위대가 끊어버려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대규모로 진격을 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옆쪽에 좁은 차벽틈으로 2줄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나가는 순서는 ○○중대(당시 ○○중대), ○○, ○○중대 순서로 나가는 것인데 ○○중대는 한참 뒤에 나왔다. ○○중대는 나가자마자 시위대가 뒤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빠져서 대원들을 둘러싸 완전히 시위대에 포위된 것이다.

3) ○○중대 상경 ○○○

2008. 6. 29. 시위대에 의해 고립되어 쇠파이프를 공격을 당했고 이 때 중대원들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시위대 수십 명이 달려들어 끌어내는 바람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4) ○○중대 ○○○ 일경

당시 차벽 뒤에서 대기하던 중 수인(무전병)에게 진압하러 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갈 준비를 하였다. 차벽틈이 좁아 각 소대를 2열로 맞추었다. 대원들은 차벽틈으로 나가면서 “다치지 말고 몸조심 하자”는 무전병의 선창에 기합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자 시민들이 뒤로 쫓 도망을 가서 그 뒤를 쫓아 약 200미터 정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쫓 밀고 나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시위대들이 미쳤나? 왜 도망가지 않을까?, 한번 붙자는 생각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려서 잘은 몰랐는데 그 때 옆 인도에 올라가 있던 시위대들이 차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뒤쪽을 막아 완전히 고립되게 되었다고 다른 대원들한테 들었다.

5) ○○중대 ○○○ 일경, ○○○ 일경, ○○○ 일경, ○○○ 일경

당시 차벽 가운데 경찰차가 시위대에 의해 끌려내어질 위험에 처해져 시위대를 차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여명의 대원들이 차벽 앞에 대열을 이루기 위해 차벽틈으로 나갔다. 시위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차벽틈으로 나간 대원 100여명은 순식간에 시위대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무장해제를 당한 채 집단으로 구타당하였다.

3. 목격자 진술

가. ○○○(시사인 기자, 당시 프레스센터 7층에서 투입장면을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경찰들이 처음에는 차벽 앞에 모이다가 어느 정도 대원이 모이니까 시위대 쪽을 향해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당시 대원들이 나오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바, 2-300여명이 나올 때까지 시위대가 막은 적이 없다. 밧줄은 경찰차에 묶어서 잡아당기던 것이어서 차벽틈을 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3) 동시투입관련 상황

경찰은 먼저 차벽틈으로 부대를 내보내더니 조금 후에 시의회 뒷골목으로 부대가 이동하였다. 만약 동시투입 계획이었다면 차벽틈으로 나온 부대가 조금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런 기미가 없이 대원수가 3-40여명이 되니까 치고 나왔다.

4)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선두부대와 후방부대가 약 5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시위대가 튼튼한 대오를 형성해서 양 부대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선두부대가 후퇴하거나 후방부대가 진격하여 고립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대학생, 당시 7층에서 고재열 기자와 함께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진압경찰들 약 15명이 차벽틈을 나오자마자 시위대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진압 경찰은 45도 각도로 프레스센터 쪽으로 뛰어 오더니 일부는 대한문 쪽으로 달려갔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시위대가 밧줄을 이용하여 차벽쪽으로 전의경대원들이 나오는 것을 막은 적은 없으며 대원들이 뛰어나올 때 별다른 방해 없이 잘 뛰어 나왔다.

3)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시위대가 선두부대원들을 포위한 뒤 폭행을 하였는데 대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방패로 시위대들이 때리는 것을 막고만 있었다. 후방부대가 약 50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지만 후방부대는 선두부대를 구하기 위해 선두부대 쪽으로 다가 오지 않았다. 대원들은 공격을 받자 원형대오를 갖추었는데 시위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이미 원형대오를 갖추었다. 이때만 해도 선두부대 후방에 시위대도 별로 없었는데 후방부대 쪽으로 후퇴하거나 하지 않았다.

다. ○○○(프리랜서, 당시 건물 5층에서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대원 3-40여명이 차벽틈으로 나온 뒤 한숨 돌리더니 2열로 시위대를 향해 뛰어갔다. 처음에는 대한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나중에는 프레스센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시위대가 차벽틈을 뺏길로 막은 적은 없었고 선발부대가 나오자 시위대는 뒤로 쪽 빠져서 차벽틈 부근에는 시위대가 있지도 않았다.

3)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선두부대는 시위대 한가운데로 뛰어나왔는데 후속부대가 뒤따라 나오지 않자 시위대들이 포위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들이 선두부대 후미를 압박하니까 자연스럽게 원형대오를 만들었다. 3-40여명이 앞으로 치고 나온 뒤 뒤쪽이 비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되면 시위대에 의해 포위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발부대는 후퇴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후방부대도 서둘러서 진격이라도 했다면 마찬가지로 고립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 의문이다.

라. 목격자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당시 프레스센터 7층에서 목격하였음)

1) 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온 직후 행동

대원들은 차벽틈을 통해 나올 때 틈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빨리 나왔다. 참고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좁은 틈으로 참 빨리 나온다고 생각했다. 대원들은 차벽틈으로 나온 뒤에 바로 뛰어 나가지는 않고 잠시 머물다가 뛰어 나갔는데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모인 상태에서 뛰어 나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먼저 뛰어나간 대원수는 약 15명 정도였다. 이 대원들은 뛰어나갈 때 전력 질주 하면서 아주 빨리 뛰어나갔다. 너무 빨리 나와 시민들이 미처 피하지도 못하였다. 이 대원들이 뛰어나간 방향은 프레스센터 쪽보다는 대한문 쪽 방향이었다. 이 대원들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달려 나오기만 했다.

2) 차벽틈이 시위대에 의해 방해된 적이 있는지 여부

후속부대 대원들이 차벽틈으로 나올 때 시민들이 차벽틈을 향하여 소방호스를

쏘거나 밧줄로 막아 후속부대 대원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노란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넘어져서 차벽틈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서 차벽틈 쪽을 보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 동시투입관련 상황

차벽틈으로 대원들이 나오기 약 30여분 전에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골목으로 대원들이 많이 들어갔다. 옆에 있던 사람이 “경찰이 골목길을 막으려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 선두부대가 포위되는 과정

참고인은 대원들이 나오면서 노란색 우의를 입은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선두부대는 잘 보지 못했다. 조금 뒤에 보니까 선두부대가 시민들에 의해 갇혀 있었다.

5) 후속부대가 진격하면서 시위대를 폭행한 장면

대원들이 미친 것 같았다. 미쳐 피하지 못한 시위대들을 닥치는 대로 방패로 찌고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심지어는 인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잡아당겨 끌어낸 다음 대원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밟고 때렸다. 참고인이 본 프레스 센터 앞쪽은 대원들이 시민들을 약 5-10분간 마구잡이로 때리는 모습이였다.

4. 인정사실

목격자들의 진술, 태평로 상황에서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경찰간부들의 진술, 태평로 상황에서 부상당한 전의경 대원들의 진술,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참고인 ○○○이 촬영한 동영상, 당시 태평로 상황을 기재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2008. 6. 29. 00:14경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시의회 앞에서 시위대는 경찰차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있었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있었다. 00:17경 대책회의 방송은 “곧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경찰차량을 끌어내는 것을 멈추고 진압 시 시민들이 갑자기 뛰게 되면 위험하니 천천히 움직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나. ○기동단장은 2008. 6. 29. 00:00경 서울청 상황실에 부대투입작전을 보고하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고 상황실 지휘자는 ‘○’(알았다.’는 의미라고 함) 답신을 보내 같은 날 12:20경 태평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벽틈을 통해 ○○, ○○중대 대원 약 100여명에게 투입 명령하여 이 대원들은 시위대 약 3000여명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약 450여명은 대한문 쪽으로 달려가고(이하 ‘대한문 쪽 선두부대’라고 함. 주로 ○○중대원들임) 약 450여명은 프레스센터 앞(이하 ‘프레스센터 쪽 선두부대’라고 함. 주로 ○○중대원들임)에서 멈추었다.

다. ○기동단 부단장은 같은 일시에 코리아나 호텔 옆 주차장 골목으로 3개(또는 6개) 중대를 이끌고 우회하여 시의회 옆 성공회교회 골목길 쪽으로 나가던 중 YMCA ○○○ 총장이 이끄는 YMCA 회원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라. 프레스센터 쪽 선두부대는 시위대들에 의해 포위되어 약 3-4분 동안 쇠파이프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고, 대한문 쪽 선두부대는 폭행당하고 있는 프레스센터 쪽 선두부대 옆을 지나 차벽틈 쪽으로 후퇴하였다. 대한문 쪽 선두부대는 후퇴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거나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았다.

마. 위의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추가대원들이 차벽틈을 통해 나와 진압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기동단장은 2008. 6. 29. 00:25경 “경찰수는 충분하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밀어”, “대오를 갖춰가지고 군중들을 밀어”라고 명령하자, 수백명의 대원들이 경찰봉과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며 밀어 부쳤다. 시위대는 일부는 프레스센터 쪽으로 후퇴하고 일부는 대한문 쪽으로 후퇴하였다.

바. 2008. 6. 29. 00:27경 후속대원들이 계속 투입되고, 대한문 있는 곳까지 계속 밀고가고 있고, ○기동단장은 마이크를 격대장들을 불러 모으고, 경찰간부들은 흥분한 대원들을 진정시키느라 봉을 내리라고 명령하였다.

5. 판단

가. 위 태평로 상황에서의 작전은 경찰이 그 동안 2달여 동안 진행된 촛불집회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수행했던 대부분의 진압작전과 달랐다. 그간 진압작전의 일반적인 형태는 차벽이 열릴 때까지는 방어에 치중하고, 차벽이 열리면 대원들을 투입하되 차벽 앞에 횡대대오로 대열을 갖추게 한 뒤 전체적으로 압박하여 시위대를 인도 위로 올리거나 후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태평로작전은 소수의 대원을 다수의 시위대 가운데로 돌진하게 하는 작전이었다. 경찰 지휘관들은 차벽이 무너지려고 하여 차벽을 잡아당기는 밧줄을 끊기 위해 부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차벽 앞 공간만 장악하면 되므로 소수부대원들을 전력질주하게 하여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하는 방식의 위험부담이 큰 작전을 구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태평로 작전은 경비부장이 진술한 경비원칙(‘시위대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작전을 신중히 한다. 최종 수비선이 무너지기 전에는 가능한 한 작전을 하지 않는다.’)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전을 차벽이 무너지기 전에 구사한 것은 시위대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경찰 지휘관들은 시의회 뒷골목으로 일부부대를 투입하고 이 부대와 차벽 틈 투입부대를 동시투입하여 공동작전을 하였다면 충돌가능성이 그다지 큰 작전이 아니었을 것이나, YMCA 회원들의 예상치 못한 방해행위 때문에 그 작전에 차질이 빚어져서 결과적으로 소수대원들만 시위대 안으로 투입시키는 양상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작전지휘의 책임이 있는 경찰지휘관들은 부대투입 전에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당시 태평로작전은 시위대와 충돌가능성이 큰 작전이었으므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부대투입시점 조절 등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수부대 투입작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이 태평로작전에서 다수 시위대를 부상케 한 것은 시위대가 먼저 진압 경찰을 포위하여 폭행을 하고 이를 본 동료대원들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진압작전을 구사하여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점과, 공권력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하며 보복적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원 개인들의 우발적 행위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태평로 작전에 대해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지휘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끝.

[붙임자료 4]

반성문 작성 강요 관련 사건

1) 개별 사건별 피해주장 요지

가) ○○○·○○○ 사건(08진인2507)

① 피해자들을 조사한 ○○○ 경사는 2008. 5. 28. 00:30경 ○○○경찰서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체포된 피해자들에 대해 2차래에 걸쳐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반성한다.’는 내용을 넣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권유하였다.

②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 경위 등은 2008. 5. 28. 13:30경 위 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재네들 완전 인터넷 스타됐네, 스타됐어”, “야, 미스 한!”, “역시 애들은 잘 키워야 돼”, “맞아요. 재네같은 애들 키우면 정말 골치아플 것 같아요”라는 식의 대화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 사건(08진인2526)

피해자를 조사한 ○○○ 경사는 2008. 6. 1. 새벽 ○○경찰서에서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조사가 끝날 무렵에 피해자에게 “잘못했지?”하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네, 네”하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조사받은 내용을 A4용지에 자필로 ‘반성문’으로 옮겨 적어야 훈방이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반성문 마지막에는 ‘다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써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썼다.

2) 경찰측 답변

가) ○○○·○○○ 사건

○○○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 경위는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고 석방시까지 변호사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사실에 있는 바와 같은 권유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피해사실 ②항과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나) ○○○ 사건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 경사는 피해자 부모의 충언을 부탁 받은 바 있어 다시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진술서 형식의 반성문을 받고 부모에게 인계한 사항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촛불집회 관련 피의자들에게 추후 집회참석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 사건

(1) 반성문 작성 강요 부분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인원은 7명(○○○, ○○○, ○○○, ○○○, ○○○, ○○○, ○○○)이었는데 피해자들은 연행자 전원이 모여 있을 때, 자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 작성 권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술서 작성 시 반성문 작성 권유를 받았던 것은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지 않을 때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이 연행되었던 참고인 ○○○은 연행자 전원이 모여있을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작성할 때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다만, 다른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연행자 훈방시 반성문을 작성케 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도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였을 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작성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양심에 위배되는 권유를 한 것만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찰이 피연행자에게 반성문 또는 반성한다는 내용의 자술서 작성을 권유하고 이를 수령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아래 ○○○ 사건에서 검토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2) 모욕적인 발언 부분

피해자 ○○○의 진술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참고인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를 조사한 담당 부서의 팀장(○○○ 경위)이 ‘미스 한’이라고 성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희롱 비슷한 발언을 하여 참고인이 그에 대해 항의한바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유사한 진술을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주장요지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남신웅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사건

참고인 ○○○(피해자의 부)은 당시 경찰의 강압적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같은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참고인 전형균은 조사를 받을 때 추후 집회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강압의 느낌보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물음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은 담당 형사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잘 타일리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위 권유를 받고 실제로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가) 반성문 작성 권유 부분

각 피진정인이 각 피해자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가 반성문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회시위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된 피체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권유라고 하더라도 피체포자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연행자, 특히 미성년자(피해자는 미성년자임)에게 반성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모욕적인 발언 부분

피진정인 ○○○은 피해자 ○○○ ○○○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끝.

7. 기타

1 2008. 7. 3자 07진인3390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권총형 전기충격기(이하 테이저건)를 포함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포용 장비의 사용, 관리, 교육, 운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테이저건 등 체포용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들이 수갑,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남. 명시적인 법적 근거의 미비는 장구의 사용기준 부재, 관리소홀, 장구사용자에 대한 교육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결국 장구 사용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음.

【2】 검거시 체포용 장비사용의 과잉성에 대하여

테이저건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로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진정인의 명백하고 위급한 저항이 없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의 사전경고도 없이 진정인에게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체포용 장비의 과다한 사용으로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12조 등

【참조결정】 대법원 2004. 3. 25. 2003도3842 판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5. ○○○

6.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권총형 전자충격기(이하 테이저건)를 포함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포용 장비의 사용, 관리, 교육, 운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 3, 4, 5에게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2, 6에게 체포용 장비 사용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2007. 5. 29. 00 관련 혐의로 00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석을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집 앞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00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들이 발사한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맞아 비닐봉지에 담아 휴대하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이후 진정인은 골목길로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재차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여 쓰러졌으며, 피진정인들이 쓰러진 진정인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한 결과 진정인은 좌흉부 늑골 골절, 좌흉부 및 견부, 우둔부 등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지방검찰청 검사)

2007. 5. 29. 진정 의 000으로부터 진정인의 000 혐의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진술 받고 진정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집 앞에서 진정인을 기다리던 중 진정인이 집 밖으로 나왔다. 이 때 피진정인 4가 “000씨 맞냐?”라고 묻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4를 향해 다가오면서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칼로 추정되는 물체를 꺼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4가 테이저건 1발을 쏘고 뒤쪽에서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5가 동시에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자 진정인이 휴대하고 있던 칼(23cm)을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피진정인들이 쓰러진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섰으나 진정인이 테이저건의 전류선을 뜯고 다시 골목 쪽으로 도주하면서 주머니에서 칼로 보이는 물체를 휘둘러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가 테이저건을 각 1발씩 다시 발사한 후 진정인의 옷자락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진정인의 몸과 다리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은 평소 회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〇〇년 검찰수사관을 회칼로 찔러 상해한 전력이 있는 자로, 검거 당시에도 회칼을 소지하고 있어 테이저건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6이 삼단봉을 소지하였으나 사용한 적은 없으며, 진정인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몸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 등이 생겼을 수는 있다(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전부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

2) 〇〇〇 (목격자, 재판 시 진술 내용)

목격자는 피진정인들과 함께 진정인의 집에 동행하였고, 당시 진정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향해 전기총 6~7발을 쏘고 곤봉으로 구타하였다고 00지방법원(2007. 10. 26.)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격자는 00고등법원(2008. 2. 14.)에서 진정인이 집밖으로 나오자 검찰 직원이 진정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맞다”고 말한 직후 전기총 소리가 났으며, 이후에는 진정인이 목격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1의 서면진술서, 피진정인 1에 대한 면담 조사서, 진정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과 판결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〇〇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 1은 2007. 5. 29. 19:30경 테이저건을 소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한 피진정인 3, 4, 5와 삼단봉을 소지한 피진정인 2, 6과 함께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거지인 ○○ 구 ○○동 ○○○ 앞에서 진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진정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후 현관문 밖으로 나왔고 이 때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이름을 불러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자의 관등성명, 체포사유,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 3, 4, 5가 진정인에게 테이저건 3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였다.

다. 진정인은 테이저건 3발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23cm)을 땅에 떨어뜨렸고, 진정인이 골목길로 도주를 시도하자 피진정인 4, 5가 테이저건을 재차 각 1발씩 발사하여 진정인을 쓰러뜨렸다.

라. 진정인은 테이저건을 맞고 흥분상태에서 도주를 시도하였고, 검거 및 도주 과정에서 좌흉부 늑연골 골절, 다발성좌상(좌흉부 및 견부, 우둔부)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진정 내용 가운데 피진정인 2, 6이 삼단봉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피진정인들을 보고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칼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고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진정인 3, 4, 5가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4에 따라 경찰장구, 분사기,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그러한 무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4에 따라 경찰장구 및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청법」 제47조는 검찰청직원인 피진정인 2 내지 6이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청법」상의 규정이 검찰청 직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및 무기를 사용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대검찰청이 2006. 7. 27. 경찰청에 검찰청 직원의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경찰청에서는 2006. 8. 4. 검찰청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총포 및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검찰청 직원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의 소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통지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8호(「경비·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각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청 직원이 적극적으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공세적인 수단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용허가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갑, 전자진압봉 등 체포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대검예규」 과수 373호(2005. 4. 18.)에서 「수사장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 예규 별표에 '수사장비의 범위'에 체포용 장비 항목으로 '가스 분사기, 전자진압봉, 수갑, 방탄조끼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사용한 테이저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체포용 장구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검찰청 직원들이 수갑,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검찰청 직원이 설사 위와 같은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범인검거를 위한 무기 및 장구의 사용은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수사관의 수, 무기의 종류,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2003도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3842 판결). 특히 이 사건에서 사용된 테이저건(미국 테이저사 제조, X26)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약 5초간 인체에 흐르게 하여 인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장비이다. 이 장비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에서는 법집행기관의 전자총격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례 등을 보고하면서 법집행기관의 전자총격기 사용을 좀 더 신중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테이저 건은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로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평소 회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년 검찰수사관을 회칼로 찔러 상해한 전력이 있고 진정인이 테이저건을 맞은 이후 가지고 있었던 칼을 떨어뜨리고 더욱 흥분하여 도주를 시도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검사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그 중에 3명이 테이저건을, 2명이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진정인을 체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체포 및 검거계획 등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으며 검찰수사관과의 대면을 예견하지 못한 진정인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명백하고 위급한 저항이 없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경고도 없이 진정인에게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체포용 장비의 과다한 사용으로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테이저건, 가스총, 수갑 등과 같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침입적인 행정작용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검찰청 직원이 이러한 경찰장구, 분사기,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고 검찰청직원이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으로 규정된 모든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체포용 장비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 행정권 발동의 기본이 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의 미비는 장구의 사용기준 부재, 관리소홀, 장구사용자에 대한 교육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결국 장구 사용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찰청에서는 2005. 12.부터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테이저건까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

적 근거 및 취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테이저건을 비롯한 체포용 장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포용 장비의 사용, 관리, 교육, 운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진정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피진정인 3, 4, 5와 이를 지휘한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주의조치를 취하고, 위 체포과정에 함께 참여한 피진정인 2, 6에 대하여 체포용 장비의 사용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7.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정재근 위원 윤기원

2 2008.9.25자 08진인619 결정 [부당한 형집행장 발부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발부 시 피고인에 대한 소환절차를 선행하는 등 형집행장 발부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현재 각 검찰청에서는 벌금납입기한이 끝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절차 없이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시스템에 입력되고 있음.
- 【2】 형사소송법상 노역장유치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즉, 형집행을 위한 구인 역시 「형사소송법」 상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임의성을 우선 확보한 후, 보충적으로 강제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 형집행장 발부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형집행을 위한 소환이 선행되어 피고인들에게 자유형으로 대체되기 직전 벌금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형집행을 위해 강제로 구인되기 이전 스스로 집행에 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소환절차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집행의무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소환불능, 도망·도망의 우려, 소재불명을 입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7.6.18자 06직인9결정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73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발부 시 피고인에 대한 소환절차를 선행하는 등 형집행장 발부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00지원 2007 고약0000)으로 2007. 11. 1.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 9. 00지청장으로부터 2008. 1. 23.까지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집행장 발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벌금 납입기한 다음 날인 2008. 1. 00.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피진정인 1에 의해 체포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00지방검찰청 00지청 집행과 소속, 업무담당자)

진정인은 2007. 10. 5. 가납명령을 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였고, 2007. 11. 1. 확정판결 이후 2008. 11. 9. 재차 벌과금 납부명령을 받고도 미납한자이며, 노역장 유치집행에 대하여는 벌과금 납부명령 당시 이미 진정인에게 예고되었다. 또한 진정인은 벌금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검거되면 노역장 유치가 될 것을 예상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소환절차 없이 벌과금 납부기한 직후인 2008. 1. 24.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적법하게 검거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00지방검찰청 00지청 소속, 형집행장을 발부한 검사)

본 건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으나 통상 형집행장 발부 시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소환불능, 소재불명, 도망의 우려 등에 대한 조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각 검찰청의 업무담당자들(서울00지검, 00지검, 00지검 소속)

형집행장 발부 시 피고인에 대한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환불능, 도망·도망의 염려, 소재불명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 대검찰청 집행과 업무담당자

재산형은 벌금의 납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므로 납부의무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부하고, 전화 독촉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위 '집행하기 위한 소환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환절차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형집행장, 벌과금원표, 벌과금조회전산화면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10. 5. 00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2007가징0000)으로 벌금 70만원에 대한 가납명령(납부기한 2007. 10. 19.)을 받고, 2008. 1. 9. 00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00지청에서는 2008. 1. 9. 벌금 70만원에 대한 납부명령(2008징제00, 납부기한 2008. 1. 23.)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였다.

나. 2008. 1. 24.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소환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발부하였으며, 같은 날 진정인은 주거지에서 피진정인 1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 아래에서 벌금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노역장 유치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와, 노역장 유치가 적정하다면 이를 위한 형집행장 발부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처분은 최후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우선하고 노역장 유치집행을 보충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06직인9, 2007. 6. 18.) 이하에서는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발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92조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문화 되

어 있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다만, 납부의무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즉시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처럼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의 발부요건은 납부의무자의 ①소환불능, ②도망·도망의 염려, ③소재불명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상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구인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집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형집행장의 특성상 그리고 형집행단계에서의 절차변잡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지방검찰청 공판 및 형집행실무, 1998, 375면). 형집행장은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찰청에 구인할 목적으로 행해지므로, 형집행장은 형집행지휘를 위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여 검찰청으로 구인하기 위한 일종의 구인영장에 가깝다(서울지방검찰청 공판 및 형집행실무, 1998, 374면). 형집행을 위한 구인 역시 「형사소송법」 상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임의성을 우선 확보한 후, 보충적으로 강제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집행을 위해서는 검사가 우선 형집행선고를 받은 자를 소환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73조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집행과에서는 재산형은 벌금의 납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므로 납부의무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부하고, 전화 독촉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위 '집행하기 위한 소환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92조에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동법 제473조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재산형 징수단계에서의 납부명령을 재산형 집행을 위한 소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하여 자유형 집행을 준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재산형에서 자유형으로 형이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만큼 재산형 집행을 위한 납부명령과 자유형 집행을 위한 소환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형집행장을 작성한 피진정인 2는 이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소환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대체자유형의 집행명령을 내리기 위해 판사가 피고인을 출석시키고, 미국의 경우 법관에 의한 대체자유형 집행이 통보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되는데 이때 실제로 대체자유형이 집행되기 보다는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다(김영진, 재산형 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6, 87-97,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따라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유형으로 대체되기 이전 벌금납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유치집행을 위해 자진하여 집행에 응하는 경우 굳이 강제처분인 형집행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인권보호 부합할 것이다.

현재 각 검찰청에서는 벌금납입기한이 끝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절차 없이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시스템에 입력되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장 발부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형집행을 위한 소환이 선행되어 피고인들에게 자유형으로 대체되기 직전 벌금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형집행을 위해 강제로 구인되기 이전 스스로 집행에 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소환절차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집행의무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소환불능, 도망·도망의 우려, 소재불명을 입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가 형집행장을 발부하기 전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집행장 발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검찰청의 업무관행에 따른 것으로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대검찰청에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정재근 위원 윤기원

3 08직인04-08진인1891(병합), 08직인05, 08직인06-08진인0912(병합), 08직인07-08진인0313(병합), 08직인08-07진인4333(병합), 08직인09, 08직인10[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 사건조사를 근거로 2007년 초 경찰청장에 대하여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여 경찰청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파악되었으나, 언론 등에서는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특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시로 보도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구체적인 구타·가혹행위가 확인되는 등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1] 전·의경 인권 분야에서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은 경찰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구타·가혹행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정례화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대원들이 원활한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이를 활성화 할 것과 최근 들어 문제시 되고 있는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교육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피조사자] 경찰청장 외 다수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자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가., 사.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와 성추행 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가-1. 사건에 있어 지휘·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것과, 가-3.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고려하여 의병전역을 심의할 것과, 바. 사건과 관련하여 간부에 의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지방경찰청장에게, 나. 다.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다. 사건과 관련하여 ○○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하게 할 것, 지휘·감독자와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및 보호수경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할 것을 권고한다.
4.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라.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비계장 및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지방경찰청장에게, 마.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초소 근무환경 개선 및 논산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의경 담당자 및 경비계장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가-3., 라., 마. 사건에 있어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5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 사건조사를 통하여, 2007년 초 경찰청장에 대하여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특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나. 이에 위원회는 전·의경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로 보이는 여러 익명의 진정인에 의한 진정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2008. 4.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7년 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청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의경 관리 개선책 및 관련 지침의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별 진정사건에 관한 권고 외에도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전·의경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지침 등이 철저히 준수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의경 및 전·의경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 등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가-1.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나) 가해자: 이○○, 한○○, 이○○, 김○○, 유○○ 등

다) 지휘·감독자: 중대장 ○○○, 소대장 ○○○, 소대부관 김○○

라) 사건요지

피해자는 2008. 4. 5. 06:50경 마을버스에 올라타 버스 기사를 위협하여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KBS 방송국 정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 MBC 9시 뉴스데스크 등에서는 피해자가 “군 생활 중 괴롭혀 온 선임대원의 이름을 공개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그 원인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가) 피해자는 2006. 10. 23. 군 입대하여 2006. 12. 15. ○○지방경찰청 제○기 동대 ○○○중대 2소대에 배치되어 신고식을 하면서 선임대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고무줄로 얼굴을 맞는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충처리반에 제보한 적이 있다. 이후 3소대로 옮겨 근무 중 선임대원들의 구타·가혹행위가 이어지자, 휴가 중이던 2008. 4. 5. 위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피해자는 2008. 6. 4.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기동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다.

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

- (1) 가해자 이○○은 같은 부대 중대기울 및 무전대원인바, 2008. 4. 3. 16:00경 ○○ ○○구 ○○○역 근처 길가에서 상황대비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폴리스라인 설치장비를 늦게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또 라이 같은 새끼 언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가져 오냐.”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아 씨발 꺼져.”라고 욕설하였다. 가해자는 2008. 2. 하순경 20:30경 및 같은 해 3. 초순경 20:30경 복도와 탈의실 앞에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컷볼을 폭행하였다.
- (2) 가해자 한○○은 같은 부대 운전병으로 2007. 12. 중순경 시간불상경 ○○○○○구 ○○○에 있는 ○○○○은행 앞 길가에서,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말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 가해자는 2007. 12. 중순경 시간불상경 ○○ ○○○구 ○○○에 있는 ○○캐피탈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피보기게임”(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과자를 사기로 하였는데, 가해자 본인이 지면 게임을 다시하고 상대방인 피해자가 지면 과자를 사게 함)을 하자고 하여 20,0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케 하였으며, 2007. 12. 하순경 시간불상경 ○○ ○○○에 있는 ○○○○ 당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사달라고 하여 받은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 (3) 가해자 이○○, 김○○은 2008. 3. 29. 20:20경 부대 세면장 앞 복도에서 샤워를 하러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릎으로 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구타하였다. 가해자들은 2007. 1.부터 2007. 4.까지 숙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

을 쥐고 증지를 내밀어 새의 부리모양을 만들어 피해자 턱 부분을 수회 구타하였다.

- (4) 가해자 유○○은 2008. 3. 2.부터 30.까지 시간불상경 4생활실에서 군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임대원들에게 “바닥돌리기”(생활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치약을 짜서 바닥에 떨어뜨린 뒤, 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닦는 행위)와 “걸레짜기”(걸레를 세탁하여 바닥에 펼쳐놓고 까치발을 하고 쪼그려 앉아 솔을 이용하여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걸레를 한쪽방향으로 쓸어내는 행위)를 시키라고 지시한바 있다.
- (5) 해당 부대에서는 후임대원들이 “바닥돌리기” 또는 “걸레짜기”를 할 때 선임대원들이 뒤에서 발로 차 후임대원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진 일이 있으며,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들에게 “땡겨”(양반다리 형태로 앉아 목을 뒤로 제치고 팔은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와 “잠깨스”(버스 안에서 휴식 중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꼴끗이 세우고 앉아 대기하는 자세)라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부대는 대원들간에 비공식적 계급구조(막내→졸짱→반대기→바짱→챙)를 만들어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의 기율을 잡는데 악용하고 있었으며 이 구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예를 들면, 수경을 중간기수인 일명 “반대기”로 취급하여 휴식시간에 생활실에서 책을 못 보게 함)으로 확인되었다.

다) 부대측 간부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 (1)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소대부관 김○○은 구타 등 자체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데도, 2007. 6. 20. 20:00경 ○생활실에서 진정의 안○○이 진정외 한○○ 등을 상대로 “군기 좀 잡겠다. ‘바닥돌리기’ 등을 짹세게 시키겠다.”는 위법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2008. 3. 2.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해자 유○○이 피해자 및 타 대원들에게 “바닥돌리기”를 시키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2008. 4. 3. 14:30경 ○○ ○○역 주변의 기동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이○○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며 “씨발놈, (내가) 내일 휴가를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감찰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영창 15일의 조치 및 타부대 전출조치를 하였다. ○○지방경찰청 ○○수사대는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이 사건을 수사하여 가해자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소대부관 김○○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소대장 및 중대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또한 기동대장 ○○○ 총경은 이 사건 이후 구타·가혹행위 예방 등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산하 ○○○개 중대에 대하여 대원관리 실태를 점검 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3) 판단

- 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나)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리자들의 부단한 지휘·감독과 면담 등의 노력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관계 간부들이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가-2.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

- 가) 진정인: 서○○(가명)
- 나) 피해자: 김○○, 황○○, 안○○
- 다) 가해자: 서○○, 김○○, 김○○
- 라) 사건요지

진정인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08. 2. 11. 위원회에 피해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가명으로 확인되어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조사(사건번호 08직인04)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인정사실

- 가) 가해자인 선임대원 서○○은 피해자인 후임대원 김○○에게 진압복 등을 빨래하도록 시키고, 2007. 여름경 3소대 생활실에서 일·이·경 10여명에게 “머리박아”를 시키고, 위 기합 중에 쓰러지면 관물대에 다리를 올리게 하여 넘어지면 다시 “귀잡고 옆드려”(일명 “귀뚜라미”)를 총 40분 간 시켰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나) 가해자 김○○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인 후임대원 황○○ 및 타 대원들에게 고무줄을 늘여서 얼굴에 튕겨 맞추어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다) 가해자 김○○은 피해자인 후임대원 안○○ 및 타 대원들에게 평소 폭언과 욕설을 자주 하였고 훈련 중 잘못했다고 “선착순”을 시키고 목소리가 작으면 화를 내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라) 제4기동대 감찰은 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 2. 12.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2008. 2. 20. 가해자들에 대하여 불문조치 결정을 내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기재의 사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가·3.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직인1891)

- 가) 진정인: ○○○(피해자의 부친)
- 나) 피해자: ○○○
- 다) 가해자: 이○○, 이○○, 김○○, 신○○
- 라) 사건요지

위원회가 2008. 4. 3. 위 직권조사를 결정(사건번호 08직인04)하여 조사 중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008. 5. 30. 같은 부대에 관련된 진정(진정사실 발생은 2008. 3.경)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사건번호 08진인1891). 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 직권조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는 2007. 12. 27. 입대하여 2008. 2. 19.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가해자인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진정인은 같은 해 4. 15. 11:00경 화장실에서 혼자 면도기로 왼쪽 손목을 자해하여 “내말 따위 아무도 안믿어.”라는 내용의 혈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6. 면회 온 진정인에게 그 혈서를 보여주었으며, 같은 해 5. 22. 경찰병원 정신과에 입원되어 같은 해 7. 31. 퇴원후 통원 치료중이다. 피해자는 의병전역을 원하고 있다.

나)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인 선임대원 이○○, 이○○은 2008. 3. 20. 14:30경 ○소대 버스 내에서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쌩새끼”, “좃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구타하고, 2008. 3. 22. 15:00경 ○소대 1생활실 내에서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새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2) 가해자 김○○은 2008. 3. 초순경 22:30경 ○소대 1생활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생활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깨끗이 샤워했어?”, “야 참기름 좀 가져와봐.”, “남자는 군대 와서 이러면서 남자가 되는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기도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15:00경 ○○ ○○○구 ○○○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소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구타하였으며, 같은 해 3. 20. 시간불상경 중대 훈련을 하던 중 구보를 하던 피해자가 대열에서 뒤처지며 뛰지 못하자 계속 쫓을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2~3회 구타하였다.

- (3) 가해자 신○○은 2008. 3. 22. 19:00경 ○○중대 세면장에서 피해자에게 혼란을 잘 받으라고 교양하던 중, 피해자가 짝다리를 짚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 다) 부대측은 2008. 4. 15. 가해자 이○○, 이○○에 대하여 공적제재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피해사실을 고지하여, 재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하여 1차 지휘·감독자인 ○소대부관은 계고, 2차 지휘·감독자인 ○소대장에 대하여는 특별교양 조치를 하고, ○○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2008. 7. 20. ○○ ○○지방검찰청에 이 고발사건을 송치하여 현재 수사 중(2008형제50773)이다.

3) 판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휘·감독자가 구타·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부단한 지휘·감독과 대원들과의 면담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병전역 심의를 할 것과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5)

1) 진정개요

- 가) 진정인: 익명
나) 피해자: ○○○
다) 가해자: 이○○
라) 사건요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익명의 진정인은 2008. 1. 14. 위원회에 대하여 ○○○경찰서 방법순찰대 선임대원들의 후임대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심하므로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05) 하였다.

2) 인정사실

- 가) 피해자는 2007. 10.경 입대하여 같은 해 12. 7.부터 근무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수시로 구타·가혹행위를 당해오다 2008. 2. 초순경 이를 부대측에 알려 자체 조사를 받고 현재는 ○○ ○○경찰서에 근무 중이다.
- 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임대원으로 2008. 1. 중순경 오후경 방법순찰대 세면장 내에서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빠리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폭행하고, 같은 달 중순경 23:00경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군가, 부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암기사항을 1시간 30분 가량 암기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같은 달 29. 세면장 내에서 “야 이 빠리한 새끼야. 눈깔이 그 지랄 하니까 쳐 맞는 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회 폭행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폭행하였고, 물피티(소대원들이 출동하여 마시는 페트병 40여개 분량의 물을 취침시간에 정수기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 결국 취침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시킨 사실이 있다.
- 다) 해당 부대는 전 대원이 부대 대기하는 날에 대원 고충면담을 실시하는데, 후임대원들이 면담하고 있다는 것을 선임대원들이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후임대원들의 면담 시간이 길어지면 구타·가혹행위 등의 피해사실을 직원에게 말하는 것으로 의심 받아 대원들에게 왕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고충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라) 해당 부대는 위원회 조사전·후로 위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소대장, 소대부관 및 당직자에 대하여 계고 등의 처분을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영창 및 전출 조치하였다.

3) 판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대는 위원

회 조사를 계기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여 내부 부조리를 다수 해소하였다고 하나,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에게 물피티 및 암기사항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상존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

○ ○ 지방경찰청장에게 물피티, 암기사항 강요 등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 ○ ○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6)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진인0912)

가) 진정인(피해자): 김 ○ ○

나) 가해자: 이 ○ ○

다) 지휘·감독자: 중대장 김 ○ ○, 행정소대장 김 ○ ○, 소대장 강 ○ ○, 소대부관 강 ○ ○, 당직소대장 이 ○ ○

라) 감찰조사자: 부청문관 ○ ○ ○, 조사담당자 ○ ○ ○, ○ ○ ○

마)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8. 3. 20. 위원회에 진정하였는바(사건번호 08진인0912), 위원회는 이를 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6)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김 ○ ○ 은 2007. 9. 13. 군 입대하여 2007. 11. 2. ○ ○ ○ ○ 경찰서 방법순찰대에 배치된 후, 같은 달 3. 가해자로부터 “소대를 떠나 취사병을 지원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한 달 동안 웃고 다니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 등을 받았고, 2008. 1. 31. 20: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보호수경(신임대원의 조기적용 유도역할)인 최 ○ ○ 의 로션을 찾아내지 못해 가해자로부터 화장실로 불려가 “왜 니가 아버지 물건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냐?”는 질책을 당하고, 다음 날인 2. 1. 세면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대원들은 전날 밤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있었던 위 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가혹행위인 “미싱”(가-1.사건의 “바닥돌리기”)와 유사한 것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앞으로 전진하며 솔을 한쪽방향으로 돌리며 바닥을 청소하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는 방법)을 당하며, “이게 다 김○○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새끼 너 빨리 안해?”라는 욕설을 듣게되어, 그 순간 피해자는 위 경찰서를 뛰쳐나와 같은 날 13:20경 위 경찰서 앞 도로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 나)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08. 2. 1. 사고당일 사고 직전 피해자와 함께 “미싱”을 하였던 대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미싱”을 한 장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란 사실 및 사고 전날 밤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질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관계자에 대한 아무런 문책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다) 같은 부대 대원인 이○○, 이○○, 조○○은 부대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낸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바 없다고 하였으나, 위원회 조사에서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나무란 사실이 있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반복하였다.

3)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웃지 말라는 부당한 간섭을 하고 화장실로 불러내어 질타하고, 임의로 대원들을 집합시켜 “미싱”이라는 가혹행위를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스에 충돌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한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질타한 사실 및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에도 세면장에서 “미싱”을 하면서 욕설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결과 대원들은 대부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관리하는 간부 및 조사를 관장하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

○ ○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지휘·감독자와 감찰조사 관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보호수경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 ○ ○경찰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7)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직인0313)

- 가) 진정인: 김○○(피해자의 모친)
- 나) 피해자: ○○○(○○경찰서, 現 ○○경찰서 근무중)
- 다) 가해자: ○○○ 등
- 라) 지휘·감독자: 경비계장 ○○○, 전·의경담당 이○○
- 마) 감찰조사자: 부청문관 이○○, 조사담당자 ○○○
- 바)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8. 1. 25.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이 위원회로 이첩되어 진정으로 접수(사건번호 08직인0313)되었고, 위원회는 이를 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7)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 가) 피해자는 2007. 11.경 입대하여 2007. 12. 7. ○ ○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배치되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다 2007. 12. 26.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여 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으며, 현재는 경기 ○ ○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 나)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살펴보면

(1) 가해자인 선임대원 ○○○는 2007. 12. 10. 11:00경 무기고에서 피해자가 생활실 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정강이 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14. 19:00경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21.부터 26.까지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고 머리를 폭행하였으며, 샤워장에서 평소 동작이 빠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였고, 헬스장에서 운동 중 피해자의 숨소리가 크다고 따귀를 때리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고, 줄넘기를 멈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치 등을 폭행하였다.
- (2) 가해자 ○○○은 2007. 12. 15. 15:00경 세면장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및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20. 21: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침구를 잘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2.부터 24.까지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양반다리를 한 다리의 높이가 다르다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발로 밟고, 휴지걸이가 삐뚤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폭행하였으며,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및 얼굴을 폭행하였고 같은 해 12. 26. 08:3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서장의 컴퓨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하였다.
- (3) 가해자 ○○○은 2007. 12. 11. 19:00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휴식근기가 빠졌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17. 19:00경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우지 못하면 각오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0. 16:00경 생활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벽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와 정강이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3. 21:00경 대답할 때 정자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폭행하였다.
- 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2008. 1. 10. 징계결정(관리자 이○○ 계고, 가해자 ○○○ 영창5일, 가해자 ○○○ 영창 5일, 가해자 이○○ 근신 5일) 하였으며, 수사과에 수사외뢰 조치한 뒤, 수사과는 2008. 2. 21. ○○지방검찰청 ○○지청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가해자들은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
- 라) 조사과정에서 경비계장이 대원 교육시 “스무살 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모두 일러바치고, 수첩에 적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니 아버지가 나를 옷 벗기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경비교통과 조사 및 감찰 조사시 부대측은 피해자 환부를 사진 촬영한 사실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자체 징계과정에서 징계간사인 부청문관은 징계위원이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상해로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피해자의 상태를 경미한 찰과상이라고 보고하였다.

3) 판단

- 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재판이 종결되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조사과정에서 경비계장이 대원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며 “부모에게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다) 감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관하여 초과상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축소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라.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비계장 및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마. ○○ ○○경찰서 의경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8)

1) 사건개요(사건번호 07진인4333)

- 가) 진정인: 이○○
- 나) 피해자: 이○○(진정인의 아들)
- 다) 가해자: 최○○ 등
- 라) 지휘·감독자: 경비계장 ○○○, 전·의경 담당자 ○○○
- 마)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7. 11. 5. 위원회에 진정하였는바(사건번호 08직인4333)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8)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 가) 피해자는 2006. 3.경 입대하여 2006. 5. 19. 논산경찰서 기동타격대에 배치되어 선임대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으면서 2007. 5.경 의병전역 처리되어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 나) 가해자인 선임대원 최○○은 피해자가 평소 근무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며, 암구호를 외우지 않아 생활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2006. 8.경 주차장 뒤편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의한 소위 “맞짱”이라는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간의 폭행사건이 있었다.
- 다) 가해자인 선임대원 ○○○은, 피해자가 내무생활을 잘못하는 행동을 보이면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질책하였다.
- 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가해자인 선임대원 ○○○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목을 감아 졸렸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마)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진정인의 진정을 접수받아 수사과에 수사되 하였고, 수사과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휘를 받아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 바) 피해자가 해당 경찰서 근무시 경찰서측은 전·의경 담당을 서로 미뤄 서무를 겸직하던 자가 전·의경 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최○○ 간의 쌍방폭행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생활실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 등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들을 형식적으로 화해시킨 후 사건을 종결시켰고, 피해자가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더 열악(4명이 3교대 근무를 하며, 1주일 1회 정도 정식 야간수면을 함)한 인근 초소근무로 피해자를 발령하였다.
- 사) 피해자에게 정신적 이상증세가 있음을 인지한 진정인은 경찰서측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측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줄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역신청에 동의해 줄 것을 종용하여 진정인의 동의에 의하여 피해자는 2007. 4.경 직권면직된 후 현재 정신과 통원치료 중이다.

3) 판단

- 가) 가해자 ○○○,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폭행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

사중결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언 등을 들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 나) 전·의경 담당자는 선·후임대원 사이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간의 추가적인 갈등 및 문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사고 예방활동 등을 하지 않았고, 대원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정신과 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한 초소로 배치하고, 더구나 치료 중에 직권면직을 종용한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초소근무자의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및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의경 담당자 및 경비계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바. ○○ ○○경찰서 간부의 폭행사건(사건번호 08직인09)

1) 사건개요

- 가) 진정인: 익명
- 나) 피해자: 이 ○, ○○○
- 다) 가해자: ○○○, ○○○
-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4. 2. ○○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09)하였다.

2) 인정사실

- 가) 가해자 ○○○는 해당 부대 소대부관으로서 2007. 12.경 부대 간담회가 있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던 날 당직을 서면서 대원들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생활관을 방문해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이 설 등의 뺨을 1회씩 때렸다.

- 나) 가해자 ○○○은 피해자 ○○○에 대하여 2008. 4. 2. 10:00경 행정반 및 5층 체력단련실에서 압수된 핸드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5회, 목을 3회, 낭심을 1회, 머리를 3회 폭행하고, “엎드려 뺨쳐”를 20여분간 시켰다.
- 다) 부대측은 2008. 4. 17. 가해자 ○○○에 대하여 견책 및 타부서 발령하였고, 가해자 ○○○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타서 발령 처분하였다.
- 라) 해당 부대는 최근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에 대하여 “딱밤” 150대 폭행, 설탕물 취식강요, 경찰단봉으로 머리를 50여회 폭행하여 해당 선임대원이 영창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판단

가해자들의 위 구타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라)기재 사실의 해당 선임대원은 해당 후임대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사. ○○지방경찰청 ○○기동대 성추행 사건(사건번호 08직인10)

1) 사건개요

- 가) 진정인: 익명
- 나) 피해자: ○○○, ○○○, ○○○ 등
- 다) 가해자: 이○○
-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4. 16. 위원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으니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10) 하였다.

2) 인정사실

- 가) 피해자 ○○○는 입대하여 생활 중 2008. 2경 생활실에서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수치심에 부대를 떠나 생활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으며, 또 다른 피해자 ○○○, ○○○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
- 나) 가해자인 선임대원 이○○은 피해자 ○○○에 대하여 2008. 2경 생활관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지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에 볼펜으로 5cm 크기의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사실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 ○○○에게도 일자불상경 몸에 그림을 그려준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 ○○○의 낭심 부위에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에 대하여는 2008. 2경 생활관에서 치약을 짜서 피해자 ○○○의 엉덩이에 바른 사실이 있고 2008. 3.중순경 21:00경 생활관에서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폭행하여 안경을 파손한 사실이 있으며, 2008. 2 초순경 기동버스 내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2~3회 때린 사실이 있다.
- 다) 부대측은 가해자에 대하여 영창 15일 처분을 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계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라) 해당부대에서는 최근 선임대원이 점호시 구령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대원의 얼굴을 10여회 폭행한 사건, 선임대원에게 불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 선임대원들을 영창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판단

- 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후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 및 거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또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나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치 않는다고 하고, 해당 부대에서 지휘·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었는바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성추행 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3. 위원회의 기존 권고에 따른 경찰청 이행사항

가. 위원회는 2007년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경찰청이 이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항 목	이 행 사 항
과도한 출동 최소화	주 5일제 도입	근무시간 총량제시행(2007. 6. 13.)
	휴일 사전예고제 시행	전·의경 적정근무시간 지정시행(2007. 6. 13.)
	과다 출동 통제시스템 마련	전·의경 근무관리 시스템 시행(2007. 8. 6.)
부부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관리 실효성 대책 마련	부적합자 입대전 실질적 검진체계 마련	전경-병무청에 임상심리사 11명 채용(2007. 4.) 의경-정신과 전문의 심사관 참여제 시행(2007. 3.)
	부적응자 관리 매뉴얼 마련	부적응자 관리요령 상세화 작업 검토 진행중
	경찰병원진단서직권면직서류 인정	병무청과 협의사항으로 검토중임
	직권면직 심사단계 축소	첨부서류 16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2007. 8.)
내무생활문화 개선 등	전문심리상담제 도입	여경 인권상담관 배치 등 진행중
	내무생활 운영매뉴얼 마련	신임대원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등 진행(2007. 5.)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개선	전·의경 관리요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기동업무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책 검토중
	소원수리제도 실효성 확보	사이버 소원수리 진행 등
인권교육 강화	외부기간 진정권 보장	군인과 달리 도심에 근무하고 있고 외출외박이 많아 외부기관 진정권 제한되지 않음
	인권교육 실질적 시행	인권강사단 구성 2007년 133회 1.6천여명 실시
	정훈교육에 인권교육 반영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함(2007. 9.)

의료권 보장	공익의무관 및 의무실 배치	경찰병원 및 협력병원으로 양질의 외부진료 가능
	전·의경 국군병원 활용	"
	외부 전문병원 의료비 지원	경찰병원 100%, 민간병원 촉탁 및 공상시 100%
	민간 상해보험제도 도입	보험사측 거부
생활실 등 시설개선	노후건물 단계적 시설개선	2008년도 68억 예산확보 시행중
	침대형 생활실 도입	
식사 및 교통비 현실화	식당에 영양사등 배치	예산낭비 문제, 교육이수자 활용중
	급식비 상향조정	2008년 5,000원→5,186원 증액
	전·의경 TMO 적용	군에서 불허 여비 현실화 검토 중
가해자 신상 필별 등	구타자 형사고발 정례화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2007. 9.)
	구타 및 사망사건 상급부대 조사	2007년부터 형사입건 처리하고 있음
	사고 없는 부대 인센티브 부여	사고 없는 부대 부대격려금 지급 등 예정
징계제도 합리화	전·의경 영창제 폐지	위헌성 인정하나 현실적 대안 고민 중
	징계대상자 항고권 부여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에서 인정
	지휘·감독자 확실적 문책 완화	자체 적발시 감경조치 하고 있음.

4. 종합판단

가. 구타·가혹행위 발생원인에 관하여 위원회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왜곡된 조직문화

많은 간부 및 선임대원들은 부대내 기강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참대원 및 후임대원들에게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원들간의 공식적 계급구조가 아닌 비공식적 계급구조를 만들어 이를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의 기율을 잡는데 악용하고 있었으며 이 구조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1.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사, 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등).

사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왜곡된 조직문화에 익숙해진 가해대원들은 특별한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동이 부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가-2, 3.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또한 신입대원의 조기 부대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수경”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신입대원이 선임대원의 물품을 챙기고 사역을 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2) 형식적 부대관리

부대관리에 전념해야 할 간부들이 잦은 인사이동 및 시험 준비 등으로 부대관리에 전념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간부들은 선임대원이 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과정에서 선임대원에 의한 후임대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이 일부 목인되고 있었다(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및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이러한 부대관리 체계에서 간부들은 후임대원들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면담을 하고 있지 않아 구타·가혹행위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및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또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여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자체적으로 종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라. ○○ ○○경찰서 구타·가혹행위 사건 등).

3) 시위진압 등 격무로 인한 피로누적

대원들은 출동이 잦고 언제 휴식할 수 있을지 몰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 이로 인해 대원들의 외출, 외박이 통제되면서 이에 스트레스가 심한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들을 제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부대에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가. ○○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사건, 사. ○○지방경찰청 ○○기동대 성추행 사건).

4)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존중의식 부족

간부들은 대원들에 대하여 대부분 “야”라고 부르고 있다. 위 호칭에는 아무런 인격적 대우나 존중의 의미가 없어 부대원이 아닌 하나의 부하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의식에서 대원들이 간부에 대한 결례가 있으면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폭행으로 표출된 사례도 조사되었다(사. ○○ ○○경찰서 간부의 폭행사건).

5) 그 밖에 40여명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실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등).

나. 위와 같은 원인을 검토해본 결과,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은 경찰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구타·가혹행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정례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원들이 원활한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창구마련 및 이를 활성화 할 것과 최근 들어 문제시 되고 있는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교육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방부에서는 2007년 군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군인권교육 규정 및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지침 등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대내 사건·사고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아울러 위원회가 2007년에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 개선 권고”를 실시하여 경찰청 측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제도 및 규정의 미비보다는 경찰 지휘부 및 간부들이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전·의경 당사자 및 실제 전·의경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 정례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 및 일부 지방경찰청장들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위원 황덕남

4 2007. 2. 21자 06직인01, 05직인84 병합 결정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상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

전·의경에 대한 전반적 인권상황에 대하여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 [1] 전·의경의 전반적 근무상황 및 이에 대한 인권상황을 검토함
- [2] 특히 과도한 출동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문제, 복무부적합자 직권면직제도 및 부적용자 관리시스템의 한계, 신입·전입 및 부적용자 상담관리 등의 형식적 운영, 선임대원에 의한 군기교육 등 비민주적 내무생활문화, 소원수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인권교육 소홀 및 교육시스템 구축 미흡, 전·의경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 노후화되고 열악한 생활시설의 문제, 식생활 향상체계 부족의 문제,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교통비 비현실성, 구타·가혹행위자 법적 책임 미흡 등 형식적 처리 문제, 획일적 지휘책임 부과 문제, 징계영창제도의 문제, 인력관리 전문성 부족과 경비경찰관 사기저하 문제, 전투경찰대설치법령의 문제, 시위진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전·의경의 인권문제 등 전·의경의 인권상황 및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피조사자】 ○○○

- 【주 문】**
- 1. 경찰청장에게, <별지>와 같은 제도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제도·관행을 각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2.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전·의경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별지>의 개선권고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 등 정부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 3. 국방부장관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별지>의 권고내용 중 의료체계 협조, 직권면직제도 개선, 교통체계 협조체계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상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합제도개선 권고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4. 직권조사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이유의 각 사건별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견과 같이 각 결정한다.

< 별 지 >

1. 과도한 출동·근무 최소화 대책

- 가. 과다 출동·근무 등으로 인한 심각한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자살·구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전·의경 '주 5일 근무제' 를 도입 할 것
- 나. 예측가능하고 실질적인 휴식 및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휴일 사전예고제 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다. 과다 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2.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대책

- 가. 부적합자 입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임용단계에서 전문화된 정밀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전문가 등에 의한 실질적인 검진체계를 마련할 것(필요시 국군병원의 전문의료진 활용을 위해 국방부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 나. 전·의경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적기적·적절한 조치 등을 위해 '부적응자 관리 및 단계별 조치활동 표준 매뉴얼' 을 마련할 것
- 다. 현행 직권면직제도의 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 소요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찰병원장의 정밀 신체검사서를 직권면직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투경찰등관리규칙 제123조를 개정할 것
- 라. 직권면직 심사단계 축소 및 서류 간소화 등 직권면직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마. 신입 및 부적응 전·의경들의 심리·치료상담과 복무관련 고충상담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제도를 도입할 것(기동대급 부대에 우선 시행, 소규모 부대는 공동상담관 운용)

3. 비민주적·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대책

- 가. 선임자에 의한 교육훈련, 과도한 암기사항 부여, 비공식적 계층관행 등 인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상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합제도개선 권고

권침해 요인의 최소화와 민주적·인권친화적 내무생활 문화 형성을 위해 '전·의경 내무생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것

나. 지휘관 등 전·의경 관리요원의 경험축적,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개선대책

가. 소원수리절차 매뉴얼 마련, '전·의경 소리함' 감찰부서 관리 등 현행 소원 수리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나. 컴퓨터 확대보급 및 외부 구제·감시기관의 진정권 보장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5. 전·의경 인권교육 강화 및 시스템 구축

가. 정례적 인권교육계획 수립·시행,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방청별 인권 교육강사단 위촉 운영, 경찰중앙학교 인권교육 및 부대적응교육 강화 등 전·의경 인권교육 실질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존의 국가관 및 안보교육, 경찰정신 함양 위주의 전통적 정훈교육에서 탈피하여 인권보호 및 향상,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61조를 개정할 것

6. 전·의경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 대책

가.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에 '공익의무관' 배치 및 부대내 적절한 의료대처를 위한 의무실 설치 등 적기·적절한 의료권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

나. 전·의경들의 국군병원 활용을 위한 협조시스템 구축 및 도서벽지 등 원거리 전·의경들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원격 화상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다. 전·의경의 치료비 자비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예산의 증액 등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라. 경찰병원장이 외부 전문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가능하도록 현행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5조제4항을 개정할 것

마. 시위진압 및 치안보조 활동 등으로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망 및 중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보험금을 납부하는 '민간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중상 공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액수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7. 전·의경 내무반 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가. 현행 2층침상 위주의 전·의경 내무반 시설을 1인당 2평이상 침대형 시설 등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예산배정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나. 노후화된 생활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단계적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8. 전·의경 식사수준의 질적 향상 및 교통비 현실화 방안

가.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일정규모 이상의 전·의경 구내식당에 배치할 것

나. 전·의경 급식비 예산의 상향 조정 및 공동구매방식(국방부와 협약 체결 등) 등을 통하여 전·의경 식사 질적 수준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

다. 전·의경도 TMO 군용무료열차 이용할 수 있는 대책(국방부와와의 협의)을 마련하고, 제주도 등 도서벽지 근무자 및 동지역 출신자들의 교통비 지급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입건 조사 등 법적책임 강화 대책

가.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의 심각성과 악습적 관행의 차단을 위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칙적 형사입건·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구타·가혹행위·자살사건 등에 대하여 제3의 경찰서 혹은 상급청에서 조

- 사·처리하는 방안 등 조사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
- 다.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 피해자·목격자·감독자들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건 축소·은폐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전 예방활동이 우수한 지휘관 및 부대에 대하여는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

10. 영창제도 폐지 등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가. 현행 전·의경 영창제도의 인권침해적 문제를 고려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되, 지휘권 보장 등 효율적 부대 운영 등을 위한 대체방안을 강구할 것(원칙적인 형사입건 조사·처리, 현행 근신제도를 과업 부과 후 자성적 징별기회로 보완, 휴가 및 외박제한 조치, 사회봉사활동 참가 및 보직변경 또는 전출, 현행 기율교육의 법적근거 마련 및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 등)
- 나. 전·의경 징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위촉·구성방안, 징계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항고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다. 사건축소·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지휘감독자에 대한 확실적인 문책범위 등을 책임관계 등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등 관련규정을 보완할 것

【이 유】

1. 제도개선 권고 배경

- 가.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사건, 알몸진급신고식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동 사안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2005. 10.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동 직권조사의 목표는 당해 사건들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동 조사시 나타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전·의경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된 것이다.

다. 또한, 위 직권조사와는 별도로 전·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도에는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발주 하였다.

라. 위 조사결과,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등 인권침해 사건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시위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상자와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을 둘러싼 환경 역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군대와는 달리 전·의경의 경우 사실상의 준군사조직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전·의경의 인권상황 및 복무환경 개선문제는 어느 분야 못지않게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아니될 시급한 당면과제임이 확인 되었다.

마.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구타 및 자살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반복되는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왔음에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같은 인권침해 사건들로 인하여 들이킬 수 없는 과오를 겪은 당사자는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고, 자식을 전·의경에 보냈거나 자식의 입대를 앞둔 부모들 역시 반복적인 걱정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슴아픈 단면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전·의경 개인행태 및 부대내의 문제로만 한정, 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 반복하여 검토되어 왔는데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따라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 및 부대의 행태변화도 필요하지만 전·의경 복무생활을 둘러싼 환경적·제도적 측면 등 간접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보는 개선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의경 제도환경 중심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서인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이와같은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범정부차원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에도 함께 권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사. 특히, 최근 정부의 발표대로 장기적으로는 전·의경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에 대하여 위원회로서는 전·의경의 인권문제를 고려하여 고무적으로 평가하나, 다음에서 살펴볼 전·의경 인권상황의 심각성과 제도·환경의 열악함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폐지계획이라는 이유로 현행 전·의경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현행 전·의경들이 수행하는 경비 등의 업무가 완전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경비경찰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앞으로 채용될 경비경찰관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직권조사 대상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지방경찰청 ○○○대 의경 폭행사건(05진인0000)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 ○○○(피해자의 부)

나) 피해자 : ○○○

다) 피진정인 : ○○○대 ○중대 경사 ○○○ 외 4명

라) 진정요지

- (1)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경찰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피해자를 폭행 하였고 심한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턱을 떨면서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는 증세가 발생하는 등 부적응 상태가 심각하다.
- (2)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들을 처벌해 주고 피해자가 의병제대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주기 바란다.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군 입대전 '04. 4. 초부터 약 6개월간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당시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가정형편상 치료를 하지 못한 채 2004. 11. 12. 의무경찰로 자원입대하여 선발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2005. 1. 14. ○○지방경찰청 ○○○대 ○중대에 배치 되었다.

나) 피해자는 본부중대에서 전입교육중 폐렴으로 2005. 1. 2.부터 경찰병원에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후 자대 배치되었으나 근무중 같은 해 2월초 부터는 자해를 하는 등 부적응 증세를 보였고, 같은 해 3. 3.부터 다음 달 8.까지 “적응장애(의증)”로 다시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 다) 그후 퇴원한 피해자는 정신적 부적응 증세를 보였고 손목시계 고리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5. 4. 12.부터 다음달 5.13.까지 “피해망상증세” 등으로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부대에서는 피해자가 부대생활이 불가 하다는 진단 등에 따라 2005. 4. 22.부터 다음해인 2006. 2. 21.까지 2개월씩 5차례 연장 휴직처리(현행 전경관리규칙 제 124조 제2항에 따라 전·의경의 휴직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반복적 명령) 되었다.
- 라) 당시 ○○신경정신과 심리평가서에 피해자는 ‘외부로부터 상해와 손상을 입고 상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투영됨. 자아상이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 손상되어 있어 보이며 현재는 더욱이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벗어나기 위한 자살사고 및 충동적 행동 표출의 우려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
- 마) 2005. 5. 4. 부대에서 직권면직 절차를 밟기 위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같은 해 8. 11. 7급판정(6개월의 관찰요) 결과가 나왔고(5~6급 판정만 직권면직 가능), 직권면직이 불가능하여 같은 해 10. 11. 다시 동 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 바) 당시 피해자는 수차례 경찰병원과 민간병원의 ‘적응장애 및 인격장애’ 라는 소견과 담당 지휘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은 관리규칙 제123조제1항에 국군병원 및 군후송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병원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부대측의 지휘부담은 물론 피해자의 상태는 악화된 채 시일만 도과하고 있었다.
- 사) 결국 직권면직을 위한 진단 등급을 받지 못하자 소속부대에서는, 2005. 12. 9. 전·의경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신청하여 다음해 1. 26. ○○지방경찰청 ‘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되었고, 경찰청을 경유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최종 승인되어 2006. 2. 17. 직권면직 되었는바 과거의 병력확인 및 적응장애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전역초치된 것이다.

아) 피해자가 입원한 경찰병원 및 민간병원의 다수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의 정신과적 부적응 상태가 심각 하였음을 말해주는 표현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었고, 같은 중대 소속 대원 다수도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다.

자) 진정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진정인 중대 부관 경사 ○○○는, '05. 3. 2경 피해자가 중대 행정반 창가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투신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행정반 ○○○ 대원 등과 함께 행정반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필진술서 징구 등 구타피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실은 없으며 더구나 당일 피해자의 부친이 중대방문이 예정된 상태에서 구타할 이유가 없었다는 진술이고, 그 외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들도 점호시간에 자세를 교정시켜 주고 압구호를 알려 주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등 관심의 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폭행사실은 없었다는 진술로서, 진정인의 폭행주장을 각 부인하고 있다.

차) 피해자 입대동기 ○○○ 대원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같은 내무반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와는 전입후 4일간 본부소대에 점호 등 중대적응기간을 함께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전입후 피해자가 구타·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고, 직원들이 자기를 구타한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오는 모습을 본 사실 등 비정상적인 행동은 여러차례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입대동기이자 경찰병원 보호대원이던 ○○○ 대원은 피해자와 4일간 중대적응 기간중 점호 등의 생활을 같이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진술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는 입대전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의경에 자원입대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에 배치 되었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과거의 병력이 재발되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타 및 욕설 등을 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는 진술이고, 동기대원 등 대원들도 선임병들이 점호시간에 자세를 교정한 정도 등이지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다.

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행위는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부적응 증상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입대전부터 앓던 정신과 장애가 재발되어 나타난 적응장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동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원 의무경찰 선발시 과거 병력 등을 발견되지 못할 정도의 형식적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의 문제, 채용시 발견되지 못했다면 직권면직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행 직권면직제도의 절차복잡 및 시간과다 소요로 인한 문제, 경찰병원장 진단서가 직권면직 처분시 허용되지 않는 문제, 부적응자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다수 동료대원의 인권문제, 지휘관들의 지휘부담 등 사회적 비용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술 외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나) 또한, 진정인이 피해자가 의병제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로 직권면직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위원회 조사중 부대의 직권면직 신청 등으로 전역조치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경우에 해당되어 위 같은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다) 다만,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법령·제도·관행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권고를 하고자 한다.

나. ○○ ○○경찰서 의경 폭행으로 인한 자살시도 사건(05진인0000)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 ○○○(피해자의 모)

나) 피해자 : ○○○

다) 피진정인 : ○○○○경찰서장 외 방법순찰대 지휘관 및 폭행가해자

라)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들은 ○○○○경찰서 05. 2. 15. 신병전입후 중대본부에서 2 주간의 대기생활을 마치고 같은 달 28. 소대로 배치 되었으나, 다음날인 3. 1.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를 당하였고,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5층 높이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중환자로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부대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자살시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을 바란다.

(2) 위와 같은 진정요지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지휘감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진상을 축소, 은폐, 호도등을 하여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 ○○○ 재학중 2004. 12. 23. 입대, 2005. 2. 15. ○○○○경찰서 방법순찰대에 배치되었고, 본부소대에서 2주일간의 부대 적응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8. 같은 중대 제1소대로 배치 되었다.

나) 2005. 3. 1.과 3. 2 지휘관 신상면담 결과, '가정내 문제가 없고 여자친구와는 3년정도 사귀었는데 관계가 원만하며, 신병으로서 부대분위기에 적극 적으로 적응하겠다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 흔적 발견치 못함.'으로 기재 되어 있어, 피해자는 선임대원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지휘관에게 구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위 소대에 배치된 피해자는 전입 다음날부터 자살시도 전 까지 5일간 수 차례 소대내 속칭 '챙기는 기수'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5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일제인 2005. 3. 5. 11:00경 위 경찰서 본관 외곽 4~5층 사이 계단(높이 15.6m)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중태인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단결과, 중증뇌좌상, 하학골 골절, 좌측 고관절 탈퇴로 12주이상의 경과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 라) 피해자는, 선임대원들의 구타 및 욕설 등으로 인하여 자살시도 1일제인 2005. 3. 4.에도 화장실에서 사무용칼로 왼쪽손목을 2회 자해시도를 했고, 잠시후 다시 4층 난간에서 자살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 갔다가 부모 등의 생각을 한후 그냥 내려온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 마) 최초 ○○지방경찰청에서는 2005. 4. 29. 전공사상심사 결과 '사상' 처리 하였으나, 재차 진정한 고소에 의하여 검찰수사중인 2005. 10. 20. 전공사상 재심사 결과 '공상' 판정(사유: 발병원인이 상급대원들로부터의 구타 및 인격적인 모독과 중대 적응 미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가료중인 환자임)을 하였다.
- 바) ○○대학교병원 발행(2005.11.14.) 진단서에 의하면, 혼수상태로 2005. 3. 5. 본원응급실을 통하여 입원(89일)하여 응급기관 절개술 및 집중치료후 2005. 6. 1. 퇴원 하였고, 현재 기억력 장애 및 성격변화가 있으며 행동이 어둔한 상태라는 소견과, 2005.11.18.에는 외상성 뇌손상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보행장애가 있었으나 많이 회복된 상태로서 현재 기억력 장애, 좌측 상하지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진단 하였다.
- 사) 피해자는 2005. 11. 21.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결과, 종합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12. 8. 직권면직 처리되었다.
- 아) 당초 진정한은 관할 경찰서 자체 수사 등 처리상황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2005. 5. 30)하여 본격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폭행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2005. 9. 6. ○○지방경찰청에 사건송치 되었다.
- 자) 검찰송치된 이 사건 폭행 가해자인 ○○○ 상경은 2005. 12. 8. 공소 제

기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2006. 5. 11, ○○지방법원)되었고, 2심에서 최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2006노0000, 2006. 9. 7) 되었다

차) 한편, 위 가해자 ○○○ 상경은, 2005. 10. 21. 경찰의 날 업무유공(울산플랜트시위진압 유공 및 부대사고예방 기여) 대원으로 선발되어 경찰청장 표창(2005. 9. 8 상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카) 위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밝혀진 가해자 ○○○ 상경은, 2005. 3. 1. 07:0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모포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때렸고, 2005. 3. 1. 11:20경 내무반 2층 침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군대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으며, 2005. 3. 2. 11:00경 위 내무반 2층침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진압검열훈련 시나리오 암기사항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으며, 2005. 3. 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진압검열훈련 시나리오 암기사항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으며, 2005. 3. 4.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부대생활을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고, 2005. 3. 5 10:00경(자살시도 1시간 전)에는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진압검열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전입후 매일 폭행을 한 것이다.

타) 위 가해자 외 피해자를 폭행한 3명의 대원들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위 ○○○과 함께 검찰송치 되었으나, 진정한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그 폭행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경은, 2005. 3. 4. 오전경 3소대 옆 휴련장소에서 피해자가 단화 먼지털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부위를 때리고, 또한 2005. 3. 일자불상 10:00경 내무반 2층침상에서 피해자가 군가 암기사항 점검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옆구리 부분을 2회 찔러 폭행 하였다.

선임병 ○○○ 일경은, 2005. 3. 일자불상경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군가 암기사항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동기병 ○○○ 이경을 가슴부위를 발로 각 2회 구타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폭행 하였다.

선임병 ○○○ 수경은, 2005. 3. 1. 오전 내무반 1층 침상에서 피해자가 진압훈련 시나리오를 잘못 외운다는 이유로 “진압훈련 할 때까지 내가 눈여겨 보겠다 똑바로 해라” 하는 등 3회에 걸쳐 협박하고, 2005. 3. 4. 저녁시간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부분을 때렸다(자체 징계사유에 의함)

파) 그 외 2005. 3. 2. 오후경 같은 소대 전입동기생인 ○○○와 피해자는 같은 소대 일경 ○○○에게 소대일(속칭 물피터털기, 걸레빨기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무반 2층 침상에서 각 발로 가슴을 차는 등 구타를 하였다(자체 감찰결과에 의함).

하) 또한, 05. 3. 3. 오전경 상반기 진압훈련을 대비하여 소대 침상에서 피해자와 동기생 ○○○는 기간요원 참석없이 상경 선임대원 ○○○, ○○○에게 봉술 및 체포훈련을 약 40분동안 받은 사실이 있고, 05. 3. 4. 오전경에는 방법순찰대 체육관에서 기간요원 참석없이 상경 ○○○ 주도하에 집압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감찰보고에 의하면 훈련중 구타·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하나, 고참대원들이 위 훈련을 빙자하여 하급대원들의 군기를 잡았을 개연성이 농후함이 보여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 이 사건과 관련, 2005. 10. 7. 경찰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1차 감독자인 소대부관 경사 ○○○은 불문계고, ○○○은 근신 10일, ○○○·○○○·○○○은 근신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가로 2차감독자인 소대장 ○○○ 경위도 계고조치(2006. 2. 3) 처분을 받았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는 소대 전입 다음날부터 선임대원들로부터 암기사항을 못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살 시도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중간대원들에 의하여 상습적 구타를 당하였으며, 구타장소는 기간요원 등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 2층침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은 내부 감찰 및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급청인 ○○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결과 공소제기가 되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타혐의가 비교적 약한 3명의 가해자에게는 진정인이 고소를 취하 하였으며, 반복적 구타행위가 심한 가해자 ○○○은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6월, 2심에서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 피해자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여 최종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진상조사·조치와 관련 피진정기관 및 지휘관 등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부대적응에 애로가 있는 전입신병에 대하여는 지휘관 및 기간요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의지가 원만히 부대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은 물론 인권침해도 상당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에서 밝혀진 구타사실만을 보더라도 전입된 신입대원이 다수의 선임대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를 당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다면,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사전예방 및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가 있는 폭행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중이었음은 물론 피해자가 건강을 되찾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사고예방 기여공로 이유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도록 상신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구타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이 있는지의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위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의 후

속조치 등의 행위가 적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찰조사를 통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권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향후 반인권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지적 하되,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제도개선을 강 구하여 권고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 마) 더불어, 이 사건으로 지적된 부당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유발요인으로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100일이내의 부대적용기간에 발생한 형식적인 전 입신병 관리문제, 기간요원 등이 눈에 잘 띄지 않는 2층침상에서 중간기 수(속칭 ‘챙기는 기수’)들에 의한 구타 문제, 고참대원들이 군기를 빙자한 암기사항 부여 및 점검행위가 구타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 기간요원 들의 참관 내지 직접 실시하지 않는 교육훈련 문제, 기간요원들의 수시 인사 및 잦은 교체로 인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압경비 훈련 등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참대원들에게 의존하는 문제, 피해 자가 전입후 지속적 구타를 당하면서도 지휘관의 면담기록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휘관 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한, 구타 행위자의 징계내용에 따라 감독자의 징계책임을 묻는 현 경찰 관징계양정규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구타행위자에 대한 형사입건 보다는 가급적 경미한 징계처분으로 사건이 축소·처리되고 있는 점, 혹은 엄격한 지휘책임을 기준한 양정규칙으로 인하여 지휘감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발견·조치하기 보다는 사건을 축소·은폐 소지가 있는 점, 구타사건 등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상급청 감찰부서에서 직접조사 및 강력한 징계요구 에도 징계위원회가 당해 하급청인 구타행위 등 발생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축소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의경 구타 및 가 혹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징계양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 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하기로 결정한다.

나) 다음으로, 진정인이 제기한 당초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축소 은폐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상위기관인 ○○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피진정기관의 후속조치 등에서 다소 미흡한 면은 있어 보이지만 자체 감찰조사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진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지방경찰청 ○○○대 의경 자살사건(05직인00)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고 ○○○

나) 소속기관 : ○○지방경찰청 ○○○대 제○○중대

다) 사건요지

2005. 8. 5. 16:10경 목욕외출을 나온 피해자가 PC방에서 소대원들을 이탈하여 인근 아파트 12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는데, 그 자살원인이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2004. 12. 24. 임대하여 다음해 2. 16. ○○청 ○○○대 ○중대 2 소대에 배치되었는데, 같은 해 7. 27. 중대장과 면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구타사실이 확인되어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 나) 같은 소대 선임병이 2005. 5. 15 20:30경 중대 화장실에서 당일 훈련중 마실 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앞으로 똑바로 해 임마!” 라고 언성을 높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다른 같은 소대 선임대원도 2005. 6. 초순경 기동단 연병장에서 중대훈련전 구보를 하고 있던 중 목소리가 작다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여, 가해자들은 2005. 7. 29. 각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다) 피해자는 2005. 6. 29.부터 7. 2. 까지 외박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아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를 부대에 복귀시켰고, 미복귀에 대한 처벌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부대측에서는 부모의 요구대로 1중대에서 같은 기동대 3중대로 같은 해 7. 31. 부대부적응을 사유로 전출 조치되었다.
- 라) 피해자는 2005. 2. 16. ~ 2005. 7. 30. 기간 동안 전소속인 ○중대에서 근무하며 44회의 상황출동을, 전출후에는 2회의 출동을 하여 총 46회 상황출동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전출전에 생활을 함께한 동기 ○○○은, 청주 하이닉스 관련상황 및 울산플랜트노조 지원상황시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대의 특성상 검열시범중대로 강도 높은 훈련에 체력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부담감 등으로 부대 적응에 힘들어 했다는 진술이다.
- 마) 피해자 후임병인 ○중대 ○○○은, 피해자가 사망 당일 새벽 03:40경 열린 우리당 앞에서 “근무중 1중대보다 3중대가 더 훈련을 많이 하며, 검열기간도 아닌데 3중대는 훈련하는게 이상하다”고 말했으며, “1중대에서 하필 하면 바로 윗층인 3중대로 전출을 와서 짜증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다.
- 바) 전출후 소속 소대장인 ○○○은, 전입 다음날 피해자 부친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성격이 내성적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 잘 지도해 달라’는 부친의 당부에 관심을 갖고 관찰 하였고 피해자는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8. 2 교보빌딩앞 상황대비(한총련 통일선봉대) 출동시 긴장하고 두려운 기색을 보여 격려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상황을 두려워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사) 피해자는 전입부대에서 총 2회 상황출동을 하였는데, 2005. 8. 4.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여의도 타격대 거점배치후 13:00경 목욕외출중 인근 PC방에 들러 8. 5. 14:12~15:16경 까지 컴퓨터를 하였고, 대열에서 혼자 이탈 후 예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인근 성동구 ○○동 소재 ○○아파트 12층으로 올라가 복도 난간에서 투신하여 사망 하였다.

아) 서울○○경찰서는 사망원인을 수사 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탄원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망사건에 대하여 위 검찰청 허준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아파트 CCTV 파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살로 결론내고 내사종결 처리(2005. 12. 20) 하였다.

자) 피해자와 같은 소대 기리기 형제로 지정된 ○○○은, 고참이나 다른 소대 고참들도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식이나 욕설, 구타행위는 없었고 처음 전입해 왔을 때 문제가 있는 대원으로 알았으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보다 생활을 열심히 하여 다른 후임자들 보다 더 챙겨 주었다고 하며, 피해자가 폭력시위에 대해 유난히 긴장을 느끼며 걱정을 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이다.

차) 피해자는 2005. 8. 23. 전·공사상 심사결과 순직2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각종 불법폭력 시위 진압과 강도 높은 체력훈련 및 전술훈련에 의한 갈등으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었다.

3) 판단

가)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추락에 의한 자살로 내사종결 처리된 사건으로서, 피해자 사망 당시의 중전 중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 확인되어 가해자들은 징계조치 되었고, 피해자 역시 부대 부적응으로 타 중대로 전출 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부대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그 원인 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부대원들에 의한 조사결과에서도 그 외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를 특별히 발견할 수 없었다.

나) 또한, 경찰청 자체 '순직' 처리 사유와 같이 폭력시위 진압과 강도높은 훈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런 등에 따른 심적부담감과 부대부적응 문제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가 ○○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은 물론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최종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 나) 또한, 폭력시위와 강도높은 훈련에 의한 갈등에 따른 심적부담감과 부대부적응으로 문제 등에 의한 자살로 인정받아 순직처리 되었고, 피해자가 전출전 부대에서 구타를 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 다) 따라서,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와 전입신병에 대한 부대 부적응자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하여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라.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알몸진급신고식 사건(05직인00)

1) 사건개요

- 가) 피해자 :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상경 ○○○ 외 5명
- 나) 피진정인 : 전 ○○경찰서장, 제○○○전경대장 외 지휘관 등
- 다) 사건요지

전경대 대원들이 관행적으로 알몸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담뱃재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비인격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알몸 진급신고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 되었다.

2) 조사결과

- 가) 2005. 6. 24 YTN, SBS 등 방송은 2004. 9. 2. 발생했던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알몸신고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 하였다.

- 나) 문제가 발생한 제○○○전경대는 ○○에서 ○○로 이전(04.10.25)까지는 관례적으로 진급신고식을 하였는데, 방송보도된 것은 2004. 9. 2.로서 일석점호를 마친후 6개소대 진급자인 상경 ○○○ 등 총 6명이 본부소대 내무반에서 실시한 것을 2004. 9. 26. 전역한 당시 내무반장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유포되어 보도화 된 것이다.
- 다) 진급회식시 별주로 담배재, 양념 등 이물질들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하였고, 고참대원들에게 진급보고를 할 때 말을 더듬던가 하면 옷을 하나씩 벗었으며,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되고 난 후에 더 벗을 것이 없으면 고참대원들이 진급자들에게 안티프라민을 알몸에 뿌렸으며, 동 약품을 진급자들의 생기에 바른 사실이 있다고 일부 대원들은 진술 하였다.
- 라) 진급신고 회식은 대원들이 소대비를 각출하여 술과 과자류 등을 준비하여 이루어 졌고, 진급신고식에 대하여 전경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사전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2006. 9. 2. 당시 당직자인 ○○○ 경사는 술과 닭고기를 살 수 있는 회식비를 지원하여 주었고 생활실에서 진급대원들 신고를 받고 같이 음료수 등을 먹다가 자리를 피해 주었다는 진술이다.
- 마) 관련자 등은 진급회식시 진급자들을 축하해 주는 고참들의 관례적인 장난으로 생각했고 같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크게 느끼지 않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진술이나, 해당 부대는 행해져 내려오던 관행으로 하급대원인 신고자들이 동의 및 자의에 의한 행동 이라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 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 등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자체 징계조치(2005. 7. 12)를 취하였다.
- 바) 또한, 동 부대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결과 정훈교육 실시시 4회에 걸쳐 교육자료만 배포한 사실, 100일미만 대원 면담기록부 일괄작성한 사실, 전경대장 신임대원 면담기록부를 행정대원이 대리 작성한 사실 등이 밝혀진 것을 볼 때 동 부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과 면담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가) 위 언론보도후 경찰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하여 관련 지휘관들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고,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수치심 유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악습이 잔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입 및 보호대원에 대한 형식적인 면담 및 정훈교양에서 탈피하도록 지시 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나) 따라서, 이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형식적인 지휘관 정신교육 문제, 100일미만 신입대원 면담의 형식적 실시 문제, 참가대원들이 인권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권감수성 부족에 따른 인권교육 필요성의 문제, 악습적 신고식이 관행적으로 실시될 정도의 비민주적 내무생활 문화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청 자체 감찰조사에 의하여 진상이 밝혀졌고, 관련 지휘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이와같은 악습과 신고식 관행 등 불합리한 사항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 나) 따라서, 위 판단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제도·관행적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마.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구타로 인한 탈영사건(05적인00)

1) 사건개요

- 가) 피해자 : 제○○○전경대 5소대 상경 ○○○ 외 2
- 나) 가해자 : 제○○○전경대 1소대 상경 ○○○ 외 2
- 다) 사건요지

2005. 10. 13. KBS 9시뉴스에 “구타 못견뎌 탈영” 이라는 제목하에 알몸신고식으로 물의를 빚은 전경부대에서 구타로 인해 보름사이에 대원 3명이 잇달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요지의 방송이 보도화 되었다.

2) 조사결과

<피해자 ○○○ 상경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2004. 11. 23. 입대, 2005. 1. 14 ○○경찰서에 명령을 받았으나, 동 경찰서에서 2005. 4. 19 근무시 부대적응이 않된다는 이유로 유서를 쓴후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기도를 한 사실이 있고, 2005. 4. 4.부터 불안신경증 등으로 ○○신경정신과등 2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2005. 9. 22. 부터 경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방송 보도후 ○○지방경찰청에서는 자체 확인 결과, 선임병 ○○○은, 2005. 9. 5. 12:00경 버스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른다는 이유로 근무모로 피해자의 모자챙을 2회 툽툽 치는 등 심적부담을 주었고, 선임병인 상경 ○○○은, 2005. 9. 일자불상경 14: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먼산만 바라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목 뒷덜미를 3회 구타 하였으며, 선임병인 상경 ○○○은 2005. 9. 7. 21: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취침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종아리 및 허벅지를 각 구타 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해자는 결국 부대적응에 따른 심적부담과 선임대원들의 구타 등으로 인하여 부담을 갖고 2005. 9. 7. 22:00경 부대를 무단이탈 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02:55 ○○시 소재 PC방에서 검거 되었다.

라) 구타 가해자 3명은 각 영창 5일 처분을 받았고, 당시 기간요원 전경대장 ○○○의 6명(1차 및 2차 감독자)은 위 구타사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각 기각계고 및 계고 처분조치 되었다.

<피해자 ○○○, ○○○에 대하여>

가) 상경 ○○○와 일경 ○○○은 2005. 7. 11. 6소대가 없어지면서 1소대 전 입 진압훈련(검열부담)과 소대생활 적응이 힘들다며 탈영하기로 마음먹고, 2005. 9. 22. 04:50경 함께 부대를 이탈하여 서울로 상경 하였다가 심경의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변화로 9. 23. 각 자진 귀대 하였다.

나) 탈영자에 대하여 부대에서는 부모들의 선처부탁 및 근무태도 등을 감안 징계조치 없이 공적제재부 등재후 자체 훈련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위 탈영자들은, 탈영원인에 대하여 각종 상황출동과 방범근무를 해오면서 소대에 잘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감 등 본인의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하여 충동적으로 무단이탈을 하게 된 것이며, 선임대원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 진술 하였다.

다) 또한, 당시 방송내용중 기자에게 “내무반이나 버스에서(맞죠)...”라는 답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은, 기자가 “예전 전경대에서는 구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타가 있었다면 어느 장소에서 구타가 행해졌었겠느냐” 라고 물어 보기에 “예전에는 버스나 내무반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일부만 편집되어 보도된 것 같다는 진술이며, 또한 부대내 구타는 없었다는 진술이다.

3) 판단

가) 위 언론보도후 ○○○ 대원의 탈영건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정신적 불안증세, 부대 적응상의 부담, 일부 고참대원들의 구타에 부가하여 무단 이탈한 사항으로서, 방송보도후 ○○지방경찰청에서 자체감찰조사를 통하여 가해자 및 감독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다.

나) 또한, ○○○, ○○○ 대원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탈영보도후 피해자 및 동료대원들에게 확인 결과, 별도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탈영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탈영후 자진 복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동 대원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탈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중 피해자 ○○○ 대원의 경우 선임대원들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구타 행위자 및 지휘감독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

항제3호에 따라 기각대상에 해당된다.

나) 또한, 당시 보도된 탈영자 ○○○ 및 ○○○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로 볼 때, 개인적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탈영한 것이라는 진술로서 특별히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탈영을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대상에 해당된다.

다) 다만, 이 사건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선임대원들의 구타, 부적응자 관리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제도·관행적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바. ○○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의경 구타사건(06직인00)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전 ○○중부경찰서 방법순찰대 제3소대 일경 ○○○ 외 5명

나) 가해자 : 전 위 피해자와 같은 소대 수경 ○○○, 수경 ○○○

다) 사건요지

2006. 2. 11. 17:00~17:30경 ○○중부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2층 숙소에서 의경 2명이 외출후 술이 취하여 후임대원 6명을 수차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 2006. 2. 12. 21:00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 되었다.

2) 조사결과

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의경 9명은 2006. 2. 6.부터 방법순찰대 분산배치 계획에 따라 ○○지구대 방법지원 근무지정을 받고, 사건당일 00:00~05:00까지 방범근무후 10:00~17:00까지 ○○지구대 제3사무소장이 휴식차원의 외출을 허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 따로 외출을 하였다.

나) 가해자 2명은 외출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17:00경 숙소인 ○○치안센터에 복귀하였고, 피해자 6명이 당일 아침식사 추진 차량이 도착할 때 까지 기상을 하지않고 외출을 함께 나가지 않는 등 군기가 헤이해 졌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하였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다) 가해자 2명은 주먹과 발로 하급자 ○○○ 등 6명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각 수차례 폭행을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 특히 ○○○은 고막이 파열되고 눈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은 눈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 등 4명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 라) 이 상황에 대하여 같은 날 17:50경 ○○치안센터 대원들에게 식사추진을 하러 왔던 3소대 부관이 후임대원들의 부상 상태를 확인 하였고, 곧바로 ○○○○대병원을 경유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 마) 동 사건 보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날인 2006. 2. 13. 직권조사를 결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경찰청에서도 감찰조사를 통하여 가해자 및 감독자들에게 징계조치 등을 지시 하였으며, 자체 경찰서에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상해) 위반으로 형사입건(불구속)·수사를 거쳐 2006. 3. 3. ○○지방검찰청에 송치 하였다.
- 바) 또한 가해행위자 ○○○ 등 2명에 대하여는 각 영창 15일, 당시 치안센터 근무자 ○○○ 경사와 당직자인 소대부관 ○○○ 경장은 각 견책을, 중대 당직관 ○○○ 경사, 지구대 사무소장 ○○○ 경위, 지구대장 ○○○ 경감 및 생활안전과장 ○○○ 경정은 각 계고, 경찰서장인 ○○○ 총경은 경찰청장 서면경고 처분조치를 받았다.
- 사) 가해자 2명은 위 징계와 별도로 타중대에 전출 되었고, 추가로 중앙경찰학교 기율교육대에서 기율교육(15일간)을 받았으며, 피해자 6명은 본인들이 동 순찰대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다.
- 아) 또한, 자체 징계처분 및 기율교육과는 별도로 이 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된 가해자 ○○○ 외 1인은 2006. 3. 8.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기소(2006 형제17429) 되어, ○○지방법원에서 최종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2006. 5. 8)을 받았다.
- 자) 결국, 동 구타사고는 대원들이 기간요원들의 감독, 통제없이 대원들만이 치안센터 2층에서 생활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자체 “방범순찰대 분산배치 계획”에 따라 집중 운용되던 경찰서의 방범순찰대를 지구대로 분산배치함에 따른 문제점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동 분산배치계획은

전·의경 들의 제반생활은 지구대(치안센터)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는데 반하여 복무관리 책임은 방범순찰대에서 책임을 지는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4) 판단

- 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경찰청 본청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구타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게 필요한 징계조치를 강구 하였다.
- 나) 이와 별도로,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고 최종 법원에서 확정판결(벌금) 되었는바, 사건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이 확정 되었다.
- 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하여 확인된 전·의경 대원 선후임간에 발생하고 있는 군기를 빙자한 심각한 구타 문제, '방범순찰대 분산배치 계획' 에 따라 전·의경 내무생활 감독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문제, 형사처벌 및 기율교육 실시와는 별개로 지휘관이 징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중처벌 비판소지 문제 등이 있는 영창제도 문제, 현행 경찰관징계양 정규정상의 결과 위주의 지휘관 등의 징계문제 등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가) 이 사건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되어 최종 법원 판결(벌금 100만원) 되었고, 이와 별도로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 나) 다만,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사. ○○지방경찰청 ○○경찰서 전경 자살사건(05진인0000)

1) 진정개요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가) 진정인 : ○○○(피해자의 부)

나) 피해자 : 고 ○○○

다) 피진정인 : ○○○○경찰서장

라) 진정요지

평소 아무런 성격상 문제가 없는 아들이 자살한 것은 부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니 자살의 원인을 밝혀주기 바란다.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대학교를 2년수료후 2005. 1. 24.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군사기분교육을 이수후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해 3. 25. ○○○○경찰서 112타격대로 배치 되었다.

나) 2005. 3. 31. 05:45경 경장 ○○○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노크를 했으나 인기척이 없고 문이 잠겨진 채로 바닥에 피가 비쳐, 불침번인 ○○○과 타격대 ○ ○을 불러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를 발견 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대 전입 6일째인 2005. 3. 31. 05:10~05:45경 위 경찰서 별관2층 타격대 화장실내에서 좌측 손목 3개소에 4~5Cm 길이의 손상자해를 한 채로, 자신의 혁대로 화장실 옷걸이에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사망 하였다.

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은, 위 같은 날 05:51에 119신고 접수를 받고 05:55경에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어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동공이 확장되어 있고 맥박이 없는 상태이었으며, 응급조치후 ○○ ○○병원으로 후송 (06:05경)하여 의사가 확인하더니 사망한 상태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자신의 훈련용 수첩에 자신의 심리적 나약함을 원망하며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면서 부모님과 선임대원, 여자친구 등에게 인사말을 남기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 되었다.

바) 검안의사 ○○○는, 전형적인 의사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담당의사 ○○○는 소견서에서 피해자의 내원당시 의학적 소견은 호흡, 맥박, 심박동, 동공반사, 항문근반사 등이 모두 없어진 상태로 응급실 도착전에 사망한 것으로

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는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과 연관 지을만한 내부 장기의 질병이나, 손상, 약독물의 중독 등의 소견은 보지 못하였고 의사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고, 피해자가 혼련용 수첩에 작성한 유서에 대한 감정결과도 피해자가 작성한 글임을 확인 하였다.

아) 피해자의 유류품중 교양자료 12매가 발견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출동유형별 임무, 휴대장비, 민원방문시 처리안내, 건물위치도 등으로 이루어진 업무 매뉴얼로서 통상 전입후 2주가 지난 뒤에 배부해 왔으나, 선임대원이 건내 준 것으로서, 동 교양자료에 대하여 선임병들이 읽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고 다수의 대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 입대 동기생 ○○○ 이경은 전입은지 이틀쯤 뒤에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가면서 “힘들다, 쫓빠진다”고 말한 사실 외 자살동기나 신병을 비판하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선임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하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루종일 내무반에서 대기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살할 정도로 힘든 일은 없었다는 진술이다.

차) 보호대원인 ○○○ 상경은, 통상 전입 2주까지는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가만히 생활실에 두면서 부대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에게도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 없으며, 말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였을 뿐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선배 기수로부터 어떠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다.

카) 지휘관인 타격대장 경사 ○○○은, 피해자가 전입이후 부친과 전화통화도 하고 매일 신상면담을 하였으며, 면담시 스스로 내성적인 성격이라 하였고 애로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며, 처음 전입한 날 혹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하의를 벗기고 신체검사를 해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타) 당일 야간 타격대장 경장 ○○○은, 피해자는 전입 온지 5일밖에 되지 않아 근무도 없었고, 전날밤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간의 축구경기를 같이 보고 복도에 나가 같이 담배도 피우면서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인은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군 생활은 잠시 지나가니까 참고 열심히 하라며 격려해 준 후 22:00경에 잠을 재운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과)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피해자의 유서에 작성된 ‘사랑한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저는 친구로만 생각 하였는데 그런 내용을 남겼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자서 짝사랑을 한 것 같다”며 사랑을 고백한 사실도 없으며, 군생활이 힘든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자살한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하)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8일전 2005. 3. 22. 여자선배에게 ‘입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자고 결심하고 왔는데 사회랑 똑같이 소극적이고 화만내고 맨날 투덜거리는 것 같애’ ‘이 놈의 군생활 사람 병신 만드는 곳이네. 지금 생활이 엄청나게 편한데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자대가면 어떻게 버틸지 심히 걱정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가) 같은 내무반을 사용한 ○○○은, 전입을 때에는 여자친구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사망후 사물함 정리를 하다보니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쓴 편지가 약 7통 정도 보내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

나) 논산훈련소 및 중앙경찰학교 동기생 ○○○와 ○○○은 피해자가 훈련소에서 허리가 좀 안좋다고 하였으며, 전경으로 경과를 받고 처음에 약간 당황 하더라는 진술이다.

다) ○○지방검찰청 ○○○ 검사는, 동 사건을 지휘수사하여 ‘내사종결’ 처리 (2005. 4. 29.) 하였으며, 내사종결 사유는 피해자가 원만히 부대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여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닦하는 자필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 한다는 것이다.

러) 동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 감독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상황부실장인 ○○○은 04:00이후 순찰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자살사고가 발생한 후에 순찰 표에 표기를 함으로서 심야시간에 대원들의 자체사고 방지에 소홀한 혐의로 “계고”처분 조치 되었고, 야간타격대장 ○○○은, 내무반 쇼파에서 사고 발생시간대인 03:00~05:45경까지 잠이 들어 심야취약시간대에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고” 조치 되었으며, 타격대장

○○○은 신입대원들에 대한 형식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교양” 조치 되었다.

3)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손목에 자해손상을 한 채 화장실 옷걸이에 자신의 혁대로 목을 맨채로 발견 되었다는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의사로 판정된 사실, 검안의사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훈련용 수첩에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다텸면서 사망전에 작성한 유서가 발견 되었고, 동 유서 필적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필적임이 밝혀진 점,
- 나) 또한, 피해자 고참 및 동료대원들은 피해자가 전입 6일째 되는 신입대원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근무·교육·훈련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암기자료는 지급 하였으나 암기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동료 대원들의 진술 등,
- 다) 위 제반사실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신입대원 등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살을 하였다거나 기타 부대내 특별한 요인에 의해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를 특별히 발견할 수 없었다.
- 라) 또한, 부대 경찰기간요원들의 자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하여 조치가 이루어 졌으므로, 더 이상의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다만,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전입 신입대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과도한 암기사항 문제, 경찰중앙학교의 교육과정 중 자대배치후의 적응을 걱정할 정도로 동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부대적응을 위한 사전과정으로서 적절한지 문제, 전입신병에 대한 형식적 교육 문제 등 전·의경 부대내 제도·관행적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4) 조치의견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 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의사로 검찰에서 내사종결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부대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기각 대상에 해당된다.
- 나) 다만,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뒤에서 별도의 검토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하기로 한다.

3. 전·의경 인권상황 및 제도·관행 등의 문제점

가. 전·의경 제도 개요

1) 연혁 및 도입배경

- 가) 1970. 12. 31.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전경제도의 근거법률은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주요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업무수행)으로 1976. 9. 1. 창설되었다. 의무경찰은 위 같은법 및 시행령에 의해 시위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등 치안보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1982. 12. 31. 창설 되었다.
- 나) 위 근거법령 외 전·의경 관리를 위해 세부 관리규정인 경찰청 훈령으로서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기동대관리규칙, 방범순찰대관리규칙에 따라 전·의경 관리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입대경로

- 가) 경찰청장은 매년 2월 다음해 소요인력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병력을 전환받는데, 전투경찰은 일반 입영절차에 따라 군 훈련소 입대후 5주의 군사교육을 받고 랜덤방식에 의한 무작위 착출을 통하여 전투경찰로 전환 복무되며 중앙경찰학교에서 2주 교육 이수 후 주로 112타격대, 전경대, 검문소 등에 배치된다.

나) 또한, 의무경찰은 전년도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인력에 대하여 매일 모집을 통하여 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고 동 훈련소에서 4주 위탁 군사훈련을 받은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3주의 교육 이수후 주로 기동대, 방범순찰대 등에 배치된다.

〈전의경 인력현황(2006. 10월말현재)〉

구 분	계	작 전 전 경			의 무 경 찰			
		인원(명)	비율(%)	중대수(개)	인원(명)	비율(%)	기동대(개)	방순대(개)
계	38,408	15,733	41.0	59	22,675	59.0	88	102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3) 경비경찰에 대한 외국의 사례

가) 영국

우리의 경비와 같은 분리된 단일한 경비기구가 없고, 경비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데, 예컨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공공질서과에 공공질서 훈련센터를 두고 있다.

나) 미국

우리나라 경찰청(경비과)과 같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으며, 시위진압의 주력은 주병(national guard)이라는 조직인데, 1936년 설치 이후 44만명으로 구성되어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하에 있지만 전시 및 비상시는 미군에 편입되어 활동한다.

다) 독일

독일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형, 긴급사태 등을 대비한 조직인바 연방 경비, 공안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독자적 경찰기관으로서 주에는 주경찰기동대가 있는데 폭동이나 시위 등 전국적 긴급치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라) 프랑스

경비업무 담당기관은 국가경찰기동대와 헌병대라는 독특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경찰기동대는 경찰총국 아래 편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경복장처럼 특수복장을 한 경찰관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시위 및 폭동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마) 일본

1950년대에 시위집압을 위해 동경경시청에 기동대를 설치하였고, 1969년에는 관구경찰국에 기동대를 설치 하였으며, 주요임무는 시위진압경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발생시 구조나 원조활동을 비롯하여 경비 및 경찰지원활동 등을 수행한다.

위와같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비업무 기능은 이루어 지지만 징병제에 의한 복무지원 및 대체모집에 의한 복무형태가 아닌 직업 경찰관제에 의한 제도로 운영되며, 전·의경 징병제에 의한 제도 운영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경우이다.

나. 전·의경 인권상황 및 부문별 제도·관행 등의 문제점

1) 과도한 출동·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문제

가) 전·의경 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시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시위문화 특성 등 현실적 경비여건에서는 의무복무자인 전·의경들의 과도한 출동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안과 견제장치 없이 전·의경들에게 과도한 출동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을 표본으로 소속 5개 기동대 53개중대의 2006. 9월 및 10월중 출동 등 근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22.4회 출동을 하였고, 주 평균 63.7시간을 출동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진압훈련 등 교육훈련까지 포함한다면 주 평균 70~80시간의 출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의경들의 경우 근로기준을 떠나 일반시민 이라면 불가능한 근로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으로 그 정도가 심함을 알수 있다.

〈서울기동단 소속 전·의경 2006. 9.~10월중 출동근무현황(진압훈련 별도)〉

기동대별	중대수	2006. 9월		2006. 10월		주당 최다시간	주당 최저시간
		출동횟수	주당 평균 출동시간	출동횟수	주당평균 출동시간		
합 계	53	22.6	62.5	22.2	64.9	89	47
제1기동대	12	22.3	65.5	21.2	64.6	89	47
제2기동대	10	22.2	62.7	22.6	69.5	75	55
제3기동대	11	22.5	59.3	22	62.8	78	47
제4기동대	13	23.8	63.3	24.3	65.5	89	47
특수기동대	7	22.3	61.6	21.1	62.1	74	52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출 현황

- 다) 실태조사 결과 2일 9시간 과다근무자가 조사대상자중 35%를 차지하고 있고 1일 수면시간의 경우도 5시간 미만자가 6.3%, 5~7시간이 54.7%를 차지하는 등 적정수면시간 이하가 61%를 차지 하고 있다.
- 라) 군인의 경우 특수한 업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은 물론 토요일 무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전·의경은 1주일에 1일 '부대정비의 날'이 휴무일로 지켜진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출동 등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주말 시위진압 및 경비 등으로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철야 근무후 대체취침 의미 외 개인의 휴식 및 여가시간을 위한 휴무일로서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마) 특히, 최근에는 의경 지원인력 및 전경 복무인력 감소로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 부족한 실정(당초 중대당 정원은 기동대 및 방순대가 143명, 전경대가 168명이나, 실제 운영은 123명으로 운영)으로서 늘어나는 시위건 수 증가 등과 비교할 때, 이러한 인력부족은 결국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이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과다출동 및 휴일 미보장은 과로로 인해 부상의 위험성에 노출됨은 물론 결국 전·의경들의 여건과 환경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전·의경 년도별 출동 및 근무중 부상자 발생현황〉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공상자수	923	1,007	1,048	1,232	531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바) 또한 만성과로로 인한 전·의경들의 스트레스 야기는 구타 및 가혹행위·부상·자살·복무이탈과 같은 인권침해적 새로운 사고 요인들로 작용하여 매년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전·의경들의 업무가 대부분 대민접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인권보호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 경찰청에서도 전·의경 정신과 치료자 수가 2003년 143명, 2004년 187명, 2005년 19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사유로 가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전·의경 대원들 및 전 의경 부모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아) 따라서, 전·의경이 의무복무자라고 하지만 결국 제복입은 시민에 불과한데 근무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범위를상당 초과하여 과도한 업무수행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중 휴식권과 수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복무부적합자 직권면직제도 및 부적응자 관리시스템의 한계

가) 지원복무로 충원되는 의경의 경우 매년 지원인력 감소 등으로 임용선발시 검증절차가 부족한 실정으로, 즉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의사 등 전문가가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원자 자신이 선택한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존하게 되고, 인성검사의 경우도 비전문가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정신과 분야 등과 같은 외형상 흠이 발견되지 않는 진료과목 등에 대하여는 감별 능력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진정사건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는 입대전 민간병원에서 장시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가정형편상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 자신이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아 채용과정시 특별한 흠이 없이 입대하게 되었으나 결국 자대 배치후 정신병력이 재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심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상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합제도개선 권고

어는 지원입대인 관계로 일반육군이나 부적격자로 분류 귀가조치된 사람도 특별한 제한없이 입대한 사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연도별 전·의경 정신과 진료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8월말
명	143명	187명	190명	128명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나) 위와 같이 입대하지 않아야 할 복무 부적합자가 입대하여 결국 부대생활 중 급격한 환경변화로 질환이 재발되고, 이로 인한 당사자 인권문제는 물론 동료들의 인권문제(동료대원들의 불안 요인은 물론 경찰병원 의료인력 부족으로 1명의 전·의경이 정신과에 입원시 동료대원 1명도 정신병원 병동에 함께 입원하는 등) 및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살 등의 사고는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전·의경 자살자 현황〉

구 분	5년 평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6월
자 살	8.6	11	8	11	6	7	2
자 해	5.6	8	8	6	3	3	2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 유사직군 대비 자살자 수 비교

유사직군별	3년평균	2003년	2004년	2005년	1만명당 자살자수
전·의경	8명	11	6	7	1.94명
육 군	48.3명	53	54	38	1.17명
사회(20~24세,남자) (통계청 자료)	305.6명	328	292	297	1.50명

최근 5년 평균 전·의경 자살원인을 살펴보면, 적응장애 37.2%, 신병비관 25.6%, 이성문제 18.6%, 기타 16.6%이고, 계급별로는 일·이경 86%, 상·수경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14%를 차지하고 있다.

다) 과거 병력이 재발되거나, 복무중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여 복무부적합으로 계속하여 복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제36조 내지 제36조의3 및 동법시행령 관리규칙 제123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심제인 동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과 시일과 다 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결국에는 직권면직 되더라도 시일이 과다하게 경과되어 부적응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됨은 물론 부대로서는 새로운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현재 육군의 경우 해당 전문진료과가 있는 국군병원 모두(약 19개 병원)에서 신체검사의 등급결정을 하고 있으나, 전·의경의 경우 종합국립병원인 경찰병원의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고 각 지역에 관계없이 국군병원의 진단서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이 판정한 진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칙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제1항에 의하면 국군통합병원 또는 군 후송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규정을 하위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다.

상기 진정사건의 경우(05진인0000), 입대전 민간정신병원 치료 병력이 확인되었고, 경찰병원에서도 장기간 입원치료 및 부적합 판단을 하였으며, 부대측의 상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복무 불가능으로 10개월의 휴직처분(2개월씩 5회 연장)을 하였는데도, 절차의 복잡 및 시일과다 소요로 질환이 재발·확인되지 1년이 지나 결국 부적합자로 전역조치된 사례에서도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 대부분 자살 및 자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저지를 만한 요인이 잠재된 곳에서 발생하므로, 철저한 사전 예방과 적시성있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신입·전입 및 부적응자 상담관리 등의 형식적 운영

가)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에 따라 관심요구 전·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관리 등 제반 사고요인 제거 차원에서 '신상면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차 감독자(부관, 소대장)는 월 2회, 3차감독자(중대장)는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휘관에 의한 신상면담만을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는, 전문상담능력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진술 청취하고 수용하느냐는 의문의 문제,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 지휘책임이 병행되는 지휘관에게 솔직한 진술이 가능하느냐는 문제, 부적응자의 경우 자신상황에 대한 진술시 부적응자로 낙인 및 왕따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제도 취지에 반해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나) 특히, 앞에서 살펴본 진정사건(05진인0000) 사례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3일째 신입 대원이 선임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지휘관에게는 구타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면담기록한 3일후에 선임대원들의 상습적 구타를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건 발생 하였고, 지휘관은 대원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직접 청취 면담하고 면담기록부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일 미만의 전입대원 들의 면담도 하지 않고 그 작성도 중대 행정요원에게 일괄작성토록 하였음은 물론, 지휘관의 정훈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교육자료만 배포하는 등 형식적인 면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일부 지휘관들의 경우 경비출동 대기시 선임대원들이 있는 전경버스내에서 면담을 실시 하므로서, 실질적인 면담권 보장이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결국 제3의 입장에 있으면서 대원들의 부당한 대우나 애로사항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문상담가는 집중상담을 통하여 특정대원의 애로 및 문제점을 지휘관에게 건의하고 아울러 전문적인 집중 심리상담 치료를 통하여 대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부대적응을 도모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일부 부대에는 천주교 경찰사목위원회 소속 심리상담사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제도가 공식화 되어 있지 않아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국방부의 경우 병사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인권상담 등을 위해 각 주요부대에 상근직 '기본권상담관'을 민간 전문인력으로 충원 운영 하므로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로 향후 확대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4) 선임대원에 의한 군기교육 등 비민주적 내무생활문화

가) 앞에서 살펴본 진정사건 조사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부대에서 각종 근무 및 교육훈련, 내무생활 기강확립, 암기사항 점검 등에 대하여 기간요원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선임 대원들에 의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이유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인권침해적 행위는 자살, 자해, 상관폭행 등 새로운 사고요인이 됨은 물론, 결국 새로운 후임대원에게 대물림 되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최근 다소 줄어든다고는 하나 차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 현황〉

구 분	원 인 별(건)						계 급 별(건)				
	계	훈련 빙자	지시 불이행	점호 불량	군기 불량	기타	계	이 경	일 경	상 경	수 경
2001	569	29	132	16	218	174	569	136	222	97	14
2002	343	22	102	13	129	77	343	137	128	66	12
2003	336	20	59	13	159	87	336	122	134	68	12
2004	270	7	31	7	148	77	270	89	116	59	6
2005	201	6	61	12	87	36	201	78	74	42	7
'06.9	160	2	24	2	88	44	160	64	62	24	1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나) 기간요원 및 지휘관들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과 순환보직에 따른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직접 교육훈련 실시 및 내무생활 지휘에 어려운 실정이거나, 승진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대원들의 교육훈련 및 군기교육을 대부분 경험있는 선임대원들에게 의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진정사건의 대부분이 선임대원들에 의한 암기사항 점검, 군기교육, 교육훈련을 이유로 구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부대내 근무기강 확립, 상호간 기강문란 등의 발생시에는 대원 상호간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공적제재를 활용하도록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나, 전·의경 부대 특성상 공적제재 보다는 사적제

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경우 선임대원이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임대원을 군기확립 이유로 공적제재 승낙은 받았으나 지휘관이 보지않는 기동대 강당으로 데리고 가서 가혹행위 및 구타를 하여 정신병이 발생하여 치료중이라며 진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적제재를 형식으로 하는 음성적 구타행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라)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적정한 군기가 있어야 부대가 돌아가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 ‘구타는 기강확립을 위해 부대에서 필요악’ 등 잘못된 편견과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없어야 할 과제로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조치 없이는 구타 및 가혹행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이유〉

구 분	1 순 위		2 순 위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선임대원 지시 불이행	113	22.9	84	18.5
군기(기강확립)을 이유로	104	21.1	92	20.2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95	19.2	55	12.1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는 선임대원의 인식	45	9.1	37	8.1
청소미비 등 내무생활 불량	44	8.9	61	13.4
기간요원이 지적(절타)	43	8.7	47	10.3
암기사항 미숙지	23	4.7	33	7.3
특별한 이유없이	11	2.2	6	1.3
기 타	16	3.2	40	8.8
합 계	494	100%	455	100%

* 자료 :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장소〉

구 분	발생장소 1순위		발생장소 2순위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내 무 반	105	31.1	70	23.0
출 동 버 스	97	28.7	85	27.9
화 장 실	27	8.0	30	9.8
식 당 주 변	26	7.7	14	4.6
훈 련 장	19	5.6	39	12.8
체 력 단 련 실	13	3.8	11	3.6
소 각 장	11	3.3	20	6.6
세 면 장	9	2.7	18	5.9
사 무 실	9	2.7	8	2.6
기 타	22	6.5	10	3.3
합 계	338	100	305	100

* 자료 :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5) 소원수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가)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각급 지휘관은 소원수리를 통하여 신속하고 성의있는 고충처리로 전·의경의 불만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경찰청 및 전경대는 연 1회이상, 기동대 방법순찰대 등은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리과정 등에서 비밀보장의 한계, 불만표시자로 낙인문제, 가해자의 보복우려 심리, ‘참고말지’ 하는 심리작용, 소원수리함 열쇠를 행정부관이나 행정요원이 관리·분석하는 사례발생과 같은 지휘관의 관심 미흡과 전·의경 들의 신뢰부족 등으로 제도적인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 인권교육 소홀 및 교육시스템 구축 미흡

가) 현행 전·의경 정훈교육은 정신교육 위주로 지휘관 등이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군대와 같은 전문 정훈관이 없이 부대 사고예방 등 일방적인 지

시·교양에 머무르는 수준으로서, 경찰청 본청에서도 전·의경 정훈교육 전문부서 및 전문가 없이 경비과에서 교육총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또한, 내부 교육요원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인데 지휘관(정훈관 겸임) 중심의 사고예방 및 경찰정신 함양 위주의 소극적 교육이 비정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부대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및 상황출동으로 정기적 교육계획에 의한 정훈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경의 인권교육은 부대지휘중점 및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구 분	없 다	년1회	반기별1회	분기별1회	월별1회	합 계
빈 도	233	104	92	169	623	1221
비율(%)	19.1	8.5	7.5	13.8	51.0	100

* 자료 :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 다) 앞에서 살펴본 직권조사(05직인00) 결과, 이물질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며 알몸에 안티프라민 등을 바르는 폐습적인 알몸신고식 사건에 대하여 행위당사자 등은 수치심이나 인권의식을 깊이있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전·의경에 대한 인권교육은 대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임은 물론 군복무 시 함양된 인권의식은 사회에서 인권감수성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부대로서도 각종 사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구타 및 자살행위 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적 대안이기에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7) 전·의경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

- 가) 군인이 실전없이 훈련상황인 것에 비하면 전·의경은 돌발적이고 급박한 실제상황이 발생하여 항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직면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2005년도의 경우 연인원 45,248명의 전·의경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전·의경 인원이 38,408명임을 고려하면 중복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부상정도가 심하여 공·사상 심사결과를 받은 전·의경이 2003년 1,325명, 2004년 1,305명, 2005년 1,490명인 통계를 보더라도 사회적 성숙도와 비교할 때 부상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전·의경 부상자중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원의 경우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권장하지만 이는 서울과 근거리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전라도·경상도 및 도서벽지 원거리에 있는 부대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2005년도의 연인원 부상자 45,248명중 26%가 경찰병원의 진료를 받았을 뿐 74%가 개인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특히 전북청(4%), 전남청(6%), 경남청(4%), 울산청(4%)의 경우 경찰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전·의경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군대의 경우 전국 각지에 상당수의 군전문병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부분 대대급에 의무실을 설치, 복무군의관과 일정 의무병을 배치하여 부상자 치료·질병 예방활동·산하부대 순회진료까지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70조에서 전·의경 부대내에 '공중보건'을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용하는 부대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같은 규칙 제168조에 따라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서울 기동단 4개부대에만 의무실을 두고 서울시 파견 간호사가 1명 근무)한 실정이다.
- 라) 특히, 전·의경의 경우 과격한 시위 등으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의 발생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부대 복귀후 적시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 못하여 경찰병원 정신과 치료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등 전·의경들의 전체적인 건강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연도별 전·의경 정신병원 진료자 통계를 보더라도 2003년 143명, 2004년 187명, 2005년 190명, 2006.8월현재 128명으로서 통계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집회시위로 인한 경찰관 및 전·의경 부상자 발생현황〉

연 도 별	합 계(명)	경 찰 관	전 · 의 경
2001년	673	77	596
2002년	287	32	255
2003년	749	68	681
2004년	621	35	586
2005년	893	66	827
2006. 9월	692	41	651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마) 전·의경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월 5,400원으로서 실질적인 치료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각 지방경찰청 의료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많은 전·의경들이 상당 부분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전·의경 부모들 역시 사비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부대에서 의료비를 정산해 준다고 하더라도 치료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2005년도 전·의경 의료비 예산집행현황〉

항 목 별	예 산 액(백만원)	집 행 액
계	1,962	4,684
의 료 비	1,148	1,148
응급치료비	182	182
건강보험료	510	3,233
신체검사비	121	121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바) 또한, 전·의경 대원의 60%이상이 시위·진압현장에 출동하고, 그 외 치안 보조를 담당하는 대원들도 범죄현장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부상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위출동 등 부상자인 공상자 “위로금”을 지급하고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있는데 부상정도에 따라 2만원 내지 10만원의 국비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 정도가 4주이상인 경우 10만원 내지 50만원의 공상위로금을 지급).

(전·의경 부상자 발생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순 직	공 상				사 상			
			계	시위진압	일반근무	질환	계	부상	질환	기타
2001	1,938	5	1,216	227	825	164	717	225	449	43
2002	1,564	12	923	138	639	146	629	183	426	20
2003	1,325	11	1,007	240	685	82	307	70	231	6
2004	1,305	6	1,048	205	705	138	251	64	160	27
2005	1,490	8	1,232	416	637	179	250	68	176	6
2006.6	689	2	531	103	286	142	156	37	112	7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8) 노후화되고 열악한 전·의경 생활시설의 문제

가) 전·의경 시설물중 노후된 시설로서, 우천시 비가 새고,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취침 및 생활시설로서는 부적당한 시설이 현재 120여개 시설로서 당장 신축 및 개축 등이 필요하나, 정부 예산배정의 문제로 매년 2개소 정도만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경 내무반 시설현황)

구 분	개 소 (중대수)	2층침상	1층침상	침대시설	돌 등
계	260	207	48	1	4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나) 내무반의 공간도 대부분 2층침상 형태로서, 1개소대(약 35명)가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비교적 여건이 좋은 부대는 1개소대가 2개 내무반을 사용하고 있으며, 1인당 사용면적도 평균 0.73평으로서 수용시설 공간보다 넓다고 볼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다) 동 내무반 시설은, 생활공간이기 보다는 수용형 공간으로서 신세대 대원

들의 사생활 보장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열악한 시설환경은 전·의경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구 분	전·의경 의 인권의식 미흡	열악한 근무환경	지휘관 및 기간요원의 관심부족	당직근무자 근무소홀	기 타	합 계
빈 도	177	114	98	8	45	442
비율(%)	40.0	25.8	22.1	1.8	10.2	100%

* 자료 :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 라) 더구나 전·의경의 경우 출동을 나가 버스안에서 밤샘대기할 경우 2~3일을 좁은 공간에서 앉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빈 학교교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으로, 부대내로 들어와서도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불편한 침상 사용으로 신세대 대원들의 부대 적응을 지연시키는 물론 정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 마) 앞에서 살펴본 진정사건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지휘관 및 기간요원 들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2층 침상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군기교육, 암기강요 등 사적제재는 물론 성적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비좁은 공간의 2층침상으로 인해 먼지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바) 문제는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이 주거목적으로 건축된 시설이기 보다는 사무실 형태의 시설에 2층 침상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수용시설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시설형태이다.
- 사) 현재 전국의 총 260개 중대의 내무반 시설중 207(80%)중대가 2층침상을 사용하고 있고, 48개대만이 1층 침상을 사용(침대형 1개소, 기타 온돌 등 4개소)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의 경우 내무생활을 통제형에서 자율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바, 기존의 침상형에서 침대와 탁자 등을 갖춘 공간으로 바꾸고 생활공간도 0.8평에서 2.0평으로 확대 추진되는 등 현재 20%대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아) 따라서, 전·의경 들에 대한 관심과 의지부족, 정부예산 수반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전·의경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예산 우선 배정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인 생활시설 개선으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9) 전·의경 식생활 향상체계 부족의 문제

가)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전·의경 부대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조리사 및 영영사 없이 운영(전국적으로 서울 중부경찰서 방법순찰대외 5개 부대만 영양사 배치)하고 있고, 기동대와 같은 일정규모의 부대에서도 영양사 및 조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채 일용직 1~2인을 고용하여 취사대원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대는 일용직도 없이 취사대원들만을 배치, 전·의경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영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의경 부대의 경우 영양사 등이 배치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 초래우려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 위협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2006년도의 경우 4개부대에서 식중독이 발생, 총 75명이 발병 치료)

다) 또한,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3식)는 4,415원으로서, 일반인 한끼 식대도 안되는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규모가 작은 부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부실한 식단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도별 1일급식비 단가가 2004년 4,215원, 2005년 4,307원, 2006년4,415원으로서 매년 증액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를 보여 왔고, 2006년도 기준으로 군대가 4,805원, 공익요원(병무정책정단가)이 4,000원(1식:중식)임과 비교하더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 더군다나, 군대의 경우 주식 및 가공식품은 방위사업청에서, 농축산물은 각 군수지사별 일괄단계약을 통하여 구매 함으로서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의경 의 경우 이러한 구매시스템 없이 단위부대별 구매를 함으로써 식사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0) 불합리한 전·의경 교통체계 및 교통비 비현실성

- 가) 국방부 소속 군인의 경우 휴가 및 외박시에는 TMO 군용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전환복무된 전·의경은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나) 또한, 지방 소재 전·의경이 서울 경찰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전·의경 자신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보호대원이 동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 다) 제주도 해양경비대 및 제주도 출신 육지 근무 전·의경의 경우 휴가시 실제 항공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로 선박비가 지급됨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의경의 경우 단기휴가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전·의경 교통비 예산은 비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11) 구타·가혹행위자 법적책임 미흡 등 형식적 처리 문제

- 가) 전·의경 부대내 구타사고 등 인권침해사건 발생시 그동안의 관행 및 인식, 사건의 확산 및 지휘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형사입건보다도 자체 감찰조사를 통하여 징계조치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최근 3년간 평균 형사입건을 4%임)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비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평균 처리비율
구타 및 가혹행위 건수		336	270	202	269(건수)
형사입건	구 속	3	3	0	2
	불구속	14	5	8	9
징 계	중징계	2	0	0	0.7
	영 장	281	224	166	224
	근 신	38	15	26	26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에 대한 분석

- 나) 일반 시민의 경우 폭행 및 가혹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처분이 당연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복무기간중에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죄혐의자가 아닌 효율적인 시위진압 등 업무수행과 기강확립을 위해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와같은 인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받았을 때의 심정이 자살, 복무이탈, 보복구타 등 새로운 사고를 유발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아래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제2의 새로운 인권침해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심정)

구 분	가해자를 폭행하고 싶음	가해자를 죽이고 싶음	복무이탈 하고 싶음	자살/자해를 하고싶음	기 타	합 계
빈 도	178	40	37	12	63	330
비율(%)	53.9	12.1	11.2	3.6	19.1	100%

* 자료 :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12)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획일적 지휘책임 부과 등의 문제

- 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에는 전·의경 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발생 원인에 따른 지휘책임 보다는 행위자의 처분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 나) 이에 따라 집단적 지휘감독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사고를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발생시 획일적 적용과 전시성 문책으로 인해 지휘관 및 기간요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지휘부담 및 보직기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다) 또한,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자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처분시 지휘감독자인 기간요원 뿐만 아니라 전·의경 행위자에 대한 처벌결정 판단까지도 완화 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13) 전·의경 징계영창제도의 문제점

- 가) 영창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의경 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구금장(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정하여 하고 있는데, 연도별 전·의경 징계입창자수는 2003년 281명, 2004년 244명, 2005년 166명이다.
- 나) 영창제도는 징계에 속하는 것이나 형사상의 제재인 구류처분과 유사한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징계에 의하여 실현(행정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창의 징계권자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이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다
- 다) 최근 국회에서 군의 영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이 제출(2006. 6. 7)되어 있으며, 사법개혁위원회도 군사법개혁분야에서 군영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라) 영창제도에 대하여 존치론적 입장에서는 기강확립과 지휘권의 보장이라는 징계벌의 목적달성의 관점에서 영창제도가 병에 대한 유일한 실효적 수단 이므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마) 그러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관의 결정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영창제도는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 B규약에서 규정한 자의적 구금의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법관의 결정 절차를 요구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군사법원 판사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 바) 또한 영창제도는 경찰지휘관의 자의적인 처분에 따라 부대마다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가 달라지는 등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여 무기강 확립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징계처분을 받은 대원이 구타 및 가혹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적 효과를 갖게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 사) 앞에서 기술한 직권조사(06직인00)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구타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영창 15일 처분과 서울교육대 입교조치가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이루어 진 점을 보더라도 대부분 전·의경 부대에서는 영창과는 별개로 기율교육대에 보내어 별도의 기율교육을 실시(형벌성격이 강함)하고 있고, 형사입건 될 경우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 지며, 영창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추가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실정으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의 소지도 있다.

아)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되어야 할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범죄행위가 지휘관에 의해 형벌이 아닌 징계에 해당하는 영창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점, 영창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더라도 실효성있는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점, 전·의경 들의 징계항고권이 조직의 특성상 현실적인 행사가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실질적인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는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대신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영창 본래의 목적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효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대체제도로 보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4) 전·의경 인력관리 전문성 부족과 경비경찰관 사기저하

가) 경찰공무원임용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순경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관은 최하급 경찰기관에 보직하되, 수사 및 정보업무를 제외한 외근부서에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근부서는 전투경찰대와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 이므로, 결국 전·의경에 대한 관리기술이나 경험없는 신입순경이나 경찰관 보직과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배치되는 경우이거나 승진준비 등 자기계발을 위해 자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전의경 기동대 지휘관 평균 근무기간(2006.10월현재)〉

구 분		경찰 평균 총재직기간	전·의경 관리 평균기간
서울경찰청 소속	중대장	21년11월	3년 5월
	소대장	16년11월	2년10월
	부 관	12년 4월	2년 4월
부산경찰청 소속	중대장	14년 3월	1년 2월
	소대장	5년 2월	1년 3월
	부 관	7년 5월	9월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 나) 또한, 경비경찰관의 경우 타 부서에 비하여 전·의경과 함께 과다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근무여건은 열악한 반면, 인사·보수적으로 특별한 수혜없이 징계책임 등만 강화되고 적극적 대원관리만 강요받는 것은 전·의경 지휘관과 기간요원의 사기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다) 군대의 경우 신임 장교 및 하사관 시절부터 거의 대부분을 사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병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므로써, 경력이 쌓여 갈수록 상대적인 인력관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의경 관련 기간요원의 경우 경비 및 전·의경 관리업무를 보직경로상 불가피한 보직과정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라) 문제는 위와 같은 문제가 결국 전·의경 들에게 전가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기간요원들로 인하여 앞에서 살펴본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결과와 같이 시위진압 훈련, 암기사항 점검, 군기교육 등 교육훈련, 내무생활 관리 등이 사실상 고참대원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공적제재보다는 사적제재가 성행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새로운 인권침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구 분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	열악한 근무환경	지휘관 및 기간요원의 관심부족	당직근무자 근무소홀	기 타	합 계
빈 도	177	114	98	8	45	442
비 율(%)	40.0	25.8	22.1	1.8	10.2	100%

* 자료 :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15) 전·의경 지휘권 보장 및 통제 중심의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령의 문제

가) 현 전·의경 복무와 관련된 법규는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기동대관리규칙, 방범순찰대관리규칙 등이 있으나, 이들 내용에 인사 및 복무규율위반자 조치 등의 처리절차 등 부대 지휘권 보장 및 기강확립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의경 상호간 혹은 하급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 전·의경 의 인권침해 사안은 물론, 복무기본권 보장 등 국가 및 부대의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지금까지 전·의경 등 부대내 인권보장이 부족한 근본적 이유는, 복무군인 등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주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정신과 복무규율에 따라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서만 보아 온 인식 때문이므로, 이들의 인권보장 및 기본권 제고를 위해서는 의무복무자도 가능한 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법령을 통해 분명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국방부의 경우 장병 인권과 군조직의 특수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복무의무와 개인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후 입법절차 중으로서, 이와같이 경찰청에서도 전·의경들이 복무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상황에 따른 인권보호방안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면서 기본적 생활권에 대한 권익향상 등 제도적 보장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본다.

16) 시위진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전·의경의 인권문제

가) 국가적·사회적 불만요인의 표출방법으로 집회시위가 양산되고, 이러한 시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가되는 폐해는 결국 군복무자인 전·의경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종 발생하는 집회시위시 상호충돌은 성숙한 사회적 역량과 수준에 맞지 않게 유희충돌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상호간의 인권문제로서 이 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위진압으로 인한 전·의경 공상처리 부상자 발생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공상자수	227명	138명	240명	205명	416명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나) 2005년도 전·의경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복무중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집회시위 등 진압업무가 힘들기 때문' 이라고 답한 것만 보더라도, 이와같은 과도한 출동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전·의경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귀결되어 새로운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 앞에서 살펴본 진정사건 조사결과, 신임 전·의경 들에게는 폭력이 수반된 집회시위현장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부담으로 작용, 복무 부적응자를 양산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 정부 역시 과격시위 및 과잉집압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폭력 시위자 엄정한 처벌, 과잉진압자에 대한 책임강구 등을 논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오늘의 상황에 이르면서 그 폐해는 전·의경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부차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정 현안과제로 인식하여 조속한 정책적 대안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결 론

따라서 위와같은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기획예산처장관·국방부장관에게 위와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제 2 장]

구금시설 관련

1. 생명권 침해

1 2007.12.14자 06진인1162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구급·수용시설 내에서 가스총 등 보안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하여 진정인을 제압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포탄 발사 시 분출된 화염으로 진정인이 피해를 입은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도 시행되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보안장비의 오남용의 문제와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권고함

【참조조문】 「행형법」 제15조,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 「계호근무준칙」 제37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도소 김○○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 장관

- 【주 문】
1.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가스총 등 보안장비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5. 12. 30.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얼굴 앞에서 가스총을 발사하여 화상을 입게 하였는바,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과 국가배상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5. 10. 28. 소란 및 교도관 폭행으로 금지처분을 받고, 충동조절 장애 및 정신분열(의증)의 진단결과에 따라 징벌 일시정지로 7하19실에 독거수용 중이었다.

2) 2005. 12. 30. 피진정인은 보안관리과 수용관리 전반에 대한 야간감독 당직 근무명을 받고 근무하던 중, 03:30경 진정인이 담당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로 거실출입문을 걷어차고 빗자루로 거실 내 식수통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담당근무자의 보고를 받고 기동순찰 담당자와 함께 1차 출동하여 진정인을 진정시켰고, 같은 날 04:05경 진정인이 “조용히 하겠다”고 하여 철수하였다.

3) 2005. 12. 30. 04:25경 진정인이 또 다시 플라스틱 식수통을 쳐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화장실에 물을 세계 틀어 놓고 화장실 문을 큰소리가 나도록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가 “다른 수용자의 수면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피진정인이 담당근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기동순찰 담당자와 함께 2차 출동하자, 진정인이 “조용히 하겠다. 믿어달라”는 다짐을 하여 같은 날 05:00경 철수하였다.

4) 2005. 12. 30. 05:15경 진정인이 담당근무자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씹할 놈들아, 나 데려간 놈들 다 보내”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가 조용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씹할 놈아, 상관하지 마라”며 식수통과 식기 등을 거실 내 화장실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진정인이 담당근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기동순찰 담당자 및 기동타격대원과 함께 3차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고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나가서 보자.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하고 빗자루로 거실 시찰구를 통해 피진정인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화장실로부터 달려와 거실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진정인은 재차 “앉아. 진정하고 조용히 해라”고 설득하였고, 소란난동을 계속할 시에는 실력저지하고 계구를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5) 진정인이 더욱 흥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휴대용 전기면도기(10cm×5cm×2cm)를 던지는 등 소란 행위를 계속하자, 피진정인은

수용질서를 위해서도 더 이상 소란난동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무기사용을 경고한 후 가스총을 꺼내어 거실출입문 시찰구 상단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다. 참고인

1) 교위 강○○

가) 2005. 12. 30. 기동순찰대 업무담당자로서 당시 피진정인, 사동근무자, 경비교도대 2명과 함께 현장에 있었으며, 진정인이 거실출입문을 차는 등 흥분상태라서 참고인 등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참고인은 피진정인의 뒤쪽(거실 오른쪽 측면 3미터 지점)에서 피진정인의 설득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2005. 12. 30. 05:25경 진정인이 거실 시찰구를 향해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던져 부서졌고 그 파편이 거실 통로쪽으로 튀어 나왔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피해 별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이 2~3분 정도 “자리에 앉아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스총을 발사하겠다”라고 경고한 후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하였다.

다) 공포탄 발사 후 진정인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보건의료과에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는바, 참고인 등은 보호실 수용 전에 진정인을 보건의료과에 동행하지 않았다.

2) 교위 임○○

가) 2005. 12. 30. ○○교도소 7하 야간 사동근무자로서, 같은 날 05:25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전 경고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거실 시찰구를 향해 던져 파편이 거실통로 쪽으로 튀어나왔다. 타 수용자의 수면 방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진정인의 행동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으나, 진정인이 무술을 하는 자이고 직원이 거실로 들어갈 경우 다칠 가능성이 존재하여 가스총 사용 외의 방법은 없었다.

나) 가스총 발사 당시 피진정인은 거실문 뒤쪽 벽면에 위치하고 진정인은 거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였고, 공포탄 발사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거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진정한인은 저항하지 않고 나왔으며, 이후 거실 복도에서 진정한인에게 금속수갑을 채웠다.

3. 관련법령

가. 「행형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5호]

제15조 (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③생략

나. 「보안장비관리규정」 [개정 2002.5.17 법무부예규 제623호]

제40조(가스발사장비 사용·관리) ① 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가스발사장비의 사용 및 관리요령은 별표 4의 가스발사장비사용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다. 「계호근무준칙」 [개정 2005.7.11 법무부훈령 제520호]

제37조(보안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가스총, 가스분사기, 최류탄, 교도봉 및 전기교도봉 등 보안장비(이하에서는 “가스총 등 보안장비”라고 한다) 사용시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용 전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생략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건강진단부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 10. 14. ○○교도소에 이입되어 수용 중 12회에 걸쳐 직원 폭행, 기물파손, 소란 등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외부진료 결과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질환 의증으로 진단되어 2006. 1. 4. 피진정기관은 치료감호소에 진정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은 같은 해 5. 4.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 이입되어 수용 중 2007. 11. 2. 출소하였다.

나. 2005. 12. 30. 03:30경부터 05:25경까지 진정인이 거실출입문을 발로 차고 휴대용 전기면도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은 3~4차례 진정인을 제지, 설득하고 무기사용을 경고한 후 거실문 뒤쪽 벽면에서 가스총(DSGP-777) 공포탄을 발사하여 제압하였고,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다. 2005. 12. 30. 06:45 진정인이 눈을 뜨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보건의료과에 가서 눈 아래 부위 등 드레싱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0:25 ○○시 ○○동 소재의 '○○안과'에 가서 화상 치료를 받고 환소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가스총 사용요령,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2005. 5. 17. 위 교육을 이수한바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행형법」 제15조제1항,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소란행위를 하는 진정인에게 수차례 안정을 취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던지는 등 피진정인 등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하여 진정인을 제압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포탄 발사 시 분출된 화염으로 진정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보건의료과 진료 후 외부진료 등을 실시하여 적절히 치료하였는바 의료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안장비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1) 가스총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보안장비로서 교도관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등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일정 거리 이내에서 얼굴 등 특정 부위를 향해 발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사용 후 상급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2) 현행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는 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및 관리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총은 총기에 준하여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내용이 전혀 없으며, 또한 가스분사기에 관하여도 “안면부를 향해 발사한다”는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내용 외에 사용제한 등 안전을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계호근무준칙」 제37조에서 유의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안장비 관련 일반규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용요령으로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

3) 참고로 현행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2조 등은 가스총 등의 사용제한, 안전교육기준, 사용기록의 보관,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경찰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 2006.8.22 훈령 제489호] 제101조 등은 보안장비 사용의 안전수칙, 사용

결과 보고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4) 구급·교정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보안장비의 오남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김○○의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되, 가스총 등 보안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정재근

2 2008.7.15자 08진인913 결정 [사망수용자 대응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구)]

구치소내 발생한 피해자의 자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생명권이 침해당했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교위 000는 수용자의 운동, 목욕, 종교집회 시 거실에 남아 있는 잔류 수용자를 반드시 한 곳에 수용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00구치소는 본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위 000를 동태시찰 불철저, 성실근무 위반 등으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해 견책 처분했으므로 교위 000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2] 그러나 자식을 잃은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한 바, 진정인 개인으로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함

[진 정 인] 000

- [피진정인]** 1. 00구치소장
2. 00구치소 교위 000

[피 해 자] 000

[주 문]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000은 00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08. 3. 19. 사망했다. 00구치소에서는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사망이 00구치소의 수용자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

1) 피해자 ○○○은 2008. 3. 7.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입소한 자로 2008. 3. 18. 13:08경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운동을 나간 후 혼자 거실에 있다가 거실내 천정에 설치된 빨래줄의 한 쪽을 풀어 목에 매 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13:38경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같은 거실 수용자 ○○○이 발견해 즉시 사동 담당자에게 신고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을 받은 후 공중보건의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2) 피해자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심장은 박동하였으나 자력 호흡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실시하며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08. 3. 19. 05:00경에 사망했다.

3) 2008. 3. 18. 13:08경 실외운동을 하기 위해 피해자 ○○○을 제외한 모든 수용자가 출실하였고 13:38경 같은 거실 수용자 ○○○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9동하14실에는 피해자가 혼자 있었던 점이 담당근무자 ○○○ 교위, 사동청소부 ○○○의 진술, 복도 CCTV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4) 2008. 3.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 부검 결과 “사체 전신에서 의사(hanging, 縊死)에 해당하는 소견 외에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이나 독극물 등이 없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5)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격자 ○○○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근무자보고서, CCTV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3. 관련법령

생략

4. 인정사실

가. 피해자의 사망사고 발생 및 조치경과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용자 ○○○, ○○○, ○○○, ○○○ 등의 진술서, 담당 근무자 교위 ○○○ 근무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CCTV 녹화기록,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및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구치소 9동하14실에 수용 중이던 2008. 3. 18. 13:00경 실외운동 시간에 담당 근무자 교위 ○○○에게 배가 아파 운동을 나갈 수 없다며 혼자 거실에 남은 뒤 거실 천정에 설치된 빨래줄의 한 쪽을 풀어 목을 땀다. 이를 13:38경 운동을 마치고 돌아 온 같은 거실 수용자 ○○○ 등이 발견해 즉시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구호조치를 한 후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다.

2) 피해자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던 2008. 3. 19. 05:00경 사망했다.

3)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은 2008. 3. 18. 13:00경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에 허리가 아파 피해자와 같이 거실에 있다가 자신의 병사 입병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거실 밖에서 담당 근무자와 상담을 하다 운동을 마친 수용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상담을 종료하고 거실로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빨래줄로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4) 2008. 3.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의 ○○○)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사체 전신에서 의사(목매 죽음)에 해당하는 소견 외에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이나 독극물 등이 없다.”는 소견이었다.

5) ○○○○○○검찰청은 피해자 사망 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2008. 4. 18. “타살 혐의 없어 보이므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관련

1) ○○구치소는 사동 현장 근무자에게 수용자 운동, 목욕, 종교집회 시 거실에 홀로 남은 수용자는 반드시 한 곳에 수용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반복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수용돼 있던 9사동 담당근무자 교위 ○○○는 운동 중 거실에 수용자가 혼자 있을 때 한 거실로 모아야 한다고 교육·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실제 이행하기는 힘들며, 사고 당시에는 장애거실에 수용돼 있는 척추 장애자(○○○) 및 지체장애자(○○○)의 계호업무와 종교집회 연출자 명단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수용된 거실을 자주 시찰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3) ○○구치소는 교위 ○○○를 동태시찰 불철저, 성실근무 위반 등으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해 2008. 4. 25. 견책 처분했다.

다. 진정한 ○○○(19○○년생, 만 ○○세)의 생활 수준 등 관련

1) 진정한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뇌병변성 장애 4급으로 수족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는 등 혼자서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2) 진정한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인근의 ‘○○○○○복지관’에서 주 2회 가사 도우미가 방문해 청소, 음식 등을 지원하고 있는 등 외부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교위 ○○○는 수용자의 운동, 목욕, 종교집회 시 거실에 남아 있는 잔류 수용자를 반드시 한 곳에 수용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치소는 본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위 ○○○를 동태시찰 불철저, 성실근무 위반 등으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해 견책 처분했으므로 교위 ○○○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일한 혈육인 자식을 잃은 진정한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한 바, 진정한 개인으로서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진정한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정재근

3 2008.12.8자 08진인3437 결정 [총수염(일명 맹장염) 환자 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야간 당직교감인 피진정인은 야간에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휴일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야간 당직교감인 피진정인은 야간에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
- [2] 의사가 아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증세가 총수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피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외부병원 이송을 불허하여 진정인을 총수염 발생시점으로부터 15시간 이상 적절한 의료적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진정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행형법」 제29조,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601호) 제3조, 제97조, 제98조, 「긴급 교정사고 발생시 자동조치 지침」(법무부예규 제595호) 제2조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교도소 야간당직교감 김○○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 1.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 2. 휴일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2008. 8. 17.(일) 05:00부터 심한 복통으로 보건의료과에 갔으나 일요일이라 의무관이 없어 숙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처방해 준 소화제를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 같은 날 12:30경 다시 보건의료과에서 진통제를 맞았으나 역시 효과가 없어, 같은 날 18:30경에 다시 보건의료과에 갔더니 간호조무사가 외부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진정인 김○○는 진정인에게 "한번 참아 봐라.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탈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야간에는 수용자를 밖에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진정인이 외부병원에 가는 것을 불허했다.

나. 2008. 8. 18.(월) 보건의료과장이 출근하여 진정인의 몸 상태를 보고서는 빨리 외부병원에 가라고 하여 그날 외부병원에서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다. 전날 간호조무사가 충수염을 앓고 있는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인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진정인은 밤새 고통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교도소 보안관리과 당직교감 김○○

1) 피진정인은 휴일 및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당직교감이 다. 진정인이 2008. 8. 17. 19:00경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보건의료과에 확인한 결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가 진정인의 혈압과 체온이 정상이지만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니 외부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충수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고, 교도관 경험상 피병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당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도주한 일이 있었기에 교정사고(도주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진정인의 외부병원 검진을 불허하였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부병원 검진을 불허하는 과정에 진정인이 고통받고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본 진정사건을 조사한 직후에 진정인과 2차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이번 일을 계기로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용자의 고통과 이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1) ○○○교도소 수용자 인○○·김○○

참고인들은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자들로 진정인이 2008. 8. 16.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으며, 진정인은 같은 달 17.에는 보건의료과에 2-3번 간 것으로 기억되고, 그날 18:30경 보건의료과에 다녀 온 후 밤새 많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2) ○○○교도소 보건의료과 숙직직원 간호조무사 곽○○

2008. 8. 17. 진정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보건의료과에 2-3회 정도 다녀갔다. 진정인이 당일 18:30경 다시 보건의료과에 왔을 때 증세를 보아 충수염이 의심되기에 당직계장인 피진정인에게 외부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했다.

다음날인 2008. 8. 18.에 보건의료과장에게 진정인의 제 증세에 대해 보고하자, 보건의료과장이 당일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충수염 수술을 받게 했으며, 진정인은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9.에 퇴원했다.

3) ○○○교도소 보건의료과 의무관 최○○

당시 보건의료과에서 숙직인 곽○○ 주임이 당직계장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충수염이 의심되므로 외부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자고 건의한 것은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으로 적절한 업무수행이라 사료된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29조(병원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2장 구급시설 관련

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생략

나.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① 생략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 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601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상관"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있어 자기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직급에 있는 상위 계급자를 말한다.

5. "당직간부"라 함은 교도소등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정복 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사무근무자의 정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다음날 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97조(전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 생략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라 할지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찰·진료하여야 한다.

제98조(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라. 「긴급 교정사고 발생시 자동조치 지침」(법무부예규 제595호)

제2조(긴급교정사고의 범위) 이 지침에서 긴급교정사고라 함은 도주, 자살기도, 화재, 집단난동, 응급환자 발생, 불순분자의 침투 등의 교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진정서·피진정인 제출의 답변서와 확인서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8. 8. 17. 05:00부터 진정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교도소 보건의료과에 2-3회 왔던 사실 및 당시 ○○○교도소에는 외부병원에 환자가 1명 나가 있어 계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08. 8. 17. 19:00경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 곽○○이 충수염 증세를 보이는 진정인에 대해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야간 당직계장인 피진정인에게 건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제 증세가 충수염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궤병일 수도 있고, 당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병원 진료중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여 진정인도 도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외부병원 진료를 불허한 사실과, 외부 병원 치료를 불허한 이후 진정인이 익일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병원에 이송되기까지 약 15시간을 아무런 의료적 조치없이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보건의료과장은 2008. 8. 18. 10:30경 진정인을 ○○성모병원에 이송하였고, 진정인은 당일 13:00경 충수염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 19.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행형법」 제29조(병원이송)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2항은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 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야간 당직교감인 피진정인은 야간에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2008. 8. 17. 05:00경부터 심한 복통 증세를 보여 보건의료과에 2~3회에 걸쳐 방문하였지만 휴일이라 보건의료과장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당일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 곽○○이 진

제2장 구급시설 관련

정인의 제 증세로 보아 충수염으로 판단하고 19:00경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외부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건의했지만 의사가 아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증세가 충수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피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외부병원 이송을 불허한 점, 피진정인은 위 간호조무사 광○○도 의사가 아니라서 충수염이라는 판단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 보건의료과장 등의 의료진이 휴무인 당시 상황에서 더욱더 외부병원 이송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당시 보건의료과 속직 광○○이 당직계장에게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내보내 검진을 받아보자고 한 행위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영등포교도소 의무관이 진술하고 있는 점,

다. ○○대학교병원 제공 자료에 의하면, 충수염이 천공(구멍이 뚫림)되지 않았을 경우 5~10%, 천공된 경우 15~65%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충수염이 시작된 지 24시간 내에 20%, 48시간 내에 70%가 천공이 되므로 충수염은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충수염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충수염 발병시점으로부터 15시간 이상 적절한 의료적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진정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김양원

4 2007. 3. 12자 06진인1449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교)]

교정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폭행으로부터 진정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진정인을 위협 상황에 방치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행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수용자의 폭행, 소요 등을 예방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장애나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바,
- [2] 평소 가해자는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다툼이 잦고 집착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가해행위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과의 언쟁에 이어 취침중인 진정인의 목을 조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해 행위를 재연할 개연성이 있었고, 가해 당시 진정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취침중이어서 가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항거하거나 구호를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가해자가 목을 조인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점, 또 다른 가해행위를 예상할 수도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진정인이 불안과 공포감에 노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없이 그대로 취침하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형자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계호근무준칙」 및 「수용자 폭행사건 예방지침」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3] 결국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위협 상황에 방치하게 하여 진정인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행형법」 제1조의3, 「계호근무준칙」(법무부 훈령 제520호)제9조, 「수용자폭행사건예방지침」(2002. 5. 9. 예규보일 제607호)제15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도소 보안관리과 교도 김○○

- [주 문]**
- 1.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교도소장에게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제2장 구금시설 관련

1. 진정요지

가. 2006.6.23. 정신과 외부의사는 진료시 환자에 대한 상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약처방만을 하고 있다.

나. 약물복용시 알레르기로 인해 가족이 넣어주는 약을 통해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 약 등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6.7.6. 22:40분경 동료수용자가 정신과 저녁 약을 먹어 약에 취해 잠을 자던 진정인의 배에 올라 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목을 조이는 상황을 보고도 분리수용도 하지 않고 비키라는 말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진정인은 밤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7.6. 22:40경 사동내에서 '에이, 이년' 등의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동료 수용자인 가해자 유○○이 진정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어, 즉시 가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 후 가해자, 진정인,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무슨 일 이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2) 위의 상황을 보안관리과에 보고한 후 동정상황을 관찰하고 있으니 보안관리과 직원이 도착하여 흥분한 가해자를 설득하여 진정시킨 뒤 잠자리에 들게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도 특별한 불만 및 사후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서 동정시찰만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3. 관련법령

가.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준칙」(법무부 훈령 제520호)

제9조(보호실 수용) ①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거나 자살·자해·폭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소장의 명령없이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다. 「수용자폭행사건예방지침」(2002. 5. 9. 예규보일 제607호)

제15조(규율위반자 처리) ① 수용자간 수용거실, 작업장 등에서 싸움 등의 사고발생시 사전 언쟁단계에서부터 상호 신속히 분리시키는 등 초기진압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6.11.30. 가.항 및 나.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동태상황부에 의하면, 평소 가해자는 사사건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잦았으며, 집착이 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6.7.6. 08:00경 이불문제로 욕설이 오가며 말싸움 끝에 진정인이 가해자에게 ‘저러니 사람 죽이고 왔지’라고 한 말에 감정이 상한 가해자가 같은 날 22:40경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진정인의 목을 조였다.

라. 피진정인은 이를 발견하여 제지하고 다음날 아침에 담당 계장이 출근한 후 가해자를 분리 수용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부분은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행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수용자의 폭행, 소요 등을 예방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장애나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바, 2006.7.6. 22:40경 가해자의 진정인에 대한 가해행위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을 위협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 피진정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소 가해자는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다툼이 잦고 집착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가해행위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과의 언쟁에 이어 취침중인 진정인의 목을 조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해행위를 재연할 개연성이 있었고, 위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담당 교정공무원의 특별한 관찰과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가해자가 2006.7.6. 22:40 이후 진정인에 대해 다시 위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진정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취침중이어서 가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항거하거나 구호를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가해자가 목을 조인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점, 또 다른 가해행위를 예상할 수도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진정인이 불안과 공포감에 노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없이 그대로 취침하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형자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계호근무준칙」 및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위협 상황에 방치하게 하여 진정인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정재근

5 2008.11.24자 08진인1762 결정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교)]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가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교도소장에게 지도감독 강화와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는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약을 정기복용중인 피해자에게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하여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행형법」 제26조, 제29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참고자료: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간질환 길잡이(대한간학회, 2004, 10.)」

【진 정 인】 김○○,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1. ○○교도소 보건의료과장
2. ○○교도소 공중보건의사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하여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김하광)는 2007. 10. 2.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다가 2008. 3. 14. ○○교도소로 이송된 뒤, 같은 해 4. 25. 지병인 B형간염이 악화되어 ○○의료원에 입원을 하였다.

피해자는 입원하기 20일 전부터는 밥도 못 먹고 구토 증세가 심하여 자신의 개인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외부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교도소측에 수십번 요청했음에도 위 교도소측은 받아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황달이 와서 쓰러지자 그때서야 검찰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을 거쳐 서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5. 10. 간부전 증세로 사망하였다.

○○교도소측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사해 주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 보건의료과장

가) 피해자는 2008. 4. 13. 감기, 몸살, 오한을 호소해 투약했으며, 같은 해 4. 15.부터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으며 오한 증상을 호소해 수액을 투여하는 등 매일 순회진료를 한 후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투약내용을 일자별로 보면, 같은 해 4. 13. 감기, 몸살, 오한으로 이브프로펜(소염, 진통, 해열), 비졸본(가래, 기관지염), 시메티딘(급·만성 위염,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을 처방하였고, 같은 해 4. 15. 하트만(복합전해질 수액), 같은 해 4. 16. 아세트아미노펜(진통, 해열제), 암포젤엠(제산제), 맥페란정(소화기통증), 같은 해 4. 18. 하트만, 같은 해 4. 19. 맥페란 주사(소화기 이상), 맥페란, 시메티딘, 산화마그네슘(제산제 및 변비), 돔페리돈(위염등), 하트만, 같은 해 4. 20. 맥페란 주사, 같은 해 4. 21. 알드린현탁액(위·십이지장, 위산과다), 맥페란, 시메티딘, 노루모, 하트만, 같은 해 4. 23. 하트만, 삐콤(복합영양제), 같은 해 4. 24. 하트만, 삐콤, 맥페란, 시메티딘, 알드린, 같은 해 4. 25. 하트만, 삐콤을 처방하였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다) 외부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4. 21. 토혈,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자비부담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 외부병원 처방을 허락했으며, 같은 해 4. 23. ○○의료원 내과에 이송해 복부X-ray,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의뢰결과 '음식물을 구토할 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간수치 상승으로 생길 수 있으며 익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처방을 하겠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08. 3. 24. 서울○○병원에서 간 전문의에게서 처방받은 제픽스(항바이러스제) 84일 분을 차입하여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상이나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진료 및 치료를 하였다.

마) 2008. 4. 15. 피해자가 저혈당이 온 것 같다고 해서 혈당을 측정했으나 정상이라서 감기몸살로 판단했고, 만성B형 간염으로 제픽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던 것 같지만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은 알지 못한다. 교도소에서는 정기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일반 병원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 간과 관련된 임상처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2) ○○교도소 공중보건 의사

가) 2008. 4. 16. 피해자의 상태는 '구토는 없었고 속이 메스꺼운 상태였고 힘이 없으며 오한도 있고 약간 숨이 차며 체온은 37.2도, 혈당은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했고 간질환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간질환과 관련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

나) 같은 해 4. 16.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한 이유는 피해자가 간질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며, 이브프로펜과 약효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처방하였다.

다) 피해자의 경우는 건강진단부 두 번째 페이지에 제픽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기록과 외부병원처방전이 있다. ○○교도소는 환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용자의 건강진단부에 표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건강진단부 두 번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일상적으로 환자의 과거 기록 모두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은 전문의가 아니라서 모르

고 있다.

다. 참고인

1) ○○교도소 수용자(피해자 동료)

가) 손○○

피해자가 2008. 3. 14.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1개월 정도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당뇨로 매일 인슐린을 맞고 있었지만 건강이 안좋은 것은 몰랐으며, 피해자가 거실에서 ○○교도소측에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나) 김○○

피해자가 처음 입소했을 때에는 건강했으나 외부진료를 나가기 전 2~3주 동안은 식사를 전혀 못하였다.

다) 김○○

외부병원 진료는 피해자의 병세가 많이 악화되는 것 같아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들이 권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인슐린 투여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보건 의료과에 가고 있어서 보건의료과에서는 충분히 진료했다고 생각한다.

라) 엄○○

사동담당 근무자가 1차적인 조치는 잘 처리해 주었지만 막상 보건의료과에서 의사와 면담한 적이 없으며 순회진료때 피해자가 공중보건 의사에게 약복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이 뭘 알아서 이야기 하느냐. 내가 의사인데.’ 하고 면박을 주곤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보건의료과에서 환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허술하며 기본적인 의무행정에도 못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사동담당 근무자 교위 신○○

피해자는 2008. 4. 15. 정기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몸이 아프다고 해 당일 오후에 보건의료과에 보냈으며, 같은 해 4. 15.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해 피해자는 아침·저녁으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했으므로 보건의료과에 갔고, 그 후에도 자주 보건의료과에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같은 해 4. 21. 보건의료과에서 연락이 와서 외부병원진료 보고문을 작성해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제출하였다.

3)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음○○

가) 피해자의 간염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2007. 3. 2. 검사결과 ‘e항원 음성인 만성 B형 간염’으로 투약후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혈청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 만성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우는 대한간학회의 간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료 중에는 간기능 검사를 적어도 2 ~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회 투여시 1g 이내인 경우 이로 인한 간독성은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가 주로 간에서 일어나고, 간기능이나 기타 원인들에 의하여 대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말하기는 힘들고,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부, 교도관근무일지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10. 2. ○○구치소에 구속되어 같은 해 10. 4. 진료시 당뇨와 B형 간염으로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었으며, 서울병원에서 당뇨병관련 약 30일분, 서울○○병원에서 간염관련 약인 제픽스(항바이러스제) 22일분을 가지고 입소해 위 구치소측은 피해자를 병사동에 입병하고 처방대로 투약토록 하였다.

이후 위 구치소측은 같은 해 10. 29, 11. 29, 12. 27, 2008. 1. 21, 1. 28.에도 동병원에서 처방된 약들이 외부에서 차입되자 이를 허락해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 위 구치소측에서 피해자의 신입자 건강검진을 삼광의료재단에 의뢰해 2007. 10.

4.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관련 검사항목인 GOT(AST)는 25였으며 GPT(ALT)는 28로 정상수치를 보였다.

나. 피해자는 2008. 3. 14. 정확하게 ○○교도소로 이송되어 동 교도소 입소 시 ○○구치소에서 복용하다가 남은 서울○○병원과 ○○병원 처방약을 가지고 갔다. 이후 같은 해 3. 24.에도 서울○○병원 처방약(제픽스)이 차입되자 위 교도소측에서는 이를 허락하여 투약토록 하였다.

2008. 4. 13. 피해자가 감기, 몸살, 오한을 호소하자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이브프로펜(소염, 진통, 해열), 비졸본(가래, 기관지염), 시메티딘(급·만성 위염,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 3일분을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2008. 4. 15. 위 교도소측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았고 같은 날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고, 오한이 든다고 해, 보건의료과장은 체온측정(37.6도) 및 X-ray 검사 등을 실시한 후 하트만(복합 전해질 수액)과 시메티딘(위염 등)을 처방하였다.

다. 2008. 4. 16. 공중보건과의사 진료시 피해자가 전날과 동일하게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고, 오한이 든다고 해, 체온은 37.2도이고 구토는 없어서 공중보건과의사는 암포젤렘(제산제) 1정 및 멕페란정(소화기통증) 1정과 함께 아세트아미노펜(해열, 진통제) 2정 600mg(1정당 300mg)을 1일 3회 3일분을 처방하였다.

라. 2008. 4. 18. 13:30경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구토를 한다고 해 위 보건의료과장은 체온측정과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에 CBC(일반혈액검사)와 LFT(일반생화학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하트만을 처방하였다. 당일 소변검사와 CBC(일반혈액검사)검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같은 해 4. 19. 20:10경 피해자가 속쓰림과 구토를 호소해 당직 근무자가 보건의료과장의 우선처방을 받아 멕페란 주사(소화기 이상) 및 하트만을 투여하였으며, 다음 날인 4. 20. 22:00경 피해자의 구토 등으로 멕페란을 주사하였다.

마. 2008. 4. 21.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토혈을 했다고 하며 자비부담으로 외진을 요구해 위 보건의료과장은 토혈, 구토, 위내시경 등 외부병원 검사를 허가하고 하트만 등을 투약하였다. 또한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에서 4. 18. 실시해

제2장 구금시설 관련

4. 21. 판정된 LFT(일반생화학검사) 결과에 따르면 GOT(AST)는 173, GPT(ALT)는 273으로 정상을 상회한 수치가 나타났다.

바. 2008. 4. 23. 피해자는 ○○의료원 내과에 이송되어 위내시경, X-ray, 복부 초음파,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을 구토할 만한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간수치 상승으로 구토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익일(4. 24.)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 후 처방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교도소로 되돌아 왔는데, 위 교도소측은 다음 날인 4. 24. 피해자의 간수치가 GOT는 1225, GPT는 1941로 상승된 ○○의료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날 이송진료하기로 한 후 하트만 등을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4. 25. ○○의료원에 이송되어 입원하였다.

사. 피해자는 2008. 4. 28. ○○의료원에서 CT촬영결과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29. 위 교도소측은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피해자의 ‘급성간염 및 간부전, B형 간염, 당뇨’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다. 같은 해 4. 29.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같은 해 4. 30. 위 검찰청 ○○지청에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가족(처)에게 신병이 인계된 후, 같은 해 5. 7.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5. 10. ‘간부전’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아.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 관련 GOT(AST) 및 GPT(ALT) 검사수치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2007. 10. 4. ○○구치소 수용 중 삼광의료재단 측정시 GOT는 25, GPT는 28, 2008. 4. 15. ○○교도소 수용 중 ○○의료원 측정시 GOT는 1030, GPT는 1101이었으며(검사결과의 판정일은 2008. 4. 22.임.), 같은 해 4. 18. ○○교도소 병리검사실 측정시 GOT는 173, GPT는 273(검사결과 판정일은 2008. 4. 21.임), 같은 해 4. 23. ○○의료원 측정시 GOT는 1225, GPT는 1941, 같은 해 4. 30. ○○의료원 측정시 GOT는 511, GPT는 909로 ○○의료원과 ○○교도소 자체 측정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피해자의 ○○교도소 검사 판정일자(2008. 4. 21.)와 근접한 날짜(2008. 4. 14.)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동료 수용자의 간기능 검사결과를 보면 ○○교도소 측정 GOT는 131, GPT는 137이며, ○○의료원 측정 GOT는 90, GPT는 146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차. 피해자가 수용중이던 사동의 교도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08. 4. 20. 피해자는 저혈당과 심신쇠약으로 인해 중점관리자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카. 2004. 11. 18. 대한간학회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 라인」을 제정, 발표하였다(개정 2007. 11. 20.). 동 가이드라인은 총 37페이지에 걸쳐 만성B형 간염의 진단기준, 모니터링 방법, 치료대상, 치료약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4. 23. 외부병원에 이송되기 2~3주 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건강진단부 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4. 18, 4. 19, 4. 20.에 구토를 한 사실, 교도관근무일지에 같은 해 4. 20. 중점관리자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한 2008. 4. 13.이후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보건의료과장은 피해자가 4. 21.에 토혈을 했다고 호소를 하여 당일 판독된 간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외부진료를 허락하고 이틀 후인 4. 23. ○○의료원 내과에 이송 진료를 한 점 등 보건의료과장으로서 통상적인 진료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공중보건과의사는 2008. 4. 16. 피해자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1회 600mg씩 1일 3회 3일분을 처방했는데, 동 약품은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간독성을 일으키고 급성간부전의 원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로서 1회 1g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약품이며, 보건의료과장은 같은 해 4. 13. 간독성이 없으면서도 유사한 약효의 ‘이브프로펜’을 처방하였다.

일반인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과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만성 B형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동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약품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한편 2008. 4. 15.과 4. 23. ○○의료원에서 측정한 간기능 관련 수치와 같은 해 4. 18. ○○교도소 병리검사실에서 실시한 간기능 관련 GOT, GPT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피해자의 간기능 검사와 근접한 날짜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동료 수용자의 검사결과 수치를 살펴보면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의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는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약을 정기복용중인 피해자에게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원 김태훈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 법령

1. 「행정법」

제26조(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병원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생략

2. 「행정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3. 참고자료

가.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2004. 11. 18. 대한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제정되어 발표된 이후, 2007. 11. 20. 개정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37페이지에 걸쳐 만성B형 간염의 진단기준, 모니터링 방법, 치료대상, 치료약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간학회는 1981년 한국간연구회로 시작하여 1995년 대한간학회로 발족했으며 간과 관련된 전문의 1,000여명이 참여한 전문적인 단체이다.

나. 「간질환 길잡이(대한간학회, 2004. 10.)」

동 책자에 의하면, 만성 B형간염의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전신쇠약감과 피로감이며, 무력증, 식욕부진, 소화불량, 의욕상실, 두통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상복부 증양이나 우측이 빠근히 불편하거나 아플 수도 있으나 자각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6 2008.3.24자 07진인2363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교)]

○○교도소장에게 이물질을 취식한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 이○○에 대해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엑스레이로는 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도소에서 알고 있었던 점, 이물질 취식을 신고한 당일 이물질 취식혐의로 진정인을 조사 수용하고 진정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점, 징벌위원회에서 진정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징벌유예를 처분한 점, 진정인이 과거에 이물질을 수회 취식한 전력이 있음을 교도소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입실거부 및 이물질 취식 혐의로 조사 당시 진정인이 이물질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이물질을 취식한 사실과 진정인의 통증호소를 교도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2007:35:46~50)에 보고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논문 「이물질에 의한 위, 대장 천공 2예」에 의하면 삼킨 이물질이 방사성 투과성 물질인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는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로는 위장관 이물질을 진단하기 어려우며, 길이가 긴 이물질(소아는 6cm, 성인 13cm 이상)의 경우와 이물질이 위 내에 48 ~ 72시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응급제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도소에서 진정인의 몸속에 있는 길이 18cm의 플라스틱 젓가락을 25일 만에 제거한 것은 교도소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3] 한편 ○○교도소의 주장처럼 일부 수용자의 상습적인 이물질 취식으로 인한 예산 및 계호부담의 가중은 일반 수용자의 외부진료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위 논문에 따르면 상습적인 이물질 취식은 정신과 질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 이는 수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 [4] 따라서 교도소에서 이물질 취식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행정법 제26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행형법」 제26조, 제29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3조

【진정인】 이○○

【피진정인】 이○○ 의무사무관(현, ○○○○과장)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이물질을 취식한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이 ○○에 대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6. 19. ○○교도소에 입소하여 2007. 6. 21. 16:40경 조사실 수용 중에 플라스틱 젓가락을 취식한 후 다음날 교도관에게 이물질 취식사실을 신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물질의 존재여부가 엑스레이 판독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달 가량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이 ○○ 의무사무관(현, 보건의료과장)

2007. 6. 22. 진정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 “플라스틱 젓가락을 하나 먹었다”고 관구교위에게 진술하여 동일 흉부,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확인한 결과 이물질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과관찰 중이던 2007. 7. 4까지 11회 진료를 했으나 보통, 이물질 취식 관련 내용을 진정인이 호소하지 않았고, 2007. 7. 5. 진정인이 복부 이물질 취식을 호소하여 재차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물질은 보이지 않았다.

2007. 7. 9. 복부 이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위 내시경을 실시하도록 처방한 사실이 있고, 2007. 7. 16. ○○의료원 내과에 이송하여 위 내시경으로 이물질(플라스틱 젓가락)을 제거한 사실이 있다.

2) ○○ 교도소측 주장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진정인이 이물질을 취식하였다고 신고한 당일 보건의료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하여 복부 내 이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히 발견된 것이 없었으며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외부진료를 허가할 수 없고 소 내에서의 검사 등으로 판단컨대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다.

진정인의 경우 수회의 이물질 취식 전력이 있어 이물질 취식의 경우 그 제거를 위하여 외부병원 진료가 필요함을 알고 있고 또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정확하게 관독되지 않음을 악용하여 외부병원 진료 결정 이후에 이물질을 취식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진정인의 이물질 취식에 대해서 2007. 7. 5.까지 엑스레이 촬영 2회, 일반진료 11회 등 경과를 관찰하였고 경과관찰 중에 외부병원 진료를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해 및 이물질을 취식하는 일부 수용자로 인해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예산 부족으로 일반 수용자의 외부진료에 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참고인

1) 김○○(위 내시경을 실시한 내과의, ○○의료원)

2007. 7. 16. 위내시경에 의한 이물질 제거 시 이물질인 젓가락은 위 내에 들어 있었으며, 출혈 및 궤양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관련법령

가. 「헌법」 [전문개정 1987. 10. 29.]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발효일 1976. 3. 23.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UN경제이사회 1957. 7. 31. 결의안 663C(XXIV), 1977. 5. 13. 결의안 2076(LXII) 승인]

제22조 ① 생략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 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라. 「행형법」 [일부개정 2006. 2. 21. 법률 7849호]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병원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생략

마. 「행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 6. 29. 대통령령 19563호]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바.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정 2002. 5. 17. 예규관리 제625호]

제3조(일반환자 관리) ① 부상자 발생 또는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참고인 진술, 신분카드, 의무진료기록, 조사·징벌관련 서류, 계구사용심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과거에 이물질을 취식한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시 진정인은 입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실거부로 ○○교도소 5하 8실에 조사수용 중이었으며, 피진정인은 ○○교도소 의 무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2007. 6. 21. 진정인은 플라스틱 젓가락 1개(길이 18cm)를 삼킨 것을 2007. 6. 22. 오전에 관구교위에게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보건의료과로 동행되어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이물질이 플라스틱이어서 이물질 취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진정인은 당분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다. 2007. 6. 22. ○○교도소에서는 진정인에게 이물질 취식 혐의를 추가하여 조사실에 계속 수용하였고, 폭행·자살·자해 등의 우려가 있고 이물질 취식 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7. 6. 22. 15:00부터 6. 25. 11:30까지 68시간 30분간 금속수갑 및 사슬을 사용하였다.

라. 2007. 6. 22 ~ 7. 4. 진정인은 요통, 비염 등으로 11차례 보건의료과 진료를 받았다.

마. 2007. 6. 26. 진정인은 이물질 취식 혐의 등으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문조서에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바. 2007. 6. 27. 징별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입실거부 및 이물질 취식혐의를 인정하여 금치 15일의 징벌에 처하되 그 집행을 3월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2007. 7. 5.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복부 엑스레이를 다시 촬영하였으나 플라스틱 젓가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 2007. 7. 9. 피진정인은 복부 이물질에 대한 외부 진료를 허가하였고, 2007. 7. 16. 진정인을 ○○의료원에 이송하여 위 내시경으로 플라스틱 젓가락 1개를 제거하였다.

자. 진정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며, 피진정인은 현재 ○○교도소 보

건의료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5. 판단

가. ○○교도소에서는 2차례 엑스레이 판독 결과 특별히 발견된 것이 없었고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외부진료를 허가할 수 없어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엑스레이로는 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도소에서 알고 있었던 점, 이물질 취식을 신고한 당일 이물질 취식혐의로 진정인을 조사 수용하고 진정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점, 징벌위원회에서 진정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징벌유예를 처분한 점, 진정인이 과거에 이물질을 수회 취식한 전력이 있음을 교도소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입실거부 및 이물질 취식 혐의로 조사 당시 진정인이 이물질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이물질을 취식한 사실과 진정인의 통증호소를 교도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과 관찰만을 이유로 25일 만에 이물질을 제거한 것은 교도소에서 고의적으로 의료조치를 해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진정인의 이물질 취식에 대해서 2007. 7. 5.까지 엑스레이 촬영 2회, 일반진료 11회 등 진정인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경과관찰 중에 외부병원 진료를 하는 등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교도소에서는 주장하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2007:35:46~50)에 보고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논문 「이물질에 의한 위, 대장 천공 2예」에 의하면 삼킨 이물질이 방사성 투과성 물질인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는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로는 위장관 이물질을 진단하기 어려우며, 길이가 긴 이물질(소아는 6cm, 성인 13cm 이상)의 경우와 이물질이 위 내에 48 ~ 72시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응급제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교도소에서 진정인의 몸속에 있는 길이 18cm의 플라스틱 젓가락을 25일 만에 제거한 것은 교도소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교도소의 주장처럼 일부 수용자의 상습적인 이물질 취식으로 인한 예산 및 계호부담의 가중은 일반 수용자의 외부진료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위 논문에 따르면 상습적인 이물질 취식은 정신과 질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이는 수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라. 따라서 교도소에서 이물질 취식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의무를 해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행정법 제26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7 2007.1.22자 06진인94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교)]

피진정인 ○○구치소는 진정인이 안과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외부 병원 진료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로 이송가기까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교도소는 진정인의 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진정인을 진료하지 않는 등 수용자의 진료보장에 소홀하였으므로 이를 주의조치 하도록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구치소가 주장하기를 외부병원 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치료의 노력을 하였고 ○○병원에서 일정에 대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이 수술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2005.4.4. 순환기 내과 보자하였으나 refugee함(일정잡아 오겠 다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5.3.18. ○○병원 진료이후 2005.5.19. ○○교도소로 이송하기 까지 수술과 관련한 조치가 없었음
- [2] ○○교도소는 입암시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표지, ○○구치소에서 수술날짜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사실 등 진정인의 의무기록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정인이 수용되어있는 3개월 기간동안 외부 안과 전문의 초빙 진료가 2회 있었으나 진정인을 진료하지 않았음
- [3] 진정인에 대한 이송관련 적정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고 이송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는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및 수용자 이송지침에 의거 기계적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임
- [4] 종합하면 교정 및 구금시설은 자신의 전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와 ○○교도소 의무과장은 이를 미흡하게 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행형법」 제12조, 제26조, 제28조, 「행형법시행령」 제50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조, 「수용자 이송지침」 제14조,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0조, 제31조, 제49조

【진 정 인】 박○○

- 【피진정인】**
- 1. ○○교도소 의무과장
 - 2. ○○구치소 의무과장
 - 3. ○○교도소 의무과장

【주 문】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의무과장)의 업무소홀에 대해 주의 조치토록 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4년 8월경 ○○교도소 수용시 병원에서 왼쪽 눈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지연으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치소에서도 동일한 검사를 받고 수술을 기다리다가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한 달 후 전문의 검사를 받아보자고 얘기만 하고 상고 판결 후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술을 해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교도소 의무과장

1) 진정인은 2004.7.23.부터 시력이 저하된다고 하여 2004.8.5. ○○시 소재 김안과 의원에서 외부병원 진료를 한 결과 ‘망막박리’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함께 1주일 후 재진료를 요하며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고 병원약 7일분을 수령하여 환소하였다.

2) 이후 매주 1회씩 동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04.9.2. ‘좌안 황반원공 및 망막박리’라는 증세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은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환소한 후 진정인에게 ○○교도소 관내에는 대학병원이 없고 ○○에 가야만 대학병원이 있다고 설명하자,

진정인 스스로 자신은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재판 진행중인데 향후 항소하여 ○○구치소로 이송을 갈 예정이므로 ○○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을 받겠다고 하여 수술일정을 잡지 않았다.

3) 또한 진정인은 2005.1.12. ○○구치소로 이송을 갈 때까지 4개월 동안 의무과에서 치주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 증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료요청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다.

4) ○○구치소로의 이송사유는 진정인이 1심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검사의 이송지휘서와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관한지침’ 제9조(○○구치소 수용구분)에 따라 이송하였다.

다. 피진정인 : ○○구치소 의무과장

1) 외부병원진료 근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5.3.2. ○○백병원 진료 시, 좌안망막박리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 전 검사를 예약 하였으나 일반적인 망막박리 환자의 경우 안구위축 증상이 발생하나 진정인의 경우 특이하게 좌안에 염증이 동반되어 염증으로 인해 위축증상을 막아주고 있으므로 수술의 시기가 다른 환자들보다 급하지 않으며,

수술 후 염증제거를 하게 되면 눈의 위축이 올 가능성이 있어 안구원형복원(위축된 안구에 인공물질을 넣어 다시 동그랗게 하는 수술)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수술 후 상태호전 여부도 확실치 않아 수술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라는 소견을 듣고 진정인이 수술 후 상태(호전 및 악화)에 대한 걱정과 수용자 신분인 관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로 인한 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여 2005.3.8. 부득이 예약을 취소한 바 있다.

2) 진정인은 그 후 마음이 바뀌어 일단 수술전 검사를 받아놓겠다고 하여, 2005. 3.18. 위 병원에 이송하여 수술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술날짜 또한 위 병원에서 추후 통보할 예정이었고,

진정인이 금전적 부담과 재판결과에 따라 출소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3) 의무과에서는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치료를 위해서는 결국 수술을 하여야 하므로 수술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수차례 고지하고,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을 가더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고지하였다.

4) 그 후 진정인은 항소재판 선고를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고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관한지침’ 제20조 제1호(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남자 피고인은 ○○교

제2장 구급시설 관련

도소 수용)에 따라 2005.5.19. ○○교도소로 이송을 갔으며,

이송시까지 위 병원에서 수술일정에 대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비록 위 병원에서 수술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수술의사를 밝혔다면 병원에 연락하여 수술날짜를 잡았을 것이며, 병원의 입장에서도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수술날짜를 일부러 통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라. ○○구치소 담당자 추가진술

1) 2005.3.8. 진정인의 의무기록에 ‘수술날짜 추후통보 예정’ 이라고 한 후 일정을 잡지 않은 사유는 수술을 받을 사람이 수술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진정인에게 수술에 대하여 수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치료를 위해서 수술이 불가피하므로 수용되어있는 동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수술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5.3.8. 이후 2005.5.19. ○○교도소로 이송시까지 2달가량 시간이 있었고, 이 기간은 진정인이 수술여부 결정 및 가족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재판결과를 보고 수술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하면서 수술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수술을 미루고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수술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

3) 교도소의 주의의무는 수용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술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4) 수술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상고수에 대한 이송을 지연할 이유가 없으며, 진정인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교도소에서도 자신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충분히 수술을 받도록 조치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송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

5) 수술필요성 및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등 방치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이다.

마. 피진정인 : ○○교도소 의무과장

1) 진정인은 2005.5.19. ○○구치소에서 이입시 외부병원 처방된 안약 3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지급하였고, 평소 건강에 대하여 별다른 호소를 하지 않았으며, 2005.7.11. 의무관 진료시에는 엉덩이 종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2005.8.22.까지 수차례 치료를 하였으나 안과질환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은 2005.8.3. 의무과장 면담보고전에 의하여 2005.8.23. 의무과장 면담시 좌측 눈 실명에 대하여 '안과진료관계'만 문의하였고 수술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다음 달(2005.10월경) 초빙 안과전문의 진료시에 진료하기로 하고 경과관찰을 기다리던 중 2005.8.1. 형이 확정되어 초범인 진정인은 2005.9.21.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3) 진정인은 이송명령에 의하여 타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타 교도소로 이송을 가더라도 진정인이 수용된 해당 교도소에서 진료 및 수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송을 유보해야 할 사유는 없었다.

바. 참 고 인 :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1) 진정인은 '망막박리'로 2005.3.2. 내원하여 안과굴절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3.9.상담, 망막박리 수술의 경우 전신마취하에 수술이 가능한 수술이므로 3.18. 심전도 검사 및 혈액검사, 안과적 검사 등을 시행하고 수술날짜를 정하려 하였다.

2) 그러나 심전도 검사상 심장의 이상소견으로 내과 협진을 의뢰하고 2005.4.4. 순환기(심장)내과 진료를 유선상 권유하였으나, 당시 수감자 신분으로 협진 방문일을 따로 정하여 내원하겠다고 한 3.18. 이후로 내원하지 않았다.

3. 관련법령

가. 「행형법」

제12조(수용자의 이송)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제26조(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50조(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02.5.17. 예규관리 제625호)

제3조(일반환자 관리) ① 부상자 발생 또는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라. 「수용자 이송지침」(2002.5.4. 예규보일 제599호)

제14조 (환자 이송) ① 수용자중 다음 환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송신청 할 수 없다.

1. 현재 입병 또는 거실치료 중에 있는 자
2. 질병의 완쾌로 퇴병 또는 거실치료가 끝난 후 1개월 미만인 자
3. 퇴병 또는 거실치료가 끝난 자이나, 고혈압·뇌질환·심장질환 등과 같이 완전 치유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계속 투약 등 가료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훈련·작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당해 의무관이 교육훈련·작업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자는 제외)
4. 신체장애자 중 당해 장애요인의 가료를 위하여 입병·거실치료 또는 계속 투약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 할 수 있다.

1. 현 수용소 지역내 의료기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의사의 진단서 등)가 있는 자
2.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된 자

3. 교도소에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비연고지 이송대상인 조직폭력사범 및 마약류사범
4. 기타 자소에서의 수용처우가 특히 곤란한 자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이송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송신청서에 입병·거실치료 등 환자임을 입증하는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자로서 이송이 허가된 경우에도, 이송시행 전에 의무관이 반드시 진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진찰결과 이송시행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송을 보류하여야 한다.

마.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2005.1.3. 예규보일 제721호)

제9조(○○구치소 수용구분) ○○구치소의 수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 및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지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4. ~ 8. 생략
9. 초범 수형자
10. 한미행정협정사건 수형자

제20조(○○교도소 수용구분) ○○교도소의 수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원심이 ○○·창원·울산 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지원으로 각각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2. 지체장애 수형자
3. 2범이상 수형자

제31조(진주교도소 수용구분) 진주교도소의 수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형확정 된 수형자
3. 폐결핵 및 정신질환 수형자
4. 초범 수형자
5. 지체장애 수형자

제49조(수용구분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수형자에 대하여 그 작업, 교화,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수에 따른 수용구분을 적용하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략

3. 여자, 직업훈련생, 학교교육생, 환자(폐결핵환자, 정신질환자, 한센병환자 등), 외국인, 공안사범 등 특수한 처우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수형자

4. 인정사실

1) 먼저 진정인의 건강진단부상의 치료 및 이송경과를 보면, 진정인은 2004.7.21. ○○교도소에 수용되어 내부 4회, 외부병원(김안과 의원) 5회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2005.1.12. ○○구치소로 이송되어 1.13. 눈 관련 의무과장 면담요구, 1.18. 외부병원 진료요구, 2.28. 삼선병원 외부진료, 3.2. ○○병원 외부진료 결과 ‘수술적 치료 필요’ 소견을 받았고, 3.9. 금전문제 등으로 진정인이 ○○백병원 수술전 검사 취소, 3.18. ○○백병원 수술전 검사결과 ‘수술날짜 추후 통보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5.19. ○○교도소 이입기록에는 신입시 안약 3개 수령, 7.11. ~ 8.22. 영등이 종기 수술, 8.3. 좌측 눈 실명에 대한 의무과장 면담 요구, 8.23. 면담실시 결과 ‘안과관계 진료 문의’ 기록이 있다.

2005.9.21. 진주교도소 이송이후 9.22. 왼쪽 눈 실명, ○○에서 수술예약 및 수술전 검사도중 이입 기록이 있고, 2006.4.10.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안구상태는 양호하나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2) 진정인의 동태상황부에 의하면 2004.7.21. ○○교도소에 최초 수용되었는데, 2004.7.21. 경찰서에서 작성된 ‘현인서’상에 ‘왼쪽 눈(거의 안보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교도소 이입시 의무과 담당자가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표지에 ‘04년 5월부터 시력저하 증세 있다 함, 좌안 망막박리?’이라고 기재한바 있다.

4) ○○대학교병원 안과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5.4.4. 순환기 내과 보자하였으나 refuge함(일정잡아 오겠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교도소의 ‘외래의사 초빙부’에 의하면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기간 중(5.19. ~ 9.20.)에 안과 전문의 초빙진료가 2회(6.28. / 9.1.) 있었으나 진정인을

진료하지는 않았다.

5. 판단

1) 진정인의 안과치료와 관련하여, ○○교도소의 경우는 진정인이 이입된 시점부터 9회에 걸쳐 내부,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실시하였고 관내에 수술여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 ○○구치소의 경우, 외부병원 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치료의 노력을 하였고 ○○병원에서 일정에 대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이 수술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2005.4.4. 순환기 내과 보자하였으나 refuge함(일정잡아 오겠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5.3.18. ○○병원 진료이후 2005.5.19. ○○교도소로 이송가기 까지 수술과 관련한 조치가 없었으며,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하여 진정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도소는 이입시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표지, ○○구치소에서 수술날짜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사실 등 진정인의 의무기록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정인이 수용되어있는 3개월 기간동안 외부 안과 전문의 초빙진료가 2회 있었으나 진정인을 진료하지 않았다.

4) 진정인에 대한 이송관련 적정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고 이송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및 수용자 이송지침에 의거 기계적으로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종합하면 교정 및 구금시설은 자신의 전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와 ○○교도소 의무과장은 이를 미흡하게 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윤기원

2. 서신 및 집필

1 2007.9.27.자 07진인1446 결정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외부서신 발송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이 서신을 외부에 발송하려는 목적은 교도소 내의 처우 등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며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 처우 등의 대강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교도소 측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헌법」 제18조 및 제10, 「행형법」 제18조의2,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외부발송 서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교도소장은 진정인의 2007. 4. 17., 4. 23. 및 4. 26.자 서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신발송을 불허하여 수용자인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 3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한 사실이 있다.

가) 2007. 4. 17.자 서신은 진정인이 적시한 내용은 당시 증명되지 않은 내사 중인 단계였고, 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허하게 된 것이고,

나) 2007. 4. 23.자 서신은 부정물품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징벌위원회에서 금치10일에 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고, 직원이 연루된 담배 사건은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이름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피의사실 또한 적시하였음. 따라서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불허처리 한 것이다.

다) 2007. 4. 26.자 서신은 앞의 서신과 같이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중인 대상자의 실명 및 피의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서신을 불허하였다.

2) 위 세건 모두 진정인에게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불허 사실을 통보하고 다시 쓸 것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다고 하여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원본은 신분장에 편철하겠다고 설명하였고, 불허서신은 진정인의 신분장부에 편철하였다.

3) 진정인이 2007. 5.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같은 내용의 서신에는 증명되지 않았던 담배사건에 대하여 직원의 혐의가 드러나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며, 진정인의 서신내용이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선임의뢰 내용이 있었기에 불허처리 없이 2007. 5. 17.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8조의2(서신)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법 제66조 제2항 각호 외의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1. - 2. <생략>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생략>

다.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서신 불허사유) ①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 검열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신이 있는 때에는 발송 및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특정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등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제2장 구금시설 관련

② 소장은 발송서신을 불허할 경우에는 먼저 불허사유를 작성인에게 통보하여 다시 쓰도록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동 서신을 영치한 후 석방시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제5조(불허서신 관리) 석방시 본인에게 반환할 불허서신은 가로 1.5cm×세로 5cm 규격의 “석방 시 반환서신” 이란 도장을 제작, 날인하여 영치서신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불허서신은 원본을 신분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진정인의 2007. 4. 17., 2007. 4. 23. 및 2007. 4. 26.자 서신 3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7급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팔아먹다가 적발되었다”(2007. 4. 17.자)

2) “필로폰소지 사건으로 인하여 출정(공판)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신에 대하여 “소장이 변태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7급 간부 ○○○이 돈을 받고 담배를 팔아먹다 조사 중이다”, “부정물품인지 확인도 안하고 징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등 이러한 내용을 신문사이트, 법무부, 청와대, 감사원에 모두 올려라”(2007. 4. 23.자)

3) ○○교도소 수용 중 마약을 주워 신고하였는데 포상은 커녕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고, “본인의 재판에 꼭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 변호사가 필요하니 변호사 선임을 해라”, “2006. 10. 28. 교정의 날 특사로 가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하였다”, “교도관 7급 공채 성적 3위로 공채된 ○○○이 담배장사를 하였다”(2007. 4. 26.자)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에 대해 외부발송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서신내용의 일부분이 「행정법시행령(법 제62조 제3항 제3호)」의 제한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인에게 해당부문에 대해 다시 쓸 것을 권유 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다고 하여 불허서신을 진정인의 신분장부에 편철하였다.

다. ○○교도소 담배사건 관련 2007. 4. 19.자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도소는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배를 제공해온 교도관을 적발하고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는 이 교도관이 지난달과 이달 초 재소자 2명에게 담배 4갑을 제공하는 대가로 2백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YTN)

2) “○○교도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가 교도관 B씨에게 금품을 주고 담배를 제공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B씨에게서 한번에 몇 개비씩 모두 4갑 분량의 담배를 제공받는 대가로 두 번에 걸쳐 모두 2백만 원을 B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소 측은 적발 직후인 9일 B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재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CBS 노컷뉴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07. 5.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불허서신과 같은 내용의 서신에는 담배사건에 대하여 직원의 혐의가 들어 갔고,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며 2007. 5. 17. 발송한 사실이 있다.

마. ○○교도소 담배사건관련 처리경과

1) 교도관 ○○○은 2007. 4. 9.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직위해제 되었으며, 2007. 5. 1.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2007. 5. 29.자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2007. 6. 22.자로 ○○지방교정정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되었고,

2) 직접적인 관련수용자 4명[○○○ 사건송치(출소), ○○○ 금치20일 및 사건송치, ○○○ 금치30일 및 사건송치, ○○○ 사건송치(출소)]에 대해 사건송치 및 징벌처분을 하였으며,

제2장 구금시설 관련

3) 단순 흡연 수용자 4명(○○○ 금치20일, ○○○ 금치20일, ○○○ 금치20일, ○○○ 금치20일(출소))에 대하여는 징벌처분만 하였다.

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조치는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에 근거한 조치로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실제로 2007. 4. 9. 담배사건 관련 교도관에 대해 직위해제하였고, 이러한 내용 등은 2007. 4. 19.자로 YTN과 CBS 노컷뉴스에 보도되어 진정인의 서신내용은 이미 공개된 사실에 관한 것이며, 또한 진정인이 서신을 외부에 발송하려는 목적은 교도소 내의 처우 등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며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 처우 등의 대강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교도소 측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8조 및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정재근

2 2007.9.27.자 07진인1745 결정 [수용자간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서신교환권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건 동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행형법」 제18조의 2 제2항이 규정한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하여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에도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제18조, 「행형법」 제18조의 2,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4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도소 교도 ○○○

2. ○○교도소 교위 ○○○

3. ○○교도소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주 문】 1. ○○교도소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신복사 불허관련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4.초경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 수용자와 베트남 국적의 ○○○○ 수용자에게 각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수용자간 서신 교환은 불가하다”며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2007. 3. 초경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진정서)을 복사 요구했는데, 피진정인 ○○○이 “안 해준다”고 하여 아들 명의로 법무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 답변도 아들이 받아서 다시 진정인에게 보내 주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진정인이 서신을 복사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교도 ○○○(이하 ‘피진정인 1’이라 함)

2006. 11. 16.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용중인 0000번 ○○○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이 있어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출하여 관구교감의 동석한 자리에서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의거 수용자간 서신허용은 동일 교정시설에서는 불가하며 타 교정시설 수용자에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 사건(05진인2305)에 대하여 권고결정을 한 바 있으나,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동일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용할 경우 발생될 부정적인 영향(공범의 경우 구금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며 수용자 범죄 및 탈주 모의 등 수용질서의 혼란)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불수용 내용을 법적으로 정비하고자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서신수수) 제1항에서 “수용자는 다른 사람(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한다)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서신불허사유)에 의거 불허서신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고, 진정인은 2007. 4. 19. ○○교도소에 수용중인 ○○○에게 또다시 서신을 발송하려 하여 이에 대하여 재차 설명을 하고 다시 서신을 진정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교위 ○○○(이하 ‘피진정인 2’라 함)

○○교도소는 수용자의 복사출원업무에 대해서 복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규정은 없으나 형사사건 등으로 재판진행 중인 수용자가 원활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복사출원업무를 해결해 주고 있다. 다만, 불필요하고 과도한 복사출원업무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용자 소송서류 복사 등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진정서)는 자필서류로서 부분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본인이 먹지(단사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근무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여 복사출원사항을 해결해야 하나 진정인의 경우에는 수기할 수 없는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먹지(단사지)를 이용하도록 설명한 바 있다.

다. 법무부장관(2006. 2. 24. 보안경비과-246)

「행형법」 제1조의 2(용어의 정의)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수형자 또는 수용자라 칭하고 있다. 위 정의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의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가족, 지인 등)을 지칭하므로 수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는 인도적 차원에서 서신을 허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 ① - ② <생략>

③ 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제4조(서신 불허사유) ①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 검열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신이 있는 때에는 발송 및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1. 암호 및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하였을 경우
 2. 조직폭력, 지인, 관련범죄인 등에게 범죄의 지시, 모의 또는 범죄행위를 구성할만한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3. 교정시설의 보안, 방호, 시설구조 등 보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특정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등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 ②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의 불허서신,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2006. 4.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권고 결정문 및 2006. 7.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의 2006. 2. 24.자 의견 및 2006. 12. 12.자 권고 불수용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은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 의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을 불허하였고, 불허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의 불수용 의견, 법무부가 추진 중인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서신수수)에 대해 설

명(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불허)하고 불허서신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진정인의 2006. 11. 16.자와 2007. 4. 19.자 불허서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지역 시 같은 거실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에게)“변비가 심하여 이러한 고충에 대해 관구계장 등과 출역 상담을 하였으나 나이를 지적하며 교도소 형편상 출역이 어렵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을 법무부 교정국에 진정했습니다. 사장님 변비 치료에 대해 사장님 잡수시는 변비약 복용하려고 하였으나 집에서 구입방법과 영치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저희 집으로 편지하셔서 방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2006. 11. 16.자 서신)

(2) (수용자 ○○○에게)“건강에 유의하고 힘이 들더라도 열심이 일하고 남한테 봉사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가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겠네. 다른 교도소로 이감가드라도 편지하라.”(2007. 4. 19.자 서신)

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06. 4. 17. “수용자의 서신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행형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하여 불허처분이 필요하다면 불허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2006. 12. 12, 보안경비과-5598)는 권고 불수용하였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행형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안전하게 구금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수의 범죄자를 수용·관리함에 따른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여 동일 시설내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에서 개정·심의 중인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서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무검열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 시설내 수용자의 서신교환을 허가할 경우, 미결수용자 공범의 경우 구금의 목적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수용자끼리 범죄 및 탈주 모의 등 수용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일 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은 불허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동일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라도 가족이나 친지 등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접견 등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 2006. 7. 7.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 중 제43조(서신수수)와 관련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자간의 서신수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수용기간 중 수용자의 이송이 빈발함을 감안할 때 다른 구금시설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다가 같은 시설에 이송되는 경우 서신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구금시설 수용자라고 하여 무조건 서신수발을 제한하기 보다는 제43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신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표명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행형법」 제18조의 2의 “다른 사람”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가족, 지인 등)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수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행형법」 제18조의 2(서신)에 의거 수용자간 서신허용은 동일 교정시설에서는 불가하며 타 교정시설 수용자에 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 사건(05진인 2305)에 대하여 권고결정을 한 바 있으나 법무부가 다수의 범죄자를 수용·관리함에 따른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여 동일시설내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수용 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서신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수용기간 중 수용자의 이송이 빈발함을 감안할 때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다가 같은 시설에 이송되는 경우 서신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행형법」 제18조의 2 제1항의 “다른 사람”의 개념은 문리해석에 의할 때 폭넓게 수용자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는 물론이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서신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행형법」 제18조의 2 제2항이 규정한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하여 그 제한사유에 해당 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하여 항상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서신은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및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

지침」(법무부예규 제707호) 제4조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건 동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서신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행형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하여 행형목적에 위해 부득이 하게 불허처분이 필요하다면 불허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와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서신복사 불허관련)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1부를 보관하기 위해 피진정인 2에게 복사를 요구했으나 피진정인 2는 먹지를 이용하여 작성하라며 거부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진정인은 2007. 3. 중순경 이 서신(진정서)을 진정인의 아들에게 보냈고, 진정인의 아들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으며, 진정인의 아들은 법무부의 회신내용을 진정인에게 전달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대전교도소에 보여 주었으며, 대전교도소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진정인이 복사를 요구하면 복사를 해주었고, 복사비용은 진정인의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신복사 불허관련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 불허 사항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정재근

3 2008. 11. 24자 08직인14결정 [08직인14 소거실 수용환경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가 청결·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며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과,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입실거부 즉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는 대신 거실을 다시 배정할 때까지 임시 대체거실에 수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사·징벌실 과밀 수용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금시설에는 화장실과 거실사이에 75~90cm 내외 높이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수용자가 용변시 동료 수용자나 교도관이 그 수용자의 신체를 보는 것을 가려주는 효과만 있을 뿐 용변 냄새나 불쾌한 소리가 거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수용자의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구금 관리상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자를 위와 같은 열악한 수용환경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2] ○○교도소 등 4개 구금시설에서는 면적 2.48㎡~3.22㎡의 소거실에 2~3명이 수용되어 있어 취침시 동절기에 지급되는 법무부 「수용자 의류 및 침구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8) 에서 정한 규격품의 매트리스조차 원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접거나 포개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특히, ○○교도소 조사·징벌거실의 경우는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08㎡(0.33평)에 불과한 형편이고 이는 시설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피조사기관] ○○교도소 등 14개 구금시설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1. 수용자가 청결·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며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과,
2.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입실거부 즉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는 대신 거실을 다시 배정할 때까지 임시 대체거실에 수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사·징벌실 과밀 수용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가. 각 구금시설의 소거실은 5.29㎡(1.6평) 내외의 협소한 면적에 3~4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등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소거실 내에 화장실이 있으나 용변시 신체중요 부분을 다른 수용자가 보기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작은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수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뿐 아니라 용변냄새가 거실까지 들어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

나. 이에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구금시설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구치소, 대전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화장실 출입문 관련

1) 인정사실

가) 직권조사결과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 등 3개 구금시설은 2인 이상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천장까지 밀폐된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었다. 반면, ○○교도소 등 11개 구금시설은 용변시 신체중요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가로 80cm × 높이 75~90cm 크기의 칸막이만 설치하고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표1〉 구금시설 소거실 출입문 설치 현황

구분	거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출입문 설치	자살시도
○○(교)	1인실	5하1	3.17	1	칸막이	-
	2인실	7하1	4.56	3	출입문	1
	조사·징벌실	4하2	3.17	2	칸막이	-
○○(교)	1인실	1하1	3.68	2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5상6	4.96	2	칸막이	2
○○(구)	1인실	7하1	3.38	1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6하7	3.38	2	출입문	-
○○(교)	1인실	2상20	4.78	4	출입문	-
	2인실	1하4	4.25	2	출입문	-
	조사·징벌실	6사1	3.22	3	칸막이	-
○○(교)	1인실	4하1	3.90	1	칸막이	-
	2인실	18하3	3.15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4중9	3.90	2	칸막이	-
○○(교)	1인실	2하26	2.54	1	칸막이	-
	2인실	4사7	5.63	3	출입문	-
	조사·징벌실	5하17	2.54	2	칸막이	-
○○(교)	1인실	9하2	2.82	1	칸막이	-
	2인실	8하42	2.82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11하5	2.82	2	칸막이	-
○○(교)	1인실	1사33	2.35	1	출입문	-
	2인실	기2하13	5.75	3	출입문	-
	조사·징벌실	2사32	2.48	2	출입문	-
○○(교)	1인실	2독1	2.33	1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0상4	5.32	4	출입문	-
○○(구)	1인실	7하4	2.22	1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4사8	4.08	3	칸막이	1
○○(교)	1인실	7하2	3.49	1	칸막이	1
	2인실	5상1	3.31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11사3	3.49	2	칸막이	2
○○(교)	1인실	D하21	2.87	1	칸막이	-
	2인실	D하1	3.05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D하16	3.17	2	칸막이	-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출입문 설치	자살시도
○○(교)	1인실	1하6	2.33	1	칸막이	-
	2인실	1하4	2.33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기1하1	3.41	2	칸막이	-
○○(교)	1인실	미1상2	3.34	3	칸막이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기3하10	3.34	2	칸막이	3

※ ‘-’ : 2인실을 운영하지 않는 구금시설을 의미

나) 교도관 2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가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일반 수용거실을 담당하는 교도관의 경우는 74.1%의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 조사·징벌거실을 담당하는 교도관도 과반이 넘는 53.9%가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2인 이상 수용된 모든 소거실에 화장실 출입문을 이미 설치한 3개 구금시설의 교도관들도 화장실 출입문 설치에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표2〉 화장실 출입문 설치 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구 분	찬 성(%)		반 대(%)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2인 거실	20	74.1	7	25.9
조사·징벌실	14	53.9	12	46.1
계	34	64.2	19	35.8
찬·반 사유	인격권 보호, 냄새 및 청결		자살, 자해 우려	

다) 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조사관의 면담에 응한 수용자들은 예외없이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 판단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금시설에는 화장실과 거실사이에 75~90cm 내외 높이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수용자가 용변시 동료 수용자나 교도관이 그 수용자의 신체를 보는 것을 가려주는 효과만 있을 뿐 용변 냄새나 불쾌한 소리가 거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수용자의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수용자의 구금 관리상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자를 위와 같은 열악한 수용환경속에서 생활하

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금시설측에서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안에서 수용자가 자살 등을 시도하여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2인 이상 수용된 모든 소거실에 화장실 출입문을 이미 설치한 구금시설이 화장실 출입문을 미설치한 구금시설에 비해 자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구금 관리목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비닐소재나 아크릴 반투명 재질 등을 사용해 자살 시도 등의 교정사고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살사고 방지는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살이 우려되는 수용자는 보호실 등에 수용하여 대면계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2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고,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 수용되는 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과밀 수용 관련

1) 인정사실

가)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는 면적이 2.48㎡~3.22㎡ 정도 되는 일부 소거실에 2~3명을 수용함으로써 과밀 수용으로 인해 동절기 취침시 지급되는 매트리스(1개당 면적 1.32㎡)를 펴지 못하고 접거나 포개어 사용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이다.

나)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는 2인 소거실 중에서 노역수와 출역 수용자가 수용된 일부 소거실(면적 4.56㎡~5.75㎡)에 3명을 수용하고 있어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제3조에 규정한 혼거거실 1인당 기준면적인 2.58㎡(0.78평)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조사·징벌거실의 경우 ○○교도소 등 6개 구금시설이 1인용 조사·징벌 거실(면적 3.17㎡)에 2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교도소는 3.22㎡(0.98평)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하여 1인당 수용면적이 1.08㎡(0.33평), ○○교도소는 5.32㎡(1.61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평) 거실에 4명을 수용하여 1인당 수용면적이 1.33㎡(0.41평)에 불과해 취침시 서로의 신체가 부딪히고 포개지는 경우도 있었다.

〈표3〉 구금시설 소거실 과밀수용 현황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1인당 면적	입실거부자 수
○○(교)	1인실	5하1	3.17	1	3.17	-
	2인실	7하1	4.56	3	1.52	-
	조사·징벌실	4하2	3.17	2	1.59	3
○○(교)	1인실	1하1	3.68	2	1.84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5상6	4.96	2	2.48	15
○○(구)	1인실	7하1	3.38	1	3.38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6하7	3.38	2	1.84	3
○○(교)	1인실	2상20	4.78	4	1.20	-
	2인실	1하4	4.25	2	2.13	-
	조사·징벌실	6사1	3.22	3	1.08	5
○○(교)	1인실	4하1	3.90	1	3.90	-
	2인실	18하3	3.15	2	1.58	-
	조사·징벌실	4중9	3.90	2	1.95	4
○○(교)	1인실	2하26	2.54	1	2.54	-
	2인실	4사7	5.63	3	1.88	-
	조사·징벌실	5하17	2.54	2	1.27	6
○○(교)	1인실	9하2	2.82	1	2.82	-
	2인실	8하42	2.82	2	1.41	-
	조사·징벌실	11하5	2.82	2	1.41	9
○○(교)	1인실	1사33	2.35	1	2.35	-
	2인실	기2하13	5.75	3	1.88	-
	조사·징벌실	2사32	2.48	2	1.24	31
○○(교)	1인실	2독1	2.33	1	2.33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0상4	5.32	4	1.33	24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1인당 면적	입실거부자 수
○○(구)	1인실	7하4	2.22	1	2.22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4사8	4.08	3	1.36	11
○○(교)	1인실	7하2	3.49	1	3.49	-
	2인실	5상1	3.31	2	1.66	-
	조사·징벌실	11사3	3.49	2	1.75	4
○○(교)	1인실	D하21	2.87	1	2.87	-
	2인실	D하1	3.05	2	1.53	-
	조사·징벌실	D하16	3.17	2	1.59	2
○○(교)	1인실	1하6	2.33	1	2.33	-
	2인실	1하4	2.33	2	1.17	-
	조사·징벌실	기1하1	3.41	2	1.71	9
○○(교)	1인실	미1상2	3.34	3	1.67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기3하10	3.34	2	1.67	3

라) 직권조사를 실시한 14개 구금시설의 조사·징벌자 총 322명 중 입실거부로 인한 조사 수용자가 129명으로 40.1%에 달하였다.

마) ○○구치소는 거실배정 불만 및 동료 수용자와의 불화 등 단순한 입실거부자의 경우 조사·징벌거실이 아닌 일반 거실을 별도로 두어 거실지정이 다시 될 때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도소 등 4개 구금시설에서는 면적 2.48㎡~3.22㎡의 소거실에 2~3명이 수용되어 있어 취침시 동절기에 지급되는 법무부 「수용자 의류 및 침구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8] 에서 정한 규격품의 매트리스조차 원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접거나 포개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도소 조사·징벌거실의 경우는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08㎡(0.33평)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는 시설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거실 과밀 수용의 원인은 독거실 부족으로 인해 독거를 원하는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수용자에게 독거 대체수단으로 소거실이 운용되고 있으며, 조사·징벌실의 경우 단순한 입실거부자에 대해서도 조사수용이 빈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독거실 확충 등 시설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단시일 내에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과밀 수용이 심각한 조사·징벌실에 대한 과밀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조 및 제10조는 면적이 협소한 소거실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설령 이러한 경우에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구금자를 신중히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거실, 특히 조사·징벌실의 수용상태는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물론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기준면적도 충족하지도 못한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입실거부 즉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는 대신 거실을 다시 배정할 때까지 임시 대체거실에 수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사·징벌실 과밀수용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김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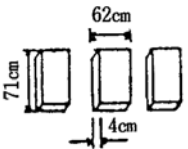
〈별지〉 관련 법령

가.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2007. 5. 30. 법무부령 제612호)」
제5조 (침구의 품목·색채 및 규격) 수용자 침구의 품목은 이불(솜이불 및 겹
이불)·매트리스·담요 및 베개로 구분하며, 그 색채 및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침구

1. 솜이불 및 겹이불 <생략>
2. 매트리스

색채 및 지질	규격	도형
가. 일반매트리스 : 청록색 평직	가. 일반매트리스 : 3단접 차식 화학솜으로 함	가. 일반매트리스 
나. 환자매트리스 <생략>		

나.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2008. 6. 26. 예규보일 제803호)」
제5조 (수용정원 산정기준) ① 각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
한다.

1. 수용정원은 혼거실 0.78평당 1명, 독거실 1실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
2. <생략>

다. 국제기준 :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
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 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
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3. 시설 및 처우

1 2006.11.13자 05진인2125, 05진인2188 병합 결정 [토요일 및 공휴일 접견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2005. 7. 1. 주5일근무제 시행 이전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제도를 폐지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 접견을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은 사실상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37조, 제61조, 제79조

【진정인】 김○○외 2인

【피진정인】 법무부 장관

【주 문】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5. 7. 1.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접견지침이 변경되어 토요일 접견 대상자를 법적가족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기왕에 실시하고 있었던 공휴일 접견제도를 폐지 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나. 피진정인

(1) 행형법시행령 제55조(접견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는 수용자 접견을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현재 인력사정으로는 공휴일·토요일에 제한 없이 접견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나, 2006년 9월부터 안양교도소 등 15개 교정기관에 대해 토요일 접견과 운동을 평일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3) 필요한 인력 충원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3. 관련법령 등

가. 행형법제18조(접견)

(1)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4)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행형법시행령(제4장 접견과 통신)

(1) 제54조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2) 제55조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3) 제56조 (접견의 횟수)

①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 회로 한다.

(4)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다.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1)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제37조).

(2)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제61조).

(3)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79조).

4. 인정사실

가. 휴무토요일 접견관련 인권위 권고(2005. 2. 28. 전원위 결정)

(1) 법무부장관에게 인력재배치, 교대근무제 개선, 교도관 인력증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도 수용자들의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법무부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06년 9월부터 안양교도소 등 15개 교정기관에 대해 토요일 접견 및 운동을 평일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3) 또한, 법무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자체 증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표 1] 교도관 총원요구 계획(법무부 보안제2과-4654, 2005. 12. 8, 단위 명)

구 분 \ 연 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소요인원	8,790	2,526	2,337	2,507	900	520
① 3교대제 운영	2,250	750	750	750		
② 토요일휴무일 운동·접견 소요인력	1,494	498	498	498		
③ 신설 교정기관 소요인력	1,235	342	171	342	380	
④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대체 계호인력	2,600	520	520	520	520	520
⑤ 겸직 근무 해소를 위한 소요인력 충원	890	297	296	297		
⑥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충원	182	60	62	60		
⑦ 분류처우 과학화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120	40	40	40		
⑧ 교정업무 전산화 및 직업훈련 전문인력	19	19				

나.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수용자 운동·접견 지침(법무부 보안제1과-6250)

- (1) 토요일 접견시간은 09:00부터 16:30까지 평일과 동일하게 실시하되,
- (2) 접견대상자를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주중 접견을 하지 못한 수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부통근 및 전일근로 작업수용자로 제한하고 있다.
- (3)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하며, 주중 면회를 한 사람은 휴무토요일에 다른 사람과 동반하여 접견할 수 없다.
- (4) 기존 일요일 및 휴일 실시하던 원거리 접견제도를 폐지하여 일요일, 공휴일은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 (5)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1일을 지정하여 접견을 실시한다.

(6) 따라서, 본 지침은 토요일 접견을 일부 확대(거리·지역 구분 없이 법적가족에게 접견권을 보장)한 대신 기왕에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을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수용자와 민원인들에게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05. 7. 1. 이전과 이후의 접견제도 비교

구 분		이 전	이 후
접견 횟수	미 결	매일 1회	변동 없음
	기 결	누진급수에 따라 월 4~6회, 수시	"
접견시간		30분내	"
접견실시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접견일	평일	제한 없음	변동 없음
	토요일	근무토요일은 평일과 같음. 휴무토요일은 아래 공휴일 접견 내용과 같음.	- 당초 주중에 접견하지 못한 법적 가족에 한해 실시 - 2006년 9부터 15개소에서 평일과 같이 실시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 교도소로 확대 실시예정
	공휴일	다른 시·도 등 원거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견 하지 않은 자	접견 미실시

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2005.5.25. 행자부 예규 제165호)

(1) 본 지침은 2005. 7. 1.부터 전면 시행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본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이라 함은 교도소·지구대·기동대·소방서·세관·검역소·항공관제·경비합정·기상대 등이다.

(3)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관별로 인력 재배치 및 근무일 조정, 교대 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올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경우 우선 기관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라. 행형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 종합

(1)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표 3] 교정시설 접견건수 및 인원(자료 법무부, 2005년 1~6월말 현재)

요일별	구분	접견 건수	접견 인원인 현황				계
			가족	친지	지인	기타	
평 일		914,034 (84.7%)	721,764	103,065	361,604	173,889	1,360,322 (83.5%)
토요일		96,080 (8.9%)	85,362	12,320	36,093	18,612	152,387 (9.4%)
공휴일		69,297 (6.4%)	65,060	15,023	26,348	9,884	116,315 (7.1%)
계		1,079,411	872,186	130,408	424,045	202,385	1,629,024

(3)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도 상반기(1월~6월) 중 공휴일 접견 건수는 69,297건으로 교도소별 공휴일 1일 평균 약 50여건의 접견(전국 47개 교도소, 월 평균 공휴일 수 5일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전체 접견 1,079,411건의 6.4%에 해당된다.(평일 교도소별 1일 평균 접견 건수는 약 150여건임)

5. 판단

가. 행정자치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 인력 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견시간(30분내)·횟수(매월 4회)·접견대상자 등을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 외에도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 예외적으로 허가된 휴일 접견건수(2005년도 상반기)가 69,297건으로서 그 건수가 적다 할 수 없고, 이는 소장의 재량으로 행형법의 예외조항에 의한 접견을 허가할 수 있고, 그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은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 2005년 상반기 일 평균 공휴일 접견건수가 교도소당 약 50여건으로 평일 150여건의 약 1/3에 해당되므로 전일을 실시하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 접견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 예약접견 등을 통해 1일 접견건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제61조)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 평일이나 토요일에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공휴일에 접견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인들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 제도를 폐지한 것은 교도관의 휴식권 보장, 계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교도소는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서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인력만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기관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2005. 7. 1. 주5일근무제 시행 이전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던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공휴일 접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해 접견제도가 민원인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일요일 등 공휴일 접견을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은 사실상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이해학 위 원 정인섭

2 2007.3.12자 06진인2832 결정 [알몸검신에 의한 인권침해]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금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 ○○교도소장에게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검사를 실시한 교감 조○○, 교위 정○○, 교위 박○○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없는 조사실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에게 항문검사 등 신체수색을 한 행위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함

[참조조문] 「행형법」 제17조의2(신체검사 등), 「행형법시행령」 제42조·제43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44조, 「계호근무준칙」 제70조·제81조, 「수용자징벌및규율에관한규칙」 제9조, 「행형법 전부 개정안」 제92조,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6,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8조

[진 정 인] 유○○

- [피진정인]**
1. ○○교도소 교감 조○○
 2. ○○교도소 교위 정○○
 3. ○○교도소 교위 박○○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금시설의 장으로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교도소장에게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검사를 실시한 교감 조○○, 교위 정○○, 교위 박○○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6. 10. 24. 16:55 경 출역 후 폐방점검을 받기 위해 입방하던 중, 보안관리과 앞 복도에서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을 조사실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실에서 조○○, 최○○, 이○○ 그리고 또 한명의 성명불상 주임 등 4명의 직원이 진정인을 둘러싸며 진정인에게 속옷까지 벗을 것을 강요하며 알몸검신을 하여 진정인은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10. 24. ○○교도소 조사실에 평상시 신체수색을 당하지 않는 1급수인 진정인이 교도소 내 부정물품인 담배를 보관·운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어, 교위 박○○이 종이6공장 출역을 마친 진정인을 조사실로 임의 동행하였다.

2) 조사실에서 교감 조○○, 교위 정○○, 교위 최○○, 교위 박○○, 교사 이○○가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을 조사실로 동행한 사유와 신체수색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사실 출입문을 차단한 상태로 조사실 한 쪽 모퉁이에서 보안관리과 당직교감 조○○ 직원이 진정인의 신체가 다른 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몸으로 막은 상태에서 조사실 소속 교위 정○○와 당직교감 조○○의 명을 받은 교위 박○○이 진정인의 속옷을 탈의시키고 신체수색을 실시하였다.

3) 「계호근무준칙」 제70조는 신입수용자 신체검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존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서, 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로는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신체수색을 실시하여 피검자의 인권 보호에 신중을 기하겠다.

3. 관련규정 및 판례

가. 「행형법」

제17조의2(신체검사 등)① 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 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나. 「행형법 시행령」

제42조(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수용자의 신체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44조(거실검사 등)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거실·작업장·기타 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라. 「계호근무준칙」

제3절 신입자 조사근무

제70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머리카락·귓속·거드랑이·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항문·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검사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신속하게 하고, 가급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검사를 하기 전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수검근무

제81조(거실검사) ③ 거실검사는 가급적 수용자가 운동·목욕 등으로 거실 안에 없을 때 실시하고, 수용자가 거실 안에 있을 때에는 검사 직원 1명은 수용자를 복도에 정렬시켜 신체 및 의류검사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거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수용자징벌 및 규율에 관한 규칙」

제9조(조사자 준수사항)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바. 법무부 제출 「행형법 개정(안)」

제92조(신체검사 등)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사.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원칙6 -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아.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8조(신체의 수색·검증) ① 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탈의 상태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자. 관련 판례 - 2001다51466대판

(생략)…….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 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걸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가. 영문도 모른 채 알몸검신을 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 교도소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에게 투서내용을 설명하면서 부정물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신체수색과 검방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신체수색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나. 2006. 10. 24. 16:55 경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교도소 조사실에서, 당직교감 조○○이 자신의 몸으로 진정인의 몸을 가리고 교위 정○○와 교위 박○○이 진정인의 신체를 수색하였고, 수색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가운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진정인의 상·하의를 탈의시켰으며, 당시 조사실에는 위 피진정인 외에 교위 최○○과 교사 이○○가 책상에 앉아 고유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평상시 신체수색을 받지 않는 1급수인 진정인이 담배를 보관하여 운반하고 있다는 투서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항문 속에 담배·마약 등을 보관하다 적발된 전례가 있으므로 2006. 10. 24. 16:55 경 진정인에 대해 신체수색을 실시한 행위는 「행형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없는 조사실에서, 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의 옷을 탈의시킨 상태로 신체수색을 한 행위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계호근무준칙」 등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규정한 제 규정에 신체검사 대상자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실시 인원,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제도적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본 진정사건의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한 피진

정인들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여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정재근

3 2007.11.16자 07진인3392 결정 [부당한 재판 및 내복 반입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은 수용자에게 춘추복이나 내의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날씨, 수
용여건, 환자, 노약자 등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
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춘추복을 지급함에 있어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
지가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행형법시행령」 제126조, 「영치금품 관리규정」
제28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구치소 수용중)

【피진정인】 1. ○○지방법원 ○○○
2. ○○구치소장

【주 문】 1. 피진정인 ○○구치소장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
용자 춘추복 지급 시기를 날씨 또는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 건강상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적
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의 구속기간이 6개월 넘었으며, 기피신청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2조와 제92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재판장이 부당한 재판(재판장의 공포분위기 조성, 재판장의 부당한 증거 채택,
재판장의 피고인 진술 부당 제지, 재판장의 법률해석 오류)을 진행하고 있다.

나. ○○구치소는 피해자 ○○○의 가족이 피해자 ○○○에게 내복을 넣어 주려는데 법규정도 없는 사유로 거절하여 피해자 ○○○가 감기에 걸리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2007. 9. 1. 14:00경 수용자 ○○○의 가족(여동생)이 내의 상하 한 벌과 긴팔티셔츠 2장을 차입시키려 했으나 춘추 평상복(내복 포함) 지급 기준일이 2007. 9. 17.이므로 차입 시기 또한 2007. 9. 17.부터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2) 이후 춘추복을 착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007. 9. 17. 이전이라도 외래인이 춘추복(내복 포함) 등을 차입시키기를 원할 때는 미리 차입 받아 영치를 하였으며, 수용자 ○○○에게도 그 가족이 2007. 9. 5. 차입시킨 내의 상하 1벌과 긴팔티셔츠 1장은 영치시킨 후 2007. 9. 18. 수용자 ○○○에게 교부하였고, 2007. 9. 15. 가족이 차입시킨 내의 상하 1벌과 긴팔티셔츠 1장 또한 수용자 ○○○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시행령」

제126조(영치물품의 조치)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영치금품 관리규정」(법무부 예규일보 제705호, 2004. 7. 3.)

제28조(영치품 허가기준)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의 허가기준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과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대 허가기준에 없는 품목 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있거나 날씨·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노약자 등에게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서 정한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재판진행관련)

진정내용이 법원의 재판(재판장의 공포분위기 조성, 재판장의 부당한 증거 채택, 재판장의 피고인 진술 부당 제지, 재판장의 법률해석 오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내복지급불허 관련)

1)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치소측은 「2007년도 수용자 생활용품 및 수용물품 지급 계획」(보안과○○, 2007. 3. 16, 내부결재)과 「수용자 춘추복 지급 계획」(보안관리과○○, 2007. 9. 10, 내부결재)에 의거 2007. 9. 17.부터 수용자들에게 춘추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의 동생 ○○○는 2007. 9. 1. 피해자에게 내의 상하 한 벌과 긴팔 티셔츠 2장을 차입시키려 하였으나, ○○구치소는 위 가)항의 계획에 의거 2007. 9. 17.부터 내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돌려주었다.

다) 또한 ○○구치소측은 2007. 9. 5. 피해자의 처형 ○○○외 2명이 영치한 내복을 2007. 9. 18.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동생 ○○○가 2007. 9. 15. 영치한 내복은 2007. 9. 15. 당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구치소측은 2007. 9. 1. 피해자의 가족이 영치한 내의 등에 대해 내복 착용은 2007. 9. 17.부터 착용할 수 있다는 이유

로 영치품을 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치금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단서가 “소장은 낄씨·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자·노약자 등에게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서 정한 수량을 증감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춘추복이나 내의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낄씨, 수용여건, 환자, 노약자 등 개별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춘추복을 지급함에 있어 수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정재근

4 2008.3.24 자 07진인4211 결정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법무부와 국방부가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진정인을 일반교도소로 이송하고 이송 후 분류심사시 군교도소에서의 행형등급과 수용생활 태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일반교도소 누진제급 4급에 편입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변경·제도의 차이·입법 불비의 책임을 수용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군교도소 수용자 출신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진정인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결정요지】

- [1] 법무부장관에게, 분류처우 관련 규정 개정 시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수용자의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과, 개정 전이라도 부정기 재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별 처우할 것을 권고
- [2] 국방부장관에게, 법무부의 분류처우 관련 규정 개정 시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의 부정기 재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행형법」 제1조의3,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제22조,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522호, 2002.8.19.) 제3조, 「군행형업무처리지침」(개정 법무-7175, 2006.12.18.)

【진 정 인】 ○○○

- 【피진정인】**
- 1. 법무부장관
 - 2. 국방부장관

- 【주 문】**
- 1. 법무부장관에게,
분류처우 관련 규정 개정 시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수용자의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과, 개정 전이라도 부정기 재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별 처우할 것을 권고한다.
 - 2. 국방부장관에게,
법무부의 분류처우 관련 규정 개정 시 군교도소에서 일반교

도소로 이입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의 부정기 재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군행형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진정인은 2007. 8. 13. 육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진정인은 육군교도소에서 행실등급이 1등급이었으나 진정인과 같은 이송자에게 적용되는 분류처우 규정이 없어, 의정부교도소에서는 진정인을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누진계급 4급에 편입하고 책임점수 240점을 배정하였다. 진정인과 같이 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구제해주시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법무부

가) 현행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는 군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용자가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신입수용자로 간주하여 분류심사 후 처우하도록 되어 있고 이송된 날부터 「행형법」을 적용받게 되며, 신분도 군수용자에서 일반수용자로 변경된다.

나) 군교도소에서의 진급은 일반교도소처럼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체계가 아니라 상위의 행실등급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 심사를 통해 상위의 행실등급으로 진급시키는 체계이며, 「군행형법시행규칙」에 따라 1년을 경과할 때 행실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 일반교도소에서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초 ‘형집행지휘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반해 군수용자는 일반교도소에 입소한 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군교도소에서 집행한 기간은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사실상 책임점수에서 제외되어 책임점수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라) 또한 정기·부정기 재심사나 특별진급 사유에 해당하는 처우성과가 발생하면 개선급 변경이나 특별진급 등을 통한 조기진급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책임점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행실등급 1급 처우를 받다가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후 신입수용자(누진4급)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교도소와 군교도소는 진급에 대한 평가기준과 체계가 상이하므로 군교도소에서의 행실급수를 일반교도소에서 연계처우하지 않음이 차별이라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마)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입되는 수용자의 행장등급이 변경되는 이유는 민간교도소 처우관련 규정인 「행형법」 및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군행형법」의 행장등급 승진에 대한 평가기준 및 운영체계의 상이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바) 일반교도소 이입 후 군교도소의 행실등급에 완전히 부합하는 연계처우는 곤란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의 연계처우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검토 중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및 「분류처우업무지침」에 군교도소 이입자 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2) 국방부

가) 「군행형법시행규칙」상의 행실등급 제도는 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민간교도소의 분류처우 및 책임점수제도는 일반수용자에게 적용 되는 것이다. 양 제도는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평형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실등급을 분류처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군교도소 수용자가 민간교도소로 이송될 경우 군교도소에서의 행실등급이 분류처우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반영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반영정도에 대한 내용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으로 생각된다.

다) 법무부 측에서 군교도소 이입자 처우에 관한 사항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반영되도록 개정할 계획이라면 국방부에서도 그러한 개정작업에 최선을 다해 동참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이송 및 재 수용된 수형자의 급별 처우) ① 수형자를 이송 받은 교도소장은 당해 수형자에 대하여 이송한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구치지소(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와 동일한 급별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③ 부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1.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하기로 결정한 때
4.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상 필요한 때
5.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 합격한 때
6.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편입 및 진급순서)신입수형자는 제4급에 편입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킨다.

제23조(책임점수) ① 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 각 호의 1의 범수 및 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함에 있어 월 단위는 이를 버린다.

1. 초범자인 경우 :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생략)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제24조(소득점수) ① 매월의 행형성적에 의한 소득점수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소행점수 : 최고 6점
2. 작업점수 : 최고 6점
3. 상훈점수 : 최고 3점 (이하생략)

제29조(진급) ① 계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이 경우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소득점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계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개선급의 변경에 의하여 진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접견 및 서신의 허용 횟수) ① 수형자별 접견허용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급 수형자 : 매월 4회
2. 제3급 수형자 : 매월 5회
3. 제2급 수형자 : 매월 6회
4. 제1급 수형자 : 수시 (생략)

제51조(전화사용) ① 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 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522호, 2002.8.19.)

제3조(분류심사유예)

라. 집행할 형기

- (1) 집행할 형기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임.
- (2) 직업소한 수형자(군 수형자, 대용유치장에서 이입된 수형자)는 이입된 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마. 「균형형업무처리지침」(개정 법무-7175, 2006.12.18.)

1. 목적

이 지침은 군 미결수용자와 군 수형자에 대한 행형의 기본원칙, 수용, 이송, 가석방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생략)

3. 군수형자의 수용

가. 군교정시설에의 수용 (생략)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에 관한 특례

(생략), '06. 12. 31. 이전에 수용되어 있는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수행자는 국방부 수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

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12.22)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후 육군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한식조리사 자격증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예전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였고, 행실등급 4급에서 출발하여 5년 만에 행실등급 1급으로 승급하였다.

진정인은 「군행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07. 8. 13. 일반교도소인 00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07년 하반기 외국어 전문교육생으로 선발되어 2007. 9. 18.부터 현재까지 000교도소 제9기 영어전문 교육생으로 수용중이다.

나. 일반교도소는 누진계급과 개선급의 조정을 통해 분류처우하고 있음에 반해 군교도소의 경우 행실등급 하나만을 적용하여 재심사하고 있다. 군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급심사는 다른 나라의 가석방 심사제도와 같은 성격의 제도로써 일반교도소의 분류처우 및 누진제도와 근본 취지가 다른 제도이다.

다. 일반교도소 수용자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책임점수를 산정하고 있고,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군교도소 출신 수용자는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집행할 형기를 이입된 날로부터 형기종료일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어 책임점수 산정 방식이 상이하다.

라. 진정인이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직후 최초로 작성된 진정인의 분류심사표에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의하면 형확정일을 2007. 9. 1. 로 보고 있으며, 개선급을 B(범죄성향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관리급을 g2(중간계호급으로 구내 관용작업이 적합한 자), 처우급을 N(관용작업에 적합한 자)으로 분류하였으며, 심리측정사항 '종합판정란'에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자로 교정교화에 순응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책임점수 240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형기 3분의 2 도달 시점인 2010. 1. 6. 까지 책임 점수 240점을 모두 소각했을 경우에만 정기재심사 및 정기등급변경심사를 통해 진급할 수 있는데, 진정인은 현재 월 7 ~ 12점 내외의 소득점수만을 받고 있어, 교육기간이 종료되고 원래의 교도소로 환소될 것을 가정한다면 남은 2년 동안 총 240점의 책임점수를 소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진급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마. 법무부 측은 일반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진정인처럼 형기 13년을 받았다면 누진급수 1급까지는 통상 10년이 소요되므로, 군교도소에서 받았던 행실등급과 일반교도소 누진계급을 비교하였을 경우 오히려 일반교도소 수용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000교도소 수용자 000의 경우 형기 10년에 미결구금일수 1년을 포함하여 수용기간 4년 5개월 만에 누진계급 2급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00교도소 수용자 000의 경우 형기 15년에 누진계급 2급·개선급 A·책임점수 70점이 남아 있어 수용기간이 3분의 2시점에 이르지 않더라도 누진계급 1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법무부 측의 주장은 보편타당하지 않다.

바. 2007. 12. 4. 기준으로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수용자는 형 확정과 동시에 이입된 46명과 형 집행 중 이입된 수용자 15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이다.

법무부는 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5명(군교도소 행형등급 1급인 수용자 1명, 2급인 수용자 2명, 3급인 수용자 1명, 4급인 수용자 11명) 전원을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누진계급 4급에 편입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의 경우 전화사용 횟수가 월 4회에서 0회로, 접견 허용 횟수는 월 7회에서 4회로 누진처우 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국방부는 '관련규정 부존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군교도

소에서 이입된 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변경, 제도의 차이, 입법 불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수용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추구하여야 하는 교정 행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6년 미국교도소에서 국제 이송되어 현재 0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수용생활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급별 처우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하게 이송된 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 기준과 적용법규에 혼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법무부와 국방부가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을 실시함으로써 분류심사 시 군교도소에서의 행형등급과 수용생활 태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일반교도소 누진계급 4급에 편입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변경·제도의 차이·입법 불비의 책임을 수용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군교도소 수용자 출신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진정한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하였는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원형은

5 2008.12.29자 08직인16결정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및 휴무일 보장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구금시설 취사장에 취업한 수용자가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휴일도 없이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정을 계기로 서울구치소 등 47개 구금시설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및 휴무일 작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의거 취사장 관용부에게는 공휴일·[2]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취사장 관용부에게 휴무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관용부에 비해 현저하게 휴무가 제한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 교도관들의 일부는 가석방·귀휴접견 등에 있어서 취사장 관용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휴무제 실시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휴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2] 결국 취사장 관용부에게 일반작업장 관용부보다 1일 평균 5~6시간, 주 평균 25~30시간 더 많이 작업을 시키고, 휴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2주 또는 3주에 1회 정도로 일반작업장 관용부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하루 및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7. 7. 31.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 및 제11조가 보장하는 취사장 관용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사장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취사장 관용부에게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22. 시행) 제4조, 제45조, 제66조, 제71조, 구 「교도작업 운영규정」(법무부 예규 제747호, 2008. 12. 22. 폐지)제12조, 「교도작업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838호, 2008. 12. 22. 시행)제11조, 「근로기준법」(법률 제9038호, 2008. 3. 29. 일부개정)제50조, 제55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75조

【피조사기관】 <별지 1> 기재의 서울구치소 등 47개 구금시설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1. 구금시설 취사장에 취업한 수용자가 종교집회에 참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구금시설 취사장에 취업한 수용자가 주 1회 이상 휴무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교도작업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838호, 2008. 12. 22.)이 정한 작업시간이 준수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구금시설 취사장에 취업한 수용자(이하 “취사장 관용부”라 한다.)가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휴일도 없이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다수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및 휴무일 작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10.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구치소 등 47개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관련

1) 인정사실

가) 2008년 9월 현재 피조사기관 47개 구금시설 전체의 취사장 관용부 현황은 <표1> 및 별지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원이 1,778명인데 반해 현원은 1,605명으로 정원의 9.7%에 해당하는 173명이 부족하다.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피조사기관의 72.3%에 해당하는 34개소는 취사장 관용부의 현원을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용하고 있다.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율이 20% 이상인 구금시설은 수원구치소 평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택지소 등 9개소, 부족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구금시설은 여주교도소 등 7개소, 부족율이 1% 이상 10% 미만인 구금시설은 강릉교도소 등 18개소이다. 반면에 취사장 관용부를 정원대로 운영하는 구금시설은 서울구치소 등 11개소(23.4%)이고,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은 대구구치소와 천안개방교도소 2개소(4.3%)이다.

〈표1〉 구금시설별 취사장 관용부 현황(2008년 9월 기준)

구 분		구금시설					구금시설명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율, C/A)
		개소	구성비 (%)	정원 (명) (A)	현원 (명) (B)	과부족(명) (C) =(B-A)	
정원 > 현원	부족율 20% 이상	9	19.1	309	217	△9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53.3%), 전주교도소(39.4%),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소 포함, 32.5%), 청주여자교도소(28.0%), 진주교도소(25.0%), 울산구치소(25.0%), 대구교도소(22.8%), 청송제2교도소(20.0%)
	부족율 10% 이상 ~20%	7	14.9	288	246	△42	여주교도소(18.7%), 영등포교도소(15.8%), 순천교도소(14.5%), 부산구치소(13.3%), 공주교도소(13.3%), 의정부교도소(12.5%), 장흥교도소(11.7%)
	부족율 1% 이상 ~10% 미만	18	38.3	763	720	△43	강릉교도소(9.5%), 청송교도소(8.7%), 안양교도소(8.3%), 안동교도소(8.1%), 목포교도소(8.0%), 인천구치소(7.3%), 마산교도소(7.3%), 포항교도소(6.6%), 수원구치소(5.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5.5%), 통영구치소(4.5%), 대전교도소(4.4%), 청송제3교도소(4.0%), 김천교도소(3.6%), 춘천교도소(3.0%), 청주교도소(2.4%), 영등포구치소(2.2%), 성동구치소(1.9%)
	소계	34	72.3	1,360	1,183	△177	
정원 = 현원		11	23.4	370	370	0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군산교도소, 원주교도소, 충주교도소, 제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홍성교도소, 경주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정원 < 현원		2	4.3	48	52	4	대구구치소<3명 더 운용>, 천안개방교도소<1명 더 운용>
합계		47	100.0	1,778	1,605	△173	전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율 : 9.7%

나) 피조사기관은 모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별로 주1회 화·목·수요일에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피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

월 현재 피조사기관의 전체 취사장 관용부 1,605명 중 67.4%에 해당하는 1,082명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이다. 피조사기관의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현황은 <표2> 및 별지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신자 전원이 참석한 구급시설은 28개소(59.6%), 신자 중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못한 구급시설은 12개소(25.5%)이며, 신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 구급시설도 7개소(14.9%)나 된다. 신자의 일부만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못한 군산교도소 등 12개 구급시설은 신자 379명 중 21.1%인 80명은 참석을 하였고, 78.9%인 299명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신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 7개 구급시설은 순천교도소, 안양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로 신자수는 203명이다.

<표2>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현황(2008년 9월 기준)

종교집회 참석		구급시설		신자수(명) (참석율 또는 미참석율, %)			구급시설명
		개소	구성비	계	참석자	미참석자	
신자 전원 참석	매주	14	29.8	195 (100.0)	195 (100.0)	0	안동교도소, 김천교도소, 충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청송계2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통영구치소, 대구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성동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진주교도소
	격주	4	8.5	51 (100.0)	51 (100.0)	0	울산구치소, 의정부교도소, 흥성교도소 서산지소, 천안개방교도소
	3주 1회	3	6.5	94 (100.0)	94 (100.0)	0	인천구치소, 청주교도소, 장흥교도소
	매주 또는 격주	4	8.5	113 (100.0)	113 (100.0)	0	수원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청송교도소, 마산교도소
	매주 또는 3주 1회	2	4.2	23 (100.0)	23 (100.0)	0	강릉교도소, 공주교도소
	매주, 격주 또는 3주 1회	1	2.1	24 (100.0)	24 (100.0)	0	청송계3교도소
	소계	28	59.6	500 (100.0)	500 (100.0)	0	
신자 일부 참석 및 미참석	12	25.5	379 (100.0)	80 (21.1)	299 (78.9)	군산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여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춘천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경주교도소, 제주교도소, 흥성교도소	
신자 전원 미참석	7	14.9	203 (100.0)	0	203 (100.0)	순천교도소, 안양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합계	47	100.0	1,082 (100.0)	580 (53.6)	502 (46.4)		

제2장 구급시설 관련

다) 구급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와 별도로 대전교도소 등 15개 구급시설의 취사장 관용부 225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집회 참석현황 및 불참사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주 또는 격주로 참석하는 자는 극소수(각각 1.3%, 4.9%)인데 비해 대다수(91.6%, 206명)는 종교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82.2%(185명)가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서”, 15.6%(35명)가 “작업 및 운동시간 등과 겹쳐서”라고 응답했다.

〈표3〉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현황 및 불참사유 설문조사 결과

구분		참석현황				불참사유		
		매주참석	격주참석	불참	무응답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서	작업 및 운동시간 등과 겹쳐서	무응답
응답자(명)	225	3	11	206	5	185	35	5
구성비(%)	100.0	1.3	4.9	91.6	2.2	82.2	15.6	2.2

라) 또한 위 구급시설의 교도관 225명을 대상으로 한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65.8%가 “작업인력 증원”을, 17.8%는 “외부업체 위탁의뢰”를 들었다. 반면에 12.9%는 “가석방, 귀휴, 접견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해도 무방하다”고 응답했고, 3.5%는 “종교집회 2부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표4 참조).

〈표4〉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방안 설문조사 결과

과명	구분		작업인력 증원		외부업체 위탁의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제한해도 무방		종교집회 2부제 실시	
	응답자(명)	구성비(%)	응답자(명)	구성비(%)	응답자(명)	구성비(%)	응답자(명)	구성비(%)	응답자(명)	구성비(%)
교육교화과	75	100.0	48	64.0	9	12.0	14	18.7	4	5.3
분류심사과	75	100.0	52	69.3	14	18.7	8	10.7	1	1.3
작업과 및 기타	75	100.0	48	64.0	17	22.7	7	9.3	3	4.0
합계	225	100.0	148	65.8	40	17.8	29	12.9	8	3.5

2)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22. 시행)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의식 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조사기관 47개 구금시설 중 취사장 관용부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구금시설이 72.3%인 34개소에 이르고, 설문조사 대상 취사장 관용부의 82.2%가 같이 일하는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방안으로 설문조사 대상 교도관들의 65.8%가 작업인력 증원을, 17.8%가 외부업체 위탁의뢰를 들고 있는 사실에 의할 때, 취사장 관용부가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된 사유는 취사장 관용부 작업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취사장 관용부가 매주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구금시설은 30%인 14개소에 불과한 반면 참석하지 못하는 구금시설은 70%인 33개소에 이르고, 설문조사 대상 취사장 관용부의 91.6%가 종교집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며, 순천교도소 등 7개 구금시설은 취사장 관용부의 신자 전원이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작업인력 부족은 종교집회 참석 제한사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 교도관들의 12.9%가 가석방, 귀휴, 접견 등에 있어서 취사장 관용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취사장 관용부들은 작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교집회 참석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취사장 관용부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취사장 관용부의 작업휴무제 관련

제2장 구금시설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조사기관 47개 구금시설이 제출한 수용자동작시간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사장 관용부의 작업시간은 1일 평균 13~14시간으로 주 5일 기준으로 주 65~70시간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1일 평균 8시간, 주 40시간의 작업을 하는 일반작업장 관용부에 비해 1일 평균 5~6시간, 주 25~30시간 더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취사작업은 연중 휴무없이 실시된다.

<표5> 취사장 관용부의 작업시간

구분	1일 평균 작업시간	주(5일) 평균 작업시간
취사장 관용부(A)	13~14시간	65~70시간
일반작업장 관용부(B)	8시간	40시간
차이(A-B)	5~6시간	25~30시간

나) 또한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9월 현재 취사장 관용부에 대해 매주 1회 휴무제를 실시하는 구금시설은 서울구치소 등 12개소(25.5%), 2주 1회 실시하는 구금시설은 대구교도소 등 19개소(40.4%), 3주 1회 실시하는 구금시설은 대전교도소 등 13개소(27.7%)이고, 공주교도소·통영구치소·강릉교도소의 3개 구금시설은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6> 취사장 관용부에 대한 휴무제 실시 현황

휴무제 실시	구금시설수		구금시설명
	개소	구성비(%)	
매주 1회	12	25.5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마산교도소, 순천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김천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충주구치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2주 1회	19	40.4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인천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청송교도소,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포항교도소, 진주교도소, 목포교도소, 대구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원주교도소, 안동교도소, 장흥교도소, 청송제3교도소, 울산구치소, 홍성교도소
3주 1회	13	27.7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성동구치소, 전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영등포교도소, 군산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경주교도소, 제주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미실시	3	6.4	공주교도소, 통영구치소, 강릉교도소
합계	47	100.0	

다) 대전교도소 등 15개 구금시설의 취사장 관용부 225명을 대상으로 취사장 관용부의 휴무제 실시에 대한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주 1회 휴무를 하는 자는 32.5%인 73명, 3주 1회 휴무를 하는 자는 59.0%인 133명이며, 휴무를 전혀 하지 못한 자도 1.8%인 4명으로 나타났다.

<표7> 취사장 관용부의 휴무제 실시 설문조사 결과

구분		휴무제 실시			
		2주 1회	3주 1회	없음	기타
응답자(명)	225	73	133	4	15
구성비(%)	100.0	32.5	59.0	1.8	6.7

라) 또한 위 구금시설의 교도관 225명을 대상으로 취사장 관용부의 휴무제 보장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1%(196명)는 “작업인력 증원”을 든 반면, 12.9%(29명)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8> 취사장 관용부의 휴무제 보장 방안 설문조사 결과

구분			작업인력 증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별도의 방안 불필요	
과명	응답자(명)	구성비(%)	응답자(명)	구성비(%)	응답자(명)	구성비(%)
분류심사과	75	100.0	57	76.0	18	24.0
교육교화과	75	100.0	69	92.0	6	8.0
작업과 및 기타	75	100.0	70	93.3	5	6.7
합계	225	100.0	196	87.1	29	12.9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중략).....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작업시간과 관련해서는 구 「교도작업 운영규정」(법무부 예규 제747호, 2006. 3. 24) 제12조 제1항이 “수용자의 작업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은 작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8. 12. 22. 구 「교도작업 운영규정」이 폐지되고 「교도작업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838호)이 시행되었는데, 「교도작업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은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일 작업시간과 1주일 작업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근로기준법」(법률 제9038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취사 등 관용작업도 이에 근거하여 대가없이 행해지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수용자의 인권은 이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수용자의 관용작업에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구 「교도작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이 수용자의 작업시간을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작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나 새로 시행된 「교도작업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이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작업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단서에 의거 취사장 관용부에게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취사장 관용부에게 휴무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관용부에 비해 현저하게 휴무가 제한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 교도관들의 일부는 가석방·귀휴·접견 등에 있어서 취사장 관용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휴무제 실시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휴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취사장 관용부에게 일반작업장 관용부보다 1일 평균 5~6시간, 주 평균 25~30시간 더 많이 작업을 시키고, 휴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2주 또는 3주에 1회 정도로 일반작업장 관용부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하루 및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7. 7. 31.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 및 제11조가 보장하는 취사장 관용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사장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취사장 관용부에게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9.

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김양원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별지 1〉

피조사기관 47개 구금시설

지방교정청	피조사기관	
	개소	구금시설명
서울지방교정청	13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수원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인천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강릉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16	대구구치소, 부산구치소, 울산구치소, 통영구치소, 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청송제3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마산교도소, 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안동교도소, 김천교도소, 경주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11	충주구치소,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청주교도소, 청주 여자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천안개방교도소, 공주교도소,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광주지방교정청	7	광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목포교도소, 장흥교도소,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제주교도소
합계	47	

〈별지2〉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22 시행)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생략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행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66조(작업의무) 수행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7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3. 구 「교도작업 운영규정」 (법무부 예규 제747호, 2008. 12. 22. 폐지)

제12조(작업시간) ① 수용자의 작업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은 작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20세 미만 수용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은 작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③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동작시간표에 의한다.

④ 소장은 작업운영과 보안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

4. 「교도작업 운영지침」 (법무부 예규 제838호, 2008. 12. 22. 시행)

제11조(작업시간) ①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동작시간표에 의한다.

②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

5. 「근로기준법」 (법률 제9038호, 2008. 3. 29. 일부개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6.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별지3〉

구금시설별 취사장 관용부 정원 및 현원 세부 현황(2008년 9월 기준)

개소	피조사기관	정원(명) (A)	현원(명) (B)	과부족(명) (C)=B-A	정원 대비 과부족율(%) (C/A)
	구금시설명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15	7	-8	-53.3
	전주교도소	66	40	-26	-39.4
	천안소년교도소	40	27	-13	-32.5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청주여자교도소	25	18	-7	-28.0
	진주교도소	40	30	-10	-25.0
	울산구치소	28	21	-7	-25.0
	대구교도소	70	54	-16	-22.8
	청송제2교도소	25	20	-5	-20.0
7	여주교도소	48	39	-9	-18.7
	영등포교도소	38	32	-6	-15.8
	순천교도소	55	47	-8	-14.5
	부산구치소	60	52	-8	-13.3
	공주교도소	30	26	-4	-13.3
	의정부교도소	40	35	-5	-12.5
	장흥교도소	17	15	-2	-11.7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및 휴무일 보장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18	강릉교도소	21	19	-2	-9.5
	청송교도소	46	42	-4	-8.7
	안양교도소	60	55	-5	-8.3
	안동교도소	37	34	-3	-8.1
	목포교도소	50	46	-4	-8.0
	인천구치소	55	51	-4	-7.3
	마산교도소	55	51	-4	-7.3
	포항교도소	30	28	-2	-6.6
	수원구치소	52	49	-3	-5.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8	17	-1	-5.5
	통영구치소	22	21	-1	-4.5
	대전교도소	90	86	-4	-4.4
	청송제3교도소	25	24	-1	-4.0
	김천교도소	28	27	-1	-3.6
	춘천교도소	33	32	-1	-3.0
	청주교도소	42	41	-1	-2.4
	영등포구치소	46	45	-1	-2.2
	성동구치소	53	52	-1	-1.9
11	서울구치소	68	68	0	0.0
	광주교도소	55	55	0	0.0
	부산교도소	50	50	0	0.0
	군산교도소	45	45	0	0.0
	원주교도소	36	36	0	0.0
	충주교도소	24	24	0	0.0
	제주교도소	20	20	0	0.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20	20	0	0.0
	홍성교도소	19	19	0	0.0
	경주교도소	17	17	0	0.0
	청송직업훈련교도소	16	16	0	0.0
2	대구구치소	30	33	+3	+10.0
	천안개방교도소	18	19	+1	+5.5
합계 : 47		합계 : 1,778	합계 : 1,605	합계 : -173	-9.7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별지4〉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세부현황(2008년 9월 기준)

개소	피조사기관 구금시설명	현원 합계 (A)=(B+C)	신자 종교집회 참석(참석율)				비신자 (C)
			소계 (B)	매주 참석	격주 참석	3주1회 참석	
14	안동교도소	34	34(100.0%)	34(100.0%)			0
	김천교도소	27	24(100.0%)	24(100.0%)			3
	충주교도소	24	21(100.0%)	21(100.0%)			3
	원주교도소	36	19(100.0%)	19(100.0%)			17
	청송제2교도소	20	19(100.0%)	19(100.0%)			1
	청송직업훈련교 도소	16	16(100.0%)	16(100.0%)			0
	통영구치소	21	12(100.0%)	12(100.0%)			9
	대구구치소	33	11(100.0%)	11(100.0%)			22
	청주여자교도소	18	11(100.0%)	11(100.0%)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7	11(100.0%)	11(100.0%)			6
	성동구치소	52	9(100.0%)	9(100.0%)			43
	천안소년교도소	27	7(100.0%)	7(100.0%)			20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진주교도소	30	1(100.0%)	1(100.0%)			29
소계	355	195(100.0%)	195(100.0%)			160	
4	울산구치소	21	16(100.0%)		16(100.0%)		5
	의정부교도소	35	13(100.0%)		13(100.0%)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20	12(100.0%)		12(100.0%)		8
	천안개방교도소	19	10(100.0%)		10(100.0%)		9
	소계	95	51(100.0%)		51(100.0%)		44
3	인천구치소	51	46(100.0%)			46(100.0%)	5
	청주교도소	41	36(100.0%)			36(100.0%)	5
	장흥교도소	15	12(100.0%)			12(100.0%)	3
	소계	107	94(100.0%)			94(100.0%)	13
7	수원구치소	49	28(100.0%)	25(89.3%)	3(10.7%)		21
	영등포구치소	45	29(100.0%)	15(51.7%)	14(48.3%)		16
	청송교도소	42	26(100.0%)	15(57.7%)	11(42.3%)		16

취사장 관공부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및 휴무일 보장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마산교도소	51	30(100.0%)	9(30.0%)	21(70.0%)			21
	청송제3교도소	24	24(100.0%)	4(16.7%)	9(37.5%)	11(45.8%)		0
	강릉교도소	19	9(100.0%)	3(33.3%)		6(66.7%)		10
	공주교도소	26	14(100.0%)	1(7.1%)		13(92.9%)		12
	소계	256	160(100.0%)	72(45.0%)	58(36.2%)	30(18.8%)		96
12	군산교도소	45	35(100.0%)	7(20.0%)	10(28.6%)		18(51.4%)	10
	목포교도소	46	26(100.0%)	1(3.8%)	1(3.8%)		24(92.4%)	20
	서울구치소	68	61(100.0%)	14(23.0%)			47(77.0%)	7
	영등포교도소	32	32(100.0%)	10(31.2%)			22(68.8%)	0
	여주교도소	39	38(100.0%)	4(10.5%)			34(89.5%)	1
	부산구치소	52	32(100.0%)	4(12.5%)			28(87.5%)	20
	춘천교도소	32	23(100.0%)	4(17.4%)			19(82.6%)	9
	대구교도소	54	36(100.0%)	3(8.3%)			33(91.7%)	18
	대전교도소	86	53(100.0%)	1(1.9%)			52(98.1%)	33
	경주교도소	17	17(100.0%)		14(82.4%)		3(17.6%)	0
	제주교도소	20	18(100.0%)		5(27.8%)		13(72.2%)	2
	홍성교도소	19	8(100.0%)		2(25.0%)		6(75.0%)	11
	소계	510	379(100.0%)	48(12.7%)	32(8.4%)		299(78.9%)	131
7	순천교도소	47	47(100.0%)				47(100.0%)	0
	안양교도소	55	34(100.0%)				34(100.0%)	21
	평주교도소	55	34(100.0%)				34(100.0%)	21
	부산교도소	50	29(100.0%)				29(100.0%)	21
	전주교도소	40	26(100.0%)				26(100.0%)	14
	포항교도소	28	26(100.0%)				26(100.0%)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7	7(100.0%)				7(100.0%)	0
	소계	282	203(100.0%)				203(100.0%)	79
합계 : 47	합계	1,605	1,082(100.0%)	315(29.1%)	141(13.0%)	124(11.5%)	502(46.4%)	523

6 2008.12.8자 08직인12 결정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전국 8개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 접수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밀도 등 수용환경과 편의시설 확보현황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는 매개시설로서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해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생시설로서 화장실 대변기·화장실 소변기·화장실 세면대의 설치, 안내시설로서 점자블록 설치, 기타 접수대·작업대·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2]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중 현재 우리나라의 구금시설에 화장실 대변기는 437개 장애인 거실 중 420개 거실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99개에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 벽면손잡이를 갖춘 시설은 47개 구금시설 중 1개 교도소(00교도소 재활관)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정도로 넓고 수평 손잡이와 냉·온수 부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를 보유한 화장실 세면대를 갖춘 시설은 없다. 또한 설치가 권장되는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을 갖춘 시설도 없음.
- [3]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면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금시설측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해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제4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제1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조,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2008. 6. 25. 예규보일 제803호) 제3조, 제4조

【피진정인】 ○○교도소 등 장애인 전담 8개 구급시설 포함 전국 구급시설

【주 문】 1. 수용밀도 등 장애인 수용환경 관련

법무부장관에게

- 1) 장애인 수용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것,
- 2)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할 것,
- 3) 장애인 수용자에게 장애부위 찢질 및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를 충분히 지급할 것,
- 4)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시설 관련

가. 법무부장관에게

- 1)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사고 등 보안상 위험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
- 2)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관과 같은 사회적응 훈련 시설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장애인 수용자의 교육훈련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무부가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가.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2008. 6. 25. 예규보일 제803호) 제4조(특수기능 교정시설 지정·운영)에 근거하여 00교도소 등 전국 8개 구금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00교도소 등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 접수된 바 있다.

나. 이에 2008. 7. 15. 제13차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밀도 등 수용환경과 편의시설 확보현황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수용밀도 등 장애인 수용환경 관련

1) 인정사실

가) 2008. 8. 20.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7. 24. 현재 43,100명 정원의 전국 47개 구금시설에는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모두 합해서 47,598명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수용자는 전국적으로 1,695명이고 91개의 장애인 독거실 및 346개의 장애인 혼거실에 분산·수용되어 있다. 전국 47개 구금시설의 장애인 혼거실 정원은 1,711명인데, 2008. 7. 24. 현재 1,602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어 전체적인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를 볼 때 수용현원이 수용정원을 상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구금시설별 장애인 수용현황 및 수용밀도

(2008.7.24.기준, 진한색은 장애인 전담 시설)

기관명	수용 정원	장애인 현황						수용밀도	
		장애인 독거실수	장애인 혼거실수	독거실 정원	독거실 현원	혼거실 정원	혼거실 현원	장애인 독거실	장애인 혼거실
소계	43,100	91개	346개	93명	93명	1,711 명	1,602 명	100%	93.7%
00구치소	2,300		21			103	84		81.6
00교도소	2,000	3	12	3	3	60	32	100.0	53.3
00교도소	1,800		5			34	37		108.5
00교도소	1,450		8			42	50		119.0
00교도소	1,800		27			82	113		137.8
00교도소	1,530	3	9	3		42	43		102.4
00구치소	1,600	12	22	12	17	116	122	141.7	105.2
00구치소	1,300		12			39	45		115.4
00구치소	1,500		8			55	40		72.2
000구치소	1,250		6			42	46		109.5
00교도소	1,270	8	4	8	8	10	14	100.0	140.0
00교도소	1,600	16	20	16	13	80	66	81.3	82.5
00교도소	1,070		4			25	33		132.0
00교도소	1,200		6			42	32		76.2
000교도소	1,070	4	3	4	3	18	22	75.0	122.2
00교도소	1,150		27			162	176		108.6
00교도소	1,300		5			28	16		57.1
000교도소	900		1			3	4		133.3
00교도소	1,300	4	15	4	3	97	63	75.0	64.9
00교도소	950	1	3	1	2	21	17	200.0	81.0
00교도소	1,000	4	6	4	4	32	20	100.0	62.5
00구치소	750	2	9	2	1	27	50	50.0	185.2
00교도소	800		16			126	104		82.5
00교도소	750	4	20	4	6	102	132	150.0	129.4
00교도소	870		5			5			
00교도소	730	2		2	4			200.0	
00교도소	700	4	6	4	8	30	40	200.0	133.3
00교도소	650	4	11	4	2	24	19	50.0	79.2
00교도소	930		1			3			
00교도소	700		4			12	2		16.7

제2장 구급시설 관련

00교도소	670	3	6	3	3	33	38	100.0	115.2
00교도소	550	6	5	6	6	26	25	100.0	96.2
00교도소	700	4	7	4	3	23	11	75.0	47.8
00구치소	400		10			49	11		22.4
00교도소	450		2			13	18		138.5
00교도소	500	1	2	1	1	10	11	100.0	110.0
00교도소	330	1		1	1			100.0	
00교도소	330	2		2	2			100.0	
00구치소	500		2			13	8		61.5
00교도소	330	2	3	4	2	20	17	50.0	85.0
00교도소	250		5			25	30		120.0
00구치지소	250		3			16			
00구치지소	270		1			3	2		66.7
00구치소	250		3			9			
00구치지소	200	1	1	1	1	8	9	100.0	112.5

그러나 00구치소 등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장애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전국 20개 구급시설(장애인 혼거실 정원 863명, 현재 수용중인 장애인 1,033명)의 장애인 수용밀도가 평균 120%를 초과하고 있는 등, 수용밀도의 편차에 따라 전국 구급시설 장애인 혼거실 수용자 1,602명 중에서 1,033명(64.4%)이 평균 수용밀도 120%의 극심한 과밀수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00구치소는 정원 27명에 5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여 수용밀도가 185.2%에 달하고, 5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최고 8명까지 수용하고 있다.

장애인 수용자의 독거실 수용률을 살펴보면, 총 1,695명의 장애인 수용자 중에서 93명만이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장애인 수용자의 독거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비장애인을 합한 전체 수용자의 경우 47,598의 수용자 중에서 5,788명이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독거수용률은 14% 정도였다.

나) 2008. 9. 3. ~ 2008. 10. 17.까지 00교도소·00교도소·00교도소·00구치소·00교도소·00교도소·00교도소·00교도소·00교도소 등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된 8개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8개 구급시설에는 480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521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어 수용밀도가 108.6%로 나타났다.

〈표 2〉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

(2008.9.3. ~ 2008.10.17. 현장조사일 기준)

구 금 시 설		장애인 혼거실 수용 정원	장애인 혼거실 수용 인원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
수도권	00교도소 (노후)	82	113	137.8
	00교도소 (신축)	80	72	90.0
충청권	00교도소 (노후)	102	139	136.2
	00구치소 (신축)	49	11	22.4
호남권	00교도소 (노후)	48	62	129.0
	00교도소 (노후)	43	50	116
영남권	00교도소 (노후)	33	38	115.1
	00교도소 (신축)	43	36	83.7
노 후 시 설 소계 (00,00,00,00)		308	402	130.5
신 축 시 설 소계 (00,00,00)		172	119	69.1
계		480(명)	521(명)	108.6(%)

※ 1965년 완공된 00교도소 등 축조된 지 20년 이상 시설은 (노후)로 표시

※ 2002년 완공된 00교도소 등 축조된 지 10년 미만 시설은 (신축)으로 표시

장애인 전담수용시설 중 00교도소(1965년 완공),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등 완공된 지 20~40년이 지나 시설이 열악한 5개 노후시설에서는 수용 정원 308명의 장애인 혼거실에 402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밀도가 130.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00교도소와 00교도소는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최소 6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 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과밀수용으로 인해 1명은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2000년 이후에 완공된 00구치소, 00교도소, 00교도소에서는 수용 정원 172명의 장애인 혼거실에 119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밀도가 69.1%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04년에 완공된 00구치소는 49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11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밀도가 22.4%로 가장 낮았고, 장애인 수용거실로 지정된 거실에 수용할 장애인이 없어 장애인 거실을 정보화교육생 수용거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31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구금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재활에 필요한 운동시간 확대, 과밀수용 해소, 장애부위 찢질과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지급, 편의시설 확충과 적절한 난방 등의 순서로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인 수용자들의 고충 및 희망 사항

	00교도소 (2명)	00교도소 (13명)	00교도소 (14명)	00교도소 (16명)	00교도소 (15명)	00구치소 (4명)	00교도소 (25명)	00교도소 (22명)	계 (131명)
과밀수용 해소	13	9	11	15			9	3	60
온수지급 희망	10	3	8	3	5	1	15	7	52
운동시간 확대	13	2	4	10	4	1	13	14	61
난방 요청	10	1	2		7		6	9	35
연고지 이송	2	1	7				7	6	23
편의시설 확충	2	3	6	18	1		6	3	39
장애인 거실 부족		7					2		9
출역·교육 희망		3	1	1				1	6

라) 미국의 경우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조건과 그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990년 이후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수용조건들로 인해 수용자들에게 패소하여 연방법원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연방법원의 개입과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구금시설의 과밀수용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 각 주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행형법 개정과정에서 대체초안(Alternativentwurf) 입안자들에 의해 수용자 1인당 주거 면적을 10m²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고, 판례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6~7m², 공간면적이 15~20m² 정도

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 최소의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다. (OLG Celle VollzD 1990, 2, 21).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 “독거실의 경우 1개 거실 당 1명, 혼거실은 2.58㎡ 당 1명, 병사혼거실은 4.3㎡ 당 1명이라는 기준면적을 제시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은 시설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혼거실은 수용정원 산정기준이 아직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 혼거실에 일반 혼거실 수용정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형편이다.

2) 판단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00교도소 등 전국 8개 구금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수용자들은 완공된 지 43년이 지난 00교도소 등 노후시설에서 비좁은 취침공간과 부족한 난방시설 등으로 인해 과밀수용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행동반경이 클 수밖에 없는 장애인 수용자가 4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최소 6명 이상 수용되고 있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결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시설 관련

1) 인정사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은 교정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대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상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권장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나) 2008. 8. 20.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구금시설측이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각 구금시설별 편의시설 확보내역 (2008. 7. 24. 기준 법무부 제출)

기관명	장애인 거실수			화장실 양변기	화장실 백면손잡이	난방 설비	복도 백면손잡이	잔입 강토
	소계	독거실	혼거실					
소계	437	91	346	420	299			
00구치소	21		21	21	21	바닥난방2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5	3	12	15	14	바닥7,간접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3	2	바닥난방5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8		8	8	8	바닥난방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27		27	23	16	바닥2,간접25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2	3	9	6		간접난방12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34	12	22	34	17	바닥28,간접6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2		12	11	11	바닥난방12실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8		8	8	8	간접난방8	미설치	설치
000구치소	6		6	6	6	바닥난방6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2	8	4	12	1	바닥5,간접7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00교도소	36	16	20	36	14	바닥난방36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4		4	4	4	바닥난방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6		6	5		바닥5,간접1	미설치	설치
000교도소	7	4	3	7	3	간접난방7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27		27	27	13	바닥난방27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5	5	바닥난방 5	미설치	설치
000교도소	1		1	1	1	바닥난방 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9	4	15	19	13	바닥난방 19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4	1	3	3	3	간접난방 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0	4	6	10	9	바닥4,간접6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1	2	9	9	9	바닥3,간접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6		16	16	16	바닥15,간접1	설치10	설치
00교도소	24	4	20	24	24	바닥난방2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5	5	바닥난방5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00교도소	2	2		2	2	바닥난방2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0	4	6	10		바닥2,간접8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5	4	11	15	11	바닥5,간접10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		1		1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4		4	4	4	바닥난방4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9	3	6	9	9	바닥8,간접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	6	5	11	10	간접난방1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1	4	7	11	8	간접9,바닥2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10		10	10	10	바닥난방10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2		2	2		바닥1,간접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3	1	2	3	3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1	1		1	1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2	2		2		간접난방2	미설치	설치
00구치소	2		2	2	2	바닥난방2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2	3	5	2	간접난방5	미설치	설치
00교도소	5		5	5	4	바닥난방3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3		3	3	3	바닥난방3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1		1	1	1	바닥난방1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3		3	3	3	바닥난방3	미설치	설치
00구치지소	2	1	1	2	2	바닥1,간접1	미설치	설치

- ※ 난방설비 중 바닥난방은 수용거실 바닥에 전기판이나 온돌 시설을 의미
- ※ 난방설비 중 간접난방은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나 스팀장치를 의미
- ※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운영되는 시설

진입경사로는 모든 구금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437개 장애인 수용거실의 화장실 중 화장실 양변기는 420개에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00교도소는 2개의 장애인 거실에만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다수의 장애인 수용자들이 동절기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복도 벽면손잡이는 군산교도소 장애인 재활관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인되었다.

다) 위원회는 2008. 11. 3. 한국장애인000000·한국지체장애인00·00000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0000 등 장애인 단체,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권익 증진과)에 대해 '구금시설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 종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는 ①시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행 연습에 필요한 접자블록·접자표시·접자 안내책자·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접자정보단말기·자막수신기·자막생성보드·화면해설기·독서확대경·광센서 또는 레버식 수도꼭지, ②청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청기기·자막 방송시설·외부 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③지체 장애인 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용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문턱 및 세면대·복도 벽면손잡이·미끄럼 방지 장치·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신체 교정용 신발·바퀴달린 보행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2008. 9. 3. ~ 10. 17. 위원회가 8개 장애인 전담수용시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00교도소는 일반사동 장애인 혼거실에 50명의 장애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 등 최신설비를 갖춘 장애인 재활관(수용정원 101명, 수용현원 60명)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관은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수용자 60여명에게 귀금속공예, 한식조리 등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언론매체와 수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면접에 응한 타교도소 장애인 수용자들은 "가석방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점수와 작업점수 등 소득점수를 취득해서 책임점수를 소각해야 하는데, 장애인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작업과 교육훈련 기회가 많지 않아 어렵다. 00교도소 장애인 재활관과 같은 교육훈련시설이 많이 확충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00교도소는 2002년 개청되었다. 장애인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실내운동장에 싸이클 등 8개의 재활기구가 있고, 활동 보조인이 휠체어로 장애인 수용자를 잔디밭으로 데려가 실외운동을 보조하고 있는 등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도관은 "장애등급별 수용구분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병원접근성과 연구지 등 전

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수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③ 00교도소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서 장애등급이 1급인 시각장애인 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청취할 수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Voice-eye)를 2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에서 한 시각장애인 수용자는 “교도소 복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서 보행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실에 TV가 없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장애인 거실에 임시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용자들은 “같은 방에 있는 비장애인들로부터 조롱을 들어 괴롭다.”고 진술하였다.

④ 2005년 완공된 00교도소와 2004년 완공된 00구치소는 시설이 깨끗하고 난방설비, 화장실 양변기 등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거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복도 벽면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00교도소는 장애인 사동 내에 빈공간인 다용도실이 있어 00교도소 장애인 재활운동장과 같은 시설로 활용이 가능해보였으나 시설 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내운동장(재활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⑤ 이밖에 00교도소·00교도소·00교도소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화장실 양변기·화장실 벽면 손잡이·진입경사로 등 일부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완공된 지 43년이 지난 00교도소는 장애인 거실 바닥 난방장치가 거의 없어 겨울철에 동상에 걸리는 장애인 수용자가 많다는 수용자들의 진술과 열악한 시설로 인한 장애인 수용자들의 진정, 청원, 고소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었다.

2) 판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는 매개시설로서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해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생시설로서 화장실 대변기·화장실 소변기·화장실 세면대의 설치, 안내시설로서 점자블록 설치, 기타 접수대·작업대·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중 현재 우리나라의 구금시설에 화장실 대변기는 437개 장애인 거실 중 420개 거실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99개에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복도 벽면손잡이를 갖춘 시설은 47개 구금시설 중 1개 교도소(00 교도소 재활관)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넓고 수평 손잡이와 냉·온수 구분인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를 보유한 화장실 세면대를 갖춘 시설은 없다. 또한 설치가 권장되는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을 갖춘 시설도 없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면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금시설측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해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김양원

〈별지〉 관련 법령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4.10. 법률 제 8341호, 시행일 2008.4.11)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생략)
-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별표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대상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제2장 구급시설 관련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생략)…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생략),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4.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2008. 6. 25. 예규보일 제803호)

제3조(수용정원 산정기준) ①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혼거실 기준면적에는 관물대, 싱트대 설치공간이 포함되고 화장실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병사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
- ② 교정시설별 수용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략)

3. 개방시설, 엄중격리시설 기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은 시설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특수기능 교정시설 지정운영) 특수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범수별 분류 수용의 예외가 필요한 시설을 특수기능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한다.

1. ~ 4.…(생략)…

5. 장애인 수용교도소 : 8개소(지체장애인 : 광주교도소·안양교도소·여주교도소·포항교도소·김천교도소·군산교도소·청주교도소·충주구치소, 시각장애인 : 여주교도소·청주교도소, 언어·청각장애인 : 안양교도소·여주교도소)

4. 의료

I 2007.1.22자 06진인1140 결정 [구치소내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은 우울증으로 자살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 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 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우려가 있다며 동정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CCTV가 설치된 병동상 4실에 입병사하여 경과관찰 하였으나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 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 [2] 다만,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당시 담당근무자 등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감독 책임자들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조치 처분이 있었으므로 담당 근무자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참조조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4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구치소 수용 중 사망)

【피진정인】 ○○ 구치소장

【주 문】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에 법률 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부친은 ○○구치소 수용 중 2006. 5. 25. 사망하였다. ○○구치소측은 유가족에게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체를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

제2장 구급시설 관련

규명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구치소 병동상 4실 수용중 2006. 5. 25. 06:08경 관구교위 ○○○와 교사 ○○○가 아침 기상점검 중 화장실내 수도배관에 압박붕대(145cm)로 목을 매고 있는 ○○○을 발견하고 즉시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 목을 매고 있던 압박붕대를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같은 날 06:20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하여 같은 날 06:55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07:15경 진료의사가 “소생가능성이 없고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의 사망사고 발생 및 조치경과

피해자 진료기록부,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관구교위 ○○○와 담당근무자 교사 ○○○의 사고경위서 및 진술조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및 CCTV 녹화CD, 같은 거실수용자 ○○○ 및 ○○○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및 부검감정서, 조사관 실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 피해자는 ○○구치소 병동상 4실 수용중 2006. 5. 25. 06:08경 관구교위 ○○○와 담당근무자 교사 ○○○가 아침 기상점검 중 화장실내 수도배관(높이 110cm)에 의료용 압박붕대로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구호조치한 후 같은 날 06:15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연세병원에 응급 후송하였다.

2) 같은 거실수용자 ○○○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을 최초로 발견한 같은 거실수용자 ○○○은 피해자가 화장실 수도파이프(약110cm) 중앙에 목을 매고, 양발은 변기 좌우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06. 5. 25. 04:46 - 06:29사이 ○○구치소 보안관리과 CCTV에 녹화된 병사

동 4실의 주요상황은, 05:06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싱크대 앞에서 약 20여초가량 무엇인가 하고 있었고, 05:07 화장실로 들어갔고, 06:09 동료수용자 ○○○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무자에게 알림, 06:15 근무자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끌어내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후송, 06:20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4) 2006. 5. 26.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부설 법의학연구소(전문의 ○○○) 부검결과는, “목 앞쪽에서 표피박탈의 손상을 보이거나, 일반적인 긴장한 성인의 교사에서 볼 수 있는 목 피하 지방층 및 근육층 출혈 등과 같은 저항 손상이 동반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를 타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동반된 손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사인은 의사(목매 죽음)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5) 2006. 7. 13. 18:01경 조사관이 ○○병원 응급실 의사 ○○○와 전화 통화하였는바, 의사 ○○○는 “2006. 5. 25. 06:20경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고, 심전도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목을 맺을 때 흔적이 있었고, 몸에는 상처가 없었으며,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심폐정지”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2006. 5. 12.자 피해자 동태(시찰)상황부, 진료기록부, ○○구치소 교정공무원 문책 지시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총무과-○○) 등에 의하면,

1)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제정 2005. 8. 17. 예규보일 제731호)제4조 (처우상 유의사항)제3호는 “특별관리대상자의 전실, 취침·식사전후, 개·폐방시 등 취약 시간에는 특히 동정시찰을 강화하여 계호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살, 폭행, 난동 등 교정사고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치소는 2006. 5. 12. 피해자를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관리하였으며, CCTV가 설치된 병동상 4실에 입병사하여 당뇨 및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경과관찰중이었다.

2) ○○구치소는 피해자 사망사고와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06. 6. 16. 문책하였다.

가) ○○○과장 ○○○, 평소 철저한 직원교육과 근무감독으로 각종 교정사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고 방지 및 수용환자 관리 등 보안관리과의 제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경위서 징구 및 시정조치

나) 관구 감독자 ○○○, 2006. 5. 25. 06:00까지 보안과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영상 계호 시스템과 인터폰 등으로 수시로 수용 사동 근무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은 하였으나 병동 관구를 직접 순시하지 못하여 병동상 ○○○이 근무자의 시선을 피해 거실 내 화장실에서 자살한 데 대하여 감독 근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경고처분

다) 담당 근무자 ○○○, 자살우려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동태를 살피는 등 철저히 시찰하여 자살사고 등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근무자의 시선을 피해 거실 내 화장실에서 자살한 데 대하여 수용자 시찰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경고 처분

라) 관급 약품 담당 ○○○, 의료용 압박 붕대 등 관리 철저히 지시에 의거 의료압박붕대를 지급 및 회수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사용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나 회수시 수용자 개인에 대한 개별 시찰을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병동상 4실에 수용 중이던 ○○○이 의료용 압박붕대로 자살한 데 대하여 관급약품 담당자로서 압박붕대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주의 처분

마) CCTV 근무자 ○○○, 자살우려자인 ○○○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이후 1시간여 화장실에 머물면서 같은 날 06:08경 의료용 압박붕대로 자살한 데 대하여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사실에 대해 주의 처분

다. 사망사건 처리결과

2006. 7. 26. ○○구치소(보안관리과-○○)는, “2006. 5. 25. 사망한 피해자의 사건에 대하여 타살혐의점은 없고 의사(목매죽음)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검찰청 검사 ○○○의 지휘로 내사 종결하였다”며 ○○○에게 통보하였다.

4.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가. 2006. 5. 12.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우려가 있다며 동정

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CCTV가 설치된 병동상 4실에 입병사하여 경과 관찰 하였으나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 내 교정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2006. 5. 15.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당시 담당근무자 등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2006. 6. 16. ○○구치소는 피해자 사망사고와 관련 보안관리과장 ○○○은 지휘감독책임으로 시정조치, 관구 감독자 ○○○은 감독 불철저로 경고, 담당 근무자 ○○○은 근무 불철저로 경고, 관급약품 담당 ○○○은, 근무 불철저로 주의, CCTV 근무자 ○○○은 근무 불철저로 주의 처분하였으므로 담당근무자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윤기원

2 2007.9.17.자 07진인2092 결정 [외부병원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전문의의 치료소견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병원이송)와 수용자의 치료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의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행형법」 제29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 ○○○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주 문】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의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에 대해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에 대해 수술 받을 상황인데 보건의료과장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6. 10. 20. ○○소재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 골양성종양이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교도소 이송 후 2007. 3. 20. ○○대병원에서 MRI검사결과, 「단순 골 낭종, 우측 고관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정형외과 의사 ○○○), 2007. 5. 3. ○○대병원 정형외과 의사 ○○○에게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골종양이 딱딱하게 굳어 수술을 해도 안 좋을 수 있으니 수술하고 싶으면 ○○○환자가 각서를 쓰고 수술해라"고 해서 진정인이 망설이다가 "더 종양이 악화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골종양 조직검사와 외과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했고 해서 소견서에 그 내용을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었다.

진정인은 현재 수술 받을 상황(2007. 5.부터 휠체어 사용)인데 피진정인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7. 11.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된 자로서 이입당시 ○○소재 ○○정형외과의원 진단(2006. 9. 13.)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전자부골 양성종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2007. 3. 9. 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대병원 정형외과 ○○○ 교수의 진료소견상 MRI촬영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2007. 3. 12. ○○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우측대퇴부 MRI촬영을 받고 환소하였으며, 2007. 3. 20. MRI촬영결과 제4, 5번 요추추간관 탈출증(의증), 우측 고관절 단순 골 낭종이라며 고관절 낭종은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들은바 있다.

이후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해 오다 위 질환으로 2007. 5. 3. 인공고관절 및 골관절 정형외과 전문의인 ○○○ 교수의 방사선 촬영에 의한 진료결과 현재 고관절 낭종은 치유상태로 봐야하며 앞으로 경과감진은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요법은 필요치 않으며 뼈에 생기는 양성종양의 일종이라며, 방사선 소견 상 3개월 후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료소견이 있었다. 현재 ○○○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향후 3개월(8월경) 후 진료(경과관찰) 예정이다.

3. 관련규정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가. 「행형법」

제29조 (병원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②<생략>

나.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자료, ○○교도소 진술서와 자료 및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교도소 ○○○는,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 당시의 질환에 대한 치료 경과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2006. 8. 25. ○○ 소재 ○○정형외과 ○○○ 원장의 초빙 진료 시 진정인이 허리에서 다리까지 심하게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여 ○○○ 원장이 허리에 방사선 검사처방(L-SPINE AP&LAT)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고, 우연히 촬영 판독 결과 「우측 대퇴골 골낭종」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외부병원에서의 정밀진찰(CT촬영 등)이 요구 된다는 소견과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운동을 금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목발을 사용토록 하였고,

2) 2006. 9. 13. 진정인에 대해 ○○의료원에서 CT촬영을 시행하였고 ○○정형외과 ○○○ 원장의 CT소견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양성 종양증 동맥류성골낭종으로 추정되고 현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약 2개월간 약물 치료와 목발 보행을 한 후 방사선 재촬영 후 재판정이 필요하고 2개월간의 치료 후에도 호전되는 증상의 소견이 없으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는 소견 하에 10일분 약물 처방하여 투약 실시하였으며,

3) 2006. 10. 20. 진정인을 ○○정형외과 ○○○ 원장의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방사선 재촬영한 후 진료한 바 “진정인이 통증 호소하여 통증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적인 치료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서 발급받았고, 이러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안관리과에 치료 목적으로 대학병원이 소재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는 정보사항을 의뢰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치료목적) 조치하였다.

나. 2007. 3. 20.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의증), 단순 골낭종, 우측 고관절」로 진단하고, 장시간(2시간 이상) 앉아서 하는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요부 동통 발생시에는 약물 치료와 2일정도의 침상안정이 필요하며, 고관절 낭종은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치료 소견이 있었다.

다. 2007. 5. 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로 진단하고, 검사상 3개월 후 경과관찰(방사선 사진상)요하며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낙상 등 주의 요한다는 치료 소견이 있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근육통 통증완화)과 주사처방(소염진통제)을 병행하고 있을 뿐 2007. 5. 3. ○○대학교병원 진료 후, 3개월 뒤인 2007. 8. 3. 이후 현재까지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질환에 대해 진정인에게 경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하고 경과관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 ○○○는 진정인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의거 치료 목적으로 ○○교도소로 이송한 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과 의사 ○○○ 또한 진정인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고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 등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질환은 외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병원이송)와 수용자의 치료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의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이와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부진료를 불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정재근

3 2008. 11. 24자 08진인1762결정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하여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일반인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동 약품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됨
- [2]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는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 B형 간염 치료약을 정기복용중인 피해자에게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행형법」 제26조, 제29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참고자료: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간질환 길잡이(대한간학회, 2004. 10.)」

[진 정 인] 김○○, 김○○

[피 해 자] 김○○

- [피진정인]**
- 1. ○○교도소 보건의료과장
 - 2. ○○교도소 공중보건의사
소속기관의 장○○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하여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피해자(김하광)는 2007. 10. 2.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다가 2008. 3. 14. ○○교도소로 이송된 뒤, 같은 해 4. 25. 지병인 B형간염이 악화되어 ○○의료원에 입원을 하였다.

피해자는 입원하기 20일 전부터는 밥도 못 먹고 구토 증세가 심하여 자신의 개인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외부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교도소측에 수십번 요청했음에도 위 교도소측은 받아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황달이 와서 쓰러지자 그때서야 검찰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을 거쳐 서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5. 10. 간부전 증세로 사망하였다.

○○교도소측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사해 주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 보건의료과장

가) 피해자는 2008. 4. 13. 감기, 몸살, 오한을 호소해 투약했으며, 같은 해 4. 15.부터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으며 오한 증상을 호소해 수액을 투여하는 등 매일 순회진료를 한 후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투약내용을 일자별로 보면, 같은 해 4. 13. 감기, 몸살, 오한으로 이브프로펜(소염, 진통, 해열), 비졸본(가래, 기관지염), 시메티딘(급·만성 위염,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을 처방하였고, 같은 해 4. 15. 하트만(복합전해질 수액), 같은 해 4. 16. 아세트아미노펜(진통, 해열제), 암포젤엠(제산제), 맥페란정(소화기통증), 같은 해 4. 18. 하트만, 같은 해 4. 19. 맥페란 주사(소화기 이상), 맥페란, 시메티딘, 산화마그네슘(제산제 및 변비), 돔페리돈(위염등), 하트만, 같은 해 4. 20. 맥페란 주사, 같은 해 4. 21. 알드린현탁액(위·십이지장, 위산과다), 맥페란, 시메티딘, 노루모, 하트만, 같은 해 4. 23. 하트만, 삐콤(복합영양제), 같은 해 4. 24. 하트만, 삐콤, 맥페란, 시메티딘, 알드린, 같은 해 4. 25. 하트만, 삐콤을

처방하였다.

다) 외부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4. 21. 토혈,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자비부담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 외부병원 처방을 허락했으며, 같은 해 4. 23. ○○의료원 내과에 이송해 복부X-ray,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의뢰결과 '음식물을 구토할 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간수치 상승으로 생길 수 있으며 익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처방을 하겠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08. 3. 24. 서울○○병원에서 간 전문의에게서 처방받은 제픽스(항바이러스제) 84일 분을 차입하여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상이나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진료 및 치료를 하였다.

마) 2008. 4. 15. 피해자가 저혈당이 온 것 같다고 해서 혈당을 측정했으나 정상이라서 감기몸살로 판단했고, 만성B형 간염으로 제픽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던 것 같지만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은 알지 못한다. 교도소에서는 정기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일반 병원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 간과 관련된 임상처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2) ○○교도소 공중보건과

가) 2008. 4. 16. 피해자의 상태는 '구토는 없었고 속이 메스꺼운 상태였고 힘이 없으며 오한도 있고 약간 숨이 차며 체온은 37.2도, 혈당은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했고 간질환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간질환과 관련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

나) 같은 해 4. 16.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한 이유는 피해자가 간질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며, 이브프로펜과 약효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처방하였다.

다) 피해자의 경우는 건강진단부 두 번째 페이지에 제픽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기록과 외부병원처방전이 있다. ○○교도소는 환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용자의 건강진단부에 표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건강진단부 두 번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일상적으로 환자의 과거 기록 모두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제2장 구급시설 관련

라)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은 전문의가 아니라서 모르고 있다.

다. 참고인

1) ○○교도소 수용자(피해자 동료)

가) 손○○

피해자가 2008. 3. 14.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1개월 정도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당뇨로 매일 인슐린을 맞고 있었지만 건강이 안좋은 것은 몰랐으며, 피해자가 거실에서 ○○교도소측에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나) 김○○

피해자가 처음 입소했을 때에는 건강했으나 외부진료를 나가기 전 2~3주 동안은 식사를 전혀 못하였다.

다) 김○○

외부병원 진료는 피해자의 병세가 많이 악화되는 것 같아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들이 권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인슐린 투여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보건 의료과에 가고 있어서 보건의료과에서는 충분히 진료했다고 생각한다.

라) 엄○○

사동담당 근무자가 1차적인 조치는 잘 처리해 주었지만 막상 보건의료과에서 의사와 면담한 적이 없으며 순회진료때 피해자가 공중보건 의사에게 약복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이 뭘 알아서 이야기 하느냐. 내가 의사인데!’ 하고 면박을 주곤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보건의료과에서 환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허술하며 기본적인 의무행정도 못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사동담당 근무자 교위 신○○

피해자는 2008. 4. 15. 정기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몸이 아프다고 해 당일 오후에 보건의료과에 보냈으며, 같은 해 4. 15.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해 피해자는 아침·저녁으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했으므로 보건의료과에 갔고, 그 후에도 자주 보건의료과에 보냈던 것으로 기억

된다. 같은 해 4. 21. 보건의료과에서 연락이 와서 외부병원진료 보고문을 작성해 제출하였다.

3)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음○○

가) 피해자의 간염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2007. 3. 2. 검사결과 ‘e항원 음성인 만성 B형 간염’으로 투약후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혈청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 만성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우는 대한간학회의 간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료 중에는 간기능 검사를 적어도 2 ~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회 투여시 1g 이내인 경우 이로 인한 간독성은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가 주로 간에서 일어나고, 간기능이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말하기는 힘들고,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부, 교도관근무일지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10. 2. ○○구치소에 구속되어 같은 해 10. 4. 진료시 당뇨와 B형 간염으로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었으며, 서울병원에서 당뇨병관련 약 30일분, 서울○○병원에서 간염관련 약인 제픽스(항바이러스제) 22일분을 가지고 입소해 위 구치소측은 피해자를 병사동에 입병하고 처방대로 투약토록 하였다.

이후 위 구치소측은 같은 해 10. 29, 11. 29, 12. 27, 2008. 1. 21, 1. 28.에도 동병원에서 처방된 약들이 외부에서 차입되자 이를 허락해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위 구치소측에서 피해자의 신입자 건강검진을 삼광의료재단에 의뢰해 2007. 10. 4.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관련 검사항목인 GOT(AST)는 25였으며 GPT(ALT)는 28로 정상수치를 보였다.

나. 피해자는 2008. 3. 14. 형확정으로 ○○교도소로 이송되어 동 교도소 입소시 ○○구치소에서 복용하다가 남은 서울○○병원과 ○○병원 처방약을 가지고 갔다. 이후 같은 해 3. 24.에도 서울○○병원 처방약(제픽스)이 차입되자 위 교도소측에서는 이를 허락하여 투약토록 하였다.

2008. 4. 13. 피해자가 감기, 몸살, 오한을 호소하자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이브프로펜(소염, 진통, 해열), 비졸본(가래, 기관지염), 시메티딘(급·만성 위염,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 3일분을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2008. 4. 15. 위 교도소측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았고 같은 날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고, 오한이 든다고 해, 보건의료과장은 체온측정(37.6도) 및 X-ray 검사 등을 실시한 후 하트만(복합 전해질 수액)과 시메티딘(위염 등)을 처방하였다.

다. 2008. 4. 16. 공중보건기사 진료시 피해자가 전날과 동일하게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고, 오한이 든다고 해, 체온은 37.2도이고 구토는 없어서 공중보건기사는 암포젤렘(제산제) 1정 및 맥페란정(소화기통증) 1정과 함께 아세트아미노펜(해열, 진통제) 2정 600mg(1정당 300mg)을 1일 3회 3일분을 처방하였다.

라. 2008. 4. 18. 13:30경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구토를 한다고 해 위 보건의료과장은 체온측정과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에 CBC(일반혈액검사)와 LFT(일반생화학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하트만을 처방하였다. 당일 소변검사와 CBC(일반혈액검사)검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같은 해 4. 19. 20:10경 피해자가 속쓰림과 구토를 호소해 당직 근무자가 보건의료과장의 유선처방을 받아 맥페란 주사(소화기 이상) 및 하트만을 투여하였으며, 다음 날인 4. 20. 22:00경 피해자의 구토 등으로 맥페란을 주사하였다.

마. 2008. 4. 21.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토혈을 했다고 하며 자비부담으로 외진을 요구해 위 보건의료과장은 토혈, 구토, 위내시경 등 외부병원 검사를

허가하고 하트만 등을 투약하였다. 또한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에서 4. 18. 실시해 4. 21. 판정된 LFT(일반생화학검사) 결과에 따르면 GOT(AST)는 173, GPT(ALT)는 273으로 정상을 상회한 수치가 나타났다.

바. 2008. 4. 23. 피해자는 ○○의료원 내과에 이송되어 위내시경, X-ray, 복부 초음파,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을 구토할 만한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간수치 상승으로 구토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익일(4. 24.)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 후 처방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교도소로 되돌아 왔는데, 위 교도소측은 다음 날인 4. 24. 피해자의 간수치가 GOT는 1225, GPT는 1941로 상승된 ○○의료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날 이송진료하기로 한 후 하트만 등을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4. 25. ○○의료원에 이송되어 입원하였다.

사. 피해자는 2008. 4. 28. ○○의료원에서 CT촬영결과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29. 위 교도소측은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피해자의 ‘급성간염 및 간부전, B형 간염, 당뇨’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다. 같은 해 4. 29.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같은 해 4. 30. 위 검찰청 ○○지청에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가족(처)에게 신병이 인계된 후, 같은 해 5. 7.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5. 10. ‘간부전’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아.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 관련 GOT(AST) 및 GPT(ALT) 검사수치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2007. 10. 4. ○○구치소 수용 중 삼광의료재단 측정시 GOT는 25, GPT는 28, 2008. 4. 15. ○○교도소 수용 중 ○○의료원 측정시 GOT는 1030, GPT는 1101이었으며(검사결과와 판정일은 2008. 4. 22.임), 같은 해 4. 18. ○○교도소 병리검사실 측정시 GOT는 173, GPT는 273(검사결과 판정일은 2008. 4. 21.임), 같은 해 4. 23. ○○의료원 측정시 GOT는 1225, GPT는 1941, 같은 해 4. 30. ○○의료원 측정시 GOT는 511, GPT는 909로 ○○의료원과 ○○교도소 자체 측정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피해자의 ○○교도소 검사 판정일자(2008. 4. 21.)와 근접한 날짜(2008. 4. 14.)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동료 수용자의 간기능 검사결과를 보면 ○○교도소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측정 GOT는 131, GPT는 137이며, ○○의료원 측정 GOT는 90, GPT는 146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차. 피해자가 수용중이던 사동의 교도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08. 4. 20. 피해자는 저혈당과 심신쇠약으로 인해 중점관리자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카. 2004. 11. 18. 대한간학회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였다(개정 2007. 11. 20.). 동 가이드라인은 총 37페이지에 걸쳐 만성B형 간염의 진단기준, 모니터링 방법, 치료대상, 치료약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4. 23. 외부병원에 이송되기 2~3주 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건강진단부 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4. 18, 4. 19, 4. 20.에 구토를 한 사실, 교도관근무일지에 같은 해 4. 20. 중점관리자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한 2008. 4. 13.이후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보건의료과장은 피해자가 4. 21.에 토혈을 했다고 호소를 하여 당일 판독된 간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외부진료를 허락하고 이틀 후인 4. 23. ○○의료원 내과에 이송 진료를 한 점 등 보건의료과장으로서 통상적인 진료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는 2008. 4. 16. 피해자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1회 600mg씩 1일 3회 3일분을 처방했는데, 동 약품은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간독성을 일으키고 급성간부전의 원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로서 1회 1g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약품이며, 보건의료과장은 같은 해 4. 13. 간독성이 없으면서도 유사한 약효의 ‘이브프로펜’을 처방하였다.

일반인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항바이러스제인 제픽

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만성 B형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동 약품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한편 2008. 4. 15.과 4. 23. ○○의료원에서 측정한 간기능 관련 수치와 같은 해 4. 18. ○○교도소 병리검사실에서 실시한 간기능 관련 GOT, GPT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피해자의 간기능 검사와 근접한 날짜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동료 수용자의 검사결과 수치를 살펴보면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의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진정인 공중보건외사는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약을 정기복용중인 피해자에게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김양원

〈별지〉 관련 법령

1. 「행정법」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병원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생략

2. 「행정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3. 참고자료

가.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2004. 11. 18. 대한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제정되어 발표된 이후, 2007. 11. 20. 개정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37페이지에 걸쳐 만성B형 간염의 진단기준, 모니터링 방법, 치료대상, 치료약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간학회는 1981년 한국간연구회로 시작하여 1995년 대한간학회로 발족했으며 간과 관련된 전문의 1,000여명이 참여한 전문적인 단체이다.

나. 「간질환 길잡이(대한간학회, 2004. 10.)」

동 책자에 의하면, 만성 B형간염의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전신쇠약감과 피로감이며, 무력증, 식욕부진, 소화불량, 의욕상실, 두통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상복부 증양이나 우측이 빠근히 불편하거나 아플 수도 있으나 자각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징벌

1 2007.11.26자 06진인2118-06진인3152-06진인3301-07진인254-07진인811-07진인1276-07진인1277-07진인1300(병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폭행, 가혹행위 및 과도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방해한 행위와 수용자에게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교도소장 및 대구 지방교정청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 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폭행한 피진정인들을 검찰총장에게 각 고발하고, 부산교도소 직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계구사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문서로서 관련 사용과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바, 긴사슬을 뒤로 채우는 방법으로 변형된 계구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었고 사용 시간도 다른 11개 교도소의 합보다 2배 가까이 사용되었음
- [2]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부산교도소의 직원들은 긴사슬 등의 계구 사용방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관련규정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관행상 자물쇠를 뒤로 채우는 방식으로 긴사슬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현재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긴사슬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침 등이 용이하도록 자물쇠가 앞으로 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3] 또한,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에서는 계구의 사용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목욕·식사·용변·치료시에는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에 정해진 외의 방법으로는 계구를 사용할 수 없고, 사슬의 경우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로 금속수갑 등을 사용하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계구사용 중에는 수시로 의사의 확인도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교정청장은 정기적으로 계구 사용 실태의 확인 및 점검과 7일 이상 초과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 7. 14. 사슬 사용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UN 피구금지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3조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구의 한 종류로서의 사슬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긴사슬은 계구의 종류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2장 구금시설 관련

- [4] 설령 일부의 수용자가 매우 흥분하여 자살 자해의 우려가 있었고, 교정질서의 수립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사용한 계구 사용의 방법과 그 정도는 필요 최소조건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는 계구사용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피진정인 ○○○이 소장으로서 지시하고 그 외 위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타 수용자의 악몽 감염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응징의 차원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 역시 계구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됨
- [5]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계구사용과 관련된 「행형법」 제1조의3,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 제31조, 제44조, 제45조, 「행형법」 제1조의3,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보일 제583호, 2002. 2. 15.), 「계호근무준칙」 제4조, 제16조,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9. 1. 1.),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1조, 제14조

【진 정 인】 ○○○ 외 7인 (별지 1기재와 같음)

【피 해 자】 ○○○

【피진정인】 ○○○ 외 9인 (별지 2기재와 같음)

【주 문】 1. 법무부 장관에게

가. 부산교도소 수용자에게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등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 ○○○을 징계할 것,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긴사슬 사용을 금지할 것,

다. 계구사용시 작성하는 ‘계구사용심사부’ 기록의 자의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부산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을 2007. 3. 2. 관구실에서 폭행한 피진정인 ○○○, ○○○, ○○○을 각 고발한다.

3. 대구지방법교정청장에게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을 방해하고 과도한 계구를 사

- 용한 피진정인 ○○○, ○○○을 각 징계할 것,
나.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피진정인 ○○○, ○○○를 각 징계할 것,
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구사용의 적정성 감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부산교도소장에게

부산교도소 직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계구사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인 ○○○, ○○○이 피진정인 ○○○, ○○○, ○○○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을 방해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및 진정인 ○○○, ○○○, ○○○이 피진정인 ○○○, ○○○, ○○○, ○○○, ○○○, ○○○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1)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2006. 9. 27. 교도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면진진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9. 부산교도소 3, 4관구실내 상담실에서 피진정인 ○○○ 관구계장과 피진정인 ○○○ 교위로부터 면진신청서를 직접 찢으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맞는 것이 두려워 위 진정서를 찢어버렸다.

또한, 2007. 2. 22. 부산교도소에서 폭행당한 건으로 진정을 하였고, 진정인에 의한 교도관 폭행과 관련하여 추가 송치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데, 관구계장 ○○○과 교사 ○○○이 부산구치소까지 찾아와 “가혹하게 한 거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나간 일이니 국가인권위원회 취해서 한 장만 더 쓰라”고 하여 “먼저 교도소에 있을 때 협박하여 써주었는데 또 쓰냐며 그거면 됐다”하니 “너 처벌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 그냥 한 장만 더 써주라”며 종용하여,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관구계장 ○○○과 교사 ○○○이 진정취하서에 무인을 요청하였으나 서명으로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알 수 있도록 주민번호를 달리 작성해 주었더니 관구계장 ○○○과 교사 ○○○은 시간이 너무 지났다면 취하서를 가지고 갔으나, 본인은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

2) 07진인811사건

진정인 ○○○은 2006. 11. 21.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 ○○○ 교사는 위 진정인에게 “내일 계구 해제 결재를 올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해제해 주겠다”라고 말했으며, 피진정인 ○○○은 “살아서 나가려면 잘 생각해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고소장과 삼성법률봉사단에 제출할 진정서를 부산교도소에 제출하였으나 2007. 1. 11. 피진정인 ○○○ 1관구계장과 고충처리반 교위(성명불상)가 찾아와서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고소를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으며, 2007. 1. 9. ~ 같은 달 11. 진정인의 거실에 대해 거실수검을 실시하여 고소와 관련된 진정인의 서류를 모두 압수하였다. 결국 2006. 11. 17.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3) 07진인1300사건

진정인 ○○○은 2006. 11. 21. 징벌이 끝나는 날 징벌사동 소지실에서 피진정인 ○○○ 교위가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2006. 11. 15. 징벌시 부당한 계구 사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면전진정을 신청했음)을 철회하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면 과장 소장이 수갑과 사슬인 계구를 풀어 주겠다? 연장 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도 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불펜 한번 잘못 쓸 수도 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좃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지 말고 고소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1) 06진인3152사건

진정인 ○○○은 2006. 11. 29. 사동청소부와 말다툼을 하자 피진정인 ○○○ 교위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피진정인 ○○○ 교사가 발로 얼굴을 밟은 후 관구

실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는 긴사슬을 발목에 채워 상담실(관구실 바로 옆에 있음)로 데려갔고, 피진정인 ○○○이 발로 얼굴을 밟고, 피진정인 ○○○ 관구계장은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분을 2차례 폭행하여 진정인의 앞니가 조금 깨어졌으며, 사슬로 인해 팔부분에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손부분에 마비증상이 있었다.

2)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피진정인 ○○○ 관구계장, ○○○ 교사, ○○○ 교위, ○○○ 교위, ○○○ 교사로부터 2006. 9. 26., 같은 달 27., 같은 해 10. 25., 같은 달 30., 같은 달 31. 관구실내 상담실에서 매트리스가 깔린 바닥에 넘어뜨려 배를 바닥에 깔고 팔과 다리를 등 뒤로 연결하여 묶인 채 곤봉으로 맞았고, 아프다고 하였더니 모포를 덮은(또는 박스를 머리에 씌운) 상태로 구타당하였다.

3) 07진인1276사건

진정인 ○○○은 2007. 4. 14. 06:30경 피진정인 ○○○ 교사가 ‘개새끼, 썩새끼’라고 하면서 약을 올려 관구실 유리창을 파손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슬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U자형),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구두발로 머리를 찼으며, 이에 진정인은 관구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왼쪽 눈 부위에 상처가 나는 폭행을 당하였다.

다. 과도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1) 06진인2118사건

진정인 ○○○은 2006. 9. 3. 근무자를 3번 소리쳐 부른 것과 ‘문을 차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 부산교도소 소장으로부터 6일간 계구를 계속 착용 당했는데, 특별히 계구를 착용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구를 착용케 한 것은 인권침해다.

2) 06진인3301사건

진정인 ○○○은 2006. 9. 26.~2006. 10. 2., 2006. 10. 25.~2006. 10. 31.까지 수갑과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식사와 용변시에도 계구를 해제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계구를 착용하게 하였다. 즉, 2006. 9. 26.~10. 2. 7일 중 9. 26. 폭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행 및 가혹행위 직후 옷을 바꿔 입을 때와 9. 29.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찢고 옷을 갈아입을 때 등 두 번을 제외하고는 식사 및 용변시를 비롯하여 한번도 계구를 일시 해제한 적 없다. 그리고 2006. 10. 25.~10. 31. 7일 동안 식사 및 용변시를 비롯하여 한번도 계구를 일시 해제한 적 없다.

3) 07진인254사건

진정인 ○○○은 2007. 1. 24. 할머니가 아파 전화 통화를 원하였으나 허락해주지 않아 거실 입구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하면 무슨 소용인가. 내가 먼저 죽으면 통화를 못하겠지”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 관구계장은 진정인을 ‘자살우려자’라고 하여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거실에서 치료를 받는 진정인에게 수갑과 긴사슬을 사용하였다.

4) 07진인1277사건

진정인 ○○○은 2년전 동맥 파열로 장애거실에 수용중 조사수용되어 2007. 3. 20. 08:04경에 교도관 없이 이동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 계장이 자살자해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웠으며, 칼에 찔려 동맥이 파열되는 수술 이후 좌측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고 2일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며, 좌측팔 근육과손과목 부위 신경손상의 소견을 2007. 4. 16. 김해 성모병원에서 받은 바 있다. 당일 오후 다친 팔이 너무 아파 의무과 진료를 요청하자 조사수용 중에는 의무과에 갈 수 없다고 하여 근무자에게 항의하자 이로 인해 같은 날 17:00경에 관구실로 끌려가서 피진정인 ○○○ 교위와 피진정인 ○○○ 관구계장 등이 사슬로 다음 날 09:00까지 묶어 손목과 발목에 상처가 날 정도로 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변을 보기 위해 수갑과 사슬을 풀어달라고 하자 교위 ○○○은 ‘그냥 싸 버리라’며 수갑만 풀어주고 사슬은 풀어주지 않아 대변을 보지 못하였다. 복부가 압박될 정도로 사슬을 꽂꽂 묶었고 손목과 발목에도 사슬을 꽂꽂 묶어 좌측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양쪽 발목 뒤꿈치부위에 사슬에 짓눌린 흔적이 있다.

5) 07진인1300사건

진정인 ○○○은 2006. 11. 15 동료수용자와 싸움 중 교도관의 제지에 의해 중단된 후 관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 아무런 난폭행위나 흥분상태를 보이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가 끝난 후 ‘만성설사증후군’ 및 ‘공황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피진정인 ○○○ 관구계장이 수갑과 긴사슬로 묶어 7일간

식사시간에도 풀어주지 않으며, 피진정인 ○○○ 보안관리과장과 ○○○이 수시로 징벌사동에 와서 수갑과 긴사슬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푹푹 묶고 조이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진정인이 '만성설사증후군'으로 7일간 15회 정도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도 긴사슬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1) 진정인들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들

가) 피진정인 ○○○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질서를 강조한 이유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6개 교정기관 중 가장 많은 문제수용자(평균 5명 이상의 누범자)가 집결되어 있고 강력범죄자나 마약관련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수용질서가 문란하여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근무하기 힘든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신창원 도주사건, 기관장 총기인질난동사건 등이 발생한 시설이며, 각종 권규위반의 90%가 10%도 안 되는 문제수용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각종 권리구제제도를 악용하여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무고성 고발, 고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으로, 수용질서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수용자'이므로, 많은 직원들이 수용자들이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여도 고소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피소되는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조사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서나 소명자료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고, 이는 상급기관에서도 권장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 고발 등을 당한 직원들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

2006. 9. 2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찢도록 강요하였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 본인이 당시에 조사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은 징벌위원회 참석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하여 외부 위촉인 2명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출석포기서'를 작성한 정황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고, 부산구치소에서 진정인을 만난 이유는 진정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부산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진정인이 나쁜 감정이 없을 것인데 왜 진정을 했는지 궁금했고 남은 징역이 많으니 격려하기 위해서이며, 일반장소가 아닌 조사실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사실에서 만나게 된 것이며, 진정을 왜 했는지 물어보았을 뿐이다.

다) 피진정인 ○○○

진정인 ○○○이 징벌 종료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을 철회할 것을 회유 및 협박당하였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을 자의로 취하하겠다고 하여 진정취하서를 작성토록 도와준 사실은 있어도,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철회 운운'하는 등 그렇게 강요하고 협박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으며, 진정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이다.

라) 피진정인 ○○○

부산교도소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관련서류가 부산구치소에 있어 3명의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된 것이며, 징역6월의 추가형이 발생한 항소심 재판이 궁금하여 만나게 되었고, 조사실에서 위 진정인을 만나게 된 이유는 ○○○ 계장을 청사 앞에서 만나 조사실로 간 후 거기서 위 진정인을 만나게 되어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며, ○○○ 계장이 '항소심은 잘 되어가나, 왜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으로 악성진정을 했는지' 등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물어본 적은 있어도 진정취하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3) 참고인들

가) 부산구치소 고충처리반 교위 ○○○

위 참고인은 부산교도소 직원들이 부산구치소로 찾아가 진정인 ○○○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진술할 때와는 다른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즉, 우선 2007. 3. 7. 조사를 하기 위하여 부산교도소를 방문한 국가인권위 조사관에게는, "부산교도소에서 정복을 입은 피진정인 ○○○ 교감과 ○○○ 교사 등이 부산구치소로 찾아와 면회실이나 면담실이 아닌 부산구치소 조사실로 불러낸 사실이 있다. 당시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 ○○○을 불러내어 교감 ○○○과 교사

○○○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과 ○○○이 ○○○에게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2007. 11. 26. 피진정인 ○○○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부산교도소 직원 ○○○이 2007. 3. 7.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만났을 때, 수용자 ○○○에게 인권위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말한 바가 없다’는 ○○○의 진술내용을 첨부한 팩스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 등 (부산교도소 수용자들)

부산교도소는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취하를 종용하거나 시술을 해제해 준다고 회유하고, 특히 징벌사동 근무자 ○○○ 교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면진진정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1) 진정인들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

2007. 3. 2. 착용하고 있던 금속수갑을 교도관이 더 조이려 하자 2클립만 느슨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진정인 ○○○ 교위에 의해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별다른 말없이 관구실에 들어가자마자 계구를 검사하는 담당 부장이 한손을 비틀고, 피진정인 ○○○가 나머지 한손을 꺾으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관구실 밖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던 수용자들을 보았기에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급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게 되었다. 그러자 성명 불상의 교도관이 ‘개새끼! 고함을 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제압하여 바닥에 엎어지게 되었고, 피진정인 ○○○이 구둑발로 피해자의 배를 몇 번 찼으며, ‘개새끼 엄살 부린다’며 채차 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대어섯번 찼었다. 당시 관구실에 피진정인들인 ○○○ 관구계장, ○○○ 교위, ○○○ 교사 등과 함께 있던 교도관 중 누군가가 ‘이 놈이 장사네. 뭘 힘이 그렇게 세!’ 하였으며, 엎드려 방치된 채로 2-3분 그대로 있게 되었다. 얼마 후 누군가가 ‘또 시작해 볼까’ 라고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하면서 관구실에 있던 위 ○○○, ○○○, ○○○ 등을 포함한 교도관들 여러 명이 피해자의 몸 뒤를 구둣발로 밟고 수갑을 뒤로 채웠다. 위 ○○○이 두 번에 걸쳐 목을 구둣발로 밟았고, 이마를 대어섯번 밟았고, 수갑을 찬 상태로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는 어깨부터 수갑찬 손목까지 통통 붓게 되었다. 그러자 위 ○○○이 ○○○에게 ‘손이 너무 부어가지고 우짜까예?’라고 하였으며, 이후 수갑을 풀어주며 관구실 한복판 작은 의자에 앉혀 손을 주무르라 하였고,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커피 한잔을 가지고 와서 ‘자! 차나 한 잔 해라’하여 커피를 마시며 팔을 주물렀으며, 폭행을 당하여 더러워진 옷을 사동청소부가 가져온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폭행당하여 더러워진 양말은 벗어서 버렸다. 이후 관구실에 올 때는 수갑상태로 왔었는데 나갈 때는 긴사슬에 묶여 위 ○○○에 의해 부축되어 사동거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너무나 억울하여 단식을 시작하였고, 그날 오후 피진정인 ○○○ 보안관리과장이 계구가 팽팽하게 묶였는지 문을 열고 확인한 후 닫으려 할 때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 몸이 아픈 상태에서 아침에 폭행당하였던 이야기를 하자, 위 ○○○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어 그래 그럼 고소해’ ‘고소할 데 많잖아.’ ‘어데 청원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고소하면 돼’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들

가) 피진정인 ○○○

수용자들이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중대한 관규위반으로 사건 송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문제수용자들이 직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수용자들의 주장은 문제수용자들의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평상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직원(주로 원칙을 강조하는 직원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이 다수 제기된 것이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진정인이 2006. 9. 26. 사동청소부를 폭행하고 제지하는 근무자를 팔꿈치로 가격한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1관구 지역으로서 자신의 근무지인 2관구 근무자는 관여할 수 없는 근무 시스템이며, 피진정인 ○○○은 8동상층 근무자로 사건현장에 없었다. 진정인은 2006. 9. 27. 3

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하였지만 ○○○은 당일 34관구실 근무자가 아닌 신입수용자 9동하 사동근무로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일 관구실 근무는 ○○○·○○○ 등으로 2명이다. 진정인이 사동에서 소란을 피워 조사차 관구실로 동행하였음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날뛰는 것을 피진정인 ○○○ 교사가 제지하고 나서 진정인의 계구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자 그 순간 갑자기 진정인이 관구실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이어 책상위에 부착되어 있던 책꽂이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06. 10. 25. 폭행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정은 10:00경 소란을 부리다가 관구실에 동행되어 와서도 '니미 씨팔 개새끼들 1동상으로 가겠다. 니기미 씨팔 좆갈네. 씨발 놈들이 좆 풀리는 대로 한번 해봐라'는 등 심적 상태가 매우 흥분되어 계구를 사용하였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진정인이 교도관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초동수사를 하던 중 위 진정인이 반성은 커녕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흥분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동근무자와 함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이 교도관에게 위협과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어 관구실로 동행되어서도 반성은 커녕 진정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였고, 계구착용 과정에서 위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관구실에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바 없다.

라)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이 타 수용자에게 협박을 하여 관구실로 동행된 이후에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 계구를 사용하였다. 관구실에서 진정인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부산교도소 근무시 조사·징별사동인 10사동 상층에서 보조근무자로 근무하였는데 일상 업무 외에 긴급 상황 발생시 담당근무자 ○○○ 교위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을 기억하지만 관구실로 동행할 때 ○○○가 혼자 했는지 진술인과 같이 동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근무지를 벗어나 웬만해서는 관구실에 잘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2006. 11. 17. 위 진정인을 관구실에서 본 적 없으며, 자신이 출근했을 때 이미 거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마) 피진정인 ○○○

진정인 ○○○이 2006. 9. 26. 관구실에서 폭행당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당일 11:30분경 1관구교감이 (계구를)착용시킨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진정인이 2006. 9. 27. 16:30경 10사동 상층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하여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하였으나 '내가 제주도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고, 10년 전에도 이런 대접 받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여 제지한 후, 수갑과 시슬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진정인이 기물을 파손했다. 진정인이 교도관들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 ○○○, ○○○이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섭섭한 마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교정기관을 압박하고 시비를 걸어 고소·고발, 진정제기 등 교도관 직무집행을 위축시켜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편리를 도모하려는 부정적인 속셈을 가진 고의적 행위이다.

바)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2006. 9. 26. 12:00~17:00 2관구실 상담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은 허위다. 당시 계구사용심사부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은 1관구 관구실에 있었다. 또한, 2006. 10. 25. 2관구 서무근무를 명령 받긴 하였으나, 진정인을 폭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2006. 10. 31.에는 경비교도지휘자 능력 향상반에서 교육받고 있었다.

4) 참고인들

가) 수용자 ○○○

2007. 4. 2~3.경 10동하 9,10실 성명불상 수용자가 면담신청을 했는데 ○○○ 주임이 거부하고 피진정인 ○○○이 와서 뭇 때문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났고, ○○○이 그 수용자에게 긴사슬을 채워 관구실로 데려 갔으며, 수용자는 폭행당하였다. 또한, 문밖에서 청소를 하다 목격하였는데 계장 2명, 주임 3명, 부장 1명이 옷을 벗고 수용자를(피해자 ○○○) 마구 때리고 밟았고 그 수용자는 마구 소리를 질렀다. 2007. 4. 3.경 관구실에서 담요 2장을 보았는데 담요가 관구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 수용자 ○○○

미결사동 소지로 일할 때 ○○○라는 수용자가 관구실로 끌려갔는데 조금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고 ○○○는 사슬과 수갑을 찬 상태로 모포에 쓰러져 있었고 피진정인 ○○○ 교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혁혁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2007. 3. 출소한 ○○○ 수용자가 관구실에 있었는데 지나갈 때 전기봉이 '지지직'하는 소리가(사동청소부 수용자 ○○○도 같이 들었다) 났다.

그리고, 소지점검을 하기 위해 관구실쪽으로 이동하다가 피진정인 ○○○이 피해자 ○○○을 바닥에 메어꽂아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위 피해자는 하도 맞아서 병원까지 갔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다) 수용자 ○○○

2007. 3.경 피해자 ○○○ 수용자가 관구실에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 본인과 수용자 ○○○ 등 사방청소부의 80%가 목격하였는데, 당시 본인이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피진정인 ○○○ 교사가 피해자 ○○○을 두들겨 패고 있었다.

또한 ○○○ 수용자(후에 ○○○로 정정)는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하며 상처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몸에 별경계 탄 자국이 있었고 관구실에는 전기봉이 있다. 그리고 수용자 ○○○은 옷을 벗고 있다가 피진정인 ○○○ 관구계장과 말다툼이 있어 조사수용 되었는데 관구실로 끌려가 피진정인 ○○○ 교위가 때려눕히고 ○○○ 교사가 발로 얼굴과 목을 짓밟았다.

피진정인 ○○○은 ○○○ 계장보다 더 설쳤는데 일을 시작할 때 가죽장갑 먼저 끼고 시작하고, ○○○ 교위는 “묶고 안 묶고는 내 권한이야”라고 말하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묶었다. 사동 청소부로 일하면서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지슬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위 ○○○이 프린트해서 주면 그대로 베껴 썼다. 그것으로 인해 합동점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라) 보안관리과장 ○○○

위 ○○○는 피해자 ○○○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유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 수용자에 관한 조사기록·징벌기록 등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과도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1) 진정인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들

가) 피진정인 ○○○

부산교도소에 부임하고 나서 계구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자살, 도주, 화재 같은 3대 교정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취임 당일 새벽에도 여주 교도소 조사, 징별방에서 자살사고가 발생, 자살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법무부 긴급지시공문이 시달되었고, 직원교육시 “자살, 자해 등 제2의 교정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구사용을 검토하되, 흥분상태가 소멸된 후에는 즉시 계구를 해제토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사수용자는 자살 자해와 무관하게 계구를 사용하라고 기록된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 재임 기간 동안 전임자에 비해 계구를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이나 계구사용은 현장근무자와 감독자, 보안과장 의견을 들어 소장 결정으로 사용이 증가될 수 있고, 계구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고소, 고발,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두려워하여 계구사용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기관일 수록 기관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후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에게 수갑과 사슬상태로 식사나 용변시에도 해제해 주지 않았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다. ‘계구사용심사부’를 확인해 보면 분명하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당시 ‘계구사용심사부’를 살펴보면 수회에 걸쳐 계구를 일시 해제하였으며, 위 진정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적법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수용편의를 병자한 허위 진정이다. 또한 부산교도소는 누범교도소로서 수용자들 죄질이 타교도소에 비해 나쁘고 특히 일부 문제수용자들의 규율위반이 심각하여 이들을 제압하고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오랜 시간(5~7일) 계구를 사용하여 대처하는 것이며 담당자들이 면밀히 관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소장과 보안과장이 계구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방침을 내린 것은 없다. 수갑 사용시 법무부 업무편람 및 감사시 5mm 정도의 간격(금속과 손목의 간격) 권장하나 실무상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고 손목 아대 또는 수갑 고리에 천을 끼워 사용하고, 사슬 사용시 수갑 고리에 사슬

을 연결시킨 후 허리에 사슬을 두르고 사슬 두 줄을 엉덩이 뒤쪽에서 발목 아래로 내려 양쪽 발목 각각을 두른 후 양 발목을 연결하는데 허리를 감을 때 헐렁하게 하면 계구해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볼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채운다. 수갑고리와 허리에 감겨진 사슬을 연결할 때에는 한 뼘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목에 감을 때는 볼펜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으며, 사슬은 엉덩이 뒤쪽으로 내린다. 소장이나 보안과장 순시시 계구가 느슨하게 채워져 수용자가 계구를 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 동태시찰사항에 '홍분상태가 지속되어 자해, 폭행 등의 우려가 있어 계구를 사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구사용심사부에 '소란 및 고성으로 홍분상태가 지속되고 근무자를 노려보며 대들려 한다.'라고 적혀있다. 계구(수갑)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2007. 1. 24. 위 진정인이 할머니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가며 '오늘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 오늘 끝낸다'라며 자살하겠다는 뜻의 언행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하여 자살·자해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구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이 사동에서 '내 죽으면 통화하겠네. 오늘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고 관구실에서 '나는 속았다. 내 죽으면 통화하겠네. 내가 계구를 풀면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라고 하여 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였는데 그 발언 외에는 진정인이 자살을 예비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거실에 수용중인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2006. 10. 31. 진정인이 2관구실로 내려온 것은 계구해제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 ○○○과 10동상 담당자가 진정인을 데려왔다. 오랜 시간 계구사용은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며 부산교도소는 누범교도소로서 일부 문제수용자들의 규율위반이 심각하며, 소장과 보안과장이 계구사용에 대해 특별히 방침을 내린 적은 없다.

마)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2006. 10. 30.~2006. 11. 3. 법무연

제2장 구급시설 관련

수원에서 교육중이었다. 또한, 2관구실에 매트리스와 담요, 교봉과 가스총 1정, 캠코더 1대, 금속수갑 2개, 검신기 등이 있었다.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계구사용은 필요하며 부산교도소는 누범교도소로서 수용자들 죄질이 타교도소에 비해 나쁘고 일부 문제수용자들의 규율위반이 심각하여 이를 제압하고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오랜 시간(5~7일) 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담당자들이 면밀히 관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소장과 보안과장이 계구사용에 대해 특별히 방침을 내린 것은 없으며, 계구사용은 현장 근무자들의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소장과 관계없다.

바) 피진정인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부산교도소의 계구사용은 과도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구사용 문제는 일종의 흐름의 문제로서 소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 분위기가 조성되고 계구사용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장이 계구사용에 대해 특별한 지시나 방침을 내리는 것은 없다. 징벌사동 담당근무자(본인)가 사동에서 직접 계구를 채우는 경우는 없고 관구실에서 채우는데 긴사슬을 채울 때는 대부분 관구실 근무자들 여러 명이 채우고 자신이 직접 채운 적은 없다. 보안과장은 거의 1일 1회 순시하는데 계구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긴사슬) 자물쇠가 잘 안 잠겨 있을 경우와 유격상태 등을 보아 너무 팍 조여 있거나 너무 유격되어 있을 경우 지적을 하였다.

3) 참고인들

가) 교도관 ○○○

사슬사용 빈도는 한달에 10~20번이며 대개 1주일 이내로 사용하며, 긴 사슬을 사용할 때 사슬 두 줄은 옆으로 할 경우와 뒤로 할 경우가 있고, 시간이 있을 경우 옆으로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 뒤로 하는데 관구실에서는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겠다.

나) 수용자 ○○○

진정인 ○○○의 진정건과 관련하여, 위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동안 (교도소가) "너무한다"며 심정을 한탄한 적은 있으나 교도소 규칙을 잘 따르고 직원한테 대든 적이 없으며, 진정인 때문에 불안을 느끼거나 위해를 느낀 적은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에게 수갑이 채워진 이유는 모

르나 교도소에서 이유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다) 수용자 ○○○

2007. 3. 25. 15:00경부터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수갑의 경우 한 칸의 여유도 없이 꽉 채워졌고, 사슬은 허리에서 검지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팽팽하게 감겨져 있었다. 식사를 할 경우 복부가 팽창해 압박이 더욱 심해져 전날부터 단식 중이었는데, 좌·우측 허리에 긴사슬에 의해 짓눌린 붉은색 흔적과 발목 부분에도 사슬에 짓눌린 흔적이 떠를 두르고 있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확인하고 사진으로 수집하였다.

라) 수용자 ○○○

2007.3.20.~3.23. 4일 동안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였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사슬을 심하게 조여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밥을 먹으면 복부가 팽창하여 사슬이 더욱 조이기 때문에 4일 동안 일부러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발목에 사슬이 꽉 채워져 있어 걸을 때 사슬이 살갓을 쓸어내려 오른쪽 발목 뒤쪽에 까맣게 딱지가 생겼다.

마) 수용자 ○○○

2007.3.2.~3.20.간 계구착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 수갑과 사슬이 너무 팍 조여서 조금 늘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3·4관구실에서 본인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등 뒤쪽에서 사슬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들었다 놓았다 하여 현재 양쪽 손목에 통증이 있다. 좌측 손목에 상처(딱지 떨어진 자국)가 2군데 있으며, 좌·우측 허리부분에 멍이 있고, 왼쪽 발목 뒤꿈치와 발목 안쪽에 상처가 두 세 군데 있다.

바) 교도관 ○○○(진주교도소 보안장비 담당자)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수갑은 폭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슬은 자살 또는 자해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수갑을 사용할 경우 보호대(상처방지용 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사용자의 손목 양 옆이 수갑에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우고, 긴 사슬을 사용할 경우 '계구사용규칙 별표9'에 따라 복부를 압박하지 않을 정도(손바닥이 허리와 사슬 사이에 쉽게 들어갈 정도)로 허리를 감고 감겨진 사슬을 수갑 고리와 연결하는데 수갑 고리와 사슬의 간격은 한 뼘 정도(사슬 고리 6칸 정도)를 두고 있으며, 양 발목으로 사슬을 연결할 때 피사용자가 앉거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나 수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부 앞으로 연결하고 발목을 감을 때에는 상처방지를 위하여 발목보호대를 착용한다.

사) 교도관 ○○○(부산구치소 보안장비 담당자)

계구사용과 관련해 수갑은 손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수갑 고리와 손목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채우고, '계구사용규칙 별표 9'에 따라 긴 사슬을 사용하는 경우 허리, 손목, 발목순으로 사슬을 채우는데 허리와 발목을 연결하는 사슬은 복부 앞으로 연결하고 허리에 사슬을 감을 때에는 사슬이 몸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채우고 있으며 보통 사슬과 복부사이에 손바닥이 쉽게 들어갈 정도다. 사슬을 사용할 경우 손목 및 발목보호대를 사용하여 상처를 방지하고, 자물쇠는 보통 허리 1개, 수갑 1개, 양 발목 2개, 발목과 발목연결 1개, 끝줄 처리 1개로 6개 정도를 사용한다.

아) 수용자 ○○○(사방청소부)

부산교도소의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방지) 목적과는 달리 담배관련 사건, 지시불이행, 수용자간 폭행 등에도 무조건 사슬을 사용한다. 2007. 5.초 출소한 ○○○ 수용자는 담배문제와 관련되어 조사, 징벌을 받았는데 피진정인 ○○○ 교위는 '계구사용심사부'에 ○○○가 거실문을 머리로 박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거짓이다. ○○○ 교위가 없을 때 2~3번 '계구사용심사부'를 보았는데, 수용자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흥분한다든지 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한 30명가량 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위 ○○○가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하였다.

자) 사방청소부 ○○○

문제수용자는 말로 해서는 열 번 백 번을 해도 듣지 않는데, ○○○ 소장이 부임하고 나서 사슬로 좀 묶고 하니까 질서가 잡혔다.

차) 법무부 인권국

부산교도소 소장 등을 인사조치한 것은, 일부 수용자에 대한 수갑·포송 계구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그 권한 남용의 사실이 일부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 보안과장, 관구계장 등 책임자 3명을 인사 조치하는 한편, 일부 수용자의 가혹행위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관련 고소사건을 현재 부산지검이 수사 중에 있어 이

에 관한 조사내용을 검찰로 송부하였다.

카)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7일 이상의 계구사용을 승인한 이유와 관련하여, 계구사용의 경우 현장근무자와 기관장의 판단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비록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3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 ○○○은 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취하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들,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소장이었던 피진정인 ○○○은 2006. 8. 16. 교도소 직원들에게 ‘소장지시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직원 사기 및 근무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아 6가지의 내용으로 시행 독려 지시를 하였고, 이를 전 간부가 서명 확인하였으며,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는바, 그 지시사항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위로·격려토록 하여 사기위축 방지하고, 보안관리과장은 별도로 위로 격려한 후, 소장실로 안내토록 할 것”, ② 사기 양양책으로 “피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시에는 표창 우선 상신, 해외시찰 기회 우선 부여, 성과급 지급 및 근무평정시 우선권 부여 등 사기양양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던 점,

2) 피진정인 ○○○이 부산교도소에 소장으로 부임한 2006. 7.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과 관련한 자체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

제2장 구금시설 관련

3)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 5. 2. 부산교도소 실지조사시 수용자 1,113명 중 불특정 수용자 2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45명의 수용자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사례가 많다·많은 편이다'라고 답한 수용자는 57명으로 다수의 수용자가 '부산교도소의 교도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하였다'고 답하였다는 점,

4) 피진정인 ○○○, ○○○이 부산구치소에 정복을 입은 채로 가서 일반접견 장소가 아닌 조사실에서 진정인 ○○○에게 '진정을 왜 했는지 궁금하다, 사실이 아닌 악성진정을 왜 하였는가'에 대해 물어보자 부산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 송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진정인은 위협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점,

5) 부산교도소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취하를 종용하고 사술을 해체해 준다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참고인 수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6) 참고인인 부산구치소 고층처리반 교위 ○○○은 2007. 3. 7.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에야 비로소 2007. 11. 26. 팩스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말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진정인 ○○○, ○○○이 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 ○○○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규정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 ○○○, ○○○은 자신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 ○○○, ○○○으로부터 위 진정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진정인 ○○○, ○○○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 ○○○, ○○○은 피해자 ○○○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들,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1) 피해자가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 5. 2. 부산교도소 실지조사시 수용자 1,113명중 조사·징벌사동을 포함하여 불특정 수용자 2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관구실에서 직접 폭행을 당했거나 다른 수용자의 폭행사실을 들었다는 수용자는 82명으로 조사되었고,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기치 하에 다수의 폭행이 진행된 정황을 확인한 점,

3)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46명의 수용자가 매트리스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수용자 상담을 주로 실시하는 관구실에 매트리스와 모포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수용자들이 다수이고, 참고인 ○○○ 수용자는 2006. 9. 내지 10.경 외부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구실 창문을 통해 뒤로 사슬이 묶여진 성명불상의 수용자를 모포에 깔린 상태에서 교도관이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진정인 ○○○ 교감의 전 부임지인 청송교도소에서도 매트리스 위에서 폭행당하였다는 수용자들의 진술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시 현존하는 매트리스를 목격하고 증거 수집차 촬영을 시도하자 급하게 치우는 현상이 실제로 확인되기도 하여 이러한 폭행의 수법이 교도소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점,

5) 참고인인 목격자 ○○○ 및 ○○○의 진술은, 2007. 3.경 피진정인 ○○○이 관구실에서 피해자 ○○○을 교사가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으로서, 두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도 서로 일치하고,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진술은 피해자 ○○○의 주장과도 부합한다는 점,

6) 피해자 ○○○이 폭행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은 피진정인 ○○○이 써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온대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대로 베껴 쓰는 식으로 교도소 측에 협조하여 이 대가로 합동접견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점,

7)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시 부산교도소 수용자중 관구실에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다수의 수용자들이 관구실에 있는 전기봉에 의해 지짐을 당하거나, 매트리스 위에서 폭행당하고 모포로 씌워진 채로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정황과 동일한 상황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 ○○○은 2007. 11.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은 관구실에 전기봉 등의 무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 및 ○○○은 관구실에 전기봉 등의 무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여 피진정인들간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진정인 ○○○, ○○○, ○○○이 2007. 3. 2. 피해자 ○○○을 관구실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 ○○○, ○○○이 공동하여 피해자 ○○○을 폭행한 행위는, 「행형법」 제1조의3, 「계호근무준칙」 제4조의1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60조 제1항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 ○○○, ○○○, ○○○은 피진정인 ○○○, ○○○, ○○○, ○○○, ○○○, ○○○ 등으로부터 관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 ○○○, ○○○, ○○○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과도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부산교도소의 계구사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피진정인 ○○○, ○○○, ○○○, ○○○, ○○○은 모두 그 사용의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주장하고 계구사용과 관련한 절차적·내용적 요건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과도한 계구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들,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1) 피진정인 ○○○ 소장이 2006. 7. 3. 부산교도소장으로 부임하여 작업거부 및 입실거부자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 수용자는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하고, 2006. 8. 3. 7일 이상 계구 사용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2006. 8. 16. 계구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2009. 9. 4.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자를 초동 조사시 계구(긴사슬, 금속수갑)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타 수용자에게 악몽감염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엄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보안관리과장 및 주요 간부가 확인 서명하였음이 부산교도소에서 작성한 문서로 확인되는 점,

2) 또한 피진정인 ○○○ 소장의 2007. 1. 25. ‘지시사항철’에는 ‘계구를 느슨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타 직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직원에게 교육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3)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감명이 넘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피진정인들이 수용자들에게 긴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는 방법과 과정 및 계구착용 후 피진정인들이 수용자들에게 가하는 불이익과 착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의 내용들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이고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4)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참고인인 수용자 ○○○의 발목이 파이도록 긴사슬을 심하게 조였음이 확인된 점,

5) 위와 같은 계구사용 방법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계구사용의 원칙적인 방법과는 달리, 긴사슬을 뒤로 채우는 방법으로 변형된 계구사용을 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산교도소 수용자 1,113명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구 사용 사유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는바 응답자 145명 중, 관련 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단 1명이고, 설명이 없었다는 답변이 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수(57명)였고, 또한 식사 또는 용변·목욕시 계구를 일시 해제하였는가의 설문에서도 식사시 풀어주었다는 응답은 14명으로 조사되었고, 풀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36명으로 사슬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으로 식사를 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는 점,

7) 또한 수용자가 가장 많은 대전교도소를 포함하여 대구, 광주, 청송제2, 전주 등 11개 교도소에서 2006. 10. 1.~2007. 3. 31.까지 사슬을 사용한 시간의 합인 4,886시간보다 부산교도소는 8,254시간을 사용하여 11개 교도소의 합보다 2배 가까이 사용하였다는 점,

8) 위와 같이 다른 수용시설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구사용의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부산교도소가 중구금시설로서 다른 수용시설보다 문제수용자들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수용구분과 관련된 지침(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및 각 수용시설의 수용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교도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와 같은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문제수용자를 집중적으로 구금하는 교도소는 '청송 제2교도소'로서 청송 제2교도소에서도 긴사슬 사용은 극히 미비하며 그렇더라도 수용질서의 유지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9) 피진정인 ○○○ 소장의 부임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의 부임 전에는 총 181시간의 사슬을 사용하였으나, 부임이후에는 3,094시간을 사용하여 1,609%가 증가되어 유독 위 피진정인의 부임기간 몇 달간만 특히 문제수용자들이 집중수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

10) 감독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구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하여야 하는바, 피진정인 ○○○의 소장 부임 이후 부산교도소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조사했음에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진정인들이 계구사용에 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계구사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토하건대, 위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자신들은 수용자들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이고 자살 및 자해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실시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춘 적정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하며 부산교도소의 '계구사용심사부'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

으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피진정인들은 특별히 계구를 사용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수용자에게도 금속수갑과 긴사슬로 묶어 놓고 식사와 용변시에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거실에서 치료중인 수용자를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자살우려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사용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진정인 ○○○의 진술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부산교도소 실지조사시 행해진 사슬사용 시연 결과에 의하면, 위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부산교도소의 직원들은 긴사슬 등의 계구 사용방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관련규정 및 지침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관행상 자물쇠를 뒤로 채우는 방식으로 긴사슬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현재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긴사슬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침 등이 용이하도록 자물쇠가 앞으로 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대법원에서도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

또한,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에서는, 계구의 사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목욕·식사·용변·치료시에는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에 정해진 외의 방법으로는 계구를 사용할 수 없고, 사슬의 경우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로 금속수갑 등을 사용하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계구사용 중에는 수시로 의사의 확인도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교정청장은 정기적으로 계구 사용 실태의 확인 및 점검과 7일 이상 초과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 7. 14. 사슬 사용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3조 등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구의 한 종류로서의 사슬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긴사슬은 계구의 종류에서 제외되어 있다.

피진정인들은 계구 중 긴사슬이 자살 및 자해를 가장 확실하게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일부 수용자가 포승을 이용하여 사망한 예를 들어 최소 필요한도라는 조건에서 사용해야 할 긴사슬의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에 불과하고, 긴사슬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교정시설에서 자살 및 자해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통계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도 긴사슬은 비인도적이므로 이를 보호장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보호침대·보호대 등을 보호장비에 추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고 현대 교정의 이념 및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일부의 수용자가 매우 흥분하여 자살 자해의 우려가 있었고, 교정질서의 수립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사용한 계구 사용의 방법과 그 정도는 필요 최소조건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는 계구사용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피진정인 ○○○이 소장으로서 지시하고 그 외 위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타 수용자의 악몽 감염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응징의 차원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 역시 계구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결국, 부산교도소의 긴사슬 사용과 같은 광범한 계구의 사용은 피진정인 ○○○이 2006. 7. 3.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지시사항으로 '수용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계구'사용을 적극 독려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도관은 타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실시한 것에 따른 것이고, 또한 감독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은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도소의 계구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구지방교정청은 계구사용의 경우 현장근무자와 기관장의 판단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구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 ○○○, ○○○, ○○○, ○○○의 행위는

계구사용과 관련된 「행정법」 제1조의3, 「행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한 ○○○, ○○○, ○○○, ○○○, ○○○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 ○○○이 진정인 ○○○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한 행위, 피진정인 ○○○, ○○○, ○○○, ○○○가 진정인 ○○○, ○○○, ○○○, ○○○, ○○○에게 과도한 계구를 사용한 행위 및 피진정인 ○○○이 위 계구사용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에 대하여 부산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와 관련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고, 피진정인 ○○○, ○○○, ○○○이 피해자 ○○○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피진정인들을 검찰총장에게 각 고발하고, 진정인 ○○○, ○○○, ○○○의 각 진정, 진정인 ○○○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와 관련된 진정부분 및 진정인 ○○○의 폭행행위와 관련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국가인권위원회 전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위원 최경숙 위원 최금숙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별지 1〉 진정한

1. 〇〇〇 (부산교도소 수용자)
2.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수용자, 현재 출소)
3. 〇〇〇 (부산교도소 수용자)
4.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수용자, 현재 공주교도소 수용중)
5. 〇〇〇 (부산교도소 수용자)
6.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수용자, 현재 진주교도소 수용중)
7.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수용자, 현재 원주교도소 수용중)
8.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수용자, 부산구치소 수용중 사망)

〈별지 2〉 피진정인

1.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소장, 현 안동교도소장)
2.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보안관리과장, 현 포항교도소 근무)
3. 〇〇〇 (진정당시 부산교도소 관구계장, 현 진주교도소 근무)
4. 〇〇〇 (부산교도소 관구계장)
5. 〇〇〇 (부산교도소 교위)
6. 〇〇〇 (부산교도소 교사)
7. 〇〇〇 (부산교도소 교사)
8. 〇〇〇 (부산교도소 교위)
8. 〇〇〇 (부산교도소 교사)
9. 〇〇〇 (부산교도소 교위)

〈별지 3〉 관 련 법 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

제31조(시설이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제57조(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용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3. 「행형법 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붙이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 (법무부예규보일 제583호, 2002. 2. 15.)

제2장 구금시설 관련

5. 「계호근무준칙」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용자의 고충처리 등)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수용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9. 1. 1.)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7.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계구사용시 주의사항) ③ 이 규칙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계구의 해제 등) ① 교도관은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없이 사용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계구를 해제한 후 지체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은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9조(계구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는 때에는 해당 수용자와의 면담, 담당교도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한 후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교정청장의 감독) ① 지방교정청장은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의 계구사용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계구의 계속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007.11.19.자 07진인1584 결정 [부당한 징벌에 의한 인권 침해(경)]

진정인에 대하여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출석 통지를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진술준비를 할 수 없게 하여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 [1]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은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출석통지서에는 징벌혐의자의 사정에 의하여 출석 진술이 아닌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그렇다면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벌혐의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시간 및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적어도 징벌위원회 개최 전일까지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6. 5. 12. 11:30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일 10:00에 진정인에게 출석통지를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 적절히 방어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3]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유사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5진인1354, 2005. 10. 10.)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 「징벌위원회 등 징벌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시달」(보안제1과-13769, 2005. 11. 29) 공문을 하달하여 '징벌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1일 전에는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벌혐의자에게 진술준비 등 자기방어 기회를 보장' 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징벌혐의자의 진술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실 거부 사건의 징벌위원회를 2006. 5. 12. 11:30에 개최하면서,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출석통지를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진술준비를 할 수 없게 하여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1) 진정인은 2005. 12. 및 2006. 1. 정신분열증으로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 2006. 2. 3. ○○교도소로 이송·치료 후 2006. 5. 9. ○○교도소로 이입되었다.

2) 2006. 5. 9. 이입 당일 진정인은 정신병력을 이유로 혼거실 입실을 거부하므로 조사수용되어, 2006. 5. 12.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0일을 선고 받았다.

3) 2006. 5. 12. 10:00 징벌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같은 날 11:30 징벌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2006. 5. 10.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일 안에 징벌위원회가 개최될 테니 준비하라는 말을 하여 주었으며, 진정인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작성한 서신을 징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신의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진정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다.

3. 관련 법령

생략

4. 인정사실

1) 진정인은 2006. 5. 9. ~ 5. 12.까지 4일간 관규위반행위(입실 거부)로 조사수용되었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 결과 관규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달 11. 징벌요구서를 작성,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진정인은 2006. 5. 12. 10:00경, 같은 날 11:30까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관규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하라는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았다.

4) 진정인은 2006. 5. 12. 11:30 개최된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였고, 금치 10일의 징벌을 선고받았다.

5. 판단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은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출석통지서에는 징벌혐의자의 사정에 의하여 출석 진술이 아닌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징벌협약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벌협약의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시간 및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징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징벌협약의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적어도 징벌위원회 개최 전일까지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벌위원회 개최시기를 2006. 5. 12. 11:30로 정하였다면 최소한 같은 해 5. 11. 11:30 전에는 진정인에게 출석통지가 전달됨으로써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 및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2006. 5. 10. 조사 수용중인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일 내에 징벌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해서 직접 진술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관규위반 행위로 인해 조사 수용중인 자는 수일 이내에 징벌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진술을 출석 통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06. 5. 12. 11:30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일 10:00에 진정인에게 출석통지를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 적절히 방어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유사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5진인1354, 2005. 10. 10.)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 「징벌위원회 등 징벌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시달」(보안제1과-13769, 2005. 11. 29) 공문을 하달하여 ‘징벌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1일 전에는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징벌협약의자에게 진술준비 등 자기방어 기회를 보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6. 폭행 및 폭언

1 2007.3.19자 07진인1316 결정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기록이 남지 않는 구금시설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욕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 배경사건이 되는 사실들의 기록을 근거로하여 욕설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욕설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진술과 관계인 수용자 000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000가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되며, 피진정인 000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행형법」 제1조의 3,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

【진 정 인】 000(안양교도소 수용 중)

【피진정인】 안양교도소 000

소속기관의 장 안양교도소장

- 【주 문】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안양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000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접견불허관련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4급수로 월 4회 접견을 할 수 있으며, 2007. 2. 3., 2. 20.(2회), 2. 21., 면회한 사실이 있고, 2. 20. 접견 시에는 접견 후 귀가하는 아버지를 교도소 측에서 다시 주선하여 이뤄진 것으로 담당이 횡수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2월말 남동생(공익근무요원)이 접견 오자 일방적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나. 2007년 2월말경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에게 “면회 온 동생을 돌려보내고 접견을 안 시켜주었느냐, 2007. 2. 20. 접견 건은 횡수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새끼 상대 못할 새끼네, 야 이 새끼야 3월 달에 더 시켜준다고 했는데 왜 또 그 소리냐,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2007. 2. 20. 2차로 연이어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두 차례의 접견은 모두 진정인의 접견횡수에 포함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 2007. 2. 20. 당시에 접견이 1회 더 하게 된 취지가 1차 접견 후 진정인의 고충내용을 들은 아버지의 요청이 있었고 또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1회 접견을 더 허가한 것뿐이지 횡수에서 제외하고 접견을 허가한 것이 아니다.

다) 2007. 2. 27. 사동 근무자가 “조금전 진정인에게 접견 온 사람이 접견을 하지 못하고 접견서신만 보내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진정인이 불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전화를 하여 즉시 진정인을 고충처리반 상담실로 동행하여 상담하였고, 상담 시 진정인에게 이번 달은 이미 다 지났으니 어쩔 수 없고 다음 달에 지정된 접견 횡수 외에 꼭 가족과 의논할 일이 있어 접견이 필요하다면 그때 요청하면 허가를 받아 접견을 한 번 더 시켜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설명하였고,

라) 고충처리반장도 진정인에게 일부러 접견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접견접수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2. 20. 접견내용이 두 번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벌어진 일이라는 것과 필요시 요청하면 접견을 1회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하니 진정인도 접견과 관련한 모든 불만에 대해 오해가 풀렸으며

수용거실로 돌아간 사실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2007. 2. 28. 당시 진정인의 조사건(지시불응 및 부정물품소지 등)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진정인의 피해감과 복잡한 심경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장래를 선도해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지시불응(입실거부)의 시초가 된 사건의 상대방 수용자 ○○○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이 혐의로 조사수용중인 수용자 ○○○와 직접 대면하여 화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수용자 ○○○를 조사실로 동행하였고, 두 사람이 구두로만 화해하면 추후 또 말을 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화해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나) 진정인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전 한성태의 폭행 건을 재 거론하며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부정물품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동 사용하는 부정물품을 사물 짐을 챙겨 담아 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화해와는 무관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였던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이 스스로 수용자 ○○○와 화해를 하겠다고 하여 대질한 상황에서 화해와 무관하게 “자신은 피해자로 너무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집을 부리는 진정인의 태도에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에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앞에 놓고 지금 장난을 치느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화해를 강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화해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대면하니가 마음이 바뀌었냐? 한심한 친구네 이거!”라고 하자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하며 다시 스스로 화해서를 쓰겠다고 하여 서면으로 화해서를 작성케 하고 입실시킨 사실이 있으나 호치케스를 집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관계인 수용자 ○○○(진정인을 폭행했다는 수용자)

본인과 ○○○의 소란 건과 관련 2007. 2. 28.경 조사실에서 합의서(화해서) 작성과정 시 수용자 ○○○이 접견에 대하여 말을 하자 조사주임(피진정인)이 접견을 한 번 더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3. 관련 법령

가. 「행형법」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등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 4.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접견불허관련)

1)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수용자접견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년 2월에는 2. 3.(○○○), 2. 20.(○○○), 2. 20.(○○○), 2. 21.(○○) 4회 접견하였고, 같은 달 20.에는 진정인의 부 박형명이 2회 접견하였으며, 3월에는 3. 3.(○○○), 3. 14.(○○○), 3. 17.(○○○), 3. 19.(○○○) 4회 접견한 사실이 있다.

나) 안양교도소 수용자 접견관련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고, 2007. 2. 20. 진정인의 접견내용이 두 번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가족접견 등 필요시 요청하면 접견을 1회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의 남동생 ○○○(이하 '○○○'라 함)는 2007. 2. 27.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을 접견 신청 하였으나 안양교도소 민원봉사실 접견담당이 진정인의 경우 이미 월 4회의 접견횟수를 초과하여 접견할 수 없다고 하자 ○○○는

“접견 민원인 서신”을 접수시키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7. 2. 27. ○○○가 진정인을 접견 신청하였으나 접견 불허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가족접견 등 필요 시 1회 접견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접견관련 기록이 전산화 되어 있어 담당직원이 전산기록상 진정인이 이미 4회 접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불허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고의로 진정인의 접견을 불허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욕설관련)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수용자 ○○○의 진술서, 진정인과 수용자 ○○○와의 화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7. 2. 28.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실거부의 시초가 된 수용자 ○○○와의 폭행사건과 관련 진정인을 조사실로 동행하였으나 진정인이 조사수용중인 수용자 ○○○와 대면하여 화해를 하고 싶다고 하여 수용자 ○○○를 조사실로 동행하였고,

나) 이후 진정인과 수용자 한성태간 합의서(화해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접견에 대하여 말을 하자 피진정인이 접견을 한 번 더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는 것을 관계인 수용자 ○○○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진술과 관계인 수용자 ○○○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가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따라서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 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인에게 욕설한 피진정인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정재근

2 2007.12.14자 07진인2859 결정 [인격권 침해(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하는 행위는 환자수용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1은 진정인이 치과진료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대기실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진정인이 치과진료실이나 진료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면 피진정인 ○○○ 또는 참고인 1은 이에 대해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과감 등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의 동태시찰 사항에 기록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없는 점,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욕 등을 하였다는 참고인 2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됨.
- [2]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환자수용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행형법」 제1조의 3,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법무부 예규관리 제625호) 제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도소 ○○○

2. ○○교도소 ○○○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7. 5. 29. 14:00 - 15:00시 경 공중보건의 ○○○은 치과진료 중 진정인에게 심한 욕을 하는 등 하여 직원(교사 ○○○)이 진정인을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진료대기실 문을 열고 가운을 벗으며 “이 썩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수용자가 있는데서 욕을 하였고, 이후 진정인은 울면서 거실로 갔다. 당시 진료대기실에는 수용자 ○○○이 있었다.

나. 2007. 6. 12.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하였으며, 거의 한 달여가 지난 뒤 ○○지원과장을 면담하고 나서야 새로운 수저를 받을 수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나이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 너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두고 보자”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으로부터 약간의 잇몸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피진정인 ○○○)

진정인은 2007. 5. 29. 14:30경 치과진료를 받으러 왔으나 이미 기능을 상실한 치아의 치료를 요구하여 치료가 불가능함을 수차례 친절히 설명하였지만 진정인은 “자기가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면서 모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료를 해주지 않은 데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상태로 눈을 크게 부라리고 손으로 샷대질을 하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가운에 붙은 이름표를 보면서 “○○○! 너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본인은 교도소 근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라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빨리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였고(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을 한 사실은 없음), 진정인은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진료실을 빠져나간 사실이 있다.

치과진료실에서 진정인 혼자 나갔고, 진료대기실로 누가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후 치과진료실에서 공중보건의실로 가려고 하는데 진정인이 본인에게 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당시 교사 ○○○가 진정인과 얘기하고 있었으며, 그냥 지나쳐 가는데 계속해서 오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불러서 공중보건의실에 갔다가 다시 진료대기실로 간 후 다시 공중보건의실로 갔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피진정인 ○○○)

진정인은 2007. 6. 12.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독거실 입병 전 병사 13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진정인이 사용하던 식기 및 수저가 있었으며 거실을 옮길 때는 진정인이 사용하던 식기 및 수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수저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결핵 환자가 퇴병을 하게 되면 그 거실은 보건의료과에서 소독을 한 후 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진정인이 병사 독거 3실에 수용되던 날에도 보건의료과에서 소독을 한 후 진정인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전 수용자인 ○○○은 본인이 사용하던 식기 및 수저를 가지고 퇴병을 하였기에 진정인의 주장처럼 결핵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진정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다. 참고인

1) 교사 ○○○

2007. 5. 29. 14:30경 수용자 ○○○가 치과진료 신청을 하여 보건의료과 치과진료실로 연출되어 치과진료를 하던 중 수용자 ○○○가 불편함을 호소하여 공중보건의의 진료결과 현재 환자의 치아상태로 보아 이곳에서 더 이상의 처치를 해 줄 수 없다고 몇 차례 친절히 상세히 설명을 하였던바, 처치를 해주지 않는 데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상태로 눈을 크게 부라리고 샷대질을 하면서 “나이가 몇 살이나, 신분이 뭐냐” 의사복에 붙은 이름표를 보면서 “○○○씨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치과공중보건외에게 공갈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이후 수용자 ○○○가 치과공중보건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져 몸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 다른 수용자가 있었는데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대화내용 또한 기억나지 않으나 수용자 ○○○가 많이 흥분되어 있어서 마음을 진정하라고 했고 진정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치과공중보건외가 문을 열고 진정인에게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수용자 ○○○(포항교도소 수용중)

2007. 5. 29. 당시 치과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대기실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런데 교사 ○○○가 수용자 ○○○를 데리고 진료대기실로 오고 있었는데 ○○○ 치과공중보건외가 치과진료실 문 앞에서 수용자 ○○○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고, 수용자 ○○○가 “왜 채소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 치과공중보건외가 계속 욕을 하여 교사 ○○○가 수용자 ○○○를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하였다.

잠시 후 ○○○ 치과공중보건외가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진료대기실 문을 열고 수용자 ○○○에게 “가만히 나누지 않겠다”고 말한 후 보건의료과에 갔다가 5분 후 다시 진료대기실로 와서 주먹 쥐고 또 “가만히 나누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보건의료과 ○ 계장이 “왜 시끄러우냐”고 하자 ○○○ 치과공중보건외가 진료대기실에서 보건의료과로 갔다. 이후 ○ 계장이 본인에게 혼자 병동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 진료대기실에서 수용자 ○○○와 교사 ○○○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법무부 예규관리 제625호)

제8조(복무감독) 소장은 의무관 또는 공중보건외사의 근무소홀로 인한 의료업무 공백으로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욕설관련)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조사관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의 진술조서 및 자료, 참고인 교사 ○○○(이하 ‘참고인 1’라 함)와 수용자 ○○○(이하 ‘참고인 2’라 함)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7. 5. 29. 14:30경 참고인 2는 피진정인 ○○○에게 치과진료(상담)를 받고 진료대기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이후 진정인이 치과진료(상담)를 받기 위해 치과진료실에 들어갔으며, 치과진료실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 및 참고인 1이 있었고, 참고인 1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은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보건의료과(공중보건의실)로 간 후 진료대기실로 갔다가 다시 보건의료과(공중보건의실)로 간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은, 2007. 5. 29. 진정인이 치과진료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져 몸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 다른 수용자가 있었는지, 진정인과의 대화내용, 피진정인 ○○○이 진료대기실 문을 열었는지, 진정인에게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참고인 1은, 2007. 5. 29. 진정인이 치과진료실 등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교감 또는 당직교감에게 보고하여 진정인의 동태시찰 사항에 기록하고 첨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동태시찰 사항에 없고, ○○교도소[보안관리과-3178(2007. 11. 12.)] 또한 2007. 5. 29. 진정인 동태시찰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마) 참고인 2는, 피진정인 ○○○이 2007. 5. 29. 치과진료실 문 앞에서 수용자 ○○○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고,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진료대기실 문을 열고 수용자 ○○○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보건의료과에 갔다가 다시 진료대기실로 와서 주먹 쥐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1은 진정인이 치과진료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대기실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치과진료실이나 진료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면 피진정인 ○○○ 또는 참고인 1은 이에 대해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교감 등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의 동태시찰 사항에 기록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없는 점,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욕 등을 하였다는 참고인 2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환자수용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수저 미교체관련)

진정인은 2007. 6. 12.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은 진정의 수용자 ○○○이 사용하던 식기와 수저를 가지고 퇴병을 하였고, 진정인이 사용하던 식기와 수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3 2008.8.12자 08진인1442 결정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 신변노출에 의한 인격권침해]

수용자 호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안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하고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행형법」 제1조의3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하고, 「계호근무준칙」 제270조 제2항은 교도관은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는 교도관은 피구금자인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가능한 한 일반 공중의 면전에 수용자의 몸이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인 00교도소 출정업무 담당자 교위 이00이 2007. 9. 18.(화) 진정인을 00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호송차량 전용주차장까지 도보 등을 이용하여 호송하는 과정에 진정인의 안면을 가릴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채 수용복까지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행위는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호송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피진정인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적절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는 2008. 2. 29.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안양교도소장 및 서울구치소소장에게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다른 교정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000장관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을 권고함

【참조조문】 「행형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의3, 「계호근무준칙」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955. 8. 30. 제1회 국제연합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 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 승인) 제45조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00교도소 출정사무과 교위 이00
 2. 00교도소 교육교화과 교위 김00, 최00

소속기관의 장 00교도소장

피신청인 김00의 재 000장관

- 【주 문】**
1. 00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호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안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하고 호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장관에게,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각 교정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00교도소 수용 중이던 2007. 9월경 00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기위해 총 4회에 걸쳐 출정을 나갔다. 출정 당시 진정인은 수갑과 포승을 한 채 00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00지방법원 정문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위 법원 정문에 주차되어 있던 호송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 도보로 이동하는 동안 진정인의 얼굴이 위 검찰청 및 법원 청사를 방문한 일반 민원인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나. 2008. 3. 12대검찰청과 충북경찰청에 익일특급으로 편지를 발송했으나 00교도소측의 잘못으로 각각 3일씩 발송이 지체됐다. 이에 김00, 최00 교위에게 지체 발송된 사유를 문자 사과의 말도 없이 업무에 대한 변명만 하여 진정인이 서신 지체발송건 등을 청와대에 진정하였고, 그 일로 법무부 청원조사관에게 5시간 정도 회유성 조사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진정요지와 같으며, 00교도소 교도관이 출정 당시 진정인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도록 배려했더라면 위 검찰청사 등에서 일반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조금은 덜 창피했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출정사무과 교위 이00

피진정인과 00교도소 소속 경비교도대원은 2007. 9월경 00지방검찰청 조사를 마친 진정인에게 이중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하여 위 검찰청 구치감에서 검찰청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호송차까지 약 40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 계호한 적이 있고, 계호 과정에 검찰청 직원과 벌금을 납부하러 온 수 명의 민원인을 만난 적이 있다. 호송과정에 수용자가 수용복을 입고 수갑과 포승을 한 채로 일반 민원인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호송하는 교도관도 창피하다.

2) 교육교화과 교위 김00

진정인이 대통령실로 제출한 민원 건 중 서신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절함에 따라 여사동 근무 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도록 하였고, 2008. 3. 19. 대전지방교정청 조사관이 진정인을 면담할 때 청원 조사관의 허락 하에 진정인을 만나 서신업무 대행과정에서 착오로 서신을 1일 지연 발송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3. 관련법령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나. 「계호근무준칙」(2005.3.25. 법무부령 제520호)

제269조(근무자 유의사항) 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별도의 포승으로 중범자와 경

범자를 포함하여 2명 또는 3명을 1개조로 연결하여야 한다.

4.~20. 생략

제270조(수용자의 복장 등) ① 생략

② 출정수용자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고,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1조(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출정중인 수용자를 법정 또는 검사조사실 등으로 동행할 때에는 계구를 사용하고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수용자 동행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고, 지정통로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때에는 양해를 구하여 외부인 통행을 일시 차단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

5.~7. 생략

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 8. 30. 제1회 국제연합범죄방지 및 범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 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 승인)

제45조(피구금자의 이송)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7. 9. 18.(화) 피진정인 교위 이00은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가 완료된 진정인을 위 검찰청 구치감에서 호송차량 전용주차장까지 도보 등을 이용하여 호송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진정인은 수용복을 입고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안면을 가릴 수 있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호송과정에서 위 검찰청 등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수용복을 입고 수갑과 포승을 한 진정인의 얼굴 등이 노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00지방검찰청 및 00지방법원은 같은 부지에 별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으며, 수용자의 검찰조사 및 법원 출정을 위해 출입하는 각 교도소 호송차량의 전용주차장은 위 검찰청과 법원 사이에 1면, 위 검찰청 구치감 정문에 1면이 있고, 여러 교도소의 호송차량이 동시에 출정하여 전용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원 정문 옆에 소재한 민원인 주차장을 호송차량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청 및 법원 청사에는 다수의 민원인들과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평일에 매우 혼잡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2008. 6. 17.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해 진정을 취하하였다.

5. 판 단

「행형법」 제1조의3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하고, 「계호근무준칙」 제270조 제2항은 교도관은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는 교도관은 피구금자인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가능한 한 일반 공중의 면전에 수용자의 몸이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인 00교도소 출정업무 담당자 교위 이00이 2007. 9. 18.(화) 진정인을 00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호송차량 전용주차장까지 도보 등을 이용하여 호송하는 과정에 진정인의 안면을 가릴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채 수용복까지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행위는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호송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피진정인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위원회는 2008. 2. 29.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안양교도소장 및 서울구

치소장에게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다른 교정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000장관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원형은

4 2008.2.29자 07진인2763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교)]

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목을 밀치는 등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이 잘못을 반성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저녁식사 문제로 복도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욕을 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당시 누가 먼저 욕설 등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목을 밀치는 등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4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진정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판단에 참작하기로 함.

[참조조문] 「행형법」 제1조의 3,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4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 ○○○ 교위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7. 5. 2. 19:0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소한 13명의 수용자들이 저녁식사를 요구하자 피진정인이 라면을 먹으라고 했다. 진정인 등은 뜨거운 물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며 식사를 재차 요구했으나 피진정인이 짜증을 부려 진정인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짜증이십니까?" 라고 말했다. 이에 피진정인이 "야, 인마 너는 뭔데 끼어 들어?" 라고 말하자 진정인은 "본인 나이가 57

세인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눈깔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턱을 2회 구타하고, 양손으로 목을 3분여 동안 졸랐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7. 5. 2. 19:00경 출정근무를 마치고 환소하여 입실을 시킬 때 수용자 중 몇 명이 "밥을 못 먹었으니 밥 먹고 입실하겠다." 라고 말해 "보안관리과에 말해 두었으니 거실에 밥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밥이 없다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진정인이 "야! 인마, 네가 교도관이냐, 교도관이 그게 할 소리야?" 라고 욕을 했다. 그래서 "너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서고 그래. 조용히 하고 있어. 어!" 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욕을 하고 싸울 듯이 달려들었다. 서로 밀치고 욕을 하는 과정에서 목 부분을 반사적으로 밀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힘을 주긴 했지만 본인이 진정인을 구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그 일 이후 몸이 아파 장기간 출근을 못했다. 출근했다라면 진정인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사건이 너무 커졌다.

3) 수용자의 욕을 듣고 화가 많이 나서 밀치기는 했지만 교도관으로서 수용자에게 욕을 하거나 몸싸움은 하지 않도록 참았어야 했다. 당시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교도 ○○○

저녁식사와 관련해 수용자 몇 명과 피진정인이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 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자 다시 피진정인이 욕을 했다. 서로 밀치기를 하면서 다툼이 커져 직원들과 환소한 수용자들이 두 사람을 말린 사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이 있다.

2) 수용자 ○○○

2007. 5. 2. 19:00 출정갔다 돌아온 후 밥을 달라고 하니 피진정인이 들어가서 먹으라고 말해 들어가면 배식이 끝나고 밥이 없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진정인이 “왜 짜증을 내십니까? 밥 달라 하는게 무엇이 잘못이냐?” 고 항의했다. 피진정인이 “내가 언제 짜증냈나. 함부로 말하지마라” 라고 하자 진정인이 “지금까지 징역살이해도 밥 안주고 짜증내고 성질내는 사람 처음 본다” 고 말했다. 이에 피진정인이 “말이 많다. 눈깔을 파버리겠다” 며 진정인에게 달려가 먹살을 잡았다. 진정인의 목부분이 손톱에 긁히고 잇몸에서 피가 나 본인이 말렸으나 싸움이 계속돼 다른 교도관들이 와서야 끝이났다.

3. 관련 법령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 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 4.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2007. 5. 2. 19:00 현장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수용자 ○○○ 외 수용자 10명, 교도 ○○○ 등 교도관들이 있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저녁식사 문제로 복도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욕을 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시 누가 먼저 욕설 등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목을 밀치는 등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4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진정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판단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원 원형은 위 원 정재근 위 원 김태훈

5 2007.7.9자 07진인771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기타기관)]

피진정인이 여수화재 참사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이는 외국보호인인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격리 조치한 행위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는 여수화재 참사 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로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방조치가 행해질 경우에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청주보호소 의무실장은 여수화재 참사 이후 피진정기관에 이송된 보호외국인을 진료한 후 이들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불안감, 불면증, 초조감, 등의 증상이 보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보인다는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한 바가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신체건강한 수용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 [2] 이 사건 전방조치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전방조치가 피진정인의 재량권 행사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으로서의 진정인과 피해자의 증세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주의나 경고, 상담 등의 사전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전방조치 하여, 그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는 더욱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당시의 전방조치와 강제력 행사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임.
-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이는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격리 조치한 행위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함

[참조조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1,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본규칙」 제82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 제32조, 제40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 「경비근무세부시행지침」 제30조, 제38조

[진 정 인] 장○○
[피 해 자] 장○○, 김○○
[피진정인] ○○외국인보호소장
[주 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고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후군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정신과적 치료 조치 등을 선행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방조치한 피진정인에게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자 피해자인 장00(이하 '진정인'이라 한다), 피해자 김00(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이하 '여수화재'라 한다) 사건 직후 ○○외국인보호소(이하 '청주보호소'라 한다)로 이송되었다. 2007. 3. 7. 10명의 청주보호소 직원들이 진정인과 피해자가 있는 보호실로 들어와 진정인과 피해자를 격리 보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들을 강제로 격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고 진정인의 옷이 찢어졌다. 또한 위 직원들 중 한명이 진정인을 발로 밀어 쓰러뜨렸고 나머지 직원 4명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들고 강제로 303호로 전방조치 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7. 3. 7. 피해자가 중국어로 “정신적인 손실이 있으니 당신들은 반드시 기다리고 나 또한 당신들과 같이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기재한 쪽지를 공익요원을 통하여 보호외국인들에게 전달을 하려다가 발각되었다. 청주보호소는 쪽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보호소의 질서유지와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방조치가 불가피한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전방과정에서 전방사실을 피해자에게 구두로 수차례 통보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에 의거 보호실의 질서유지와 안전 및 보호외국인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방조치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한 것이며, CCTV나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해 볼 때 진정한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은 없었다.

다. 참고인 왕00, 럽00

참고인들은 2007. 3. 7. 사건 당시 303호에서 302호로 전방되었다. 그래서 302호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당시 302호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성 교도관은 “김00은 303호로 전방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전방조치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302호실에 있던 진정한과 피해자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면서 껴안고 있었고, 남성 직원 6명, 여성 직원 4명이 302호실로 들어와, 먼저 여성 직원들이 진정한과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남성 직원들이 피해자를 잡고 진정한을 발로 밀어 강제로 떼어 놓은 후 피해자를 303호로 전방하였다.

라. 참고인 김00(정신과 의사)

진정인과 피해자는 2007. 2. 11. 발생한 여수화재 이후 두통, 가슴 답답함, 손발 저림,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는 반응, 화재당시에 대한 악몽, 불면을 호소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7. 3. 3. ○○외국인보호소 면회실에서 위 두 사람에 대한 정신과 진단을 한 바 있다.

면담결과 두 사람은 불안, 초조, 사고 기억에 대한 두려움, 우울, 분노, 위축된 감정표현, 가족에 대한 걱정, 놀란 반응에 대한 몰두, 주의 집중력 감소, 제한된 충동 조절력 등의 증세를 보였고, 벡(Beck)우울 자가 보고 검사에서는 가벼운 우울상태를, 다면인성검사에서는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였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는 규칙적인 정신과 면담이 필요하고, 사고 당시와 비슷한 환경으로 인한 자극은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이 느끼는 불면, 우울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 문답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진술서, 의사소견서, 진정사건 당시 CCTV녹화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7. 3. 7. 13:30경 피해자는 자신이 작성한 “정신적인 손실이 있으니 당신들은 반드시 기다리고 나 또한 당신들과 같이 생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이송되어 온 보호외국인들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청주보호소 직원에게 발각 되었다.

2) 2007. 3. 7. 17:00경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여성 교도관과 여성경비대원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진정인과 함께 전방조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잠시 후 남직원 6명과 여직원 2명, 여성 경비대원 2명이 302호에 들어갔고, 먼저 여성교도관 등이 격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남성 직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정인과 피해자는 격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옷이 찢어지고 피해자는 속옷이 반 정도 벗겨졌다.

3) 2007. 4. 6. 진정인은 여수화재 후유증으로 우울, 불안이 동반된 적응장애가 있다는 정신과 의사 김00의 소견에 근거하여 특별보호일시해제 되었으며, 2007. 5. 4.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 결정절차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의사 김00이 진정인에게 여수화재 사건 이후 수면장애, 두통, 불안, 초조, 재경험, 가슴 답답함 등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연장 결정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도 2007. 4. 6. 지급 받을 채권의 존재, 신병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정신과 의사 김00의 소견을 근거로 보호일시해제의 연장이 결정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체활동을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 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3은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56조의 3 내지 7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 및 신체, 면회, 감시 등에 관한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이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범위 내로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정하여야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전방조치에 따른 강제력 행사의 인권침해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57조는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법무부령인 「외국인 보호규칙」 제40조에 격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하위법규인 「경비근무세부시행지침」 제30조 제1항에는 ‘방 옹기기(전방)는 보호외국인 안전 및 보호실 질서유지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는 여수화재 참사 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로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방조치가 행해질 경우에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청주보호소의 무실장은 여수화재 참사 이후 피진정기관에 이송된 보호외국인을 진료한 후 이들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불안감, 불면증, 초조감, 등의 증상이 보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보인다는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한 바가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신체건강한 수용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전방조치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전방조치가 피진정인의 재량권 행사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으로서 진정인과 피해자의 증세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대규모 화재참사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소내 안전질서를 동시에 꺾을 수 있도록 주의조치를 우선하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주의나 경고, 상담 등의 사전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전방조치 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는 더욱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전방조치와 강제력 행사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이는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격리 조치한 행위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유사사건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9.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 원 최영애 위 원 김호준 위 원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별지〉 관련 법령

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인도적으로 그리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그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받으며 처우되어야 한다.

나.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본규칙」

제82조 제4항 교도시설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모든 기타 수용자에게 정신과 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 (방 배정) ①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산모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 소장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보호외국인의 국적·성별·종교·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툼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형기만료·형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환자나 산모 등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하되,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생활규칙) ① 소장은 법 제56조의2 내지 제56조의7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 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 (격리 보호) ①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자해 또는 동료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한 때
4. 자살·자해를 피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단식하는 때
5.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때
 -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 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외국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마.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 제72조(특별계호) ① 경비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격리보호와 함께 특별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식 제44호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호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제1항의 특별계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할 수 있다.
 - ③ 경비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줄 수 있다.
 - ④ 경비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할 때 언행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소장에게 보고하며, 그 내용을 경비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특별계호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그 특별계호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⑦ 특별계호 보호외국인에게는 그 특별계호 기간 중 면회, 운동 등을 금지한다.

바. 「경비근무세부시행지침」

제30조(방 옮기기 등)

- ① 방 옮기기(전방)는 보호외국인 안전 및 보호실 질서유지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옮긴다.
- ② 상황실장을 점검관으로 하여 각 경비반장이 수행토록 하여 시행한다.
- ③ 중점관리외국인 등 보호관리상 특히 주의를 요하는 보호외국인을 전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제38조(특별계호 및 처우 등)

- ①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격리보호 및 특별계호할 수 있으며, 사안별 특별보호기간은 <별표5> 와 같다.
- ② 상황실장이나 감시계장은 특별계호자에 대한 조사 후 중점관리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하고 즉시, 경비과장에게 보고를 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 ③ 보호외국인의 위법행위와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의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계호자에 대하여는 경비과장의 허가를 받아 면회·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⑤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심정의 변화 등 동정사항을 세밀히 관찰하여 경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경비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계호기간의 일시정지, 감경 또는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5〉

사안별 특별보호기간

특별보호기간	특별보호 유형	비고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에 따른 위험물품 반입 및 휴대 ○ 라이타 등 화기 휴대 ○ 보호방 내에서의 흡연 ○ 담뱃불등을 다른 방으로 전달 ○ 쇠창살등을 발로 차거나 두들겨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보호방 내에서 큰 소리로 보호외국인의 휴식 또는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없는 단식 또는 식사거부 ○ 음식물 투기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에 대한 성적 접근 ○ 직원, 경비대원에 대한 욕설 또는 모욕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외국인간 구타, 협박에 의한 금품수수, 절도 등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반입, 제작 ○ 보호외국인간의 싸움 ○ 난동, 도박 등 보호질서 위해 행위 ○ 정당한 직원의 지시에 저항 ○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모의 ○ 탈출 또는 도주 시도 	
연장	<p>위 기간의 특별보호에도 불구하고 반성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6 2007.6.11.자 07진인537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관인 피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행형법 제1조의3,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

【진 정 인】 ○○○(피해자의 부)

【피 해 자】 ○○○(○○교도소 수용 중)

【피진정인】 1. ○○교도소 교위 ○○○

2. ○○교도소 교위 ○○○

3. ○○교도소 교도 ○○○

4. ○○교도소 교감 ○○○

【주 문】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1.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을 면회했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2007. 2. 17. 교도관들이 폭행하였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의 징계를 원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제2장 구급시설 관련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

2007. 2. 17. 20:00에서 21:00 사이에 B관구실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B관구실에는 주임 2명, 부장 1명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B관구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는데 피진정인 ○○○가 와서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이냐?, 너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하여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해서 왔습니다.”고 말하자 피진정인 ○○○가 “이 자식이 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말하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진정인 ○○○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턱을 오른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후 소파에 처박아 B관구실 문을 열고 4동과 6동 사이 복도로 뛰어나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관구실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 나와 잡아서 다시 B관구실로 들어갔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

2007. 2. 17. 19:30경 B관구실에서 피해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어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한다. 그때 의무과에 다녀온 후 바로 입실했으면 좋았는데”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누구인데 왜 내보고 잘못했냐.”며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대들기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욕을 했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흥분하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목을 잡고 등과 뺨을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소파에 앉혔고,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가 4동과 6동 사이에 누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직원들과 달려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한 후 B관구실안으로 데려왔다.

2) 피진정인 ○○○

피진정인 ○○○는 2007. 2. 17. 20:00경 B관구실에서 피해자의 등과 뺨을 살짝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피진정인 ○○○가 자신을 폭행한다

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되며 4동과 6동 사이에 서서 “도와주세요요. 살려주세요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3)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은 B관구 보조근무자이고, 정근무자는 교위 ○○○으로 정근무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2007. 2. 17. 20:00경 B관구실에는 피진정인 ○○○·교위 ○○○·교위 ○○○·교감 ○○○이 있었으며, 당시 피진정인 ○○○가 피해자의 등과 뺨을 살짝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가 자신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되며 B관구실 밖으로 나간 뒤 서서 “도와주세요요. 살려 주세요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4)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이 A관구실에서 시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괴성이 들려 사동인줄 알고 나와 살펴보니 B관구실에서 나는 소리인 것을 확인하고 급히 B관구실로 가보니 피해자가 B관구실 밖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소란행위를 하다 관구실 직원들에게 제지되어 B관구실내로 동행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A관구실로 대동하여 커피를 한잔 타서 주고 약 1시간 정도 상담한 후 조사거실에 입실시켰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등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3. - 4.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조서, ○○교도소 제출 답변서와 자료, 2007. 2. 17. 20:00경 B관구실 CCTV 녹화 CD, 피진정인들의 진술조서 및 피진정인 ○○의 출석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도소 보안4부 ○동하 담당 교사 ○○○은 2007. 2. 17. 00:30경 싸움 건으로 온 피해자의 사물을 검색(5동하14실)하던 중에 커터칼날 한 개를 발견 압수하여 관구실에 보고하고 피해자를 4동하21실에 수용하였다.

나. 피진정인 ○○○은 조사수용중인 피해자에 대해 부정물품(커터칼날) 소지에 대한 자술서를 받기 위해 2007. 2. 17. 19:30경 B관구실로 동행하였으며, 당시 B관구실에는 피진정인들이 있었다.

다.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 나.항의 부정물품소지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와 실랑이(피해자와 같은 거실 수용자 ○○○와의 다툼관련)를 하였다.

라. 2007. 2. 23.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실지조사시 ○○교도소 보안관리과에서 제출한 B관구실 CCTV녹화(2007. 2. 17. 20:00경) CD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진정인 ○○○는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진정인 ○○○가 자술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소파에 앉았으며,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B관구실 밖으로 나가 4동과 6동 사이에 서서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직원들에 의해 다시 관구실로 들어갔다.

5. 판단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폭행이 아니라 뺨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피난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속도 및 피해자가 가격당한 직후의 자세가 담긴 CCTV 녹화화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한 행위는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은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 ○○○은 A관구실에서 근무 중 피진정인 교위 ○○○가 피해자 폭행 이후 B관구실로 가서 피해자를 A관구실로 대동 후 조사거실에 입실시켰을 뿐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교위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원 정인섭 위원 정재근

7. 기타

1 2007.3.19.자 06진인945 결정 [면전진정 거부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피진정인이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 유치장에서 수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서면진정을 권유하고 진정인의 면전진정 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진정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모든 국가공권력의 작용에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면전진정은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설수용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진정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인간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시설수용자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특별히 설치한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시설수용자가 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무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외 불특정 경찰관
2.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4. 27.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피진정인들에게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가. 피진정인 ○○○외 불특정 경찰관들(이하 ‘피진정인 ○○○ 등’이라함)이 진정인을 2006. 4. 27.부터 4. 28.까지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며 손바닥 및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구타하여 진정인의 시력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혔다.

나. 피진정인 ○○○ 등은 진정인으로부터 2006. 4. 29. 눈이 아파 병원에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심지어 “정 아프면 119를 불러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외부진료를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위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의 면진진정을 요청하자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면진진정을 할 수 없고 서면진정만 가능하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2006. 4. 27. 15:30경 서울 강남구 ○○○동 ○○○번지 소재 노상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형사피의자이고, 피진정인 ○○○ 등은 당시 진정인을 조사하였던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진정인 ○○ 유치인보호관근무관으로 근무하던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3.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2006. 4. 27. 15:30경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하여 조사를 하다가 4. 28. 04:00경 유치장에 입감시켰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 및 면담을 주선하

제2장 구금시설 관련

는 한편,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절취한 장물 등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인을 추궁한 끝에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았을 뿐,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그 다음날인 4. 29. 오전 피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이 아파 병원진료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진정인을 출감하였는데, 이에 수사담당 동료경찰관이 진정인에게 병원에 갈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진정인이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않아 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이틀 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끝부분에 “조사 중 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계속하여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데다가 더 이상 병원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

1) 진정인이 2006. 4. 29. 08:25경 유치장에서 전날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에게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당했다며 동 형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이를 상황실을 통해 위 형사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였다.

2) 진정인이 같은 날 09:22경 위와 같은 피해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진정서 서식과 필기도구를 주었는데, 진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의 직접면담이나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유치장에서는 검찰 송치기간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직접 면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서면진정을 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진정인이 이를 면전진정 자체를 못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치장 업무수행 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라. 참고인 ○○○

1) 2006. 4월말 경 진정인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같은 방에 수용 중이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 ○○○에게 조사를 받다가 담당형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여 아프니 병원에 보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게 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위 피진정인이 만나게 해 주거나 전화는 해 줄 수 없고 진정서 양식을 쓰면 봉인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2) 또한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에게 병원진료와 담당형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자 위 피진정인이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유치장 수용 당시에는 유치장근무 경찰관에게, 그리고 2006. 8. 경 서울구치소 수용 중에는 진정인의 요구로 진정인의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이 있었다.

4.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제12조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 및 제4항

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2006. 8. 8. 제기한 항소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0000노0000)에서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당하여 마지못해 절도혐의를 허위자백을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2006. 11. 7. 항소 기각되어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의 원심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본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 및 ○○○의 진술서 및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등 관련 수사기록,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작성한 피진정인 ○○○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및 참고인 ○○○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제출자료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6. 4. 27. 15:30경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진정인 ○○○ 등의 조사를 받다가 다음날인 4. 28. 04:5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같은 날 29. 08:25경 위 유치장에서 진정인이 유치장보호관으로 근무하던 피진정인 ○○○에게 몸이 아프다며 병원진료 및 담당형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이러한 사실을 피진정인 ○○○이 피진정인 ○○○에게 상황실을 통해 통보 하자, 피진정인 ○○○이 같은 날 10:35경 진정인을 출감하였고, 피진정인 ○○○ 등이 진정인에게 병원진료 의사 및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진정인은 같은 날 09:22경 유치장 거실에 있을 때와 10:35경 출감 할 때 피진정인 ○○○에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1에게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수차례 구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과의 전화 및 직접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서면 진정절차 만을 안내하였을 뿐, 면전 진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하지 못하고, 2006. 5. 1. 08:35경이 되어서 위 유치장에서 서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 등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2회의 기재에 의하면, 가혹행위 및 병원치료를 묻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 4. 29. 00경찰서 형사과 경사 ○○○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진정인이 폭행 및 병원진료와 관련하여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정 중 피진정인2가 진정인의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을 거부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같은 수용거실에 있었던 참고인 ○○○의 목격진술 및 피진정인 ○○○의 인정진술 등을 놓고 볼 때 이 건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살피건대, 면전진정은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설수용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진정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인간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시설수용자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특별히 설치한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전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에는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수용자에게 입소 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이러한 진정권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진정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진정함 설치·운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이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 유치장에서의 수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서면진정을 권유하고 진정인의 면전진정 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진정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가공권력의 작용에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2헌마193)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의 소속 기관장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면전진정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2 2007.3.12.자 06진인2832 결정 [알몸 검신에 의한 인권침해(교)]

가림막이 없는 조사실에서 수용자의 알몸을 검사한 사실에 대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금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자체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없는 조사실에서, 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의 옷을 탈의시킨 상태로 신체수색을 한 행위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 [2] 피진정인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계호근무준칙」 등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규정한 제 규정에 신체검사 대상자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실시 인원,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제도적 원인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행형법」 제17조의2, 「행형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44조, 「계호근무준칙」 제70조, 제81조, 「수용자징벌 및 규율에 관한 규칙」 제9조, 「행형법 개정(안)」 제92조,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제6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8조, 관련 판례 - 2001다51466대판

[진 정 인] 유○○

- [피진정인]**
- 1. 00교도소 교감 조00
 - 2. 00교도소 교위 정00
 - 3. 00교도소 교위 박00

[주 문]

-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급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00교도소장에게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검사를 실시한 교감 조00, 교위 정00, 교위 박00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6. 10. 24. 16:55 경 출역 후 폐방점검을 받기 위해 입방하던 중, 보안관리과 앞 복도에서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을 조사실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실에서 조00, 최00, 이00 그리고 또 한명의 성명불상 주임 등 4명의 직원이 진정인을 둘러싸며 진정인에게 속옷까지 벗을 것을 강요하며 알몸검신을 하여 진정인은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10. 24. 00교도소 조사실에 평상시 신체수색을 당하지 않는 1급수인 진정인이 교도소 내 부정물품인 담배를 보관·운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어, 교위 박00이 종이6공장 출역을 마친 진정인을 조사실로 임의 동행하였다.

2) 조사실에서 교감 조00, 교위 정00, 교위 최00, 교위 박00, 교사 이00 가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을 조사실로 동행한 사유와 신체수색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사실 출입문을 차단한 상태로 조사실 한 쪽 모퉁이에서 보안관리과 당직교감 조00 직원이 진정인의 신체가 다른 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몸으로 막은 상태에서 조사실 소속 교위 정00와 당직교감 조00의 명을 받은 교위 박00이 진정인의 속옷을 탈의시키고 신체수색을 실시하였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3) 「계호근무준칙」 제70조는 신입수용자 신체검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존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서, 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로는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신체수색을 실시하여 피검자의 인권 보호에 신중을 기하겠다.

3. 관련법령 및 판례

가. 「행형법」

제17조의2(신체검사 등)① 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 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나. 「행형법 시행령」

제42조(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수용자의 신체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44조(거실검사 등)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거실·작업장·기타 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호근무준칙」

제3절 신입자 조사근무

제70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머리카락·귓속·겨드랑이·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항문·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검사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신속하게 하고, 가급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검사를 하기 전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수검근무

제81조(거실검사) ③ 거실검사는 가급적 수용자가 운동·목욕 등으로 거실 안에 없을 때 실시하고, 수용자가 거실 안에 있을 때에는 검사 직원 1명은 수용자를 복도에 정렬시켜 신체 및 의류검사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거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수용자징벌 및 규율에 관한 규칙」

제9조(조사자 준수사항)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바. 법무부 제출 「행형법 개정(안)」

제92조(신체검사 등)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사.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원칙6 -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아.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8조(신체의 수색·검증) ① 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탈의 상태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자. 관련 판례 - 2001다51466대판

(생략)…….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 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걸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가. 영문도 모른 채 알몸검신을 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00 교도소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에게 투서내용을 설명하면서 부정물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신체수색과 검방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신체수색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06. 10. 24. 16:55 경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00교도소 조사실에서, 당직 교감 조00이 자신의 몸으로 진정인의 몸을 가리고 교위 정00와 교위 박00이 진정인의 신체를 수색하였고, 수색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가운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진정인의 상·하의를 탈의시켰으며, 당시 조사실에는 위 피진정인 외에 교위 최00과 교사 이00가 책상에 앉아 고유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평상시 신체수색을 받지 않는 1급수인 진정인이 담배를 보관하여 운반하고 있다는 투서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항문 속에 담배·마약 등을 보관하다 적발된 전례가 있으므로 2006. 10. 24. 16:55 경 진정인에 대해 신체수색을 실시한 행위는 「행형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없는 조사실에서, 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의 옷을 탈의시킨 상태로 신체수색을 한 행위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계호근무준칙」 등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규정한 제 규정에 신체검사 대상자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실시 인원,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제도적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본 진정사건의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한 피진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정인들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여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정재근

3 2007.12.24. 자 06진인1162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가스총 등 보안장비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진정인은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소란행위를 하는 진정인에게 수차례 안정을 취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던지는 등 피진정인 등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하여 진정인을 제압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됨
- [2] 그러나, 현행 「보안장비관리규정」 가스총은 총기에 준하여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내용이 전혀 없으며 「계호근무준칙」에도 구체적인 사용요령이 미흡하여 보안장비의 오남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스총 등 보안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권고함

【참조조문】 「행형법」 제15조,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 「계호근무준칙」 제37조

【진 정 인】 김○○

- 【피진정인】**
- 1. ○○교도소 김○○
 - 2. 법무부장관

- 【주 문】**
- 1.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2. 법무부장관에게, 가스총 등 보안장비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5. 12. 30.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얼굴 앞에서 가스총을 발사하여 화상을 입게 하였는데,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과 국가배상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5. 10. 28. 소란 및 교도관 폭행으로 금지처분을 받고, 충동조절 장애 및 정신분열(의증)의 진단결과에 따라 징벌 일시정지로 ○하○○실에 독거 수용 중이었다.

2) 2005. 12. 30. 피진정인은 보안관리과 수용관리 전반에 대한 야간감독 당직 근무명을 받고 근무하던 중, 03:30경 진정인이 담당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로 거실출입문을 걷어차고 빗자루로 거실 내 식수통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담당근무자의 보고를 받고 기동순찰 담당자와 함께 1차 출동하여 진정인을 진정시켰고, 같은 날 04:05경 진정인이 “조용히 하겠다”고 하여 철수하였다.

3) 2005. 12. 30. 04:25경 진정인이 또 다시 플라스틱 식수통을 쳐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화장실에 물을 세계 틀어 놓고 화장실 문을 큰소리가 나도록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가 “다른 수용자의 수면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피진정인이 담당근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기동순찰 담당자와 함께 2차 출동하자, 진정인이 “조용히 하겠다. 믿어달라”는 다짐을 하여 같은 날 05:00경 철수하였다.

4) 2005. 12. 30. 05:15경 진정인이 담당근무자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씹할 놈들아, 나 데려간 놈들 다 보내”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가 조용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씹할 놈아, 상관하지 마라”며 식수통과 식기 등을 거실 내 화장실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진정인이 담당근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기동순찰 담당자 및 기동타격대원과 함께 3차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고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나가서 보자.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하고 빗자루로 거실 시찰구를 통해 피진정인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화장실로부터 달려와 거실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쳤다. 이에 피진정인은 재차 “앉아. 진정하고 조용히 해라”고 설득하였고, 소란난동을 계속할 시에는 실력저지하고 계구를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5) 진정인이 더욱 흥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휴대용 전기면도기(10cm×5cm×2cm)를 던지는 등 소란 행위를 계속하자, 피진정인은 수용질서를 위해서도 더 이상 소란난동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무기사용을 경고한 후 가스총을 꺼내어 거실출입문 시찰구 상단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다. 참고인

1) 교위 강○○

가) 2005. 12. 30. 기동순찰대 업무담당자로서 당시 피진정인, 사동근무자, 경비교도대 2명과 함께 현장에 있었으며, 진정인이 거실출입문을 차는 등 흥분상태라서 참고인 등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참고인은 피진정인의 뒤쪽(거실 오른쪽 측면 3미터 지점)에서 피진정인의 설득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2005. 12. 30. 05:25경 진정인이 거실 시찰구를 향해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던져 부서졌고 그 파편이 거실 통로쪽으로 튀어 나왔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피해 별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이 2~3분 정도 “자리에 앉아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스총을 발사하겠다”라고 경고한 후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하였다.

다) 공포탄 발사 후 진정인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보건의료과에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는바, 참고인 등은 보호실 수용 전에 진정인을 보건의료과에 동행하지 않았다.

2) 교위 임○○

가) 2005. 12. 30. ○○교도소 ○하 야간 사동근무자로서, 같은 날 05:25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전 경고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거실 시찰구를 향해 던져 파편이 거실통로 쪽으로 튀어나왔다. 타 수용자의 수면 방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진정인의 행동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으나, 진정인이 무술을 하는 자이고 직원이 거실로 들어갈 경우 다칠 가능성이 존재하여 가스총 사용 외의 방법은 없었다.

나) 가스총 발사 당시 피진정인은 거실문 뒤쪽 벽면에 위치하고 진정인은 거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였고, 공포탄 발사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거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진정인은 저항하지 않고 나왔으며, 이후 거실 복도에서 진정인에게 금속수갑을 채웠다.

3. 관련법령

가. 「행형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5호]

제15조 (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③생략

나. 「보안장비관리규정」 [개정 2002.5.17 법무부예규 제623호]

제40조(가스발사장비 사용·관리) ① 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가스발사장비의 사용 및 관리요령은 별표 4의 가스발사장비사용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다. 「계호근무준칙」 [개정 2005.7.11 법무부훈령 제520호]

제37조(보안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가스총, 가스분사기, 최류탄, 교도봉 및 전기교도봉 등 보안장비(이하에서는 “가스총 등 보안장비”라고 한다) 사용시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용 전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

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건강진단부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05. 10. 14. ○○교도소에 이입되어 수용 중 12회에 걸쳐 직원폭행, 기물파손, 소란 등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외부진료 결과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질환 의증으로 진단되어 2006. 1. 4. 피진정기관은 치료감호소에 진정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은 같은 해 5. 4.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 이입되어 수용 중 2007. 11. 2. 출소하였다.

2) 2005. 12. 30. 03:30경부터 05:25경까지 진정인이 거실출입문을 발로 차고 휴대용 전기면도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은 3~4차례 진정인을 제지, 설득하고 무기사용을 경고한 후 거실문 뒤쪽 벽면에서 가스총(DSGP-777) 공포탄을 발사하여 제압하였고, 진정인을 보호실(○사○실)에 수용하였다.

3) 2005. 12. 30. 06:45 진정인이 눈을 뜨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보건의료과에 가서 눈 아래 부위 등 드레싱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0:25 ○○시 ○○동 ○○ 소재의 '○○안과'에 가서 화상 치료를 받고 환소하였다.

4) 피진정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가스총 사용요령,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2005. 5. 17. 위 교육을 이수한바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형법」 제15조제1항,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소란행위를 하는 진정인에게 수차례 안정을 취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던지는 등 피진정인 등에게 피해를 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하여 진정인을 제압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포탄 발사 시 분출된 화염으로 진정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보건의료과 진료 후 외부진료 등을 실시하여 적절히 치료하였는바 의료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2) 보안장비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가) 가스총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보안장비로서 교도관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등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일정거리 이내에서 얼굴 등 특정 부위를 향해 발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사용 후 상급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나) 현행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는 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및 관리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총은 총기에 준하여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내용이 전혀 없으며, 또한 가스분사기에 관하여도 “안면부를 향해 발사한다”는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내용 외에 사용 제한 등 안전을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계호근무준칙」 제37조에서 유의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안장비 관련 일반규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용요령으로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

다) 참고로 현행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2조 등은 가스총 등의 사용제한, 안전교육기준, 사용기록의 보관,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경찰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 2006.8.22 훈령 제489호] 제101조 등은 보안장비 사용의 안전수칙, 사용 결과 보고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라) 구금·교정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보안장비의 오남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김○○의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되, 가스총 등 보안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정재근

4 2007.12.14. 자 07진인1594 결정 [강제면도에 의한 인권침해 등]

면도의 의무가 없는 진정인에게 면도를 지시 내지 강요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이 수염이 길어 단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특별히 위생에 유해하였다거나 질서유지에 유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면도의 의무가 없는 진정인에게 면도를 지시 내지 강요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행형법」 제23조, 「행형법시행령」 제93조, 「수용자 이발 등 지침」 제2조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1. 김○○
2. ○○구치소장

【주 문】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7. 4. 26. ○○교도소 수용 중 형기가 보름 정도 남아 있어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를 본 김○○ 관구계장이 진정인에게 면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내가 오늘 너 면도 못시키면 교도관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면도를 강요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연행되었고 피진정인은 “만기 보름 남은 놈은 수용자 아니야? 수염 깎아 못 깎아? 캠코더, 카메라 갖고 와서 지시불이행으로 묶어 올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면도를 강요하여 항거할 수 없는 모욕감에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하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7. 4. 26. 10:00경 관구감독자로서 소속 사동을 순찰하면서 수용자 동정사항을 확인하던 중 ○동하 ○○실에 수용중이던 진정인이 동료수용자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덩수룩한 것을 발견하였다.

기초질서를 위반한 진정인에게 “이○○씨 면도 좀 하지요”하며 조용히 타일렀으나, 오히려 진정인은 “못 깎겠소, 이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만기도 다 되었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소, 원래 만기 두 달 남으면 마음대로 길러도 되는데 왜 참견이요, 20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따졌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용자 이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잔형기가 2월 미만자는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지만 수염은 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야 한다”면서 관규 준수 이전에 남 보기도 좋지 않은데다가 위생적으로도 나쁘니까 수염을 깎으라고 수회에 걸쳐 설득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보여 달라”고 하는 등 억지를 부려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교도관 업무일지 부록에 있는 관련법령(행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93조)을 보여주고 상세히 읽어 주면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출소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냥 있을 줄 아느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은 있어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잠시 후 진정인이 조금 전 잘못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담당 근무자에게 진정인 스스로 수염을 깎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보조 근무자 교도 박○○로 하여금 직원이발소에서 소독이 된 면도기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진정인이 직접 자신의 수염을 깎은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 교위 홍○○ (○관구 생활지도담당자)

제2장 구급시설 관련

사동○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7. 4. 26. 10:00경 2동하에 순시중인 피진정인이 ○○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의 수염이 긴 것을 보고 깎으라고 지시하였다.

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염은 단정하게 면도를 해야 된다고 수염을 깎도록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만기가 2개월 미만 남았는데 못 깎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행정법 및 시행령 등 규정을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깎도록 설유하였음에도 진정인은 못 깎겠다고 하였다.

그 때 ○동하 근무자 교위 원○○이 와서 수염이 너무 길어 규정대로 용모단정하게 깎아야 한다며 말하자 진정인도 알았다며 근무자와 같이 사동으로 간 후 점심식사를 하고 담당근무자가 갖다 준 면도기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

2) 교위 최○○(○관구 생활지도담당자)

사동○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7. 4. 26. 10:00경 피진정인이 시찰하던 중 진정인의 긴 수염을 보고 단정히 깎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용자 이발 및 수염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며 재차 단정히 수염을 깎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출소일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수염깎기를 계속 거부하여 이를 설득하고 있던 중 ○동하 담당근무자가 관구실에 와서 설득하여 보겠다고 사동으로 데리고 간 후 오후에 담당근무자가 건네 준 면도기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

3) 교위 원○○(○동하 담당근무자)

○동하 사동 일근 근무자로 근무 중, 2007. 4. 26. 오전 피진정인이 사동 순시 중 ○동하 ○○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단정하게 깎을 것을 지시하자 진정인이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그러느냐, 못 깎겠다”고 큰소리로 대들어 관구실로 동행이 되었고 재차 피진정인이 보기 흉하니까 단정히 깎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이 진정인을 설유하여 ○동하 보조 근무자인 교도 박○○가 직원이발소에서 빌려온 면도칼로 동일 점심시간에 중식 후 ○동하 ○○실 화장실에서 진정인이 자기 손으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모친이 몸이 불편하여 절에 불공을 드리는데 아마 미신적인 이유로 면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이○○에게 들은 적이 있다.

4) 교도 박○○ (○동하 보조근무자)

○동하 보조근무자로서 근무를 하던 중 2007. 4. 26. 오전 피진정인이 순시 중 진정인에게 수염이 너무 길어서 보기도 좋지 않고 위생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수염을 짧게 깎을 것을 권유하였다.

진정인이 만기도 다 되어가고 못 깎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거부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재차 수염을 깎도록 설득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동하 담당 근무자인 원○○ 교위가 재차 설유시키자 진정인이 면도를 하겠다고 수긍하면서 면도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여 직원 이발소에서 빌려 온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

5) 김○○ (○동하 ○○실 동료수용자)

가) 2007. 4. 26. 오전 피진정인이 순시 중 진정인이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수염을 깎으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만기가 몇일 남지 않아서 안 깎는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남 보기도 흉하니깐 깎아야 된다고 하면서 면도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행하였다. 사동으로 돌아온 후 담당 근무자 원주임이 면도칼을 빌려왔다고 깎으라고 해서 진정인은 거실 내 화장실에서 수염을 깎았다.(이상 2007. 6. 20.자 피진정인이 직접 청구한 참고인 진술서)

나) 2007. 4. 26. 10:00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 덩수룩한 것을 보고 “남보기가 흉하니깐 깎아라”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만기가 다 되었으니 길러서 나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보기 싫으니깐 깎아라, 어떡하든 깎인다”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갔다가 돌아왔고 사동담당자 원주임이 면도기를 주면서 “깎아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동료수용자 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면도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 수염을 길렀는데 약 20일 정도 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07. 6. 20. ○○ 계장으로 있던 피진정인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이○○이 고소를 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이상 2007. 7. 18.자 참고인 진술조서)

6) 정○○ (○동하 ○○실 동료수용자)

제2장 구금시설 관련

가) 2007. 4. 26. 10:00경 피진정인이 순시를 하다가 진정인의 수염이 덩수룩한 것을 보고 “이○○, 왜 면도 안하냐”고 말하자 진정인이 “못 깎겠소”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이 “왜 안깎느냐?, 보기와 위생에 안 좋지 않은가”하니깐 진정인이 “그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못 깎겠소”라고 극구 거부하여 진정인은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한참 후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오자 사동 담당이 일회용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주었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혼자 면도를 하였다.(이상 2007. 6. 20.자 피진정인이 직접 청구한 목격자 진술서)

나) 2007. 4. 26. 10:00경 관구계장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 덩수룩한 것을 보고 “○○이 너는 왜 수염을 안 깎노?”라고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못 깎겠소”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 20~30분 뒤에 거실로 돌아와서 면도를 하였는데, 당시 코밑과 턱밑에 수염이 있었고 보름 정도 길렀던 것으로 같은데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피진정인은 표현이 조금 관료적이었으나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2007. 6. 20. 공장 관구계장으로 있던 피진정인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이○○이 고소를 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이상 2007. 7. 18.자 참고인 진술조서)

7) 신○○ (○동하 ○○실 동료수용자)

2007. 4. 26. 10시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 덩수룩한 것을 보고 “수번 000번, 왜 면도 안해?”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만기가 큰 벼슬이냐?”라고 하면서 “너 이새끼, 내가 너 면도를 안시키면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면도시킨다,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거실로 돌아왔는데 사동근무자 원주임이 면도기를 구해 와서 “자기 얼굴을 봐서 면도를 해달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당시 진정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라서 동료수용자 이○○이 면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당시 진정인의 코밑과 턱밑에 수염이 있었고, 길이는 1cm가 안된 것 같았다. 피진정인은 평소 나이가 적던지 많던지 수용자에게 수번을 부르면서 “너, 이거 하지, 왜 이래?”라고 하는 등 반말을 자주 썼고 “이 새끼, 저 새끼”라는 표현도 간혹 썼다.

2007. 6. 20. 09:30경 당시 공장 관구계장이던 김○○ 계장이 본인을 포함한 동료수용자 3명을 2사동 관구실로 불러서 “예전에 내가 이○○에게 한 일이 심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심한 욕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피진정인은 자술서 용지를 내밀면서 “자술서를 한 장씩 써 달라”고 하였다.

본인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못 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관구실을 나왔고 동료수용자 정○○과 김○○는 만기가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8) 김○○ (○○동하 ○○실 동료수용자)

2007. 4. 26.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 왜 면도를 안하고 있느냐”고 하였고, 진정인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너 면도를 안 깎이면 관구계장인 내가 옷을 벗는다”고 하였고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연행되었다.

9) 이○○ (○○동하 ○○실 동료수용자)

2007. 4. 26.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르며 “수염을 깎아라”고 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출소일이 20일 남았고, 많이 길지도 않은데 안 깎을랍니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어디서 수용자 주제에 말대꾸야?”라고 말하며 사동근무자에게 거실 문을 열게 하고는 “건방진 놈, 깎으라고 하면 깎지 말이 많아. 내가 오늘 너 수염 못 깎으면 이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 왔을 때 사동 보조근무자 박○○ 교도가 본인에게 면도 칼을 주면서 “네가 진정인의 수염을 면도시켜 줘라, 면도 후에 관구계장에게 감사 받아야한다”고 하였다.

본인이 진정인을 면도시켰고 면도 중에 면도칼이 번기에 빠져서 면도칼을 물에 씻은 후 다시 면도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평소 반말과 무시하는 말투로 수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아픈 것이 벼슬이야, 눅지 말고 앉아 있어. 이것들 치료 거실 해체시켜야하겠네” 등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

2007. 4월 중순경 같은 방 사람들이 진정인에게 왜 면도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진정인은 모친의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집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어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의 길이는 대략 1cm정도였던 것 같다.

3. 관련법령

가. 「행형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7849호]

제23조(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19563호]

제93조 (수형자의 이발 등) ① 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다. 수용자 이발 등 지침[개정 2002.5.13 예규보일 제610호]

제2조(남자수형자의 이발) ① 남자수형자의 이발은 앞머리 10cm, 뒷머리·옆머리는 각 2cm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③ 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남자미결수용자 등의 이발) ① 남자미결수용자의 이발은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②생략

제4조(면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발을 할 때에는 면도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면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시 진정인은 ○○교도소 ○관구 ○동하 ○○실에 수용 중이었으며,

피진정인은 ○○교도소 관구계장으로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2~3주 동안 기르고 있었으며, 피진정인은 2007. 4. 26. 10:00경 사동순시 중 이를 발견하고 진정인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말하였다.

3) 진정인은 형기종료일(2007. 5. 16.)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면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의해 ○관구실로 연행되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재차 면도를 하도록 말하였다.

4) 진정인은 관구실에서 돌아온 후 사동보조근무자가 빌려온 면도기로 동료수용자 이○○의 도움을 받아 면도를 하였다.

5) 진정인은 2007. 5. 16. 형기만료로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현재 ○○구치소에 근무 중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이 자의에 의해 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관구실 동행 등을 통한 피진정인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 내지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해 면도를 강요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형자의 이발과 면도에 관하여 「행형법」 제23조는 본문에서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단서를 두어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를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행형법시행령」 제93조는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형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이발과 면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면도의 시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상위법에서 이발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면도의 경우 잔형기에 관계없이 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야 한다고 고지한 것은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규정을 오인하고 있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구금시설 관련

3) 한편,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은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덩수룩하여 보기에 좋지 않은데다 위생적으로도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의 「수용자 이발 등 지침」 제2조 제3항이 '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개혁(PRI)의 「Making Standards Work」에서는 수형자가 수염을 깎기를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설비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형자 본인이 수염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tion III Rule 16). 이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면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용자의 위생을 위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자에게 불명예나 치욕을 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의 지침으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면도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수염이 길어 단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특별히 위생에 유해하였다거나 질서유지에 유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4) 수형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인 바, 면도의 의무가 없는 진정인에게 면도를 지시 내지 강요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정재근

5 2008.8.12자 08진인729결정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포승사용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포승으로 수용자를 묶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묶고 포승의 유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포승 등 계구의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행형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령인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포승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단지 상체승과 하체승의 모양을 담은 그림만 있을 뿐 묶는 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2] 법무부장관에게, 포승으로 수용자를 묶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묶고 포승의 유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행형법」 제14조(계구),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계구사용시 주의사항)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교도소 보안관리과 교감 이○○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포승사용으로 인해 수용자의 신체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포승으로 수용자를 묶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묶고 포승의 유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8. 2. 19. 조사거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

제2장 구금시설 관련

해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밀자 조립식으로 된 화장실 문짝이 떨어졌고, ○○교도소측은 이를 문제삼아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행했다.

관구실에서 기동타격대 대원이 진정인을 포박하면서 포승을 너무 짝 조이도록 묶어 진정인은 현장에 있던 피진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포승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진정인은 기동타격대 대원에게 진정인에 대한 포승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기동타격대 대원들은 상관인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포박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시한 피진정인만 처벌하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8. 2. 19. 부절물품 은닉 등으로 조사수용 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관구실에서 책상과 출입문에 머리를 받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 심적 흥분을 보였지만 진정인이 평소 급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감안해 당시에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날 16:00경 담당 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 거실문 등을 차며 소란행위를 하고 있으며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파손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포승을 사용하게 되었다.

2) 진정인에게 2008. 2. 19. 16:20부터 2. 20. 09:40까지 포승을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하체승으로 묶었다가 진정인의 심적 상태 등을 고려해 2. 20. 00:40경부터 하체승보다 완화된 상체승으로 묶는 등 진정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3) 진정인에 의한 자해, 폭행, 시설물 손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승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는 없었으며, 포승사용의 원인 및 절차 등을 떠나 진정인의 신체에 약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포승자국이 남아 있는 것은 유감이다.

다. 참고인 ○○교도소 기동타격대 교도 정○○

1) 포승을 느슨하게 몇 분정도만 사용해도 포승자국이 1~2주 지속되기도 하는 등 사람의 피부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2) 포승사용은 관구계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되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두고 묶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에 대한 조사 및 징벌기록, 기동타격대 근무일지, 계구사용심사부, 동태시찰 사항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2. 18. 09:00경 ○○교도소 교도관들이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검사하는 과정에 진정인이 임의로 변형한 모나미 볼펜 속에서 4cm 가량의 바늘이 발견되었고, 진정인 소유의 책장 쪽 약품 통 속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알약 28정이 적발되었다.

나. 같은 해 2. 19. 15:40경 진정인은 위 부정물품 소유 문제로 ○○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담당 교도관에게 선처해 줄 것과 출역중인 공장에 있는 진정인 소유의 물품을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위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기결 관구실 출입문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15:50경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진정인이 조사거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열기 위해 발로 툭 밀치듯이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찼고, 그 결과로 화장실 출입문이 떨어졌다. 진정인이 추가로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교도소 기동타격대 근무자들이 진정인을 포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포승을 사용한다고 고지하자, 진정인은 기동타격대 근무자들에게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다. 피진정인 관구계장 이○○이 2008. 2. 19. 16:20경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칙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진정인을 하체승 방법으로 포박할 것

제2장 구금시설 관련

을 기동타격대 대원에게 지시함에 따라 위 기동타격대 대원들이 진정인을 하체승 방법으로 포박했고, 이튿날 00:40 경 상체승 방법으로 변경했다.

라. 2008. 4. 25. 및 같은 달 28.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진정인의 무릎과 옆구리 부위에 포승으로 묶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편, ○○교도소 기동타격대는 얇은 천으로 된 보호대를 자체 제작해 사용해 왔으나 수용자의 신체 부위에 상처가 자주 생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두꺼운 천으로 제작한 보호대로 변경했다.

5. 판단

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2008. 2. 19. 부정물품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기결판구실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같은 날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거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행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해 진정인에게 포승을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계구 사용 자체는 정당한 업무수행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진정인에게 포승을 사용할 당시에는 신체압박의 강도가 높은 하체승방법으로 묶었지만 약 8시간 후에 신체압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상체승 방법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9시간 후에 포승을 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폭행·소요 등 우려의 정도에 따라 포승을 사용한 것 일 뿐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포승 사용을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나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은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승사용을 지시한 관구계장 등의 상급자는 부하 직원들이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 수용자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포승의 결박 정도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2008. 2. 19.에 포승으로 포박을 당한 후 그 다음 날인 2. 20.에 포승이 해제되었음에도 포승을 당한 날로부터 약 2개월 이상 경과된 같은 해 4. 25.까지도 진정인의 무릎과 옆구리 부위에 포승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음에 비추어 보면, 관구계장인 피진정인은 포박의 정도가 적절한

지 여부를 살피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포승 등 계구의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행형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령인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포승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단지 상체승과 하체승의 모양을 담은 그림만 있을 뿐 묶는 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결과 현장 실무자인 교도관에 따라 묶는 강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어 포승사용으로 인해 상처가 낫다는 등의 진정이 위원회에 상당 수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행형법」 개정으로 인해 종래 ‘사슬’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포승사용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포승 사용 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포승사용 기간동안 동 내용의 유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반드시 기록하게 하는 등 위 규칙 제5조를 개정해 포승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주의의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이 ‘피수용자에게 포승을 사용한 경우에는 혈액의 순환을 현저하게 방해한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제2장 구급시설 관련

〈별지〉 관련법령

1. 「행형법」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행형법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 생략

3.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56호)

제4조 (계구사용 명령)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②~③ 생략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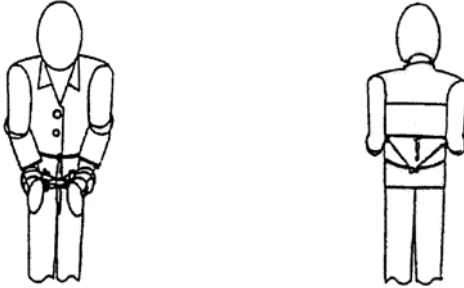
1. 생략
2. (전단 생략) 수용자가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별표 3의 상체승 방법에 의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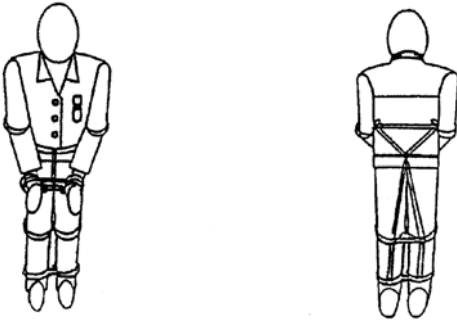
3. 수용자가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체승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의 하체승 방법에 의한 것

②~⑤ 생략

[별표 3] 상체승 방법(제5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 하체승 방법(제5조제1항제3호관련)



제14조(계구사용시 주의사항) ①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구를 사용할 수용자의 연령, 성격, 건강,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군 관련

1 2007.5.28자 06진인2994 결정 [검직불허 등에 따른 인권침해]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휴직명령을 유지하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휴직명령을 유지하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공무원의 형사사건 기소 시 휴직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 직무수행 시 공정성 훼손 및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진정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됨과 동시에 휴직처분을 한 조치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제1심에서는 선고유예 제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 계속적인 장기휴직으로 진정인이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받음으로 생기는 불이익보다 진정인에 대한 휴직의 계속으로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군 제0전투비행단장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휴직명령은 「헌법」 제27조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연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진정인은 장기휴직상태에서 봉급의 반액이 지급되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처가 0000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설사 진정인이 생계곤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휴직명령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00참모총장이 군 인사 및 복무 관련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검직금지 의무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검직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재량행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7조, 「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진 정 인】 양○○

【피진정인】 1. ○○참모총장
2. 공군 제○전투비행단장

【주 문】 1.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 12. 16.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달 28.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2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은 진정인이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의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 처분을 계속하고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위와 같은 휴직처분으로 봉급의 대부분이 감액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어 2006. 4. 18. 운전 및 컴퓨터 업종의 검직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참모총장이 불허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진정인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 소속 하사관으로서 2005. 12. 16.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검직신청 허가권을 갖고 있는 ○○참

모총장, 그리고 복직명령권을 갖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인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군인사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기소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반액만 지급하며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진정인에 대하여 기소 이후부터 현재 까지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 법규에서는 일관되게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검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 직무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검직신청의 주 목적이 휴직기간 중 계속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검직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허처분 한 것이다.

4. 관련법령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나. 「군인사법」 제48조 (휴직) ②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제3장 군 관련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9조 (휴직의 기간) ②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다. 「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그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계속적인 휴직처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5. 12. 16. 상관협박죄로 기소되어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에 의거 동 일자로 휴직발령 된 후, 2006. 3. 8.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06. 9. 15. 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재판(2006도6347)계류 중에 있으며, 진정인은 위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2006. 12. 16. 기소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상태에서 봉급의 50%를 지급받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부사관 등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계속 시까지 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은 일단 기소된 경우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휴직명령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복직도 가능하고, 봉급의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일명 ‘기소휴직제도’의 취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소송담당자로서 공판과정에서 변론 준비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헌법상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휴직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제3장 군 관련

둘째, 이러한 휴직처분 등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6. 5. 25. 결정 2004헌바12)¹⁰⁾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 15412)¹¹⁾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휴직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 직무수행 시 공정성 훼손 및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셋째, 대법원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 63029)¹²⁾에서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 휴직

-
- 1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헌재결 2006. 5. 25, 2004헌바12)
 - 11) “직위해제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 9. 17, 98두15412)
 - 1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불구속 기소된 이상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명령휴직의 사유 그 자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석방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령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에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명령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위 명령휴직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명령휴직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휴직)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구속되어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구속되어 명령휴직이 내려진 경우라도 후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경우에는 명령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진정인이 본 건 상관협박혐의로 기소됨과 동시에 휴직처분을 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혐의내용 등을 살펴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제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당연 퇴직사유가 아닌 선고유예가, 더욱이 제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비록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최종심은 사실심리가 아닌 법률심리인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진정인이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받음으로 생기는 불이익보다 진정인에 대한 휴직의 계속으로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진정인의 상관협박혐의가 진정인이 부대 내의 내부비리를 국방부 민원실 등에 제보한 사실이 공개되어 관련 상급자로부터 폭언 및 인사 불이익을 받아오다 이러한 폭언을 녹취하여 놓고, 이를 증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다 구속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계속적인 휴직명령은 「헌법」 제27조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사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이상으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연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휴직 중 검직금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 및 공군본부 법무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5. 12. 16.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동 일자로 휴직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28.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06. 4. 20.

제3장 군 관련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위 재판의 최종확정판결 때까지 재할 및 생계를 목적으로 전산 및 운전 분야 업종에 대한 검직허가를 신청하였다.

진정인은 휴직명령 이후 2006. 2. 급여부터 봉급(부사관 ○○호봉) 및 가족수당 등이 50% 감액된 ○○○원을 지급받았고, 2007. 3.에는 다소 증액된 ○○○원을 지급받아 개인소득으로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5,535원에 못 미치고 있으나, 진정인의 처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므로,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임이 확인된다.

위 소속 부대장은 허가권자인 ○○참모총장에게 위 검직허가에 대한 법령질의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서 일관되게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검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 휴직기간 중 진정인이 계속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검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2006. 6. 23. 진정인에게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직허가 불가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그리고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검직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는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지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에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장기휴직상태에서 봉급의 반액이 지급되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처가 ○○○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설사 진정인이 생계곤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휴직명령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어 그 생계의 곤란은 잠정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모총장이 군 인사 및 복무 관련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겸직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써 재량행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인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2 2007.12.18자 07진인2631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피해자 ㄴ 홍○○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진정인 김○○외 2명을 각 수사의뢰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에서 발행되는 퇴원환자 정보기록지에 대하여 소속부대 지휘관 및 군의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들의 검찰수사결과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을 반영하여 공상여부를 재심의 하게 할 것을 각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 김○○, 배○○, 신 ○이 피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농후하고, 부대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는 피해자가 군복무중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과의 이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

【진 정 인】 홍○○ (피해자의 부친)

【피 해 자】 ㄴ 홍○○

- 【피진정인】**
1. 김○○
 2. 배○○
 3. 신 ○
 4. 조○○
 5. 이○○
 6. 정○○
 7. 심○○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김○○, 배○○, 신 ○을 피해자 ㄴ 홍○○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각 수사의뢰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에서 발행되는 퇴원환자정보기록지에 대

하여 소속부대지휘관 및 군의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들의 검찰수사결과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을 반영하여 공상여부를 재심의 하게 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해자 亡홍○○은 2005. 4. 13. 입대하여 육군 ○포병여단 ○○대에 근무하면서 선임병인 피진정인 1. 김○○, 2. 배○○, 3. 신 ○ 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하여 2005. 5. 29.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는데 당시 포대장인 피진정인 4. 조○○은 지휘관으로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나. 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인 피진정인 5. 이○○은 피해자가 완치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퇴원시켜 건강상태를 악화시켰고, 후임 포대장인 피진정인 6. 정○○ 및 소속부대 군의관인 피진정인 7. 심○○은 피해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 이와 같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데도 부대측의 관리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정신병의 후유증을 안고 2007. 4. 12. 전역한 후, 2007. 7. 20. 집에서 투신자살 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들의 잘못이므로 이들의 책임을 묻고 싶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김○○(선임병)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포 방열시 자꾸 혼자만 편 하려고 하여,

제3장 군 관련

포의 균형이 안 맞는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하여 조심하라고 주위를 주는 차원에서 방탄헬멧을 두 대정도 때린 것이다.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2년이 지난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피진정인 2. 배○○(선임병)

피해자가 빨래를 즉시 하지 않고 숨겨놓는 등 잘못된 일이 있으면 타일러 주려 했고, 본인이 분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우리 분대원이 잘못하여 타 분대 선임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했었다. 진정인 측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년이 넘는 일로 하나하나 잘 기억나지 않고, 만약 그랬더라면 피해자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려고 한 것일 것이다.

3) 피진정인 3. 신 ○(선임병)

피해자는 워낙 말수가 적어 대인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었다. 행정정보급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하고, 보고도 했지만 피해자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

4) 피진정인 4. 조○○(전임 포대장)

포대장 할 때 피해자가 이등병으로 전입을 와 11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2006. 4. 20경. 후임포대장에게 인계했으며,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해 155견인포 부대의 특성상 적응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구타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 면담 등을 수시로 했는데 피해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으며, 내무부조리 예방을 위해 마음의 편지, 부대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5) 피진정인 5. 이○○(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

2006. 7. 7. 피해자를 퇴원시킨 경위는 입원시 사이코틱한 모습이 있어 입원시켰으나 그런 모습이 사라져 퇴원시킨 것이다. 퇴원 후 부대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경과관찰이 중요한 요소이었으며 퇴원 후 외진을 오면 부대 적응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진료를 해주려 했었는데 외진을 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6) 피진정인 6. 정○○(후임포대장)

2006. 4. 20. 포대장 부임시 피해자를 일병으로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5. 29. 피해자를 국군○○병원에 입원시켰으며 퇴원 후 부대적응시간이 필요했고, 관심병사여서 근무를 제외시켜준 사실이 있다.

퇴원 후 외진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포대장 및 군의관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여 실시하지 않은것이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복무당시 여러 병영악습을 겪었을 수 있으나 지휘관으로서 많은 개선노력을 하여 현재 병영악습은 전혀 없다.

7) 피진정인 7. 심○○(소속부대 군의관)

퇴원직후 피해자와 면담할 때 대화가 원활히 되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군○○병원 외진은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여 실시치 못한 것이며, 퇴원환자건강정보지를 보지 못해 외진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몰랐는데 알았더라면 본인이 가기 싫다고 했더라도 외진을 보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ㄸ홍○○은 2005. 4. 13. 입대하여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같은 해 5. 23. 육군 ○포병여단 ○○대대 ○포대에 배치되었고, 군복무 중인 2006. 5. 29.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다가 2006. 7. 7. 증세호전을 이유로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약 10개월의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한 후 2007. 4. 2. 만기전역 하였고, 이 후 2007. 7. 20.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신병 발병 사유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 배○○, 신 ○의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김○○, 배○○, 신 ○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발병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2005. 5. 23. 부대배치 되었을때 피진정인 김○○은 피해자의 부대장으로서 피해자와 약 5개월간 생활하다가 2005. 10. 20. 만기 전역하였고, 같은 배○○는 피해자와 약 7개월간 생활하다가 2005. 12. 15. 만기 전역하였으며, 같은 신 ○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2006. 5. 29. 당시

제3장 군 관련

같이 생활하던 자이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2006. 7. 7.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2006. 9. 6. 만기 전역했으며, 피해자는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07. 4. 12. 만기 전역하였다.

라. 진정인이 참고인 김○○, 이○○(피해자의 군생활 동료)와 직접 전화통화하여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이가 홍○○의 머리, 배, 뺨 등을 많이 때렸다”, “거의 완전히 사람 진짜로 숨 못쉬게 했다”, “후임들 있는데서 군화 발로 차고 했다”, “왕따를 시킨 셈이다”, “구타 현장을 2~3회 목격했고 나도 같이 맞았다”, “자다가 깨워서 원산폭격 시킨 일도 있다”, “걸렸으면 영창 갈 사람들이다”, “정신병원에 간 원인은 거의 피진정인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시 참고인 김○○, 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국군○○병원 퇴원시 작성된 ‘퇴원환자 정보기록지’에는 “퇴원 1주일 후 외진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외진을 실시되지 않았고,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2000. 1.부터 입대전인 2005. 4.까지 5년간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으며, 2003. 3. 1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장병신체검사 결과에도 피해자의 정신과 상태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피해자 근무당시 병영환경은 소속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병영저변 부대정밀진단결과(2006. 12.)’ ‘막내는 항상 제일먼저 일어나 환복하고 침구류를 정리한다’, ‘막내는 항상 기상시간에 맞추어 커튼을 걷는다’, ‘물을 마실 때 상병 이상은 컵없이 먹어도 되나 상병 이하는 컵으로만 먹는다’, ‘식사시 상병이하는 식탁에 팔을 받치지 못한다’, ‘상병 5호봉 이하는 전화받을 때 정자세로 받는다’, ‘야간에 선임 깨울때 본인의 관등성명을 대어야 한다’, ‘상병 이상만 겨울철 목도리 착용 가능하며 전병에 우유를 타먹을 수 있다’, ‘상병이상은 배식량을 조절할 수 있으나 일이병은 주는대로 먹는다’ 등과 같은 병영악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 피해자는 만기전역 후 자택 인근 한식당에서 서빙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7. 5. 23.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진정인이 ○○대병원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시켰고 진정인은 담당 의사인 김○○ 교수가 “군병원에서 10개월간 방치되었던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나, 조사관의 전화조사시 김○○ 교수

는 “진정인이 본인에게 부대측에 과실이 있음을 말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10개월간 방치되었다’는 말은 아버님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본인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며, 정신병은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인과관계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고 본인은 당시 증세 및 향후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의 치료가 적절했는지 등은 판단할 수 없으며, 당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진정인은 가정형편상 입원이 어렵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의 소속부대 및 국군○○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를 심의한 결과, 복무 중 가혹행위 부분 및 적절하게 의료조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반영치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비전공상’ 결정을 하였다.

4. 판단

가. 선임병의 구타행위 등이 있었는지 및 지휘감독 소홀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이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때렸다”, “배도 많이 때렸다”, “후임들 있는 곳에서 군화발로 차고 그랬다”, “걸렸으면 영창갈 사람이다”, “2~3회 직접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 점, 같은 배○○에 대하여도 “군화발로 많이 차는 것을 보았다”, “머리를 때렸다”는 참고인 진술 및 피진정인 본인도 “2년이 지난일로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고, 만약 그랬더라면(때렸더라면) ○○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려고 한것일 것이다”라고 폭행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점, 신 ○에 대하여도 “야 썩새끼, 개새끼 등 쌍스런 욕을 하고 막 소리지르고 했다”, “피해자가 정신병원 간 이유는 거의 신 ○ 때문이다”, “작업 같은 것도 따돌림 시켰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 점 및 피해자 군복무 당시 소속부대에 병영악습이 있었던 점, 병영악습에 피해자가 노출되었을 수 있음을 지휘관이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진정인 김○○, 배○○, 신 ○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지휘관이었던 피진정인 조○○, 정○○은 병영악습 예방활동에 주력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애로사항 청취 면담을 한 점, 마음의 편지, 부대 정밀진단 등을 통해 병영악습 예방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휘감독 소홀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료접근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사들은 선 임병의 눈치(38.2%), 간부들의 눈치(15.4%) 및 약해보이기 싫어서(12.2%)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의료조치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병영문화를 감안하여 국방부는 현재 제정중인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에 “모든 군인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다. 군은 의무체계를 선진화 하여 장병들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군인의 의료접근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본 진정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첫 입원은 적극적 치료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2007. 6. 23.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물치료를 중단했고, 같은 해 6. 26.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에 “현재히 자기몰입이 있어 심한 경우 현실 경계를 상실하고 자폐적인 연상활동도 나타날 수가 있어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해 6. 28. 경과기록지에는 만성적 우울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일주일 후인 7. 4. 퇴원을 상신 한 것은 완치가 된 상태에서 퇴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당 군의관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에도 외래진료를 통해 계속하여 진료를 할 계획이 있었던 점, 퇴원조치도 의료과정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퇴원여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질환의 진행 및 치료정도·앞으로의 치료계획과 환경 등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판단 할 사안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이 진정사건에서 퇴원조치 자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퇴원 1주일 후, 필요한 외진이 실시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정신과군의관도 “퇴원 후 외진은 꼭 필요한 경우였다”고 진술하고, 대대 군의관도 “상급부대의 외진요구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외진을 거부 했더라도 꼭 보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았을 때 환자 퇴원시 유의사항 등이 소속 부대측에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나 퇴원환자 건강정보지가 지휘관에게만 전달되고 군의관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군 의무관리체계의 문제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김○○, 배○○, 신 ○이 피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농후하고, 부대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는 피해자가 군복무중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과의 이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신혜수 위 원 윤기원

3 2008. 5. 8자 07진인190 결정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의 생도규정 등의 규정에 대하여,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과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강제퇴교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사관생도가 자퇴를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퇴학으로 처리된 결과 자신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다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퇴학처리는 해당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2】 3금제도에 대하여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퇴학처리하는 것과 3금제도를 폭넓게 시행하는 행위는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권리(명예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금제도를 주문과 같이 직접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17조 등

【진 정 인】 홍○○

【피 해 자】 사관학교 생도 등

【피진정인】 1. 육군사관학교장
2. 병무청장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의 생도규정 등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나.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

2. 진정인의 그 밖의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기각 및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이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를 원할 경우 자퇴규정이 없다며 강제퇴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생도들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간부들이 자퇴희망 생도들에게 “자퇴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생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각급 사관학교는 생도규정에 따라 소위 ‘3금제도’라고 하여 금주, 금연, 금혼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 시 강제 퇴교시키고 있으며, 재시험 미통과자도 퇴교시키는 등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 사관학교를 퇴교한 후 군복무 시 생도생활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며, 병무청에서 퇴교생도를 상습병역회피자에게나 해당하는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 1) 육군사관학교내 자퇴희망자는 퇴학 처리되고 있으나 퇴학이라는 용어자체가 육사생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할 뿐 퇴학사유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어 문제되지 않으며, 자퇴 희망자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만류할 이유도, 그러한 사실도 없다.
- 2) 3금제도의 경우 미혼은 사관학교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조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 일 것)에 따른 것이며, 금주 및 금연도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한 학칙에 의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관학교의 개교 이래 지속되어온 중요한 전통이고 상징으로 인권침해와 무관하다.
- 3) 사관생도가 정규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수강이라는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장교로 임관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지적 능력수준 및 기본자질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관생도를 퇴교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와 무관하다.
- 4) 생도생활 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점은 병역관련 정책상의 문제로서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 특별관리대상자 제도는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1997년 이후 폐지되었다.
- 5) 한편 국방부에서는 2008. 4. 30. 「강제퇴학규정」은 ‘대상자의 명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적증명서 발급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고 「3금제도」는 “입학 전 입시요강 등에 3금제도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 절차를 통해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각급 사관학교는 사관학교설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칙인 「생도규정」에 '3급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퇴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퇴희망자 및 재수강 미통과자는 '퇴학'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모집요강 등에 퇴교규정 및 3급제도에 대한 설명 및 언급은 없다.
- 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제적은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자퇴는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한 것이며, 퇴학은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 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년도에 퇴교된 자는 13명(1.63%)이며 그 세부적인 사유는 자퇴(퇴교로 기록) 9명, 군기사고 등이 4명이고, 3급제도를 위반하여 퇴교된 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라. 해군사관학교는 4학년 2학기부터는 생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약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군사관학교는 4학년 2학기부터는 '보호자의 지병, 상대방의 유학, 가족의 이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생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음주'는 교내 및 제복 착용 시에만 제한하고 '흡연'은 1981년 개교 이래 불허하다가 1988년부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며 4학년이 되면 약혼을 허용하고 있다.
- 마. 외국 사관학교의 3급제도에 대한 육사 자체의 조사결과(육군화랑대연구소, 3급제도연구, 2002)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제3장 군 관련

국가	음 주	흡 연	결 혼 (성관계)	비 고
미국	교내금지, 교외허용 3·4년은 교내 지정장소 가능	허용 (장소 제한)	21세 이상 결혼가능 교내 성관계 통제	
일본	교내금지, 교외허용 허가시 교내 가능	허용	허용 (실질적 불가)	1학년은 불가
독일	교내금지, 교외허용 허가시 교내 가능	허용	허용	기혼자 입교가능
프랑스	허용	허용 (장소 제한)	허용	기혼자 입교가능
이태리	교내금지, 교외허용 교내 공식행사시 가능	허용 (장소 제한)	24세이상 결혼가능	
호주	허용(교내는 장소제한)	허용 (장소 제한)	허용	
중국	허용(훈련시 금지)	허용(훈련시 금지)	금지	장소 제한
태국	불가	불가	불가	
한국	극히 제한적 허용(공식행사 사전허가 등)	불가	불가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00년도 신입생도의 경우 70%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고, 흡연은 15%내외가 경험이 있으며 00년도 졸업생도 20%정도가 금주규정을 위반한 경험이 있고 흡연은 5%내외, 성관계는 3%내외로 위반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4. 판단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따라 사관생도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인 권침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강제퇴교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생도들이 자퇴를 원할 경우에도 강제퇴교(퇴학)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자퇴를 한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권이란 소위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

다. 그러므로 진정인이 주장한 대로 사관생도가 자퇴를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퇴학으로 처리된 결과 자신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다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퇴학처리는 해당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퇴는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퇴학은 학칙위배 등의 징계사유 발생시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규정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사관생도가 사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해당 사관생도에 관한 도덕적, 사회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이 본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생계유지 등 자의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고자 했을 경우 사관학교에서 이들을 퇴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퇴를 하고자 한 사관생도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사관생도들이 국비로 교육을 받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자퇴'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퇴희망자를 파렴치한 행위자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는 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파렴치한 행위자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육사 생도규정 제11장 포상 및 징계 항목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형태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3급제도에 대하여

사관생도는 학생과 군인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입교 시 관련 학칙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서약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소위 특별신분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신분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주(No Drinking), 금연(No Smoking), 금녀(No Women)'라는 내용을 가진 소위 3급제도는 사관생도에게 청백한 수

제3장 군 관련

런기풍을 유지하고 질제와 극기를 미덕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사관학교의 교육내용과 인격수양의 방안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관생도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급제도와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음주 및 흡연을 할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으로, 금녀와 관련한 혼인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헌법재판소 2003헌바457, 99헌바40, 2002헌바50 참조)으로 각각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3급제도에 따른 사관생도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소위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러한 인권의 제한은 정당하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관학교(특히 육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금연, 금주, 금녀의 범위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예를 휴가, 휴학, 교외 등) 및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참조)에 까지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3급제도의 이와 같은 폭넓은 적용은 소위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3급제도는 사관생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3급제도는 사관생도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급제도가 이와 같이 폭넓게 적용된 결과 사관생도들이 이를 규칙으로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관학교의 기본적인 교육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를 교육함에 있어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면서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사관생도의 존엄과 가치 및 그 밖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장차 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로서 부대를 지휘, 운영함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재시험 미통과자 퇴교처리 규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생도를 퇴학을 시키는 것은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시험 미통과자에 대하여 재수강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위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생도생활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를 퇴교한 이후 군복무를 할 때에 생도생활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병역의무기간 불산입 제도는 병인사관리규정 제27조(“사관생도 퇴교자가 군복무를 지원할 때는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도교육기간은 군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입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두14748). 아울러 진정인도 그 자신이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패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위와 같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각하한다.

바. 병무청에서 사관학교 퇴교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 퇴교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병무청은 특권 부유층 자제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73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7. 5. 27. 이후 본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제도가 이미 폐지된 이상 진정인의 위와 같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퇴학처리하는 것과 3급제도를 폭넓게 시행하는 행위는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권리(명예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장 군 관련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급제도를 주문과 같이 직접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4 2007. 1. 15자 06진인2072 결정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 등에 의해 사망한 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기계화보병사단 ○○여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 [1] 약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사망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로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권권' 및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 [2] 자체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진정인 일부에 대하여 각각 영창 12일 및 영창 7일의 조치를 하였고, 지휘감독체계에 있는 피진정인은 사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와 '감봉3월' '유예' 결정을, 피진정인 4)도 '경고' 의 처분을 받은바 자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2) 여단 징계위원회는 피진정인 2)가 사망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관계가 아닌 점, 피진정인 5)는 면담 및 생활기록부 기록을 적절히 한점, 피진정인 6)는 직속상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묻은 바 없음. 그러나, 피진정인 5)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소대장인데도 가혹행위를 인지 및 예방하지 못한 점, 피진정인 6)은 가혹행위가 주로 피진정인 6)이 일과 중 주로 위치하고 직접 관리 및 통제하는 차량호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에 대하여 일과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생활하며 관리하는 간부인 점 등을 고려 볼 때 피진정인 5) 6) 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3] 사단헌병대 및 사단감찰부는 피진정인 7) 8) 9)에 대하여 형법324조의 강요협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바 있으나, 피진정인 7) 8) 9)의 행위는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 및 군형법 상 가혹행위(제62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수사상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속요건을 요구하는 강요만을 수사하고 군인인 피진정인 7) 8) 9)에게 직접적용되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국방부훈령 상 가혹행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군 수뇌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함. 아울러 중대장인 피진정인 3)은 사고당시 초소일지를 보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해연도가 바뀌지도 않은 2006. 9.에 이를 소각하였으며, 해당 기갑 여단장은 사단헌병대 수사가 종결(2006.8.24)되지도 않은 2006.7.20. 자체징계를 마무리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행위로 판단함
- [4] ○○본부는 2006.11.9.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여 자살로 결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에 나타난 구타 및 가혹행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음. 사망자는 선임병들에 의해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폭언, 질책,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도의 정신적

제3장 군 관련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나,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망자에 대하여 전공상심의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진 정 인】 이○○ **【피해자 故】**이○○의 아버지

【피진정인】

○○기계화보병사단장

- 1) 김○○ (○○○대대 대대장, 중령)
- 2) 강○○ (○○○대대 주임원사, 원사)
- 3) 이○○ (○○○대대 1중대장, 대위)
- 4) 김○○ (○○○대대 1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 5) 편○○ (○○○대대 1중대 소대장, 중위)
- 6) 박○○ (○○○대대 1중대 정비반장, 중사)
- 7) 조 ○ (○○○대대 1중대, 예)병장, ○○시)
- 8) 최○○ (○○○대대 1중대, 예)병장, ○○도)
- 9) 노 ○ (○○○대대 1중대, 예)병장, ○○시)

- 【주 문】** 1.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2. 국방부장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3. ○○기계화보병사단 ○○여단장에게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경 고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가 2006. 6. 18. 경. 가혹행위 등에 의해 사망한 바 타살의혹 규명 및 구 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계자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 1) 피해자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 2) 사망원인은 피진정인 7) 8) 9)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하고
- 3)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피진정인 1)내지 6)도 그 책임이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인 주장 1)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자살결론을 내렸으며, 사고장소 내·외부에 다툼의 흔적이 없는 점, 시체부검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타살이라 볼수 없으며, 다만 사망자가 장갑차 조종 및 정비능력 미흡관계로 간부들에게 소총수로 보직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와중에 피진정인 7) 8) 9)로부터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당해 군생활에 회의를 느껴 자살했다고 본다.

2) 진정인 주장 2)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7)은 폭언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검에서 강요·폭행과 관련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진정인 8)은 폭언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헌병대 영창 12일의 자체 징계를 받았고, 군검찰에서 강요·폭행과 관련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진정인 9)는 폭언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휴가제한 5일의 자체 징계를 받았고, 군검찰에서 강요·폭행과 관련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진정인 주장 3)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사단장 서면경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3) 4)는 여단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피진정인 2) 5) 6)은 혐의 사실이 없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타살의혹 관련

- 1) 피해자는 사고당일 경계근무를 위해 17:00경 이○○ 외 15명과 함께 ○○○ ASP 중대 행정반에서 당직사관 하사 엄○○에게 근무투입신고 후 경계근무에 임했고, 같은 근무조 이○○, 표○○은 이동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하며, 근무를 인수인계했던 임○○, 박○○ 조○○ 등도 사망자와 아무 일 없이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당시 거수경례를 위해 얼굴을 쳐다본 사실이 있고 얼굴 등에 맞은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2) 피해자는 17:40경 후임근무자 이○○과 같이 9초소에 도착하여 주간근무자였던 임○○, 이○○과 인수인계를 한 뒤 근무를 하고 19:05경 야간 밀어내기 근무자인 김○○, 박○○이 근무지에 도착하여 인수인계를 한 후 11초소로 출발하여 11초소에서 전 근무자인 고○○, 조○○을 밀어내기 시켜주고 이○○과 근무중 19:30경 이○○에게 12초소에 순찰일지를 갖다 놓고 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 3) 이○○은 12초소에 순찰일지를 갖다 놓고 오는 도중 총성을 들었고, 11초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것을 최초로 목격 하였다.
- 4) 보고를 받은 중대장이 의무병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 맥박 등을 확인하였으나 맥박은 없었고, 체온이 남아있어 부대 AMB를 이용하여 ○○주시 소재 민간병원인 ○○병원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은 바로 사망진단을 내려 부대측은 시신을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했고 유가족은 이를 화장하였다.
- 5) 부대 헌병대에서는 경계근무에 투입했던 자들의 진술서, 사고장소 내외부에 다톱의 흔적이 없는 점,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

- 6) 사망자가 사용하던 수첩에는 '개취급을 당하고 서럽게 울던 날 나는 내 삶의 모든 희망을 버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취급'에 대하여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서술은 없다.
- 7) 유가족은 사망자의 얼굴이 부어있던 점,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큰 점, 혈액에서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손에서 뇌관화약반응이 없는 점, 총기 및 탄창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자살이 아니며, 근무투입 후 근무일지에 서명한 글씨체가 사망자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다며 사망원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가족 의문사항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망자 얼굴이 부어있던 것은 구타의 흔적임	촉진상 안와골과 비골 골절이 느껴졌으며 이는 총상의 외력에 의한 변형으로 판단됨	접사의 경우 가스폭풍에 의하여 창구에 파열상을 보이며, 사입부는 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접사가 아닌 경우는 탄환의 직경보다 작음. (본건은 접사로 처리되었음)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큰 것이 이상함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진판독 가능한 8건의 두부총창사를 분석한 결과 사입구가 큰 예가 3차례 있음	
혈액 유전자형 미검출된 것이 이상함	현장혈액은 기온, 토양, 세균등에 의해 오염될 경우 검출되지 않으며 2006년도에 1건의 사례가 있음	혈흔의 양이 극미량이거나 부패 및 오염되어 있는 경우 분석이 불가능 할수 있음.
사망자 손에서 뇌관화약 반응이 없는 것이 이상함	현장상황에 따라 반응이 없는 경우 있으며 2006년도 16건중 2건에서 검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탄피방출구의 방향과 방아쇠를 파지 및 격발한 손이 반대방향일 경우 검출 되지 않을 수 있음
총기 및 탄창등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것 이상함	증거물 재질 및 현장상황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수 있고 연구소 증거물 24건중 23건이 불검출됨	총을 뒤는 총강유가 기름막을 형성하는 상태가 되면 지문이 형성되지 않거나 있어도 불량한 지문이 됨.
근무일지 글씨체가 사망자 필체가 아님	한글자모의 특징, 자획구성과 필순 필압, 방향, 각도, 간격, 접촉, 기필과 종필부분의 특징, 획의 직곡선특징등으로 볼때 동일필적으로 사료	제시된 증거물만으로는 개인필체의 회소성있는 특징과 변화범위 및 필법의 고의적 은폐여부 등을 분석 할수 없으므로 감정불가함

나. 피진정인 7의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 1) 헌병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7)은 2005.10월부터 전역하기 전인

제3장 군 관련

2006.5월 중순까지 약 9개월 동안 매일 2회씩 차려자세를 20분 동안 시켜놓고 약 300회에 걸쳐 “씨발새끼,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고함을 질러 사망자를 놀라게 하여 주눅이 들게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였고, 일과시간 후 야간에 생활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 2) 사단 헌병대는 피진정인이 2005년 12월말 피해자에게 연병장 100M를 왕복4회, 50M를 수십 회 반복시키고, 장갑차에 오르내리기를 수 회 강요하고, 장갑차 방수카바를 찢다 접었다 하는 일 등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006.6.3. 기 전역한 피진정인 7) 관련 사건기록을 제주경찰서에 강요(형법 제324조)혐의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 3) ○○지검은 ○○경찰서로부터 사건(06형제19769)을 송치받아 수사 후 2006.12.15. '강요죄¹³⁾의 구성요건 중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7)에 대하여 강요·폭행 관련 무혐의 처분하였다.
- 4) 「군형법」 제63조(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다'로 되어있고 「국방부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엔 '가혹행위라 함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 5) ○○지검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강요·폭행에 대하여 수사한바 있으나 군형법 62조에 의한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수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군형법 1조 제5항은 군형법의 피적용 범위를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한 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 6) 진정인은 피해자가 '06. 4. 휴가를 나와 왼쪽턱이 아프다며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두통이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군복무 중 수면부족상태이며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증상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영내에서 "피진정인7)이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피진정인 7)의 구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13) 강요(형법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피진정인 8)의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1) 헌병수사기록, 실지조사 시 문답서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8)은

가) 같은부대 후임인 조○○은 피진정인 8)이 2006.1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망자에 대하여 “자기 할일도 못하는 새끼가 후임병들 하고 담배피고 있냐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같은 부대 후임인 표○○은 피진정인 8)이 2006.1말. 09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망자에 대하여 후한기 훈련을 제대로 준비 안한다며 “10분동안 차려자 세를 시켜놓고 야 새끼야 니가 일병 몇 개월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욕을 하였다”하고 또한 사고전날인 2006.6.17. 잠을 뒤척이며 잔다고 “예전엔 취침근기가 있었다 씨발 새끼야 긴장하고 조심해라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같은부대 후임인 송○○은 피진정인 8)이 20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망자 때문에 선임병에게 대신 욕먹었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차려자세를 시켜놓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야 개새끼야라는 욕을 하였다” 하고 또한 2006.4중순 17시경 사망자가 장갑차 방수카바를 잘못 씌었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차려자세를 시켜놓고 같은 똑같은 욕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라) 같은부대 후임인 장○○은 피진정인 8)이 2006.6.8. 08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에 대하여 배터리 결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10분정도 차려자세 시켜 놓고 병신같은 새끼 니가 제대로 하는게 뭐가있냐 라며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표○○, 송○○, 장○○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8)은 사고 이틀 전인 2006.6.16. 15시경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장갑차 공구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이제 어떻게 할꺼냐 ? 니네 집 돈 많냐 ? 그러면 니돈 가지고 사서 써라” 하고 피해를 포함한 다른 조종수들에게도 “한번만 걸리면 죽는다” 라는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날 일에 대하여 목격자들은 “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뺨힐 정도였다(송○○)“ “옆에서 지켜 보던 제가 짜증날 정도였다(안○○)“

“사망자가 처음부터 자살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진정인 7) 8)이 너무 같구어 자살결심을 하고 이번 건으로 또 같굽을 당하자 자살한 것 같다(장○

제3장 군 관련

○)“고 진술하였다.

바) 피진정인 7)도 조사관 전화조사시 “피진정인 8)이 이○○머리통을 때려, 이○○가 왜 때리냐고 했다가 피진정인 8)이 더 혼냈다는 말을 피진정인 8)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진정인 8)은 위원회 출석조사시 폭행사실 등을 부인했지만 “○○의 경우 욕을 먹고 죽으려 했다면 나도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나는 맞으면서 군생활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진정인 3)은 위 ‘마’ 사건과 관련 2006.7.5 피진정인 8)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창 12일 결정을 했고 피진정인 8)은 영창생활 후 2006.10.11. 만기제대 했으며, 사단검찰부에서는 2006.10.9. 폭행 및 강요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나 직권남용 및 균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수사한바 없다.

라. 피진정인 9)의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1) 헌병수사기록, 실지조사시 문답서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9)는

가) 송○○, 조○○은 피진정인 9)가 2006.3초. 14시경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망자 때문에 피진정인 8)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5분간 차려자세를 시켜놓고 야 이새끼야 그런것도 못하냐 라며 폭언을 하였다”하고 그 횡수는 피진정인 8)에게 질책 당할 경우로 일주일에 2회정도 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표○○은 피진정인 9)가 2006.3월경 생활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약 3회정도 갈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진정인 3)은 위 ‘가’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 9)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창 7일로 결정을 하였으나 허리디스크가 있어 휴가제한 5일로 대체 징계를 하였고, 피진정인 9)는 2006.11.24. 만기제대 한바 있으며, 사단검찰부에서는 2006.10.9. 폭행 및 강요행위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나 직권남용 및 균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수사한바 없다.

다. 피진정인 7) 8) 9)에 대한 자체징계 및 수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순번	행 위	징계	수사	비고
피진정인 7)	1	'05.11.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방수카버를 접었다 폈다하는 일을 시킴.	사 고 전 전 역 하 여 자 체 징 계 없 음	○	제 주 지 방 검 찰 청 강 요 / 폭 행 혐 의 없 음 처 분
	2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내무반 침상에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앉혀놓고 개새끼 쌍욕을 함.		○	
	3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연병장에서 나는 할 수 있다 30회 외치게 함.		○	
	4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축구골대를 4회 돌고 오도록 함.		○	
	5	'05.12.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장갑차 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10여회 시킴.		○	
	6	'06.1.말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10여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	
	7	'06.1.말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15분여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	
	8	'05.10.부터 '06.4.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오후에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	
	9	'05.8.말부터 '06.4.초까지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를 손으로 치거나 앞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함.		○	
	10	'05.12.말 18시경 생활관에서 2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놓고 야 개새끼야 장갑차일지 똑바로 적지못하냐며 욕을 함.		×	
	11	'06.1.말 10시경 차량호에서 2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놓고 세차 똑바로 하라며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욕설과 폭언을 함.		×	
	12	'06.3.초순 오전과 오후 2회 차량호에서 조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10~15분간 차려자세 시켜놓고 개새끼 씨발새끼 미친놈이라는 욕을 함.		×	
피진정인 8)	13	'06.1.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자기할일도 못하는 새끼가 후임하고 담배피고 있다고 고함 및 욕을 함.	×	×	사 단 검 찰
	14	'06.1.말. 09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흑한기 훈련을 제대로 준비 안한다며" 1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 놓고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 그런것도 모르냐고 욕을함.	×	○	
	15	'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조종이 미숙하다며 10분	×	○	

제3장 군 관련

	간씩 수회 차려자세 시켜 놓고 씨발새끼등 욕을 함			부 강 요 / 폭 행 혐 의 없 음 처 분	
16	'06.6.17. 생활관에게 예전엔 취침준기가 있었다 씨발 새끼야 긴장하고 조심해라라고 욕을 함.	×	×		
17	'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선임병에게 사고자 대신 욕먹었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차려자세 시켜놓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등 욕을 함.	×	×		
18	'06.4중순 17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방수카버를 잘못 씌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차려자세시켜 놓고 똑같은 욕을 함.	×	○		
19	'06.6.8. 08시경 차량호에서 배터리 결함을 제대로 못한다며 10분정도 차려자세 시켜 놓고 병신같은 새끼 니가 제대로 하는게 뭐가있냐며 욕을 함.	×	○		
20	'06.6.14. 17시경 차량호에서 방수카바 제대로 씌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려자세 시켜놓고 10분간 욕을 함	×	○		
21	'06.6.16. 15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장갑차 공구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이제 어떻게 할 꺼냐? 니네집 돈 많냐? 니돈 가지고 사서 써라” “한번만 더 걸리면 죽는다” 라는 욕을 함.	영창 12일	○		
22	이○○ 머릿통을 때리자, 이○○가 왜 때리냐고 하여 더 혼냈다.	×	×		
피 진 정 인 9)	23	'06.3초순. 14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 때문에 피진정인 8)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5분간 차려자세 시켜 놓고 야 이새끼야 그런것도 못하나라며 폭언을 하였다”하고 그 횡수는 피진정인 8)에게 질책 당할 경우로 일주일에 2회정도 였다	×		○
	24	'06.3월경 생활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약 3회정도 갈굼을 하였다	×		○
	25	피진정인 7)의 욕설사항을 지휘보고 안함	(영창 7일) -휴가 5일		

바. 피진정인 1)내지 6)의 관리감독 책임관련

- 1) 피진정인 1)은 사망자의 대대장으로서 2006.6.28. 사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2)는 대대주임원사로서 본건관련 자체조사 및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
- 2) 피진정인 3)은 사망자의 중대장으로서 사망자를 보호관심병사로 선정하여 수시로 면담 및 기록관리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2006.7.20.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결정되었으나 징계권자인 여단장이 3개월 유예한 사실이 있고, 사망자가 조종수라는 보직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대장등을 통하여 보직조정 신청한 것을 적절히 조치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사고 당시 사고자가 작성한 초소 근무일지를 보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6.9. 이를 소각한 사실이 있다.

- 3) 피진정인 4)는 사망자의 중대행정보급관으로서 사고 전 부모님등과 전화통화 등을 통한 신상파악 및 사전사고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이 확인되어 2006.7.20. 여단징계위원회에서 ‘근신10일’ 결정되었으나 징계권자인 여단장이 경고로 감경 하였다.
- 4) 피진정인 5)는 사망자의 소대장으로서 헌병대로부터 조사받은 결과 면담 및 생활기록부 기록을 적절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는 받지 않았으나 소대장으로서 가혹행위부분에 대하여 인지 및 예방을 하지는 못했다.
- 5) 피진정인 6)은 헌병대 조사는 받고 징계받은 사실은 없으나, 조사관의 실지 조사결과 일과시간(09:00~17:00)만 보면 사망자는 장갑차 조종수인 관계로 보병인 피진정인 5)보다, 정비반장인 피진정인 6)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한바 욕설 등 가혹행위가 대부분 일과 중 차량호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 6)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 및 ○○규정 189 「징계규정」은 구타 및 가혹행위로 1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1, 2, 3차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사. 전공사상자 심의 관련

- 1) 국방부훈령 제392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는 사망을 전사, 순직, 사망(일반사망, 변사 및 자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25개 유형으로 세분(전공사상분류기준)하여 그 심의는 각군본부에 위임하고 있다.
- 2) ○○본부 인사행정처 인사처리과는 2006.11.9.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여 자살(전공사상분류기준 5-1) 결정 후 유족에게 통지하였다.
- 3) 대법원 판례(대판2003두13595)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 사망한 의무경찰에 대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 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05진인543)에서는 사망원인 등을

충분히 반영치 않고 행한 전사망심외에 대하여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자살이 아닌 타살인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당일 근무지에 입소도 안했고, 생활관 근처에서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나, 근무 전 같이 식사를 했던 병사, 근무를 같이 했던 병사, 근무지에서 인수인계한 병사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당일 근무초소에 입소를 안했다거나, 근무 직전에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군부대수사기록,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및 설문서, 부검결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답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답변서 등을 검토해 볼 때 타살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피진정인 7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사단헌병대에서 피진정인 7에 대하여 사망자에 대한 강요(형법324조)혐의로 ○○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지방검찰청은 이를 송치 받아 수사결과 형법 324에 의한 강요혐의는 없는 것으로 처분 한바 진정원인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을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 7이 약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사망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라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도(대판79도2221) ‘중대장이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 연병장에서 구박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하게 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국방부훈령 제487호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서도 가혹행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바, 피진정인 7이 사망자에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로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 및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피진정인 8) 9)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자체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진정인 8) 9)에 대하여 각각 영창 12

일 및 영창 7일의 조치를 하였고, 사단헌병대에서는 협박 및 폭행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324조의 '강요'에 관하여 사단검찰부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사단검찰부에선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진정원인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진정인 8) 9)가 사망자를 괴롭힌 행위는 대법원 판례(대판 79도2221) 및 국방부훈령 제487호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지침」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로서 사망자의 인격권(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함) 및 헌법 12조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피진정인 1)내지 6)의 지휘/감독 책임

- 1) 피진정인 1)은 사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3)은 여단징계 위원회에서 '감봉3월' '유예'결정을, 피진정인 4)도 '경고'의 처분을 받은바 자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 2) 여단 징계위원회는 피진정인 2)가 사망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관계가 아닌 점, 피진정인 5)는 면담 및 생활기록부 기록을 적절히 한점, 피진정인 6)은 직속상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묻은 바 없으나, 피진정인 5)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소대장인데도 가혹행위를 인지 및 예방하지 못한 점, 피진정인 6)은 가혹행위가 주로 피진정인 6)이 일과 중 주로 위치하고 직접 관리 및 통제하는 차량호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에 대하여 일과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생활하며 관리하는 간부인 점 등을 고려 볼 때 피진정인 5) 6) 이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마. 부대의 사고처리 태도

- 1) 사단헌병대 및 사단검찰부는 피진정인 7) 8) 9)에 대하여 형법324조의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나' "다" "라"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7) 8) 9)의 행위는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 및 군형법 상 가혹행위(제62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수사상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속요건을 요구하는 강요만을 수사하고 군인인 피진정인 7) 8) 9)에게 직접적용되는

제3장 군 관련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국방부훈령 상 가혹행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군 수뇌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한다.

- 2) 중대장인 피진정인 3)은 사고당시 초소일지를 보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해연도가 바뀌지도 않은 2006. 9.에 이를 소각하였으며, 해당 기갑 여단장은 사단헌병대 수사가 종결(2006.8.24)되지도 않은 2006.7.20. 자체징계를 마무리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행위로 판단한다.

마. 전공사상자 심의관련

- 1) ○○본부는 2006.11.9.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여 자살로 결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구타 및 가혹행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 2)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사망자는 선임병들에 의해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폭언, 질책,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나,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망자에 대하여 전공상심의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6. 결론

군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본부 전사망심의회에서 이미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은바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5 2007. 7. 9자 07진인1637 결정 [사망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로 군 수사관에 의해 경찰관서로 연행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경찰에게 신병이 인도되던 중 사망한 형사피의자인바 신병 인도 과정에서 경찰관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 [1]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비추어 이를 수사할 권한은 없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가 불명한 경미범죄자인 관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체포를 계속할 권한은 없으므로 체포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신병을 인수하러 올 때까지 체포하고 있거나 최소한 가까운 경찰관서로 데리고 가 경찰관서에 신속히 인도하여야 함.
- [2]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의 신분으로서 체포하였다고 보는 경우임.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피의자인 피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체포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제출 요구나 피의사실 조사 및 사실상의 검증절차 등은 권한 밖의 행위로서 위법·부당한 것임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의 한계 및 절차를 오인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을 전·후하여 일정하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송○○ 등에게 신병인계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3]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그 권한의 한계를 오인하여 오히려 피진정인 이○○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부당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의 조사행위를 방치하였음은 물론,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발견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검거절차를 진행한 후 경찰관서의 내부업무분장에 따라 경제팀으로 인계하여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 이○○에게 신병을 인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 이○○과 송○○은 각 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직무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위반하여

제3장 군 관련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3조,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신병인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4] 가혹행위 여부 등 변사사건 처리상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신체수색도 체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 등을 압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손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력범죄 혐의자도 아니어서 흉기를 소지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산염와 같은 독극물을 소지했을 것을 예상하여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해자의 피의사실의 경중에 비추어 자해를 예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第12條,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 「군형법」 제1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214조, 제216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1조

【진 정 인】 조○○

【피 해 자】 조○○

【피진정인】

1. 이00
2. 고00
3. 진00
4. 송00
5. 홍00
6. 김00

【주 문】 1. ○○○사령관 및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이○○과 송○○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2007. 4. 26 군 장성을 사칭하였다는 혐의로 군수 사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

가. 군수사관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고 하다가 니중에는 말을 바꾸어 임의동행을 하였다고 하는 등 신병확보과정이 불투명하다.

나. 군수사관은 ○○경찰서에서 민간인인 피해자를 불법조사하고, 성명불상 경찰관은 이를 방조하는 등 상호 신병인수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 경찰과 군은 피해자가 스스로 독극물을 먹고 자살했다고 하고 있으나 첫째, 군과 경찰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50여분 간 세워 놓고 조사하고, 소지품 확인 및 안전조치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혹행위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고, 셋째,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과 신분증이 없고 ○○ 중앙대학병원에 피해자 사체 인계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넷째, 경찰서 내부 조사실의 CCTV녹화기록만 공개하고 정작 중요한 복도 및 로비의 CCTV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피해자의 유품인 수첩, 휴대폰, T-money card를 다시 달라고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변사사건처리에 의문이 있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피해자의 딸이고, 피해자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로 군 수사관에 의해 경찰관서로 연행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경찰에게 신병이 인도되던 중 사망한 형사피의자이다.

피진정인 이○○, 고○○, 진○○은 ○○○○사령부 헌병단 수사과 소속 군 사법경찰관 및 사병으로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관서로 연행하여 조사하고 신병인도 업무를 수행했던 자들이고, 피진정인 송○○, 홍○○은 사건 당일 ○○경찰서 형사과 및 수사과의 당직근무자로서 위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수

제3장 군 관련

업무를 안내 및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며, 피진정인 김○○는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이○○

- 가) 피진정인 이○○은 군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 사법경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군용품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군수품 단속 및 계몽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나) 2007. 4. 24. 군수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및 계몽활동을 하다 유사군복을 착용하고 기무사령부 장군을 사칭하는 자가 있다는 풍문을 듣고 관찰하던 중, 같은 달 26. 14:00경 ○○구 한강로 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에서 유사군복 차림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 다) 대면 당시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유사군복 착용 및 구매여부를 문의하자 피해자가 관련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계급장 등을 꺼내 보여주었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은 없으면서 소장계급장에 정복 차림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제00사단 000연대 부대출입증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임의의 동의를 얻어 피해업소에 전화를 하여 장군을 사칭한 혐의사실, 피해자의 소지품 확인, 불법 구매한 군복을 회수하였고, 같은 날 14:10경 군 차량을 이용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다.
- 라) 같은 날 14:40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송○○에게 유사군복을 착용한 채 장군을 사칭하면서 차량 정비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용의자를 인계하러 왔다고 하자 위 송○○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 본 후,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2002. 4. 25.부로 00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지명 수배되어있고, 과거 전과가 2범임

을 알려주며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의 신병이 경찰 측에 인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 마) 당시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진정인 송○○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에게 장군 군복류 구매경위, 군 경력,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장계급장과 기장, 30년 휘장 등을 스스로 유사군복에 부착하여 보여 줌에 따라 운전병 상병 전○○으로 하여금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피해자가 물 마시는 시간, 화장실 이용 시간을 포함하여 약 50여분 간 하였는데, 이는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위 송○○의 부탁을 받고 협조차원에서 경제팀으로 신병을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2) 피진정인 고○○

2007. 4. 26. 피진정인 이○○을 지원하라는 부대의 지시를 받고 동인과 함께 장군 사칭자인 피해자를 대면하였는데, 당시 위 이○○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주며 관련 내용을 물어보자 피해자가 스스로 유사군복 구매 및 착용을 인정하고 군복의 자진반납 의사를 표명하여 경찰서로 동행하였고, 본인은 군복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 고○○을 찾아가 군복을 임의제출 받아 회수하고는 부대로 복귀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진○○

- 가) 당시 군 헌병단의 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였는데, ○○경찰서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순순히 차량에 탑승하였고, ○○경찰서 형사과에 도착하여서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대기하였다
- 나) 피해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5~6회 정도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지켜보았고, 이후 경제팀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과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및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로 갈 때도 지켜보았는데, 피해자가 대변을 본 후 세면대 수도물을 2~3회 마신 다음 경제팀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호흡을 크게 내쉬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는 것을 보았다.

4) 피진정인 송○○

제3장 군 관련

가) 2007. 4. 26. 14:40경 피진정인 이○○이 피진정인 진○○과 함께 장군을 사칭하는 용의자의 신병을 인계한다고 하여 담당부서인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로 인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신원확인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사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빈자리에 앉아 용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장군 계급장을 부착하게 하고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 조회를 하니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자인 위 이○○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인 경제팀으로 신병을 인계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으나 피진정인 이○○은 이를 듣지 않고 ○○○○사령부 헌병단 사무실에 전화보고를 하고, 약 40여 분간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등 머물러 있다가 경제팀으로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데리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독극물을 먹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다) 당시 피진정인 이○○이 본인에게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형사과 소관업무가 아닌 사기 사건의 용의자를 인계받을 이유가 없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군 수사관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의 수배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다.

5) 피진정인 홍○○

가) 당시 경제팀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피진정인 이○○이 혼자 들어와 군 장성을 사칭하면서 차량수리비 30만원을 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장 계급장이 달린 베레모, 소장 계급장, 위조된 피해자의 군신분증, 수첩, 지갑, 휴대폰, 비타민약 등을 당직데스크 책상에 올려놓았다.

나) 이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 화장실에 있다고 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본인에게 주면서 사기로 수배도 되어 있다고 하여 수배내역을 확인하려고 전산실로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 온 사이, 피진정인 이○○도 수배내역을 확인하고자 형사과 사무실로 갔다 오더니 “조○○가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가야 겠다”라고 하여 경제팀 사무실 앞에 나가 보니 피해자가 고개 숙인 채 눈을 감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어서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어서 긴급히 119로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를 태우고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중대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약 30분 후에 피진정인 이○○과 대령 군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장교가 응급실로 찾아와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신병인수증을 써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거절하였다.

6) 피진정인 경감 김○○

가) 본인은 피해자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인데,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 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우측 귀 아래 목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된 것은 외력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변사가 후송된 중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주사(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을 투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사건발생 직후 ○○경찰서의 CCTV녹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형사과 폭력팀에 설치된 CCTV는 정상 작동되어 유족 등에게 이를 공개하였으나 경찰서 1층 복도 및 로비에 설치된 CCTV는 2007. 4. 22.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고, 이후에는 고장이 나 녹화가 안 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의 신원은 경찰서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였고, ○○ 중대병원 응급실의 의료기록차트에도 ‘조○○’로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 상태로 ○○ 중대병원에 인적사항을 불분명하게 알려 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품을 4일이 지나서 유가족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변사자의 정확한 과거 행적수사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본 피해자의 변사사건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감정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자료 등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과정의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진정인 이○○이 2007. 4. 26. 15:40경 경제팀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화장실에 들러 소지하고 있던 청산염을 먹고 나와 경제팀 앞 대기실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5:51경 119구급차로 ○○ 중대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위 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같은 날 16:4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4. 관련법령

붙임자료 참조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등 조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위 4.항의 관련법령, 군수사관인 피진정인 이○○, 고○○(이하 ‘피진정인 이○○ 등’ 이하 함) 그리고 사법경찰관인 피진정인 송○○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정한 적용범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동 법이 정한 군복의 절도 및 강도, 장물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이○○ 등은 2007. 4. 26. 13:30경 서울 ○○구 한강로 1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임의의 질문을 통하여 「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 등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군 장성사칭 사기혐의에 관한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13:40경 군 관용차량을 이용 ○○경찰서로 임의의 동행하였고,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동 경찰서 피진정인 송○○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피해자의 군 경력, 가족사항 및 인적사항, 유사군복 및 계급장의 구매 및 사용 경위, 장군사칭 혐의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계급장을 부착하여 유사군복의 착용의 재현을 요구하고 동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장면을 피진정인 상병 진○○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하는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이○○은 2007. 4. 27. ○○○○사령부 헌병단장 및 사령관에게

50대 민간인이 사복차림에 소장계급장이 부착된 베레모를 착용, 장군을 사칭하면서 서울 ○○ 부근 군장점에서 흑색조끼를 외상 구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오다가 탐문·잠복수사 중이던 ○○○사령부 헌병에게 2007. 4. 26. 14:00경 검거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 라) 피진정인 이○○은 피진정인 송○○의 도움을 받아 2007. 4. 26. 14:00경 서울 ○○구 한강로 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 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피해자를 검거하였음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의 일명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마)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비록 군사법경찰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검거자인 피진정인 이○○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사기 혐의자였던 관계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신병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이 이러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동의도 없이 약 45분 간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피진정인 이○○ 등은 2007. 4. 28. 13:00경 서울시 ○○구 한강로 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 내에서 군 장성을 사칭하며 유사군복 및 계급장 등을 착용 및 소지하고 사기행각을 벌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자 민간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조사권한이 없어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을 하였고, 특히 피진정인 이○○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가 아닌 내부보고 및 단속업무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단순히 사실 확인만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과 같이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인사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한 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고, 또한 일부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피진정인 이○○ 등이 비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특별법은 군복의 절도 및 강도, 장물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범한 「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민간인 군복착용금지) 및 제2항(유사군복 착용금지)의 위반 범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수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 피진정인 이○○ 등은 피해자가 민간인이었던 관계로 수사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유사군복 착용 및 장군사칭 사기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의의 동의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물을 제출받았을 뿐 만 아니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으며, 동 경찰서에서 위 피의사실을 일부 재현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 등 수사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임의동행하거나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는 행위, 또한 사실조사를 위한 질문 등을 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광의 및 협의의 의미에서 명백히 조사 및 수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이○○ 등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병확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급지휘관에게는 잠복 수사 중 군 장성 사칭 사기 및 유사군용 민간인 범죄자를 “검거”하였다고 보고하고, 또한 2007. 4. 26. 14:40경 신병인계에 관련하여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인 피진정인 이○○의 수사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잘 알지 못하던 피진정인 송○○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에도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상당부분 불일치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확인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다) 한편, 피진정인 이○○ 등이 민간인에 대한 정당한 수사권한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한 행위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경미범죄자라도 주거가 불명인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4조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비록 벌금 10만원이하의 경미범죄자이었지만 위조된 군부대출입증을 제시하였고, 기소중지자로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일반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인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따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를 임의 동행한 것으로 법률상 단순 착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전·후 과정을 놓고 볼 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재현하게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실제적인 조사·신문 등의 수사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수사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체포행위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인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법률적용의 단순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또한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해자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곧 바로 동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신속히 인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전에서 약 40여 분간 위법·부당하게 피해자의 신병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묵인한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제출 그리고 일정한 조사행위와 피진정인 송○○의 방조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3조 및 제44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관련 직무의 범위를 위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헌법」 제12조에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같은 법 같은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병인수절차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 이○○ 및 송○○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서가 제출한 변사사

제3장 군 관련

건 수사자료 및 형사과 사무실 CCTV녹화자료, 그리고 동 CCTV녹화자료에 대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진정인 이○○이 2007. 4. 26. 13:30경 서울시 ○○구 한강로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인의 군 장성사칭 사기 및 유사군복 등 군용장구 착용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한 후, 경찰관서에 피해자를 인계하고자 같은 날 14:10경 상병 진○○이 운전하던 군 수사용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4:40경 피진정인 송○○이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임의 동행한 사실이 있다.
- 나) 당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이○○은 최초 방문목적은 묻는 피진정인 송○○에 대하여 군 장성사칭 사기 및 유사군복 착용 피의자인 피해자의 신병인계도 하고 자신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에게 피해자를 수사과 경제팀으로 신병 인계할 것을 안내하였지만 피진정인 이○○이 형사과 사무실에 피해자를 동행하여 들어 왔다.
- 다) 또한,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사병 진○○의 피해자에 대한 감시 및 보조 하에 장군복류 구매 경위, 착용 및 사칭관계, 군복무 및 가족사항 등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유사군복 착용을 재현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이○○에게 담당부서인 수사과 경제팀으로의 신병인계를 계속 요구하였으며, 특히 위 조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2년 경남산청경찰서로부터 별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진정인 이○○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민간인에 대한 체포 등 수사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동인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라) 그리고 피진정인 이○○이 같은 날 15:26경 피진정인 송○○의 요청에 따라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로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나올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을 실질적으로 조사·관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 마) 피진정인 이○○은 피진정인 송○○이 주민조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고,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자신에게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피해자의 신병이 피진

정인 송○○에게 인계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진정인 송○○의 부탁을 받아 편의 상 수사과 경제팀 피진정인 홍○○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바) 피진정인 송○○은 자신은 담당부서인 경제팀으로의 신병인수를 위해 단지 신원확인 및 검거보고서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신병을 직접 인계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진정인 홍○○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변사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변사사건 발생 후,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신병인수서의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 가) 이 사건 관련 피진정인들은 상호 피해자의 신병인수절차 및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3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 제2항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비추어 이를 수사할 권한은 없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가 불명한 경미범죄자인 관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체포를 계속할

권한은 없으므로 체포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신병을 인수하러 올 때까지 체포하고 있거나 최소한 가까운 경찰관서로 데리고 가 경찰관서에 신속히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 위와 같은 피진정인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의 신분으로서 체포하였다고 보는 경우이다. 피진정인 이○○ 등은 피의자인 피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체포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제출 요구나 피의사실 조사 및 사실상의 검증절차 등은 권한 밖의 행위로서 위법·부당한 것임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의 한계 및 절차를 오인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을 전·후하여 일정하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송○○ 등에게 신병인계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설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인의 위치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해 인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임의동행의 형식을 통해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라고 이를 바로 잡아 신속히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3조,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자인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피해자의 신병을 인도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그 권한의 한계를 오인하여 오히려 피진정인 이○○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부당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의 조사행위를 방치하였음은 물론,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발견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검거절차를 진행한 후 경찰관서의 내부업무분장에 따라 경제팀으로 인계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 이○○에게 신병을 인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

된다.

- 라)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 이○○과 송○○은 각 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직무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3조,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신병인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혹행위 여부 등 변사사건처리의 문제점 여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위 진정요지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체포 및 조사 중 가혹행위 및 신병관리 소홀 등 변사사건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서의 변사사건 수사기록 및 CCTV녹화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첫째, 체포 및 조사, 그리고 신병인수과정에서 피진정인 이○○ 등과 피진정인 송○○ 등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체포 및 조사, 그리고 최초 변사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군장백화점’ 주인 강경서 및 ‘○○공업사’ 주인 김○○도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CCTV녹화기록에서도 피진정인 이○○이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조사에 응하다가 수시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언어적·신체적 강압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셋째,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발견된 피하출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사 김○○의 소견 및 부검기록, ○○ 중대병원의 담당의사 장○○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직전 ○○ 중대병원의 응급치료 중 심폐소생을 위해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사바늘 자국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외 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간과 폐에 울혈이 심한 점으로 보아 청산염에 의한 독극물 중독사인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넷째, 피해자의 신원은 당시 ○○경찰서에게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 중대병원에 호송되어 동 병원의 의료기록차트에 ‘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확인 후, 영안실 존안 시 영안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피해자의 시신을 ‘조○○’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점,

제3장 군 관련

다섯째, ○○경찰서 경비과 상황실 경위 허장용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동 경찰서 형사과에 설치된 CCTV는 정상 작동되어 유족에게 공개하였으나, 1층 복도·로비에 설치된 CCTV는 사건 발생 이전인 2007. 4. 22. 작동 이상으로 상황실에 화면만 출력되고 녹화저장이 안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변사사건 경위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섯째, 변사자의 유품인 휴대폰, 교통카드 등을 4일 후 유가족에게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는 이 건 변사사건을 수사담당한 피진정인 김진서가 피해자의 정확한 과거 행적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끝으로, 피해자의 체포 및 신병인수 인계에 따른 소지품 확인 등 신병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이○○ 등은 피해자를 임의동행 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첩, 지갑, 핸드폰, 유판씨 3개, 타이레놀 3개, 봉지약(간질환치료제) 3개, 교통카드, 소장계급장 3개, 베레모, 기장, 지휘관 휘장 등을 확인하고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에 해당하는 소장계급장 등에 대하여만 임의제출을 받아 강제로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송○○은 신병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자신 또한 체포 등에 따른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사 당시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는 체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 등을 압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손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력범죄 혐의자도 아니어서 흉기를 소지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산염과 같은 독극물을 소지했을 것을 예상하여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피진정인 송○○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온 피해자를 인계받을 때 체포에 수반되는 자해의 위험성 등의 판단에 따라 수갑 및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의 피의사실의 경중에 비추어 자해를 예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 「헌법」 제12에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사령관 및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이○○과 송○○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第12條

① 모든 국민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2. 「군사법원법」 第43條 (軍司法警察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軍司法警察官으로서 犯罪를 搜查한다.<改正 1994.1.5, 1999.1.21, 2000.12.26>

1. 憲兵科의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과 法令에 의하여 犯罪搜查業務를 管掌하는 部隊에 소속하는 軍務員으로서 犯罪搜查業務에 종사하는 者

2. 法令에 의한 機務部隊에 소속하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 및 軍務員으로서 保安業務에 종사하는 者

3. 國家情報院職員으로서 國家情報院長이 軍司法警察官으로 指命하는 者

4. 檢察搜查官

第44條 (軍司法警察官의 搜查限界)

軍司法警察官은 軍事法院管轄事件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搜查한다.<改正 1994.1.5, 1999.1.21, 1999.12.28>

1. 第43條第1號에 規定된 者는 第2號 및 第3號에 規定하는 罪외의 罪

2. 第43條第2號에 規定된 者는 刑法 第2編第1章 및 第2章의 罪, 軍刑法 第2編 第1章 및 第2章의 罪, 軍刑法 第80條 및 第81條의 罪와 國家保安法,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및 集會및示威에 관한法律(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規定된 罪

3. 第43條第3號에 規定된 者는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

3. 「 균형법 」 第1條 (被適用者)

①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改正 1975.4.4>

② 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に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改正 1970.12.31, 1983.12.31, 1999.2.5, 2000.12.26>

③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に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改正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981.4.17, 1983.12.31, 1993.12.31, 2000.12.26>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中인 學生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軍인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內外國人에 대하여도 第3項과 같다.<改正 1981.4.17>

제3장 군 관련

1.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罪
2. 第42條의 罪
3. 第54條 내지 第59條의 罪
4. 第66條 내지 第71條의 罪
5. 第75條第1項第1號의 罪
6. 第77條의 罪
7. 第78條의 罪
8. 第87條 내지 第90條의 罪
9.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未遂犯
10. 第58條의2의 未遂犯
11. 第59條第1項의 未遂犯
12. 第66條 내지 第70條와 第71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
13. 第87條 내지 第90條의 未遂犯

⑤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가 軍服務中이나 在學 또는 在營중에 이 法에 정한 罪를 犯한 때에는 轉役·召集解除·退職 또는 退校나 退營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新設 1963.12.16>

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3條 (軍用物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軍用物에 관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또는 第41章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년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軍用物中 軍糧·軍服等 및 軍用油類에 관하여는 集團的 또는 常習的으로 犯行하거나 物品價額이 10萬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램 이상의 物品 또는 10드람 이상의 油類인 때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②前項의 罪에 대하여는 20萬원 이하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5. 「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第9條 (軍司法警察官吏)

①「군사법원법」 第43條第1號 및 第46條第1號에 規定된 軍司法警察官吏로서 地方檢察廳檢事長의 指名을 받은 者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規定된 犯罪에 關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한다. <改正 1981.12.31, 1987.12.4, 2006.7.19>

②「군사법원법」 第43條第2號 및 第46條第2號에 規定하는 軍司法警察官吏로서 地方檢察廳檢事長의 指命을 받은 者는 「군사기밀보호법」에 規定하는 犯罪에 關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한다. <新設 1981.12.31, 1987.12.4, 2006.7.19>

7. 「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の 逮捕)

現行犯人は 누구든지 令狀없이 逮捕할 수 있다.

第213條 (逮捕된 現行犯人の 引渡)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を 逮捕한 때에는 即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の 引渡를 받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 住居, 逮捕의 事由를 물어야 하고 必要한 때에는 逮捕者에 對하여 警察官署에 同行함을 要求할 수 있다.

③削除 <1987.11.28>

第214條 (輕微事件과 現行犯人の 逮捕)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罪의 現行犯人に 對하여는 犯人の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第212條 내지 第21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제3장 군 관련

第216條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 搜查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 犯行中 또는 犯行直後의 犯罪 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는 事後에 遲滯없이 令狀을 받아야 한다.<新設 1961.9.1>

8.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05.8.26>

② 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9.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1조

제31조 (현행범인의 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신설 1988.4.2, 1996.12.31>

④제23조제5항·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31>

6 2007. 9. 7자 07진인1198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가 5명의 군의관을 거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병실에서 쓰러지게까지 한 사건에 대하여 군의관 책임 부분은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국민들이 국방의료 수준에 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이며,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후송이 지연된 것은 군인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피진정인 7) 개인의 의료과실 부분은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대대 및 연대급 의무대를 거쳐, 2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사단의무대, 3차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군병원에 이르기 까지 5명의 군의관이 진료를 하면서 전부다 내과적 접근만 하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은 오진여부를 떠나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따라서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이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진 정 인】 최○○, 피해자의 형

【피 해 자】 최○○ (육군 ○사단 전역후 국군수도병원 체류치료 중)

【피진정인】

- 1) 권○○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조교, 병장)/황○○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대위)
- 2) 양○○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군의관, 중위)
- 3) 이○○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
- 4) 남○○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
- 5) 김○○ (육군 ○사단 의무대 군의관, 대위)
- 6) 윤○○ (육군 ○사단 의무대장, 중령)
- 7) 이○○ (국군○○병원 내과군의관, 대위)

【주 문】

1.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요지 나. 와 관련하여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등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군의료 수준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부대측의 진료지연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군의관 개인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가. 피해자는 입대전 특별히 병원에 다닌 경험도 없이 신체건강했고 신체검사 1급으로 2006. 6. 27. 입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신병교육 중 결핵 등에 의한 뇌수막염이 발병하였다. 이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감기 가지고 뒤 그 러는나고 진료를 제한했고. 어렵게 피진정인 2)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피진 정인 2)가 3차례에 걸쳐 똑같이 감기 처방만 한 것은 오진이다.
- 나. 피해자는 몸이 아픈 가운데 수료식까지 마치고 ○○연대 ○○중대에 배치 된 후에도 열이 계속 나 피진정인 3)을 거쳐 2006. 8. 7. 피진정인 5)에게 외진을 갔는데, 피진정인 5)는 뇌수막염을 발견치 못하고 동년 8. 8. 피진 정인 7)에게 후송할 것을 조치한 후 입원을 시켰으나 피진정인 6)이 외진 버스 출발전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대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자대에서 다시 열이 나서 피진정인 4)를 거쳐 다시 피진정인 5)에게 갔는 데, 피진정인 5)는 응급후송을 하지 않고 2006. 8. 10.이 되어서야 피진정인 7)에게 진료를 받게 하였는바, 이는 오진 및 의료접근권 침해이다.
- 다. 피진정인 7)은 2006. 8. 10. 진료시, 군병원 전문의이고 기존 의무기록등을 검토하였음에도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과적 처방만 하다가 환자가 새벽에 쓰러지게 만들어 병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진정요지 가. 관련

제3장 군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1) 권○○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조교, 병장), 황○○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대위)의 주장

신병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열의 시킬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고 교육 초기에 환자파악시 피해자가 환자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조기 식별이 힘들었으며, 4주차부터는 감기몸살을 호소하여 군의관 진료조치 하였고 피해자의 진료신청은 묵살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2) 양○○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군의관, 중위) 진술

신병들은 교육훈련 관계로 보통 일과 후 18:00경 부터 취침 전 20:00전에 진료를 받는데 약 2시간에 50여명의 환자가 찾아와 1인당 3분 이하의 진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신병교육대 의료 서비스의 현실이다. 최소 2명의 군의관과 의료기기가 확보된다면 더욱 성심껏 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대급 군의관이 열악한 장비 등으로 뇌수막염을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3)이○○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예하부대 군의관으로서 뇌수막염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사단의무대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했으며 성의껏 진료하였다.

3) 피진정인 5)김○○ (육군 ○사단 사단의무대 군의관, 대위)의 주장

뇌수막염때 보이는 뇌수막자극증상, 두통, 의식저하, 백혈구증가증, 저혈압 등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소견만으로 뇌수막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척수검사를 시행할 만큼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4) 피진정인 6)윤○○ (육군 ○사단 의무대장, 중령)의 주장

당시 지휘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지만, 환자 후송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5) 피진정인 3)남○○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환자를 보고 상태가 안좋아 바로 사단의무대로 인솔하여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적 조치가 아닌 단순 인솔이었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7)이○○ (국군○○병원 외과군의관, 대위)의 주장

기본적 데이터 확인결과 뇌수막염 의심할 만한 것 없었고 성의껏 진료중 이었다. 입원 첫날 쓰러졌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을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대학재학중 2006. 6. 27.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연천) 신병교육대에서 2006. 8. 4. 까지 5주간 신병교육을 받았다.

나) 피해자는 교육시작 13일 정도가 지난 2006. 7. 15. 최초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피진정인 1)등이 “오늘 진료를 안받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진료받아라.”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대가리 밖아(농담조)”등의 말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료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06. 7. 25. 에서야 피진정인 2)에게 첫 진료를 받고 7. 31. 및 8. 2. 2차례에 걸쳐 추가 진료를 받았다.

다) 피해자의 동기생 장○○, 오○○은 “○○이는 혼자 참아내는 성격이었으며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문○○은 “○○이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조교들이 농담조로 그럼 대가리 밖아.”라고

제3장 군 관련

했다고 진술하였고, 왕○○은 “오늘 의무대 안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가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의무대 조교 문○○은 “항상 환자들이 많았고 정해진 시간안에 진짜로 아픈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한 입장였고, 2번이상 아프다고 한 환자들은 바로 조치했으며, 우리 기수에서 매일 15~20여명의 환자를 군의관에게 데려갔고 군의관은 환자에게 성의껏 진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군의관 양○○은 “조교에게 너무 많은 환자를 데려오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너무 많은 환자가 찾아오면 정작 아픈 환자 치료시간이 부족하여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피진정인 2)는 환자에 대하여 3차례 진료시 결핵이나 뇌수막염은 의심하지 못하고 감기 처방만 했으며, “대대급 의무실에 특별한 장비가 없어 뇌수막을 진단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신병교육대 1기수 인원이 200명으로 통상 3개기수 600여명의 병사중 일과 후 취침전 50여명씩 의무실을 찾아와 1인당 3분이하의 진료를 받게 현실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 바)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고○○은 “일반 의사라 하더라도 뇌수막염을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신병교육대 군의관 조치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금 더 빨리 상급의료기관에 보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자문하였고, 환자를 직접진료한 의정부○○병원 유○○ 교수는 “환자의 경과가 비정형적 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 이라고 자문하였다.
- 사) 국방부는 “군의관의 오진 여부는 개인 책임을 논하기에 타당하지 않고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1)이 군의관 진료를 제한했다는 주장은 신병교육을 시키는 교육대 지휘관 및 조교로서 환자를 우대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인 점, 한 개 기수에서 매일 15~2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의무대 군의관 1명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으로 진료를 제한했다고 볼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2)의 의료 과실 부분은 국방부 및 제3기관 자문결과 의료전문영역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조사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인정사실

- 가) 피해자는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 행군까지 마치고 2006. 8. 4. 신병수로 식 후 사단내 ○○연대 ○○중대(이후 ‘자대’로 표기)로 배치되었다.
- 나) 자대에 배치된 후에도 고열 및 두통이 있어 피진정인 3)에게 진료를 받고 2006. 8. 7. 피진정인 5)에게 외진을 받았으나 피진정인 5)는 위장염 진단을 내리고 다음날인 2006. 8. 8. 상급 의료기관인 국군○○병원 후송처방 및 입실조치를 해 피해자는 2006. 8. 8. ○○병원 후송을 가려 하였으나 버스에 자리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후송을 가지 못하고 자대로 복귀하였다.
- 다) 피해자는 자대에 대기 중 고열로 피진정인 4)에게 진료를 받고 사단의무대에 하루 대기하다가 2006. 8. 10. 에서야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 라)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고○○은 “사단 군의관은 장염의증으로 치료하였는데 환자의 당시 상태가 장염으로 볼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2주 이상 지속적인 발열, 오심을 동반하는 두통이 계속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뇌수막염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본다. 여기서 두통의 상태가 중요한데 의무기록에 두통으로만 되어있지 그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단 군의관 조치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고 연대급 군의관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2) 판단

피진정인 3) 4) 5)의 의료 과실 부분은 전항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하나,

피해자가 군병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자대로 복귀하였다가 이틀 후에서야 후송된 것은 헌법 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의료권 중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인정사실

- 가) 국군○○병원 이○○ 군의관(피진정인 7)은 2006. 8. 10. 11:09경 환자를

제3장 군 관련

인계받아 폐결핵관련 검사 및 X-ray, 가슴 CT 검사 등을 하고 경과 관찰 중이었으나 피해자는 당일 23:00경 왼쪽 팔과 양 다리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병동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 나) 피진정인 7)은 20:00경 퇴근하였다가 23:05경 긴급 복귀하여 당직군의관 등과 함께 뇌CT 및 MRI 촬영후 인근 의정부 ○○병원에 협진하였고 ○○병원은 2006. 7. 말경부터 결핵성 뇌수막으로 인해 뇌경색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 다) 피해자는 2006.9.15.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2007.1.18. 장애6급, 보상3급으로 의가사 전역하였고 이후 6개월간 체류 치료중이다.
- 라)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고○○은 “저나트륨혈증 및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치료하고 폐결핵을 포함한 기타 검사를 진행중이었다. 진료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너무 짧아 군의관 조치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고 자문하였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정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유○○은 “환자의 질환이 그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고 경과가 비정형적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군 의무시설을 고려해 볼 때 본 환자와 같이 까다로운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자문하였다.
- 마) 국방부 보건정책팀은 군의관 과실 및 오진부분과 관련하여 “군의관의 오진 여부는 개인 책임을 논하기에 타당하지 않고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7) 개인의 의료과실 부분은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대대 및 연대급 의무대를 거쳐, 2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사단의무대, 3차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군병원에 이르기 까지 5명의 군의관이 진료를 하면서 전부터 내과적 접근만 하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은 오진여부를 떠나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이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피해자가 5명의 군의관을 거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병실에서 쓰러지기까지 한 사건에 대하여 군의관 책임 부분은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 일반 국민들이 국방의료 수준에 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가 명백하며 더군다나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후송이 지연된 것은 군인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진료지연과 관련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군의관 개인책임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할 것을 결정한다.

2007. 7.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제 4 장]

외국인 관련

1 2007.9.11자06진인2702 결정[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의한 인권 침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인 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인 발생한 경우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법무부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해자가 혼인한 것이 비록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속 및 강제퇴거 결정 이전에 교제를 시작하고 있었고 전부인과 이혼을 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의 혼인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구성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출국 후 신규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 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하여 합법적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혼인한 것이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로 판단되는 바, 위장결혼이 아닌 진정한 혼인 등의 예외적인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강제퇴거 집행정지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에 대한 특례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이OO

[피 해 자] 진OO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1.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 해제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혼인 등 신상의 변화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제4장 외국인 관련

2.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자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불법체류 혐의로 단속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 후 일시보호해제 기간에 있던 중 교제 중이던 한국인과 혼인을 하게 되어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인 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중국인인 피해자는 한국에서 미등록이주자로 생활하여오던 중 2005. 한국인 서OO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6. 3. 중국인 전부인과 이혼하고 교제중이던 서OO와 결혼준비를 하여오던 중 2006. 4. 6.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한국인 김OO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2006. 4.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 후 2006. 4. 17. 보호 일시해제 되었으며, 보호해제 기간 중인 2006. 5.부터 서OO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06. 8. 21.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그에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하였다.

나. 피진정인

1)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가) 피해자는 1996. 9. 30. 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6. 10. 8. 이전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여 오던 자로, 2006. 4. 6.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어 보호조치 되었으며, 2006. 4. 10.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5년의 입국금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대차한 전세보증금과 한국국적취득을 도와주겠다

는 명목으로 갈취당한 비용 회수를 위하여 2006. 4. 17. 피해를 보호 일시해제한 후 현재까지 해제 기간을 연장 중에 있다.

나) 보호 일시해제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취소하고 국내에서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규정이 없고, 입국 규제가 된 상태에서 본국으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라도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외공관에서 혼인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다) OO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일시해제 허가 및 연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 바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퇴거를 면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겠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법무부

불법체류 중 단속 등으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조치 혹은 보호 일시해제된 출입국사범에게까지 혼인신고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게 된다면 체류질서 문란 등 법적 안정성의 침해는 물론 합법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합법체류를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출국 후 혼인생활을 위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도적인 입장에서의 행정 조치는 가능하다.

3. 관련규정

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

제4장 외국인 관련

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1996.12.12>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0조(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보호의일시해제) ①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

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입국규제업무 처리지침

3. 입국규제 기준 및 처리절차

가.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규제

(1) 규제 대상 및 기준

(가) 입국금지

출입국사범 등

대 상	금지예정기간
○ 불법체류 등 법 위반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재범 등 법 위반정도가 중한 자	5년이상

(4) 입국규제 해제 기준 및 절차

(가) 입국금지

특별해제

- 해제대상자 : 금지예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나,
 - 외국적 동포(한국계 외국인)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를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제검토
 - 대상자의 성별, 연령, 과거의 체류동향, 범죄사실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
 - 국가이익이나 한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고령 등 인도적 사항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과 달리 해제조치하거나 입국금지를 사증발급규제로 변경하여 입국규제 할 수 있음.

4. 인정사실

가. 참고인 박OO과 채OO는 피해자와 한국인 서OO가 2005. 하반기부터 알고

제4장 외국인 관련

지내던 사이였으며, 참고인들이 결혼을 제안하였고 2006. 5. 부터는 서울시 OO구 OO동에 주소를 두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2006. 8. 21. 혼인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한국인 서00와 2006. 이전에 만나 교제하였으며, 2006. 5.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06. 8. 21. 국내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단속 및 강제퇴거명령 이전인 2006. 3. 7. 전 부인이던 중국인 김OO와 정식으로 이혼하였다.

5. 판 단

가. 결혼 등에 의한 가족관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회의 기초 단위이고,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혼인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의거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있는 바, 가족의 결합은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원칙이다. 우리 위원회도 국민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권고하는 등 가족 재결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보호하도록 결정하여 왔다.

나. 피해자가 혼인한 것이 비록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속 및 강제퇴거 결정 이전에 교제를 시작하고 있었고 전부인과 이혼을 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고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볼 때 피해자의 혼인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구성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입국규제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필하고 1년경과 시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놓은 것은 사실이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겪어야 할 불편함과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인 출국 및 재입국의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도한 규제라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출국 후 신규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 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하여 합법적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해자가 혼인한 것이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로 판단되는 바, 위장결혼이 아닌 진정한 혼인 등의 예외적인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강제퇴거 집행정지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에 대한 특례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원 신혜수 위원 윤기원

2 2008.1.28자 07진인121결정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외국인의 이송절차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같은 법률을 법무부장관에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호외국인의 이송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의적인 이송처분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호결정, 강제퇴거결정, 보호시설 내의 처우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변호인 접견권, 가족과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며, 난민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됨. 따라서 법적 근거없는 이송처분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이송절차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같은 법률에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7조, 「행형법」 제6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4조

[진 정 인] 000000이주노동자노동조합외 10개 단체

[피 해 자] 0000 사히드외 11명

[피진정인] 00외국인보호소장, 법무부장관

- [주 문]** 1. 00외국인보호소장에게 피보호자를 법률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송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자 이송과 관련하여 직권이송사유 및 절차와 직권이송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이송사유 및 이송사실에 대한 적법한 통지 없이 피해자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절차 진행 및 관련 청원 등을 방해하고, 그동안 해온 부당한 처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자의적 이송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00외국인보호소장

피해자들을 이송할 당시 일부 피해자가 자해기도와 단식을 하고 있었고, 타 피해자들도 집단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그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보호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호 장소를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생략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행정법

제6조 (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

제4장 외국인 관련

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용자의 이송<개정 1995.1.5>)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보호의 의뢰 등<개정 2002.4.18>)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외국인보호소등"이라 한다)에 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보호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한 외국인의 조사 및 출국집행에 필요한 대기 등을 위하여 외국인보호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등을 기재한 보호소장변경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외국인을 보호중인 외국인보호소등의 장과 변경되는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를 긴급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외국인보호규칙」

제29조 (청원) ①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받는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청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청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에게 청원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청원서의 기재는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서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필요한 경우 청원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⑥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보호외국인이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가. 00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이던 이란인 000 등 2명은 2006. 3. 17. 난민인정 신청 불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6. 21. 기각된 바가 있고, 스리랑카인 000 등 10명은 같은해 11. 20.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바가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위 결정에 단식 등으로 항의하자 같은해 12. 14. 피해자들을 아래 <표1>과 같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분산 이송하였다.

<표1 이송된 보호외국인의 명단>

연번	국적	성명	이송후 보호소	참고사항
1	이란	000	여수 보호실	이의신청 이유없음
2	파키스탄	000	"	"

제4장 외국인 관련

3	스리랑카	000	"	난민인정 불허 이의신청
4	나이지리아	000	"	"
5	이란	000	"	"
6	나이지리아	000	"	"
7	나이지리아	000	"	"
8	우즈베키스탄	000	청주 보호소	"
9	아이보리 코스트	000	"	"
10	파키스탄	000	"	"
11	나이지리아	000	"	"
12	나이지리아	000	"	"

「행형법」 제12조에는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직권이송의 사유 및 절차가 정해져 있고, 같은 법 제6조에는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청원을 할 수 있다는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는 직권 이송과 관련한 사유, 절차, 불복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판 단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호외국인의 이송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의적인 이송처분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호결정, 강제퇴거결정, 보호시설 내의 처우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변호인 접견권, 가족과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며, 난민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적 근거없는 이송처분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1995.8.11 법무부령 제411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식'에 대하여 금지 2월에 해당하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칙이 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는 '단식'은 징벌 부과 사유에서 삭제되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은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단식' 자체만으로는 계구 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의 근거 없는 직권이송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징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법률에 근거해야 할 직권이송의 사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징벌사유의 범위 이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징벌 부과 사유에 단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단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이송을 하는 것 또한 부당한 처분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보호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는 보호장소 변경의 사유를 보호외국인의 조사 및 출구집행에 필요한 대기 등을 위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본 건 직권이송에 대한 사유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직권이송이 청원이 있는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청원에 대한 징벌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하는바, 「출입국관리법」에 청원권에 대한 보장을 적시하고 엄정히 집행하여야 직권이송의 악용을 예방하고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이송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처분으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은 보호외국인의 이송절차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같은 법률에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3 2008.1.28자 08진인244결정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초기검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외국인보호규칙」 제20조 「행형법시행령」 제97조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외국인 보호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외국인보호규칙」에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7. 3. 부터 7개월간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

제4장 외국인 관련

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08. 1. 4.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진결과 식후 혈당이 487mg/dL로 나타나 당뇨관정을 받았다. 이후 2008. 1. 8. 동 보호소에서 실시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14.3%가 나왔다. 피해자의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 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이고 감금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호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피해자에게는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사, 정밀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여 진정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보호소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운동실시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당뇨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피해자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2008. 1. 8.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피해자는 포도당만 검출되었고 단백질은 검출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08. 1. 23. 실시한 외래진료에서도 안과에 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외국인 보호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나 입원조치 또는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3. 관계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외국인보호규칙 제20조(건강진단)

① 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행정법시행령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

①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용자 건강진단규칙(법무부 훈령, 별지 참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도소·소년교도소·감호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진단의 범위) 건강진단은 신체 및 정신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조 (신체건강진단) ①신체건강진단은 키, 몸무게, 사슴둘레, 영양상태, 팔·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진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키는 두 발꿈치를 붙이고 몸을 자의 기둥에 바로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cm로 한다.
2. 몸무게는 저울의 중앙에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kg으로 한다.
3. 가슴둘레는 바로 선 자세로 줄자를 젖꼭지 바로 위에 두르고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cm로 한다.

제4장 외국인 관련

4. 영양상태는 피부의 탄력 및 색채, 피하지방의 충실, 근육의 발달정도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양호, 보건위생상 주의 또는 가료를 요할 때는 불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다.
5. 팔·다리는 구부리고 펴는 등의 관절운동을 행하게 하여 그 완전여부 및 발육상황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부위 및 정도를 표시한다.
6. 시력은 정규의 시력표를 실내의 밝은 벽에 눈과 같은 높이의 위치에 걸고 전방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을 각각 측정(안경을 사용 중인 자는 맨 눈 시력과 교정시력을 각각 측정)하고 실명, 굴절이상 및 색신 등의 유무를 검사한다.
7. 청력은 청력측정계나 시계를 사용하여 두 귀를 각각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양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부위 및 정도를 표시한다.
8. 치아는 삭은니, 빠진 이, 치료한 이의 수를 검사한다.
9. 언어는 발음결함 기타 장애유무를 검사한다.
10. 혈압은 혈압기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한다.
11.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는 검사 시 발견된 것을 기재하되 특히 급성전염병, 결핵성 질환, 한센병, 성병, 심장 질환, 뇌·신경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전염성 피부병, 눈병, 컷병, 구강내의 질환 등을 발견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진단) ①정신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을 마친 후 지능감정, 의지 기타 정신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진단을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반응의 변화 및 태도관찰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고 정신과정 관찰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의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정신감정을 실시하게 한다.

③형사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정신건강진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강진단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부에 기재한다.

제6조 (계속검사) 건강진단결과 신체 또는 정신에 관하여 보건위생상 특히 계속하여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강진단부에 계속 검사라고 표시한다.

제7조 (신체 등위의 판정) 신체건강진단의 성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신체의 결함 정도와 작업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신체 각부를 종합하여 큰 결함이 없고 최종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갑”으로 한다.
2. 갑에 비하여 신체 각부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중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을”로 한다.
3. 갑, 을에 비하여 신체의 결함이 있으나 경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병”으로 한다.
4. 허약자 또는 신체결함의 정도가 심하여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정”으로 한다.
5. 질병자로서 계속 휴양을 요하는 자를 “무”로 한다.

제8조 (정신상태의 판정) ①정신건강진단은 일반검사 소견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한다.

1.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정상
 2. 정신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장애 또는 결함이 나타나는 때에는 미약
 3.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상
- ②정신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진단결과 나타난 병명 또는 증상을 기재한다.

제9조 (진단 후 조치) 건강진단 결과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히 본인에게 주의를 시키고 치료·보호·교정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진단) 행형법 시행령 제97조(건강진단)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혼거구금한 2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2. 혼거구금한 20세미만 자 및 독거구금한 20세이상 자에 대하여는 1월, 4월, 7월 및 10월
3. 독거구금한 20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매월

제11조 (석방시의 진단) 석방자에 대하여는 석방시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진단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서울출입국사무소 답변자료, ○○보호소 의무과장의 진술 및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7. 7. 3. 보호소에 입소하여 동년 7. 23. 의무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고 진단결과 근육통으로 밝혀졌다. 이후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장질환 진료 10회, 호흡기 질환 2회, 근골격 질환 1회로 의무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 보호소는 「외국인보호규칙」 제20조에 의거 1개월 이상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해 2개월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도 1개월 이상이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3회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동 검진에서는 키, 몸무게, 혈압만 체크하고 있어 피해자의 당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보호소 의무과장은 2008. 1. 4. 건강 검진 시 피해자의 체중이 2007. 12. 건강검진에 비해 5kg정도 감소되어 있자, 이를 의심하여 혈당 체크를 한 결과 혈당이 487~465mg/dL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임을 발견하였다. 이후 보호소는 피해자를 당뇨치료를 위한 거실로 옮겼고, 식사관리, 운동 등의 치료를 통해 2008. 1. 22. 혈당수치 공복 104mg/dL, 식후 246mg/dL, 저녁 식사전 186mg/dL, 취침전 80mg/dL로 조절 되었다.

4) 보호소는 피해자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2008. 1. 8. ○○시 보건소, 동년 1. 23. OO미래병원(화성시 남양동 소재)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는 본인의 당뇨증세를 2008. 1. 4. 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보호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3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지만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 피해자의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현재 보호소 내 당뇨환자는 5명이 수용되어 있고, 별도로 처방된 당뇨음식과 체조, 약물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보호소는 현재까지 보호소 내 당뇨환자가 발생할 경우 식사조절,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고 별도 보호일시해제 등의 조치 없이 출국시기에 맞춰 출국을 시키고 있다.

5. 판 단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외국인 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 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 「행형법」 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4 2008. 1. 28자 07진인2439 결정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집행공무원이 외국인을 임의동행 할 때는 임의동행 거부권도 고지해주어야 한다는 권고 사례, 특히 불심검문 요건, 신분증 제시의 무, 임의동행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례

【결정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력의 행사는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므로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 됨에도 피진정인의 불심검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고 권고.

【참조조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헌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진 정 인] 이OO

[피 해 자] OOOO

[피진정인] 1. 박OO

2. 장OO

[주 문] 1. 피진정인 박OO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박OO은 2007. 7. 3. 06:00경 창신동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자를 불심검문하고 임의 동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장OO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서명과 지문날인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박OO

2007. 7. 3. 06:00 경 범죄 예방 순찰 근무 중,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시간에 혼자 두리번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불심검문을 하게 되었다.

거수경례를 하고 소속, 계급, 성명, 범죄예방을 위한 검문실시임을 고지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대답해서 여권소지 여부를 물었더니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피해자에게 체류기간이 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에 들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임의동행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본인은 계급, 성명이 부착된 경찰복장을 착용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 신분증은 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형사범이 아니어서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해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장OO

피해자에게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문날인을 하게 한 사실은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53조, 제62조, 제78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 및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시 보호명령서와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러한 문서에 해당 외국인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문서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4장 외국인 관련

차원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서명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으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서명거부라고 표기를 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다.

3. 관련 규정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해당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07. 7. 3. 06:0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344-12 앞 노상에서 피해자는 OO 경찰서 OO지구대 소속 박OO과 유OO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였다. 당시 박OO은 검문업무, 유OO은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박OO에 의해 불법체류를 이유로 같은 날 07:00 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2) 피진정인 박OO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속, 계급 등을 고지할 때 신분증을

제4장 외국인 관련

제시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박OO은 피해자에게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장OO가 2007. 7. 3.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은 서류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이다.

2)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두 곳,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의 각기 한 곳, 모두 세 곳에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지문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불심검문의 요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심검문을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불심검문의 대상을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의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에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한 외국인 불심검문은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의한 외국인 불심검문이 그 요건에 부합한 것이었는지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건에서 피진정인 박OO은 피해자를 정지시켜 검문을 하는 도중에야 외국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진정인 박OO이 자신을 불러서 다가갔더니 자신을 본 다른 경찰관이 ‘외국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피해자를 불심검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불심검문이 행해졌던 지역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피진정인은 그 지역이 시민에 대한 일상적인 불심검문이 요구되는 범죄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불심검문하고자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일반적 의심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신분증 제시의무 위반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위 1항에 의한 불심검문 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박OO은 피해자를 불심검문할 때 자신의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힌 후 범죄예방을 위한 검문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지만 자신이 정복을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경찰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서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할 경우에 경찰관의 신분증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신분증 제시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편인 한편, 피검문자에게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추후에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것이며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문 전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일반적인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노4873) 등을 기초로 ‘정복근무중인 경찰관과 전·의경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권고(2004. 6. 9. 02진인, 556, 565, 03진인5251, 6567 병합)한 바 있다.

3) 임의동행 거부권 불고지에 관하여

피진정인 박OO은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시 피해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형사범이 아니어서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제4장 외국인 관련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 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뿐만 아니라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2006. 7. 6. 선고 2005도6810) 한 바 있다.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임의동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처벌 보다는 강제 출국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출국을 위해 보호조치 되어 사실상 구금과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경찰관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임의동행 할 때는 임의동행 거부권도 고지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4) 소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력의 행사는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

성이 큰 영역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므로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 됨에도 피진정인의 불심검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서명 및 지문 날인할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류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에는 피해자의 지문날인은 없고 서명만이 되어 있다. 또한 이 서명을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강요에 의해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은 피진정인 박OO이 피해자를 불심검문하면서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은 피진정인 장OO가 피해자에게 지문날인 및 서명을 강요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5 2008. 1. 28.자 07진인4510 결정 [과도한 강제퇴거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00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이 00외국인보호소에 전달한 서신의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고자 하는 진정인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며 특히 2007. 11. 7.자 서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팩스번호까지 명시되어 있어 위 서신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설령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 내용을 난민신청과 관련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수긍하지 않았다면 피진정인은 마땅히 위 서신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켜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시설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진정서 송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00외국인보호소장

2. 000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00외국인보호소에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보호되어있는 자로서, 개인소지품이 든 가방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2007. 11. 13. 9:30 경 진정인을 강제적으로 퇴거시

키려 하였고 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OO외국인보호소 직원 십 여명은 진정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지로 수갑을 채웠으며 강제로 바지를 갈아입히는 등 강제력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하여 2007. 11. 5.과 7. OO외국인보호소 소속 직원인 OOO에게 작성한 진정서를 주고 팩스로 위원회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OOO는 이를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위 진정접수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

가) 본인의 가방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며 방세가 밀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이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OOO대사관 직원이 가방을 찾기 위하여 집에 방문하였으나 집주인은 여권만 돌려주고 가방은 돌려주지 않았다.

나) 2007. 11. 13. 오전 9:30 경 OOO 등 십여명의 직원이 본인의 방으로 와서 오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본인을 1층 검신실로 데려갔다. 검신실에 이르러 본인은 가방이 없으므로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직원들은 수갑을 채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강제적으로 본인을 퇴거시키려 하였다. 한 직원이 뒤쪽에서 본인을 바닥에 눕힌 후 신발을 신은 발로 본인의 목과 허리를 누르면서 여러 명이 뒤쪽으로 수갑을 채웠다. 그 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본인을 눕힌 상태에서 보호복 바지를 벗기고 본인의 사복바지를 억지로 대충 입혔다.

2) 피진정인 OO외국인보호소장

가) 2007. 8. 21. 진정인이 입소하였을 당시 진정인에게 여권소지 여부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진정인은 OOO 대사관 직원이 여권, 가방, 출국비용을 가져오기로 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OOO대사관에서는 3개월 이후인 같은해 11. 9. 진정인의 여권만을 찾아 송부하여 주었다. 그 기간 동안 보호소측에서는 진정인의 여권과 가방을 직접 찾아 주고자 그 소재지만

제4장 외국인 관련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대사관 직원이 가져오기로 하였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고의로 강제퇴거 집행을 지연시켰다.

나) 또한 2007. 11. 12. 진정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출국 경비 소요액인 102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고 진정인에게 이 사실을 안내, 설득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출국할 수 없다고만 답하였다.

다) 2007. 11. 13.자로 결국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하게 되었고 사전에 직원이 강제퇴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행에 협조할 것을 고지하였다. 직원 중 000가 수갑을 채우기 이전에 3회 사전경고를 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아 체포술을 이용하여 직원 4명가량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수갑을 채웠으며 보호복 바지를 사복 바지로 갈아입혔다. 당시 수갑을 찬 상태로 진정인이 반항하며 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목에 피부가 약간 벗겨진 것은 인정하나 그 밖의 폭행 등의 인권침해적인 행위는 없었다.

라) 진정인의 요청으로 2007. 11. 22. 경기도 00시 000병원에서 외부진료를 실시하였으나 담당의사의 특이소견은 없었다.

3) 참고인 000(000대사관 직원)

참고인은 진정인의 집주인이 진정인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권은 000 정부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2007. 10.경 집주인을 만나 여권을 돌려받은 바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000

진정인이 제출한 2007. 11. 5. 및 같은달 7.일자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진정서 내용에 인권침해의 내용이 없고 난민 신청관련 내용이 있어 난민 담당자인 피진정인이 난민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일 뿐 인권침해 진정 자체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이 사실을 진정인에게 오해 없도록 설명하였으나 언어 소통이 완벽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3. 관련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 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구(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戒護)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24]

제4장 외국인 관련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2. 외국인보호규칙 (2005. 9. 23. 법무부령 580호)

제42조 (강제력의 행사)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계구의 사용) ①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계구는 소장의 명령 없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구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각각 사용한다.

③계구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펴 고, 안면보호고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④소장은 제2항에 따라 계구를 사용한 후 그 요건이 종료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구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2001. 2. 27. 단기상용 사증을 받고 입국하였으며 2003. 1. 1. 부터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2007. 8. 17. 진정인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양주경찰서에 체포되었으며 체류기간 초과 사실이 확인되어 000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도되었고, 2007. 8. 21. 00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하였다.

2) 피진정인은 여권과 가방의 회수를 위하여 진정인에게 거주하는 집의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대사관 직원이 여권과 가방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하였고 대사관 직원은 여권만을 회수하여 2007. 11. 9. 00외국인보호소에 전달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가방을 돌려줄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으나 진정인이 입소한 이후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집주인은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같은달 12. 출국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할 것임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3) 2007. 11. 13. 오전 9시경 00외국인보호소 직원 000, 000 등은 진정인에게 당일 강제퇴거 집행 예정임을 알리고 1층 검신실로 진정인을 데려와 입고 있던 보호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강제퇴거 집행을 거부하고 현재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가방이 없으면 출국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진정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를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 000 등은 진정인을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이 입고 있던 보호복 바지를 사복 바지로 갈아 입혔다. 이에 진정인은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계속 저항하였고 이러한 강제력 행사와 저항 과정에서 채워진 수갑으로 인해 진정인은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 소란이 계속되자 00외국인보호소 측은 진정인의 강제퇴거 집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2007. 11. 5.과 같은달 7.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내용의 서신을 00외국인보호소 000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달 5.자 서신 하단에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같은달 7.자 서신에는 상단 수신

제4장 외국인 관련

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지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팩스번호를 적시하였다.

진정인의 같은달 5.자 및 같은달 7.자 서신은 '진정인은 본국에 적들이 많아 돌아갈 경우 위험에 빠지며 한국에서 나쁜 사람들에 의해 돈을 잃게 되었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으며 피보호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피보호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통지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청취하여야 할 것이며, 거부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연기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라 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인은 개인소지품이 든 가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가방의 회수를 위하여 진정이 거주하던 집의 소재지를 물어보았으나 진정인이 알려주지 않는 등 고의로 강제퇴거의 집행을 연기하려고 하는 혐의가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가방을 돌려줄 것을 설득하였던 점, 집주인으로부터 개인소지품이 든 가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밀린 집세 때문이라 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는 진정인과 집주인 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인간 문제로 피진정인이 이에 간여하기 어려운 점, 집주인이 가방을 진정인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돌려주지 않아 가방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둔 후에 최종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것을 결정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강제퇴거 집행과정에서 OO외국인보호소 측의 진정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07. 11. 13. 9:00 경 진정인에게 강제퇴거를 집행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이 강제퇴거 집행을 거부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반항하자 집행을 위하여 진정인을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고 보호복 바지를 사복바지로 갈아입혔다는 점,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난 것은 진정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반항하여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 강제퇴거 집행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보호실에 다시 들어갈 때에는 수갑을 해제하였던 점,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점, 외부병원에서의 진료 결과 담당 의사의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 결정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강제퇴거 집행 시에 행한 강제력 행사는 진정인이 반항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직무 수행상 불가피 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OO외국인보호소에 전달한 서신의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고자 하는 진정인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며 특히 2007. 11. 7자 서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팩스번호까지 명시되어 있어 위 서신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설령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 내용을 난민신청과 관련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수궁하지 않았다면 피진정인은 마땅히 위 서신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켜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시설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진정서 송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다.

6.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4장 외국인 관련

나.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6 2008. 3. 28자 06진인1181 결정 [경찰의 미등록외국인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미등록외국인 강제연행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체포구속과는 달리 피의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게 테러혐의나 불법체류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음을 인정됨.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했음에도 피진정인이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이 실현된 것이므로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진 정 인] 000

[피 해 자] 00 00

[피진정인] 000(00지방경찰청)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정인 000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부분을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마항 부분 중 경찰의 출입국관리사범 사건 인계 의무의 부당성에 대한 것은 각하하고, 보호상태 피해자 조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것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06. 5. 21.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000 사망사건 관련 집회에 참여한 뒤

제4장 외국인 관련

00시 00동 소재 000하우스에서 동료 2명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진정인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임의동행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연행한다는 이유로 식당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가택 침입을 하였다.

다. 00파출소에서 경기경찰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웠다.

라. 피진정인은 테러범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목적과 활동, 000 사망사건 규탄집회 참석 경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대하여 주로 조사를 하였던 바,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자주적 공동체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찰한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경찰이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진정인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어떤 혐의도 없이 실질적으로 강제 구금한 상태에서 손쉽게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인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

1) 2006. 5. 21. 00에서 있었던 친구 000 관련 집회가 끝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레스토랑인 000하우스에서 20:00경 잡혔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3명이 다가와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들 중에 한명이 처음에는 한국말로 같이 가자고 했다가 다시 인도네시아어로 00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그래서 동의하였고, 여기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왜 나만 잡느냐고 물었지만 다른 반항이나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당시 식당에서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서 차에다 태웠다. 식당에서 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어 구사 가능한 경찰관이 있었으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하였다.

3) OO 치안센터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받았으며 본인이 사진 속의 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수갑을 채웠다. 테러에 대한 얘기와 수갑을 채운 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으며 특별히 조사한 내용이 없이 수갑을 채운 상태로 OO지방경찰청으로 갔다.

4) 경기경찰서에서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았는데 테러에 관한 조사는 전혀 받지 않았고 테러용의자 사진과 비슷하다는 얘기만 들었다. 삼십분 내지 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에 OO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었다.

5) OO외국인보호소에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을 때 알카에다와의 관련, 말레이시아에서의 불법체류 배경, 친구사망 관련 시위 참여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나. OOO(OO도지방경찰청)

1) 피해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걸어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인근 원선치안센터로 동행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5명인데 비하여, 식당내부에 인도네시아인 20여명이 있었고, 대상자의 테이블에도 일행 3명이 있어 대상자가 거부의를 표시했으면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OO치안센터에서 피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OO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체포사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였다.

3) 식당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 가택침입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동행 장소는 다중이용 장소인 음식점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4) OO치안센터 내에서 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검거할 당시 피해자가 불법체류사실과 사진 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인정한 상태였고, 치안센터 내, 외부에 이주노동자단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항의 하는 등 혼잡스런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5) 테러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도네시아 내 행적, 한국입국경위, 국내에서의 행적, 사진에 찍힌 경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자 측의 OOO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고 조서에 간인까지 했으며 조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제4장 외국인 관련

다. 000(0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1) 2006. 5. 21. 피해자를 따라 식당 000하우스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000을 따라 피해자에게 경찰관 신분을 고지하고 인도네시아어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2) 피해자는 이름을 말하고 '불법체류자로 신분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신분확인과 기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소란스러우니 같이 가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물어서 동행장소와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였다.

3) 00경찰서 00치안센터에서 불법체류자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의 사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였고 00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는 중에 다시 한번 체포 사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를 설명하였다.

3. 관련규정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2.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 가. OO지방경찰청 OO과는 2006. 4. 25. 경찰청 OO기획과로부터 성명미상 인도네시아인 32세 및 35세 남성 2명의 사진을 제공받고 이들의 소재파악을 위한 탐문수사를 위한 수사전담반 편성과 수사계획 수립 등을 지시받았다.
- 나. OO지방경찰청 OO과 OO계는 2006. 5. 17. 경찰청 OO기획과 국제보안계로부터 위 인도네시아인 2명이 2006. 5. 21. 15:00경 경기도 OO역 부근에 나타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받았다.
- 다. OO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OOO, OO경찰서 소속 경장 OOO(인도네시아어 특채자) 등은 2006. 5. 21. 19:30경 OO동 소재 식당 OOO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OO치안센터로 동행시켰다.
- 라. 피해자는 2006. 5. 21. 20:30 경 위 OO치안센터에서 OOO 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과정에서 수갑이 사용되었다.
- 마. 피해자는 2006. 5. 21. 22:50 경 법무부 OO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 바. 2006. 5. 22. OO외국인보호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테러혐의 관련 조사과정에 법무법인 OO소속 변호사 OOO가 참여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

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한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다.

체포·구속과는 달리 피의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게 테러혐의나 불법체류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했음에도 피진정인이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이 실현된 것이므로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진정 외 OO경찰서 경찰관 000이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어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당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가택침입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식당주인 000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밝힐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은 호송 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

제4장 외국인 관련

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할 것과 예외로 구류선고를 받은 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가 예상되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호송할 경우의 수갑 사용은 필수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본 건에서 피진정인이 당시 OO치안센터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주하려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갑 채용 시간이 OO파출소에서 OO경찰청으로 이동하는 한 시간 이내였다는 점에서 이를 인권침해에 이르는 과도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주노동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목적에 의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수사로 관련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피진정인이 2006. 4. 25. 경찰청으로부터 테러관련자 소재파악을 지시받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국내 ‘인도네시아인들의 모임’ 관련 활동 진술확보가 테러혐의 조사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경찰이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부당성 문제는 출입국관리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보호된 상태의 피해자 신병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모든 권리를 박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지정했던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강제수사에 따른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은 피진정인 OOO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 나.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마항의 외국인보호소 보호상태의 피해자 조사에 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진정요지 마항의 경찰의 출입국관리사범 사건에 대한 인계의무는 정책적 사안으로 조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7 2008. 4. 28자 08진인28결정 [외국인들의 강제퇴거에 의한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 종료 시까지 또는 위원회가 출국을 승인한 경우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팩스로 송달하고 곧바로 진정인들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 권력행정작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나 구속 등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 '보호' 업무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단속하거나 연행, 인치, 수용하는 등의 행정 작용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방 절차는 인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근접한 절차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구급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진정이 제기되었음에도 진정인을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 조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법무부의 행위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행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므로 향후 위원회 조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 종료 시까지 또는 위원회가 출국을 승인한 경우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55조, 제60조

【진 정 인】 1. ○○○

2. ○○○

3.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미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접견교통권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할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라'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우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인 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위원회가 강제출국을 승인할 때까지 강제출국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단속반원들은 2007. 11. 27. 08:00부터 09:30 사이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주노동자조합(이하 '이주노조'라 한다)의 2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진정인들을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 연행하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하였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진정인들은 같은 달 2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진정인들의 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후 같은 해 12. 12. 18: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후 2007. 12. 13. 03:00경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05: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이 수차체에 걸쳐 ○외국인보호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퇴거명령서 집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오늘 중으로는 집행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날 06:20경 진정인들의 또 다른 대리인인 변호사가 진정인들과의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면서 퇴거명령

제4장 외국인 관련

서 집행 여부를 묻자 역시 “오늘 중으로는 집행 계획이 없다.”는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30경 인천공항에 도착, 대기 후 각각 같은 날 08:30경, 09:30경 대한항공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강제출국시킴으로써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각 심사결정서를 2007. 12. 12. 18:00경 진정인의 대리인에게 전송하고, 그 다음날 새벽 진정인들을 강제출국조치 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 이후 진정인이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사법적 권리구제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8:00경부터 13. 06:20경까지 진정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인의 사후 절차에 대한 수차례 질문에 “내부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답변할 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오늘 중으로 퇴거명령 집행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후 진정인들을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진정인의 사법적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다. 이 사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은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정인들을 표적단속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진정인들을 강제 추방 함으로 인해 진정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관련

가) 진정인들은 모두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보호명령도 적법하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를 갖는 것이므로, 진정인들에 대한 출국준비가 마쳐졌다면 신속한 퇴거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고 없는 강제출국으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 관련

가)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후 약 보름간의 시일이 있었으므로, 변호인과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또한 진정인들의 범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진정인들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이 공정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송환에 필요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집행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진정인들은 입국 이후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왔고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퇴거집행에 저항을 시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변호인에게 퇴거집행계획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해 정당한 법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방해 관련

제4장 외국인 관련

피해자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여권, 항공권 비용 등이 마련되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출국요건이 충족되어서 조속히 강제퇴거를 시켰다.

3. 관계법령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제59조 (심사후의 절차)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60조 (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인 답변자료 및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이 신청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진정인들의 대리인에게 2007. 12. 12. 18:00경 전송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03:00경 진정인들을 강제출국조치 하였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였고,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8: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 및 위원회 조사관이 사후 절차에 대해서 물었으나, 내부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답변할 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 측에서 강제퇴거가 집행된 이후인 같은 달 13. 05:00경 및 06:20경에 ○외국인보호소 당직실로 전화를 하여 강제퇴거 집행여부를 문의 하였음에도 ‘오늘 중으로 퇴거명령 집

제4장 외국인 관련

행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위원회 조사 방해 관련

위원회가 위 사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2007. 12. 13.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위원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출국 시켰다.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해 1차 접견 조사는 마친 상태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킨 이후인 2007. 12. 18. 에서야 우리위원회에 진정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대조,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 기본적인 조사절차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5. 판 단

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서의 송달 이후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한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팩스로 송달하고 곧바로 진정인들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함으로써 진정인들의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한 후 보호 처분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행정상의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진정인들은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정인들과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또한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든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신이 구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로 보아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보호 내지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면 접견교통권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집행절차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 이후에도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규정과 그에 따른 집행이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위원회는 2005. 5. 23. 04진인139, 04진기131 병합사건에 대한 결정 및 2007. 12. 17.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을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 권력행정작용이지만 보호가 단기간이 아니라 10일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는 24시간임) 더 나아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시설이 수용시설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보호시설 내에서 피보호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체포나 구속 등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 ‘보호’ 업무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단속하거나 연행, 인치, 수용하는 등의 행정 작용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또한 강제추방 절차는 인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근접한 절차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제9조 제4항에서와 같이 구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절차를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침해 관련

1)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동법의 근거에 의거 2007. 11. 27. “07-진인-4691 표적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어 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해 한 차례 진술을 받을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7. 12. 13. 강제출국 시킨 이후 2007. 12. 18.에서야 우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대조,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 기본적인 조사절차의 진행이 불가하게 되어 조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2)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여권, 항공권 비용 등이 마련되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출국요건이 충족되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의거 피해자, 피진정인들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의 행위가 법적 절차에 의하여 행한 조치임에도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므로 향후 위원회 조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 종료 시까지 또는 위원회가 출국을 승인 한 경우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6. 결 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권고할 필요가 있고, 진정요지 ‘라’항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견 표명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8 2008. 6. 25자 07진인3089 결정 [탈북자 지위 불인정 등에 의한 인권침해]

보호외국인의 국적이 판정되기 전까지 보호일시해제 관련 서류에 국적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사례

【결정 요지】

보호일시해제 연장신청 시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국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보호일시해제라는 행정절차 상 형식적으로나마 국적 기재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잠재적 무국적 상태이며, 본인 스스로가 중국 국적이 아니라 탈북자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충분한 자기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9조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1. 국가정보원장

2. 법무부장관
3. ○○출입국관리사무소장
4. ○○외국인보호소장

【주 문】 1.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외국인의 국적이 판정되기 전까지 보호일시해제 관련 서류에 국적 기재를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가’항은 각하하고, ‘나’,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김○○이 북한이탈주민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였다.

제4장 외국인 관련

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은 진정인의 국적 판정에 관여하였고, 2004. 10. 15.부터 2005. 3. 2. 까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탈북자로 인정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서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요구한 것이고, 피해자가 북한탈북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사진을 준비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법무부는 피해자의 국적확인을 위해 총3회에 걸쳐 국적확인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으로 국적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연장신청 서류에 국적을 중국이라고 쓰도록 강요하였다.

라. 피진정인 ○○외국인보호소는 피해자를 300만원에 보호일시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100만원에 보호일시해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이라고 거짓으로 고지하고 이를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정보원장

가)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신문 관련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1945년경 북한으로 이주한 한족출신 김○○과 북한인 어머니 이○○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1975. 9. 함경북도 경성군 외사과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하였다. 1992. 5월경 중국에 거주하는 누나 김○○(1961년 생, 중국 국적) 초청으로 중국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방중하여 1998. 8. 길림성 안도현 화교사무관공실에서 화교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후 2004. 6.까지 중국에서 취업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했다고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관계기관 합동신문 이전인 2004. 10. 31. 저녁 합동신문소 같은 방 수용 탈북자들에게도 자신이 재북화교 신분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나) 본원은 유관기관 합동신문 시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대동하고 국내 입국시 탈북자 인정가능 등의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합동신문 종료 후인 2004. 11. 30. 피해자는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가 화교신분으로 강제출국 대상임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2)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2005. 2. 16. 외교통상부에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피해자의 국적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2005. 5. 16.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피해자가 중국을 합법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신원확인이 곤란하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또한 2005. 7. 5. 주한 중국대사관에 피해자의 신원확인 및 여권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7. 2. 12. 주한 중국대사관에 재차 신원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피해자는 2004. 10. 15. 김○○ 명의의 여행증명서를 행사하여 몽골을 경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입국 당시 관계기관 합동신문 결과 북한거주 중국인 김○○로 판명되었다. 2005. 3. 16. 및 2005. 3. 29. 두 차례에 걸쳐 주한 중국대사관 2명의 영사가 피해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국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적기재 강요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보호일시해제 연장신청서 관련 서류에 중국 국적을 기재하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

4) ○○외국인보호소장

진정인이 문제 삼고 있는 각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의 요건으로 필요했던 보증금을 보증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면서 요구했던 문서로서, 보증인이 처음에 300만원인 줄 알고 잘못 기재했는데, 실제 대여해 주었던 100만원으로 문구를 수정해야야 옳았으나 보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지가 딱해 여차피 돌려받을 생각 없이 지원했던 돈이라서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제4장 외국인 관련

것이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등) 제1항 제4호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 제1호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1항 제2호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인 답변자료 등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4. 10. 15. 본인이 아닌 김○○ 명의의 여행증명서를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몽골을 경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입국 당시 관계기관 합동신문 결과 북한거주 중국인 “김○○”로 판명되어 2005. 3. 4. 국가정보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 인계된 자이다.

나. 법무부는 2005. 2. 16. 피해자의 국적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신원확인 요청공문을 외교통상부에 발송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 3. 7. 피해자에 대해 중국 단동행 동방명주호 편으로 국비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으나, 중국 단동행 변방검사소는 피해자를 신원불명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이에 2005. 3. 16. 및 3. 29. 주한 중국대사관은 피해자의 국적 확인을 위한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고, 외교통상부는 2005. 5. 16.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공식 확인이 어렵다는 중국정부의 답변을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2005. 7. 5. 법무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피해자의 신원확인 및 여권발급 요청을 하였으며, 2007. 2. 12. 주한 중국대사관에 재차 신원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7. 2. 15. 보호일시해제 되었는데, 그 요건인 보증금을 보증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납부하였다. 피해자가 보증금 300만원에 대한 각서를 쓸 당시 ○○외국인보호소 직원, 보증인, 보증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보증인은 처음에는 3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서를 쓰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가서 생활을 단정히 잘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300만원을 갚을 것이다”라고 피해자가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외국인보호소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보증금으로 보호일시해제가 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보증인이 100만원을 납부하고도 300만원으로 기재된 각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만 보증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보호일시해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

였다.

라.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보호일시해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2007. 5. 14.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를 방문하였다. 당시 연장결정서류 양식 상단에 들어갈 내용은 사무소에서 전산으로 미리 해 놓고, 하단 부분은 신청인이 사무소 측에서 작성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서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호소 측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국적이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직후 진정인은 “피해자가 탈북자라고 생각하고 보호받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중국 국적이라고 자필로 쓰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느냐”고 담당직원에게 항의하였다.

5.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할 경우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정요지 ‘가’항인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이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국적을 판단하였다는 주장, 2004. 11. 20. 경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서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 및 2006. 4. 경 피해자가 북한탈북자임을 입증할 사진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각하한다.

피진정인 법무부가 피해자의 국적확인을 안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요지 ‘나’항 관련해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국적확인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피진정인 ○○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300만원이라고 거짓으로 고지하고 이를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 진정요지 ‘라’항에 대해서는, 당시 각서 쓰는 현장에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면담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적으라고 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 또한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는 말을 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각서는 사인간에 주고 받은 것이므로, 설사 그 내용이 보증인의 기망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

보호일시해제 연장신청 시, 서류에 국적을 중국이라고 쓰도록 강요하였다는 진정요지 '다'항에 관해 살펴보면,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국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확인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다시 보호수용 조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시 중국 국적이라고 기재된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호일시해제 여부 결정에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보호일시해제라는 행정절차 상 형식적으로나마 국적 기재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 신원 확인이 안된 잠재적 무국적 상태이며, 본인 스스로가 중국 국적이 아니라 탈북자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충분한 자기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할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라'항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한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9 2008. 7. 28자 07진인5087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외국인보호소 직원에 의한 보호 외국인 폭행에 대하여 관련자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해당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이 사건 당시 보호실로 돌아와서 있었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외상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

【참조조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07. ○. ○. 10:00경 ○○외국인보호소 내에 있는 특별계호실 통로로 진정인을 데려 가 약 20~30분 동안 무릎, 발등으로 어깨, 허리와 명치 근처를 폭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7. ○. ○. 10:00경 보호소 내 31호실에서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있는 진정인

에게 보호복 착용을 지시하자 진정한이 반발을 하여 특별계호실로 데리고 갔다. 약 20~30분간 '그러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타일렀을 뿐 폭행은 없었다.

3. 관련규정

1)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격리 보호)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자해 또는 동료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한 때
4. 자살·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단식하는 때
5.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때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외국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특별계호) ①경비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 각 호에 대하여 격리보호와 함께 특별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식 제44호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호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 관련

- ②소장은 제1항의 특별계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할 수 있다.
- ③경비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해 줄 수 있다.
- ④경비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할 때 언행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소장에게 보고하며, 그 내용을 경비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특별계호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그 특별계호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⑦특별계호 보호외국인에게는 그 특별계호 기간 중 면회, 운동 등을 금지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1999. ○. ○. D-3-2 산업연수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07. ○. ○. 체류기간 도과로 단속되어 같은 달 23일부터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한 보호외국인의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외국인보호소 경비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2007. ○. ○. 10:00경 피진정인은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세탁물을 널고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알았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존댓말을 가르쳐 주는 취지로 “알았어요.”라고 말한 후 보호복을 착용한 진정인을 불러 특별계호실로 데려갔다. 약 20분이 경과한 후 진정인은 보호실로 다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아프다. 반장이 때렸다”고 하면서 계속 울었으며, 같은 날 오전 11:00에서 12:00사이에 ○○외국인노동자의집 활동가 ○○○에게 자신이 구타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 진정인은 보호실에 온 뒤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의 의무실 동행 요구를 거절하였고, 2007. ○. ○. 15:00경 경비과 계장 ○○○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가서 의무실장에게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했으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라. 2007. ○. ○. 09:24경 진정인은 연락을 받고 면회를 온 ○○○외 2인과 면담하였는데, ○○○은 면담시 진정인의 신체 부위에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평소와 달리 매우 초췌한 표정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 진정인과 같이 보호수용되어 있던 중국인 ○○○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사건 이후 3일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바. 특별계호실은 독거실 3개와 통로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독거실 내로 들어가지 않고 통로에 있었으며 그곳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진정 사건 발생일을 포함한 2007. ○.부터 2008. ○.까지 감시카메라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관련 상황의 녹화기록은 전무하다.

5.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진정인이 특별계호실 복도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요지와 같은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바,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특별계호실로 불려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정인은 일관되게 “진정인이 ‘알았어’라고 반말을 하자 피진정인이 ‘알았어요’라고 말대꾸를 해 준 후 보호복을 입은 진정인을 불러 특별계호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같이 보호수용되어 있던 ○○○의 진술 또한 일치하고 있다. 반면,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1차 진술과정에서는 “진정인이 ‘아이 씨발’ 등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데리고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2차 진술과정에서는 “진정인이 ‘아 괜찮다 왜 그러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그 외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진정인과 조용히 대화할 필요가 있어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진정인이 특별계호실로 불려가게 된 것은 당시 진정인이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지적하였으나 진정인이 반말을 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진정인이 특별계호실로 불려갈 정도로 소란을 피우

거나 난동을 부린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 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으나, 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보면, 진정인은 자신이 당한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1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특별계호실로 데리고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특별계호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땅바닥에 뒹굴며 소란을 피워서 이를 만류하다가 20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여기 있는 반장들 대부분이 형이야, ○○○ 잘하자’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보호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이 뭐라고 했는 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를 느껴 계호실로 데려갔고, 20분간 진정인에게 조용히 타일렀는데 당시 진정인은 통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피진정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처음에는 반발하였으나 나중에는 수긍하여 서로 잘해 보자고 악수하고 등을 두들기면서 돌아왔다”고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더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특별계호실로 데리고 간 것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동시행세칙에 의거 도주·난동·물품파손·자해·담당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의 경우에 소장에게 사전 보고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격리 및 특별계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였다면 보호실에서도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 점이 곤란하였다면 계호실 사용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적절한 장소를 이용했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된 피진정인의 진술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불법체류자’로 생활하여 오면서 사기피해를 입고 4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부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처지에서 단속, 체포되었는데 ○○외국인보호소의 주선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나마 수령하게 되었으며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여서 달리 보호소 직원인 피진정인을 포함할 이유가 없었고, 피진정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진정인에게 매우 인간적으로 대해주어 왔던 피진정인에 대해서 사소한 반발을 이유로 진정인이 앙심을 품고 갑자기 엄살을 부리면서 외부인이나 우리 위원회에 긴급하게 구제를 요청할 마땅한 이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진정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비록 진정인에게 외상은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나, 진정인이 사건 당시 보호실로 돌아와서 오후 3시까지 계속 아프다고 하였던 점, 진정인이 점심을 먹지 못하였고 피진정인이 의무실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점, 당일 오후 3시가 되어서 ○○○ 계장이 진정인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의무실로 데리고 간 점, 다음 날 오전 ○○○과 면담할 당시 진정인이 평소와 달리 초췌하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던 점, 진정인이 3일간 보호실에서 계속 아프다고 누워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외상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특별계호실 통로로 데려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10 2008. 10. 27자 08진인3152 결정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미 준수 및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외국인을 단속, 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법집행에 해당하므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자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외국인을 단속, 연행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 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직접적 강제를 수반하는 조사(진입, 수사 및 단속)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한 법집행이며 출입국공무원이 단속 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 및 주거를 무단 진입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단속·연행하는 과정에서 왼쪽 눈 부위를 가격 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피진정인 단속과정에서 단속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고 추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알리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81조

[진 정 인] 존 000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 2. 00출입국관리사무소 000
- 3. 00출입국관리사무소 000
- 4. 00출입국관리사무소 000

[주 문] 1. 진용요지 가항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이 단속 시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 및 주거를 무단 진입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 00출입국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 000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000,000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08. 6. 27.부터 동년 8. 27.까지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로 2008. 8. 19.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어 2008. 8. 20. 00출입국 보호실에 보호되었다. 단속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사업장 진입 시 고용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나. 진정인은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상황을 피진정인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도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주먹으로 진정인의 눈을 가격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 또한 단속당시 긴급보호서를 즉시 제시하지 않고 단속 다음날 피진정인 사무실에서 긴급보호서를 보여준 후 서명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적법절차 준수 여부

단속 시 업체 고용주에게 피진정인 2(00팀장, 전00)는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고, 신병 확보된 불법체류자에게도 신분증과 긴급보호명령서 제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고, 보호 및 사후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하였다. 하지만 긴급보호서는 단속당시 차량에서 발부하지 않고 단속 종료 후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설명을 한 후 서명을 받았다.

2) 단속과정에서 폭행 여부

진정인은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중 피진정인 3(000)에게 적발되었고 기숙사에서 약 30~40미터 떨어진 수풀(역새밭)까지 도주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3(000)은 호루라기를 불어 다른 단속반원인 피진정인2(000), 피진정인4(000)

제4장 외국인 관련

를 붙렸고, 진정인을 신병확보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면서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4(000)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단속 이후 진정인을 OO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입실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입실을 거부하며 고의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쳤고, 이후 보호외국인 물품을 보관하는 앵글 기둥에 양손을 교차하여 깍지를 끼고 계속 입실을 거부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진정인과 동일 기숙사방에 있던 자로서 2008. 8. 9. 16:00 경 단속반원들이 기숙사에 들어오자 본인도 놀라 도망을 가서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본인도 단속되어 호송 차량 안에 있었을 때 진정인이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진정인의 한쪽 눈이 빨강게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2(심OO, OO출입국사무소 OO과)

OO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외국인 입소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08. 8. 20. 진정인이 입소할 당시 눈이 충혈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3(OOO, OO산업 대표)

진정인이 일하였던 사업장 고용주로, 2008. 8. 19. OO출입국 단속반원들이 갑자기 본인의 공장과 기숙사에 들어가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주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공장과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인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라.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인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 관련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를 긴급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바.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청취,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의사소견서(OO출입국사무소, OO연합안파), 참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OO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위하여 피진정인 2(OOO)를 단속 책임자로 하여 총 13명이 2008. 8. 19. 16:00~16:30까지 전남 OO군 OO면 OO리에 있는 OO산업 부근에서 단속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 2(OOO)는 선진산업 공장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병 확보된 미등록외국인에게 신분증과 긴급보호명령서 제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주 확인결과 단속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신분증 제시 및 단속사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피진정인들이 사업장과 기숙사를 동시에 단속한 사실이 있고, 단속현장 및 단속 차량 안에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긴급보호서는 발부 하지 않고, 추후 출입국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설명 후 긴급보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2(000)등 단속반원 3명은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위하여 기숙사로 들어갔고, 이를 지켜 본 진정인과 참고인 1이 기숙사 밖으로 도망갔다. 이에 진정인은 기숙사에서 30~40m 떨어진 수풀(억새밭)까지 도주하다 피진정인 3(000)이 진정인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러 다른 피진정인들을 불렀고, 진정인이 계속 도주하자 피진정인3(000)은 진정인 앞다리를 들어서 넘어뜨렸다. 피진정인 3(000)은 호루라기 신호를 듣고 온 피진정인2(000), 피진정인4(000)와 함께 억새밭 안에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진정인 4(000)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쳤다.

다. 보호수용 이후 환자의 상태

2008. 8. 20. OO출입국사무소 입소 이후, 8. 21. 및 8. 27.자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눈을 감았을 경우 통증을 느끼지 않으나 눈을 떴을 경우 통증을 느껴서 습관적으로 눈을 계속 감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담당 조사가 9. 4. OO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왼쪽 눈이 부어 있었고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외국인을 단속, 연행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직접적 강제를 수반하는 조사(진입, 수사 및 단속)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한 법 집행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보호침해 및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제4장 외국인 관련

가치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있던 피진정인들은 고용주 000의 동의 없이 진정인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출입국공무원이 단속 시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 및 주거를 무단 진입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들은 단속당시 진정인에 대한 폭행이 없었고, 00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수감되기 전까지 진정인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 진술과 진단서, 진정인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단속·연행하는 과정에서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000)는 단속 시 현장책임자로서 진정인을 단속하기 전 또는 그 직후에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진정인에게 단속이유를 알려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점을 비추어, 단속과정에서 단속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고 추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알리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속책임자인 피진정인 2(000)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3(000), 피진정인 4(000)에 대하여는 각각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6.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출입국공무원이 단속 시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 및 주거에 무단 진입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긴급보호서를 조사과정에서 제시한점과, 진정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자체 인권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8. 10.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II 2008.10.27자 07진인4701 결정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방글라데시 출신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단속이 있었던바 국가정보원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관계자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긴급호호 대상으로 오인하여 단속한 절차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신분증 제시, 긴급보호 사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단속과정에서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불법으로 체포 및 감금하는 등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더불어 국가정보원 소속 피진정인들도 진정인을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46조, 「제51조」 「국가정보원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00조의3 「형법」 제124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5.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 성명불상 2인(국가정보원 직원)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11. 21. 17:00경 방글라데시인 ○○, ○○○과 함께 ○○시 ○○동 소재 이슬람사원에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7~8명의 단속반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숨도 쉴 수 없게 입을 틀어막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하고 수갑을 채운 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속차량에 탑승시켰으며,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임을 밝혔고 단속 차량 내에서 한국인임을 확인하고도 1시간가량 후이나 풀어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 ○○○, ○○○, ○○○, ○○○

피진정인 ○○○ 등 5명은 국가정보원의 합동수사 요청으로 2007. 11. 21. '○○○○○○코리아'라는 단체의 수뇌부로 활동 중인 ○○ 등을 단속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 2명과 함께 ○○에서 단속을 실시하였고, 당시 피진정인 7명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의 예배장소인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잠복 중 숙소에서 ○○과 함께 나오는 진정인 등 2명을 발견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의 사전 조사에서 ○○은 경호원과 함께 다니고, 경호원이 흥기를 소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진정인 등 2명을 경호원으로 확신하고 뒤에서 4명이 미행(○○○○○ 2명, ○○○, ○○○)하고, 앞에서 3명(○○○, ○○○, ○○○)이 길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 함께 단속하게 된 것이다.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반항하였고 이에 허리춤을 잡자 바로 땅바닥에 누워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였으나 계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3명이 사지를 들어 일으켜 세운 후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차량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한국인이라고 하였으나 일단 차량탑승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였다. 차량 탑승 후 소속과 직책, 단속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에게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지만 한국인은 긴급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시 정식으로 입건하여 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단속 장소가 이슬람 사원 근처이므로 동료 외국인들의 동요가 우려되어 2km 지점에 있는 ○○역 공영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한국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위장결혼 및 실정법 위반 등을 확인하는데 1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같은 날 19:00경 이슬람사원 근처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긴급보호 등 출입국관리법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진정인의 단속 근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의거 임의동행 형식을 취한 것이다.

피진정인 ○○○은 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뒤쪽에서 테러용의자를 미행하는 것을 목격한 후 통화중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 차량에서 나가보니 이미 진

제4장 외국인 관련

정인 등은 단속된 상태였으며 그 중 외국인 한명을 인계받아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진정인 ○○○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테러혐의자와 그 경호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나가게 되었고, 단속 당시 차량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포함하여 3명 정도가 뒤에서 미행하던 중, 미행하던 단속반원이 진정인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니 놀라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당시 뒤에서 미행하던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도망가려고 하던 진정인 등을 직접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진정인 ○○○은 차량에 탑승하여 진정인 등 3명이 걸어가는 방향 앞쪽에 대기 중이었고 뒤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2명과 ○○○ 팀장이 미행하고 있었으며, 차량 대기 중에 뒤에서 미행하던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한 후 큰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테러용의자는 이미 단속된 상태였고, 한 명은 누워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2)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 2명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제1항에 명시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따라 진정인 외 방글라데시인 3명에 대한 위해첩보를 법무부에 지원하고 신원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포함 대상자들의 물리적인 체포행위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대상자 검거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진정인의 일시억류 등 법무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테러 첩보를 법무부에 통고하고, 단속 현장에서 대상자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

다. 참고인 진술(○○○, 진정인과 함께 단속된 자)

2007. 11. 21. 피진정인들이 본인을 단속하여 “가지마, 가지마, 나 안가, 불법아니에요. 나 신분증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피진정인이 “알았어. 알았어. 먼저 차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후 차로 밀어 넣었다. 당시 7~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진정인을 단속하면서 뒤에서 피진정인 1명이 입을, 2명이 손을, 또 1명이 목을 잡아 진정인이 넘어졌고,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차로 데려갔다.

차량 안에서는 단속사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어 보고는 위장 결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본인이 “가짜 결혼 아니다. 우리집 가자.”라고 말했으나, 이후 아무 설명 없이 ○○역으로 이동한 후 얼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고 기도원 근처에 하차시켰다.

3.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시행일 2005.9.25]]

제4장 외국인 관련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시행일 2005.9.25]]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불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2003.03.06.]]

제48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제4장 외국인 관련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3.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①국가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96·12·31, 99·1·2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 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4·1·5]

제11조 (직권남용의 금지) ①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1]

②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제63조·제127조·제129조 및 제130조)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본조 신설 94·1·5]

제16조 (사법경찰관)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87·12·4, 94·1·5, 99·1·21][전문개정 81·12·31]

제19조 (직권남용죄) 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와의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94·1·5]

4.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제4장 외국인 관련

[본조제목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5.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⑤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62·9·17, 81·12·31, 97·12·13]

7.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4조 (보호의 의뢰 등)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용의자를 긴급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4.18.][본조제목개정 2002.4.18.]

8.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05.8.26] [[시행일 2005.8.27]]

②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적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함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숙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긴급체포) ①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시행일 2005.8.27]]

②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제4장 외국인 관련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2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27조의 규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4년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한 자이고, 참고인 ○○○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합법체류중이다.

나. 피진정인 7명 중 ○○○ 등 5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피진정인1~5)이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2명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피진정인6)이다.

다. 피진정인들은 테러단체 수뇌부 활동 혐의가 있는 ○○ 등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꾸렸으며, 피진정인 7명은 2007. 11. 21. 17:00경 ○○ 원곡동 소재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체류자격 없는 체류를 이유로 ○○을 단속하고, 진정인과 참고인 ○○○을 ○○의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같이 단속한바 있다.

라. 당시 합동단속반원 피진정인 7명 중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포함한 4명은 ○○, 진정인, ○○○을 뒤에서 미행하고, 그 외 3명은 진정인 등이 걸어가 는 방향 앞에서 승합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 중이었으며, 진정인 등의 도주로의 앞과 뒤를 가로 막는 형식으로 단속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참고인 ○○○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역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전화로 위장결혼 및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같은 날 19:00경 귀가 조치하였다.

바. 피진정인 ○○○은 국가정보원의 합동수사 협조 공문은 없으며, ○○의 강제퇴거 집행에 대한 사후 보고는 있으나 진정인에 대한 자료는 일체 없으

며, 사진 및 비디오 촬영도 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국가정보원 소속 피진정인 성명불상 2명은 문서로 답변을 제출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테러범 단속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팀장 ○○○는 '경호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없었으며 이미 제출한 내용과 같이 단속과정의 물리적인 체포행위에는 일절 관여한바 없고, 이미 문서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추가 제출은 필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5. 판 단

가. 단속의 성격

국가정보원은 알카에다와 연관된 테러조직 자금책의 수뇌부 ○○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합동단속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체류자격 없는 체류자를 동법 제47조(조사)와 제51조(보호)에 의거 단속한 것으로 이는 미등록외국인을 긴급보호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경호원 2명과 항시 동행한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진정인과 참고인 ○○○을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테러협외자 ○○○과 함께 단속하였는데, 이는 경호원 또한 '불법체류자'일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미등록외국인 긴급보호의 일환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국 금지와 강제퇴거를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동법 제46조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호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동법 제47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 단속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하고(동법 제82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며(동법 제51조), 긴급보호하는 경우

제4장 외국인 관련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변호인의 조력권, 묵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1) 미란다 원칙고지 등 적법절차 위반

피진정인 ○○○, ○○○, ○○○, ○○○, ○○○의 주장을 종합하면,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단속 전 사법경찰관리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저항하여 단속반원 3명이 진정인의 사지를 들어 일단 차량에 탑승시킨 후 단속반원의 성명, 직책, 단속 배경설명을 하였으며, 긴급보호를 위한 미란다 원칙고지는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실정법 위반 등 추가조사 및 외국인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장소 이동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정인은 단속반원 3~4명이 뒤에서 진정인의 입을 막고 뒤로 손목을 잡아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다른 단속반원이 발목을 잡은 후 수갑이 채워지고 차량으로 끌려갔으며 신분증 제시 및 미란다 원칙 고지 등 단속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접 목격자인 ○○○ 또한 일차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과 ○○○는 단속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일단 진정인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총 5명의 단속반원이 현장에 있었으며 단속 대상자 3명 중 진정인 1인만 저항하는 상황에서 단속배경 등을 굳이 차량 안에서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차량 안에서 진정인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여 고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시점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4항에 의거 즉시 보호를 해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 ○○○, ○○○, ○○○, ○○○는 진정인을 긴급보호 대상으로 오인하여 단속한 절차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신분증 제시, 긴급보호 사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피진정인 ○○○, ○○○, ○○○, ○○○, ○○○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의거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

피진정인은 ○○○은 진정인 단속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의동행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실한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동행에 앞

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야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2006. 7. 6. 선고2005도6810 판결)으로 피진정인들도 진술한 것과 같이 당시 진정인의 저항이 있었고, 이는 명백히 동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임에도 진정인의 사지를 들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실정법 위반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 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 ○○○, ○○○, ○○○, ○○○가 진정인을 차량안에 1시간 동안 감금한 것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은 당시 경호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첩보가 있는 등 진정인이 테러용의자 경호를 하였다고 충분히 확신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에 의거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점, 진정인을 경호원이라고 확신하였더라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시점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긴급보호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오인체포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체포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 ○○○, ○○○, ○○○, ○○○는 미란다원칙 사전고지, 긴급보호 사유 설명 등을 하지 않은 채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고 진정인을 테러범의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 국가정보원 소속 피진정인 성명불상 2인의 책임 여부

국가정보원 소속 피진정인 성명불상 2인은 단속과정의 물리적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는 단속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진정인 등 단속대상자 3명을 한명씩 붙잡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 ○○○도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포함하여 ○○ 등을 미행하던 직원 3명이 먼저 단속을 개시하였고 차량에서 나가보니 이미 테러범 등이 단속된 상태였다고 진술한바, 물리적 행사에 관여한바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제4장 외국인 관련

또한 피진정인 ○○○, ○○○, ○○○의 진술과 같이 뒤에서 미행하던 3~4명의 단속반원이 먼저 단속을 개시한 후 승합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위 피진정인들이 합류하였다는 진술에 의하면 먼저 단속을 개시한 단속반원 3~4명이 진정인 등 3명을 붙잡아야 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단속과정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위 피진정인 ○○○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설령 당시 단속이 「국가정보원법」 제16조(사법경찰관)에 의거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위 피진정인 ○○○, ○○○, ○○○, ○○○, ○○○와 마찬가지로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적법절차 위반 및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에 의거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동법 제19조(직권남용죄)의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 2인은 권한 없이 피진정인 ○○○ 등과 같이 진정인을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12] 2007. 4. 9자 07직인2 결정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 사고 직권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를 계기로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호’ 관련 규정의 개정 권고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개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적극적 입법통제의 필요성, 공무원통보제도의 개선,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립 및 보장, 긴급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사고 수습 및 사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시정 등 인권침해 개선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52조 등

[주 문] 1.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가. 보호의 법적 성격을 법률유보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 나.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할 것,
- 다. 보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보호외국인이 누려야 할 일반적인 권리, 면회와 통신권, 청원권, 보호 중 물리적 사용에 대한 제한, 건강, 급식 및 진료와 관련된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 라. ‘선 구제 후 통보원칙’을 명시적 조항으로 규정할 것,
- 마. 보호외국인들이 자국의 영사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것.

2. 법무부장관에게

- 가. 화재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호소 시설전반의 안전성을 증진시

킬 것.

-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 및 경비용역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의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것.
- 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
- 라. 여수화재사고를 당한 외국인들에게 권리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정신과적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강제출국을 집행한 청주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마. 여수화재사고시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 외국인들에 대하여 수감을 채운 당시 근무자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 가. 소방 및 안전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사전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의 보호시 보호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노동부장관 및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장에게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장기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수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 권리구제 체계 수립 및 근로감독업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5. 소방방재청장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대해,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사무공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그에 합당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여수경찰서장에게

여수화재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검시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검한 행위에 대하여 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2007. 2. 11. 03:55경 여수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 304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호중인 외국인 10명이 질식사, 17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화재는 인적 화원(火原)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망한 김 ○○씨로 추정하였다. 당시 근무자들은 근무태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참사는 보호 수용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사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내뿐 아니라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회, 언론 등에서는 외국인 보호체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2007. 2.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검토기준

가. 국내기준

제4장 외국인 관련

- 「헌법」 제10조·제12조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56조·제56조의2·제56조3·제56조의4

나. 국제기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4항
-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0호·33호·37호·46호
-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 관련 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제7항
-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3. 인정사실

가. 시설 및 인력

1) 여수출입국사무소 시설 및 운영 현황

가) 여수출입국사무소는 2005.1.에 개소되어 전용 보호소 역할과 외 국인체류 허가·관리 업무를 동시 수행하여 왔으며, 출입국사무소내에 있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함)은 호남, 영남, 제주를 포함하는 남부지방에서 적발된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나) 여수출입국사무소 인력 현황

(1) 경비용역직을 제외한 직원은 총 41명으로 사건 당시 보호실 에는 직원 4명과 경비원 5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사건 당시 4층 보호동에 여자 경비원 1명, 3층 보호동 복도 에 1명, 감시실에 1명 등 경비원 2명, 2층 상황실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근무일지 상에는 감시실에 여수출입국사무소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경비원만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상황실장은 근무를 교대한 후, 1층 당직실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보호실 구조

(1) 사건 발생 당시 각 거실 당 6 내지 8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화재 발화

지점인 304호실에는 6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보호실 거실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온을 위한 우레탄소재의 깔개가 깔려 있었다.

(2) 여수출입국사무소 보호실 수용정원(전국대비)과 1인당 사용면적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면적(평) A	수용정원(명) B	1인당수용정원 면적(평)A/B	수용인원(명) C	보호실 밀집도(%) C/B×100	1인당 실제 사용면적(평) A/C	혼거실 개수(개)	독거실 설치유무
여수	305.0	254	1.20	71*	28.0	4.30	27	○
전국	-	-	1.55	-	84.7	1.84	-	-

* 여수출입국사무소 2006년 평균 보호인원

(3) 여수출입국사무소 보호동 각 거실 출입문은 자물쇠와 끈 열쇠의 이중 시건 장치로 통제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열쇠는 2층 상황실 열쇠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열쇠보관함 열쇠는 상황실장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상황실장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2) 보호 외국인 1인당 대비 출입국관리 인력의 수

가) 전국적으로 보호외국인의 수는 2003년 7,054명에서 2006년 20,756명으로 294%가 증가한 반면, 이를 관리하는 출입국 직원의 수는 2003년 1,376명에서 2006년 1,612명으로 17.0%밖에 증가하지 못하여 보호외국인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그 결과 보호외국인의 보호와 송환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사고 피해자들 중에는 체불임금 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본국으로 송환 되어야 하나 출입국사무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 중이다가 피해를 당한 보호외국인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수출입국사무소는 체불임금지급이 완료된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즉시 출국을 위한 호송을 하지 못하고 항공권 예약 후 일주일에 한번 호송을 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대사관 요청에 의해 송환 순서가 변하기도 하였으며, 송환자가 적을 경우에는 다른 송환자들의 출국시기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제4장 외국인 관련

송환하기도 하여 보호외국인의 자의가 아닌 행정처리상의 문제로 송환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화재사망자 이 ○ ○을 비롯한 사고피해자 10명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7. 2. 8.자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대사관이 동년 1월초 ○○출신 밀입국자 39명의 우선출국을 요청하여 여수출입국사무소가 해당자들을 먼저 출국시킴으로 인해 출국 대기 중이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

나. 수용처우

1) 보호외국인의 수용기간

여수출입국사무소는 다른 지역의 출입국 보호실보다는 장기 구급자가 많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보호외국인 수는 총 55명이었고, 이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은 1년 3개월, 평균 보호수용기간은 약 11개월이었는데, 그와 같이 수용기간이 길어진 이유의 대부분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임금체불 청산관련 상담 상황

가) 노동부가 제정한 ‘불법 취업외국인 관련 신고사건처리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등에 의하면 관할 노동사무소는 외국인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긴급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우선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에 대해서 출국 전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즉시 입건·수사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상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불법 체류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예방점검 및 노무지도도를 강화 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나) 노동부는, 장기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여수출입국사무소 체불임금 상담일지에는 2005년 여수출입사무소가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여수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관련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해 직

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횟수는 총 10회(2005년 9회, 2006년 1회)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여수출입국사무소 방문 상담과 관련하여 여수노동사무소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여수노동사무소는 2005. 8. 여수출입국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방문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주 1회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민형사적 절차를 안내한바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여수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2005년도에 14회였으며, 2006년, 2007년에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예. 출장복명서, 출장일지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안내여부

가) 사고피해자 이 ○○ 외 5인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로부터 인권위에 대한 진정 등 보호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나) 방화용의자 김 ○○의 경우 2007. 1. 11. 보호 조치된 후 여수출입국사무소 장과의 면담을 원하였으나 여수출입국사무소 소장이 2007. 1. 11~2 6. 인사발령에 의해 공석인 관계로 면담이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그 뒤에도 김 ○○에 대하여 실제로 무엇이 문제이고 불만이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김 ○○의 경우 사건발생 전 2007. 1. 11. 독거실에 수용되면서 소내 폐쇄회로감시카메라의 렌즈를 화장지, 신문지 등으로 몇 차례 가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대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안전관리

1) 화재사고 당시 초동대처의 적절성 여부

발화지점인 304호실의 폐쇄회로카메라는 경찰이 방화용의자로 추정된 김 ○○가 카메라 렌즈에 화장지를 부착하여 영상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도 및 304호실 외 보호거실에 부착된 카메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당시 303호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이경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화재의 발화지점은 304호실 TV 가구로서 그곳에 불이 붙었는데 가구의 재질이 톱밥을 압축한 재료로 만들어져 순식간에 불이 잘 타올랐다고 하였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직원이 소화기를 가져다가 분무하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채로 쇠창살 밖에서 분무함으

제4장 외국인 관련

로 인해 불길까지 물길에 닿지 아니하였고 근무자들은 문을 한참동안 열어주지 않아 연기가 계속적으로 보호거실 안으로 들어 왔다고 하였다. 이후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하여 열쇠로 문을 열어 주었지만 301, 302호의 외국인들이 구출된 후 30분이 지나서야 303호에 수용되어 있던 보호외국인들이 구출되었다고 하였다.

2) 소방안전 교육실시 여부

가) 사고피해자들은 여수출입국사무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소방교육이나 대피 교육을 한번도 받아 보지 않았으며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화재경보기 경보음 확인 여부만 점검하였고 울리지 않는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는 교체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화재당시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여수출입국 사무소의 2005~2007년도 소방계획서를 조사한 결과 방화관리 책임자(관리과장)는 매월 1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에는 매월 실시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그동안 소방훈련이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 지를 의심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2005. 5. 15.의 경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20명이 참석하여 소방훈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한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경비과 직원 A씨가 2007. 2. 14. “2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했지만 소화기 사용법조차 배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3) 수용관리 업무의 민간경비업체 위탁

가) 여수출입국사무소에는 경비업무를 모두 15명이 담당하면서 보호실 정문, 보호실 복도 등에 배치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비원은 정규직이 아니라 출입국사무소가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조합에 가입된 업체와 조합이 계약을 맺은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훈련된 전문 경비인력이 아닌 50대 지역 주민들이 인력 용역업체인 금강기업에 의하여 자체 선발되어 여수출입국사무소로 배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수출입국사무소의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경비인력 임금을 정규직원 임금에 훨씬 못 미치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용역회사인

금강기업에서는 경비용역일지에 각 조별 조장교육은 매주 실시하였고, 경비대원 각 조별 교육은 월 1회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고는 있었으나, 동 교육내용은 정신 교육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그밖에 소방훈련 교육 실습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관리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참고로, 2005. 10.경 네덜란드 스키펴(schiphol)공항의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1인의 외국인이 사망한바 있었는데, 당시 화재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씨가 2007. 4. 2.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네덜란드 스키펴공항 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시 보호외국인들의 사망은 수용소 내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한 민간인 신분의 용역직원들이 화재발생시 보호실 근무를 서고 있었고 초동대처를 잘못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4) 이중시건장치, 가연성소재의 사용 및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소방법규 미비

가) 화재발생시 보호실내에는 자동장금해제장치가 없어서 이중시건장치를 손으로 푸느라 피해자들의 구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나) 폐쇄 회로 카메라 녹화장면을 확인한 결과 당시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2분도 되지 않아 시계가 완전히 어두워질 정도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연기는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매트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였는데, 그 유독가스가 최상실에 붙어 있는 나무판자 위에 뚫려 있는 위쪽 공간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이동해 그 유독가스를 마신 수용자들이 질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법”이라함)에는 외국인보호소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우레탄 매트와 같은 가연성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사고후 수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1)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과정

사고로 인하여 여수제일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고 있던 박 ○○, 이 ○○, 임 ○○은 병실침대에 연결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치료받다가 그 다음날인 2. 12. ○○영사가 방문하여 수갑이 채워진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자 그

제4장 외국인 관련

때가 되어서야 수갑이 풀려졌으며, 이에 관해서 당시 여수제일병원 경비를 맡았던 여수출입국사무소 직원은 당시 3명의 직원만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환자이지만 도주할까 우려되어 3명의 사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다가 사고 다음날에 ○○영사의 항의로 수갑을 풀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2) 강제출국과정

가) 청구외국인 보호소는 사고 후 사고피해외국인 30명중 22명을 강제 출국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출국 전에 피해외국인들에게 보호일시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피해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또한 사고피해외국인들 중 일부는 대량 참사, 재난과 같은 충격적인 사고 후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사고피해자중의 한명인 김 ○○를 진찰한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밤에 무섭고 떨려서 잠을 못잠. 반장님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음, Headache,... IMP PTSD ”라 기재되어 있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육체적인 외상에 비할 정도의 정신적 상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세심한 치료와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국인보호소는 위 김 ○○에 대해서도 출국 전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진출국에 대한 자필 서명만 받고 강제출국 시켰음이 확인되었다.

3) 사체부검과정

가)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사고 발생 당일인 2007. 2. 11. 여수경찰서장이 법원으로부터 영장발급을 받아 2007. 2. 11. 20: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의사 전석훈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유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한국에 도착하여 시신을 본 후에야 부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는 피해자들이 가혹행위를 입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성과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외국인들로서 유족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화재 다음날 부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 부검이 실시된 것은 화재발생 다음날 오후 8시경으로서, 이미 ○○대사관이 신속한 유가족소재확인을 하여 ○○정부에 통고를 한 것으로 볼 때에 유가족

인적사항을 알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또한 부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한 뒤에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판단

가. '보호'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필요성

1) 보호실태와 문제점

직권조사 결과 여수출입국사무소는 2005년에 신축한 건물로서 타 보호소에 비해 시설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복도를 마주보고 쇠창살로 되어 있는 구조에 이중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고 충분한 운동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면회, 통신 등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으며, 수용된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마치 범죄자와 다름없는 처우를 받으면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수용상태가 이 사건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경찰에 의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가 보호소의 처우와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는바, 먼저 보호조치와 관련된 현행 법령에 문제가 있거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의미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인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 제1항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

제4장 외국인 관련

가 있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상태에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즉시 강제퇴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동법은 신병확보수단으로서 '주거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인 조치'와 '보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는 '수용 형식을 취한 신병확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2005. 3. 24.자로 제56조의 3 내지 7을 신설하여 강제력의 행사(제56조의 4), 신체 등의 검사(제 56조의 5), 면회(제56조의 6), 안전대책(제56조의 7)등을 정한 기본권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은 국내 행정법적으로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호는 최대 20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나, 한편으로는 동법 제63조 제1항에서 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장기억류 내지 장기 구금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따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권제한 및 처우개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보호'와 기본권제한 관련 규정

가)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은 제3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보호, 보호기간 및 보호 장소, 보호명령서의 집행, 보호의 통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의 일시 보호, 피보호자의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절 제63조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절 제65조부터 제66조까지 보호의 일시 해제, 보호일시 해제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6조의 3 내지 7에서 강제력 및 신체, 면회, 감시등에 관한 기본권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57조를 통하여 법무부령에서 피보호 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 보호에 대한 적극적 입법통제의 필요성

외국인 보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이나, 본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처분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서, 그 요건과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국내행정법규의 위반자로서, 범죄자가 아니며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병억류(detention)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제한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범위 내로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제57조에서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라는 표현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처우'의 해석여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범위를 넘어선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 「행형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도 더욱 자세하게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제한정도'를 법률의 수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출입국관리법」상의 기본권제한 규정은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며,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제한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보호'의 정의와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관련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제한이 행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원칙 하에서 원칙적으로 보호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천명하고, 그 예외로서 특정 조건하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본권 관련제한 규정의 형식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6[면회]등을 보면 보호외국인의 면

제4장 외국인 관련

회, 서신왕래, 전화통화는 외국인 보호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면회, 서신왕래, 전화통화가 자유로운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호외국인의 서신왕래 등을 허가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56조의 4 제5항과 제56조의 6 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와 면회, 서신왕래, 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등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외에 급식 및 진료, 운동 등 건강에 관한 권리와 청원권 등,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법률의 수준에서 규정함으로써 보호 외국인이 형사 범죄자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누릴 권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공무원 통보의무제도의 개선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서는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보의무 규정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법원, 검찰 등 권리구제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보의무 규정의 존치 여부는 출입국관리행정 목적의 달성과 불법체류자 인권 보호라는 법익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234조 공무원의 고발의무과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공무원이 모든 위법상태를 발견한 경우에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통보를 제한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법익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무원인 의사,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의 교사 등에게까지 통보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불법체류자가 자신이 당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의 피해구제를 호소하기 위하여 찾아간 수사기관이나 노동사무소의 공무원에게 통보의무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인가의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03. 2. 10.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에 대하여 '선구제 후통보'의 원칙을 법률 형식의 수준에서 명시적으

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부 지침으로만 규정 되었을 뿐 법률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

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립 및 보장

1) 보호외국인에 대해 자세한 권리구제 방법 등을 고지할 것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에는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54조는 용의자를 보호할 경우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국내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용의자가 통지 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여수출입국사무소는 보호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바, 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은 국내연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외국인이 수용될 경우 자국의 영사기관으로부터 신속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고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체불임금 청산 관련 상담 및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

보호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호외국인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여 보호소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 수용되어 있다가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부의 자비출국 정책으로 인하여 돈이 없는 보호외국인은 즉시 송환될 수 없고 출국항공편 혹은 선편의 비용을 자비로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많은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출국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송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외국인이 형사범죄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국내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체류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로 일한 대가로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제4장 외국인 관련

임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상태를 빨리 해소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제정한 「불법 취업외국인 관련 신고사건처리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2003. 2)」 등에도 불구하고, 2005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여수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관련 보호외국인을 직접 상담한 횟수는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하였고, 정기적인 상담과 고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체불임금지급 청산과 관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여수노동사무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 기관의 상담 및 근로감독업무를 강화하고, 더불어 이를 위한 상급기관의 정기적인 감독과 지침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방시설의 개선

조사결과 보호외국인들의 사망원인인 유독성 연기는 보호실내 보온을 위해 설치한 우레탄 매트에서 발생하였고 방과 방 사이의 쇠창살에 붙어 있는 나무판자 위에 뚫려 있는 위쪽 공간으로 유독가스가 상승기류를 타고 이동해 연기가 급격히 확산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화재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보호실내의 방염대상물품 설치 규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소방시설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 데 동조 별표 2에 따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무소 내에는 보호대상 외국인들이 24시간 생활하고 있는 보호실이 별도로 존재하는바, 보호실의 경우에는 그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로 분류하여 소방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동법에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보호실에 대한 별도의 시설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은 일반업무시설과는 달리 좀 더 엄격한 소방점검대상이 되어야 하고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관리가 부실한 결과 우레탄매트와 나무 칸막이 등으로 인해 화재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호실을 사무소내의 업무공간과 구분되는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위 규정들을 개정하며, 그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책과 별도로 외국인보호소내 칸막이벽과 깔개 등 설비를 가연성이 낮은 불연재로 설치할 것을 포함하여 화재와 관련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긴급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소방시설설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법」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동법 제25조에서는 주기적 자체 점검 또는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소방시설설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할 경우, 소방계획 수립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제4조), 소방훈련 및 교육(제14조),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점검(제15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수출입국사무소의 ‘자체소방계획’에 의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중순 ‘자위소방대 임무별 조치 요령’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작동 요령’, ‘보호외국인 대피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작성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기록부에는 구체적인 훈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같은 내용이 반복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한번도 소방이나 안전대피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보호외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형식적인 교육만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화재 등 재난과 관련한 실질적인 긴급대피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발생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경비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으며, 전문적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을 선발하여 형식적인 정신교육만을 시킨 채 시설 및 인력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결과 출입국공무원 및 경비직원이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책에 대한 내실 있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을

제4장 외국인 관련

에도 보호실 복도에 근무 중이던 용역경비직원이 화재 발생을 확인하고서도 수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화기를 가져왔고, 그 후에도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철창 밖에서 화재지점을 향해 소화기를 몇 번 뿌리다가 진화가 되지 아니하자 소화기를 든 채 출입문 쪽으로 나가버리는 등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적절한 초기대응은 단지 체계적인 소방 및 안전교육에 대한 훈련 부족에서만 비롯된 것만이 아니다. 화재와 같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보호자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도주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부족에 큰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처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7,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100조를 보면, 주로 시설의 안전과 이를 위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피보호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피보호자의 안전대책을 소홀하게 다루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호외국인들의 안전보다 소화와 도주의 우려방지에 급급하여 보호실 문을 먼저 열어주지 않고, 불길을 보호실 밖에서 소화기로 진압하려 한 것이 이 사건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화재와 관련한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비계호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사고 수습 및 사후 과정에서의 발생한 인권침해 시정

1) 치료 중 수갑 시건 행위에 대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하나 범죄자가 아니며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어 응급실로 이송된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수갑을 채운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것은, 화재 사고 직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 보호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계구를 사용한 것으로서 정신적 충격을 더하게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

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화재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바로 회복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병실 등에서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인 피보호자들의 손에 수갑을 채워놓은 행위는 계구 사용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2) 사고피해자 강제출국 관련

이 사건 발생후 현장에 있었던 보호외국인들은 청주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된 후 출국 조치되었는데, 출국조치된 피해자들은 보호일시 해제조치 등 사고피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지 못하였다. 특히 비록 신체의 이상은 없었으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던 일부 외국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일시보호 해제를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출국 조치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을 떠나, 국가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큰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게는 해당국가가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 및 권리구제절차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당연히 요구된다. 대규모 참사에서 흔히 발생하고, 2005년 네덜란드 외국인 보호소화재 사건에서도 발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개인에 따라 충격 직후에 나타나거나 수일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뚜렷한 자율신경계 장애, 환각 또는 공황발작 현상 등을 유발하여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의 부적응과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적 진료나 치료 없이 본인이 출국을 원한다는 자필 서명만 받고 강제출국 시키고 다른 피해 외국인들에게도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청주외국인 보호소장에게는, 이를 경고 조치하고 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체부검 절차 위반관련

이 사건 부검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은 유가족 인적사항 및 거주지를 바로

제4장 외국인 관련

알아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통지없이 사체 부검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부검이 실시된 것은 오후 8시경으로서 화재당일 여수출입국사무소는 사망자 명단을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경유 ○○대사관측에 전달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유가족 인적사항 및 거주지를 바로 알아낼 수 없었다는 수사당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수경찰서가 사고당일 부검 실시 전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가혹행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부검을 하였다는 경찰의 답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는 일단 부검이 아닌 육안 검사나 피부 관찰을 해 보고 사진 등의 자료를 남기는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고, 관련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는 등, 대량 참사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검만이 가혹행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처럼 서둘러서 집행하였던 행위는 시신의 훼손을 꺼려하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유가족에게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조치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당 개선 내용과 관련된 각 기관들에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9.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최영애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위원 정인섭 위원 최금숙 위원 신혜수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13 2007. 12. 17자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외국인보호시설 및 외국인 교정시설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 및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현행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 관련 시설 방문조사로 드러난 여러 인권문제들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권고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규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 및 교정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외국인 보호절차의 개선과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 가.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강제퇴거의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나. 보호조치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법률에 의해서만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운동이나 급양, 집필, 보호거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등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라. 보호의 적정화를 위해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매 3개월마다의 승인, 승인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기회 보장, 보호기간의 상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외국인들의 체불입금 등 금품문제를 해결하고 보호기간

제4장 외국인 관련

- 이 단축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마. 보호시설 내에서 외국인이 일과 시간 중에 운동장, 도서 등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실 밖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바. 보호시설 내에서 의복 등의 반입과 집필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인 의류, 필기구와 종이, 도서, 가족사진, 화장품 등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소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기본적 허용사항으로 하고, 보호외국인의 사복착용 허용, 여벌의 보호복 지급, 보호복의 정기적 교환 및 세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등 보호복의 청결과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사.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구금 거실의 기준에 충족하도록 보호거실 내 자연채광, 환기, 환풍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시설의 화장실 및 목욕실 차폐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아.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구금 거실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보호소내 보호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인원 적정규모 준수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자. 보호시설 내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독거수용 통제방안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와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를 개정하여 격리 보호 요건을 최소화하고, 격리보호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행정제도 상의 징벌위원회와 같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과정 중 해당외국인에게 항변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차. 감시장비로 인한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감시장비 설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여성직원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가. 보호시설 내에서 실효성 있는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를 위하여 보호의 통지에 관한 사항 및 변호인 선임에 관한 사항,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등 보호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시설 내의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등을 기본적 고지사항으로 정하여 이의 게시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국가 이상의 다양한 언어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보호거실 내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출입국관리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타.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고 면회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파. 운동기회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게 허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하. 보호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현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 거. 보호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 가. 「행형법 시행령」 제60조를 개정하여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통역자 등을 대동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와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를 개정하여 외국인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다. 수용자의 출신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의 도서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 라.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

제4장 외국인 관련

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외국인 수용자 출신국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한 식단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 유]

1. 방문조사 실시 및 권고배경

1. 2007. 2. OO외국인보호소의 화재사건 이후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었다. 또한 2007년 OO소년교도소 OO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OO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2.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07. 6.부터 11.까지 이주관련 단체 활동가,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30여명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의 구체적 일정은 불임과 같다.

3. 방문조사 결과, 우리 위원회는 외국인 보호정책, 보호 및 교정 시설 내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게 되었다.

2.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보호 및 교정시설 수용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향상 방안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행형법」,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3. 판 단

1. 미등록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가. 보호의 법적 의미 및 문제점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 보호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지를 조사하기 위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행하여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보호는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상 행해지는 보호행위는 사법절차상의 구인·구금 또는 수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위원회는 이미 법률 상 보호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분명히 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는 한편으로 보호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신의 보호는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되 그 과정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개정절차 과정에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4장 외국인 관련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 제2조 10의 2는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에 대한 개념만을 규정할 뿐 보호 일변도의 강제퇴거 정책에 대한 성찰과 보호에 따른 절차적 인권과 처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2007. 5.부터 11. 사이에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자, 형의 집행을 마친 자, 다른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자들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퇴거대상자이거나 강제퇴거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보호조치 되고 있었다. 또한 보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 관리 및 처우에 있어서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작용으로서의 ‘보호’ 개념에도 불구하고 보호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보호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미등록 강제퇴거 정책에 대한 대안과 보호과정에서 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나. 보호조치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하면, 유효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등 하자 있는 입국을 했던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활동하는 등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등은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출입국관리법」 하에서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은 물론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강제출국시까지 해당 외국인을 보호조치 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0일 이내이나, 다만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7조와 제68조는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등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국 권고를 하여 보호조치 없이 출국권고서가 발급된 날부터 5일 안에 출국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강제퇴거의 대상자이지만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나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즉 현행의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를 수반하는 강제퇴거 전에 출국권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06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계를 보면, 강제퇴거된 경우는 18,574명인데 비해 출국명령으로 자진 출국한 경우는 901명, 출국권고를 통해 출국한 경우는 2,509명에 불과해 법무부가 출국권고나 출국명령보다는 주로 강제퇴거 조치를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출국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 및 영국 등의 외국사례를 보면, 이주관련법의 위반자나 범죄자 등을 퇴거대상자로 정하고 퇴거의 집행 절차를 엄정히 수행하고 있지만 구금에 따른 비용과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고려하여 구금을 통한 강제출국보다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지, 혹은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출입국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은 보호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의 방안을 활용한다면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보호조치의 대안적 절차로서 이러한 방

제4장 외국인 관련

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절차를 통하여 출국한 자에 대해서 입국금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의 준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보호절차의 개선 방안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는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미 2005. 5. ‘출입국공무원의 권한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의 작용을 내포하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04진인139, 04진기131 병합, 2005. 5. 23. 전원위원회 결정)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은 실제적 진실이 엄격히 규명되어야 하는 형사피의자의 수사와 달리 불법상태의 판별이 매우 용이한 외국인을 신속히 국외로 퇴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잡한 형사절차에 의하기보다는 행정절차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이라는 행정목적은 담보할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 시까지 최단기간의 수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범의 구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즉 보호와 강제퇴거는 국가주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주의가 배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피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조치로 인하여 신체적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호조치

가 형사법에 대한 체포나 구속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이 실질적인 구제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위원회의 2005. 5. 권고를 수용하여 이번 입법 예고안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보호 및 긴급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사법절차에 준하는 내용으로 마련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라. 보호시설 내 처우개선 방안

1) 법률에 의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 및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조치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기본권 제한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상당부분이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2007. 4. 9. OO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법무부장관 및 국회의장에게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보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보호 절차상에 있어서 보호외국인이 누려야 할 일반적인 권리, 면회와 통신권, 청원권, 보호 중 물리적 사용에 대한 제한, 건강, 급식 및 진료와 관련된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제56조의6이 기존에 사무소장 등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해왔던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을 허가 사항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제56조의7이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운동이나 급양, 집필, 보호거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등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여전히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필요하다.

2) 보호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 이번 조사 대상 보호시설 중 OO외국인보호소의 경우 1년 이상 보호된 외국인 3명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보호된 외국인이 19명이었다.

제4장 외국인 관련

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그 기간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한으로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법원의 영장 없이 행해지는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사전사후 통제절차 등 장기보호에 대한 실질적 통제절차나 권리구제절차가 없다.

법무부가 이번 입법예고안에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내부적 통제절차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내부통제절차를 거치는 최저기간인 6개월까지 최초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실질적 통제나 권리구제절차가 없고, 6개월 이상 보호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보호외국인의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기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이후 보호기간 연장 시 재승인 받아야 하는 기간도 2006. 7.에 마련되었던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3개월'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6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수준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가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호기간은 최대한 단기간이어야 한다.

라) 한편 법무부는 1개월 이상 장기보호자에 대하여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해제 하는 방안,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절차 과정에서 장기 보호외국인의 이의신청권이나 불복 방법을 부여하는 방안, 실질적 통제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기보호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 위원회의 방문 조사 시 심층 인터뷰에 응답한 많은 보호외국인들이 임금체불, 전세금 반환 등 금품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출국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금품문제의 미해결이 장기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보호외국인 스스로 체불임금 등의 금품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부 외국인보호소가 체불임금 및 금품 관련 해결을 위해 지방노동(지)청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관이 보호소를 방문하여 체불임금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속한 지방노동(지)청 관할지

역과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을 당한 사업장의 소재지역이 다르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공장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방문 상담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고액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출입국 내부 지침으로 천만 원 이상의 임금체불, 전세금 등의 금품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일시해제의 조건으로 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납부, 한국인 신원 보증인, 소송 및 진정 진행의 근거자료 제출을 정하고 있어 보호외국인들 스스로 보호일시해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외국인들의 금품문제를 해결하고 단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3)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보호시설의 시설 현황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면에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물론 현행의 「외국인보호규칙」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중 각 보호시설의 보호집행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무부 차원에서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만 지적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의 이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보호실 밖의 출입문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고 외벽으로 향한 복도의 경우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등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보호외국인은 복도 밖으로조차 이동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공중전화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담당직원의 허락을 얻어서야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복도에 비치된 도서를 읽기 위해 거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렵다. 심지어 보호거실의 출입문에조차 한 사람 정도만 드나들 수 있는 걸음쇠 장치를 해놓은 보호시설도 많이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정해진 공간 내로 주거의 자유가 제한 될 뿐 보호시설 내에서는 최대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

제4장 외국인 관련

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보호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강제퇴거 대상 가족 구금센터인 알스우드 강제퇴거센터(Yarl's Wood Immigration Removal Center)는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고 있었는데, 보호외국인은 운동장, 체력단련실, 도서관, TV시청실, 의료실 등 보호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근무시간 내인 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성들만 구금되어 강제퇴거를 기다리고 있는 영국 도버강제퇴거센터(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er)에서조차도 보호외국인들은 일몰 전까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으며, 특별한 계호 없이 체력단련실이나 도서관, 공예작업실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만약 보호시설 내에서도 보호외국인들을 보호시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동장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불안감 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을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보호시설에 대한 경비인력의 증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행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처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의복 등의 반입과 집필권은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가)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는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인 의류, 필기구와 종이, 도서, 가족사진, 화장품 등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규칙」에서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등 물품소지 및 사용, 일용품의 지급여부 문제를 보호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 많은 보호시설에서는 보호외국인의 생활필수품인 의류는 물론 여벌의 내의 반입조차 금지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사복이 아닌 보호복을 착용해야만 하는데, 방문조사 대상 대부분의 보호소에서 보호복을 여벌 없

이 한 벌씩만 지급하고 있고 보호복의 교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 하절기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복을 직접 세탁하고 건조하는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상황이 빈번히 목격되었다. 또한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여벌의 내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속옷을 밤에 빨아 널었다가 아침에 입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에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하면, 본인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보호복 착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보호외국인의 의류 반입을 허용하여 보호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위생 및 인격권 측면에서 여벌의 보호복을 지급하고 보호복의 정기적 교환 및 세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내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나) 또한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은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시에만 필기구 및 종이 등을 반입하거나 지급받아 사용 후 반납하고 있었다. 보호시설 안에서의 집필권은 수용 관리의 편의성, 통제의 편의성이라는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기구와 종이, 도서 등의 반입 및 사용을 현행과 같이 허가사항으로 해서는 안되며,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최대한 인정하되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를 개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법예고안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보호거실 내 시설이 개선되어야한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거실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수면 시설은 기후상태와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의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수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

제4장 외국인 관련

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인공조명은 수용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대상 보호시설은 창문을 통한 보호거실의 자연채광과 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화장실이 아닌 보호거실 내 창문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창문이 없고 창문이 쇠파스칼과 아크릴판으로 밀폐되어서 한낮에조차 형광등을 켜야 하는 시설도 있었고, 환기시설 용량이 작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호시설 내 공기상태가 좋지 않은 시설도 많았다. 몇몇 보호시설에서는 화장실과 보호거실 사이 설치된 차폐시설 높이가 보호외국인이 변기에 앉았을 때 상반신이 드러나는 정도로 낮은 경우가 있었고, 샤워시설 쪽 창문이 불투명 유리로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외국인의 모습이 같은 거실 내 다른 보호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거실 내 설치된 CCTV로 이를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보호외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시설 현황의 점검을 통해서 적절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보호실의 보호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 적정인원의 엄격한 준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가) 이번 방문조사 결과, 보호소와는 달리 대부분의 보호실은 사무용 건물의 일부를 보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거실이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광, 환기, 통풍, 위생 등의 최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행의 보호거실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 외에 보호실에서 외국인을 보호하는 기간을 최단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퇴거 전에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소로 이송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보호실 내에서 평균 보호기간인 2, 3일을 넘어서 일주일 이상 보호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의 보호기간을 보호명령서를 발급받기 이전까지로 제한하고 그 이후는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법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현재 보호가능인원에 대하여 외국인 보호소는 보호거실 2평당 1명을 적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1.2평당 1명을 최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적정 보호 인원이 잘 준수되고 있으나 많은 보호실에서는 적정 보호인원을 초과하여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가 6, 7월을 자진출국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2007년은 예외적 경우이고, 적정 보호규모 13명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2005년 일평균 34.8명, 2006년에는 21.3명을 수용하였으며, 적정 보호규모 45명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2005년 일평균 122명을, 2006년에는 70명을 보호한 바 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은 단속에 대한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단속이 강화될 경우 다시 과밀 수용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호소, 보호실내 과밀 수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인원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대안 마련 및 엄격한 내부지침을 설정, 준수해야할 것이다.

7) 징벌적 독거수용은 지양하고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강제력의 행사와 더불어 보호외국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 규정에 근거해 보호외국인이 자살 또는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도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거부나 방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절차 없이 보호외국인을 독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은 강제퇴거를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보호생활 가운데에서는 생활이 일상적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보호외국인에게 소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보호외국인이 그러한 규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 구두 경고, 시설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단계적 방법을 통하여 규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후의 방법으로만 격리수용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호외국인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다른 대안적 수단을 먼저 강구, 실시해 봄이 없이 보호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외국인을 독거실에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면회, 독서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한다.

제4장 외국인 관련

나) 현행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는 격리보호 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도록 하는 내부적 절차만을 규정함으로써 격리보호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격리보호 대상 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도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와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를 개정하여 격리보호 요건을 최소화하고, 격리보호조치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행정제도 상의 징벌위원회와 같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감시카메라가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거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여성직원이 해야 한다.

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은 사무소장 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시설과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설치·운영되도록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시설은 거실 내 1개의 감시카메라로 보호외국인 거동의 특이사항만을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5, 6명 보호가 적절한 규모인 거실 하나에 두 개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있었다. 보호인력이 적은 보호시설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감시카메라를 통한 일상적 감시를 지양하고 보호시설 내 보호전담 인력을 충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과도한 감시장비 설치 상황을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보호전담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여성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를 남성 직원이 관찰하고 있는데, 출입문 벽 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거실 내 움직임이 모두 파악될 뿐더러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화장실 차폐시설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여성의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성보호거실의 관리를

위한 보호전담 여성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9)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와 고지가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이상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 이번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설문에 응한 보호외국인 중 구두로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설명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주로 보호거실 내 벽에 붙은 안내문이나 비치된 책자를 통해서 안내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보호시설에서 배포된 ‘보호외국인 준수사항’ 및 대부분의 보호시설 내 보호거실 벽에 게시된 ‘생활규칙’, ‘이의신청’,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어 그 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출신인 보호외국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때문에 보호외국인 중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나, 보호소 내 처우와 관련한 청원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매우 적었다.

나)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제57조는 제2항에 사무소장 등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의 일시해제의 청구, 청원, 접견 등에 관한 절차를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외국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호의 통지에 관한 사항 및 변호인 선임에 관한 사항,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호시설 내의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서면 고지와 게시, 보호시설 내 보호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비치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던 2006. 7.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현 입법예고안을 2006. 7.에 마련되었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수준으로 보완하되 고지 내용에 인권위 진정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고지 및 게시언어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국가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0)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고 면회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가) 보호시설의 현행 면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외국인의 면회신청자는

제4장 외국인 관련

평일 늦게이거나 일요일이 아니면 면회 오기가 어려운 형편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면회시간대와 요일의 제한으로 보호외국인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방문조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많은 보호외국인들은 현행 면회시간 규정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호외국인에게는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보호의 법적 성격이 강제출국을 위한 인신의 확보에 불과하므로, 면회 시 면회신청자와 보호외국인 간에 자유로운 대면을 통해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면회신청자와 보호외국인이 아크릴 벽 등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면회하도록 하는 것은 징벌적 구금자가 아닌 보호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일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가 아닌 구금조치를 당하였다는 느낌을 주는 면회방식이다. 이에 현행의 면회시설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대면하에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11) 운동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가) 방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조사대상 보호시설에서 운동이 매일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으며, 보호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호시설에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4조에서조차 보호외국인의 하루생활표에는 운동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의 기회를 허용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시설의 경우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에 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보호시설 내에 실내운동을 위한 프로

그램이나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동장이 있는 화성과 청주보호소는 구기종목을 위한 약간의 운동기구만을 비치하고 있을 뿐이다.

나) 방문조사대상 보호시설에는 보호외국인의 운동을 비롯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소일거리가 없으며, 보호시설에 비치된 도서조차도 다양한 언어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도서대출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많은 외국인들이 장기 보호되고 있는 화성과 청주보호소는 보호외국인들에게 보호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호외국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보호소에서조차 모든 보호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에 대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어 교육, 한국 전통예절, 민속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서비스 제공여부는 보호외국인 숫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교적 보호인원이 적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각 보호시설이 보호외국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외국인에게 운동기회가 「피구금지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게 허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운동장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을 위한 실내운동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보호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2007. 2. 1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하여 보호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것과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비·계호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미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방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각 보호시설이 화재 등 비상사고에 대비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내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외국인이 대피요령이나 대처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화성이나 청주외국인보호소처럼 장기보

제4장 외국인 관련

호시설인 경우에는 경비·계호인력 뿐만 아니라 보호외국인을 포함한 훈련방안이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보호시설 별로 비치하고 있는 소방설비도 효과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법무부는 여수화재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소방설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13) 보호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호소의 경우 보호집행을 전담하는 직원과 계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호실의 경우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나 전담 직원이 없는 경우 다른 업무 담당 직원이 외국인이 보호될 경우에만 돌아가면서 보호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직원의 보호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한다.

보호업무는 보호외국인과 직접 대면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보호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상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최일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보호외국인의 법률상 지위와 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7조 또한 시설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후 재직 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이나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대부분 자체 교육이고 월례조회 등과 같이 겸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보호외국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상별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 보호시설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담당직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교도소 내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가. 총평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이하 '천안지소') 및 청주여자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는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교도소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 입소 시 생활안내 여부, 법무부 청원 및 인권 위 진정 제기 정도, 수용거실 형태 및 운동, 종교, 의료, 식단 등 일상생활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를 조사하였다.

두 교도소는 수용자의 대부분이 장기거주를 하는 공간이고 행형법 등의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거실 내 창문의 크기와 자연채광, 환기 등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운동의 횟수, 감시시설의 설치 등 몇 가지 처우에 관해서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오히려 보호외국인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안지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전문적인 외국인구금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외국인 수용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교도소 내 처우개선 방안

1) 면회 시 자국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수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접견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는 피구금자가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행형법 시행령」 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나 접견 상대방이 매번 접견시마다 소장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접견권 보장은

제4장 외국인 관련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현재 천안지소는 재량에 의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접견 시 자유로운 언어사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비해 청주여자교도소는 접견실 근무자에 따라 면회신청자와 외국인 피면회자 간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통역자 등을 대동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행형법 시행령」 제60조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용등급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전화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접견보다는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이다. 현재 천안지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 전화사용 규정은 내국인의 기준과 동일한데, 수용자의 누진계급별로 1급과 2급 수형자에게만 전화사용이 허용되고 3·4급에 대해서는 전화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추석이나 명절 등에 외국인에게는 특별히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형법」 제18조의3 제1항은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와 「수형자전화사용지침」 제7조는 제1급의 수형자는 월 5회, 제2급은 월 3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미결수용자의 경우 월 5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3급과 제4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두 교도소의 외국인 전화사용 규정 또한 이런 규정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지만, 수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접견이나 서신의 방법으로 외부교통을 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3급과 4급의 수용자에게도 통화 기회를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언어의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0조는 구금시설이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4,736권, 천안지소는 5,6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교도소 모두 철학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어서적은 러시아어 5권, 네덜란드어 13권에 불과하고 천안지소는 외국어사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 책이다. 따라서 두 교도소는 외국인 수용자 전담기관으로서 수용외국인의 출신국 언어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야만 할 것이다.

4)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

두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소 시 생활안내를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수용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설명을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수용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수용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 사항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어도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 제8조의2는 소장이 신입자에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되어야 할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기타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체 제작한 수용생활 안내서를 각 사동 거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서는 외국인 수용자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일상용어를 벗어난 경우 그 의미를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가 외국인 수용자에게 특히 필요하고 이는 개별시설에서보다는 법무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의료문제를 비롯한 각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등의 장은 외국어의 해독이 가능한 1명 이상의 교화직공무원 등을 교화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외국인 관련

이러한 지침내용만으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양한 국가출신인 수용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고충해소 등이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전담교도소로서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언어 통역자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5)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한다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9조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출신자에게는 쌀이나 보리류를,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빵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두 교도소에서는 비 아시아권 출신들에게는 빵과 양식으로 구성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서양식 식단은 비용이 한식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외국인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시아권 출신의 수용자라고 해도 의무관 등의 판단에 의해 서양식 식단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 출신이라고 해도 맵거나 짠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도소 식단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쌀이나 보리를 주로 한 한식을 제공할 때라도 반찬의 조리 방식을 달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두 교도소에서는 내국인 식단과 동일한 음식으로 조리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외국인 특성에 맞게 한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같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위원회는 방문조사로 드러난 사항들과 관련하여 현행의 보호 및 교정 관련 제도와 시설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7. 12. 17.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위원 최경숙

위원 정인섭 위원 최금숙 위원 신혜수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1 2007.4.9자 06진인2441, 06진인2537 병합 결정 [부당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입원 시키고, 진정인에게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 [1]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시장군수구청장(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974조와 제928조 내지 제930조에 의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미성년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
- [2] 계속입원과 관련, ○○광역시장은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가 「정신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청구를 받아들여 심의의결을 거저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바, 심사청구에서 결과통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참조조문] 「정신보건법」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 [주 문]**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환자 입원 및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령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환자들이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청구 등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입원 및 계속입원 관련 규정과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입원 환자의 권리에 관하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광역시장에게,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계속입원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6. 4. 14. 모친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으로 강제입원되었다.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되었기 때문에 퇴원을 바란다.

나. 6개월의 입원기간이 지난 후 입원을 연장하려면 보호의무자인 모친의 동의가 필요한데 모친이 치매로 입원한 상태여서 입원동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입원기간을 연장시켰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은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6. 4. 14. 입원되었다(증상: 모친에게 돈 요구, 미국과 국가기밀에 대한 망상 등). 이전에도 피해망상, 난폭행동, 투약거부와 칼 소지 등으로 6차례 입원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있기 전에도 환자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퇴원에 대한 요구가 잦은 상태였다.

2) 보호자들은 환자가 현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전에도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가 투약 중지, 증상 악화 등을 자주 경험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6. 9. 경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다른 보호자인 누나가 동의하고 현재 입원이 연장된 상태이다. 진정인에 대한 입원 연장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

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다.

3)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한 것과 관련,

가) 민법상 부양의무자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존·비속이라는 언급이 없어 직계혈족인 형제자매도 보호의무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의 병적 증세 때문에 입원을 의뢰하셨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본 병원에 내원할 수 없고 실질적인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행할 여건이 안 되어 부득이하게 누나인 ○○○씨가 보호의무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보호의무자 요건(직계혈족)을 충족하기에 입원동의를 받게 된 것이다. 정신보건법령을 잘못 알고 있어서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4) 퇴원심사청구 관련

입원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망상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증상이 잔존한 상태에서는 환자의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당시 퇴원에 대한 요구는 환자의 증상이나 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여겼으며, 보호자인 가족들도 환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

5) 진정인은 2007. 1. 13. 퇴원했는데 보호자와 통화하여 퇴원기한을 정해 드렸으나 보호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지 않았다. 진정인이 2007. 1. 13. 퇴원에정임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퇴원 당일 전화통보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 및 계속입원관련 자료,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바, 진정인은 ○○병원에 총7회 입원, 2002. 8. 이전에는 어머니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했고, 그 이후에는 형(○○○)과 누나(○○○)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했다. 2006. 4. 14. 입원 시(전문의 소견: 피해망상, 행동장애)에는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2006. 9. 20. ○○○의 동의를 얻어 계속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입원심사를 청구, ○○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입원 조치되었고, 2007. 1. 13. 퇴원하였다. 입원 후 지속적으로 퇴원요구를 했으나 퇴원심사청구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

나. 판단

1)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시장·군수·구청장(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974조와 제928조 내지 제930조에 의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미성년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 즉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계속입원과 관련, ○○광역시장은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가 「정신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청구를 받아들여 심의·의결을 거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바, 심사청구에서 결과통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정신보건법」 제29조에 규정된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청구는 입원중인 자 및 그 보호의무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청구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와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입원 중인 환자와의 관계,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대한 내용은 청구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적

절히 고지하고 청구서 작성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어야 함이 마땅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진정인은 2007. 1. 13. 퇴원한 바, 진정요지 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가) 환자 입원 및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령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 환자들이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청구 등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입원 및 계속입원 관련 규정과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입원 환자의 권리에 관하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감독기관인 ○○광역시장에게

(가)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계속입원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시설을 포함,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나)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나. 진정요지 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원 정인섭 위원 정재근

2 2007.9.17자 06진인1848, 06진인3354 병합 결정 [시설 및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 행려환자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지연시키고, 지도·점검 시 입원 환자 수를 속이기 위해 약 40~50인의 환자를 별관으로 빼돌린 피진정인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폐쇄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상급기관에서 경고조치하고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피진정인에게는 입원절차 위반, 통지의무 위반, 계속 입원심사청구 위반,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작업치료, 인력기준 위반 등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강제로 입원된 환자에 대해서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포함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6조 및 제24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임
- [2] 피진정병원에서는 일률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내지 통신의 자유(제18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위반한 것임
- [3] 사상구보건소 지도·점검 시 피진정병원은 입원환자 인원을 속여 행정처분 등을 면하기 위해 수십 명의 환자들을 별관으로 빼돌린 것은 위계로써 사상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37조를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사상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함
- [4] 의사의 동의 없이 응급입원을 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위반이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시키고 그 이후에 구청장에게 보호의무자로 입원 동의를 요청한 것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임
- [5]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환자를 정신과병동으로 옮긴 것과 정신과전문의 진단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입원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받은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40조를 위반한 것임
- [6] 피진정병원에서 행려환자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임

[7] 격리 및 강박하면서 의사의 지시가 누락되거나 사지 운동 등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고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정신보건법」 제6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형법」 제137조, 「의료법」 제64조, 「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

【진 정 인】 1. 이○○

2. 김○○

【피진정인】 1. ○○병원장

2. 전 수간호사 김○○

3. 전 원무과 직원 최○○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공○○ 등 16인의 행려환자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지연시키고, 지도.점검 시 입원환자 수를 속이기 위해 약 40~50인의 환자를 별관으로 빼돌린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병원장을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상구보건소의 지도.점검 시 입원환자 수를 속이기 위하여 약 40~50인의 환자를 별관으로 빼돌려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부산광역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원초과입원 등의 정신보건법령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행려환자 응급입원 등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행려환자 관리시스템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정신과환자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내과 또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입원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동구청장, 사상구청장, 연제구청장, 중구청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각 권고한다.

4. 사상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상구보건소가 그동안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병원의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사상구보건소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각 권고한다.
5. 피진정병원장에게,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응급입원 등 입원절차 위반, 통지의무 위반, 계속 입원심사청구 위반,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작업치료, 인력기준 위반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6. 진정내용 중 부당한 전화 제한, 진○○, 김○○, 이○○이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 다는 내용은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가.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미지급 등 환자권리 행사방해
- 나. 부당한 전화제한
- 다. 과도한 환자수용
- 라. 행려환자 등에 대한 부당한 강제입원
- 마.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1) 이○○

2006. 5. 23.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을 위한 퇴원심사청구서를 주지 않아 부산

광역시청에 전화를 걸어 노인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직접 김○○에게 청구서를 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결국 주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다. 최○○은 진정인에게 다른 환자들에게 절대 퇴원심사 청구나 이의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2006. 6. 14. 10:00경 복건복지 콜센터(129)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김○○ 보호사가 공중전화 카드를 뽑아 전화를 하지 못했다. 10분후 김○○ 보호사가 다시 와서 진정인에게 "수간호사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6. 21.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수간호사가 진정인을 통화금지자 명단에 올려 아예 전화통화를 할 수 없게 되었다.

2006. 6. 20.경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수를 속이기 위해 별관에 100여명의 환자를 숨겨 놓고 별관쪽으로 가는 문(310호 옆 비상구 계단)을 잠갔다. 당시 입원환자가 270명 정도였고, 병원의 과다한 환자 수용으로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실제 매트리스의 간격이 약 3~10cm 정도로 노숙자 쉼터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다. 진정인 역시 2005. 12. 7. 07:00경 샤워실에서 동료환자가 휘두른 플라스틱 빨래판에 맞아 턱뼈 치료를 약 3주간 받은 일이 있다. 환자의 수에 대하여 환자의 식사를 배식 하는 이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피진정병원은 엉터리 행려환자를 만들어 환자의 인권유린과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진정인이 2006. 6. 8. 16:00경 ○○의료원에서 외래진료 후 귀원하려고 앰블런스에 승차중 ○○의료원 응급실에 있던 환자 이○○이 앰블런스에 태워져 진정인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고 물었고, 진정인이 "○○병원으로 간다"고 하자 놀라는 기색으로 차에서 하차 하려고 하였다. 이 때 원무과 직원 최○○이 이를 제지하고 ○○의료원 직원을 데려와 "노는 처지에 집에 가면 뭐하느냐, 돈 한 푼 안 들고 좋은 주사 맞으면서 한 며칠 쉬었다 가지"라고 회유 하였다. 그 후 이○○은 피진정병원에 의해 진○○라는 가명으로 행려환자가 되어 입원 하게 되었고 수간호사는 "이런 이름을 써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담당2과장인 의사는 "행려환자는 6개월이 지나야 퇴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엄○○라는 환자도 김○○이라는 가명으로 행려환자로 입원한 적이 있다. 엄○○는 ○○운수 택시기사인데 휴직기간중 과다한 음주로 거주지 아파트의 인근 벤치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의해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하게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환자 이○○(70세)은 치료 인하여 집에서 신원불상의 남자 두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된 사례도 있다.

2) 김○○

진정인은 술로 인해 2006. 12. 11.경부터 7~8일간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입원 첫 날 깨어보니 양손과 양다리가 결박상태에 있어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보호사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져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 피진정병원은 환자 인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병원이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김○○ :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1년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진정인 이○○은 본인 스스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인데 퇴원심사청구가 필요한 사항인지 의심이 가며,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간호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은 사소한 업무협조나 교육참석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반응을 일으켰고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였다.

최○○ : 퇴원심사청구나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른 환자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에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

○○병원장 : 강제입원 된 환자들에게 서면으로 입원통지서를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환자에게 결과통지서를 보여주고 날인을 받았다. 이런 관행으로 볼 때 진정인 이○○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김○○ : 정신과 환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화제한 명단을 만들어 전화를 통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은 병동 간호사로서 보호사에게 그런 지시를 할 권한도 없는데 이○○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병원장 : 전화는 주 1-2회로 제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부

산지역사무소의 진정함 실태조사 이후에는 전화사용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서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면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일 없이 자유롭게 실시하고 있다. 야간(22:00)에도 면회가 가능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은 자의입원이 많았고 개방병동에 입원했고 외출 및 외박도 자유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주장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피진정병원장)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환자를 빼돌리지 않았고, 2006. 6.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고 같은 해 8.경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있다. 그리고 치매노인 중에서 도망가려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별관에 별도의 입원실을 만들어 안전 장치를 한 것이고 이동경로가 별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각한 것 같다. 정원초과를 한 이유는 본원은 자의입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지 않을 경우 진료 거부로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정원초과를 하게 된 것이고 특히 ○○병원 및 ○○병원의 일시폐쇄로 환자들이 다수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의료인수 부족(현 2명)과 관련해서는 사상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징금) 및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다. 1실 10인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환자 정원 초과와 타 병원보다 병실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2007. 1. 사상구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가) 최○○ : 2006. 6. 8. 치과 외진을 위해 이○○과 ○○의료원에 갔다가 응급실에서 행려환자 진○○를 태우고 귀원한 사실이 있다. 진○○는 이송 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본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피진정병원장

진○○, 김○○ 모두 경찰에 의해 행려자로 발견되어 ○○의료를 거쳐 본원에 입원했던 행려환자이다. 경찰의 ‘행려환자인계송부서’와 ○○의료원의 ‘소견서’ 및 부산진구청장의 입원동의서가 있다. 입원 후 신원이 확인되어 모두 퇴원한 상태이다. 행려환자 입원경로는 ○○의료원, 경찰서, 타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원 즉시 진료담당과장의 각종검사 및 진단결과에 따라 입.퇴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할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고, 행려환자의 신원파악을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위해 관할경찰서 및 행려환자 발생지역 구청에 의뢰, 신원파악 이후 보호자 확인 시 퇴원조치 또는 가족입원동의에 의해 입원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주장처럼 임의로 행려환자를 만들어 부당하게 입원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신과전문의가 진단하지 않고 정형외과 또는 내과전문의가 진단하여 입원된 행려환자들은 정신과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등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되는 등의 이유로 퇴원하거나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병동에 입원된 경우이고, 행려환자 입원 시에는 해당 구청 등에 보호의무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각 구청에서는 정신과용 서식만을 인정하여 정형외과 또는 내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동의서를 사용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다.

박○○의 경우는 2006. 3. 26. ○○의료원에서 전원, 진단결과 치매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 차트 기록 확인 결과 주민등록증 있어 유선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 말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관할구청에서 가족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문채취, DNA검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다. 향후 본원에서도 행려환자의 가족을 찾는데 행정을 집중하겠다.

행려환자들의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일부 환자는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했고, 일부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일반병동과 정신과병동의 전실 관계 등으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5)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병원장 : 김○○은 술 마시고 식사도 안하고 모친을 폭행하고 용변도 가리지 못해 모친이 전혀 통제할 수 없어 입원하게 된 것이며, 본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격리 및 강박을 시키고 있고 격리 및 강박일지를 작성 하고 있다.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이고 김○○ 진료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06. 11. 5. 조○○ 보호사가 김○○ 환자에게 맞아 실명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원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 산재로 처리했다.

다. 참고인 주장(재원 환자 박○○외 6명)

이○○의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피진정병원과 애

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이○○이 병원의 불만사항을 얘기하자 보호사가 전화를 차단한 적은 있다.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피진정병원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퇴원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환자입원 통지서와 계속입원심사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적도 없다. 전화는 주 1회 가족에 한해 통화가 가능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 실태조사 이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공중전화 카드도 각자 가지고 있다.

2006. 6.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그 때 피진정병원에서 환자들을 별관으로 빼들려 숨겨 놓은 것은 사실이다. 각 병실에서 2-3명씩 환자들을 불러내어 40-50명 정도가 별관에서 3시간 정도 있었다. 그래서 환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310호 옆의 비상구계단을 잠그고 차단시켰다. 그 당시 진술인도 별관에 갇혀 있었다.

진○○, 김○○이 어떻게 입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진술인의 경우는 술을 마시고 노상에 있었는데 경찰이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가져와서 왔고, ○○병원에서 있다가 다른 병원을 거쳐 이 병원으로 왔다. 퇴원하면 살던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퇴원시켜 주지 않고 있으며 외출이나 외박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원조회 절차는 없었다. 격리 및 강박은 입원시 및 병원규칙을 위반했을 때 주로 시행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실지조사(2007. 3. 7./ 4. 18.),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는 비자발적 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퇴원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일률적으로 주 1회로 제한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의 진정함 실태조사 이후에는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는 2007. 3. 7. 현재 257명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바, 허가 병상수(180병상) 및 정신과전문의(2명) 대비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고 있으며, 1310호(15명), 1315호(12명), 1316호(12명), 1318호(12명), 1319호(14명), 1320호(18명) 등 1실 10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병실도 6개나 되었다. 피진정병원은 2007. 4. 16. 정신과전문의 1명을 더 채용하였다. 사상구보건소는 2006. 6. 21.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 이 있고, 그 당시 피진정병원에서는 각 병실에서 일부 환자들을 모아 약 40-50명 정도의 환자들을 별관에 있는 병동으로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 2007. 3. 7.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시 2006. 6.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진정병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진○○는 2006. 6. 8. 부산진경찰서 성지지구대 소속 경장 신○○에게 행려자로 발견되어 부산의료원을 거쳐 같은 날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신과전문의 진단과 부산진구청장의 동의로 입원되었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8. 5.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신원확인 후 같은 날 퇴원한 것으로 간호기록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은 2006. 6. 11. 부산진경찰서 양정지구대 소속 경사 황○○에게 행려자로 발견되어 부산의료원을 거쳐 같은 날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신과전문의 진단과 부산진구청장의 동의로 입원되었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8. 7.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신원 확인 후 같은 날 퇴원한 것으로 간호기록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진정서에 있는 위 두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부산진구청의 사실 조회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다른 행려환자의 입원동의서 및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피진정병원은

(가) 김○○ 등 6인에 대하여 응급입원 시 의사동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사실이 다음과 같이 인정되고,

순번	성명	입원일	입원동의 의뢰일	구청 입원동의일	비고
1	김00	05.2.12.	05.2.19.	05.3.9.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2	나00	05.4.21.	05.4.22.	05.5.6.	행려환자인계서(유), 의사동의(무)
3	손00	05.2.6.	05.2.19.	05.3.9.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4	안00	04.2.26.	04.2.28.	04.2.26.	행려환자인계서(유), 의사동의(무)
5	정00	05.11.19.	05.11.21.	05.11.19.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6	정00	04.5.17.	04.5.20.	무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나) 서○○ 등 4인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킨 사실이 다음과 같이 인정되고,

순번	성명	입원일	입원동의 의뢰일	구청 입원동의일	비고
1	서○○	05.12.29.	06.1.3.	06.1.12.	○○병원에서 전원
2	이○○	06.1.27.	06.2.1.	06.1.	○○병원에서 전원
3	이○○	05.5.12.	무	무	○○병원에서 전원
4	정○○	06.6.17.	06.6.19.	무	○○병원에서 전원

(다) 김○○ 등 3인에 대하여 응급입원 이후 72시간이 훨씬 경과한 후 입원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인정되고,

순번	성명	입원일	입원동의의뢰일	구청입원동의일
1	김○○	05.5.23.	05.5.31.	05.6.20.
2	김○○	05.2.12.	05.2.19.	05.3.9.
3	김○○	05.5.21.	05.5.31.	05.6.9.

(라) 공○○ 등 5인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순번	성명	입원일	입원동의 의뢰일	구청 입원동의일	비고
1	공○○	06.6.28.	06.6.28.	06.7.6.	입원동의서 가정의학과전문의 박○○ 진단(직장암 의심), 연세구청장 동의
2	규○○	05.3.6.	05.3.8.	무	입원동의서 내과전문의 김○○ 진단(당뇨 및 폐렴 증상), 동구청장 동의
3	손○○	05.2.6.	05.2.19.	05.3.9.	입원동의서 정형외과전문의 황○○ 진단(좌대퇴골 골절 등), 사상구청장 동의
4	이○○	05.5.12.	무	무	입원동의서 없음
5	정○○	05.2.16.	05.2.19.	무	입원동의서 내과전문의 김○○ 진단(폐렴과 경련성질환), 중구청장 동의

또한 행려환자의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 등 8인에 대해서 총 10회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성명	입원일자	계속입원 심사청구 누락				비고
			07.1.	*	*	*	
1	공○○	06.6.28.	07.1.	*	*	*	1회 누락
2	김○○	05.2.12.	06.2.	06.8.	*	*	2회 누락
3	김○○	05.5.23.	06.5.	*	*	*	1회 누락
4	안○○	04.2.26.	06.7.	*	*	*	1회 누락
5	이○○	05.6.27.	05.12.	*	*	*	1회 누락
6	임○○	05.7.4.	06.1.	*	*	*	1회 누락
7	정○○	05.2.16.	05.8.	07.2.	*	*	2회 누락
8	정○○	05.10.5.	06.4.	*	*	*	1회 누락

그리고 이○○은 2004. 12. 22. 배우자 조00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알코올의존증 등)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강제입원 되어 생활하다가, 2006. 10. 16. 퇴원초치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진정인 김00은 2006. 12. 13. 모 서○○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김○○의 진단(습관 성 폭음, 행동장애 등)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가 같은 달 19.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격리 및 강박에 관한 기록은 간호기록지 및 격리 및 강박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격리 및 강박일지에는 ‘만취상태로 공격적,폭력적 행동하여 자.타해 우려가 있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의 수면방해 등’을 이유로 당직의사 김○○의 지시로 12. 13. 20:40부터 격리 및 강박(4포인트)했다가 12. 14. 04:00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30분 단위로 혈압 및 맥박을 체크한 기록은 있지만, 사지운동을 시켰다는 기록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일지에는 격리 및 강박의 시행과 해제에 관한 기록은 있지만 정신과전문의 지시에 관한 기록은 없음이 확인된다. 진료기록상 처방일자 및 처방명에는 단지 12. 13. R/T(Restraint)라는 기록은 있지만 해제에 관한 기록은 없음도 확인된다.

격리 및 강박과 관련 병동규칙에는 위험물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호실에 억제, 동료환자를 구타하거나 괴롭히면 보호실에 일정시간 격리하고 그 행동이 계속되면 시간이 연장, 남성 환우 여성 환우의 접촉 또는 병실 출입 시 치료팀이나 환우에게 폭력 또는 폭언시 경고 및 보호치료 등의 내용이 있음이 확인된다.

6) 기타

작업치료 관련 : 피진정병원에서는 배식, 거동 불편한 환자에 대한 간병, 청소, 봉투작업 등 환자들에 대해서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별 통장이 아닌 장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상구보건소의 지도,감독 관련 : 정신과전문의 인원 부족(1명 부족)에 대해서 2004. 5. 시정명령, 2005. 5.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1,125천원) 및 고발을 한 바 있고, 지도점검은 2005. 8. 1회, 2006. 6. 및 12. 2회 실시하여, 12.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1실 입원환자 정원초과에 대해서만 2007. 1. 경고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6조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강제로 입원된 환자에 대해서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계속입원심사결과에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포함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6조 및 제24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피진정인 김○○과 최○○은 이미 피진정병원에서 퇴사한바, 이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며 제한 사유 및 내용을 포함한 시행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일률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고, 제한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내지 통신의 자유(제18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위 조항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의 진정함 실태조사 이후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고, 1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는 경고, 사업정지 등을 거쳐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병원의 감독기관인 사상구보건소는 정신과전문의 인원 부족에 대해서 2004. 5. 시정명령, 2005. 5.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및 고발을 했고, 1실 입원환자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2007. 1.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피진정병원에서는 2007. 3. 7. 현재 257명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어 허가병상수 및 정신과전문의 대비 모두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2007. 1.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1실 10인의 정원을 초과하는 병실도 6개나 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및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정신보건법」 제12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병원에서는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환자를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진정병원에서는 2006. 6. 21. 사상구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진정한 이○○ 등 5인의 환자들이 2006. 6.경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과도한 환자 입원을 속이기 위해 피진정병원이 대략 40~50명 정도의 환자들을 별관에 숨기고 잠금장치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보면, 2006. 6. 21. 사상구보건소 지도.점검 시 피진정병원은 입원환자 인원을 속여 행정처분 등을 면하기 위해 수십 명의 환자들을 별관으로 빼돌린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사상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사상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병원에서 김○○외 5인(나○○, 손○○, 안○○, 정○○, 정○○)에 대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응급입원을 시킨 것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제3항 내지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 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 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 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김○○외 2인(김○○, 김○○)에 대해서 72시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기 위해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입원동의를 요청한 것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병원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응급입원이 아닌 타 정신병원에서 전원 된 행려환자 서○○의 3인(이○○, 이○○, 정○○)에 대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시키고 그 이후에 구청장에게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를 요청한 것은(이○○의 경우는 입원동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정신과전문의가 진단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병동에 입원한 경우이고 행려환자 입원 시에는 해당 구청 등에 보호의무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입원동의서 양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려환자를 입원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구청에 보호의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입원동의서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환자가 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정신보건법령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과 또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입원동의 절차를 밟은 것은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공○○, 규○○ 손○○, 정○○은 최초입원 시 내과 또는 정형외과를 주과로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취보면, 고의성이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단, 공○○의 경우 최초입원 시(2006. 6. 28.)에 내과를 통해 일반병실로 입원했

다 하더라도 같은 해 7. 18. 간호기록지를 보면 담당 주치의 박○○(가정의학과전문)이 환자 면담 후 정신과병동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명백히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과병동에 입원시킨 경우라고 판단된다.

행려자를 일반병동에 입원시켰더라도 그 후에 정신과병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원조치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경우 입원 당일 정신과전문의 김○○이 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정신과에서 내과로 전과된 사실을 볼 때, 최초입원 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를 거치지 않고 강제입원을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규○○과 정○○의 경우도 2005. 9. 16.과 2005. 4. 14. 각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신과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과병동으로 옮긴 공○○,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입원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규○○, 이○○, 정○○의 경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받은 것이고,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내과 또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입원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한 사상구청장의 3인의 구청장(연제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은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은 행려환자들의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안○○의 7인의 행려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행려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반병동과 정신과병동과의 전실 관계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환자명단, 입원동의서, 계속입원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별지2]와 같이 공○○ 등 16인은(공○○과 정○○의 경우는 입원동의 절차 없이 2006. 7. 18. 및 2005. 4. 14. 각 정신과병동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시기부터 계속입원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정신보건법」의 응급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를 하여 강제입원 된 상태였기에, 단지 정신과 병동과 일반병동과의 전실을 이유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입원된 환자들이 계속입원심사를 통해 퇴원의 가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경우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 행려환자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진정병원은 행려환자 최초 응급입원 시 및 보호의무자(구청장 등)에 의한 입원전환시 필요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입원시켰으나, 감독기관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의해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고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한 사상구청장의 타 구청장들(연계구청, 동구청, 중구청등)도 법적, 치료적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광역시 역사의 경우 행려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가 여러 차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행려환자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의 조속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진○○, 김○○의 경우와 이○○과 관련된 진정내용은 당사자들이 이미 퇴원을 한 상태이고 진정인의 주장이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입원시 및 병동규칙을 위반했을 때 격리 및 강박을 당한다는 재원환자들의 진술,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격리 및 강박하면서 의사의 지시가 누락되거나 사지 운동 등을 시키지 않는 사례 등을 볼 때, 피진정병원에서는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기타

가) 작업치료 관련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작업치료의 절차와 기준, 내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작업치료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도록 적용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는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는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배식, 거동 불편한 환자 도우미, 청소, 봉투작업 등 환자들에 대해서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별 통장이 아닌 장부상으로 임금을 관리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지도.감독 관련

「정신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상구보건소는 2004. 2005. 2006.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의료인수 부족과 1실 병실 인원 초과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고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지만, 피진정병원의 다른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정신보건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적절히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거 권고하기로 하여, 피진정인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병원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등에 따라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 등을 하고, 진정요지 나.의 부당한 전화제한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라.중 진○○, 김○○, 이○○과 관련된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원 정인섭 위원 정재근

[별지 2]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등 관련 현황

순번	성명	입원일자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및 지연시기			
			06.12.	*	*	*
1	공○○	06.6.28.	06.12.	*	*	*
2	김○○	04.12.10.	05.5.	05.11.	06.5.	06.11.
			07.5.	*	*	*
3	김○○	05.2.12.	06.1.	06.7.	07.3.	*
4	김○○	05.5.23.	06.4.	06.10.	07.4.	*
5	김○○	05.11.11.	06.11.	07.5.	*	*
6	김○○	05.9.26.	06.11.	*	*	*
7	서○○	05.12.29.	06.5.	06.11.	*	*
8	안○○	04.2.26.	06.7.	07.3.	*	*
9	이○○	06.1.27.	06.12.	*	*	*
10	이○○	05.11.2.	06.12.	*	*	*
11	이○○	05.7.29.	07.2.	*	*	*
12	이○○	05.6.27.	05.11.	06.5.	07.5.	*
13	임○○	05.7.4.	05.12.	07.2.	*	*
14	정○○	05.2.16.	05.9.	06.3.	07.3.	*
15	정○○	06.6.17.	06.11.	07.5.	*	*
16	정○○	05.10.5.	06.3.	06.8.	07.2.	*

3 2007.10.8자 06진인2621 결정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 97명의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키고,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11명의 행려환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 및 가족들을 기망하여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 [2] 김○○외 11명의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 [3]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입·퇴원 관련사실을 허위 기재한 사실과 의료비 부당 청구 및 부당 징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경고조치를 취하고 감독 관청에서는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 서면통지의무 위반, 환자 권리 미고지, 계속 입원심사청구 누락, 과도한 CCTV 설치, 부당한 전화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 환자에 의한 감시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최초 입원시 및 계속입원심사청구시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이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을 시키거나 계속입원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제10조), '신체의 자유' (제12조), 「정신보건법」 제 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것이고 신원불상의 행려환자들의 경우, 법적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여러 환자들을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켜 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제12조) 등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6조 등을 위반한 것이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장기간 인신을 구속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헌법」 제276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2]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수실팀에서 수백일에 이르는 상당기간 동안 불법적인 감금상태에서 입원을 당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아래 김○○의 11명에 대해서는 불법 입원기간 동안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 [3] 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퇴원 및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제10조) 및 ‘신체의 자유’ (제12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 [4]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병실 및 화장실(샤워실) 등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용변모습과 샤워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그것을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5]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을 그룹화 시켜서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2주 1회로 제한한 것은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6] 작업치료가 정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기보다는 피진정병원의 운영 편의(인건비 절감 등)를 위하여 사실상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가능한 입원 환자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을 대가로 동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 [7] 환자에 대하여 임의대로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보건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 [8] 퇴원 이후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한달 단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 요법 시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기록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점,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청구한 점, 병원 입원비에는 이불교환, 환의교환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부담 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그동안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이불 및 환의 세탁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점은 의료비 부당 청구 및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의무 없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준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 [9] 파주시보건소는 2005.부터 2007.까지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와 같이 지적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등의 위반사항을 전혀 적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신보건법」 제2조,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형법」 제276조, 「작업치료지침」(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대표 이○○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강○○의 97명의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키고,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들에 대해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김○○의 11명의 행려환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 및 가족들을 기망하여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고발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김○○의 11명의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김○○의 진료기록부 등에 입·퇴원 관련사실을 허위 기재한 사실과 의료비 부당 청구 및 부당 징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감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경기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하여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파주시장과 시흥시장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5. 파주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파주시보건소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6.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 서면통지의무 위반, 환자 권리 미고지, 계속 입원심사청구 누락, 과도한 CCTV 설치, 부당한 전화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 환자에 의한 감시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7. 환자 사망 은폐와 관련된 진정내용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환자 사망 방치 및 은폐 문제

나. 부당한 입.퇴원 문제

다. 부당한 처우(과도한 CCTV 설치, 전화제한, 작업치료, 소모품비 및 식대, 환자에 의한 감시 등) 등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 2~3년간 입원했다는 황○○이 2006. 10. 중순경 토요일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 환자는 치매병동과 일반병동을 옮겨 다녔고 간병은 알코올 환자인 이00가 했다. 사망하던 날 간호사 및 보호과 주임은 환자들과 화투를 했다.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각 병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측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에서는 이○○에게 그 환자가 살아서 후송 되었다고 말하라고 했고 그러면 담배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입원 및 퇴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병원이므로 조사가 필요하다. 진정인의 경우도 세차 등을 할 수 있다며 몇 달 더 입원하라고 권유를 받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은 적 있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환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각 병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전화통화에 대한 제한과 검열이 심했으며, 환자들이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봉투작업등 작업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작업비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루고 있으며(작업비는 월 말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달씩 밀려서 지급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의 간병을 담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소모품비로 한달에 5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역에는 환자복과 침구류 세탁비로 42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법이 개정되어 식대는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 후에도 전과 같이 15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변함없었다. 그리고 소모품비가 밀려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환자가 환자를 감시토록 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매일 보고토록 했다. 방장제도가 있어 방장이 방을 통솔하고 환자들의 상태 및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매일 기록하여 병원에 제출했다. 그 외에도 피진정병원은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이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2005. 6. 1. 노상에서 발견되어 행려자로 입원, 빈혈이 심했고 전반적으로 노쇠한 상태여서 치료진이 특히 주의를 기울인바 있다. 사망 며칠 전인 2006. 10. 8. 앓아 있다가 앞으로 넘어져 눈 밑에 외상을 입어 외진을 다녀왔고, 사망 당일 점심식사 후 입술이 마르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상태 악화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의식이 희미해져 파주 소재 00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망 1주일 전부터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오지 않았고 사망 당일 22:00경 자녀 등이 와서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경상도에 살아서 오지 못했다는 말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도 했다. 그 이후 가족들이 본원을 방문한 적은 없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가) 장○○ 입원 관련

장○○는 본원에 2004. 11. 17.부터 2005. 1. 25.까지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로

친동생이 재차 입원상담을 의뢰하여 2007. 3. 19. 다시 입원한 것이다. 장○○는 알코올 문제로 10년 전부터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본원의 입원 치료 후 다시 음주를 시작하여 모친에게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친동생이 보호의무자로 입원을 한 것이다. 재입원한 환자라서 보호자의 적격여부를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형제의 입원동의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모친의 동의를 필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퇴원심사청구를 했지만 계속입원으로 결과가 통보되었고, 2007. 6. 12.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퇴원해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나) 김○○ 입원 관련

김○○는 부친과 형제들을 위협하고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가족과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아동학대상담소에서 입원의뢰 된 환자이다. 2004. 1. 9. 입원하여 파주시장에게 동의요청을 했고 1. 20.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1. 14. 둘째 누나가 보호자로 나서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했다. 누님과 면회를 하면서 갈등이 표출, 가족들이 환자를 두려워했다. 가족들이 면회를 장기적으로 오지 않자 환자가 치료에 비협조적으로 변해 2006. 1. 6. 진료과장이 퇴원조치 했으나, 그날 가족들이 방문하여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소하여 당일로 조건부 재입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환자가 가족을 원망할까봐 입원동의서에는 매형이 서명한 것이다. 같은 해 6. 23. 퇴원경위는 복숭아 뼈에 물이 차서 00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해서 퇴원조치를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술 후 바로 재입원을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퇴원심사청구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퇴원 명령이 내려져 2007. 6. 23. 퇴원했고 현재는 외래치료를 하고 있다.

다) 김○○ 입원 관련

김○○는 2005. 9. 23. 행려자로 발견되어 입원조치 된 자인데, 그 당시 시흥시청에 입원동의를 요청하지 못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이다. 그 후 보호자 확인되어 2006. 2. 1. 시흥시청에서 행려환자 누락을 통보, 보호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입원동의서가 누락된 것이다.

라) 배○○ 계속입원심사 누락 관련

2004. 7. 5. 입원한 배○○은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아 2006. 9. 6. 1회 작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누락된 것이다.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마) 행려환자 입원 관련

박○○, 유○○, 곽○○, 김○○은 신병인수증이 있지만 유○○은 파주시청의 의뢰로 직접 이송하여 신병인수증 없고, 이○○도 파주시 금촌동사무소에서 의뢰하여 직접 이송해서 신병인수증이 없다. 안○○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전원되어 따로 신병인수증 받지 않았다. 김○○은 2006. 3. 15. 입원했다가 5. 29. 00병원으로 응급 외진차 퇴원되었다가 6. 1. 재입원하는 관계로 신병인수증이 없다. 김○○, 최○○, 무명남은 행려로 발견되어 지자체를 통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응급이송단을 통해 이송된 경우는 지자체에서 본원에 응급상황을 알리고 긴급후송을 요청하여 본원에서 부득이 응급이송단에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구하지 못했다.

바) 서면 통지 의무 등 관련

보호자들이 고지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고 환자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 향후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적절히 시행조치토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후 환우분들께 일괄적으로 입원 통지서를 발급해 통지했고, 이후에 입원하는 분들에게는 입원 즉시 통보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가) 과도한 CCTV 설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샤워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철거하여 환자 인권보호에 더욱 유의하고 있다.

나) 전화제한 및 진정함 등 문제

기준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화기를 간호사실에 비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병동내에 변경 설치하였다. 2006. 1.경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사건으로 조사를 나온 바 있는데, 그 때 건의함을 설치 및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환우들 이 자유롭게 불편사항 등을 무기명으로 건의함에 제출하면 그에 알맞은 조치를 취해 개선하여 왔다. 진정함 설치 및 진정절차에 대한 고지 의무는 몰랐다. 향후에는 진정함 설치 및 안내문을 붙여 고지토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진정함을 병동의 중앙에 설치, 진정함이라는 명칭을 부착하고 필기도구를 비치했으며 환자들에게 공지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시 환자들과의 면담내용을 직원들이 환자들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주의토록 하겠으며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회수한 경위는 처음에는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다가, 2007. 5. 8.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관물함 검사시 회수하여 차트에 붙여두었던 것이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 작업치료 문제

대부분이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분들로 통장을 보호자들이 거의 보내주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들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통장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적립된 작업비를 매월 고지하고 서명을 받아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간식비로 대체하여 쓰는 경우도 많다. 퇴원시에는 당월 작업한 금액을 익월에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바로 정산을 못하고 후에 계좌 이체하여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개인별 통장관리가 원칙이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환자 본인이 동의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적립 후 일괄 지급도 가능하다고 답을 듣고 적립 후 퇴원 시나 본인이 원할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개인별 통장관리가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 소모품비 및 병원비 문제

소모품비로 개인별로 월 5만원을 받고 있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지하지는 않고 있다. 식대와 관련하여 본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환자에 의한 감시 문제 등

본원에서는 개원 시부터 방장제도는 없었으나, 환자들 사이에서 서열을 가려 방의 대표를 방장이라 부르고 따르는 분위기가 몇 차례 감지되어 2006. 2. 3. 공식적으로 환자 및 직원들에게 공지한바 있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여러 만성병원의 입원 경력으로 음성적으로 방장 체도를 운영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를 주고 방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신 본원

에서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치료 과정을 돕고 불편한 환자들을 돕는 '도우미' 제도가 있다.

다. 참고인 주장

윤○○ 등 40명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자 사망 방치 및 은폐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이상해져 간호사가 왔으나 소용없었다. 사망 당일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사망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 후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들도 왔다고 들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5~6명이 승용차 2대를 타고 와서 병원 정문 입구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그 광경을 못 보도록 했다. 피진정병원에서 자녀에게 부친이 사망했는데 시신을 안치할 수 없어 ○○병원으로 안치했다고 연락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렀다. 유족들이 피진정병원에 항의하거나 시위를 한 적이 없다. 사망원인에 대해서 따질 경향이 없었고 그것으로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2) 부당한 입.퇴원에 대하여

2007. 3. 19. 10:00경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이 신발을 신고 방까지 들어와 모친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피진정병원까지 끌고 갔다. 집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니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는데, 경찰과 얘기가 되었다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고 도망가는 것을 우려하여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병원까지 와야 했다. 동생과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같이 산 적이 없는데, 동생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었다. 입원동기는 2년전 사망한 부친의 재산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속문제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 있는데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아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퇴원하고 일을 하면서 부친이 받을 돈을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

2004. 1. 9. 입원했고 매형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다. 병원에서는 입원 초기 7개월 정도만 있으면 매형이 퇴원시켜 줄 것이라고 했는데 연락이 끊긴 지 8개월 정도 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한 번도 퇴원한 적이 없고 외출 및 외박도 나간 적이 없다. 그런 기록이 있다면 사실이 아니라 다 허위기재를 한 것이

다. 자의입원 한 사실 모르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기를 원한다.

3) 소모품비 및 의료비 부당 징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는 가족들이 생활용품을 사줄 수 없고 무조건 소모품비로 매월 5만원을 받는다. 그 내역은 이불, 환의, 치약,칫솔, 비누, 양말, 속옷, 수건, 휴지 등 생활필수품이 다 들어간다. 하지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보 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료보험에 식비가 포함된 이후인 2006. 10. 입원시에도 식비로 15만원을 더 수납했다. 피진정병원은 입원시 검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받았지만 검사한 것은 없었고 입원비 수납시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수납했다. 2006. 5.에 수납한 식비 15만원 중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알코올 모임과 종이접기, 붓글씨 프로그램에는 참여했지만 산책은 전혀 하지 못했다. 산책을 하는 이들은 총방장이나 직업을 많이 하는 이들이다. 진술인은 한번도 그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다. 산책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4)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전화는 주 1회 가능한데 보호사가 옆에서 대기한다고 들었다. 전화는 2주에 1회 허용되는데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 전화는 매월 1회 할 수 있으나 전화할 곳이 없다. 전화할 때 간호사 또는 보호사가 옆에 있고 동전도 5백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중전화가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실 내에 있고 그것도 보호사들이 전화를 해주고 퇴원예기 등을 하면 임의로 끊어버린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후에 테이블을 간호사실 밖에 설치하여 전화기를 꺼내 놔으나 그것도 며칠만에 다시 원래대로 간호사실내로 다시 들여보냈다. 한마디로 통제가 너무 심하다. 면회시에는 직원들이 입회하고 있고 편지는 간호사실에 주면 열람 후 발송한다고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고 2007. 9. 21. 현재에도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5)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쇼파백 접기는 원하는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고 평일에는 7~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작업비는 5등급으로 나눠 8천원에서 3만원 정도 받고 있다. 통장은 없

고 간식비로 쓰고 퇴원시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업비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기에 제대로 정산되어야 한다. 작업동의서와 의사지시는 모른다. 보호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를 돌보도록 특정 환자에게 시키고 있는데 대가로는 담배 2개를 더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부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쇼팽백 작업과 관련해서, 작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보호사들이 강요하며 빨리 마치도록 중요하고 있다. 그래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저녁식사 이후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피진정병원에서 환자 2명을 돌봤고 배식과 쇼팽백 작업을 했다. 형식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병원에서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거절을 못했다.

여러 환자들이 간병인, 세차, 청소, 텃밭, 세탁,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병동의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작업비는 하는 일에 따라 다르지만 1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장은 없고 장부로 관리한다.

사회복지팀에서 작업치료를 주관하고 있다. 병동에서 치료팀(주치의 및 간호사 등)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본인의 희망과 동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추천을 하면 사회복지팀에서 진행한다. 동의서 및 작업비에 관한 서류 이외에 작업일지 및 작업평가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

노인병동에 입원환자는 27명으로 모두 간병인이 돌봐준다. 간병인 비용으로 월 40만원을 받고 있지만 형편에 따라 덜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환자권리 미고지 등에 대하여

환자입원통지서, 계속입원심사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고 퇴원·처우개선심사에 대해서도 알려준 적이 없다. 2007. 5. 1.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후에 엄청 시달렸다. 병원측에서 그날 면담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관과 대화한 내용이 무엇이었나를 확인했고 각 병실을 검사했다. 그리고 환자기록들을 박스에 담아서 며칠간 다시 정비를 했다. 진술인의 경우 보호사 윤○○이 병동에 있는 방으로 불러 용지를 줄테니 대화내용을 적으라고 했다. 그래서 생각나면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얘기할 것을 종용했다. 김○○은 조사관이 적어준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 메모지를 빼앗았다. 방을 검사하여 임의로

보관하겠다고 가지고 갔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이 왜 전화하려느냐고 하면서 아예 전화를 못하게 했다. 김○○는 다른 환자들과 대화를 못하게 했다.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불러 진술인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등 물어서 진술인이 엄청 힘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시에 장○○에게 적어준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 메모지를 병원측에서 빼앗은 것은 사실이고 장○○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며 못하게 한 것 또한 사실이다.

7) 환자 감시에 대하여

그 전에는 방장이라고 했고 지금은 도우미라고 병원에서 명칭을 바꿨지만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총 도우미를 한 경험이 있다. 병실마다 도우미가 있고 그들이 환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보호사들이 환자들 중에 임의대로 몇명을 정하여 병원측에 불만을 얘기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쪽지에 적어 제출토록 하고 있다. 마치 프락치 같은 역할을 시켜 환자들 서로가 불신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환자가 환자를 감시하고 있다. 환자들이 다툼 경우 병원측에 얘기하는 환자가 있어 다툼 환자들은 격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병원측에서 환자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여 담배를 중지 당하거나 보호실에 격리되기도 한다.

8) 부당한 격리·강박에 대하여

한 병실에 20여명이 있고 말 듣지 않으면 보호실에 가두고 때린다는 얘기도 들었다. 격리 및 강박은 병동규칙이 있어 그것을 어기면 격리 및 강박을 당한다. 사소한 일 에 대해서도 격리 및 강박을 시킨 적이 있다.

3.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실지조사(2007. 5. 1./ 7. 24./ 9. 21.),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황○○의 입원동의서 및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황○○은 2005. 6. 1. 주소지가 상이한 자부 윤○○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 최○○의 진단(schizophrenia)에 의해 입원되었음이 확인되고, 2006. 10. 14. 상태 악화로 파주 소재 ○○병원으로 긴급후송,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입원기간 동안 가족들과 면회(2005. 9. 30.) 및 전화(2006. 5. 9.)는 각 1회로 기록되어 있고, 병원측에서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증상 등에 대해서 연락을 취한 횟수는 5회(2006. 6. 23./ 9. 19./ 9. 29./ 10. 12./10. 13.), 연락된 경우는 3회(9. 19./ 9. 29./ 10. 13.)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가) 입원시 및 계속입원심사청구시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명	입원일	보호의무자	비고
문○○	06. 12. 5.	이○○	시설장
이○○	07. 3. 8.	박○○	시설간호사
이○○	05. 7. 26.	이○○(큰아버지)	주소지 상이
정○○	06. 12. 14.	정○○(누나)	주소지 상이
이○○	07. 3. 2.	장○○	친구
김○○	05. 11. 1.	허○○	친구
장○○	04. 6. 14.	장○○(동생)	주소지 상이
조○○	04. 11. 8.	정○○(매형)	주소지 상이
배○○	04. 7. 5.	김○○	원장

행려환자의 경우 경찰관 또는 의사의 동의가 없이 응급입원을 시킨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수십일에서 수백일 동안 불법입원을 시킨 후에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별지2] .

입원통지서 및 계속입원심사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퇴원심사청구 등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병원 및 파주시보건소에서 제출한 2003.부터 2007. 5.까지 계속입원심사

청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3] .

나) 장○○의 입원과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후송일지에는 후송장소 자택, 후송일시 2007. 3. 19., 후송의뢰인 장○○(동생), 후송사유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후송, 후송인 보호과 직원 김○○, 김○○ 이○○으로 기록되어 있고 후송시 상황으로 “보호자의 후송 요청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진료의뢰를 드렸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환자와 치료자 간 실랑이가 생겨 보호자에게 환자가 거부하는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진료의뢰를 재차 부탁하여 도로에서 태워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친구 분이 있어 다시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 분과 멀리 떨어진 상태였고 바로 뒤따라 병원으로 내원했다. 차 안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입원동의서에는 동생 장○○이 보호의무자로 동의를 했고, “지나친 음주, 폭력적 행동, 심한 감정변화와 같은 증상으로 평가 및 치료 위해 입원 필요”라고 정신과전문의 김○○의 입원권고 의견이 있고,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호적등본을 받았으며,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2007. 6. 12. 퇴원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김○○의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일과 입원동의서의 진단일이 상이하고 보호의무자는 누나, 파주시장, 매형으로 되어 있으며, 2회에 걸쳐 퇴원 당일 다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퇴원명령을 받고 2007. 6. 23. 퇴원했음이 확인된다.

구분	최초입원		퇴원	1차 재입원	퇴원	2차 재입원	퇴원
	04.1.9		06.1.6	06.1.6	06.6.23	06.6.23	07.6.23
진단일	04.1.14	04.1.20	*	06.1.6	*	06.6.23	*
보호의무자	누나	파주시장	*	매형	*	매형	*
			*		*		*

2003. 7. 21. 1년 만기로 농협에 정기예탁금으로 천만원을 예치한 사실 있고, 2005. 6. 24. 개설된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에는 매월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어 2007. 3. 28. 현재 약 1,34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가) 과도한 CCTV 설치 문제

2병동 16대, 3병동 16대, 5병동 9대, 6병동 9대 등 총 50대를 화장실, 병실, 복도, 격리실 등에 설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용변 및 샤워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샤워실)의 CCTV는 철거했지만 격리실의 화장실에는 차폐막이 없어 용변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2007. 8. 14. 격리실내 화장실에 차폐막을 설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했다.

나) 전화제한 및 진정함 등 문제

피진정병원에서는 A.B.C로 환자들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A.B등급은 담배·전화·면회·외출 가능하며, C등급은 담배·전화·면회·외출 등을 제한하고 있음. 월 1회 행동 수정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감점내용을 2점에서 -5점까지 세부화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007. 7. 24. 현재 A그룹은 47명, B그룹은 88명, C그룹은 103명이고, B 그룹에 자의입원자 2명(유○○, 김○○)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공중전화는 간호사실 내에 설치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에 간호사실 밖으로 설치했음을 확인하는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2007. 9. 21. 국가인권위원회의 추가 실지조사시 확인한 결과 여전히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진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진정함의 경우도 건의함과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진정함과 안내문을 별도로 설치했음을 확인하는 사진을 제출했다. 단, 2007. 5. 1. 실지조사 이후 장○○가 소지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호사가 임의대로 빼앗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작업치료 문제

진정인의 입.퇴원 기록 및 작업비 입금 기록, 병원규칙 및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에 의하면 작업비가 몇 개월씩 지연되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치료는 피진정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주관하고 있고, 환자들을 5등급으로 나눠 봉투작업, 간병, 주방, 주방보조, 원예, 청소, 세차, 세탁 등에 참여시키고 있고, 개인별 통장은 없고 장부로 관리하고 있으며(피진정병원은 2007. 8. 14. 25 명에 대한 통장사본을 제출했다), 봉투작업은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작업

치료에 대해서는 작업일지와 작업평가서 등은 작성되지 않고 있다.

2007. 7. 24. 작업치료자 현황은 [별지4]와 같고, 퇴원자는 병동 밖에서 거주(피진정병원에서는 일명 ‘홀씨’라고 한다)하며, 간병인의 근무형태는 주간 5일 근무 후 야간 3일 근무, 노인병동에는 27명이 입원하고 있고 간병인 비용으로 월 40 만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작업치료자 중 광○○은 2005. 7. 1. / 박○○은 2006. 7. 3. / 윤○○은 2006. 1. 9. / 정○○은 2007. 4. 12. 각각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여 병동 밖 ‘홀씨’에서 거주하며, 피진정병원에서 단지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광○○은 2005. 7.과 2007. 1.~ 4. / 박○○은 2007. 1.~ 4. / 윤○○은 2007. 1.과 3.~ 4. / 정○○은 2007. 4. 12.~ 4. 30.까지 각 피진정병원을 계속해서 내원하여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격리 및 강박 문제

2006. 10. 8. 진정인의 진료기록부(Doctor Progress Note, 격리 및 강박일지, 간호일지)를 보면, 격리와 관련 간호일지에는 의사지시에 대한 기록만 있고 해제에 대한 기록은 없다. 격리 및 강박일지에는 의사지시와 시행시간의 기록은 있지만 종료시간 및 격리시행 세부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Doctor Progress Note에는 아예 10. 8.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2007. 3. 19. 입원된 장○○ 진료기록부에는 PRN으로 ‘Acting out’시 ‘PR실시 후’라는 기록이 있고, 격리 및 강박일지에는 3. 19. 12:30부터 3. 24. 12:00까지 의사(김○○, 김○○)의 지시에 의해 격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의사지시서 및 간호기록일지에는 의사지시에 의한 격리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이 없고 세부내용에 대한 기록도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4. 14. 20:00부터 4. 15. 08:00까지 욕설로 인해 격리시킨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간호기록일지에는 의사지시에 의한 시행 및 해제에 대한 기록이 없고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도 없음이 확인된다.

감점 및 권익체계 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언어폭력’은 격리 12시간(감점 -3), ‘외출.외박 후 귀원시 금지 물품 소지’는 격리 또는 강박 24시간(감점 -2), ‘타인 및 치료진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격리 또는 강박 48시간(감점 -3에서 -5) 등의 감점 및 격리.강박 조치를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소모품비 및 식비 문제

입원환자 모두에게 소모품비로 월 5만원씩을 받고 있지만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는 개인별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소모품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목	가격	품목	가격	품목	가격	품목	가격
티셔츠	10,000원	양말	2,000원	팬티	3,000원	치약	1,500원
칫솔	1,200원	수건	3,000원	면도기	800원	생리대	5,000원
비누	1,500원	필기도구	3,000원	로션	3,000원	휴지	2,500원
이미용	5,000원	물컵	500원	이불세탁	10,000원	환의세탁	2,000원
세제	1,500원	*	*	*	*	*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2006. 2.)」에 의하면 담요 및 환의교환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시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2007. 5.~7.까지 개인별 소모품비 사용내역을 보면 환자들 또는 가족들에게 이불세탁과 환의세탁비로 총 13,068천원(5월 4,248천원/ 6월 4,536천원/ 7월 4,284천원)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식비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진정인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병원 보관용 영수증, 퇴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피진정병원에서는 2006. 6. 1.부터 식비가 의료보험에 적용되기 이전에는 별도로 진정인에게 1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의료보험 적용 이후에는 식비를 추가적으로 받은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의 ‘사업사업과 요업시행 기록지’에 의하면, 2007. 3. 19.~6. 12. 입원기간 동안 산책운동을 총 32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환자 감시 문제

각 병실마다 방장(도우미)이 있고 그 방장(도우미) 중에서 다시 총방장(도우미)을 둔 사실이 인정되며, 방장(도우미) 및 총방장(도우미)은 환자들을 질서 있게 생활하도록 관리와 통제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지도.감독 관련

과주시보건소는 2005.에서 2007.까지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2005.에는 간호사(1명) 및 전문요원(1명) 부족으로 행정조치(경고)를 취했고 2007.에는 정신과전문의(1명) 및 간호사(5명) 부족으로 행정조치(사업정지 8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380만원)를 취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망인 황○○의 진료기록부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병원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피진정병원에서 망인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그 자체가 인신구속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제2조)라고 규정하며 강제입원절차와 강제입원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최초 입원시 및 계속입원심사청구시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이들을(시설장, 시설간호사, 친구, 매형 등)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을 시키거나 계속입원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받았다. 이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및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 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원불상의 행려환자들의 경우,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는 최초 응급입원시 및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시 필요한 법적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여러 환자들을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켜왔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응급입원을 시킨 사례, 수십일에서 수백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사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6조 등을 위반한 것이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장기간 인신을 구속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헌법」 제276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한 파주시장 및 시흥시장의 행위는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수실큤에서 수백일에 이르는 상당기간 동안 불법적인 감금상태에서 입원을 당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아래 김○○의 11명에 대해서는 불법 입원기간 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순번	환자명	불법입원기간	순번	환자명	불법입원기간
1	김○○	약 140일	7	최○○	약 35일
2	백○○	약 110일	8	양○○	약 90일
3	박○○	약 55일	9	안○○	약 110일
4	유○○	약 30일	10	이○○	약 35일
5	김○○	약 130일	11	하○○	약 65일
6	박○○	약 105일	12	황○○	약 450일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입원 당시 환자입원통지서 및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과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및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입원된 환자들이 계속입원심사를 통해 퇴원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에 대한 조항인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그동안 피진정병원이 상당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및 ‘신체의 자유’(제12조)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는 2004. 1. 9.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이후 한 번도 퇴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06. 1. 6. 퇴원 및 입원, 같은 해 6. 23. 퇴원 및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및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가) 과도한 CCTV 설치 문제

입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병실 및 화장실(샤워실) 등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용변모습과 샤워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그것을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시조사 이후 피진정병원은 화장실(샤워실)에서 CCTV를 철거했고 격리실내의 화장실 차폐막도 설치했다는 사진을 제출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생활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한 전화제한 및 진정함 등 문제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며, 제한 사유 및 내용을 포함한 시행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는 권익체계에 따라 환자들을 그룹화 시켜서 일률적으로 전화사용(2주 1 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07. 9. 21. 추가 실시조사 시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바, 이는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원환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장○○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임의대로 빼앗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작업치료 문제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작업치료의 절차와 기준, 내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다만 아무런 강제력도 갖지 않는 「작업치료지침」(2003. 12. 30. 보건복지부)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서 작업치료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 강제노동 또는 과도한 노동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치료를 보면 병원의 정규직원이 수행해야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할 업무영역에까지 작업치료로 환자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업무내용과 성격에 따라 노인병동, 주방, 원예, 세차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과도한 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치료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작업치료라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작업치료 계획,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 작업치료 프로그램 실행과정, 사후평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동의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작업치료의 범주라기보다는 피진정병원의 운영 편의(인건비 절감 등)를 위하여 사실상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가능한 입원 환자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을 대가로 동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작업비 지급 방식도 개인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입금지불내역을 기재하여 합산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정신장애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통장을 개설한 것을 보면 피진정병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동이나 노동력 착취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작업치료의 범위와 시행방법, 평가방법, 특히 작업의 종류와 일일 최대 허용시간, 임금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및 기준,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피진정병원의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문제

위 인정사실과 같이 권익체계 내용으로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 PRN으로 미리 정하고 있는 것, 격리 및 강박일지의 내용과 의사지시서 또는 간호기록일지의 내용이 상이한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대로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보건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소모품비 및 식비 문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06. 2.)」에 의하면 병원 입원료에 위생간호(담요교환, 환의교환, 소독포 교환)와 병실비품(수건, 환의, 시트, 담요, 홀이불 등)이 포함되는 점, 장○○의 경우도 입원기간 동안 산책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총 32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위 광○○의 3명(박○○, 윤○○, 정○○)에 대해서 퇴원 이후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한달 단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병원에서 모든 환자들에게 매일 소모품비로 5만원을 받아 이불 세탁비와 환의 세탁비 등을 공제하고 있는 것과 요법 시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기록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것,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청구한 것은 의료비 부당 청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기관의 특별 감사를 통해 부당 청구한 의료비 환수와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의료비의 환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에서는 의료보험 적용 이후에는 15만원의 식비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6. 5. 22.에 15만원의 식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 1.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남은 식비에 대해서 진정인에게 환불조치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진정인과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보험 적용 이후에도 식비를 추가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병원 입원비에는 이불교환, 환의교환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부담 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그동안 피진정병원에서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을 받았으며, 3개월간의 금액만 하더라도 1천3백만원에 달해 피진정병원이 개설된 2003. 1.부터 그 금액을 추산하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처럼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을 기망하여 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의무없는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고통을 준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형법」 제34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바) 환자 감시 등

피진정병원에서는 방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환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용어는 바뀌었다고 해도 피진정병원에서는 여전히 방장 제도(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며 환자들을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매년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토록 안내 하고 있듯이 즉각적인 폐지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지도.감독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 및 파주시보건소는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감독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보건소는 2005.부터 2007.까지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도 같이 지적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등의 위반사항을 전혀 적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7조에 의거 고발, 법률구조요청 및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의 환자 사망 방치 및 은폐와 관련된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원 정인섭 위원 정재근

(별지2) 행려환자 응급입원 등 위반 현황

순번	성명	입원일	입원동의 의뢰일	시.군.구 입원동의일	비고
1	김○○	06.6.1.	06.10.25.	파주시, 06.6.1.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06.3.15.	06.3.24.	파주시, 06.3.29.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2	유○○	06.6.20.	06.10.25.	파주시, 06.6.20.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3	백○○	06.4.19.	06.8.10.	파주시, 06.10.18.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4	박○○	06.6.12.	06.8.10.	파주시, 06.10.18.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5	유○○	06.7.5.	06.8.10.	파주시, 06.10.18.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6	김○○	05.9.14.	06.1.25.	시흥시, 05.9.14. 및 9.20.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7	박○○	05.10.5.	06.1.25.	시흥시, 05.10.10.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8	최○○	05.7.29.	05.9.9.	파주시, 05.9.14.	○○병원에서전원
9	양○○	05.10.21	06.1.25.	파주시, 05.10.27.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10	안○○	05.10.4.	06.1.25.	파주시, 05.10.27.	○○치료감호소에서전원
11	이○○	05.12.17	06.1.25.	파주시, 05.12.27.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12	하○○	05.11.15	06.1.25.	파주시, 05.11.27.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13	곽○○	06.11.7.	06.11.9.	파주시, 06.11.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14	이○○	06.11.7.	06.11.9.	파주시, 06.11.	행려환자의뢰서(유), 의사동의(무)
15	최○○	04.8.5.	04.8.6.	파주시, 04.8.17.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EMS가이송하여신병인계
16	김○○	04.8.3.	04.8.6.	파주시, 04.8.17.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EMS가이송하여신병인계
17	황○○	05.8.12	동의 의뢰무	입원동의 무	행려환자의뢰서(무), 의사동의(무) EMS가 이송하여 신병인계 입원의뢰 협조 공문만 받고 입원동의를 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이후 07.5.7 .파주시장이 입원 동의함.
		05.9.23			
		05.10.10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별지3)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등 관련 현황

성명	입원일	계속심사청구			계속입원심사미청구시기					미청구횟수
강○○	04.7.9.	06.6.	06.12.	*	04.12.	05.6.	05.12.	*	*	3
강○○	05.7.20.	*	*	*	05.12.	06.6.	06.12.	*	*	3
강○○	06.12.13.	*	*	*	07.5.	*	*	*	*	1
고○○	04.6.25.	03.9.	06.5.	06.11.	04.12.	05.6.	05.12.	*	*	3
구○○	05.11.17.	06.4.	07.4.	*	06.10.	*	*	*	*	1
권○○	06.7.30.	04.10.	*	*	06.12.	*	*	*	*	1
권○○	06.6.16.	06.11.	*	*	07.5.	*	*	*	*	1
김○○	04.4.28.	04.9.	05.3.	06.9.	05.9.	06.3.	*	*	*	2
		07.3.	*	*	*	*	*	*	*	
김○○a	05.11.9.	03.9.	*	*	06.5.	06.11.	07.5.	*	*	3
김○○	06.10.24.	06.10.	*	*	07.3.	*	*	*	*	1
김○○	04.1.9.	04.6.	*	*	04.12.	05.6.	05.12.	06.6.	06.12.	5
김○○	06.8.9.	04.12.	05.6.	05.12.	07.2.	*	*	*	*	1
김○○	03.9.5.	04.2.	04.8.	06.2.	05.2.	05.8.	*	*	*	2
		06.8.	07.2.	*	*	*	*	*	*	
김○○	05.11.1.	05.3.	*	*	06.4.	06.10.	07.4.	*	*	3
김○○	06.8.31.	*	*	*	07.1.	*	*	*	*	1
김○○	06.3.3.	06.8.	*	*	07.2.	*	*	*	*	1
김○○	06.11.13.	03.10.	05.1.	*	07.4.	*	*	*	*	1
김○○	06.5.29.	06.10.	*	*	07.4.	*	*	*	*	1
김○○ (403401)	05.9.14.	*	*	*	06.2.	06.8.	07.2.	*	*	3
김○○a	06.11.21.	05.10.	06.3.	*	07.4.	*	*	*	*	1
김○○	05.10.26.	06.3.	*	*	06.9.	07.3.	*	*	*	2
김○○	05.12.3.	*	*	*	06.6.	06.12.	*	*	*	2
김○○	06.8.30.	*	*	*	07.1.	*	*	*	*	1
김○○	05.4.27.	05.9.	06.3.	07.3.	06.10.	*	*	*	*	1
노○○	06.8.29.	*	*	*	07.1.	*	*	*	*	1
문○○	06.12.5.	*	*	*	07.5.	*	*	*	*	1
박○○	06.5.13.	*	*	*	06.10.	07.4.	*	*	*	2

성명	입원일	계속심사청구			계속입원심사미청구시기					미청구 횟수
박○○	05.10.6.	06.9.	07.3.	*	06.3.	*	*	*	*	1
박○○	03.5.3.	03.11.	04.4.	06.4.	04.10.	05.4.	05.10.	*	*	5
		*	*	*	06.10.	07.4.	*	*	*	
방○○	03.10.13.	04.3.	04.9.	05.3.	05.9.	06.3.	06.9.	*	*	3
		07.3.	*	*	*	*	*	*	*	
배○○	06.2.24.	06.7.	*	*	07.2.	*	*	*	*	1
배○○	04.7.5.	06.9.	*	*	04.12.	05.6.	05.12.	06.6.	06.12.	5
서○○	03.5.14.	03.11.	04.4.	05.4.	04.11.	06.4.	*	*	*	2
		05.11.	06.10.	07.4.	*	*	*	*	*	
서○○	03.8.14.	04.1.	05.1.	05.7.	04.7.	*	*	*	*	1
		06.1.	06.7.	07.1.	*	*	*	*	*	
서○○	06.5.18.	*	*	*	06.10.	07.4.	*	*	*	2
손○○	06.12.18.	03.12.	04.6.	06.1.	07.5.	*	*	*	*	1
송○○	06.5.3.	04.8.	05.9.	06.2.	07.4.	*	*	*	*	1
		06.10.	*	*	*	*	*	*	*	
신○○	06.6.29.	*	*	*	06.11.	07.5.	*	*	*	2
신○○	05.11.29.	06.4.	07.4.	*	06.11.	*	*	*	*	1
신○○	03.6.13.	03.11.	04.5.	05.5.	04.11.	*	*	*	*	1
	05.11.	06.5.	06.11.	*	*	*	*	*		
신○○	03.6.24.	03.11.	04.5.	05.11.	04.11.	05.5.	*	*	*	1
	06.5.	06.11.	*	*	*	*	*	*		
신○○	05.11.14.	06.4.	06.11.	*	07.5.	*	*	*	*	1
안○○	05.10.4.	06.3.	06.11.	07.3.	06.8.	07.1.	*	*	*	2
양○○	06.6.12.	06.11.	*	*	07.5.	*	*	*	*	1
양○○	05.10.21.	06.3.	07.3.	*	06.10.	*	*	*	*	1
염○○	05.11.1.	06.4.	06.11.	*	07.4.	*	*	*	*	1
우○○	06.10.19.	06.2.	*	*	07.3.	*	*	*	*	1
원○○	05.3.3.	05.8.	06.8.	07.2.	06.2.	*	*	*	*	1
유○○	06.3.20.	05.3.	06.8.	*	07.3.	*	*	*	*	1
이○○	04.6.17.	03.10.	05.1.	05.7.	05.11.	*	*	*	*	1
		06.5.	06.11.	*	*	*	*	*	*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성명	입원일	계속심사청구			계속입원심사미청구시기					미청구 횟수
이○○	05.8.29.	04.3.	*	*	06.1.	06.7.	07.1.	*	*	3
이○○	06.7.4.	*	*	*	06.12.	*	*	*	*	1
이○○	04.10.7.	05.3.	06.3.	06.9.	05.9.	*	*	*	*	1
		07.3.	*	*	*	*	*	*	*	
이○○	04.12.2.	05.11.	06.5.	06.11.	05.5.	*	*	*	*	1
이○○c	05.9.3.	06.8.	07.2.	*	06.3.	*	*	*	*	1
이○○b	06.10.9.	04.12.	*	*	07.3.	*	*	*	*	1
이○○	06.11.15.	05.10.	*	*	07.4.	*	*	*	*	1
이○○	05.7.1.	04.7.	06.6.	06.12.	06.1.	*	*	*	*	1
이○○	05.12.19.	*	*	*	06.6.	06.12.	*	*	*	2
이○○	06.12.29.	*	*	*	07.5.	*	*	*	*	1
이○○	06.6.3.	*	*	*	06.11.	07.5.	*	*	*	2
이○○	05.12.17.	06.11.	*	*	06.5.	*	*	*	*	1
이○○	05.1.10	05.6.	05.12.	*	06.6.	06.12.	*	*	*	2
이○○	03.9.5.	04.2.	04.8.	05.8.	05.2.	06.2.	07.2.	*	*	3
		06.8.	*	*	*	*	*	*	*	
이○○	05.7.26.	05.12.	*	*	06.6.	06.12.	*	*	*	2
이○○	06.5.22.	*	*	*	06.10.	06.4.	*	*	*	2
이○○	05.11.16.	06.4.	06.11.	*	07.4.	*	*	*	*	1
임○○	05.3.21.	06.2.	07.3.	*	05.9.	06.9.	*	*	*	2
임○○	06.2.21.	06.7.	*	*	07.2.	*	*	*	*	1
임○○	04.9.30.	05.8.	*	*	05.2.	06.2.	06.8.	07.2.	*	4
장○○	04.11.16.	05.4.	*	*	05.10.	06.4.	06.10.	07.4.	*	4
장○○	06.3.6.	04.2.	06.8.	*	07.3.	*	*	*	*	1
장○○	04.6.14.	03.9.	05.1.	05.7.	05.12.	*	*	*	*	1
		06.5.	06.11.	07.3.	*	*	*	*	*	
전○○	05.11.26.	06.4.	*	*	06.10.	07.4.	*	*	*	2
전○○	05.7.8.	05.12.	06.12.	*	06.7.	*	*	*	*	1
전○○	05.5.19.	05.10.	*	*	06.4.	06.10.	07.4.	*	*	3
정○○	06.3.14.	06.8.	*	*	07.2.	*	*	*	*	1
정○○	06.12.14.	*	*	*	07.5.	*	*	*	*	1

성명	입원일	계속심사청구			계속입원심사미청구시기					미청구 횟수
		05.5.	05.11.	06.5.	06.11.	07.5.	*	*	*	
정○○	04.12.7.	05.5.	05.11.	06.5.	06.11.	07.5.	*	*	*	2
정○○	04.12.23.	05.5.	05.11.	06.5.	07.5.	*	*	*	*	1
		06.11.	*	*	*	*	*	*	*	
정○○	05.6.15.	04.5.	04.11.	06.5.	05.12.	*	*	*	*	1
		06.11.	*	*	*	*	*	*	*	
정○○	06.3.13.	*	*	*	06.8.	07.2.	*	*	*	2
정○○	05.11.29.	06.11.	*	*	06.4.	07.4.	*	*	*	2
조○○	04.12.7.	05.11.	05.5.	06.11.	06.5.	*	*	*	*	1
진○○	06.3.4.	03.10.	04.10.	07.2.	06.9.	*	*	*	*	1
차○○	05.4.22.	05.9.	07.3.	*	06.4.	06.9.	*	*	*	2
채○○	06.5.22.	03.9.	05.6.	06.5.	06.10.	*	*	*	*	1
		07.4.	*	*	*	*	*	*	*	
최○○a (543406)	04.8.5.	05.7.	*	*	05.1.	06.1.	06.7.	07.1.	*	4
최○○	04.9.21.	04.7.	05.8.	06.2.	05.2.	*	*	*	*	1
		06.8.	07.3.	*	*	*	*	*	*	
최○○	03.6.24.	03.9.	05.7.	06.5.	04.5.	04.11.	05.11.	06.11.	*	4
최○○	05.3.2.	04.9.	06.8.	*	05.9.	06.2.	07.2.	*	*	3
최○○	05.7.29.	05.12.	06.12.	*	06.7.	*	*	*	*	1
최○○	05.4.27.	05.9.	06.3.	*	06.9.	07.3.	*	*	*	2
하○○	03.2.9.	03.12.	04.2.	05.8.	03.8.	04.8.	05.2.	06.8.	*	4
		06.1.	07.1.	*	*	*	*	*	*	
한○○	06.10.11.	03.10.	04.2.	06.2.	07.3.	*	*	*	*	1
한○○	05.8.29.	06.7.	07.1.	*	06.1.	*	*	*	*	1
허○○	05.3.12.	05.8.	*	*	06.3.	06.9.	07.3.	*	*	3
황○○	03.4.4.	03.10.	05.3.	05.9.	04.3.	04.9.	06.3.	*	*	3
		06.9.	07.3.	*	*	*	*	*	*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별지4] 작업치료 현황

구분	참여자	내용	시간	임금	보험/입퇴원
봉투작업	김○○a 외103명	봉투접기	오전2시간 오후2시간	3천원4만원	
간병	박○○	노인병동 도우미	주)08:00-18:00 야)18:30-06:30	400천원	보호/퇴원
	박○○			400천원	보호/입원
	손○○			400천원	보호/입원
	유○○			400천원	보호/입원
	곽○○			500천원	보호/퇴원
	김○○			500천원	보호/퇴원
	정○○			450천원	보호/퇴원
	이○○			500천원	보험/퇴원
	정○○			400천원	보호/입원
주방	박○○	주방요리보조 설거지보조	07:00-18:00 (휴식2시간)	400천원	보호/입원
	윤○○	주방요리	07:00-18:00	1,150천원	보호/퇴원
주방보조	백○○	설거지보조	07:00-09:00 11:30-13:30 16:30-18:30	150천원	보험/입원
원예	이○○	원예작업 보조 나눔발 관리	07:00-18:00 (휴식2시간)	200천원	보호/입원
	박○○B	나눔발 관리보조	09:30-12:00	50천원	보호/입원
청소	김○○	병원내외 청소보조	09:00-14:30	80천원	보호/입원
세차	이○○	스팀세차	09:00-18:00	200천원	보호/퇴원
	김○○	출장스팀 세차	09:00-18:00	100천원	보호/입원
세탁	채○○	세탁물수거및배분	07:00-18:00	150천원	보호/입원
매점	김○○	판매	09:30-15:00	100천원	보호/입원
	유○○	판매	09:00-18:00	150천원	보험/입원
타공	조○○	종이백 타공	09:30-11:30 14:30-16:30	200천원	보호/퇴원

4 2008. 7. 4자 07진인1582결정 [서신검열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청소배식 등 병원 업무에 환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정기적인 평가를 결여하고 있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완 조치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이 청소배식 등 병원의 업무에 환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정기적인 평가를 결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상의 절차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입원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 [2] 이에 피진정인에게 작업 치료가 환자들의 사회 복귀 또는 장애 상태의 호전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의 종류 및 세부 작업 내용을 보완하고 치료진의 전문적이며 실질적 평가를 통해 작업치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3]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작업치료가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2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이○○

- 【피진정인】**
- 1. 박○○(○○병원 원장)
 - 2. 신○○(○○병원 간호조무사)

- 【주 문】**
-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작업치료가 환자들의 사회복귀 또는 장애 상태의 호전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의 종류 및 세부 작업내용을 보완하고, 치료진의 전문적이며 실질적 평가를 통해 작업치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시 보건소장에게,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에 대한 작업치료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가 그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 나, 라, 마.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병원 입원 중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원한다.

가. 부당한 행동자유 제한(서신검열, 전화통화 제한)

나. 폭행

다. 부당한 작업치료 및 처우

라. 행려환자에 대한 치료 방치

마.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1)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던 2006. 12. 13. ~ 2007. 3. 29. 동안 담당주치의인 피진정인 박○○ 원장은 진정인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포함하여 모든 서신을 검열한 뒤 간호사로 하여금 발송케 하였다.

병원에서의 전화사용은 주 3회(월·수·금)에 사용시간도 14~15시, 17~18시 사이에 3~4분 정도로 제한하고, 통화 시 직원이 옆에 있어 병원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못하게 하였다.

2) 2007. 2.~3.경 ○○병원 3층에 근무하는 피진정인 신○○은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이○○ 환자를 무릎 꿇게 하고, 3층 홀에 있는 TV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병원에서 260여명의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직원은 영양사 1명 이외에 장애가 있는 직원을 포함하여 3명이 전부이다. 설거지, 배식, 청소 등을 치료요법이라고 하며 10여명의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 병원 측은 이 환자들의 보호자가 동의하였다고 하지만, 일의 대가로 월 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 노동과 임금 착취이다. 또한 병원에는 청소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 환자들에게 병실, 화장실, 계단 등 모든 청소를 시키고 있다.

4) 진정인이 퇴원하기 전인 2007. 3. 19. ~ 3. 29. 기간에 행려환자 2명을 보았는데 약 하나 먹지 않고 5년 넘게 폐쇄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원한다.

5) 환자들이 식사를 하는 지하식당은 천장에서 물이 새며 병원 1층에는 환자 30여명이 번기 3개, 수도 2개가 있는 2평 남짓한 세면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병실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1) 박○○ 원장

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외부에서 환자에게 오는 편지를 열람한 경우는 없었으며, 환자가 외부로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는 이를 열람하여 지도해 왔다. 이는 담당 주치의별로 모두 하고 있다. 진정인 김○○의 편지도 그렇게 열람하였지만, 서신왕래의 제한을 지시한 적은 없고 간혹 편지에 비현실적 내용이 있어 지도를 한 것이다. 진정인이 2007. 3. 퇴원하여 이러한 편지 열람에 대해 ○○○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환자들의 서신을 열람하지 않고 있다.

나) 본원의 작업치료는 환자의 자발적인 신청 또는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며, 작업의 종류 및 배치는 환자의 요구와 치료진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하는 환자는 작업일지에 매일 자신이 참여한 시간을 기록·날인하고 작업장 관리자가 매일 말에 작업치료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치료에 참여한 환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작업시간·종류·강도 및 숙련도를 감안하여 시간당 500~600원을 책정, 일당제로 지급하고 있다. 적정임금 기준을 찾기 어려워 타 병원의 작업치료 임금을 참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급하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는 임금은 환자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개설이 어려울 경우 작업치료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본인이 필요로 할 경우 인출증을 받아 인출해주고 있다.

다) 행려환자에 대해서도 일반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행려 환자 한분은 정신과 이외의 치료가 필요하여 노인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한 적이 있다.

라) 병원 1층에 나누어져 있던 2개의 화장실은 공간을 넓게 합쳐서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그 밖에 현재로서는 병원 내의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은 없다.

2) 신○○ 간호조무사

2006. 5. 1.부터 3층 남자병동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본인이 이○○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이 다른 환자와 종종 다투거나 몸싸움, 병동기물 파손 우려 시에는 즉시 제지하거나 의사 지시에 따라 강박을 시행한 적은 있다.

다. 참고인 의견

1) 000 동료환자(알코올 의존증)

2007. 1.~4.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동 3층 홀에서 이○○이 신간 간호조무사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 000외 5명의 동료환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작업치료로서 스스로 원해서 하고 있다. 작업치료는 본인이 동의하면 병원에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작업치료로서 하는 일은 식당보조(배식·설거지·청소·야채다듬기 등), 병동청소(간병, 계단·흡연실·화장실 등 청소), 정원관리(가지치기, 풀 뽑기, 꽃 심기 등), 매점에서 간식배달, 환경미화(병원 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분리) 등이며 본인이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3. 관련 규정

가.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나. 보건복지가족부 「작업치료 지침」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행동자유 제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병원의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지(DR'S PROGRESS NOTE) 및 간호 기록지에는 진정인이 2006. 12. 13. 입원한 이후 12. 22.부터 편지발송에 관한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다.

나) 2008. 2. 26.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병동규칙에는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 회수, 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박○○의 서신검열에 대해 2007. 4.~5. ○○○시보건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서신발송에 제한이 없어졌고 최근에는 전화사용 역시 치료목적에서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2008. 6. 11. 이와 관련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박○○가 진정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진정인이 이 부분 진정내용을 취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폭행)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병원근무 현황에 의하면 2007. 1.~3. 피진정인 신○○은 병동 3층 담당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간호조무사로서 피해자 이○○을 보호·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2006. 1. ~ 2007. 6. 기간 피해자의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다른 환자와 다투거나 TV채널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를 자주 일으킨 것이 기록되어 있고,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에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강박된 기록이 있다.

다) 진정인은 2008. 6. 17.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행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이 이 부분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작업치료 및 처우)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08. 2. 28. 및 6. 19. ○○병원에서 제출한 작업치료 업무현황과 작업치료에 참여한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치료의 내용은 병동 도우미, 병원 주방·매점·세탁 보조, 정원관리, 환경미화로 구성되어 있다.

나) 2008. 2. 28.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업치료 참가 환자별로 작업재활 참가동의서, 작업일지, 임금지급대장 및 은행 입금증, 작업치료 평가서 등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참여 환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작업치료는 자발적 동의(또는 보호자 동의) 또는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1) 작업재활 참가동의서는 환자, 보호자, 주치의, 사회복지사가 서명 날인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참여 환자의 준수사항으로 “자·타해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사고 및 사망 발생시 그 책임은 환자 측 당사자에게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작업일지는 작업 환자별로 마련되어 작업시간 단위로 관리자가 확인 서명하고 있다.

3) 임금지급대상에는 개인통장 구비자 및 통장 미구비자로 구분되며 개인통장 구비자는 은행 입금증으로, 통장 미구비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현금인출증으로 임금이 관리되고 있다.

4) 작업치료 평가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10개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양식이 갖춰져 있고 기타 평가 의견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업유지의 적합성 여부를 표시(Y/N)하도록 하고 있다.

다) 임금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참여환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500~6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작업시간에 따라 월 4천원~10만원 정도까지 지급된다.

라) 작업치료에 참가한 환자별 의사지시서에는 “작업치료 시작(또는 계속, 유지, 재개) 환경미화”, “병동재활” “임시시험 참여” 등과 같은 담당 주치의의 판단과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마) 작업치료 평가서 및 2008. 6. 19. 제출된 작업치료 관리자 현황에 따르면 병동 도우미 작업은 간호사가 관리·평가하며, 이외에 주방, 세탁, 환경미화 등은 영양사와 총무과 기능원(또는 의료법인 소속 직원) 등이 관리와 평가를 하고 있다.

바) 작업치료와 관련한 자료들,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에는 작업치료에 참가한 환자에 대한 담당 주치의의 구체적인 평가서나 상담 내용 등의 기록은 없다.

사) 병원 직원현황 및 작업치료 관리자 현황에 의하면 병동 청소나 환경미화, 주방, 세탁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실시하는 작업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 지침」(2003. 12. 30)에 따라 비교적 그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작업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임시 적응기간, 작업투입, 평가 등의 단계별로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작업치료의 내용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할 관리 업무이거나 병원 운영을 위한 기초적 업무로 볼 수 있다. 물론 작업 참여여부가 환자들의 진출처럼 강제적이진 않지만, i) 작업치료로서 단순 노동이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ii) 작업재활 참가동의서에는 준수사항으로 사고 등의 발생 시 그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고 하고 있으며, iii) 청소, 주방,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세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행정업무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해당 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환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은 치료목적에서 벗어나 병원 업무에 환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에 더 치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환자별 작업치료 평가서에 있는 10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직원들이 작업관리자로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8. 2. 26. 실지조사를 통해 실제로 이를 평가한 흔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작업관리자의 평가 이외에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치료진의 평가는 의사지시서에 기록된 “계속, 재개” 등과 같은 간단한 언급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작업치료의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작업치료는 실제 그 운영에 있어 치료목적 보다는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 내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들에게 병원 업무를 분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행려환자에 대한 치료 방지) 및 마.항(열악한 시설환경)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병원 입원환자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2007. 5. 당시 및 2008. 6. 현재에도 행려환자가 입원되어 있으며, ○○○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의 행려환자는 정신과 이외의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 측에서 같은 재단의 노인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시 보건소가 제출한 ○○병원에 대한 위생, 시설 점검(2007. 5. 2~5. 9)결과 자료에는 환자들이 사용하던 지하식당을 4층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병동 1층 세면장을 일부 개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일부 확인하고 2008. 6. 11. 진정을 취하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이 이 부분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다.항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병원장 및 감독기관인 ○○○시 보건소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 경 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5 2008. 7. 4자 07진인4113 결정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진정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2주간 전화면회를 금지하였으며 입원 환자들의 전화 통화 요일 및 시간을 제한하여 진정인 신체의 자유 및 입원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및 진료기록부에 기재 등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진정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원일로부터 2주간 전화 및 면회를 금지하였으며, 치료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입원 환자의 전화사용에 대한 요일 및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2] 이에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 대책과 입원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전화 금지를 제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등을 제한할 것, 전화 등 행동 제한 시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입원 환자의 전화사용에 대한 요일 및 시간제한을 폐지하고 여분의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들의 자유로운 전화통화를 보장할 것을 각 권고하고,
- [3]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서면 주의 조치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차후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병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7조, 「정신보건법」 제45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 요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허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나. 입원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전화 제한을 금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등을 제한할 것과 전화 등 행동 제한 시 의사지시

서,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다. 전화사용에 대한 요일 및 시간제한을 폐지하고 여분의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들의 자유로운 전화통화를 보장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서면 주의 조치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차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병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가.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을 불허하였다.
- 나. 입원 초기 2주간 전화 및 면회가 금지되었다.
- 다. 전화 및 면회 금지 해제 이후에도 전화 일시 및 시간이 제한되었다.
- 라. 약물에 대한 상담이 미흡하였다.
- 마. 편지를 즉시 발송하지 않고 1주일분을 몰아서 발송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7. 9. 28.~2007. 10. 2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보호의무자는 처 이○○이었다. 2007. 10. 20. 이○○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담당 주치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였다. 보호의무자가 퇴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인은 입원일로부터 14일간 전화 및 면회가 금지되었다. 진정인은 죄를 짓고 병원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 병원에서 전화 및 면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전화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진정인은 매주 수·토요일 18:30~19:30에만 500원의 범위 내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통화 및 시간의 제한은 부당하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주치의는 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진정인에게 약물을 처방하였다. 진정인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므로 최소한 어떠한 증상에 대한 약인지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나 주치의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5)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진정인은 매일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 의뢰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1주일의 편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발송하여 편지의 의미를 상실시켰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가)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에게 환자의 퇴원을 원할 경우 하루 전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하루 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주치의가 쉬는 토요일이라 할지라도 퇴원 명령을 받아 퇴원에 차질 없게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나) 2007. 10. 20. 당시 진정인의 주치의가 쉬는 토요일이라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것이고, 2007. 10. 22.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주치의의 퇴원 허락 하에 퇴원하게 되었다.

다) 퇴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향후 치료 계획, 병의 재발 방지, 가정 및 사회 생활시 유의할 점, 그간 치료 중 교육 활동 및 현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주치의와 면담이 꼭 필요하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병원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하였고, 보호의무자는 전화 및 면회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병원 적응생활에 대한 내용과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 후 2주간 면회 및 서신, 통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주치의 판단 하에 실행하였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병원에는 13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통화할 수 있도록 각 개인별 통화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입원 시 의사 면담에서 진정인에게 향후 치료 과정 및 목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5)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매일 사회복지사가 환자들의 편지를 수거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편지를 직접 수거해 가고 있으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음날 병원 직원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진정인의 처 이○○은 2007. 10. 20. 13:30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퇴원을 요청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담당 주치의가 휴무 중이라는 이유로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2007. 10. 22.자로 진정인을 퇴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2) 진정인의 처 이○○이 2007. 9. 28. 작성한 「서약서」에 의하면 '일요일 및 공휴일은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 2~3일 전에 통보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이○○이 퇴원을 요청한 2007. 10. 20.은 공휴일이나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일요일이 아니었으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은 환자의 위험성이 없는 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퇴원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 등 각종 기록과 피진정인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진정인에게 특별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단지 주치의의 부재를 이유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을 불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은 물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이 제출한 「전화, 서신 및 기타 통신 제한 요청서」에 의하면 주치의 정○○의 소견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이○○의 요청에 의해 일정 기간 진정인의 전화 및 면회가 금지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2주간 전화·면회 등이 금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에는 진정인의 전화 및 면회 금지에 대한 주치의의 지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화 및 면회 금지를 합리화 할만한 진정인의 증상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전화, 서신 및 기타 통신 제한 요청서」에 의거해 전화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진정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2주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제한 조치로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되는 행위임은 물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환자들에 대한 요일별 전화 통화 제한 및 통화 시간의 제한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다수의 환자들에게 공평한 전화 통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환자 개인별 통화 요일을 지정하고, 통화시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화통화의 제한이라 볼 수 없으며, 공평한 전화 통화의 부여는 추가 전화기의 확보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환자의 전화 통화 요일 및 시간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되는 행위임은 물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진정인은 약물에 대한 상담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약물 처방 및 향후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마.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편지를 즉시 발송하지 않고 몰아서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사가 매일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 원 유남영 위 원 문경란

[제 6 장]

기타기관

1. 인격권 침해 및 가혹행위

1 2007.7.20자 07진인533 결정 [인격권 침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시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법원의 호적정정 결정문, 진단서, CT촬영 영상을 참조하여 판정이 가능함에도 직접 하체를 시진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판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지방병무청장

【주 문】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9. 5. ○○지방법원에서 호적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자료, 같은 해 11. 7. 징병신체검사 시 법원결정문 및 전문의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징병신체검사 이전부터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

하였음에도 징병전담의사가 하체의 상태를 직접 봐야겠다고 하여, 초음파 검사실로 가 두 명의 의사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야 하는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은 2006. 9. 5. ○○지방법원에서 호적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자로, 같은 해 10. 25. 병적을 만들고 징병신체검사를 찾아가 상담직원에게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자, 징병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면 찾아오라는 답변을 들었다.

2) 이에 같은 해 11. 6. 징병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가니 지난 달 상담을 한 상담직원이 진정인을 알아보고 안내를 하여 피 검사 등 기초검사를 받은 후 각 과 의사들에게 검사를 받던 중, 비뇨기와 징병전담의사가 법원결정문과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7. 위 서류를 가지고 다시 징병신체검사장을 찾아 간 바, 징병전담의사가 서류를 보고도 하체의 상태를 직접 봐야겠다고 하여, 진정인은 초음파 검사실로 가 의사 두 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야 했다.

3)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진정인과 같이 성별을 정정한 자의 신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법원결정문 및 진단서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징병신체검사를 하기 전부터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충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하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은 법원결정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자로 2006. 11. 6.~같은 달 7. 양일 간의 징병신체검사 결과 양측 고환결손으로 5급 판정 및 ○○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신체등위 종합 6급으로 판정된 자이다.

2) 진정인에 대해 비뇨기와 신체검사를 실시한 피부비뇨기와 징병전담의사 최○○, 수석 징병전담의사 고○○의 진술서에 의하면, 징병신체검사는 병역의무자

의 신체상태를 검사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병역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내·외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다만 비뇨기과와 같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는 별도 개인별 칸막이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체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신체등위를 판정하라는 진정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었고, 진정인의 경우 개인 사정을 최대한 이해하여 외부와 독립된 공간(초음파실)에서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진정인에게 요구하였던 법원결정문 및 병사용진단서는 진정인의 신체상태가 흔히 앓은 경우라 신체등위판정에 객관성을 보충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며, 타청 및 타과의 신체검사 시에도 필요 시 수검자에게 설명 후 수술 부위 및 병변 부위를 확인하여 진단서 및 수술자료와 비교확인하고 있는바, 첨부서류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정밀신체검사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확인절차이므로 당시 진정인에게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담당 징병전담의사 혼자가 아니고 수석 징병전담의사가 동시에 확인하여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검사 전 진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진을 남기지 않고 의사 두 명의 촉진 없는 시진(視診)만으로 확인함을 재차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다. 병무청장의 의견

1) 「병역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인과 같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자에게도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행 신체등위 판정기준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이러한 성별 정정자에게 적용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바, 진정인의 징병신체검사 시 정신과 조항(성주체성 장애 등)을 적용하여야 할지 비뇨기과 조항(고환결손)을 적용하여야 할지가 불분명하여 각 과 징병전담의사가 논의한 결과 비뇨기과 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신체등급 판정에 최종 책임을 지는 수석 징병전담의사와 해당 과인 비뇨기과 징병전담의사가 검사의 당위성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독립된 장소에서 이 사건 검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 기타기관

3) 병무청에서는 진정한과 같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이 정정된 병역의무자에게 명백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병역의무자에게 신체 각 부위별로 신체검사를 할 경우 수치심 유발이 예상되어 위 규칙 개정 후 신체검사 없이 법원결정문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법령

가.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11조(징병검사)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 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590호)

제6조(검사장의 설비 등)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관련)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신과	101.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나. 정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3	3	3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4
라. 고도(1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거나 1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 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5	
비뇨기과	379.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5	5	5
	380. 고환결손 또는 위축(고환이 2/3이상 감소한 것을 위축으로 본다)			
	가. 편축	4	4	4
	나. 양축	5	5	5
	390. 음경절단			
가. 귀부상실(성교기능)	5	5	3	
나. 음경의 1/2 이상 상실 및 성교불능	6	6	4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이 제출한 법원결정문 및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성정체성 장애가 있어 2006. 9. 5. ○○지방법원 결정(사건번호 : 2006호파××××)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자료,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이다.

나. 진정인은 2006. 11. 6. ○○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는 중 법원결정문 사본 및 진단서 등 보완요구를 받고 같은 달 7. 다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위 ○○지방법원 결정문 및 ○○병원에서 발부한 성정체성 장애 및 당뇨병 진단서를 제출한 후, 초음파 검사실에서 피부비뇨기과 징병전담의사 최○○과 수석 징병전담의사 고○○의 요구에 의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검사를 받은바, ○○병으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고환

제6장 기타기관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종합 신체등위 6급으로 판정되어 병역면제되었다.

다. 2006. 6. 22. 대법원은 대법원의 판결로는 최초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하고,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사건번호 : 2004스00)한 바 있고, 이후 같은 해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79년생 여성의 남성으로의 호적정정을 허가하여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발생하는 등 진정인을 비롯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호적정정자 중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병무청은 2006. 11. 15. 국방부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바, 질의내용 및 국방부 회신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병무청은 국방부 회신내용을 같은 해 12. 20. 각 지방병무청에 회신하여 적용하고 있다.

<병무청 질의내용>

- 질의요지 : 법적, 신체적으로 여성이었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 후 법원에서 남자로 판결하여 호적이 정정된 경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검토요청
 - 갑설 : 정신과 부문 101(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라(고도)를 적용하여 5급 판정
 - 을설 : 비뇨기과 부문 379(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진)을 적용하여 5급 판정
 - 병설 : 비뇨기과 부문 380(고환결손 또는 위축)을 적용하여 5급 판정
(병무청 견해 : 병설)
- 이유 : 성전환 수술 전 상태에서는 정신과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성전환 수술 후 법적으로 호적이 정정되었으므로 비뇨기과 부문 중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환 결손을 적용 5급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방부 회신내용>

- 정신과 101조항 적용 관련하여서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 등을 통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이 부여되어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법원에서 남성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사료되나 성전환 수술 후에는 질의 대상자의 현재

상태, 증상 유무 및 진료력, 여러 가지 정신과적 검사 결과 그리고 성주체성 장애 진단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 여부 판단하여야 하며 적용 결정 시에는 현재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 조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반면, 현재 환자 상태에 의거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양측 교환 결손이 확인된다면 비노기과 380-나호 조항 적용은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지금까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변경한 병역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여성→남성 호적 상 성별정정자 징병신체검사 현황〉

지방청	인원	검사일자	검사방법	적용조항	판정결과	비고
○○지방 병무청	1명	2006. 4. 4.	진단서, 법원결정문 및 자체 CT촬영 영상 참조 후 판정	390. 음경절단	6급	하체부위 시진하지 않음
○○북부 병무지청	1명	2006. 11. 7.	진단서, 수술기록지 및 법원결정문 등 참조 후 판정	380. 고환결손 및 위축	5급	하체부위 시진하지 않음
○○지방 병무청 (진정인)	1명	2006. 11. 7.	진단서, 법원결정문 및 하체부위 시진 후 판정	380. 고환결손 및 위축	6급	하체부위 시진
○○지방 병무청	1명	2007. 3. 27.	진단서, 법원결정문 및 자체 CT촬영 영상 참조 후 판정	380. 고환결손 및 위축	5급	하체부위 시진하지 않음

5. 판 단

가. 이 사건 검사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보면, 피진정인은 관련규정 상 징병 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별실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는 바, 법원결정문 및 진단서 등의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자료일 뿐 확실한 검사를 위해 신체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상 성별을 정정한 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명백한 적용조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비노기과 검사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의사의 진단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고 특히 일반적인 병역 의무자들과 달리 특수한 병력 및 신체를 가진 진정인에게 있어 이는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진정인은 이미 법원의 호적정정 허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거쳤으리라 예상

제6장 기타기관

되는 점, 지금까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여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징병신체검사 사례를 보면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한 경우는 없고 법원결정문, 진단서 등 참고자료 또는 CT촬영 영상을 참조하여 판정한 점, 진정한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직접 신체를 시진하는 것이 아닌 CT촬영 등 간접적 방법으로 신체상태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검사는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시 진정한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명백한 적용조항이 없고, 관련조항에 따른 합리적인 검사방법의 공유가 미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병신체검사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검사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격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2 2007.12.14자 07진인2659-07진인2660-07진인2793 병합 결정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이 아침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도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단제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체벌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및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 [2]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소홀하고, 음주흡연 등 부적절한 모습을 아동들에게 공공연히 노출하고, 중학생 이상 남자 아동들에게 술병,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아동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 [3] 피진정인이 전체 생활아동에 대해 부모의 면회를 원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동반 외출·외박을 제한한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4] 또한 아동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아동자치회를 통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바 있고, 부모와 아동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가 구입해 준 휴대폰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복지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9조, 제4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진 정 인] ○○○의 2명

【피진정인】 1. ○○○장 ○○

2. ○○광역시 ○○구청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아동복지법」 제29조 제 1호 및 제3호 위반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과 관련하여, ○○광역시 ○○구청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아동의 처우 개선 및 피진정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원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아동들인 바, 피진정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07. 7. 26. 오전 아이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아동 3명에게는 폭행을 하였다. 빗자루와 손으로 때렸고, 한 아동은 머리카락을 잡고 1층 계단까지 끌고 나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 폭행을 하였으며, 그 후 방송을 통해 아동들과 직원들을 강당으로 모이게 한 후 다시 폭언, 폭행을 하였다.

나. 평소에 아동들과 직원들에게 씨발새끼들, 개쓰레기들,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등과 같은 욕설, 비속어 등을 자주 사용하고, 단체기합을 주기도 하였다. 2003년도에 아동들 전체를 모아놓고, 빗자루, 발판 등으로 때려 여러 아이들이 멍이 들었다.

다. 사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며, 법인 내 어린이집에서 고스톱을 친다거나, 흡연을 심하게 하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늦게 귀가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원장으로서 아이들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

라. 부모님과의 면회, 외출, 외박을 못하게 하고, 컴퓨터 이용이나 TV 시청,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 아이들에게 사택을 청소하도록 하고,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휴무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고학년 아동들에게 저학년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시킨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07. 7. 26. 아침 8시경 ○○이가 잠옷 바람으로 바퀴벌레를 잡는다며 나갔고, 그 모습을 원장님이 보고 방으로 들어오셔서 화를 내면서 다 일어나라고 했다. 1층 마루에서 애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원장님이 ○○○을 자꾸 쳐다봐서 ○○○도 원장님을 쳐다봤는데, 원장님은 어디서 쳐다보냐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허벅지, 엉덩이, 팔 등을 때렸다.

원장님이 희망반 아이들을 깨우고 소망반으로 왔는데 그때 ○○과 ○○이 자고 있었다. 원장님이 “임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 당황한 ○○이가 일어나 앉아서 이불을 개고 있었더니 “어디서 어른 앞에서 앉아서 이불을 개냐, 선생이 이따위니까 아이들이 이따위지” 라는 등의 얘기를 했다. ○○이가 마루에 나와 서 있는데, 자세가 불량하다면서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고, 이것을 본 ○○이가 “이 집에서 살기 싫다, 나가자”고 하니 원장님이 ○○이를 때렸다.

결에서 큰 언니들이 보고 있다가 ○○이에게 네가 언니니까 가서 좀 말리라고 해서 ○○이가 “내가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원장님이 갑자기 ○○이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1층 계단으로 나갔다. 이때 2층에 있던 꼬마 애들이랑 큰 아이들이 보았고, 놀라서 내려온 ○○○ 선생님이 원장님을 잡으셨다.

1층 마루에서 맞았던 ○○○은 허벅지에 멍이 들었고, ○○이도 팔에 멍이 들었다. 원장님이 아이들을 깨우러 방에 들어왔을 때 “씨발것들, 개같은 것들, 대가리에 똥만 찬 것들” 등의 욕설을 했고, ○○이에게는 “이 걸레새끼야”라는 말을 했다.

잠시 후 원장님이 방송으로 고등학생 이상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2층 강당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휴무였던 선생님들까지 다 불렀다. 원장님은 선생님들과 우리들에게 욕을 했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 이따위니까 애들이 이따위지, 돈만 떼어 먹고 가면 다냐, 니들이 똥데 이렇게 하냐, 내 혼자 나갈 줄 아냐, 사표

제6장 기타기관

쓸 준비하라”는 등의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가 1층에서 신고할 거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에게 “너 신고하려면 해라, 너 신고하는 것 보고 갈 거다, 네가 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냐”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더니 “오늘부로 원장 그만 두겠다”고 하셨다.

강당에서 상황이 일단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선생님들은 원장님 사택으로 불러갔고 거기서 원장님께 꾸지람을 들었다고 한다.

2) 원장님은 평소에도 직원들과 아동들에게 “씨발새끼들, 개쓰레기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등과 같은 욕설, 비속어 등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단체기합을 주기도 하는데, 2003년도 여름쯤 아침에 아동들 전체를 모아 놓고 빗자루, 발판 등으로 때려 여러 아이들이 몸에 멍이 들기도 했다. 그때 당시 ○○○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과의 일을 원장님에게 보고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다. 그로 인해 원장님이 왜 선생님에게 대드냐면서 한 명씩 옆드러뻗치게 하고서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다가 몽둥이가 부러졌고, 다시 발판으로 아이들을 때렸다. 지금은 엄마가 데리고 가서 없지만, ○○○, ○○○ 자매는 맞아서 피멍이 들어 우는데도 원장님이 계속 때리다가 발판이 부러졌고, 그러고도 계속 아이들을 빗자루로 때렸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찍지도 못했고, 우리는 아직 어렸을 때라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어린 아동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얹은 빗자루 같은 걸로 때리기도 하는데, 올해 7월 초에도 아이들을 때린 적이 있다.

3) 원장님은 사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고, 원장님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신다. 법인 내 어린이집에서 고스톱을 친다거나, 흡연을 심하게 하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늦게 귀가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아이들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보이신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방승으로 북어국을 끓여오라고 해서 아이들 잠을 깨운 적도 있고, 밤늦게 오셔서 차에서 안 내리겠다, 집에 안 들어가겠다면서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신다. 최근에는 2007. 8. 3. 새벽 01:30경 원장님께서 승용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셨고, 비틀거리며 계단에서 몸을 잠시 기대고 계셨는데 원장님을 부축하러 나온 딸, 남편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고향을 치셨다. 그 소리에 거실에서 자던 아이들도 잠에서 깬다.

4) 그 밖의 부적절한 처우

가) 아이들에게 사택을 청소하라고 시켜서 술, 담배꽂초 등의 쓰레기를 아이들이 치우게 한다.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부재 시에는 고학년 아동들에게 저학년 아동들을 돌보라고 시킨다. 가끔은 문자메시지로 해야 할 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나) 부모님과과의 면회는 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그냥 돌려 보내고, 부모님과 함께 외출, 외박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몰래 오셔서 면회를 하고 가기도 한다.

다) 컴퓨터 이용, TV 시청, 휴대폰 사용 등을 제한한다. 휴대폰은 부모님이 구입해 준 경우라도 고등학생 이상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

라) 퇴소한 아동들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까 들여보내지 말라면서 시설 내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한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오전에 아이들 생활채를 둘러보았다. 방을 둘러보는 중에 이불을 하나도 개지 않은 채 자고 있어 일어나기를 몇 번이나 종용하였으나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 아동은 벽으로 붙기까지 하여 큰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울컥 화가 치밀었고 교사들도 무방비 상태인 것에도 화가 났었다.

이곳은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며 반드시 규율과 규칙이 있으며 생활지도원과 아이들은 규율과 규칙을 항상 지도 편달 받는다. 그러나 모든 게 지켜지지 않아 속이 상한 건 사실이다. 아이들 앞에서 교사들을 포함 생활지사, 상담교사, 세탁부 등 전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아이들을 이토록 방치함에 분통이 터져서 말은 바 책임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축내는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호통을 쳤다.

폭언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사실이고 아니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말이라는 것은 건넌면서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않으며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

제6장 기타기관

들 이미 선입견이란 것이 있고 그런 시각으로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의견이 얼마만큼 관철될까 싶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직원들이 없으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없으며 시설의 발전도 없는 현실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한다. 200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이들의 무질서함과 아동들이 안하무인격으로 교사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꾸짖었던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사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직원회의 또한 사택에서도 이루어짐을 알아줬으면 한다. 아이들에 대한 소홀함은 없었다. 어린이집에서 고스톱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 사항은 아이들이 듣기는 들은 사항 같으나 이전 범인 내의 일들 같다. 구청의 지도하에 끝난 사항들이다. 술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할 수 없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아이들이 사택을 청소하도록 시킨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없을 때에는 형이 동생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친밀감과 교사들의 힘든 사항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직원들과도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가족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부탁을 했었던 것이다.

부모님과 면회를 못하게 하지 않았다. 아동들을 데리고 나가시면 규칙과 규율을 어기고, 어떤 때는 학교 가야 하는데 연락은 안 되고 애가 탄다. 어떤 부모님은 '곧 데려 가마' 하시고는 연락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부모님을 만나고 온 아동들은 남아 있는 아동들에게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데, 듣는 아동들이 느끼는 부러움과 자신들의 부모들에 대한 원망, 그리움을 생각해야 한다. 이로 인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를 시기하고 따돌리고 방황하고 반항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식구들이 긴장을 하게 된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리광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좀 과장된 표현들을 하면 다음날은 어김없이 교사들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전에 따지고 욕설을 하고, 새벽 세 시고 네 시고 시간 개념 없이 술을 드시고는 오셔서 행패를 부린다.

컴퓨터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으면 밤을 새고, 그러면 애들이 다음날 학교 가서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 TV 시청도 마찬가지다. 늦은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란 것이 애들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핸드폰도 마찬가지다. 고등학생은 아르바이트나 자신들의 용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늦어지면 비상연락 시 필요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돈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어 하고자 하는 애들은 하게 했다. 중학생 아동들의 경우 휴대폰을 해 주신 부모님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어머니가 수긍하셨으며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했다.

되소 아동 모두에게 방문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며, 아이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시설아동 행사 때 가면 적어도 교사들이나 어른들, 동생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그 기본을 저버린다. 그렇다고 오는 애들을 내쫓은 적도 없으며 그것은 방법의 문제겠지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말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 산하 아동양육시설로서, 2007. 7. 현재 유아 4명,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16명 등 총 58명의 아동들이 생활 중이며, 피진정인 ○○○은 동 시설의 원장이다.

2) 2007. 7. 26. 아침 8시경 피진정인은 아동 생활 숙소 1층에서 아이들을 깨우는 과정에서 늦게 일어난다고 “씨발 것들, 개 같은 것들, 대가리에 똥만 찬 것들, 이 걸레새끼야...” 등과 같은 욕설을 하였고, 괜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만 17세)의 엉덩이, 허벅지, 팔 등을 때렸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만 18세)을 때렸다. ○○○이가 맞는 모습을 본 동생 ○○○이 “이 집에서 살기 싫다, 나가자”고 하자 피진정인은 빗자루로 ○○○이의 엉덩이와 팔을 때렸다. 이를 말리려던 ○○○이 “원장님, 왜 때려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이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1층 계단으로 나가 욕설을 하면서 때렸다. 이

제6장 기타기관

러한 소란에 2층에 있던 아동들이 지켜보게 되었고, 직원이 내려와 피진정인을 말했다.

3) 이후 피진정인은 방송을 통해 2층 강당으로 고등학생 이상의 아동들과 직원(휴무였던 직원 포함)들을 모이게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선생님이 이따위니까 애들이 이따위지, 돈만 떼어 먹고 가면 다냐, 너희들이 뭐데 이렇게 하나, 나 혼자 나갈 줄 아냐, 사표 쓸 준비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게는 “너 신고하려면 해라, 네가 신고하는 거 보고 같거다, 네가 한 말은 지켜야하지 않냐”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 강당에서의 상황이 종료된 후 피진정인은 직원들을 사택으로 모이게 한 후 책임을 물었다.

4) 사건 당시 한 아동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한바, ○○이의 팔에 붉은 멍이 선명하였고, 2007. 8.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당시에도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5) 피진정인은 2007. 7. 26. 사건 외에도 평소 아동들과 직원들에게 “씨발 새끼들, 개 쓰레기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등과 같은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아동들과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이다.

6) 2003년도에는 직원과 아동의 불화가 발단이 되어 피진정인이 아동들을 단체로 모아 놓고 몽둥이, 발판 등으로 체벌을 한 사실이 있다.

7) 2006.~2007. 8.까지 시설장의 근무 불성실과 관련하여 ○○광역시 ○○구청의 지도·점검이 있었고, 그 결과 시설장의 상근 의무 미준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감동기관으로부터 주의조치 및 2차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8) 진정인들을 포함한 생활아동 및 직원들에 의해 피진정인의 음주, 흡연 모습이 공공연히 목격되었고, 2007. 8.초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귀가하여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아동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9) 중학생 이상 남자 아동들에게 사택 청소를 시켜 술병, 담배꽂초 등을 치우는 것에 대한 아동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이다. 피진정인이나 직원 부재 시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학년 아동에게 저학년 아동을 돌보는 일을 시키도록 하는 일이 있다.

10) 생활 아동과 부모와의 면회는 원내에서만 가능하고 부모와의 동반 외출·외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원내 컴퓨터는 고장 등으로 인하여 10여대 정도만 사용가능한 상태로 아동들이 불만이 많다. 휴대폰은 ○○○ 전(前) 시설장 재직 당시 아동자치회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고등학생 이상 아동들에게만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피진정인은 2007. 9. 1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법인이사회는 2007. 10. 2. 해임 의결하였으며, 2007. 11. 16. 신임 시설장에 대해 임명 의결한바 있다.

나. 판단

1)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원칙과 함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조는 아동의 생명권, 제17조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제31조는 여가와 문화적 활동의 보장, 제37조는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은 협약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제3조)'을 기본 이념으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제4조),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의무(제9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의무과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할 의무(제18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제26조)하고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2조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9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함하여 11가지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0조).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는 「아동복지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시설의장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4)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2007. 7. 26. 아침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도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단제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체벌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및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소홀하고, 음주·흡연 등 부적절한 모습을 아동들에게 공공연히 노출하고, 중학생 이상 남자 아동들에게 술병,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들을 비롯한 생활 아동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피진정인의 책임은 간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일부 부모들의 부적절한 태도를 이유로 전체 생활아동에 대해 부모의 면회를 원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동반 외출·외박을 제한한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아동자치회를 통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바 있고, 부모와 아동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가 구입해 준 휴대폰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컴퓨터·TV의 경우, 적절한 지도를 통해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종사자의 진술 및 감독기관의 제출 자료를 종합해보면, 그 동안의 시설 운영 실태,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퇴소 아동들과 관련해서, 일부 시설종사자들은 ‘퇴소 아동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퇴소 아동들은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오거나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시설로 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아동들의 시설방문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관심과 지지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진정의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의 정도 및 피해사실의 구체성,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정요지 가.항의 폭행 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정재근

3 2008. 2.13자 06진인1254 결정 [고교투수 혹사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행위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고교투수 혹사관련 피진정인인 학교 측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 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진술 이외에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2】 아울러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가 무리하게 많은 투구를 함으로써 혹사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연구 또는 자문 등 용역, 의학적·신체적 연구 용역, 논문 등), 성장기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또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실태 조사·연구 등의 투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3】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 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권고를 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및 제25조

[진 정 인] 노○○

- 【피 해 자】** 1. 이○○(○○고등학교 야구부 투수)
2. 정○○(○○고등학교 야구부 투수)
3. 김○○(○○고등학교 야구부 투수)

- 【피진정인】**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고등학교장
3. ○○고등학교장
4. ○○고등학교장
5.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6.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7.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8.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 회장

- 【주 문】** 1. 피진정인 1, 3, 4, 6, 7과 관련된 진정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피진정인 2, 5와 관련된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3. 피진정인 8과 관련한 진정부분은 이를 각하하되, 고등학교 야구부 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6. 6.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피해자 1, 2, 3 등은 짧은 대회기간 동안 경기에서 무리하게 220여개 투구 및 연투로 선수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혹사를 당하였다. 대회입상 성적에 따라 감독의 고용이 좌우되고 학생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하는 등의 까닭으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학생투수의 혹사는 나이 어린 학생에 대한 학대이자 선수 수명 단축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해당 학교장과 소속 야구감독이 무리하게 투구를 하도록 하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선수보호에 필요한 경기운영과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구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야구감독에 대한 인력정책과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등학교 야구투수 혹사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가) 피진정인 2, 3, 4, 5, 6, 7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계속 있어왔다. 학생선수들의 대회가 토너먼트로 운영되어 매 게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팀내 에이스투수가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대회수 과다 및 짧은 대회기간 운영으로 야구장 일정이 촉박하여 선수들이 쉼 시간이 부족하여 투수들이 혹사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나) 피진정인 8

투수들의 평소 운동량과 신체발달 정도에 따라 어깨 단련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한계 투구 수가 몇 개인가에 대해 인위적·일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방학 중 경기를 제외하고는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투수가 투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야구에 지명타자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 관련(피진정인 1)

각급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임용한 전임코치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한 일반코치로 구분된다. 전임코치제도는 시·도 교육청별로 '코치 운영 및 관리규칙' 등에 의해 예산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

3)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 관련(피진정인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에 의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함에 있어 학생들의 소질·적성 및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

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 특기자 선발의 경우에도 각 대학의 장이 대학의 설립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 방법 및 기준을 정해서 시행한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도 2006. 6.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때 진정관련 해당학교 일부 투수들이 200개 이상의 투구 및 연투를 하여 혹사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 협회는 성장기에 있는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투수혹사의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용역 포함)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 단축 사례 등의 실태를 조사·연구한 실적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고등학교 야구투수 혹사와 관련한 진정부분

1) 피진정인 3, 4, 6, 7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 피해자 2, 3과 관련된 이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진정인이 진정요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 1이 무리하게 투구 및 연투를 하거나 야구감독이 비정규직이고 대회성적 중심의 입시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진정인 2, 5가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피진정인 8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협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회와 같은 공·사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관계기관에 해당되는 협회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촉구할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진정인인 학교측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초·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인 학교 측의 이러한 진술 이외에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 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가 무리하게 많은 투구를 함으로써 혹사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연구 또는 자문 등 용역, 의학적·신체적 연구 용역, 논문 등), 성장기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또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실태 조사·연구 등의 투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 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과 관련한 진정부분

이와 관련한 진정내용은 정부의 종합적인 비정규직 정책 또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이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

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과 관련한 진정부분

야구선수들에 대한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에 의거,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그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야구부가 있는 대다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야구선수 체육특기자 선발대상을 전국대회 8강 또는 16강 이내 입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5. 결론

고등학교 야구투수 혹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진정요지에 있어서 3, 4, 6, 7, 8에 관련된 진정부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과 관련한 진정부분과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기준과 관련한 진정부분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진정인 2, 5와 관련한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행위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2008. 2.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신혜수 위 원 윤기원

4 2008. 2.28자 07진인4343 결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지도·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 관찰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진정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 할 보호관찰관의 업무로는 불필요한 것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보호관찰명령 집행 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피해자(안○○) 및 피진정인 진술 사이에 폭행의 정도에 관한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관찰함에 있어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안○○

【피진정인】 이○○

【주 문】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보호관찰명령 집행 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인데 보호관찰담당자인 피진정인이 2007. 11. 2. 15:00경 진정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의 배를 툭툭 때리며, “이 새끼 험주네, 너는 공부도 안 하면서 이 새끼야”라고 하면

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7. 11. 2. 15:00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준수사항을 배운 적이 없다는 등의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머리에 몇 차례 꿀밤을 준 사실이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제6장 기타기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제1항의 지도·감독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의 진술 사이에 폭행의 정도에 관한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 관찰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진정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 할 보호관찰관의 업무로는 불필요한 것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2007. 11. 23. ○○보호관찰소는 피해자의 보호관찰담당자를 피진정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점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면,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신혜수 위 원 윤기원

5 2008. 2.28. 자 06진인1951 결정 [과도한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 「생활지도규정」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2006. 8. 29.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김○○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두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발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시간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출석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업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교무실 복도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 하였음.
- 【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나고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신체의 자유),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안양○○고등학교 「생활지도규정」 제100조(학생체벌) 및 제101조(체벌의 기준)

【진 정 인】 심○○ (피해자의 학부모)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김○○

-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6. 8. 29.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두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발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시간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출석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업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교무실 복도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고등학교 2학년 생활지도교사인 피진정인은 개학 후 두발 지도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2006. 8. 25.(금요일)의 두발검사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06. 8. 28.에도 이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이 이와 같이 수차례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체벌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 「생활지도규정」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진정인이 이미 사과를 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신혜수 위원 윤기원

[별지]

관 련 규 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규정」(○○고등학교)

제100조 (학생체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인지시켜야 한다.
3. 체벌도구는 지름 1.5cm 내외로 길이는 60cm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4.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5.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제101조 (체벌의 기준)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드는 경우
7.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6 2008. 4. 3자 07진인4572 결정 [인격권 침해]

진정인이 학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들어야 할 명백한 과실이나 구체적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행정실 방문 금지 및 욕설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정인이 학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들어야 할 명백한 과실이나 구체적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행정실 방문 금지 및 욕설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박○○

【주 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진정인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명백한 과실이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으로 근무하는(현 ○○초등학교 교감) 피진정인이 2007. 4. 중순부터 11. 중순까지 수시로 행정실에 찾아와서 진정인에게 “더러운 년, 썩은 년” 등의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한과 교육적 가치관 및 인생관이 달라 의사소통 및 공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실로 진정한을 찾아가 직장에서 취해야 할 태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은 피진정인과 전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무례하게 피진정인을 조롱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있다고 위협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한에게 “더러운 년, 썩은 년”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진정한이 동료 교감의 말만 듣고 미결된 공문서에 직인을 찍어 준 것은 원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이 시종일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진정인을 조롱했기 때문이었다.

3. 인정사실

○○초등학교장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교육청교육장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피진정인이 위원회 안건 심의 시 출석하여 행한 구술 및 서면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한이 2007. 4. 중순경 동료교감의 협조 요청으로 미결된 공문서에 직인을 찍어준 사실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행정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진정한에게 하였다.

나. 2007. 6. 중순경 학교장이 피진정인에게 행정실 방문 금지 및 사적인 발언 중단, 업무적인 사항은 학교장을 통해 처리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2007. 11. 중순까지 수 차례 행정실을 방문하여 진정한에게 “더러운 년, 썩은 년” 등의 욕설 및 이혼녀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4. 판단

진정인이 학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들

어야 할 명백한 과실이나 구체적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행정실 방문 금지 및 욕설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진정사실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직장내 불화에서 유발된 점, 진정인이 현재 별급형을 선고받아 별도로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2008. 4.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7 2008. 5. 29자 07진인3026 결정 [인격권 침해 등]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행정지도 시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함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되었음 이로 인해 결국 진정인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조, 제48조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조○○

【주 문】 울산광역시○구청장에게 행정지도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을 초등학교 모퉁이에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배출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스피커를 통해 “양심도 없는 정○○ 씨!”라고 방송한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였지만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쓰레기를 버렸다. 울산광역시 ○구청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동별 취약지에 설치하여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고 있으며, 카메라 방송을 통해 쓰레기 배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구청 환경관리과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감시카메라 상황실 모니터링을 통해 진정인의 실명을 알 수는 없다.

다. 참고인

1) 이○○, 장○○(감시카메라 설치지역 인근 주민)

피진정인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양심없는 정○○씨!”라고 진정인의 실명을 2~3번 거론하는 것을 들었으며, 당시 주변 사람들도 이 방송내용을 들었다.

2) 문○○ 및 이○○(울산광역시 ○구청 환경과 단속직원)

불법 투기 쓰레기봉투 배출자가 진정인으로 확인되어 진정인에게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구청(환경관리과 직원 전○○)에서 쓰레기 투기자를 찾았느냐는 전화가 왔으며, 이후 쓰레기가 버려진 현장으로 간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시간 등에 대해 방송을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감시카메라의 스피커를 통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제6장 기타기관

주장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구청장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감시카메라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 ○구청 환경관리과 단속직원인 문○○ 및 이○○의 진술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5. 판단

피진정인은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합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진정인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 근무하는 학원을 방문하고,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회신 시 진정인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피진정기관은 행정지도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8 2008. 7. 3자 07진인5047 결정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및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노조관련활동을 하려고 하는 진정인을 특별히 지명하여 진정인의 보수 내지 진정인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의 합계액을 밝히고 그러한 인건비의 부담이 높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권 및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교직원 회의 시 학교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의 인건비가 3,000만원이나 된다고 교직원 앞에서 적시한 사실이 있음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진정인이 노조관련활동을 할 것을 예시하면서 진정인의 보수 내지는 진정인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많다는 취지로 이러한 비용을 언급하였을 통상의 경우 개개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고 아울러 노조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인건비의 합계를 공개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가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만큼 이기적이라는 매우 나쁜 인상을 심어주어 해당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음

이러한 사회상식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노조관련활동을 하려고 하는 진정인을 특별히 지명하여 진정인의 보수 내지 진정인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의 합계액을 밝히고 그러한 인건비의 부담이 높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권 및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언쟁에서 진정인에게 “까불지 말고, 웃기지 말고 나한테, 학교는 내가 관리하는 건데 허락 받았어? 붙이는 거, 누가 붙이라고 했어? 그래 니 멋대로 해!”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되나 그러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6장 기타기관

【진 정 인】 방○○

【피진정인】 박○○

- 【주 문】** 1.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서울 ○○고등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이 2007. 10. 29. 교직원 회의 시 전체 교직원 앞에서 진정인의 보수가 3,000만원이 넘는다고 부풀려 발표함으로써 일부 교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지 의아해 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인 진정인은 학교 내에서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07. 11. 27. 오전 11:00경 교장실에서 진정인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 한 것과 관련하여 “피켓을 교문에 붙이면 내일부터 당장 다 때려 부순다.”, “야! 까불지 마.”, “너 웃기고 있네.” “니 맘대로 해봐.” 라며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며칠 전에도 진정인을 교장실로 수차례 불러 약 1시간 가량 야단과 호통을 치는 등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고등학교 교장, 박○○)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07. 9.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및 무기계약 전

환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내에 무기계약 체결대상자 4인 중 3인은 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진정인은 노조와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2007. 10. 29. 교직원 회의에서 교직원 90여명에게 학교 현안을 설명하면서 학교회계직역의 인건비가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총액의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으며, 진정인에게 책정된 인건비로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서에 3,000여 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진정인의 직무인 교무실 보조 업무에 비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쟁의관련행위를 할 수 있으니 교직원들은 놀라지 말고 직무에 전념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07. 9. 5.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한 '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및 무기계약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회계직원의 무기계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무기계약 대상자인 진정인은 무기계약을 거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한 적이 없다. 2007. 11. 27. 아침, 신축하여 준공식도 하지 않은 학교 교문 기둥에 진정인이 벽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하여 교장실로 온 진정인에게 "1인 시위는 허용되나 신축한 교문 기둥에 임의로 벽보를 붙이면 되겠는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불손한 태도와 언행으로 "불법이 아닌데요. 내일 노조원을 동원 시킬거야."라고 말하였으며 다음 날 공공노조원 6~7명이 교문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그동안 행정실장을 대동하여 진정인을 3번 만났으나 학교 일정이 바빠서 교무보조원인 진정인을 1시간씩 불러서 야단과 호통을 칠 만큼 여유가 없었다.

3.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같은 학교 홍○○(○○ 담당 교사) 및 장○○(○○ 담당 교사)

제6장 기타기관

의 진술, 이○○(학교 ○○ 담당)가 제출한 자료(2008. 2. 28.)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7. 10. 29. 교무회의에서 진정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3,000여 만원이 된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언급한 진정인의 보수 년 3,000만원은 피해자가 매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에 다른 비용을 포함한 액수이다.

2)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표로 인하여 진정인은 일부 교직원들이 보수가 그렇게 많냐고 의아해 하여 진정인의 실제 소득이 피진정인이 발표한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 교직원에게 진정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여주고 이에 관하여 일일이 해명을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진술, 같은 학교 ○○○ 근무자 정○○의 진술, 같은 학교 김○○ 교사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 기록(CD 녹음파일, 진정인 제출)을 종합해 보면, 2008. 11. 27. 교장실에서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까불지 말고, 웃기지 말고 나한테, 학교는 내가 관리하는 건데 허락 받았어? 붙이는 거, 누가 붙이라고 했어? 그래 니 멋대로 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진정인이 노조관련활동을 할 것을 예시하면서 진정인의 보수 내지는 진정인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많다는 취지로 이러한 비용을 언급하였다. 통상의 경우 개개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인건비의 합계를 공개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가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만큼 이기적이라는 매우 나쁜 인상을 심어주어 해당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상식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노조관련활동을 하려고 하는 진정인을 특별히 지명하여 진정인의 보수 내지 진정인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의 합계액을 밝히고 그러한 인건비의 부담이 높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권 및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과의 언쟁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9 2008. 8. 7자 07진인4220결정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민원은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당신, 보험 사기꾼 아니냐?” 라고 말한 것은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감독 기관장인 ○○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2007. 10. 경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버스회사에 대한 민원을 ○○시청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버스회사 측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민원은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당신, 보험 사기꾼 아니냐?”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2】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진 정 인】 홍○○

【피진정인】 이○○

【주 문】 ○○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7. 9. 26. 경, 진정인은 시내버스 탑승과정에서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여 버스 의자걸이에 허벅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다음 날 ○○시청 교통

과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해당 버스에 신고하라.”고 하여 버스로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버스회사 측에서 “시일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하느냐?”라고 답변함에 따라 다시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여기는 보험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다. 당신, 보험사기꾼 아냐?”라며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을 사기꾼으로 모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시청)

2007. 10월 초순 경, 진정인으로부터 버스를 탔다가 좌석에 부딪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교통불편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진정인은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다리를 의자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차량이 좌석형이면 ‘좌석조심’ 등의 안내문을 차에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항의성 전화였다. 또한 진정인이 버스에 승차한 날짜 및 차량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버스 탑승 중 의자에 부딪혀 다친 사항은 해당 버스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이후 버스회사 관계자에게 전화하니 진정인이 버스회사 측에 민원전화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진정인이 전화하여 ○○시청에 접수한 신고 사실을 버스회사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진정인이 신고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함을 안내하자 진정인이 “야! 이 새끼야!”라고 하여 피진정인도 순간 화가 나서 “당신, 보험사기꾼 아냐?”라는 말을 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시내버스 민원차장)

2007. 10월 초 경, 진정인이 버스회사로 전화하여 2007. 9. 25. 경 시내버스(경기72바XXXX)를 탔는데 버스가 급히 출발하여 진정인의 좌측 허벅지가 버스 의자

제6장 기타기관

결이에 부딪혀 심한 통증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민원을 제기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일~7일이 경과한 시점이기에 "시일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사고를 신고하면 어느 버스인지,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사고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2007. 10. 경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버스에 대한 민원을 ○○시청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버스회사 측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민원은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당신, 보험 사기꾼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감독 기관장인 ○○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10 2008. 8. 7자 08진인1945결정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에게 사용한 ‘암적 존재’ 라는 말은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그 대상자에게 매우 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야기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에게 사용한 ‘암적 존재’ 라는 말은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그 대상자에게 매우 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야기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하○○

【주 문】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중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인쇄, 쓰레기 분류 등의 업무를 17년째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중학교 행정실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2008년도 초 사서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2008. 5. 23.에는 통계업무 인계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08. 5. 30. 피진정인으로부터 ‘2008년도 근로조건’에 대한 서명 요구 등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

제6장 기타기관

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는 암적인 존재다. 너를 보기 싫으니 학교를 그만 뒤라. 다른 사람들도 너를 싫어한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개교 이전부터 근무하다 1997. 3. 1.부터 행정실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7. 10. 1.부터는 인쇄업무와 쓰레기분리수거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교육통계업무 인계와 관련된 피해자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진짜 얼굴 안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사무를 처리하면서 숫자가 많이 틀려서 “어떻게 사무처리 딱 두 가지 하는데 발간일지와 소모품 대장이 틀리는 게 이렇게 많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폭언을 한 바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2008. 5. 23.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진정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서업무 도우미 협조, 교육통계업무 인계 관련 사실 확인, 근로조건갱신계약 등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국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김○○이 어떤 사람이나면은 내가 열 받아 갖고 다 이야기를 했어. 꼭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암적 존재라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지금 내가 판단하기는, 왜 이렇게 살아? 앞으로 그래 살 거야? 나는 가능하면 내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 조직에서는 꼭 없어야 될 사람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사실이 맞으면 도장 찍어.” 라고 말하였다.

다. 진정인은 ○○지방교육청 ○○교육청에 이 사건 진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진정하였고 ○○지방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진정에 따라 2008. 6. 24. 피진정인과 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취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암적 존재’ 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 피진정인이 사용한 ‘암적 존재’라는 말은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그 대상자에게 매우 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야기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관할 교육청에서 주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8.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11 2008. 9. 25자 07진인4677 결정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할 긴급한 사정이나 최후의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이므로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대책 수립과 관련 당사자에게 적정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최후의 수단이거나 긴급한 수단이어야 함. 그런데 피진정인은 폭행 가해자를 찾는데 있어,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 옴모나 복장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개별적 상담을 실시해 볼 수 있었고, 이미 학기 초에 확보된 소속 학생들의 사진이 있어 이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도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모색해 볼 수 있었고,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 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임의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1. 박○○

2. 이○○

3. 한○○

【주 문】 1. ○○○○초등학교장에게 향후 진정요지 다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라항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 및 기각하고 그 외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2007. 5. 7.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김○을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초등학교장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임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력대책위”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학부모인 진정인을 동 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해자의 하교시간, 친구의 증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김○을 폭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피진정인들은 김○과 목격자들의 주장만으로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취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치료 상담을 받았다.

나. 김○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2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서 2007. 5. 11. 피해자와 상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깐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취급하였다.

다.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2007. 5. 11. 피해자를 포함한 담당 학급(6학년 3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김○ 및 목격자 등에게 제공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2007. 6. 11. 수업시간(영어, 음악)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 김○ 폭행사실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해라. 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진정인의 아들, 2007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3반 재학생)의 주장요지

제6장 기타기관

1) 피진정인 2는 2007. 5.경 피진정인 3과 김○을 참여시킨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고개를 못 드는구나.”라며 피해자를 ‘때린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2) 피진정인 3은 2007. 5.경 6학년 3반 학생들이 “왜 우리 사진을 찍느냐? 그 아이(김○)를 (우리 반으로) 데리고 와서 (때린 학생을) 찾아라.”라고 말하였음에도 6학년 3반 남학생 모두의 사진을 찍었다.

3) 피진정인 3은 2007. 6.경 2교시 영어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불러 수행여행비 도난 사건에 대해 상담한 후 피해자가 김○을 때렸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물었으며, 4교시 음악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의 폭행여부를 물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초등학교장)

피해자를 가해자로 확정해서 폭력대책위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다만 김○과 2명의 학생이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폭력대책위를 개최하였다.

진정인과 그의 처는 김○과 폭행을 목격한 2명의 학생 중 1명이 판단력이 부족한 특수아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진정인 2(○○○○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는 특성상 학급담임이 아동을 하루 종일 돌보고 있으므로 학생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학급담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김○의 폭행 피해 확인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김○의 얼굴이 피명으로 뒤덮여져 있어 매우 심각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피해 학생이 병약한 저학년생이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것이다.

2007. 5.경 피해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 교실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왜 택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곳만 보고 있는 지 그 이유를 말해 봐라.”라고 피해자에게 부드럽게 말했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초등학교 교사)

가)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로부터 김○을 때린 학생이 6학년 3반에 있으나 김○이 직접 (다수의 학생들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며, 6학년 3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학급 아동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 뒤 사진 촬영을 해도 좋을 지를 묻자, 학생들은 6학년 3반이 언급된 사실에 불쾌해 하면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겠다고 동의하여 한 명씩 남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학생들 사진이 담긴 디지털카메라를 도움반 교실로 가지고 가서 피진정인 2와 폭행사실을 목격한 아동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당시 도움반 교실에는 피진정인 2, 도움반 교사, 폭행 목격자들만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사진이 공개적으로 유포될 상황은 아니었다. 담당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수시로 촬영하고 있고, USB에 학기 초에 찍은 6학년 3반 학생들의 사진화일이 있었으나 그날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사진을 찍은 것이다.

나) 진정요지 라항 관련

2007. 6. 8. 6학년 3반에서 발생한 수학여행비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2007. 6. 11. 피해자와 절도행위를 한 학생을 면담했다. 위 절도사건이 있었음을 안 2007. 6. 8.에는 절도행위를 한 학생이 이미 귀가한 뒤였고 집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당일에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 후 수업일인 6. 11. 오후에는 피해자와 관련한 폭력대책위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과전담시간을 활용해 피해자와 면담한 것이다. 면담시간은 피해자와 진정 외 절도사건 연루학생을 따로 면담하였고 각 1시간 정도씩 상담했다.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라.”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자꾸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표현은 수업 중에도 자주 사용한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정○○(○○초등학교 특수교사, 전 ○○○초등학교 근무)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김○과 오○○는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시간 개념이 희박하나, 사람을 인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들은 참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김○을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제6장 기타기관

2) 참고인 김○○(2007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3반 재학생)

피진정인 3은 2007. 5.경 2학년 동생을 때린 사람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며 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 범인을 찾겠다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으므로 참고인은 아무런 불만 없이 사진을 찍었고 다른 아이들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3) 참고인 이○○(2007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3반 재학생)

피진정인 3은 2007. 5.경 2학년 동생을 때린 사람을 찾는다며 반 아이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때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셨으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폭력 가해자를 찾기 위해 6학년 3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찍었으나 참고인은 결백했으므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제출자료(피해자의 진술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기한 민원서류 사본, 피진정인 2와 3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서, 상담확인서, CCTV 사진,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폭력대책위 개최 결과, 절도사건 개요, 김○ 관련 사건 개요, 특수교사의 목격자들에 대한 견해, 김○ 관련 상담기록부, 폭력대책위 재심의 거부 처분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폭력대책위 회의록 등), 참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은 2007. 5. 7.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고 3일 간 결석했다. 동 부상자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박△△은 김○이 맞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달 8. 및 10.경 3학년 4반 오○○도 같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오○○는 김○을 때린 학생이 6학년 3반 학생이라고 말했다.

나. 2007. 5. 11. 피진정인 2는 6학년 3반 담임인 피진정인 3에게 김○을 폭행한 학생을 찾고자 한다며 6학년 3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요구했다. 피진정인 3은 소속 반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는 이유를 설명한 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남학생들을 한 명씩 촬영하였다. 이어 피진정인 3은 동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피진정인 2와 도움반 교사, 폭력장면을 목격한 박△△·오○○, 부상 학생 김○에게 보여주었다. 동 사진을 본 목격 학생과 부상 학생은 김○을 폭행한 가해자로 피해자를 지목했다.

다. 피진정인 3은 2007. 6. 11. 오전 영어시간 및 음악시간을 이용해 피해자와 면담했다.

라. 피진정인 1은 2007. 6. 11. 폭력대책위를 개최했다. 동 대책위에서는 ①김○의 피해 정도, ②피해자가 김○을 폭행했다는 목격과 진술이 있었던 사실, ③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김○과 피해자의 모습 및 하교 시간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정인이 주장한 사실, ④피진정인 1 등이 김○의 부모와 진정인 간에 화해를 권유한 결과 부상자의 부모는 화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누명을 끝까지 벗기겠다고 주장한 사실 등이 보고되었다.

마. 2007. 6. 11. 개최된 폭력대책위에서 김○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나 더 이상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진정인은 피해자가 김○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폭력대책위에 요구하자 동 대책위 위원들은 폭력대책위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며 그럼 경찰에서 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진정인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동 폭력대책위에서는 김○의 부모와 진정인이 화해하기를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결백을 주장하며 화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제6장 기타기관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률 제7849호, 2008.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임을 뜻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 마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폭력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당사자(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언급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고 폭력대책위가 특정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학교폭력 당사자의 지위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 1 등 학교 측 관계자들은 김○과 목격자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원으로서 이들의 학습능력이나 인지력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폭행사실에 대한 이들 진술의 진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당사자의 부모 간에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김○의 부상과 관련해 피해자를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 폭력대책위를 개최한 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폭력대책위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밝히기 위한 논의를 하거나 가해자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 1이 폭력대책위를 개최한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개최한 폭력대책위에 피해자의 보호자인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폭력대책위 회의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폭력대책위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진정인은 폭력대책위에 자신이 시종일관 참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진정인을 동 폭력대책위의 회의 전체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책임교사 이외의 담임교사 등에게 폭력과 관련한 생활상담, 지도 등 일체의 교육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진정인 2는 부상을 입은 김○의 담임교사로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제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해 부상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를 면담한 사실이 있으나, 면담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함께 상담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상담한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폭력 가해자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화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구체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인 2는 김○ 및 목격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라는 진술을 들은 직후 피해자와 면담한 것이므로 내심 피해자를 가해자로 의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학교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대책 수립과 관련 당사자에게 적정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의 얼굴을 촬영하였다(피진정인 3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학생 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이 가해자 확인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최후의 수단이거나 긴급한 수단이어서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 3 등은 폭행 가해자를 찾는데 있어,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 용모나 복장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개별적 상담을 실시해 볼 수 있었고, 이미 학기 초에 확보된 소속 학생들의 사진이 있어 이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도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

제6장 기타기관

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3 등 관련 행위자들의 조치는 김○의 부상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나름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 촬영된 사진이 극히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내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공통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저조한 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달리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수업시간을 이용해 피해자와 상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상담자체가 교육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학습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가 규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라항 중 학습권 관련 부분은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그 외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 련 법 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9호, 2008.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국가경찰공무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6.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①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8. 9.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4조(분쟁조정의 개시)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제6장 기타기관

정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외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외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외를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외를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외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외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외가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외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외를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외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외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외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학생 소속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외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2008. 10. 9자 08진인2795 결정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피진정인의 발언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2008. 7. 25.(금) 11:40경, 진정인이 ○○은행 매각 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전화민원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매우 오만하고 거친 말투로 “알 필요 없다. 조만간 정부발표가 있으니 그때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등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민원인에게 너무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아니냐?” 라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 ○○○야! 억울하면 관계부처에 전화 해서 고발해.” 라고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진정인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2】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신○○

[주 문]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8. 7. 25.(금) 11:40경, 진정인이 ○○은행 매각 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전화민원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매우 오만하고 거친 말투로

“알 필요 없다. 조만간 정부발표가 있으니 그때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등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민원인에게 너무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그럼 나보고 어찌라는 거야? 이 개○○야! 억울하면 관계부처에 전화해서 고발해.”라고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진정인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에서 HSBC의 ○○은행 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민원전화를 한 2008. 7. 25 (금)은 HSBC의 ○○은행 인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날로 언론을 통하여 오후 4시경에 이를 발표될 예정이었다.

2) 2008. 7. 25. 오전경, 진정인이 수차례 민원전화를 걸어 오후에 발표될 내용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여 “오후에 정부 발표가 있으니 언론 및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진정인이 “왜 국민이 요구하는데 미리 알려주지 못하나? 금융위 공무원들이 ○○은행을 외국자본에 팔아먹으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진정인의 지속적인 전화민원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았고 진정인이 공무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하여 본의 아니게 진정인에게 “이 ○○야!”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3) 당일 오후 2시경, 진정인에게 오전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전화를 통해 수차례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으며, 전화통화를 통해 은행과 주무서기관 등이 피진정인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진정인은 “사무관이 하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며 금융서비스국장실,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향후 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다. 참고인(김○○,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1) 2008. 7. 25. 오후경, 진정인이 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하여 “금일 오전 은행과로 ○○은행 매각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갑자기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면서 “피진정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인과 통화를 마친 후,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외근 중이어서 2008. 7. 28경 민원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은 “당시 무척 바쁜 상황인데 진정인이 오전 내내 전화하여 따지듯이 물어 순간 화가 나서 부적절한 언행(욕설)은 하였으나, 즉시 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민원처리 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구두로 주의조치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2007. 7. 25. 오전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매각 건에 관한 발표내용을 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오후에 언론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면서 “이○○야!”라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이미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감독 기관장인 금융위원회위원장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 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정보인권

Ⅰ 2007.4.2자 06진인1740 결정 [행정처분 기록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의사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의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의사 면허증 원본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도 타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직 의사로서 의사 면허증 뒷면에 2004년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의사 면허증은 국내외 취업, 병·의원 개설신고, 금융기관 대출, 학술대회 참가 시 등에 제출하거나 휴대하여야 할 경우가 많은데, 행정처분 사실을 면허증 뒷면에 평생 기재하여 두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이는 근거규정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불합리한 이중처벌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에 의거 약사의 경우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학술대회 참가 등을 위해 면허증 제출이 필요할 경우 면허증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 내역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이 약사·한약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1954. 8. 3. 동 규칙 제정 시부터 규정되어 온 것으로 제정 당시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약사·한약사에게 과거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규위반의 사전예방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관계기관 ○○○○협회의 의견

가.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14)에 따라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취업 시, 금융기관 대출 시,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나. 의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것은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격권의 과도한 침해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대장을 두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부과횟수를 파악하고

14)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제6장 기타기관

있는데, 별도로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범규위반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기 보다는 추가적 제재에 해당된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직역에서는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고,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4. 관련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그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약사등록대장 또는 한약사등록대장에 당해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는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의 처분인 때에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뒷면에 그 처분의 요지와 자격정지기간을 적어넣고,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면허증을 본인에게 돌려준다.

5.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의사 등 의료인에 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약사법시행규
칙 제94조 제3항에 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학술대회 참가 등을 위해 의사 면허증 제
출이 필요할 경우 면허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이 타인에게 노출될 경우가 없다고 하나, 국가기관의 의사 채용공
고문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공고
문에서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하여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면접
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2006. 9. 14. ○○광역시○구, 2006. 10. 16. ○○광역시
○○구, 2006. 11. 3. ○○도○○시, 2006. 11. 8. ○○○○시○○구, 2007. 3. 8. ○
○도○○시, 2007. 3. 9. 국립○○병원 계약직공무원(의사) 채용-공고문), 관계기관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아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에는 면허증 사본
을 제출하나 의료기관 취업 시, 금융기관 대출 시,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등 의사의 사회생활에 있어 면허증 원본이 사

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인정된다.

다. 피진정인은 의료법 제11조¹⁵⁾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¹⁶⁾에 의거 면허등록 대장에 의료인의 행정처분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5조 제3항¹⁷⁾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 기관은 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할 특별한 관리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단지 그 목적은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의료인에게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 15) 의료법 제11조(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6)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면허등록대장등) ①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제4호서식]

(앞쪽)

면허등록대장				작성	담당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사진 (3cm×4cm)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근거	졸업 제 회 국가시험합격 제 호				
관련면허 (자격)	종별	번호	취득연월일	시험합격일	합격번호

(뒤 쪽)

행정처분사항등

- 17)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5조(처분의 통지) ③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기관

방법으로만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상의 내용과 같이 의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의사 면허증 원본이 다수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도 타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의사 본인에게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 의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의 개선과 함께 이러한 관행에 준용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의 내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2 2008. 5. 8자 07진인2270 결정 [개인정보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부장관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진정인 허○○는 2006. 10월경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음성안내(ARS)에서 원활한 상담통화를 원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는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데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 및 수집함.
- [2]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진 정 인】 허○○

- 【피진정인】**
- 1. 노동부장관
 - 2. 국토해양부장관

- 【주 문】**
- 1. 노동부장관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2. 진정인의 진정 중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 3.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10.경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음성안내(ARS)에서 원활한 상담통화를 원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는 등 개인신상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데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 및 수집하였다.

나. 또한, 전화상담서비스 이용 시 상담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휴대폰 통화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불필요한 음성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통화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노동부는 2004. 8.경 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기초상담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 만족도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종합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궁금증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2) 전화상담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직접 상담원과 연결되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상담을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상담에 필요한 개인이력 조회 및 기존자료를 조회하는 목적에 한하고 사용하고 있다.

3) 최근, 민원인들은 단순정보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신고사건의 처리절차, 직업훈련 등 노동 전반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1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시스템은 이러한 민원인의 요구에 맞춰 종합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종합상담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4) 또한, 상담전화 요금은 상담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요금을 공공기관 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형태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기관들도 상담 자체를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피진정인 2

1) 국토해양부는 타 부처에 비해 주택, 건축, 토지,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수행 및 규제업무가 많고, 전화 및 방문, 전자, 우편 등 여러 형태로 제기되는 민원업무가 많으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체계가 미흡하여 대국민 만족도가 낮았다.

2) 이에 과도한 민원업무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민원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3) 전화상담 민원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장난전화를 하거나, 동일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상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사례가 많아 실제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인의 상담내역을 민원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민원콜센터' 구축 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상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응답기(ARS)를 통해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대한 일부 민원인의 불만이 제기되어 2007. 9.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였다.

5) 민원인의 상담전화 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발신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콜센터가 발신자부담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07. 6.경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종합상담센터에 전화하였는데 자동응답기(ARS)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민원인의 전화상담 시 자동응답기(ARS)를 이용하여 "상담은 1번, 전화번호 등 노동관서 안내는 2번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한 후 민원인이 노동관서 전화번호안내(2번)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상담원과 연결한 사실이 있다.

3) 그러나, 민원인이 상담(1번)을 선택하면 "임금, 퇴직금, 해고 등 노사관계는 1번, 취업알선, 고용보험 상담은 2번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안내를 하면서 민원인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노동부의 종합상담센터(1350번)는 노동부 본부에서 운영하며, 민원인이 권리구제와 관련된 상담을 원할 경우 "본부에는 근로감독관 등이 갖는 사법권한이 없으니 지방노동사무소에 다시 전화하라." 며 지방노동관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전화상담 중에 지방노동사무소와 통화연결 불가).

5)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민원센터는 2007. 9.경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대한 민원인의 항의가 있어 전화상담서비스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수집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부의 민원전화상담센터(콜센터) 대부분이 민원인의 상담전화 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발신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1에 대하여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전화상담도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전화상담 신청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민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기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요구한 주민등록번호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민원인의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성명, 주소’가 아닌 그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진정인 고유의 개인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조회 및 본인임을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절차에 따라 상담 도중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4) 그러나,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교통민원콜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과정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상담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에 의거 해당 운영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제6장 기타기관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2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예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 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3 2008. 5. 29 자 07진인3520결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 침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에게,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2007. 9.경 진정인에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를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우편물 주소란 및 성명란에 진정인의 개인 정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명기하여 타인에게 진정 인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
- 【2】 피진정인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확인작업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한 행위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등)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시장에게,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7. 9.경 진정인에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우편물 주소란 및 성명란에 진정한의 개인정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명기하여 타인에게 진정한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568호)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고지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행정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된 고지서 영수필통지서에도 주민번호가 명기되거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된다(예 : 1234567-*****). 차량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고지서 우편물 주소란에 주민등록번호는 출력되지 않고 이름만 출력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고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있다.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 및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의 위와 같은 진술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피진정인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6장 기타기관

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침해행위는 개별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이 직원들에게 이러한 확인을 반드시 거쳐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1조 (납부고지서 서식)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제3호의2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2008. 5. 29자 08진인170 결정 [진정서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피신고회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유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해 민원서류 사본이 유출된 것은 민원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마을버스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상 불법행위를 한 회사의 관계자를 ○○구청 사무실로 불러 조사 하면서도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없이 신상정보가 기록된 신고서를 방치하고 자리를 비웠음, 이로 인해 피신고 회사 관계자가 관련 신고서 사본을 가져가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관련 민원을 담당한 피진정인이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진 정 인] 문○○

[피진정인] 박○○

[주 문]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7. 4. 자신이 근무하는 ○○운수(주)의 운행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구청에 진정서(이하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진정서 처리를 담당한 피진정인은 2007. 7.말경 그 사본을 위 ○○운수(주) 관계자에게 유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운수(주) 관계자는 “진정인은 진정이나 하는 사람”이라며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을 ○○운수(주)와 ○○(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게시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청 사무실에서 (주)○○운수 관계자의 의견진술과 사실 확인을 하던 중, 피진정인을 찾아온 또 다른 방문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주)○○운수 관계자가 책상 위에 있던 진정서 사본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다.

2) 진정인은 진정서 유출에 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피진정인과 약속한 후 자신의 근무소홀로 해고되자 복직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 참고인 ○○○ [○○운수(주) 감사]

참고인은 2007. 7.말경 ○○구청에서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 관해 피진정인의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정내용이 부풀려진 것 같아 확인하기 위해 책상에 있던 진정서 사본을 담당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 ○○운수(주) 및 ○○(주) 직원 40여 명이 커피 등을 마시는 사무실에 있는 서류 홀더에 끼워 둔 적이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1호)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6429호)

1)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6장 기타기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①(생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의 자인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는 진정인이 근무하는 ○○운수(주)가 마을버스 운행을 3~4시간 이상 결행하거나 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일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동 진정 제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청은 이 사건 관련 진정서와 관련하여 2007. 9. 28. ○○운수(주)에게 운행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운수(주) 감사 ○○○는 2007. 7.말경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처리를 담당하는 피진정인의 요구를 받고 ○○구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진정인의 책상 위에 있던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운수(주) 등의 소속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수일 간 공개하였다.

5. 판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소속회사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운수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마을버스를 배차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서 처리와 관리를 담당하는 피진정인으로서 진정인이 내부자로서 공익적 제보를 한 사실이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진정인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익제보자·내부신고자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 공익제보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제보 상 불법행위를 한 회사의 관계자를 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하면서도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없이 신상정보가 기록된 진정서를 방치하고 자리를 비웠음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신고 된 회사의 관계자가 쉽게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을 가져가서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이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이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진정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진정서와 관련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해당 문건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유출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5 2008. 5. 29자 07진인3236, 07진인3239, 08진인831 병합 결정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법」이 있음

그러나 「인감증명법」 어디에서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 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의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인감증명법」 제1조,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진 정 인]** 1. 김○○
2. 황○○

[피진정인] 행정안전부장관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김○○는 2007. 8. 28. 09:40 경 진정인 김○○가 서울시 ○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진정인 황○○은 전남 ○○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사무소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측에서 대리인으로부터 무인을 채취한 후 이를 교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 방식이 인장과 행정청에 등록된 인감을 확인한 후 발급하던 직접 발급 방식에서 행정청에 미리 등록된 인감을 전사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제6장 기타기관

간접 증명방식으로 변경(2002. 3. 25. 개정)되었다. 그 후 허위 위임장 등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의 증가로 국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할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대리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다.

2) 대리인이 무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문날인은 신원확인의 용이성 및 정확성,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감 사용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행정안전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공문(2007. 10. 19. 접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어디에서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의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한의 진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8. 5.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가. 「헌법」

- 1)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등

나. 「인감증명법」

- 1)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 1)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중략~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3) 제15조(인감증명발급의 거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
 1.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6 2008. 7. 17자 07진인3637결정[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관련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누출함으로써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교육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에 대하여 기관주의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근무한 ○○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이 학교의 영역 내에서 학부모 등에게 유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위 학교 관련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등)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최○○

【피진정인】 김○○

【주 문】 ○○교육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에 대하여 기관주의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초등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은 2007. 9. 경 병설유치원 교사인 피해자가 병

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내용(병명 : 간울, 4주 진단)을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 교육공무원인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김○○, ○○초등학교 교장)

2007. 8. 30. 경 참고인 5(○○초등학교 교감)로부터 피해자의 병가 요청 사실과 진단서 첨부 내용을 보고 받고 행정처리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진정인은 학부모 34명이 2007. 9. 20. 경 제출한 탄원서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및 기타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 요지

1) 참고인 1(○○교육청 장학사 2인)

참고인 1은 2007. 9. 7. 경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사본과 근무상황부 사본, 기간제 강사 채용에 관한 임용보고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였다. 또한 학부모 대표가 2007. 9. 17. 경 인터넷참여마당신문고 및 ○○교육청에 피해자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의 진단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참고인 1이 이를 조사하였다. 참고인 1은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단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적은 없다.

2) 참고인 2(인터넷 진정을 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참고인 2는 2007. 9. 19 경 학부모 대표 등 34명의 서명을 받아 ‘인터넷참여마당신문고’와 ‘○○교육청’에 피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참고인 2는 피해자의 병명을 다른 학부모들 간의 대화를 듣고 알았을 뿐이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진단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다.

3) 참고인 3(○○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제6장 기타기관

참고인 3은 2007. 9. 20. 경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개최된 제10차 임시 운영회에 참석하였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다. 피해자의 병가신청 사실 및 병명 등에 대한 내용은 동네에 사는 다른 학부모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4) 참고인 4(현재 ○○초등학교 교감)

참고인 4는 2007. 9. 1.에 ○○초등학교 교감으로 신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서를 직접 접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병가 신청은 참고인 5(전임 교감)가 근무할 당시에 처리되었다. 참고인 4는 대체강사 채용과 ○○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출 받은 진단서 1부를 복사하고 근무상황부 사본과 함께 ○○교육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진단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보여 준 사실이 없다.

5) 참고인 5(사건 당시 ○○초등학교 교감)

참고인 5는 2007. 8. 30. 피해자로부터 병가를 연장하겠다는 전화를 받아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라고 하였다. 참고인 5는 2007. 8. 30. 오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진단서를 가지고 왔다는 전화를 받고 교무실에 계시는 분에게 진단서를 맡겨 놓으라고 하였다. 참고인 5가 외출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책상 위에 피해자의 진단서가 들어 있는 봉투가 놓여 있어 진단서를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참고인 5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진단서를 '교원근무상황부'에 철하여 캐비닛에 보관하고 시건 장치를 했다. 피진정인의 진단서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 참고인 5는 2007.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었다.

6) 참고인 6(○○초등학교 교무부장)

참고인 6은 2007. 8. 30. 경 피해자의 장기간 병가로 인한 기간제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결재(협조)를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병가는 인사업무에 해당되어 참고인 5(전임 교감)가 직접 처리하였다. 피해자의 진단서는 '교원근무상황부'에 철하여 캐비닛에 보관하였으며, 교직원 인사서류는 별도의 캐비닛(교감이 별도 관리)에 보관하였다. '교원근무상황부'는 교감과 교무부장이 함께 사용하는 캐비닛(상단은 교감, 하단은 교무부장)에 보관하였으며, 캐비닛 열쇠는 참고인 6이 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6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다른 사

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진단서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7) 참고인 7(○○초등학교 행정실장)

교직원에 대한 병가는 인사업무에 해당되어 참고인 5(교감)가 직접 서류를 접수 한 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관련 증빙서류도 참고인 5가 직접 보관하였다. 참고인 7은 피해자의 병가 신청으로 인하여 대체 강사가 채용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8) 참고인 8(○○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참고인 8은 2008. 9. 1.부터 일반 행정업무(문서 수·발신)를 담당하였는데 교직원의 인사 관련 서류는 참고인 5(교감)가 직접 수령하고 문서를 기안하여 발송하였다. 당시 학교에 출근했을 때 교직원들 몇 명씩 모여서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등 교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으나 피해자의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 2007. 9. 20.자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고인 5는 2007. 8. 30.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진단서를 전달 받아 피진정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병가 승인처리를 한 후 진단서를 ‘2006년도 교원근무상황부’ 안에 첨부하여 캐비닛에 넣었고 시건장치를 하였다.

나. 참고인 2는 2007. 9. 17. 경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병명, 진단일수, 발급대학병원명, 증세)된 탄원서를 학부모 34명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였다.

다. 참고인 3이 “최모 선생님도 . . . 병가를 냈는데 뭐 1학기 동안 뭐 50일을 내셨고 뭐 ‘간울’하면 병세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신 분이 어떻게

애기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엄마들이...” 라고 말하였다.

5.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근무한 ○○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진단서의 내용이 학교의 영역 내에서 학부모 등에게 유출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위 학교관련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학교의 감독기관인 ○○교육청 교육장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위 학교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위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7.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7 2008. 7. 17자 07진인4983 결정 [정보 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과 ○○대학교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에 대해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 방법, 장소 및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록물 폐기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 및 기록물 폐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제37조 제1항)
-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록물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수공채 지원자 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보존하지 않았고 폐기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인정됨.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폐기된 기록물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5. 5. 9.자 05진인191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2조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5조, 제37조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학교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5. 8. 8. ○○대학교에 2001년도 ~ 2005년도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2007. 6. 7. ○○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원의 공개결정정보 중 2001년 ~ 2003년도의 교원임용 지원자들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등의 서류들은 자체 폐기하고 2007. 6. 28. 이 자료들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이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것이다. 해당정보를 무단 폐기한 ○○대학교의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대학교에서 2003. 8. 15.자로 공고한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 초빙'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의미론 분야의 지원자였다. 진정인이 행정 감시 및 쟁송 등의 목적으로 2005. 8. 8. 별지 표1의 '청구정보내용'에 기재된 정보를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피진정인은 별지 표1의 '공개 여부'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부분 공개하였다.

2) 이후 진정인은 2006. 7. 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

였다가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07. 6. 1. 별지 표 2와 같이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를 선고하였다.

3)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진정인은 2007. 6. 28. 진정인에게 비공개한 자료에 관하여 별지 표3과 같이 부분공개를 통지하였으며, 이 때 비공개한 정보는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진행단계에 따라 폐기했거나 해당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4) 교수 지원자의 제출 서류인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총목록은 '학과(부) 및 대학심사 결과 보고' 단계에서 해당학과(부)로부터 교무과가 회수하여 보관하는 자료로 보존가치의 중요성이 낮다. 더욱이 한 번의 교수공채가 진행된다면 약 500 ~ 600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지원서, 각종 증명서, 연구실적물, 해당학과(부)별 추가 서류까지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5) 그러므로 '임용' 단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최종 합격자의 지원서류 중 학교 측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회보서 등만 인사기록카드에 보관되고 나머지 불합격자의 지원서류는 학교 측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그 분량이 방대하여 자체 폐기한다.

6) 진정인이 지원했던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공개요구한 당해 연도의 정보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2001년 ~ 2003년도 교수공채 관련 자료는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는 무관한 자료이며,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상 1년간 자체 보관 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자동 폐기하는 자료이다.

7) 진정인이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수공채과정에서 프로시딩의 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 여부를 입증하여 전임교원임용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함이다.

8) 따라서,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전임교원임용처분등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며,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요청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유 없다.

다. 참고인 진술(국가기록원)

제6장 기타기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에 의하면, 국·공립대는 자료관 설치대상 기관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8.부터 2007. 4. 5.까지 적용. 10차례에 걸쳐 개정)에 의하면 기록물의 폐기는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 결정에 의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전문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때에는 자료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당해 전문관리기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4. 5.부터 시행) 제43조 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관에 이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대학교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의 진술 1)항 ~ 3)항 기재의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수공채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처리과 세부기준에 보존기간을 규정하거나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철 등에 등록·편철을 하지 않았으며, 보존기간 등을 정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교수 공채 지원자들의 서류를 폐기할 때에 기록물폐기심의회의를 개최하거나 폐기 결재 등 폐기 관련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은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 現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 보유·관리·폐기와 관련한 사항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에 대해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 방법, 장소 및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록물 폐기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 및 기록물 폐기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록물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수공채 지원자 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보존하지 않았고 폐기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폐기된 기록물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는 교수공채지원자들의 서류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리해온 대학의 업무 관행으로 판단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학교 총장이 위와 같이 기록물을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고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피진정인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7.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표1] 정보공개청구내용 및 비공개 사유

순번	청구정보내용	공개 여부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사유
①	임○○의 연구실적총목록	비공개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관련 행정소송 중 소 취하함
②	유○○의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목록과 연구실적 총목록	비공개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관련 행정소송 중 소 취하함
③	○○대학교 홈페이지 2004년 상반기(2003년 10월 시행) 교수초빙단에 공고된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목록 ○○대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 출력본	공개	
④	2001년 상반기(2000년 가을학기 시행)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수초빙 영어영문과 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 목록, 지원자 서류심사조서, 심사총괄표(1단계-3단계)	부분 공개	○ 진정인의 지원자 심사조서는 공개 ○ 그 외는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진정인의 심사총괄표(1단계-3단계)는 기 공개 ※ '지원자서류심사조서'는 관련 행정소송 중 소 취하함
⑤	2004년 상반기 ○○대 인문대 소속 학과 교수초빙 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 목록, 지원자서류심사조서, 심사총괄표(1단계-3단계)	부분 공개	○ 진정인의 지원자 서류심사조서는 공개 ○ 그 외는 타 지원자 개인정보에 해당 ○ 진정인의 심사총괄표(1단계-3단계)는 기 공개 ※ 관련 행정소송 중 소 취하

제6장 기타기관

[표2] ○○고등법원 부분공개 판결 내용

순번	청구정보내용	공개대상	비공개 대상
①	2001년 상반기(2000년 가을 학기 시행)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수초빙 영어영문과 지원자들의 연구실 적목록	○ 지원자들의 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iii) 지원대학 및 학과 ○ 연구실적과 관련하여 (i) 구분, (iii) 발표지	○ 지원자 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i) 성명, (ii) 지원번호, (iv) 초빙분야 ○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i) 내지 (vi) 정보 전부 ○ 연구실적과 관련하여 (iii) 게재연월일, (iv) 총저자수, (v) 주저자, (vi) 공동저자, (vii) 제목
②	2001년 상반기(2000년 가을 학기 시행)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수초빙 영어영문과 지원자들의 연구실 적총목록	국내외 전문학술지 항목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 항목 중 발표지에 관한 부분	○ 지원자 성명 부분 ○ 석·박사 학위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기타 관련 정보 전부 ○ 국내외 전문학술지 항목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 항목 중 발표지를 제외한 성명, 제목, 게재연월일 등 나머지 부분 전부
③	2001년 상반기(2000년 가을 학기 시행)부터 2005년 상반기(2004년 가을학기 시행)까지 ○○대학교 교수초빙 영어영문과 지원자들의 심사총괄표(1단계-3단계)	○ 모집분야 중 대학, 학과 ○ 1단계 전공일치 여부 심사 ○ 2단계 학위논문, 연구실적의 양, 연구실적수준, 교육연구경력 심사 ○ 3단계 심사부분	○ 모집분야 중 초빙분야 ○ 심사위원 성명 ○ 지원자 성명

[표3] 확정판결에 따른 부분공개통지 내용

학년도	연구실적 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비고 (비공개 사유)
2001	비공개	비공개	공개 (학과심사보고서)	○ 지원자 서류(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은 해당 연도의 공채 완료까지 직무상 관리 후 자체 폐기함
200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03	비공개	비공개	공개 (학과심사보고서)	
2004	공개	공개	공개 (학과심사보고서)	○ 진정인이 공채에 지원한 학년 도입
2005	공개	공개	공개	

[표4] 교수 공채 업무 진행 및 서류 보존·폐기

순번	업무내용	주관부서/ 위원회	관련 류	비고
1	모집공고	교무과	공고문 모집분야별 심사기준표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2	지원자 서류 접수	교무과	지원자 서류 일체(공채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학력/성적/경력 등의 증명서, 연구실적물 등)	* 최종임용자의 서류를 제외하고 1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 공채 완료 후 지원자가 본인의 서류 요구시 반환 가능
3	서류심사 (지원자격 등 검토)	서류심사 위원회	지원자 서류 일체	"
4	학과(부) 심사1단계	학과(부) 심사위원회	지원자 서류 일체	"
5	학과(부) 심사2단계			
6	학과(부) 심사3단계			

제6장 기타기관

7	학과(부) 및 대학심사 및 결과보고	학과(부) 심사위원회 대학공채 인사위원회	학과심사보고서 대학공채인사위원회보고서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8	대학교공채조정 위원회심사(본부)	대학교 공채조정 위원회	대학교공채조정 위원회보고서	"
9	대학본부 면접심사	대학교면접 심사 위원회	대학교면접심사 위원회보고서	"
10	신원조사 등 각종 조회 의뢰	교무과	신원 및 전력조사 회보서	* 최종임용자의 서류는 인사기록카드와 영구 보존 * 결격사유로 인한 탈락자의 서류는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11	대학인사위원회 임명 동의	대학인사 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보고서	3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12	임용	교무과	인사기록카드 각종 인사기록 첨부서류	영구보존

8 2008. 7. 17자 08진인910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정 기관 간 민원인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문건 취급시 부주의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은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 및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민원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등에 민원을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민원의 처리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업무 기관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민원 서류의 취급 시에는 민원인의 직접적인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함.
- 2) 피진정인들은 관련 민원을 이첩, 재이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였고, 현장 조사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불완전하게 가린 채 해당 민원서류를 피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문건의 취급을 소홀히 하여 신상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은 민원인의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진 정 인】 조○○

- 【피진정인】**
- 1. 박○○
 - 2. 임○○
 - 3. 이○○

- 【주 문】**
- 1. ○○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지사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3. ○○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2. 27. ○○부 홈페이지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관련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날 동 민원을 취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의 제보 내용에 대해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인 진정인의 신분을 ○○병원에 유출했다. 그 결과 ○○병원 관계자가 진정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니가 민원을 넣어? 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였고, 진정인은 근무하던 병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더 이상 거주지역에서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부 ○○과)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취하하였지만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진정인 신분을 보호하면서 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사에게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하면서 진정인의 비공개 요청과 취하내용을 모두 송부하여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 2(○○도 ○○과)

○○부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관할인 ○○시장에게 조사·처리하도록 시달한 것 이외에 진정인의 신분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시 ○○과)

○○병원에 대한 점검 시 진정인의 신분에 대해 병원 관계자에게 유출하지 않

았으며, 최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내부 복명서에 조차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병원 측에서 비리를 제보한 진정인을 알 수 있었다면 제보의 구체성과 그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지목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인(○○병원 관계자 ○○○)

이 사건 관련 민원과 관련해 ○○시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를 보고 제보자가 진정인임을 알게 되었다. 동 서류에는 신고자의 성명이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으나 형광등 불빛에 수정액으로 지워진 부분이 비춰져 ‘조○○’라고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진정

제6장 기타기관

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 및 취하한 것과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2. 27. 13:12경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이 민원으로 ○○병원 직원들이 힘들어 질 수 있고, 원장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같은 날 17:13경 동 민원을 취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에는 ○○병원의 진료비 허위 청구, 무자격자의료행위 등에 관한 제보에 덧붙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 진정인은 최근까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다.
- 2) 진정인은 현재 타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보하기가 두렵다.
- 3)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포기하겠다.
- 4) 민원은 꼭 비공개로 하고 진정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한다.

다. 피진정인 1은 ○○지사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과 동 취하서를 그대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도록(이하 “이 사건 관련 이첩”)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과 2는 이 사건 관련 이첩 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3은 2008. 3. 18. ○○병원에 출장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성명을 수정액으로 지운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를 지참하였다. ○○병원 관계자 ○○은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의 지워진 부분에 쓰인 진정인의 성명을 읽고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근거로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처분 없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병원에 당부하고 종결하였다.

5. 판단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민원에는 진정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전 근무지, 현재의 직업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국민보건과 보건행정에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리는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민원 접수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결국에는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약 4시간 만에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불가피하게 취하된 이 사건 관련 민원에 제보된 내용을 이용하여 국민 일반의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업무처리 시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유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게 진정인의 신분이 유추되거나 추측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문건의 취급에 있어서도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고도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이에 피진정인 1과 2의 이 사건 관련 이첩 행위와 피진정인 3의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의 취급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의한 진료비 허위 청구와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주 내용이어서 동 민원의 내용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는 데에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은 이미 취하된 사안이어서 민원처리결과와 통보를 위해 행정기관 간 신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과 2가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같은 행위를 하여 행정기관 간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원 내용에서와 같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제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험칙 상 그 제보의 시기나 내용만으로도 제보자를 쉽게 추측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신상정보 이외도 제보 내용에 대한 표현이나 조사방법, 관련 문건의 취급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실질적으로 제보자의 신상을 보

제6장 기타기관

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 상 직접적인 신상 정보인 성명만을 불완전하게 지운 채 동 민원서류를 지참하고 현장 점검에 임하여, 피신고 의료기관 관계자가 동 민원서류 전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인의 성명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병원 관계자에게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이 사건 관련 민원 서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관례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 1과 3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하고 각 피진정인들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9 2008. 11.13자 08진인3398결정 [전화상담센터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국세청장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진정인은 2008. 9.경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전화상담센터(1588-0060)에 전화하였는데 국세청전화상담센터 자동응답기(ARS)에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야만 상담할 수 있다' 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 【2】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전화상담 전화를 건 민원인에게 전산등록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내용의 확인 및 이에 따른 절차 없이 상담 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국세청

【주 문】 국세청장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9.경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전화상담센터(1588-0060)에 전화하였는데 국세청전화상담센터 자동응답기(ARS)에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야만 상담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금융거래와

제6장 기타기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이하 “고객만족센터”라 함)는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되어 있던 세법 상담조직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세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 7. 1부터 운영되고 있다.

2) 고객만족센터는 전화·인터넷·방문 3가지 채널을 통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대표번호인 1588-0060으로 전화를 걸면 세목별 전문상담관과 통화연결하기 직전 단계에서 자동응답기(ARS)를 통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에는 상담관과의 통화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 2003. 1. ~ 9.경 고객만족센터의 전화상담 응답률이 70%대로 떨어져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초래되었으며, 특히 특정 집단(세무사 사무실 직원) 등이 전화상담을 독점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근로소득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전화상담 민원의 익명성으로 전화상담원에 대한 폭언, 욕설, 비방 및 유도성 질문에 대한 무리한 답변 강요 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이에 2003. 10. 30.부터 전화상담 신청인을 민원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자동응답기(ARS)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 요구 시 “주민등록번호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

5)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상담이력이 관리되거나 상담관들은 민원인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담시스템

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는 국세통합전산망이나 홈텍스시스템 등여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납세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08. 9.경 국세청고객만족센터(전화번호 1588-0060)에 전화하였을 때 자동응답기(ARS)를 통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전문상담관과 통화연결하기 전에 자동응답기를 통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상담관과의 통화가 불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5. 판단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전화상담도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전화상담 신청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민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은 위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국가기관인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는 민원인 전화상담 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상담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조회 및 본인에 대한 식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절차에 따라 상담 도중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다. 그러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경우 상담전화를 한 민원인의 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상담 전 단계에서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6장 기타기관

민원인의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성명·주소'가 아닌 그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진정한 고유의 개인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국제청고객만족센터에서 전화상담 전화를 건 민원인에게 전산등록 정보 조화가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내용 확인 및 이에 따른 절차 없이 상담 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국제청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8. 5. 8.)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일반 전화상담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 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6장 기타기관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10 2008. 11. 13자 08진인0143결정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교육과학기술부(학교, 교육청 포함)에 의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집적, 이용, 공개는 1996. 8. “학교생활기록부프로그램(SIS : Student Information System, 일명 S·A)”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SIMS :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일명 C/S)”을 도입·보급하면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를 전자화 하여 축적·이용하였다. 2000. 9.부터 개발이 시작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교원업무의 경감,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기존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였다.
- [2] 2006. 9.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개시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8. 8. 기준 학생 교육관련 정보 26종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학교 기본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 시간표, 주간학습(초), 월간 학사일정, 주간 학사일정, 월간급식, 주간급식, 가정통신문)과 학생정보 16종(학교생활기록부, 교외 학습자료, 교내 학습자료, 월출결 통계, 출결사항, 특별활동 조회(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 교사별 정·오 답표, 성적통지표,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진로/상담자료, 건강기록부), 학부모 상담관리 1종(선생님과의 상담) 등 자녀정보 26종이다.
-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 열람 권한은 단위학교에서 부여하고 있고 재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을 취소하였다.
- [4]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제6장 기타기관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학생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기록, 학생 생활기록 등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생활 정보로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같은 법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재학 중인 학생이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6】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 【7】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및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및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및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및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 【주 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181개 지역교육청,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정보화하여 서비스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학부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과 학생정보 16종, 학부모 상담관리 1종 등 자녀정보 26종이다.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나. “학부모 서비스” 대상을 학부모로만 제한한 이유는 제공하는 26개의 정보는 대부분 재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학교정보 9종은 재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일상적인 정보이며, 학생정보 16종은 학교에서 담임교사 및 교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확인받거나 제출받은 자료들을 교

제6장 기타기관

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이며, 학생을 통해 가정에 통지한 자료를 학부모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재학생들이 본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열람하지 못하는 것이 재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를 재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원 확인 방안과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재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용량 증대 및 예산확보, 서비스 제공대상 선정 및 공인인증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과학기술부(학교, 교육청 포함)에 의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집적, 이용, 공개는 1996. 8. “학교생활기록부프로그램(SIS : Student Information System, 일명 S·A)”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SIMS :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일명 C/S)”을 도입·보급하면서 개인의 교육관련 정보를 전자화 하여 축적·이용하였다.

나. 2000. 9.부터 개발이 시작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교원업무의 경감,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 기존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였다.

다. 2006. 9.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개시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8. 8. 기준 학생 교육관련 정보 26종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정보 9종(학교 기본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 시간표, 주간학습(초), 월간 학사일정, 주간 학사일정, 월간급식, 주간급식, 가정통신문)과 학생정보 16종(학교생활기록부, 교외 학습자료, 교내 학습자료, 월출결 통계, 출결사항, 특별활동 조회(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 고사별 정·오답표, 성적통지표,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진로/상담자료, 건강기록부), 학부모 상담관리 1종(선생님과 상담) 등 자녀정보 26종이다.

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는 정책연구, 각계각층(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연구학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다.

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 열람 권한은 단위학교에서 부여하고 있고 재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을 취소하였다.

사.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학생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기록, 학생 생활 기록 등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생활 정보로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같은 법 제3조의2(개인정

제6장 기타기관

보 보호의 원칙),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재학 중인 학생이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11.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6장 기타기관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

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제6장 기타기관

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바.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9호)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용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

의 종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3. 제도개선

1 2007.8.13.자 07진인1229 결정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관련 인권침해]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교육청의 채용 계약 방침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방과후 보육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비정규직 신분으로서, 학교장과의 채용 계약시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5조, 제64조, 제65조를 적용하도록 한 방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진정한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진정인 ○○교육감에게 채용계약 방침을 개선하도록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1조

【진 정 인】 채○○

- 【피진정인】 1. ○○시장
- 2. ○○시교육감
- 3. ○○초등학교장

- 【주 문】 1. ○○시교육감에게, 방과후 보육교사의 채용계약 체결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2. 피진정인 ○○시장 및 ○○초등학교장 관련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주체가 ○○시에서 ○○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기존의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재정적 지원 없이 이관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는 바, 이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인 진정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나. 진정인과 ○○초등학교장과의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강요하고, 채용계약서 내용으로 근무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2조의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시장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이 ○○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동일 시설에서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료, 보육프로그램, 교사처우 등에서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일원화를 추진한 것이다.

○○시는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교사 및 교사대표, 학교장을 모시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시교육청의 지원조건 하에서 근무하겠다는 교사에게는 동의서 및 추후 확인서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시 보육시설에 분산배치를 요구하였다.

제6장 기타기관

또한, 예산지원면에서 44개반의 운영을 위해 교육청 운영기준에 의한 운영비 852백만원 외 173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이를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괄 지급함으로써 지원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첫째, 진정인에 대해 교육청 지원조건 하에서 계속 근무할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를 물었고 둘째, 호봉제 도입 등의 경우 기존 교사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교육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셋째, 교육청 운영기준보다 상회한 금액을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진정인이 주장하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여 진정인의 희생을 초래하였다는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진정인 2 ○○시교육감

현재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교육청의 장학자료에 게재된 계약서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예시로 게재한 것이며, 채용계약서 내용 중 병가 활용 조항 등 복무 관련 규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교부한 것으로 보육전담교사에게 안내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각서는 보육전담 교사들에게 복무 규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3) 피진정인 3 ○○초등학교장

2007학년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보육교사 계약은 ○○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이관관련 협조’에 의거, 2007. 3. 5. 계약서와 각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3은 계약기간과 보수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 있어서 진정인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각서 없이 제시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피진정인3이 진정인에게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관련규정

별첨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시설 주관부서가 ○○시 및 ○○시교육청의 이원체 계로 운영되던 중, ○○시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 2007. 4. 1. ○○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2) ○○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의 교육청 이관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에게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조건하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시 지원 보육시설로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진정인은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에 동의하였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재정적 뒷받침 없이 방과 후 보육교사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근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 감소 등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1은 보육시설의 이원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교사의 보수 및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도 피진정인 2와 관련 기관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기존 보육시설 지원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재정적인 반침이 없이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관하면서 피진정인 1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교육청 이관 후의 근무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청 소속 방과후 보육교사로 근무 지속 여부에 대해 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쳤으며, 동의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고, 진정인은 이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동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권리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제6장 기타기관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채용계약과 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 및 각서에 대한 강요는 없었으며 진정인 또한 이에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수용할 만한 수정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진정인이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2가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를 것을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교육청 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적시한 계약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보육교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하였다는 계약서는 계약방식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함에도 피진정인 2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진정인과의 계약 예시에 법적 근거가 없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채용 계약을 정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진정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5조, 제64조, 제65조를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2가 예시로 제시한 채용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1.과 관련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2.중 계약 및 각서를 강요하였다는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2.중 채용계약서 상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비정규직인

민간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상의 복무규정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별지]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직무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 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2조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외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81.4.20, 1994.12.22>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장 기타기관

제67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조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2008. 7. 17자 08진인1649결정 [확약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 방문증 신청서 승인 시 법률적 근거없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방북승인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것은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방문증 신청서 승인 시 신청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확약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남북 분단의 현실로 남북 간 왕래는 크게 제한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남북간을 여행할 수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장관의 방북승인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2] 방북승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지 아니하고 내부지침만으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방북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없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남북간 왕래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바63

【참조조문】 「헌법」 제14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진 정 인】 고○○

【피진정인】 통일부장관

- 【주 문】**
- 1. 피진정인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북한 방문증 신청서 승인 시 신청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확약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한 일행 27명이 2008. 5. 7.부터 같은 해 5. 9.까지 방

복하기 위해 신청한 북한 방문증 신청서(이하 '방북신청'이라 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방북승인 조건으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 확약서 요구는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정부의 지나친 재량권 발동이며 미래에 부적절한 일이 벌어질 것을 상정해서 확약서(이하 '이 사건 관련 확약서'라 함)를 요구하는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방북단 27명 중 상임대표 등 5인에 대해서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 받지 않은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도 심각한 압박을 가해 심한 모욕감과 심적 부담을 준 것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호 법률과 제도의 차이로 인해 상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의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방북승인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남북 간 인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도를 시행했다.

2) 이 사건 관련 확약서는 1998년 '8·15 전후 종교인 방북' 관련 방북 승인 시 각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2001년부터는 '사회문화분야 승인업무 처리지침'(이하 '승인 업무 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여 방북규모나 방북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징구하고 있다.

3) 방북신청에 대한 승인제도는 북한방문 및 북한 주민 접촉의 시기와 장소, 대상과 목적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사안에 맞추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관련 확약서의 내용은 방북신청자가 방북 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제6장 기타기관

사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거나 남북화해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당부하는 사항일 뿐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뿐이다.

5) 진정인 등의 방북신청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2008년 남북언론인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방북으로 신청자 총 27명 중 행사 대표자 및 남북교류협력질서나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 5명에 대해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 자료에 의하면 1. 진정의 요지에 기재된 진정인 등의 방북신청 및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출 사실과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 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북한의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 주장 등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북한 측과 해당분야 협의 시 정부지침을 존중하여 협의하는 등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3) 북한 방문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

나. 승인 업무 지침 '2. 접촉, 방북승인 기준'에 의하면, "방북승인 여부 결정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북교류의 목적,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결정시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조건을 함께 부과하거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 등의 방북신청과 피진정인의 방북승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08. 5. 1. 진정인을 포함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언론분과위원회'등 일행은 통일부 남북협력교류협력시스템에 방북신청을 하였다.

2) 2008. 5. 6. 피진정인은 관계부처 의견 취합 및 상임대표 등 5명에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소속 담당자에게 확약서 제출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2008. 5. 7. 피진정인은 상임대표 등 5명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고 방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통일부장관이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북한 방문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바63). 이 법에서 남·북한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과 타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조(영토) 및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 남·북한 간의 왕래가 크게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나, 남·북한 간을 왕래할 자유는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법의 취지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증명서의 발급(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행위임이 분명해 보

인다. 즉, 이 법은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통일부장관의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증명서 발급 요건 등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생성할 수 없는 내부지침인 ‘승인 업무 지침’에 방북승인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출요구는 동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3) 이 사건 관련 확약서의 내용은 방북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확약서를 제출한 자가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확약서를 근거로 처벌이나 제재가 어려운 점을 보면 확약서 요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의 제출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는 별개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북 신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북승인이 지체되거나 불승인되므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북 승인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방북승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지 아니하고 통일부장관의 재량만으로 내부지침에 근거해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동법이 정한 남·북한 간 왕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한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에게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도 시행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북한방문 안내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거나 ‘방북승인 시’ 조건의 부과 등을 통해 그 재량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방북승인에 불가피하여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향 관련

이 사건 관련 확약서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방북 신청자들이 이행 중 일부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북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일정의 착오 등을 염려하여 불안해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방북승인을 지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이나, 여기서 발생하는 불안감 등은 승인의 지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겪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4. 기타

1 2007.9.7자 07진인898 결정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타시도 진출시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피진정인인 ○○초등학교 교장이 야구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 방향’ 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 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진정인의 자)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 김○○는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야구활동을 해오던 중 4학년을 맞이한 2007. 3월 ○○시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지만,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선수 이적 동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교체육의 목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 운동하며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정립하고,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육성 체계 확립을 통한 체육 영재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1998년부터 야구부를 창단하여 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의 학교체육 활성화 및 우리 고장의 야구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선수를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다.

2) 그 결과, 2004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2006년 전국소년체전에서 8강에 오르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시골학교라는 약점으로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피해자는 야구 배트를 들기 어려운 2학년 코흘리개 시절부터 학교에서 장기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을 거쳐 이제 막 야구의 기본 동작을 이해하고 기능이 향상되어 2008년부터 주전으로 활동할 것이 예견되는 선수였다.

특히, 본교에서 2학년부부터 시작한 선수를 3~4년간 집중지도하여 체력·체격·기능면에서 대회 출전의 시기가 될 즈음이면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해 타시도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있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학교 야구부 육성은 물론 존재 여부에 이르기까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시골학교에서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3) 현재도 본교는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야구부 특성상 18명 이상의 선수가 필요함에도 겨우 10명의 학생으로 연습하고 있으며 후보선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등 학교체육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본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서 본교의 야구부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소년체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 여파로

제6장 기타기관

2007년 현재 야구부 선수가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팀을 이끌 기초자원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며, 잔류하여 그나마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선수의 사기를 꺾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학교 야구부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다.

4) 만약, 희망하는 선수 모두마다 이적동의를 해 주면 본교는 무명의 선수를 데려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 선수자원으로 육성하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시합에 가기 전에 다른 학교의 선수단을 위해 다 보내버리는 즉, 선수 양성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로 전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하여 학교체육의 근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선수관리 지침', '학교체육관리지침'에 의거 남아있는 학교체육 선수의 입장과 권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의 선수 이적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5) 진정인의 이적동의 요구 등은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해석되고 판단하여야함이 마땅하지만 학교체육의 현실 및 시골학교 운동부 육성 활성화 및 보호 차원에서 볼 때 이 진정이 꼭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인식하에서 교육적 입장 등도 고려하여 균형감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6) 피해자에 대한 이적동의 불허의 원인이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관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순수하게 학교체육 활성화와 잔류선수 권리와 사기보호 차원에서 고려한 조치이며, 학교의 입장에서는 진정이 원만히 해결되어 피해자의 진로를 열어주고 학교체육도 활성화되면서 본교 야구부 해체까지 가는 파국을 막을 묘안을 찾아 해결되어야 한다.

3. 관련규정

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선수활동의 제한) ①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④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나. 교육인적자원부 '2007학년도 학교체육·급식 기본방향'(관련부분에 한함)

1)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5~6쪽 참조)

-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완화
 - 시·도별 중입·고입 체육특기자 배정시 경기실적 반영 비율 축소
- 선수등록규정(대한체육회)의 사전 고지
 - 선수등록 시 학부모, 학생선수에 대해 전·출입 시 필요한 '학교장동의서' 등 선수등록기준 사전 고지로 민원 최소화
-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의한 '학교장 동의서' 발급
 -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장래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다. ○○도교육청선수 이적동의 제한 근거 지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진출 억제[평생교육체육과-10974(06.7.25)호 관련

- 제35회 전국소년체전 종료와 함께 2007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체육 특기자 선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종목의 경우 도내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우리 도의 전력 약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도내 우수선수의 타 시·도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시·시도 진출 억제 대상자
 - 제35회 전국소년체전 입상자(초4~5년 및 중 1~2년) 및 차기대회 유망주
 - 당해연도 전국단위 경기대회 입상선수(초,중,고)
 - 도내 상급학교에서 동일종목 체육특기자로 요청한 경우

제6장 기타기관

2)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평생교육체육과-12815(2006.8.31)호] 관련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학과 관련하여 우리도 선수가 타 시·도로 부당하게 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라며, 「대한체육회선수 등록규정」을 숙지하여 타 시·도 진출시 받을 불이익[학교장 및 경기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후 진출시에도 이후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참가자격 상실 등을 홍보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 이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 1)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서 2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야구부선수로 활동하였다.
- 2) 피해자는 4학년인 2007. 3월경 ○○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피진정인은 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하였다.
- 3) 피해자는 현재 ○○시 △△초등학교 야구부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 4)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적 동의 불허의 원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잔류선수의 권리와 사기보호 차원에서 고려한 조치이다.
- 5) 피해자는 2006년 현재 기준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00000(2006.7.25)호의 타시도 진출 억제 대상자(초등학교 4~5년중 2006년 제35회 소년체전 입상자 및 차기대회 유망주, 당해연도 전국단위 경기대회 입상선수, 도내 상급학교에서 동일종목 체육특기자로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진정인은 야구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고 기초차원 선수도 부족한 현실에서 어렵게 야구부가 운영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타 시·도로 전학을 가서, 잔류선수들의 타 학교 전학으로 인한 이탈 방지 및 학교 야구부 육성 활성화 차원과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에 의거 피해자의 선수 이적 동의를 불허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의 내용은 ○○도내의 우수선수 전출로 인한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당부하며 우수선수의 타 시·도 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사항이지 전출을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며, 피진정인의 피해자 이적 동의 불허 근거인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0000(2006.7.25)호의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전출 억제’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는 2006년 기준으로 전국소년체전 입상자(초4~5년) 및 당해연도 전국단위 경기대회 입상선수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은 ‘체육특기자의 전·출입 시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장래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의한 동의서를 발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이적불허행위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2 2008. 4. 3자 07진인2330 결정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이를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고등학교장)의 감독기관인 ○○도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및 ○○도교육감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와 같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조○○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2] 피진정인은 위 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신입생 선발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관행상 관내 퇴학예정자 전입·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퇴학예정 학생들의 전학(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근거 법령은 없음.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진정인은 위 법령에 따른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함.
- [3]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 2, 6항

【진 정 인】 조○○

【피 해 자】 조○○ 외 20여명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 【주 문】 1.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도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및 ○○도교육감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이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 명찰 미부착, 흡연, 무단외출, 두발위반, 야간 자율학습 미참여 등으로 벌점을 많이 받아서 피진정인으로부터 2007. 5.말경 퇴학예정 및 권고전학의 징계조치와 전학 중용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여명의 학생들이 같은 조치를 당하였다. 또한, 같은 관내의 교장들이 피해자들의 전학(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학생지도 의무를 다른 지역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 조○○의 할머니가 학교로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조금 늦게 찾아 뵙네요"라고 하였더니 담임교사가 "그렇죠" 라는 대답을 한 것은 교사로서 자질이 없고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학교측이 피해자 조○○이 퇴학예정자란 이유로 중식신청을 받아주지도 않고 9월에 있는 수학여행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제반 행동에 일정한 기준의 상·벌점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인격형성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교풍 진작과 교육목적의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조○○ 등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퇴학 예정 및 전학권고 대상인 벌점 50점을 받았다.

나) 위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므로 선발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따라서 만일 입학 후 자유로운 전입학이 허용되는 경우 선발고사가 무의미해지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되어 오래 전부터 관행상 같은 지역 내에서는 전입학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특별한 사정(특기생,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학교의 교장 의견에 따라 전입학이 가능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담임교사가 피해자 조○○의 상담을 위해 조○○의 가족에게 전화하였으나 동 피해자의 가족이 학교에 오지 않다가 선도위원회가 있던 당일 날 피해자의 할머니께서 내교하셔서 담임교사가 바쁜 와중에 쉽게 대답하였을 뿐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학교 중식 신청은 학생이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이나 편의상 담임교사가 신청서를 모아 제출하고 있는데 피해자 조○○은 중식신청을 하지 않았다. 수학여행은 학생의 개인사정(가사사정, 건강상태 등)으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수학여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해자 조○○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희망자는 모두 수학여행에 참여했다. 피해자 조○○은 2학기 개학 후 결석이 잦았고 등교일에도 등교시간이 불규칙했으며 무단조퇴가 빈번하였으며 계획된 수학여행일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수학여행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교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했

으나 온 적이 없었다.

3.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별첨 1

4. 인정사실

○○고등학교장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도교육감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조○○은 2007. 3. 26.부터 4. 30.까지 명찰 미부착(4회, 4점), 흡연(2회, 10점), 두발위반(6회, 18점), 무단 지각 또는 외출(3회, 3점), 자율학습 미참여(3회, 15점) 등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여 벌점(50점)을 받아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받았으며, 2007. 1.부터 9.까지 피해자 조○○과 같은 징계를 받은 학생은 28명(자퇴 16, 전학 8, 전학예정 4)에 이른다.

나. 피해자 조○○은 2007. 10.말경 타 지역(강원도 ○○고등학교)으로 전학갔고, 같은 사유로 20여명의 학생이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 자퇴하거나 전학을 갔으며,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단계(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진정인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도 그러한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 조○○ 등에게 퇴학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부분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와 같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제6장 기타기관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조○○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은 위 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신입생 선발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관행상 관내 퇴학예정자 전입·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퇴학예정 학생들의 전학(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근거법령이 없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법령에 따른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사항 및 다항 관련 부분

담임교사가 진정요지 사항 기재의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은 진정인 등의 인권침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진정요지 다항 기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장차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학교에서와 같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벌점기준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학교에 전파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하여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하,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 별첨 1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3 2008. 7. 3. 자 07진인823 결정 [주민등록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에게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주민등록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7, 「지방자치법」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6. 7. 18.자 06진인689 결정,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

【진 정 인】 조○○

【피 해 자】 ○○시 ○○구 ○○동 ○○번지 거주 98가구의 주민들

【피진정인】 ○○시 ○○구청장

【주 문】 ○○구청장에게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1979년 ‘○○○○대’에 편입된 후,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에 의해 4차례에 걸쳐 구(舊) ○○동 ○○번지로 강제이주당하여 현재 98

제6장 기타기관

가구의 주민들이 이 지번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1988년에 이 지역에 대한 구역정리를 하면서 구(舊) ○○동 ○○번지를 ○○동 △△번지로 변경하고, 용도도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98가구의 주민들에 대하여 ○○동 △△번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불허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전입조치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현재 112세대(주거98, 영업1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01년 이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구(舊) ○○동 ○○번지는 국가소유 하천부지(25,737㎡)로 1988. 12. 3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이 폐쇄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구 ○○동 ○○을 대신하여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동 △△번지는 환지 토지가 아닌 ○○시 체비지로 남겨둔 도시계획시설(도서관)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후 ○○동 △△번지는 ○○시 소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미매각 토지로 2007. 7.까지는 ○○시 체비지로 관리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시 시유지인 ○○동 △△번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토지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동 △△번지는 2008.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동 1△△번지로 변경되었다.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은 거주지 여건 등을 판단하여 사례별로 조치하고 전입을 원하는 경우 주거 목적과 민원발생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즉시 철거지역 및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3) 구(舊) ○○동 ○○번지에 ○○○○대 1-2지대가 존재한 것이 확인되며 당시

○○경찰서의 지도·감독을 받았으나 ○○구청의 관리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대 해체 통보명단(○○경찰서, 9명)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45세대를 비교해 본 바, 현재 거주민과는 1명이 일치하며, 해체통보 명단 외에 박○○의 ○○○○대증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한 바 있다. 진정인은 1989년 ○○4동사무소 신축으로 철거되는 구(舊) ○○동 ○○의 무단점유 14세대에 대하여 ○○구청이 강제이주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구청의 공식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 참고인 진술(○○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구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는 ○○구청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진정인 및 피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전력공사의 1985. 7. 25.자 전력요금고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주장요지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舊) ○○동 ○○ 번지에는 1981년경 이주된 ○○○○대원들이 농업용 비밀하우스를 주거용 시설로 개조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철거민들이 다양한 사유로 이주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2007년 현재 100여 가구, 4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원 여부, 강제이주 여부 등은 아직 공문서상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나. 각 가구에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집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공용화장실이 있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은 1989년 구(舊) ○○동 ○○번지를 ○○동 △△번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주민등록지를 ○○동 △△번지로 자동 변경하거나 전입조치해주지 않고 이전 주민등록지인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소들은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

이다.

다. 2003. 9. 6. 주민들은 ○○4동사무소에 ○○동 △△번지에 주민등록일제신고를 했으나 등록을 거부당하였다. 주민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 거주하므로 세금고지서 및 각종 공과금 납부서,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공적인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는 주민들은 자녀들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시 소유 체비지인 ○○동 △△번지에 실질적인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장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녀 취학문제 및 각종 우편물의 수령문제를 포함하여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의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7. 9. 2002두1748 판결).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주민등록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거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는 실제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거부될 경우에는 관련 주민들에게는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하고, 공

법 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위 - 175호(2004. 9.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 및 행정자치부 주민과 - 4151호(2004. 10.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 시달’에서는 비닐하우스촌 등의 주민들의 주민등록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7.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계 법령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라.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③항 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사.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3. 지방자치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제6장 기타기관

권리를 가진다.

라. 제14조(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2008. 7. 17자 08진인762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유치할 때에 보안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업무와 관련한 강제력의 사용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라 구인·유치 등의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도주의 방지, 항거의 억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장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 【2】 피진정인은 2006. 6.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른 구인장 및 긴급구인서를 발부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안장구(수갑과 포승)를 사용하였음. 또한 2008. 3. 3.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이 구인장이 발부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여 피해자의 자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안장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제39조 (구인)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고○○

- 【주 문】** 1. ○○보호관찰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피진정인이 2007. 6. 19. 및 2008. 3. 3.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2007. 6. 19.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피진정인과 상담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2008. 3. 3.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의 주장요지(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조사)의 규정에 따라 2007. 6. 19. 피해자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관찰소에 내소하였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함께 반항을 하

여 피해자의 자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참고인의 주장요지(법무부장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 구인), 제42조(유치) 및 ‘보호관찰대상자 제재조치 업무처리 준칙’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인·유치를 할 수 있고, 동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이 수갑 등 보안장구의 사용이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보안장구 사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 과정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보다 공고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2007. 6. 19.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피진정인과 상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8. 3. 3.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유치할 때에 보안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업무와 관련한 강제력의 사용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라 구인·유치 등의 직무집행을

제6장 기타기관

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도주의 방지, 항거의 억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장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6. 6.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른 구인장 및 긴급구인서를 발부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안장구(수갑과 포승)를 사용하였다. 또한 2008. 3. 3.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이 구인장이 발부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여 피해자의 자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안장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보안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우선 피진정인의 감독관인 ○○보호관찰소장이 이 점에 관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과 같은 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관인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이 가혹행위 및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2007. 6. 19. 및 2008. 3. 3.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

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5 2008. 8. 28자 08진인2179결정 [정부의 사퇴 종용에 의한 인권 침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해 법률적 근거없이 수차례 사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강박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 절차 없이 사퇴를 요구한 ○○정책관 ○○○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지위를 가진 고위공무원이 동 법인의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퇴에 관하여 언명한 것은 단순한 의견 내지 정책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 이와 같은 사퇴요구는 강박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임기 도중 임원의 지위를 포기할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행사함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여 자기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진 정 인】 별지1 기재 목록과 같음(별지 생략)

【피 해 자】 ○○○

【피진정인】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 절차 없이 사퇴를 요구한 ○○정책관 ○○○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사회복지법인(이하 “A법인”)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서도 2008. 4. 10. 이후 소속 ○○정책관 ○○○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

퇴할 것을 중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퇴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가 특별감사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A법인의 사회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등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지휘하고 있는 직원과 소속 기관에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민간기구인 A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하되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주장 요약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사회복지공동A법인 사무총장)

1) 2008. 4. 경 A법인 경영기획팀장 ○○○과 동 기획관리본부장 ○○○으로부터 ○○부 ○○○정책관이 피해자 및 A법인 회장의 사퇴와 5월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해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2) ○○○정책관은 2008. 4. 21. A법인 회장을 찾아와 사퇴 대상에서 '회장은 제외되고 사무총장만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3) 2008. 5. 9. ○○○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피해자는 "(4. 21. A법인 회장을 만나서)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었으나 ○○○정책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2008. 6. 19. ○○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장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피해자는 "A법인 사무총장도 후임자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긴가요?"라고 하자 차관은 "저희는 사무총장이 행보 결단을 빨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부 ○○○정책관○○○)

가) 2008. 4. 10. A법인 경영기획팀장 ○○○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인사 문제

제6장 기타기관

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으며 A법인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나) 2008. 4. 14. A법인 기획관리본부장 ○○○과 만난 사실이 있으나 일상적인 A법인의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임원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같은 달 24. ○○○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A법인의 결원된 이사 선임과 A법인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퇴와 관련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

다) 2008. 4. 21. A법인 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A법인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라) 2008. 5. 9.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며, 여기서는 피해자의 유럽에서의 생활 경험 등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상사 등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바) A법인이 모금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나눔문화와 기부문화의 확산에 저해가 된다는 평가가 있고, A법인의 개편 필요성은 지난 정부에서도 대두되었으며 일부에서는 A법인 사무총장(피해자)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2) 관계인 2(○○부 차관 ○○○)

가) 2008. 6. 19. 피해자와 2 ~ 3분 정도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산하단체 임원의 경우 교체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피력한 바 있으나 A법인 인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나) A법인의 운영 및 모금액의 배분 상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한 운영 개선에 대한 노력은 피해자의 인선과는 무관한 사항임에도 진정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A법인 경영기획팀장 ○○○)

가) 예전에 해외연수를 함께 다녀와 안면이 있던 관계인 1이 2008. 4. 10. 9:30 경 자신에게 전화를 해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고, 당일 12:00 ~ 13:30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부 부근 식당에서 관계인 1을 만났다. 이때 관계인 1과 참고인은 약 1시간 동안 A법인의 업무현황, 업무협력 방안 등에 대해 대화하고, 이후 관계인 1은 “신정부 수립에 따른 산하기관장의 교체 추진정책에 대한 설명과 ○○부 산하 다른 기관장(○○보험공단, ○○개발원 등)들은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A법인도 본 정책 대상에 포함되며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참고인이 “만약 (관계인 1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니, 관계인 1은 “특별감사도 있을 수 있고 명예회장 추대 수락이 보류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관계인 1은 2008. 4. 21. A법인 회장을 찾아와 사퇴 대상이 사무총장(피해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관계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사퇴 요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피해자에게 보고되었다.

2) 참고인 2(A법인 기획관리본부장 ○○○)

가) 2008. 4. 14. 오전 관계인 1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부 ○○정책관 집무실에 찾아가 관계인 1인을 만났다. 이때 관계인 1은 참고인에게 “오늘 왜 오셨는지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고 이에 참고인은 “대충은 짐작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며 “혹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사퇴 건과 관련됩니까?”라고 하자 관계인 1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어 참고인은 “저희(A법인)는 두 분(회장, 사무총장)이 다 대상입니까?”라고 물으니 관계인 1은 “그렇습니다.”라고 하며 회장 및 사무총장(피해자)의 사퇴요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법인의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 선출 절차 등 A법인 현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 2008. 4. 24. 참고인은 A법인 직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던 중 관계인 1이 통화를 원한다는 메모를 받고 관계인 1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 관계인 1이 ‘사무총장 사퇴 건을 5월 이사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참고인 1, 2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인 1의 주장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관계인 1을 취재하여 작성한 신문기사(○○신문, ○○○신문) 및 두 신문기자의 진술,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A법인 정관(2008. 6. 9.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사무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2004. 7. 29. 제정) 및 사무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세칙(2006. 3. 6. 개정)에 의한 A법인 사무총장 공개모집에 응시하여 2006. 5. 26. A법인 임시이사회에서 별정직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같은 해 6. 1.부터 3년 임기(1회 연임 가능)로 직무를 시작했다. 그 후 피해자는 2008. 3. 21.자로 개정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8938호) 제7조 및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A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그 신분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관계인 1은 2008. 4. 10. 12:00 ~ 13:30경 ○○부 인근 음식점에서 참고인 1을 만나 A법인도 신청부의 산하기관장 교체 추진정책의 대상기관에 포함되며 다른 산하 기관장도 이미 작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만약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 관계인 1은 같은 달 14. 17:30경 참고인 2를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피해자 등의 사퇴에 관한 건이 용건임을 밝히고 피해자 등이 공공기관 임원 교체 건과 관련한 사퇴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라. 관계인 1은 같은 달 24. 참고인 2가 부재중인 때에 전화를 하여 참고인 2와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이에 따라 참고인 2가 관계인 1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관계인 1은 피해자에 대한 사퇴 건을 5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인 1은 참고인 1, 2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임기(2006. 6. 1.부터 3년간) 도중에 사임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관계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의 직위, 참고인들을 만난 시기 및 시간, 관련 업무의 추진상황, 참고인 1, 2의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08. 6. 19. 관계인 2로부터 피해자의 후임이 정해

져 있다고 하는 등의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5.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계인 1은 피해자에게 임기 도중에 A법인의 임원을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우선 피해자와 같은 A법인의 임원이 임기 도중에 해임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살펴보면, (i)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 제1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이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i) A법인 정관 제1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임되는 경우, (iii)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해 ○○부장관이 해임을 명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iii)의 경우에는 ○○부장관이 ①○○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등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행정처분으로서 A법인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령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는 2005년 A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당시 사무총장에 대한 문책을 A법인에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관계인 1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8. 3.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 등의 교체에 관한 계획과 진행상황이 보도되고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매우 높았던 시점에서 법령이 정한 피해자의 해임 사유 검토 등에 대해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A법인을 감독하는 업무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인 관계인 1이 참고인 등을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A법인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 내에 4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사퇴에 관하여 언명을 한 것은 단순한 의견 내지 정책의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인 1의 위와 같은 사퇴요구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한 강박의 수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임기 도중에 A법인의 임원의 지위를 포기할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격권에서 유래한 자의사결정권과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제6장 기타기관

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인 1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관계인 1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 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6 2008. 9. 10자 07진인1134 결정 [공무원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등에 따른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현장시정추진단 선정과정(부적격자 3%)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부적격 공무원 퇴출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객관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2] 현장시정추진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령'에 따라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현장 노동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했고, 상당수 질환자고령자 등에게도 건강상태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25조, 「지방공무원법」 제1조, 제7조, 제8조, 제25조, 제30조의5,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3, 제69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8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26조, 제31조의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 제4조의2, 제8조, 제15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8조, 제26조, 및 제27조

【진 정 인】 1. ○○○

2. ○○○

【피 해 자】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원 및 ○○○○○ 공무원

【피진정인】 ○○○○시장

- 【주 문】** 1. ○○○○장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7. 3. 피진정인은 직원들과 사전 합의과정은 물론 적절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부서별 퇴출후보공무원 대상자 3%를 강제로 할당하여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밀실에서 부당한 선정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퇴출후보공무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사실상의 징계절차로서 공무원 법령에도 없는 초법적인 인권침해기구인 ‘현장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배치하여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향상과는 관계가 없는 장기간 풀 뽑기 등 현장노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부적격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겠다고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 등의 과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서별 부적격자 3%를 강제 할당하여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

2)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된 이유도 모르고 부서별, 직급별 할당계획에 따라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적격자로 선정된 직원들

대부분은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여 찍히는 등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년퇴직예정자, 장애인 및 육체적·정신적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부적격 공무원 3%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직원, 가족, 친지들에게 알려져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심한 인격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으며 복직된 지금까지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동료직원들의 선입견 등으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이다.

4) 피진정인은 추진단에 배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직렬, 나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풀 뽑기, 쓰레기 치우기 등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현장 노동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과일 경쟁을 유도하여 평소에 질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은 풀 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하였고,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풀 포대 위에 명찰을 달고 당사자가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및 ○○○○시 업무담당자들의 진술

가) 추진단은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에 의한 극단적인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방법보다는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나) 추진단에 배치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퇴출을 의미하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 할당에 대하여 이를 퇴출을 위한 강제할당 비율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보 인사 대상자 범위를 3% 추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다)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주관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협의와 토론의 기회를 다단계에 걸쳐 준비함으로써 주관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부서에서 선정된 3% 기관전출대상자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협의 및 검증과정을 거쳐 102명이 선발된 것이다.

제6장 기타기관

라) 전보권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교육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예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고, 부작용과 공정성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지만 시행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교육책에서 실시한 것이다.

마) 재교육은 대상자들이 이전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과 의식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 개인별로 조직에 대한 적응도 평가, 자질향상 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바) 현장업무 배치는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등에 인력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은 서비스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2) ○○○○부장관

가) 부서별로 3%를 할당하는 것은 전보대상자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대상자 선정 등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부서별 강제할당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상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여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와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단 선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무원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잡초제거 등의 현장작업도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시 추진단의 운영내용과 단순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진술서 및 관련자료,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피진정인 등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발간백서 등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전문가들의 의견서, 언론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관전출 대상자 부서별 3% 선정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창의시정을 위한 신인사정책을 표방하고 그 일환으로서 2007. 2. 28.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면서 종전 전출대상 외에 '기관내신에 의한 전출자(실·국 현인원의 3%이상)(이하 "기관전출대상자"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 별도계획은 추후에 시달하기로 하였다.

2) 위 방침의 후속조치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 최일선의 현장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2007. 3. 5.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직급·직렬과 무관하게 〇〇〇〇시 전 직원 9,921명 가운데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을 부적격 공무원의 선발 기준으로 정하고 종전 기준 전출대상자 이외에 기관전출대상자(국실별 3%) 추가 명단을 각 실·국 및 기관(총 39개)으로부터 제출토록 하여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 후에 잔류자에 대한 진단·검증 후에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추진단 구성원은 6개월 간의 현장업무, 봉사활동, 기본교육 등을 하게 한 후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 부진자는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일정수준 이상자는 실·국으로 재배치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2007. 3. 2.부터 '〇〇〇〇시 3% 퇴출공무원 선정계획' 제하의 언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3) 기관전출대상자를 실·국별 3%로 선정하여 전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전보계획과 위와 같은 추진단 구성·운영은 2007년에 처음 시행되는 전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제도들이 마련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아니 하였다. 추진단의 구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7. 3. 8.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공지하면서 각 실·국장 등은 7일 후인 2007. 3. 15.까지 기관전출대상자 명단을 양식의 의거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6장 기타기관

4) 위와 같이 의무·희망전출자 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요청하면서 위 2)항의 선발기준 이외에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실·국별 부서장 간 협의를 통하여 실·국장 책임 아래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명단을 제출받을 때에도 기관전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이유 등은 제출 받지 않고 실·국장 등이 서명한 명단만 제출 받았다.

5) 피진정인이 근무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 피진정기관의 근무성적평정이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직원들의 태도와 능력을 잘 아는 실·국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맡겼다.

6) 위와 같이 기관전출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은 실·국장 등은 업무별·인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3% 선정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혼선과 진통이 있었다. 대부분의 실·국 등에서는 인원비율에 따라 하위부서로 재할당하는 방식(실국에서는 과로, 사업본부에서는 단위 사업소로 할당)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사업소 등 2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가 ○○○○시의 인사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직위해제 되고 그 중 한 사람은 추진단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7) 전출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총 1,397명이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전출자 673명, 희망전출자 425명, 기관전출대상자 299명(5급 34명, 6급 71명, 7급 85명, 8급 이하 109명)이었다. 기관전출대상자 중에는 상당수의 정년퇴직 예정자·장애인·중질환자·신규전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기관전출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명단은 당시 모든 직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단계·소명과정·전입내신 등의 과정에서 많은 소속 직원들에게 명단이 알려지게 되었다.

8) 기관전출대상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제출된 내신직원 1,397명에 대한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51명은 타 부서로 전입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146명(3% 대상자는 114명)이 잔류자로 남게 되고 새로이 8명이 추가되어 154명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타 부서로 전입되지 아니한 직원 가운데 정년퇴직예정자(18명)와 장애인(7명)은 추진단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현업에 복귀되고 129명이 선정되었다.

9)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29명에 대하여 각각 해당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관실의 진단·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내·외부 위원으로 구성)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렬 직원·최근 전입자·과묵한 성격소유자 등 30명이 제외되었고, 4급 이상 직원 3명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7. 3. 28. 102명(30대 : 5%, 40대 : 35%, 50대 : 60%, 여성 10명)이 추진단 구성원으로 선정되어 이 102명이 2007. 4. 4. 추진단으로 전보되었다.

10) 2008년도에는 추진단의 명칭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변경하고 8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와는 달리 정계처분된 자, 상시 성과평가 미흡자, 전입 미내신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도 현장작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0000청, 0000시, 0000시, 000구, 00시를 포함한 그 밖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0000시와 유사한 인사제도가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0000시의 경우를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11) 이와 같이 추진단으로 전보된 102명 가운데 6명은 자진하여 퇴직하였고 질환자 16명은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80명이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위 16명 중 12명 추가합류)되어 추진단이 운영되었다. 추진단에서의 6개월에 걸친 1단계 교육이 이루어진 후 17명은 재교육(2단계, 6개월)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결국 총 102명 중 58명이 현업에 복귀하였고 41명이 면직 등 직무배제 되었으며 3명이 휴직하였다.

나. 추진단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102명에 대한 전보발령에 따라 2007. 4. 5. 추진단이 구성되어 10. 4.까지(6개월) 1단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2단계는 2007. 10. 15. ~ 2008. 4. 3.), 1추진단(단장 3급)·2반(반장 4급)·6팀(팀장 5급)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한 팀은 14 ~ 15명으로 편제되었으며,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팀이 구성되었다. 현장작업 등 과업부여는 프로그램 및 1 ~ 2주 단위의 행정지원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작업을 마치면 근거자료에 의한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진단 내의 상급자가 작업량을 중심으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간·월간·분기·반기 단위로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1 ~ 2주 간격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감문을 제출

제6장 기타기관

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원 중에는 중풍환자, 정신질환자 등 질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 및 정년퇴직예정자 등 고령자(50대 60%)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과업이 부여되고 동일한 유형의 평가가 실시되었다.

2) 추진단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업무 9주, 봉사활동 5주, 시설물 점검 5주, 정신교육 등 3주, 발전연구과제 2주, 기타 1주로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운영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업무 : 매월 첫째·셋째 주에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자기 과오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노동 및 업무량을 부여할 목적으로 공원 등에서 풀 뽑기, 담배꽂초 줍기, 쓰레기 치우기, 불법광고지 제거, 빛받이 내 청소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잡초 및 쓰레기 수거(3,804포대), 자연학습장 등 정비(76,680㎡)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평가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의 평균 2배에 해당되는 작업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다.

나) 봉사활동 : 매월 둘째 주에 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등 16개 시설(연인원 1,940명)에서 중풍 및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보조, 청소,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시설관계자가 상대평가를 하였다.

다) 시설물 조사 및 점검 : 매월 넷째 주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하천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였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작업 가운데 추진단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한 작업은 공원 등에서 풀 뽑기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실적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관계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져 구성원 가운데 환자들이 평가를 위해 무리하게 참여하였다가 2007. 6.경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당일 채취한 작업포대 위에 작업자의 명찰을 부착한 후 작업자들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행정지원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풀 뽑기 등 현장작업 과정은 언론 등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4) 위와 같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현장업무가 많은 이유는 위 교육프로

그램이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시의 2008. 4. 내부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작업내용에 관하여 모멸감을 주는 과업부여로 내면적 자기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획일적 통합교육으로 실질적인 역량강화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5. 판단

이하에서는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요약된 진정사항별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내용 요지는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부적격자로서 부서별 3%에 해당되는 인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방법이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진정인이 소위 인사혁신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 및 추진단 구성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사권자로서 피진정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하여 이에 관한 사항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사회의 내·외부로 누가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될 지에 관하여 대부분 알려지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최종적인 심사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합리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한 행위가 합리적이고 명백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기관전출대상

제6장 기타기관

자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에 의한 구체적인 전보행위는 아닐지라도 장차 추진단으로 전보될 것이 전제로 되어 있으므로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절차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전보 포함)함에 있어서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또한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임용기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진 평정결과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전출대상자 가운데 5급 이상 직원이 34명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절차의 취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근무평정(「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제76조 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한 기준으로 실·국 및 기관별 현원의 3% 의무할당 방식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의 개별 부서에서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특별히 밝히지도 아니 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이 요구하는 정기 및 수시의 구체적인 근무평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기간의 사전예고도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선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누가 기관전출 대상자로 선정 되었는 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해

당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상을 정당화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요지는 추진단 구성원들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직무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풀 뽑기 등의 현장노동에 종사하여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현장노동이 추진단 구성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훈련(동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또는 직장훈련(동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2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임용권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추진단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의 현장중심의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의 징벌·징계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시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비교한 문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풀 뽑기 등의 현장업무중심의 징벌적 퇴출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력관리, 획일적 집합교육 중심으로 직무역량 향상 효과 미흡, 심리적 위축을 주는 막노동 중심으로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시 ○○○○과에서 2008. 4. 작성한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조).

제6장 기타기관

따라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이상, 추진단 구성원은 피진정인의 전보명령에 따라 결국 법령상의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피해자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결국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에는 2007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선정방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피진정인이 유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가 간과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의 위와 같은 인사혁신 모델을 표본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부장관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판권
소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3집)

2009년 12월 인쇄

2009년 12월 발행

발행 국가인권위원회

편집 조사국 (02-2125-9627)

인쇄 진명인쇄공사 (02-2279-1470)

ISBN 978-89-6114-193-2 94360

〈비매품〉

ISBN 978-89-6114-195-6 (세트)